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해외사례 연구



연구진

김 지 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재 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온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획일적인 기관구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됨 (이행준, 2016; 최진혁, 2016; 신한철, 2015; 김병국 외, 2011; 이관행, 2010; 안영훈, 2006)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기관대립형에 해당됨. 또한 자치단체장(집행부)의 권한이 지방의원(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단체장 중심형 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 그러나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박정훈, 2014)
- 최근 지방분권에 관한 국내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고도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주요국의 경우 한 국가 내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지역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제2장 이하에서 논의)
 -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제시하고, 각 지역이 인구규모 및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local authority constitution)에 대한 설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상위정부로부터 독립되게 지방정부의 통치구조 또는 기관구성의 형태(form of government)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연계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측면은 ‘책임성’과 연계됨
- 지방자치단체 통치구조(local authority constitution)에 대한 설계는 ‘자율성’과 ‘책임성’ 모두와 연계됨
 -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관구성 다양화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맥락에 맞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각국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최신 해외사례 조사 및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제2장), ②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문제점 분석(제2장), ③ 분석대상범위 및 분석틀 개발(제1장, 제2장), ④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4개 국가의 해외사례조사(제3장~제6장), ⑤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제7장)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자료수집은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제언 도출의 과정은 다중사례비교분석기법을 활용함

〈그림 1〉 연구 흐름도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 흐름도 및 연구범위, 분석틀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대한민국의 기관구성 유형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제3장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4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5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6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7장 결론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분석결과 요약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자문

□ 국가별 사례분석 틀

- 국가별 사례분석은 ①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과 ②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분석, ③ 소결론(유형별 비교분석)으로 요약됨
 -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은 ①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②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기관구성 다양성 인정의 법적 근거 및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 ③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및 현황,

④ 분석대상지역 선정으로 요약됨

-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는 각 국의 기관구성방식 유형별로 1개 자치단체를 선정·조사·분석하였으며, ①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제도, ②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③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을 내용으로 함
-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기관구성 다양성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구성 및 관계에 대해서만 분석함

3. 분석결과

1) 국가별 분석결과(각 장의 소결론을 참고)

□ 영국

- 영국은 본래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 개정을 통해 법에 의거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법에 규정된 4개의 유형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함(이 중 1개 유형은 ‘국무장관이 인정한 방식’으로 ‘기타’에 해당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 인구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등과 기관구성 유형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실상 지역의 맥락에 맞게 지역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관구성의 형태 변경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각 유형은 사실상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구조를 기반으로 함. 직선제 시장의 선출여부, 내각의 구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운영방식을 채택함
- 시장-내각형에 대해서는 Watford, 리더-내각형은 Manchester, 위원회형은 Brighton and hove 지역을 분석하였음
- 기관통합형 구조의 한계인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각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구성된 ‘감독 및 조사위원회’와 재무부서의 장인 ‘감사관(monitering officer)’이 내부적 견제역할을 수

행함. 위원회형은 이와 같은 견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분야별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서로 공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직선제 시장이 있을 경우, 지역 전체를 관점으로 정책을 계획·결정하기 때문에 선거구 별 대표라 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단, 영국의 경우 역사적 맥락에 의해 시장의 선출이 오히려 봉건 제도로의 회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을 직선하였다가 다시 리더-내각형으로 회귀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

□ 미국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및 모든 법적 권한은 주정부가 가진(주재복, 2013).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매우 다양함
 -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조사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표적인 유형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통적 형태의 카운티정부 1개(Delaware County)와 의회-관리자형(City of Long Beach), 의회-시장형(City of Buffalo)에 해당되는 시, 위원회형 타운정부 1개(Town of Ossining)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 기관구성형태 변경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 카운티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감독관(supervisor)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와 세부위원회(committee)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견제와 균형, 각 위원회 중심의 운영에 따른 카운티 전반의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 한계, 전문성의 한계 등 위원회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에는 전문 행정가(executive or administrator)를 선출 혹은 임명하는 형태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 그밖에도 카운티는 카운티 서기(county clerk), 카운티 검사관(county corner), 카운티 보안관(county sheriff), 카운티 세금사정관(county tax

assessor), 카운티 검사장(county prosecutor), 카운티 재무관(county treasurer)을 선출직으로 두고 있어 견제와 균형을 이룸

- 의회-관리자형의 경우, 관리자가 행정부 전반을 관리하되, 의회가 관리자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임
 - 관리자는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보고서에는 이전 정기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시 공무원에 대한 인력의 변동사항(고용, 승진, 순환, 해임)이 포함되어야 함 (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6))
 - 또한 시 감사관은 재정에 관해 의회와 행정부 모두를 감독하고, 의회가 선출한 보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나, 의회 그 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은 비교적 약함
- 시장-의회형의 경우, 시장은 의회가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 지방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회송된 법안을 2/3 이상의 동의로 재의결 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17_e)).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짐
 - 의회가 의회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각 부서장 임명에 동의할 권한이 있고, 시장 외에도 감사관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는 의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시장과 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가 비교적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직선제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큰 편임. 따라서 감사관(comptroller)과 윤리위원회(Board of Ethics)가 시장과 시 관료, 의회 전반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담당함
- 위원회형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분석의 대상이 된 타운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가장 제한된 자치권한을 가짐(Local Government Handbook)
 - 타운 위원회는 사실상 타운에 부여된 자치 권한 모두를 갖고 있으며

(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0(1)),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함. 타운의 역할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위원회 형태만으로도 입법-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음

- 타운위원회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윤리위원회가 타운위원회 및 공무원 조직에 대한 견제권한을 가짐. 또한 타운에 별도의 감사관이 없는 경우 타운 관리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되, 타운 위원회와 타운 서기에게 제출된 회계 보고서는 관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뉴욕 주 감사관(comptroller)에게 제출되어야 함(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9(10))
- 즉, 매우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견제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전문성이 약해 종합행정을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일본

- 일본은 기관구성 다양성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관대립형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형만이 인정됨
 -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비교적 단체장의 권한이 강하나, 의회가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고, 행정부 내의 인사권 행사가 상향식의 후보 중 선정해야 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비해 단체장의 권한 상대적으로 약함
 - 일본은 단체장은 의회에 대해 재의청구, 의회해산, 전결제도 등을 가지고 있어 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의회 역시 단체장에 대한 의회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 비해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의회의 기능약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단체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의 지방자치는 주의 권한이므로, 기관구성 유형은 주별로 차이가 있음. 세부적인 유형은 남독일 시장형, 이원제 시장형, 의회형, 비전형 참사회형의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모두 직선제 단체장을 선출함(Rudzio, 2015)
 - 분석대상은 ① 남독일 시장형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② 이원제 시장형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rcklenburg-Vorpommern)주, ③ 의회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임. 전형 참사회형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에(박해욱, 2015)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독일은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게마인데의 경우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게마인데는 의원들 중에서 의원이 선출됨
 - 전반적으로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을 의회가 하는 등 부단체장을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국의 사례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음
 - 남독일 시장형은 단체장이 긴급의결권을 가지며 의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하나, 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가지며, 의회가 부단체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단체장을 견제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이원제 시장형은 단체장과 의장이 양립하며, 각기 선출됨. 의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부단체장을 선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체장을 견제하게 됨
 - 마지막으로 의회형은 단체장이 의회의 의장을 겸임하나, 의장으로서 의회 내에서의 투표권은 없음

2)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및 종합

- 다양한 지역별 기관구성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경우, 영국과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하고 선택가능한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제화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의 경우 법개정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제화하여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법을 개정할 수 있음. 따라서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은 한국의 맥락에서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 상호 견제기능이 강한 반면, 선거비용이 높음

〈표 2〉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유형	국가	유형	견제기능	선거비용
기관대립형	미국	시장-의회형		고
	독일	이원제 시장형		고
	일본	시장-의회형		고
기관통합형	영국	시장-내각형		고
		리더-내각형	약	
		위원회형	약	
	미국	카운티 의회형	약	
		타운 의회형	약	
		의회-관리자형	약	
	독일	남독일 시장형	약	고
의회형		약	고	

- 또한 전반적으로 기관통합형에서 견제기능 및 지역 전체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관대립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음

4. 정책제언

-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국내와 같이 1개 형태의 기관구성만을 법적으로 규정하다가 기관구성의 다양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단, 이 때 구체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문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단지 ‘지역의 상황에 맞는 기관구성의 형태를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주민투표의 방법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세부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은 령에 예시적인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둘째,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는 국민정서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음. 경제적 위기,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 전문성 확보 필요 등과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이 각 지역이 저마다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형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어떤 유형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더라도 입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함.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의회에 대한 견제기능 및 정책결정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의 예처럼 추가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기관대립형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할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 따라서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국가(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기관통합형에서 기관대립형 전환을 통해 시민이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임에 반해, 국내의 경우 이미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오히려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좁히는 선택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다섯째, 인구규모 등과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간에는 유효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이 더 영향을 미침. 다만 영국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기관구성 다양화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바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위원회형의 기관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형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 설계 시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기관별 역할, 선출의 방법, 견제 및 협력의 방법 등 세밀한 설계를 통해 어떤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견제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별 편차는 물론, 한 국가 내의 한 유형 안에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임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본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분석틀	7
1. 연구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3. 연구 범위 및 분석틀	9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현황	11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13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대립형-기관통합형	13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13
3. 소결론: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 비교	21
제2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현황 및 문제점	23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23
2.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장점과 문제점	24
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필요	25

제3장 영 국	27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29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29
2.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법적 근거	33
1)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33
2)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40
3.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현황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48
1)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현황	48
2) 분석대상지역 선정	49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51
1. 시장-내각형: 왓포드(Watford Borough)	51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51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53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71
2. 리더-내각형: 맨체스터(Manchester City, metropolitan district) ..	80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80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83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105
3. 위원회형: 브라이튼 앤드 호브(Brighton & Hove City, non-metropolitan district)	117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117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122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140
제3절 소결론	148

제4장 미 국 **157**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159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159
2. 뉴욕 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165
3.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법적 근거	168
1)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168
2)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173
4.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현황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180
1)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현황	180
2) 분석대상지역 선정	180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182
1. 위원회형: 델라웨어 카운티(Delaware County)	182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182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185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197

차례

2. 의회-관리자형: 롱비치 시(City of Long Beach)	201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201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204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214
3. 시장-의회형: 버팔로 시(City of Buffalo)	218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218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221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238
4. 위원회형: 오시닝 타운(Town of Ossining)	247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247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250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267
제3절 소결론	273
제5장 일 본	285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287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287
2. 기관구성 관련 법적 근거	290
제2절 기관구성 및 관계분석	295

1.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295
1) 단체장(또는 시장 등) 선임방식 및 역할	295
2) 지방의회 의원 선임방식 및 역할	298
3) 부단체장 선임방식 및 역할	301
2.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303
제3절 소결론	306

제6장 독일 **309**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311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311
2. 기관구성의 형태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312
1) 독일의 기관구성	312
2) 분석대상지역 선정	313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315
1. 남독일 시장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315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315
2) 기관 간 관계	325
2. 이원제 시장형: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328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328



2) 기관 간 관계	340
3. 의회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343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343
2) 기관 간 관계	356
제3절 소결론	362
제7장 결론 및 제언	371
제1절 국가별 분석결과 종합	373
제2절 정책제언	379
참고문헌	381
【부록】 Local Government Act(2000)	384

표 차례

〈표 1-1〉 국가별 분석틀	10
〈표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특징	15
〈표 2-2〉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의 특징	16
〈표 2-3〉 책임행정관형의 특징	18
〈표 2-4〉 위원회형의 특징	19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21
〈표 2-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변천사	23
〈표 3-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조2: 2층제-단층제	32
〈표 3-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34
〈표 3-3〉 영국(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35
〈표 3-4〉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1	41
〈표 3-5〉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2	46
〈표 3-6〉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구성유형별 분포	49
〈표 3-7〉 시장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54
〈표 3-8〉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59
〈표 3-9〉 부시장 및 내각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64
〈표 3-10〉 수석행정관 및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관련 규정	68
〈표 3-11〉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에 관한 조문	71
〈표 3-12〉 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관련 조문	74
〈표 3-13〉 맨체스터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82

K R I L A

표 차례

〈표 3-14〉 리더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 규정	84
〈표 3-15〉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 규정	89
〈표 3-16〉 내각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97
〈표 3-17〉 수석행정관 및 위원회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102
〈표 3-18〉 기관구성방식 전환 관련규정	105
〈표 3-19〉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108
〈표 3-20〉 브라이튼 앤드 호브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119
〈표 3-21〉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125
〈표 3-22〉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관련규정	133
〈표 3-23〉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관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137
〈표 3-24〉 지역헌법 및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관련규정	139
〈표 3-25〉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142
〈표 3-26〉 영국: 3개 유형 비교	148
〈표 4-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160
〈표 4-2〉 뉴욕 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170
〈표 4-3〉 뉴욕 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변경절차 및 방법의 근거법	174
〈표 4-4〉 Delaware County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183
〈표 4-5〉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187
〈표 4-6〉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190
〈표 4-7〉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192

〈표 4-8〉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198
〈표 4-9〉 City of Long Beach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202
〈표 4-10〉 관리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205
〈표 4-11〉 지방의회와 시의원 선임 및 역할 관련규정	208
〈표 4-12〉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211
〈표 4-13〉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215
〈표 4-14〉 City of Buffalo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220
〈표 4-15〉 지방의회와 시의원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223
〈표 4-16〉 시장 및 내각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230
〈표 4-17〉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235
〈표 4-18〉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240
〈표 4-19〉 Town of Ossining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248
〈표 4-20〉 기관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251
〈표 4-21〉 기관 구성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259
〈표 4-22〉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268
〈표 4-23〉 미국: 4개 유형 비교	274
〈표 5-1〉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법적 근거	289
〈표 5-2〉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법적 근거	290
〈표 5-3〉 도도부현 및 시정촌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	292
〈표 5-4〉 일본 위원회 기관구성의 법적근거	292

표 차례

〈표 5-5〉 지방의회사무국 구성의 법적근거	294
〈표 5-6〉 단체장의 선임 및 해임	296
〈표 5-7〉 단체장의 권한	297
〈표 5-8〉 지방의회 의원의 선임방식	298
〈표 5-9〉 지방의회 및 의원의 해임방식	300
〈표 5-10〉 부단체장의 선임 및 해임	302
〈표 5-11〉 부단체장의 역할	302
〈표 5-12〉 단체장에 대한 견제	303
〈표 5-13〉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	304
〈표 5-14〉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수단	305
〈표 5-15〉 일본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306
〈표 6-1〉 의회의 구성 및 권한	316
〈표 6-2〉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	318
〈표 6-3〉 위원회 구성	320
〈표 6-4〉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322
〈표 6-5〉 단체장 선거	323
〈표 6-6〉 부단체장 임명	324
〈표 6-7〉 기관 간 관계	325
〈표 6-8〉 의회의 구성 및 권한	329
〈표 6-9〉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331

〈표 6-10〉 위원회 구성	334
〈표 6-11〉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336
〈표 6-12〉 단체장 선거	338
〈표 6-13〉 부단체장 선출	339
〈표 6-14〉 기관 간 관계	341
〈표 6-15〉 의회의 구성 및 권한	344
〈표 6-16〉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	348
〈표 6-17〉 위원회 구성	350
〈표 6-18〉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353
〈표 6-19〉 단체장 선거	353
〈표 6-20〉 부단체장 선출	355
〈표 6-21〉 기관 간 관계	358
〈표 6-22〉 독일: 3개 유형 비교	363
〈표 7-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374
〈표 7-2〉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378

K R I L A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8
〈그림 3-1〉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	30
〈그림 3-2〉 Watford의 기관구성 체계도	53
〈그림 3-3〉 Manchester의 기관구성 체계도	81
〈그림 3-4〉 Brighton & Hove의 기관구성 체계도	119
〈그림 3-5〉 왓포드(Watford)의 기관 간 관계도	153
〈그림 3-6〉 맨체스터(Manchester)의 기관 간 관계도	154
〈그림 3-7〉 브라이튼 앤드 호브(Brighton & Hove)의 기관 간 관계도	155
〈그림 4-1〉 전통적인 카운티 정부의 지방정부 구조	161
〈그림 4-2〉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의 정부구조	162
〈그림 4-3〉 의회-관리자형(Council-manager form)의 지방정부 구조	163
〈그림 4-4〉 시위원회형(City commission form)의 지방정부 구조	164
〈그림 4-5〉 뉴욕 주 지방정부의 구조	165
〈그림 4-6〉 Delaware County(NY)의 기관구성 체계도	183
〈그림 4-7〉 City of Long Beach의 기관구성 체계도	201
〈그림 4-8〉 City of Buffalo의 기관구성 체계도	219
〈그림 4-9〉 Town of Ossining(NY)의 기관구성 체계도	248
〈그림 4-10〉 델라웨어 카운티 기관 간 관계도	280
〈그림 4-11〉 롱비치시 기관 간 관계도	281
〈그림 4-12〉 버팔로시 기관 간 관계도	283

〈그림 5-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88
〈그림 5-2〉 일본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308
〈그림 6-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311
〈그림 6-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315
〈그림 6-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328
〈그림 6-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343
〈그림 6-5〉 남독일 시장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369
〈그림 6-6〉 이원제 시장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370
〈그림 6-7〉 의회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37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분석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지방자치: 자율성 vs. 책임성

- 지방자치(local autonomy)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지역 내의 공공사무를 지역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정세욱, 1995; 최창호, 1995)”으로 정의됨
-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개의 차 원으로부터 출발함(이승중, 2014)
- 단체자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는 국가 등 상위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기 위한 ‘분권’의 논의가 핵심이 되며, 주민자치의 관점에서는 지방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핵심이 됨(이승중,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관할지역 내에서의 전권한성¹⁾ 또는 보충성 원칙²⁾에 따른 독립적·포괄적 통치권을 가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에 대한 설계와 시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역 내에서 ‘견제’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1) 전권한성(all-power principle, Prinzip der Allzustaendigkei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범위는 일일이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본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는 것을 말함(민가-홍주미, 2017)

2) 보충성의 원칙(le principe de subsidiarite)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단일국가에서의 지방분권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조정원칙으로, 상위기관은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전훈, 2005)

□ 지방자치단체 통치구조: 기관구성의 다양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local authority constitution)에 대한 설계는 ‘자율성’과 ‘책임성’ 모두와 연계됨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 상위정부로부터 독립되게 지방정부의 통치구조 또는 기관구성의 형태(form of government)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연계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입법부-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측면은 ‘책임성’과 연계되기 때문임
- 최근 지방분권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지방분권개헌·재정분권·사무배분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그 중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온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획일적인 기관구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됨(이행준, 2016; 최진혁, 2016; 신환철, 2015; 김병국 외, 2011; 이관행, 2010; 안영훈, 2006)

2. 본 연구의 필요성

□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의 경우 기관대립형에 해당됨. 또한 자치단체장(집행부)의 권한이 지방의원(입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단체장 중심형 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 기관대립형: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이들이 상호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김병국 외, 2011)
 - 기관통합형: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부와 입법부 기능을 지방의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는 형태(김병국 외, 2011)
- 그러나 대한민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박정훈, 2014)
-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주요국의 경우 한 국가 내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지역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제2장 이하에서 논의)
-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제시하고, 각 지역이 인구규모 및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선행연구는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구성형태에 대한 조사 및 소개를 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 관련 입법사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 한국의 맥락에 맞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시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시론적 연구들은 주요국의 기초적인 기관구성 형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단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칠 뿐,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차원의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 첫째,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 * 둘째, 법적 근거에 따른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는 어떻게 선정되는가?(역사적 배경 등)
 - * 셋째, 기관구성 형태를 바꾼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는가?
 - * 넷째, 이론적으로 제시된 기관구성 형태의 유형별로 단체장-지방의회의 관계는 어떠한가?
-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기관구성 특례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기관구성 다양화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정책적·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분석틀

1.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최신 해외사례 조사 및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크게 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제2장), ②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문제점 분석(제2장), ③ 분석 대상범위 및 분석틀 개발(제1장, 제2장), ④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4개 국가의 해외사례조사(제3장~제6장), ⑤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제7장)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연구의 방법

- 자료수집은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제언 도출의 과정은 다중사례비교분석기법을 활용함

□ 연구의 내용

- 각 내용을 포괄하는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유형(제1절)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문제점(제2절)을 분석함. 제2

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국내의 기관구성 형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 필요성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 흐름도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 흐름도 및 연구범위, 분석틀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대한민국의 기관구성 유형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제3장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4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5장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6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7장 결론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분석결과 요약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자문

- 제3장~제6장은 4개국 사례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며, 국가별로 1)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제1절), 2)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제2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이 중 일본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기관구성의 다양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에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기관구성 형태 및 기관 간 관계가 국내와 차이가 있음. 따라서 분석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함

3. 연구 범위 및 분석들

□ 연구범위

- 본 연구의 주요국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범위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4개 국가임
 - 분석대상 국가는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실무적 논의에서 참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된 바 있는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의 협의를 거쳐 선정함
 - 영국은 1개 형태의 기관구성 형태만을 인정하다가 법 개정을 통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은 연방제국가로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기관구성 형태를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가로, 가장 다양한 기관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은 법적으로 기관구성 형태가 1가지로 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단체장의 권한이 국내에 비해 약한 단체장 권한 분산형 국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정책제언 개발에 활용 가능하므로 사례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주별로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하며, 대륙법계 국가로서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각국의 사례에 대한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가지 기관구성 유형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대표사례를 제시함. 대표사례의 선정과정은 각 장에서 기술함. 기관구성 입법사례

의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근거조문을 제시하는데 한함

-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명시적 법문이 없는 국가의 경우, 기관구성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법문 등이 근거 조항이 됨
- 한 국가에 기관구성 유형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음. 따라서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표 1-1>과 같이 제2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게 됨

○ 제7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국가 간 비교표로 조사결과를 종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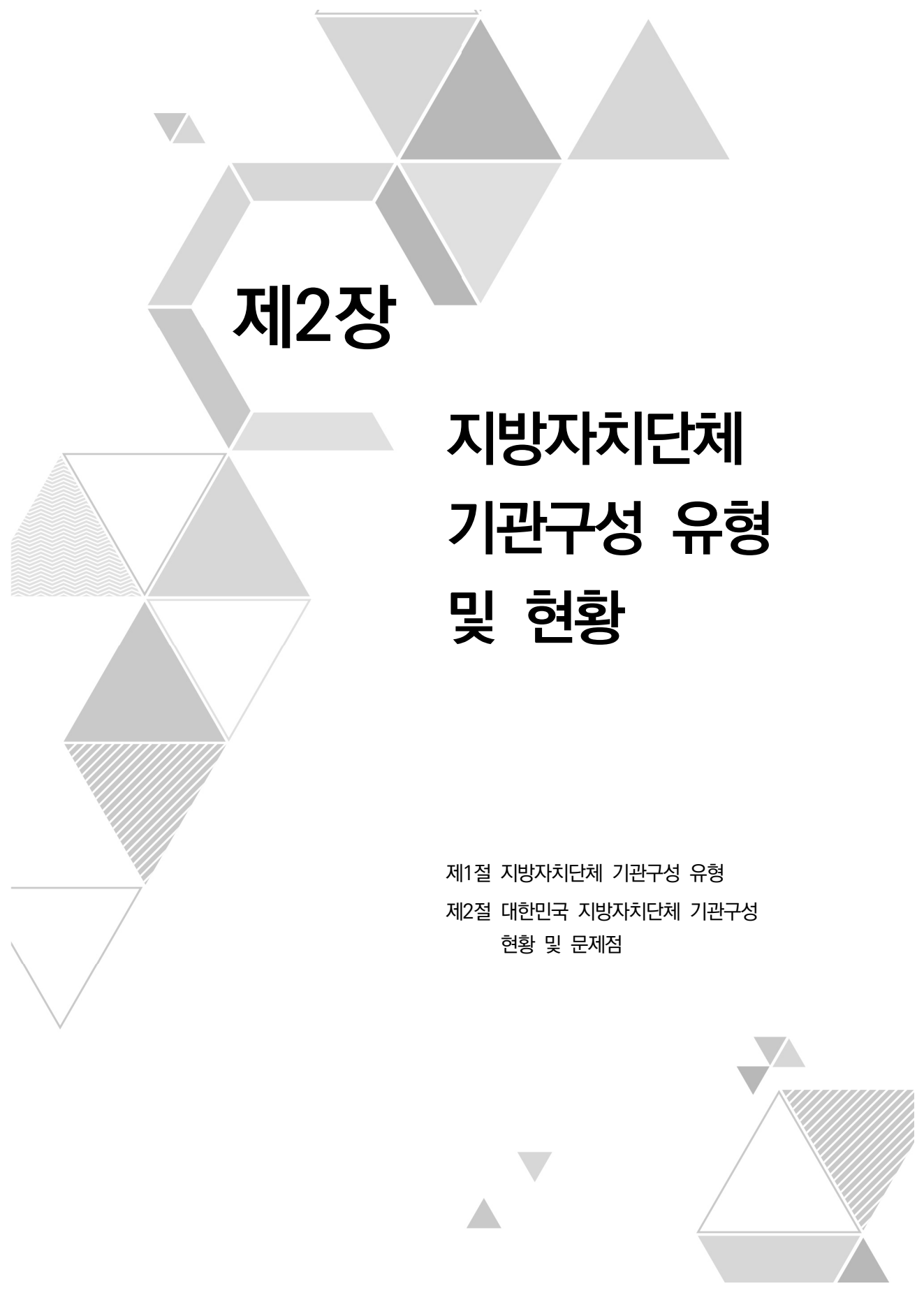
사례분석틀

○ 각국 사례에 대한 분석틀은 다음의 <표 1-1>과 같음

<표 1-1> 국가별 분석틀

분석기준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법적 근거 1) 기관구성 다양성 인정 법적근거 2)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및 현황 - 분석대상지역 선정	✓	✓		✓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제1절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본 절에서 법적 근거를 기술	✓	✓	✓	✓

* ✓표시: 해당 분석을 실시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제2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현황 및 문제점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및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기관대립형-기관통합형

□ 기관대립형-기관통합형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입법(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분리 여부에 따라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구분됨³⁾
 - 기관대립형(의원대표제형):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이들이 상호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말함(김병국 외, 2011)
 - 기관통합형(의원대표제형):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집행부와 입법부 기능을 지방의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함(김병국 외, 2011)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화

-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구조로 단체장에 부여되는 권한 및 책임의 집중 정도에 따라 단체장 중심형(강시장-의회형), 단체장 권한분산형(약시장-의회형)으로 분류됨(안영훈, 2006;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이행준, 2016)⁴⁾

3) 최진혁(2012)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통합한 경우를 의원대표제 모델, 분리하는 경우를 의원대표제 모델로 명명하기도 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한 명칭인 기관대립형-기관통합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4) 미국식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명칭을 활용한 것임(박종화 외, 2013; Bingham et al., 1991)

- 그러나 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권한 및 책임의 집중도는 국가별 정치사회적 맥락 및 법규정에 따라 편차가 큼. 독일의 이원제 시장형(Dualisti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미국의 시장-의회형,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등이 기관대립형에 해당됨
- 그 밖에 독일의 비전형 참사회형(Unechte Magistratsverfassung)의 경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은 행정권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이외의 다른 권한들은 합의회 기관인 참사회(Magistrat)가 수행함(Rudzio, 2015).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형태의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에 대해서는 각 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함

○ 단체장 중심형(Strong Mayor-Council Form)

- 단체장 중심형은 단체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킨 기관구성의 형태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정적 수장인 동시에 단일 정치 수장으로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례적 기능을 수행함(임승빈, 2017)
-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권 및 예산집행권, 의회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폭넓은 인사권 행사가 가능함(임재현, 2017). 행정권을 단체장에게 집중시키므로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함(임재현, 2017). 시민에 의해 시장이 선출되므로, 시민의 여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음(임승빈, 2017)
- 단체장은 의회에 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입법과정 또는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회를 통과한 안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임재현, 2017)
-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어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나타날 수 있음. 만약 단체장이 정치적 기능에 집중할 경우, 행정의 안정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김병국 외, 2011). 단체장-지방의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발생 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나(김병국 외, 2011), 상대적으로 약시장형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낮음

- 한국을 비롯한 미국 및 세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기관구성 형태임(임재현, 2017)

〈표 2-1〉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특징

구분	단체장 중심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조직·지휘·감독·조사권 행정입법권, 의회입법에 관한 거부권 등 • 시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에 따라 막강한 권한·책임을 가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리더십의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책임소재의 명확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상대적으로 약시장형보다는 가능성이 낮음) • 단체장이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경우 행정 안정성 확보 미약 •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

○ 단체장 분산형(Weak Mayor-Council Form)

- 강력한 행정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기관구성의 형태로(박종화 외, 2013),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력 집중을 막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김병국 외, 2011)
- 지방의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등,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에 분산하여 운영함. 따라서 단체장은 부서 및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 또는 조율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에 제약을 받음(박병식 외, 2010: 209; 박종화 외: 2013: 83)
- 의회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독함. 예를 들어 의회 소속 위원회가 담당 업무별로 집행부를 각각 지도 및 감독하며, 단체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임재현, 2017). 이 과정에서 의회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므로, 시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임재현, 2017)

- 단체장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공무원들이 시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단체장의 인사권이 축소되고,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시민의 참여범위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음(임재현, 2017)
- 단체장은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갖지 않거나, 거부권을 갖더라도 제한적임(임승빈, 2017)
-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재력가들에 의한 정치적 조작과 통제가 발생될 수 있음(박병식 외, 2010: 210; 박종화 외, 2013: 84)
- 과거 미국의 소도시들에서 운영되었고 일부 도시에서 아직 활용되고 있는 형태임(임재현, 2017)

〈표 2-2〉 단체장 분산형(약시장형)의 특징

구분	단체장 분산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강력한 행정통치 견제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협력관계를 형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 권한: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정운영 감독권, 단체장 해임 건의권 등 단체장 권한 견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시민이 단체장, 다수의 주요 공무원을 직접 선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선출범위 및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행정통제능력이 낮아져 효율성이 저하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 (상대적으로 강시장형보다는 가능성이 높음) • 지역 토호세력이나 재력가들의 정치적 조작 및 통제 가능성

□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화

- 기관통합형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에 따라 의회중심형, 책임행정관형, 위원회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기관통합형은 기관대립형과 비교할 때,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통합수

준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첫째, 입법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내각을 구성하여 집행부를 통할하는 의회중심형(영국의 리더-내각형), 둘째, 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채용 또는 임명하여 집행기관을 통할하게 하는 책임행정관형(미국의 의회-관리자형), 셋째, 소수의 위원회가 입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위원회형(미국의 위원회형)으로 구분됨
 - 그러나 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 뽑되, 단체장이 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영국의 시장-내각형, 독일의 남독일 시장형(Süddeut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의회형(Ratsverfassung) 등 경우 시장이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관통합형 중 하나인 의회중심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관대립형 중 하나로 단체장 내각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즉, 학자에 따라 기관통합형 또는 기관대립형으로 정의하는 등 의견이 상이함
 - 그러므로 의회중심형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각 장의 제1절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책임행정관형과 위원회형을 중심으로 기술함
- 책임행정관형: 시민이 지방의회만을 선출하고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해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
- 책임행정관형은 의회가 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모두 가지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의원으로 구성된 내각(cabinet)을 운영함(김병국 외, 2011)
 -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선임하여 책임행정관에게 집행기관 운영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임. 책임행정관은 자치단체 내 부서의 업무를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자치단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며, 책임행정관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단체장, 지방의회 및 의회 의원이 관여할 수 없음

5) 미국식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명칭을 활용한 것임(박종화 외, 2013; Bingham et al., 1991)

- 책임행정관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행정관을 지방의회가 임명함으로써 단체장 중심형의 장점인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체장 중심형의 단점인 인사비리,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김병국 외, 2011)
- 다수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고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책임행정관은 결국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간선방식으로 선출되므로, 국민정서와의 괴리감 발생, 책임행정권 임면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 발생의 문제 등이 있음(김병국 외, 2011)

〈표 2-3〉 책임행정관형의 특징

구분	책임행정관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집행기관+의결기관 •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을 임명 • 책임행정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권한 부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중심형의 장점인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단체장 중심형의 단점인 인사비리,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 해결(의회의 견제) • 책임행정관-의회 간의 갈등발생가능성이 낮아 효율성 제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행정관은 결국 지방의회 의원에 의해 선정되므로, 국민정서와의 괴리감 발생, 책임행정권 임면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 발생의 문제 등이 있음 •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

- 위원회형(commission): 소수의 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집행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함. 집행위원 중 한 명이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함. 대표적으로 1900년 미국 텍사스주가 허리케인으로 인해 복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지방자치단체 운영방식으로, 20세기 초에는 약 500여개의 소규모 도시가 이 형태를 선택하였다가 현재는 감소하고 있음(이종수,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위원회에 집중시켜 운영하는 기관구성 형

- 태로,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서의 수장 역할을 수행함(의회=집행기관)
-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지만 행정수장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이고 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갖지 않음

〈표 2-4〉 위원회형의 특징

구분	위원회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킴 • 집행기관=지방의회: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위원이 집행부서의 장 역할을 수행함 •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중 선출(상징적 존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국가차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입법-집행기관 간 협조가 긴밀함 •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절감효과 •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용이 • 민주정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의결기관 간 견제가 어렵고,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특정사안의 책임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에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함 •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지역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체장이 상징적 존재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 미국에서 시작된 기관운영의 형태이지만 현재는 미국 내에서도 많이 채택되고 있지 않음(임승빈, 2005: 25)⁶⁾
- 위원회가 입법 및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므로,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정책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함(박종화 외, 2013: 88; 김병국 외, 2011)
- 자치단체의 조직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시정참여가 용이하여,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함(박종화 외, 2013: 88; 김병국

6) 2011년 기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3% 이하 정도가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채택하였고, 해당 형태를 수용하는 단체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김병국 외, 2011)

외, 2011)

- 자치단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력의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음(박종화 외, 2013: 88; 김병국 외, 2011)
- 그러나 의회가 입법(조례의 제·개정) 및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어렵고, 입법-집행기관이 단일기관이라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의 책임이 위원이 아닌 위원회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함(박종화 외, 2013: 88; 김병국 외, 2011)
- 의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이익집단을 대표하기 어렵고, 단체장의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박종화 외, 2013: 88; 김병국 외, 2011)

3. 소결론: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 비교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 비교·분석결과

-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4)의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한 가지 유형이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의회중심형의 경우 세부적인 유형이 다양하여 국가별 사례분석이 실시되는 제3장부터 제6장의 각 장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함
 - 즉, 지역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자치단체 구성이 필요함

〈표 2-5〉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구분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분산형	책임행정관형	위원회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 단체장의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조직·지휘·감독·조사권 행정입법권, 의회입법에 관한 거부권 등 • 시민이 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에 따라 막강한 권한 책임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을 별도로 구성 • 단체장 중심형(강시장형)의 강력한 행정통치 견제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협력 관계를 형성 •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수장 • 권한의 크기: 단체장 < 지방의회 • 권지방의회의 권한: 고위공직자 인사권, 행정운영 감독권, 단체장 해임 건의권 등 단체장 권한 견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시민이 단체장, 다수의 주요 공무원을 직접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집행기관+의결기관 • 지방의회가 책임행정관(집행기관의 수장)을 임명 • 책임행정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강력한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킴 • 집행기관=지방의회: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지방의회 위원이 집행부서의 장 역할을 수행함 • 단체장: 지방의회 위원 중 선출(상징적 존재)

구분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분산형	책임행정관형	위원회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리더십의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책임소재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선출범위 및 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가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 중심형의 장점인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단체장 중심형의 단점인 인사비리, 방만한 재정운영 등의 문제 해결 (의회와의 견제) • 단체장(책임행정관)-의회 간의 갈등 발생가능성이 낮아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국가차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입법-집행기관 간 협조가 긴밀함 •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절감효과 •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용이 • 민주정치,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 (상대적으로 약시장 형태보다는 가능성이 낮음) • 단체장이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경우 행정 안정성 확보 미약 •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행정통제능력이 낮아져 효율성이 저하 • 단체장-의회 간의 갈등으로 집행 지연 발생 또는 행정비효율 발생 가능(상대적으로 강시장형태보다는 가능성이 높음) • 지역 토호세력이나 재력가들의 정치적 조작 및 통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으로 책임행정관이 선정되면서 국민정서와의 괴리감, 책임행정관의 정치적 편향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의결기관 간 견제가 어렵고,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특정사안의 책임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에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함 • 의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지역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체장이 상징적 존재로, 리더십 발휘가 어려움

제2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현황 및 문제점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 한국은 주민 직선으로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및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통한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하였지만, 획일화된 기관구성의 형태를 유지해왔음
- 한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기관대립형⁷⁾, 그리고 단체장의 권한을 강조한 단체장 중심형 기관구성을 채택하고 있음(김병국 외, 2011; 신환철, 2015; 이관행, 2010; 이행준, 2016; 최진혁, 2016)

〈표 2-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변천사

연도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기관구성유형
1949.07.	지방의회(직선)	기초: 간선 광역: 임명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1956.02.	지방의회(직선)	기초: 직선 광역: 임명	기관대립형
1958.12.	지방의회(직선)	임명	기관대립형
1960.11	지방의회(직선)	직선	기관대립형
1961.05.	의회해산		
1988~1989	원칙: 의회구성 경과조치: 미구성	원칙: 직선 경과조치: 임명	
1990.12.	지방의회(직선)	원칙: 직선 경과조치: 임명	기관대립형
1994.03.~	지방의회(직선)	직선	기관대립형

*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

7) 지방자치법(1949년 7월 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형태를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장점과 문제점

□ 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장점

- 그 결과 의결기관-집행기관의 엄격한 견제에 따른 책임성이 제고되고,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직선제로 인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최진혁, 2012). 또한 단체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발전됨(최진혁, 2012)
- 이와 같은 단체장 직선제의 장점은 영국 등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 구성형태를 지닌 국가들이 시장직선제를 도입하는 원인이 됨

□ 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문제점

- 그러나 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그 대표적인 문제의 원인은 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견제와 균형의 실패로부터 나타남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에 기반을 두어 의결 및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 중심형의 기관구성 유형을 채택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인사비리, 뇌물수수,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의 부정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에도,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의회의 권한이 자치단체장보다 강하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행하기 어려움⁸⁾
 - 단체장이 출신 정당을 위한 정책 집행 등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경우, 행정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움(김병국 외, 2011)

8) 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기관의 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위임사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므로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음(신환철, 2015)

-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기관구성의 형태가 법적으로 획일화되어,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음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및 1차 산업 기반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연령별 인구의 변화, 지역별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상 및 내용의 변화 등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변화된 지역사회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획일화된 한국의 기관구성 형태는 한계에 도달하였음
 - 획일화된 기관구성의 운영 중 나타날 수 있는 주민대응 미흡, 행정의 비효율성 증가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김병국 외,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지리적인 특성, 지역주민의 요구, 인구 규모,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기관구성의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함

3.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필요

본 연구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획일성 및 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하는 원인임
- 따라서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음
- 영국 등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에서 선출직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역사, 문화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함(제3절 영국의 사례 참고). 또한 일본의 경우는 여전히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
- 또한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국가(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경우, 기관통합형에서 기관대립형 전환을 통해 시민이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임에 반해, 국내의 경우 이미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오히려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좁히는 선택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따라서 국내사정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을 찾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3장

영 국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제3절 소결론

제3장 영 국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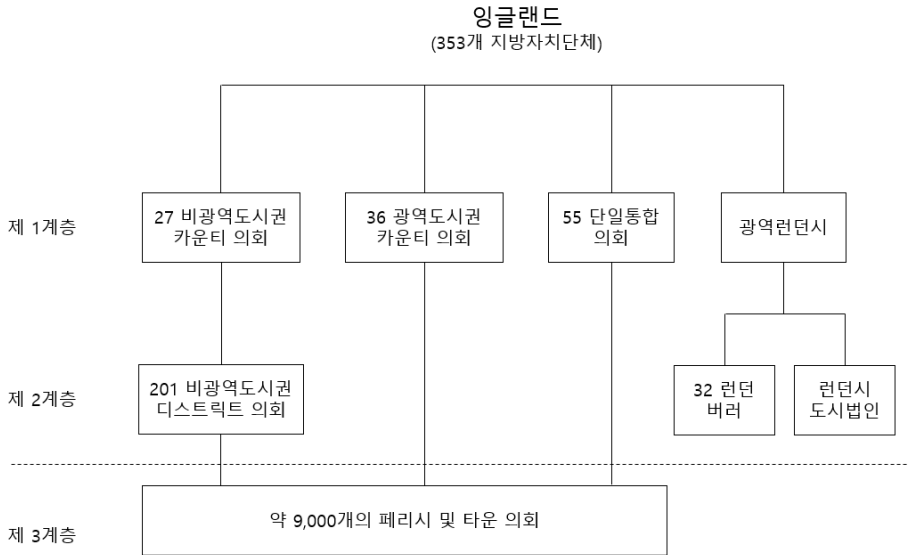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92년 총선 이후 보수당 정부에 의해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county level’과 ‘district level’로 구성된 2층제(2-tier) 구조가 단층제(single-tier) 형태인 ‘unitary authorities’로 통합되기 시작함(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
 - 광역도시권(metropolitan)의 경우, 1986년 Local Government Act 1985에 따라 카운티 의회가 폐지되면서 디스트릭트 의회 기반의 단층제(single-tier)로 변화됨
 - 런던광역시의 경우,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를 통해 Local Government Act 1985에 따라 1986년 폐지되었던 광역런던의회(Greater London Council)를 대신하여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 이하 GLA)가 설립됨. 런던광역시는 시장(Mayor of London)과 런던 의회(London Assembly)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 전 지역에 걸친 광역사무를 담당함
 - * 단, 런던 버러(London boroughs) 런던 시(City of London)의 경우 영국정부가 단층(single tier)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광역런던-런던 버러/런던 시로 구성된 2층제 형태를 보임
 - 그에 비해 비광역도시권(non-metropolitan)의 경우, County와 District가 각각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2층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1995~1998년과 2006~2009년 2차례에 걸친 영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단층제 개편 과정에서 카운티 중 일부는 하위의 디스트릭트와 통

합하여, 단일통합 지방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로 전환하기도 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

-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1994년 Local Government Act(Wales & Scotland)에 따라 카운티와 디스트릭트를 통합하여, 단일통합 지방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로만 구성됨(단,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범위를 잉글랜드 지역으로 제한함)

〈그림 3-1〉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



* 출처: Wilson and Game, 2006

- 그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은 <표 3-1>과 같음
 - 2층제 운영지역의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s)는 총 27개가 존재하며,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
 - 2층제 지역의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s)는 총 201개가 존재하며, 쓰레기 수집, 주거 및 계획의 적용들과 같은 지방 사무를 담당함

- 단일통합 지방자치단체(Unitary authorities)는 총 55개로, 하위에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를 두지 않고 모든 지방사무를 담당함
- 대도시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s)는 총 36개가 존재하며 6개의 도시 권역⁹⁾으로, 지역 내 모든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무를 갖지만 소방, 민방위, 경찰, 쓰레기 처리, 교통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공동 기관(joint authorities)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 런던시(City of London)는 'Square Mile(런던 내 city 구역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경제개발, 교육, 환경보건, 고속도로 관리, 주거, 도서관, Barbican 예술 센터, 경찰, 사회 복지 서비스, 쓰레기 수거 및 마을(town) 계획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
- Isles of Scilly의 의회는 단일통합 자치단체의 형태를 취하지만 몇몇 지방정부 서비스의 경우 콘월 의회(Cornwall council)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함. 자체적인 수도국(water authority), 공항 당국을 갖고 있으며, 수산업 위원회(Sea Fisheries Committee)와 같은 다른 권한도 가짐
- 잉글랜드 내의 타운 및 페리쉬 의회(Town and parish councils)는 대략 9,000개가 존재하며, 이들은 디스트릭트 의회나 단일통합 자치단체의 하위 수준에서 작동함. 워낙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된 기능은 없지만 주로 공원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소규모의 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카운티나 디스트릭트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도 있음

9) Greater Manchester, Merseyside, South Yorkshire, Tyne and Wear, West Midlands, and West Yorkshire 등

〈표 3-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조2: 2층제-단층제

구 분	자치단체 유형	개 수
2 tier	County councils	27
	District councils	201
Single tier	Unitary authorities	55
	Metropolitan districts	36
	London boroughs	32
	City of London	1
	Isles of Scilly	1
합계		353

* 출처: UK Government, 2019

2.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법적 근거

1)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 영국의 기관구성 형태 변화의 역사

- 1835년 Municipal Corporations Act를 바탕으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선출직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며(김옥, 2007), Local Government 1888 및 1894를 통해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와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의 2층제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2014)
-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를 통해 런던광역시가 설립되었으며, 영국최초로 직선시장 및 의원 25명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구성됨 (Greater London 홈페이지)
- 런던광역시의 변화를 시작으로, Local Government Act 2000(〈표 3-3〉참고)이 제정되면서,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성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됨
 - 소규모 지방정부(인구 85,000 미만)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리더-내각형(Leader and Cabinet executive), 시장-내각형(Mayor and Cabinet executive), 시장-관리자형(Mayor and Council Manager) 중 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규모 지방정부는 위원회형(Committee System)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Local Government Act 2000 section 11 & section 31-32)
- 이후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¹⁰⁾에서 직선시장-관리자 유형이 폐지되었으며, Localism Act 2011에서는 인구 85,000 이상의 지방정부도 위원회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¹¹⁾

10) Schedule 3 Local Government Act 1972(c. 70) 3.

11) Localism Act 2011 section 33-34에서 Local Government Act section 31-32 삭제를 통해 소규모

- 한때 인구 8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만 위원회형을 채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이 많음. 그러나 현재는 인구기준이 법률상 폐기되었기 때문에 인구규모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함. 즉, 지역 상황과 문화에 맞는 자치단체 구성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Local Government Act 2000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4가지 거버넌스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Local Government Act 2000 Part 1A. section 11)
 - 시장-내각형(Mayor and Cabinet executive), 리더-내각형(Leader and Cabinet executive), 위원회형(Committee System), 그리고 장관(Secretary of State)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으로 구분됨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을 유지하고 있음. 어떤 한 가지 유형이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을 상호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3-2>과 같음

<표 3-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구분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시장(시민 전체가 직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내각: 시장이 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 내각이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을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시장(또는 리더,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내각: 리더가 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 내각이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의장(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각 위원회 • 각 위원회가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을 임명

지방정부에 대한 예외적용이 폐지됨

구분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대한 책임 명확 • 각 선거구가 아닌 시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를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중심의 정책결정을 통해 위원회형에 비해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책결정이 빠름 • 평의원(내각이 아닌 위원)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의회 중심의 전통적인 영국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유사해 국민 수용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의원이 각자가 속한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회 내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제 시장 선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 • 시장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봉건제도로의 회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없어, 의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나,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타 위원회의 정책결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그 결과 의회 전반의 주요 정책결정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 <표 3-3>는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규정의 근본이 되는 “Local Government Act 2000”을 중심으로 관련법을 보완하여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를 기술함

〈표 3-3〉 영국(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원문	번역
Part 1A.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local authority governance in England	Part 1A.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통치구조
Chapter 1. Permitted forms of governance	Chapter 1. 통치구조
9B Permitted forms of governance for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9B 잉글랜드에서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에 허락되는 통치구조 형태

원문	번역
(1) A local authority must operate— (a) executive arrangements, (b) a committee system, or (c) prescribed arrangements.	(1) 지방자치단체는 (a) 집행부 배치(executive arrangements), (b) 위원회 시스템(a committee system), 또는 (c) 기타 규정에 의한 배치(prescribed arrangements)로 운영된다.
(2) Executive arrangements must conform with any provisions made by or under this Part which relate to such arrangements (see, in particular, Chapter 2).	(2) 집행부 배치(executive arrangements)에 대한 행정적 준비는 Chapter 2.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한다.
(3) A committee system must conform with any provisions made by or under this Part which relate to such a system (see, in particular, Chapter 3).	(3) 위원회 시스템(a committee system)은 본 Part 이하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한다.
(4) In this Part—“a committee system” means the arrangements made by a local authority, which does not operate executive arrangements or prescribed arrangements,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its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a) Part 6 of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 and (b) this Part; “executive arrangements” means arrangements by a local authority— (a) for and in connection with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n executive of the authority, and (b) under which certain functions of the authority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prescribed arrangements” means such arrangements as may be prescrib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under section 9BA	(4) 이 Part에서 “a committee system”은 1972년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집행부 배치 또는 기존의 배치 방식을 운영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이 Part에서 “executive arrangements”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a)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executive) 구성 및 운영 관련 사안과 (b) 그들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특정한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Part에서 “prescribed arrangements”는 Section 9BA 이하의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령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배치를 말한다.
9BA 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prescribe additional permitted governance arrangements	9BA 국무장관의 기타 거버넌스 형태 허가 권한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prescribing arrangements that local authorities may operate for and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	(1) 국무장관은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a) must include provision about how, and by whom, the functions of a local authority are to be discharged, and (b) may include provision enabling functions to be delegated.	(2) 특히 그 규정은 (a)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취소 또는 (b) 위임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
(3)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may, in particular, include provision which applies or reproduce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any provisions of, or any provision made under, Chapters 2 to 4 of this Part.	(3) 본 section의 규정은 특히 Chapter 2~4의 규정에 적용 또는 재생산 할 수 있다(수정을 통해 또는 수정 없이도).
(4) In considering whether or how to exercise the power in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State must have regard to any proposals made under subsection (5).	(4) 본 section에서 국무장관이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또는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지 결정할 때, 반드시 (5)에 따른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5) A local authority may propose to the Secretary of State that the Secretary of State make regulations prescribing arrangements specified in the proposal if the authority considers that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6) are met.	(5)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장관에게 (6)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특정한 내용을 규정을 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6) The conditions are—(a) that the operation by the authority of the proposed arrangements would be an improvement on the arrangements which the authority has in place for the discharge of its functions at the time that the proposal is made to the Secretary of State, (b) that the operation by the authority of the proposed arrangements would be likely to ensure that the decisions of the authority are taken in an efficient, transparent and accountable way, and (c) that the arrangements, if prescribed under this section, would be appropriate for all local authorities, or for any particular description of local authority, to consider.	(6) 그 조건은 (a) 제안된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구성 및 기능배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b) 능률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c) 만약 이 Section에서 미리 준비된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7) A proposal under subsection (5)—(a) must describe the provision which the authority considers should be made under subsection (2) in relation to the proposed arrangements, and (b) explain why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6) are met in relation to the proposed arrangements	(7) (5)에서 제시된 제안(proposal)은 (a) 제안된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b) (6)의 조건이 충족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1. (1) The executive of a local authority must take form specified in subsections (2) to (5) that is applicable to the authority	11. (1) 영국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의 집행부(executive)는 (2)~(5)로 제시된 형태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원문	번역
<p>(2) In the case of any local authority in England or Wales, the executive may consist of—(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elected mayor.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p> <p>(2A) In the case of any local authority in England, the executive may consist of (a) a councillo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executive leader) elected as leader of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and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executive leader.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England).</p>	<p>(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a) 선출직 시장과 (b) 선출직 시장에 의해 지명된 2명 이상의 의원(councillors)으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집행부는 시장(mayer) 및 내각(cabinet executive)을 말한다.</p> <p>(2A)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집행부는 (a) 지방자치단체(the authority)에 의해 리더(leader)로 선출된 한 명의 지방위원(리더(executive leader)이라고 부른다)과 (b) 리더에 의해 지명 받은 2명 이상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집행부는 '리더-내각(leader and cabinet executive(잉글랜드))' Part에 따른다.</p>
<p>(3) In the case of any local authority in Wales, the executive may consist of (a) a councillo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executive leader) elected as leader of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and (b) two or more councillors of the authority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one of the following— (i) the executive leader, or (ii)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Wales).</p>	<p>(3) 웨일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집행부는 (a)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리더로 선출된 지방의원과 (b) 리더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부터 내각으로 지명된 2명 이상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집행부는 '리더-내각(leader and cabinet executive(웨일즈))' Part에 따른다.</p>
<p>(4) In the case of any local authority in Wales, the executive may consist of— (a) an elected mayor of the authority, and (b) an officer of the authority (referred to in this Part as the council manager)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authority. Such an executive is referred to in this Part as a 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p>	<p>(4) 웨일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집행부는 (a)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시장과 (b)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집행부로 지명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료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집행부는 '시장과 수석행정관(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 파트에 따른다.</p>
<p>(5) In the case of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or Wales, the executive may take any such form as may be prescribed in regulations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p>	<p>(5) 잉글랜드나 웨일즈의 지방정부에서 집행부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서 기술된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p>

원문	번역
<p>(6) Regulations under subsection (5) may, in particular, provide for— (a) a form of executive some or all of the members of which are elected by the local government electors for the authority’s area to a specified post in the executive associated with the discharge of particular functions, (b) a form of executive some or all of the members of which are elected by those electors but not to any such post, (c) the system of voting that will be used for elections under paragraph (a) or (b).</p>	<p>(6) (5)의 규정은 (a) 특정한 직무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직위에 대해 지방정부 선거인단(local government elector)에 의해 선출되는 집행부의 구성(form), (b)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지만, 특정한 직위가 지정되지 않은 채 구성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구성(form), © (a) 또는 (b)의 선거에 활용되는 투표제도 등을 말한다.</p>
<p>(7) A local authority executive may not include the chairman or vice-chairman of the authority.</p>	<p>(7)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의장(chairman) 또는 부의장(vice-chairman)이 아니다.</p>
<p>(8) The number of members of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or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may not exceed 10.</p>	<p>(8) 시장과 내각, 리더와 내각은 최대 10명을 넘지 않는다.</p>
<p>(9)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regulations [F9specify] a different maximum number of members of an executive to which [F10subsection (8)] applies, but the power under this subsection may not be exercised [F11in relation to Wales] so as to provide for a maximum number which exceeds 10.</p>	<p>(9) 국무장관은 (8)의 규정과 다른 집행부의 구성원 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하의 조항에는 10명을 초과하는 상한을 적용할 수 없다.</p>
<p>(9A) In this Part, a reference to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is a reference to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s appropriate in the context— (a)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England); (b)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Wales). (10) Section 101 of the M1Local Government Act 1972 (arrangements for discharge of functions by local authorities) does not apply to the function of electing a leader under [F13subsection (2A)(a) or (3)(a)] or appointing councillors [F14or an officer]to the executive under subsection (3)(b)(ii) [F15or (4)(b)].</p>	<p>(9A) 본 부에서, 리더와 내각에 대한 언급은 문맥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대한 언급이다. — (a) 리더 및 내각(영국); (b) 리더 및 내각(웨일즈) (10) 지방정부법 1972의 section 101은 F13의 (2A)(a) 또는 (3)(a)에 의해 선출된 리더나 F14 또는 수석행정관 등 집행부로 지정된 지방의원에게는 이하의 (3)(b)(ii) [F15 또는 (4)(b)]가 적용되지 않는다.</p>

* 출처: Local Government Act 2000(Localism Act 2011 Part 1A 제정 내용의 반영 개정본)

2)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 영국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

○ 기관구성의 형태 변경 절차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찬성 결과(yes vote)를 얻어야 함(Local Government Act 2000, section 26)
-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표 3-4〉 참고)
- Local Government Act 2000에서는 본래 시장(mayor) 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투표만을 규정하였으며, 이때 전체 유권자의 5% 이상의 청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Localism Act 2011에서는 청원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 집행부 구성 변경 유형을 리더-내각과 위원회로 확대함(the Local Authority Regulation Part 2 Section 4; UK Parliament, 2019.2. “Directly-elected mayors”)
- Localism Act 2011에서는 주민투표로 변경된 기관구성을 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UK Parliament, 2019.2. “Directly-elected mayors”)
- 주민투표를 통해 변경된 기관구성은 주민투표에 의해서만 재변경할 수 있음. 한 번 변경이 이루어지면 10년 이내에는 재변경을 위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함(Localism Act 2011, schedule 2 9MF)
- 기관구성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의결로 기관구성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초 의결이 이루어지고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함(Localism Act 2011, schedule 2 9KC). 단,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기관구성 변경을 주민투표로 재변경하는 데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함(Localism Act 2011, schedule 2 9KC)

□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 <표 3-4> ~ <표 3-5>는 기관구성 형태변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술한 것임
 - 이 중 <표 3-4>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의 내용은 Local Government Act 33 이하에 반영됨
 - 또한 <표 3-5>는 Localism Act 2011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Local Government Act에 반영된 내용임

<표 3-4>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1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원문	번역
Part 2.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executives etc.	Part 2. 집행부 구성 기타
Procedure with respect to operation of executive arrangements	집행부 구성의 운영 절차
26. Proposals not requiring referendum. (1) Where a local authority's proposals under section 25 do not involve a form of executive for which a referendum is required, the authority must implement the proposals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included in the proposals. (2) Any reference in this Part to a form of executive for which a referendum is required is a reference to— (a)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F1or] (b) [F2a mayor and council manager executive, or] (c) a form of executive prescribed in regulations under section 11(5) which is expressed in those regulations to be a form of executive for which a referendum is required.	26.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제안 (1) section 25 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가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형태의 집행부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는 제안서에 포함된 계획표에 따라 제안서를 집행해야 한다. (2) 이 파트에서 주민투표가 요구되는 집행부 형태에 대한 참조는 다음에 대한 참조가 된다. (a) 시장과 내각형, (b) 시장과 의회 관리자 (삭제됨), (c) 주민투표가 필요한 집행부 형태로 표현된 section 11(5) 하의 규정에 명시된 집행부 형태
Part 3. Executive Arrangements for England	Part 3. 집행부 구성(잉글랜드)
64. Changing governance arrangements	64. 통치구조 변화
33A Executive arrangements: different form of executive	33A. 집행부 구성: 집행부구성 다양성 집행부로 운영되는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는 매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원문	번역
<p>-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which is operating executive arrangements may—(a) vary the arrangements so that they provide for a different form of executive, and (b) if it makes such a variation, vary the arrangements in such other respects (if any) as it considers appropriate.</p>	<p>우 다양해서 (a) 집행부의 구성형태가 다양하다. (b) 만약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p>
<p>33B Executive arrangements: other variation of arrangements</p> <p>-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which is operating executive arrangements may vary the arrangements so that they—(a) differ from the existing arrangements in any respect, but (b) still provide for the same form of executive.</p>	<p>33B. 집행부 구성: 다른 형태의 구성 집행부로 운영되는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다양해서, (a) 기존의 구성형태와 다르더라도 (b)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집행부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p>
<p>33C Alternative arrangements: move to executive arrangements</p> <p>-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which is operating alternative arrangements may—(a) cease to operate alternative arrangements, and (b) start to operate executive arrangements.</p>	<p>33C. 대안적 구성: 집행부구성 방식에서의 변화 대안적 구성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는 (a) 대안적 구성을 중단하고, (b) 집행부 구성 방식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p>
<p>33D Alternative arrangements: variation of arrangements</p> <p>-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which is operating alternative arrangements may vary the arrangements so that they differ from the existing arrangements in any respect.</p>	<p>33D. 대안적 구성: 구성의 다양성 대안적 구성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구성방식과 다를 수 있다.</p>
<p>33E Proposals by local authority</p> <p>(1) This section applies to a local authority which wishes to make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p> <p>(2) The local authority must draw up proposals for the change.</p> <p>(3) The proposals must include—(a) a timetable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als, and (b) details of any transitional arrangement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als.</p> <p>(4) The following subsections apply if the</p>	<p>33E. 지방자치단체의 제안(proposals)</p> <p>(1) 이 섹션은 통치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p> <p>(2)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에 대한 제안서(proposals)를 작성하여야 한다.</p> <p>(3) 제안서는 (a) 제안서 집행을 위한 타임테이블과 (b) 집행에 필요한 과도기 시간동안의 집행부 구성에 관한 상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4) 만약 제안된 변화가 33A나 C와 같다면 이하의 조항을 적용한다.</p> <p>(5) 통치구조 변화를 위한 제안서는 주민투표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p>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원문	번역
<p>proposed change is of the kind set out in— (a) section 33A (different form of executive), or (b) section 33C (move to executive arrangements).</p> <p>(5) The proposals may provide for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to be subject to approval in a referendum.</p> <p>(6) Before drawing up its proposals, the local authority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consult the local government electors for,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n, the authority's area.</p> <p>(7) In drawing up the proposals, the local authority must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proposals, if implemented, would be likely to assist in securing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way in which the local authority's functions are exercised, having regard to a combination of econom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p> <p>(8) After drawing up the proposals, the local authority must—(a) secure that copies of a document setting out the proposals are available at their principal office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public at all reasonable times, and (b) publish in one or more newspapers circulating in its area a notice which—(i) states that the authority has drawn up the proposals, (ii) describes the main features of the proposals, (iii) states that copies of a document setting out the proposals are available at their principal office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public at such tim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notice, and (iv) specifies the address of their principal office.</p>	<p>(6) 제안서 작성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상의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7)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효율·효과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증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p> <p>(8) 제안서 작성 후, 지방자치단체는 (a) 제안서의 사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중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b) 1개 이상의 지역신문에 (i) 자치단체의 제안서 제출사실, (ii) 제안서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 (iii) 제안서 사본에 대한 대중의 검토가능성에 대한 설명, (iv) 구체적인 책임 기관의 주소 등을 기술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33F Resolution of local authority</p> <p>(1) A resolution of a local authority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authority to make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p> <p>(2) Section 29(2) applies to a resolution under this section as it applied to a resolution to operate executive arrangements.</p>	<p>33F. 지방자치단체의 의결</p> <p>(1)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이 필요하다.</p> <p>(2) 이 섹션에서 섹션 29(2)는 집행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의결의 방법으로 적용된다.</p>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원문	번역
<p>33G Implementation: new executive or move to executive arrangements</p> <p>(1) This section applies if a local authority passes a resolution which makes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of the kind set out in— (a) section 33A (new form of executive), or (b) section 33C (move to executive arrangements).</p> <p>(2) On the third day after the relevant elections, the local authority must—(a) cease operating the old form of executive, or the alternative arrangements, and (b) start operating the form of executive which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provides for.</p> <p>(3) Subject to subsection (2), the local authority must implement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in the proposals.</p> <p>(4) In this section “relevant elections” means, if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provides for the local authority to operate—(a) 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England): the appropriate elections of councillors; (b)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the first election of the mayor.</p> <p>(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a), the “appropriate elections of councillors” are the election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whichever of the following paragraphs is applicable—(a) if the local authority is currently operating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the “appropriate elections of councillors” are the ordinary elections of councillors of the local authority held on the day on which the next ordinary election of a mayor was expected to be held when the resolution to make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was passed; (b) if the local authority—(i) is not currently operating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and (ii) is required to pass the resolution to make the change in governance</p>	<p>33G. 집행: 새로운 집행부</p> <p>(1) 이 섹션은 지방자치단체가 33A 또는 33C에 해당되는 거버넌스 구성으로의 변화를 의결하였을 경우 적용된다.</p> <p>(2) 관련 선거 이후 3일 뒤, 지방자치단체는 (a) 기존의 집행부 형태를 폐기하고, (b) 새로운 형태의 집행부를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한다.</p> <p>(3) (2)를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거버넌스 구성 변경을 집행하여야 한다.</p> <p>(4) 여기서 ‘관련 선거(relevant election)’란, 지방자치단체 통치구조 변화를 위한 (a) 리더와 내각(잉글랜드): 지방의원선거, (b) 시장-내각: 첫 시장선거를 말한다.</p> <p>(5) (4)(a)의 목적 상 ‘적절한 지방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p> <p>(a)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장-내각으로 운영된다면, 적절한 지방의원 선거는 통치구조 변화를 위한 의결이 되었을 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의 보통선거이다. (b) 지방자치단체가 (i) 현재 시장-내각을 운영하지 않고, (ii) 규정된 의결기간 동안 통치구조의 변화에 관한 의결을 통과시켜야 할 경우, 적절한 지방의원의 선거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열리는 첫 번째 선거이다.</p>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	
원문	번역
<p>arrangements during a permitted resolution period, the “appropriate elections of councillors” are the first ordinary elections of councillors of the local authority to be held after the end of the permitted resolution period in which the resolution is passed; (c) if the local authority—(i) is not currently operating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and (ii) is not required to pass the resolution to make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during a permitted resolution period, the “appropriate elections of councillors” are the first ordinary elections of councillors of the local authority to be held after the resolution is passed.</p>	
<p>33H Implementation: other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1) This section applies if a local authority passes a resolution which makes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of the kind set out in—(a) section 33B (variation of executive arrangements), or (b) section 33D (variation of alternative arrangements). (2) The local authority must implement the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timetable in the proposals.</p>	<p>33H. 집행: 통치구조의 기타 변화 (1) 이 섹션은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33B와 33D와 같은 방식의 통치구조변화를 위한 의결을 통과시킬 때에도 적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통치구조 변화를 집행한다.</p>
<p>33I General (1) Except as provided for in sections 33A to 33D or in regulations under section 34, 35 or 36, a local authority which is operating executive arrangements or alternative arrangements may not vary, or cease to operate, those arrangements. (2) In making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the local authority must comply with any directions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connection with the making of such a change. (3) Sections 33J to 33N contain further requirements which, in certain cases, apply to proposals or resolutions.</p>	<p>33I 일반 (1) 집행부 구성 또는 대안적 구성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3A~D, 34~3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구성방식을 변경하거나 운영중단을 할 수 없다. (2) 통치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국무장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3J~ N은 특정한 제안이나 의결에 적용되는 추가적 요구사항을 포함한다.</p>

* 출처: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2007(Local Government Act 2000 section 33 다음에 본 규정이 추가)

〈표 3-5〉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2

Local Government Act 2000(Localism 2011 반영본)	
원문	번역
Part 1A. Arrangements with respect to local authority governance in England	Part 1A.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통치구조
Chapter 4. Changing governance arrangements	Chapter 4. 통치구조 변경
<p>9KC Resolution of local authority</p> <p>(1) A resolution of a local authority is required in order for the authority to make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p> <p>(2)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passing such a resolution a local authority must—(a) secure that copies of a document setting out the provisions of the arrangements that are to have effect following the resolution are available at its principal office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public, and (b) publish in one or more newspapers circulating in its area a notice which—(i) states that the authority has resolved to make a change in its governance arrangements, (ii) states the date on which the change is to have effect, (iii) describes the main features of the change, (iv) states that copies of a document setting out the provisions of the arrangements that are to have effect following the resolution are available at the authority's principal office for inspection by members of the public, and (v) specifies the address of the authority's principal office.</p> <p>(3) Subsection (4) applies if a local authority passes a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Resolution A") which makes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of the kind set out in—(a) section 9K (change from one form of governance to another), or (b) section 9KA (change to a different form of executive).</p> <p>(4) The local authority may not pass another resolution that makes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of a kind mentioned in subsection (3) ("Resolution B")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5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Resolution A is passed, unless Resolution B is approved in a referendum held in accordance with this Chapter.</p>	<p>9KC 지방자치단체의 결의</p> <p>(1)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이 필요하다.</p> <p>(2) 결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는 (a) 결의안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결의안 사본을 당국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b) 또한 1개 이상의 신문사에 (i) 해당 당국이 통치 기관에 변경을 하는 결의를 했음을 진술하고, (ii) 그 변경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명시하고, (iii) 변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v) 결의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서류의 사본이 대중 구성원들에게 검사될 수 있도록 주 사무소에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v) 주 사무소의 주소를 명시하여 고지를 해야 한다. (3) 하위절 (4)는 지방자치단체가 본 절에 따라 —(a) 9K절 (하나의 통치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의 변경), 또는 (b) 9KA절의 (다른 행정 형식으로의 변경)에 명시된 종류의 통치 기관에 변경을 하는 결의("결의 A")를 통과 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본 장에 따라 개최되는 국민 투표에서 결의 B가 승인되지 않는 한, 하위절 (3) ("결의 B")에 언급된 종류의 통치 기관에 변경을 가하는 다른 결의를 결의 A가 통과된 날부터 시작하여 5년 이 끝나기 전에 통과할 수 없다.</p> <p>(5) 본 절은 9N 절 (시장과 내각 행정에 변경을 하는 주민투표를 요하고, 이를 유효하게 하는 명령에 의한 권력)에 따른 명령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통치 구조의 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Local Government Act 2000(Localism 2011 반영본)	
원문	번역
<p>(5)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effected by an order under section 9N (power by order to require, and give effect to, referendum on change to mayor and cabinet executive).]</p>	
<p>9MF Further provision with respect to referendums</p> <p>(1) If a local authority holds a referendum under this Chapter (“Referendum A”) it may not hold, or be required to hold, another referendum under this Chapter (“Referendum B”) within the period of ten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Referendum A, unless subsection (2) or (3) applies.</p> <p>(2) This subsection applies if— (a) Referendum A was held by the authority by virtue of an order under section 9N (power by order to require, and give effect to, referendum on change to mayor and cabinet executive), and (b) the proposal for the authority to operate 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was rejected in Referendum A.</p> <p>(3) This subsection applies if Referendum B is required to be held by virtue of an order made under section 9N.</p> <p>(4) If the result of a referendum held by virtue of regulations, an order or a direction made under any provision of this Chapter is to approve the proposals to which the referendum relates, the local authority concerned must implement those proposals.</p> <p>(5) If the result of a referendum held by virtue of regulations, an order or a direction made under any provision of this Chapter is to reject the proposals to which the referendum relates, the local authority concerned may not implement those proposals.</p> <p>(6) Subsections (4) and (5) do not apply to a referendum held by virtue of section 9N (but see section 9N(2)(c)).</p>	<p>9MF 주민투표에 대한 추가 조항</p> <p>(1) 지방자치단체가 본 장에 따른 주민투표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투표 A”) 하위절 (2) 또는 (3) 가 적용되지 않는 한, 주민투표 A 개최일에서 시작해서 십 년 내에 본 장에 따른 다른 주민투표 (“주민투표 B”)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p> <p>(2) 본 하위절은 —(a) 주민투표 A가 9N 절(시장과 내각 행정에 변경을 하는 주민투표를 요하고, 이를 유효하게 하는 명령에 의한 권력)에 따른 명령으로 당국에 의해 개최되고 (b) 당국이 시장 및 내각 행정을 운영하라는 제안이 주민투표A에서 거절된 경우에 적용된다.</p> <p>(3) 본 하위절은 주민투표 B가 9N절에 따라 주어진 명령으로 개최될 것이 요청되는 경우에 적용된다.</p> <p>(4) 규정에 의해 열린 주민투표의 결과,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 혹은 지시가 주민투표과 관련된 제안을 승인하는 것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안을 실행해야 한다.</p> <p>(5) 규정에 의해 열린 국민 투표의 결과,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명령 혹은 지시가 주민투표과 관련된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안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p> <p>(6) 하위절 (4) 및 (5) 는 9N 절에 의해 개최되는 주민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9N(2)(c)절을 볼 것).</p>

* 출처: Local Government Act 2000 section 9KC & 9MF

3.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현황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1)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현황

-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는 <표 3-6>과 같이 시장-내각형(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리더-내각형(a leader and cabinet executive), 위원회형(the committee system), 그리고 장관(Secretary of State)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으로 구분됨
- 그 중 전통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리더-내각(a leader and cabinet) 방식이 가장 많음(전체의 약 80.1%)
 - <표 3-6>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내각(a mayor and cabinet executive) 유형이 여전히 가장 적고(전체의 약 4.5%, 16개 지역), 시장-내각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53건의 주민투표 중 37개는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됨(위키피디아, 검색어: England and Wales mayoral referendums, 검색일: 2019.05.31.)¹²⁾
 - 예를 들어 Local Government Act 2000에 의거, 선출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음. Stoke-on-Trent가 2009년, Hartlepool이 2013년 직선시장제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Torbay가 직선시장을 폐지할 예정임(위키피디아, 검색어: England and Wales mayoral referendums, 검색일: 2019.05.31.)
 - 직선시장을 폐지하는 절차는 도입하는 절차와 동일하며,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모두로 가능함. 예를 들어 레스터(Leicester)와 리버풀(Liverpool)은 투표 없이 시장제도를 도입하였음(위키피디아, 검색어: England and Wales mayoral referendums, 검색일: 2019.05.31.)

12) 영국에서는 여전히 시장직선방식으로의 전환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의한 권한집중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 봉건제도로의 회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BBC, 2004.05.21. http://news.bbc.co.uk/2/hi/uk_news/wales/3732381.stm)

- 시장-내각방식에서의 전환 사유는 인구규모 등과 직접적 관련성은 낮으나, 비대도시의 카운티 지역(2층제 중 광역)에서는 도입된 바 없음

〈표 3-6〉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구성유형별 분포

자치단체 유형		총 빈도	지방자치단체 구성유형				인구규모 (평균)
			시장- 내각	리더- 내각	위원회	기타	
2 tier	County councils	27	-				822,581
	District councils	201	3				110,498
Single tier	Unitary authorities	55	5				229,815
	Metropolitan districts	36	4	-	-		331,742
	London boroughs	32	4				275,534
	City of London	1	-			1	7,700
	Isles of Scilly	1	-			1	2,300
합계		353	16	<u>283</u>	<u>52</u>	<u>2</u>	

* 자료: 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200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UK Parliament, 2019.

* 주: 리더-내각, 위원회 유형의 경우 세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포가 집계된 바 없음

2) 분석대상지역 선정

- 위 현황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의 경우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1개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 단, 4유형(기타)의 경우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지역별 운영의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분석의 결과를 모든 영국 지방자치단체로 일반화할 경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각 유형별 분석 대상지역은 국내 시·군 평균인구(시 308천명, 군 55천명, 최진혁, 2012)와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인구수(〈표 3-6〉)를 고려하여 자료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함
 - 인구의 규모와 기관구성 유형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어, 다양한 인구규모의 지역을 선정하였을 뿐 특정 기관구성 유형이 특정 규모의 인구 등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힘
- 분석대상지역
 - 시장-내각형: Watford(비대도시권 디스트릭트, 인구 약 9만명)
 - 리더-내각형: Manchester(대도시권 디스트릭트, 인구 약 51만명)
 - 위원회형: Brighton and hove(단일통합기관, 인구 약 23만명)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1. 시장-내각형: 왓포드(Watford Borough)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 역사적 배경

- 왓포드는 잉글랜드 동부(east of England) 하트퍼드셔(Hertfordshire)에 위치한 도시로 2층제 지방자치 구조를 한 비대도시의 디스트릭트(non-metropolitan district)로 분류됨
- 인구 96,800명의 소규모 도시¹³⁾로 2001년 6월 12일 주민투표를 통해 시장직선제(총 투표수 14,776명, 투표율 24.5%, 시장직선제 선호 51.7%, 내각시스템 선호 48.3%)로 전환함(House of Common Library, 2002). 이로서 런던 외곽에서 시장직선제로 전환한 첫 번째 도시가 됨¹⁴⁾
 - (전환의 이유) 선출직 시장은 주민이 직접 한명의 개인을 시장으로서 선출한 것이므로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 지는 것임(Watfordobserver, 2018). 즉, 선출직 시장은 의회(council)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place)의 지도자로, 선거과정에서 비전과 정책을 시민으로부터 검증받고, 선거결과를 기반삼아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주요 파트너십을 맺는 권한이 있으며, 하나의 비전 아래 사람과 조직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기존에 의회에서 선출한 시장과 차별화됨(Watfordobserver, 2018)

13) 3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52위의 인구규모를 가지며, 영국 내 도시의 일반적 규모가 약 10만~30만 사이라고 볼 때, 비교적 소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14) 당시 Alan Clarke(Watford Council's chief executive)는 “이 주민투표 결과는 영국 지방정부 혁명의 시작의 신호탄이다(The referendum result heralds the start of a revolution in local government in Britain).” 라고 말함(Watfordobserv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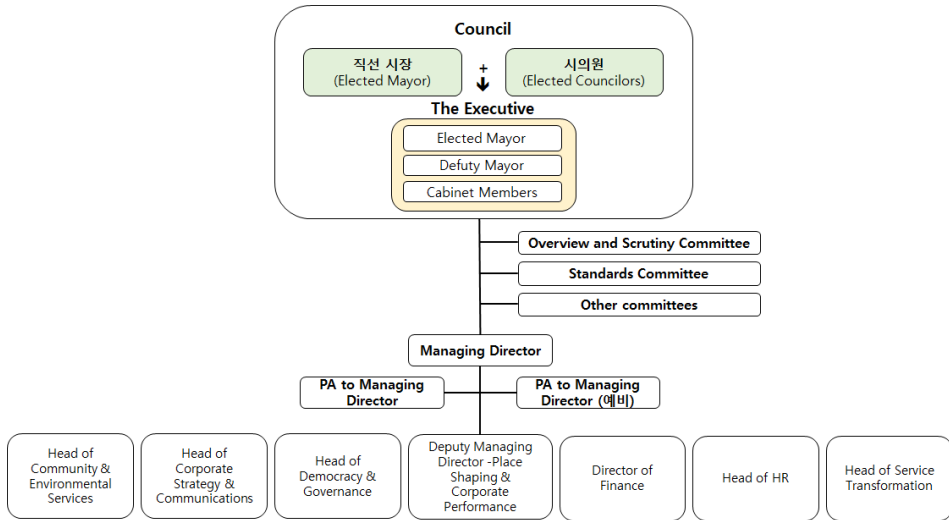
- 2002년 5월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면서 시장-내각형으로 전환되었음 (1라운드 49.4%, 결선투표 결과 71.9%)
- Dorothy Thornhill은 2002년 5월 최초로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고, 이후 2006년 5월(총 투표자의 51.2%)과 2010년 5월(1라운드: 총 투표자의 45.9%, 결선투표 결과 67.1%), 2014년 5월(1라운드: 총 투표자의 45.9%, 결선투표 결과 65.4%)까지 총 4차례 연임한 시장으로, 영국 최초의 직접 선출 여성시장이자 자민당 최초의 선출직 시장이었음. 이후 그녀가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료 자유민주당 소속 Peter Colin Taylor가 2018년 시장으로 선출되었음(위키피디아, 검색어: Watford borough, mayor of Watford, 검색일: 2019.03.25.)

□ 기관구성 체계도

- 왓포드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3-1>와 같으며, 시장-내각형에 해당됨
- 왓포드 의회(Council)의 기관구성은 선출직 시장(mayor)과 선출직 시의원(councilors)(2019년 현재 총 36명: 자민당 26명, 노동당 10명)으로 구성됨
 - 시장과 시장이 지명한 일정 수의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총회(full council)의 동의를 거쳐 내각(the executive)을 구성함
 - 의회총회(full council)에서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 Managing Director)을 선정함(7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
 - 내각은 의회(Council) 운영 관련 의결기능을 한다면, 집행기능은 전문 관료가 수행함. 내각회의(executive meeting) 시 내각과 시장, 사안에 따라 필요시 고위공무원단(Council officers)이 참석함
 - 본래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를 차지한 기관구성 형태인 리더-내각형에서 리더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그 명칭을 시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세부적 내용은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세션에서 설명함

〈그림 3-2〉 Watford의 기관구성 체계도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 직선 시장(direct elected mayor) 선임방식 및 역할

○ 직선 시장 선임방식

- 직선 시장은 지역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며, 4년을 임기로 하며, 선거 후 4일 이내에 취임하고 후임자 선출 후 4일이 될 때 까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a) & 2.04)
- 시장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b))

- 직선 시장 해임방식: 영국 의회의 하원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도입(2015)된 바 있으나, 다른 지방선출직 의원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도입되지 않음(Local Government Act 1972 section 80)

○ 직선 시장의 기능 및 역할

- 대중에 대한 의회의 주요 대변인, 의회에 전반적인 정치적 방향 제시, 내각과 부시장 임명, 집행부 기능의 위임에 대한 규칙 결정, 집행부 회의의 의장, 시장이 결정하는 외부 기관에 대하여 의회의 대표자 역할 수행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3(a))
 - 집행부¹⁵⁾에 의무가 귀속되는 기능들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시장의 결정에 의해 위임될 수 있음(Executive procedure rules 1.1). 이 경우 의회의 위임 규칙을 준수해야 함(Executive procedure rules 1.4)
 - 시장은 집행부의 기능과 관련하여 직무 그룹(Working groups)을 임명할 수 있음(Executive procedure rules 1.1). 직무 그룹을 설립할 때는 위임사항과 그룹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그룹의 활동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음(Executive procedure rules 1.1).
- * 직무그룹(Working groups): 일종의 자문기구로, 문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집행부 사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내각 구성원은 물론 내각에 의원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Executive procedure rules 1.1)

〈표 3-7〉 시장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 <u>Composition and Eligibility</u> a) <u>Composition</u> The Council will comprise 36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and the Mayor. Three Members will b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in accordance with a scheme drawn up by the Local Government Commission and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Mayor will be elected in</p>	<p><기관 구성 조항들> 2.0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지방의회(council)는 36명의 구성원(member, 이들을 의원(councillors)이라고 한다)과 시장(mayor)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의 의원(councillors)은 지방정부위원회 (commission)가 작성하고 국무장관이 승인한 스키마에 따라 각 지역구(Ward)의 유권자(voters)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은 2.04조의 조항에 따라 선출된다.</p>

15) 집행부는 시장 및 내각 구성원(cabinet members)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위원회와 직무그룹 등 내각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구성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원문	번역
<p>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4.</p> <p><u>b) Eligibility</u></p> <p>Only registered voters of the Borough or those living or working there will be eligible to hold the office of Councillor or Mayor.</p>	<p>b) 적격</p> <p>오직 자치구(Borough) 등록 유권자 또는 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만이 의원 또는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p> <p>2.04 <u>Election of the Mayor</u></p> <p>The term of office for the Mayor will be 4 years. He/she will take office on the 4th day after his/her election, and will continue in office until the 4th day after his/her successor is elected, unless he/she ceases to be the Mayor.</p>	<p><기관 구성 조항들></p> <p>2.04 시장 선거</p> <p>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시장은 자신의 선거 후 4일째에 취임하고 후임자가 선출된 후 4일이 될 때까지 계속 시장직을 수행 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p> <p>7.03 <u>The Mayor</u></p> <p>a) <u>Roles and Functions</u></p> <p>The Mayor will among other things carry out the following roles:</p> <p>i) To be the Council's principal public spokesperson</p> <p>ii) To give overall political direction to the Council</p> <p>iii) To appoint the Executive and Deputy Mayor</p> <p>iv) To decide on the scheme of delegation for Executive functions</p> <p>v) To chair meetings of the Executive</p> <p>vi) To represent the Council on such external bodies as the Mayor decides</p> <p>vii) To have right of first refusal of attending a civic event</p>	<p><기관 구성 조항들></p> <p>7.03 시장</p> <p>a) 역할 및 기능</p> <p>시장은 다음 역할들을 수행한다:</p> <p>i) 의회의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p> <p>ii) 의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방향제시</p> <p>iii) 내각 및 부시장 지명</p> <p>iv) 집행부 기능에 대한 위임계획 결정</p> <p>v) 내각 회의의 의장</p> <p>vi)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해 결정(시장의 결정)</p> <p>vii) 시민행사 참석 시 첫 번째 거부권 보유</p>
<p><Executive procedure rules></p> <p>1.1 <u>Who May Make Executive Decisions?</u></p> <p>Functions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may be exercised by the Mayor. The Mayor may also delegate authority to exercise those functions to the extent he/she wishes as detailed below:</p> <p>i) to the Executive as a whole</p>	<p><행정 절차 규칙></p> <p>1.1 누가 내각을 결정하는가?</p> <p>내각의 책임성 확보 기능은 시장이 행사한다. 시장은 또한 아래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i) 전체 내각</p> <p>ii) 내각의 위원회</p> <p>iii) 내각의 개별 구성원</p>

원문	번역
<p>ii) to a committee of the Executive iii) to an individual member of the Executive iv) to an Officer v) to a Neighbourhood Forum vi) to joint arrangements vii) to another Local Authority</p> <p>The Mayor may also appoint working groups of Members, including members not on the Executive to advise the Executive on any matter for which the Executive has responsibility. When establishing a working group the Mayor will specify its Terms of Reference and the number of group members. The Mayor will also indicate a time frame for it to operate. The Mayor will consult Group Leaders on the membership of the working groups.</p>	<p>iv) 특정 공무원 v) 이웃포럼 vi) 공동준비 vii) 기타 지방당국</p> <p>시장은 내각이 아닌 모든 의원을 포함한 시장은 모든 의원을 포함한 내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언하는 워킹그룹으로 임명할 수 있다. 워킹그룹이 구성될 때, 시장은 기준과 그룹 구성원의 수 등을 정하게 된다. 시장은 운영기간을 정해 알린다. 시장은 워킹그룹 멤버십에 대해 그룹 리더와 상의한다.</p>
<p><Executive procedure rules> 1.4 The Council’s Scheme of Delegation and Executive Functions</p> <p>The Council’s scheme of delegation will be adopted by the Council at its annual meeting. It will contain the details required in Article 7 and set out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During the year, amendments to the Scheme of Delegation in relation to Executive functions may be effected as follows:</p> <p>a) The Mayor may amend the scheme of delegation of Executive functions at any time during the year [subject to the proviso in paragraph 1.1 above]. To do so, the Mayor must give written notice to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 and report these changes to the next ordinary Council meeting. Where the Mayor wants to withdraw or amend delegation to a committee, notice will be served on that Committee when it has been served on its Chair.</p> <p>b) The notice to the Head of Democracy and</p>	<p><행정 절차 규칙> 1.4. 의회의 위임 및 집행기능 계획</p> <p>의회의 위임계획은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채택된다. 위임계획은 Article 7에 규정된 세부사항이 포함되며, 기관구성에 대한 Part 3에 명시되어 있다. 1년간 내각의 기능에 대한 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p> <p>a) 시장은 1년간 언제든지 내각기능 위임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위 1.1항의 단서를 조건으로 함] 이를 위해 시장은 서면으로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DG)에게 통보하고, 그 변경사항을 다음 평의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이 위원회에게 위임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원할 경우, 해당 위원회 의장에게 이를 알린다.</p> <p>b)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DG)에 대한 통보는 이 기관구성에 대한 Part 3에 규정된 위임개정사항을 명시하고, 위임을 철회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DG)에 대한 통지 시행 시 효력이 발생된다</p>

원문	번역
<p>Governance must set out the amendment to the scheme of delegation as contained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and whether it entails the withdrawal of delegation from any person, body, Committee, or the Executive as a whole. The amendment will take effect on service of the notice by the Mayor on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p>	

* 자료: Watford Borough Council'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Executive procedure rules

□ 지방의회(council)와 시의원(councillors) 선임방식 및 역할

- 왓포드의 지방의회(council)는 총 36명의 시의원(members 혹은 councillors)과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의회는 조언을 제공하고,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관료(officers)를 둘 수 있음. 일부 관료는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하고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를 가짐(Summary and Explanation;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a))
 - 의회는 지역헌법에 명시된 의무/역할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음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1)
 - 의회 구성원으로서 시장은 다른 의원들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으며, 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함. 의회와 위원회 및 하위 위원회에 참석하고 발언권을 가지지만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의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언권을 가짐(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3(b))
- 의회총회(full council)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Articles of the Constitution 4.02)
 - 지역헌법(Local Authority Constitution)의 채택과 변경
 - 주택 토지 이전에 대한 장관에게의 신청, 그리고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승인 혹은 채택

- 정책프레임워크와 예산의 적용을 받는 집행부의 기능 중,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정책프레임워크에 위배되거나 예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
- 위원회의 권한, 구성, 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개정
- 외부 기관의 대표자 임명(임명이 집행부의 기능이거나 의회로부터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 보수체계의 채택
- 지역 명칭 변경, Honorary Alderman 및 Freedom of the Borough 칭호 부여
- 유료 서비스 부서장(Head of Paid Service)의 임명 동의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채택 및 지역 입법(local legislation of personal bills)의 찬성 혹은 반대
- 지역헌법에 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모든 선택 기능
-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의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시의원(councilors) 선임방식

- 시의원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b))
- 각 선거구별로 3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선거는 지방정부 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제도에 따라 이루어짐(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a))
- 전체 의원 중 1/3에 대한 선거가 2002년부터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2005년과 이후 4년 간격으로는 정기선거가 없음(ex, 2009, 2013년은 선거가 없음). 각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당선 후 넷째 날부터 다음선거 후 넷째 날까지임(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2)

○ 시의원(councilors) 해임방식: 영국 의회의 하원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도입(2015)된 바 있으나, 다른 지방선출직 의원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도입되지 않음(Local Government Act 1972 section 80)

- 지방의회(council) 구성원으로서 시의원(councilors) 및 시장의 역할¹⁶⁾
 - 총괄적으로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함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함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을 함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함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할 수 있음
 - 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참여함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함

〈표 3-8〉 지방의회 및 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Summary and Explanation〉 <u>The Council's Staff</u> The Council has people working for it (called "Officers") to give advice, implement decisions and manage the day to day delivery of its services. Some Officers have a specific duty to ensure that the Council acts within the law and uses its resources wisely. A Code of Practice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ouncil, including the Mayor.</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 <u>Management Structure</u> a) General The full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p>	<p>〈요약 및 설명〉 의회의 직원 의회의 직원 의회는 자문 및 집행, 일상서비스 관리를 위해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일부 공무원(officer, 간부급)은 의회 활동이 법률 범위 내에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할 특정한 의무가 있다. 실천규칙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구성원(시장포함) 간 관계를 규율한다. 〈기관 구성 조항들〉 12.01 관리 구조 a) 일반 의회총회(full council)는 그 직무를 수행할공무원(간부급) 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p>

16) 시장도 지방의회 구성원이므로 이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동일함, 다만 의원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데 반해 시장은 시 전체를 대표한다는 차이가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3(a))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1 The Council will appoint the Committees set out in the left-hand column of the Table Responsibility for Council Functions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to discharge the functions described in column 3 of that Table.</p>	<p><기관 구성 조항들> 8.01. 지방의회는 Part 3의 의회기능의 책임성 표의 좌측 열에 위원회를 임명하여 표 3열에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3 <u>The Mayor</u> b) Mayor as Member of the Council The Mayor will be treated as a councillor unless the law or context requires otherwise. In particular the Mayor: i) is subject to the same rules about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as any other Councillor ii) must follow the rules about disclosure of interests and comply with the Councillors' Code of Conduct set out in Part 5 of this Constitution iii) may be a member of, attend and speak at any meeting of the Council, its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except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The Mayor may only speak at an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when invited to do so and may not vote at those meetings iv) if a member of a political group, wi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seat allocations on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of which he/she is a member if they have to reflect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the Council as a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 v) is subject to the Members' Remuneration Scheme set out in Part 6 of this Constitution vi) is subject to the same rules about casual vacancies as apply to all councillors</p>	<p><기관 구성 조항들> 7.03 시장 b) 시장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이나 맥락 상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의원으로서 다루어 진다. 특히 시장은: i) 시장은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자격 및 자격 박탈에 대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ii) 시장은 이익 공개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Par 5에 규정된 참사관 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iii) 시장은 위원회와 그 산하 위원회, 하부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해 말할 수 있으나 다만 감독 및 조사위원회(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초청된 경우에만 감독 및 조사 위원회(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iv) 만약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에 따라 정당비용을 고려해 배치하여야 한다. v) 시장은 Part 6에 명시된 의원 보수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vi) 모든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임기 중 공석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p>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4.02 Functions of the Full Council Only the Council will exercise the following functions:</p> <p>a) Adopting and changing the Constitution b) Approving or adopting the Policy Framework, the Budget and any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in respect of any Housing Land Transfer c) Subject to the urgency procedure contained in the Access to Information Procedure Rules in Part 4 of this Constitution, making decisions about any matter in the discharge of an Executive function which is covered by the Policy Framework or the Budget where the decision maker is minded to make it in a manner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Policy Framework or contrary to/not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d) Agreeing and/or amending the Terms of Reference for Committees, deciding on their composition, and making appointments to them. e) Appointing representatives to outside bodies, unless the appointment is an Executive function, or has been delegated by the Council f) Adopting a Remuneration Scheme under Article 2.06 g) Changing the name of the area,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Alderman or Freedom of the Borough h) Confirming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Paid Service i) Making, amending, revoking, re-enacting or adopting Bye-Laws and adoptive legislation and promoting or opposing the making of local legislation or personal bills j) All local choice functions set out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which the Council decides shall be undertaken by itself rather than the Executive k) All other matters which, by law, must be reserved to the Council</p>	<p><기관 구성 조항들> 4.02 전원 의회의 기능 의회만이 다음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p> <p>a) 헌법을 채택 및 변경 b) 정책 프레임워크와 예산 기타 거주지 이전에 대해 국무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채택 및 승인 c) 정책 골조나 예산으로 포괄되는 행정 기능 수행에 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자가 정책 골조에 반하는 방식으로 혹은 예산에 완전히 따르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Part 4에서 정보접근절차 규칙에 포함된 긴급절차에 따라 결정 d) 그 구성을 정하고, 그 선임을 하는 위원회의 참고 조건에 대한 동의 및/혹은 수정 e) 외부에 대한 대표 지명(단, 그 지명이 내각기능이나 위원회에 의한 위임 관련 내용이 아닐 경우) f) 2.06조에 따른 보수 체계를 채택 g) 지역명 변경(예를 들어 Honorary Alderman or Freedom of the Borough와 같은 이름) h) 유급 서비스의 장의 선임 확인 i) 조례와 채택 입법의 제정, 수정, 취소, 재제정 혹은 채택 및 지역 입법 혹은 개인적 안건의 홍보 혹은 반대 j) 의회가 결정하는 본 헌법 Part 3에 명시된 모든 지역 선택 기능은 행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되어야 한다. k) 법에 의해 의회에 유보되어야 하는 모든 다른 사안들</p>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 <u>Composition and Eligibility</u> a) Composition The Council will comprise 36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and the Mayor. Three Members will b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in accordance with a scheme drawn up by the Local Government Commission and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Mayor will be 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04. b) Eligibility Only registered voters of the Borough or those living or working there will be eligible to hold the office of Councillor or Mayor.</p>	<p>〈기관 구성 조항들〉 2.0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의회는 36명의 구성원(혹은 의원들이라 칭함)과 시장으로 이루어진다. 세 명의 구성원은 지역 정부 위원회가 작성하고 장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각 구의 투표자들에 의해 선출된다. 시장은 2.04조의 조항에 따라 선출된다. b) 자격 오직 자치구(Borough) 등록 유권자 또는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만이 의원 또는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2 <u>Election and Terms of Councillors</u> The ordinary election of a third (or as near as maybe) of all Councillors will be held on the first Thursday in May in each year beginning in 2002, except that in 2005 and every fourth year thereafter there will be no regular election. The terms of office of Councillors will be four years starting on the 4th day after being elected, and finishing on the 4th day after the date of the regular election four years later.</p>	<p>〈기관 구성 조항들〉 2.02 의원의 선출 및 임기 모든 의원들의 삼분의 일(혹은 최대한 가까운 수치)의 일반 선거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5월 첫번째 금요일에 개최되지만 2005년과 그 이후 매 4년째에는 정기 선거가 없다. 의원직 임기는 선출 이후 4일째에 시작하여 사년으로 하고, 사년이 지나 정기 선거일 이후 4일째에 끝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3 <u>Roles and Functions of all Councillors</u> a) Key Roles All Councillors and the Mayor will: i) collectively be the ultimate policy makers and carry out a number of strategic and corporate management functions ii) represent their communities and bring their views into the Council's decision making process, i.e. become the advocate of and for their communities iii) deal with individual casework and act as an advocate for constituents in resolving particular</p>	<p>〈기관 구성 조항들〉 2.03 모든 의원들의 역할 및 기능 a) 주요 역할들 모든 의원들과 시장은 다음을 해야 한다: i) 종합적으로 모든 정책의 입안자이며 많은 전략 및 협업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ii) 그들의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즉, 그들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지지자가 된다. iii) 개별적인 사례별 사업을 처리하고, 특정 우려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지역사회를 위한 지지자로 활동한다. iv) 해당 구 내에서 알려진 다른 이익들을 조율</p>

원문	번역
concerns or grievances iv) balance different interests identified within the Ward and represent the Ward as a whole v) contribute to the good governance of the area and actively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itizens'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 vi) be available to represent the Council on other bodies vii)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Council viii)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conduct and ethics	하고 전체로서의 구를 대표한다 v) 해당 지역의 건전한 통치에 공헌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권장한다. vi) 다른 기관들에서 의회를 대표할 수 있다. vii) 의회의 통치 및 경영에 참여한다. viii) 강령과 윤리에 최고 기준을 유지한다.

* 출처: Watford Borough Council's Summary and Explanation,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 부시장(Deputy Mayor) 및 내각(the executive) 구성방식 및 역할

○ 부시장 선임방법

- 시장은 당선 후 첫 번째 연례 의회 회의에서 내각의 구성원 중 한 명을 부시장(Deputy Mayor)으로 임명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4(a))

○ 부시장의 역할

- 부시장은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시장이 공석일 때, 시장의 기능을 수행함. 부시장 또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석일 경우 내각 혹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시장의 기능을 수행함. 이밖에 시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4(c))

○ 부시장의 해임방법

- 시장은 부시장 및 내각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자유를 가짐. 그러나 변경이 이루어진 즉시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에 보고해야하며, 의회의 다음 회의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져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4(d))

○ 내각 구성방법

- 내각은 시장과 시장이 지명한 내각(2~9명)으로 구성되며, '18~'19년도 내각에는 시장을 포함한 7명이 내각을 구성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2)
- 의원들만이 내각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동임명, 대리, 대체는 가능하지 않음. 또한 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내각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내각의 구성원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5(a))

○ 내각의 역할

-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집행부의 미래계획(Executive's Forward Plan)에 반영되며, 주요 결정사항을 집행부 회의에서 의회관료(Council Officers)와 함께 논의할 경우 개인적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대중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Summary and Explanation)

○ 내각 구성원 교체방법

- 내각구성원의 교체방법은 부시장의 경우와 동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4(d) & 7.05(d))

〈표 3-9〉 부시장 및 내각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4 <u>Deputy Mayor</u> a) Appointment At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after his/her election, the Mayor will appoint one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to act as Deputy Mayor. c) <u>Duties of the Deputy Mayor</u> If, for any reason, the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Mayor is vacant, the Deputy Mayor will act in his/her place until a new Mayor is elected or again able to act. If the</p>	<p>7.04. 부시장 a) 임명 선거 후 처음 열린 지방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시장이 내각구성원 중 한명을 부시장으로 임명한다. c) 부시장의 의무 어떤 이유로든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시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거나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대행한다. 부시장이 동일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는 내각이 이를 수행할 자를 배치한다. d) 해임</p>

원문	번역
<p>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is vacant at the same time as the Deputy Mayor is unable to act, or the office of Deputy Mayor is vacant, then the Executive must act in the Mayor's place, or arrange for a member of the Executive to do so.</p> <p>d) <u>Removal from Office</u> The Mayor has the freedom to select or de-select the Deputy Mayor and his/her Executive. However, any changes to the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including the position of Deputy Mayor, must be reported by the Mayor to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 as soon as the change has been effected and must report the change to the next meeting of the Council.</p>	<p>시장은 언제나 부시장 및 내각구성원을 선택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장 포함 내각의 구성은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에 보고되어야 하며, 변경사항은 가급적 빨리 다음 의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2 <u>Form</u> The Executive will consist of: - a Mayor (the Mayor); and - at least two but not more than 9 Councillors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Mayor</p>	<p>7.02. 형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한 명의 시장과; - 시장이 내각으로 임명한 2~9명의 시의원 으로 구성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5 <u>The Executive other than the Mayor</u> a) <u>Composition</u> Only Councillors may be appointed to the Executive. There may be no cooptees, deputies nor substitution of Executive members. Neither the Chairman nor the Vice Chairman of the Council may be appointed to the Executive. Members of the Executive may not be members of an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p>	<p>7.05. 시장 외의 내각 a) 구성 오직 시의원만이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 공동 또는 대리를 통해 내각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은 내각에 임명할 수 없다. 내각의 구성원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an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한다.</p>
<p>〈Summary and Explanation〉 <u>Executive Arrangements</u> The Executive is part of the Council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day to day decisions. The Executive is made up of the Mayor, who is elected by all residents, and a Cabinet of not less than 2 and not more than 9 Councillors whom he/she appoints. When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or made, these are</p>	<p>내각 배치 행정부는 매일 매일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의회의 일부이다. 행정부는 모든 거주자에 의해 선출되는 시장과 2명 이상 9명 이하의 선임된 의원들로 구성된 내각으로 구성된다. 주요 결정이 협의 혹은 결정되는 경우, 기대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부의 향후 계획에 공표된다. 이러한 주요 결정이 내각회의에서 의회 공무원들과 협의되는 경우, 개인적이거나 기밀 사안이 논의</p>

원문	번역
<p>published in the Executive's Forward Plan insofar as they can be anticipated. If these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with Council Officers at a meeting of the Executive, these will generally be open for the public to attend except where personal or confidential matters are being discussed. The Executive has to m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Council's overall policies and Budget. If it wishes to make a decision which is outside the Budget or policy framework, this must be referred to the Council as a whole to decide.</p>	<p>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는 누구나 참석하도록 개방된다. 행정부는 의회의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 예산이나 정책 골조에서 벗어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전원 의회에 결정을 위해 회부되어야 한다.</p>

* 출처: Watford Borough Council'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 Summary and Explanation

수석행정관(managing director) 및 위원회(committee) 구성방식 및 역할

○ 수석행정관의 유형

-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의해 수석행정관(Managing director) 및 간부직 공무원(Chief Officer)을 포함한 관료를 채용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a))
- 수석행정관을 포함한 10명의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¹⁷⁾은 의회총회에서 고용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b))

17) Watford Borough Council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의 구성

- Managing Director
- Deputy Managing Director Place Shaping and Corporate Performance
- Shared Director of Finance and Section 151 Officer
-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
- Head of Revenues & Benefits (Shared Services)
- Head of Human Resources (Shared Services)
- Head of Finance (Shared Services)
- Head of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ervices
- Head of Corporate Strategy and Communications
- Head of Service Transformation

- 수석행정관(managing director)의 역할
 - 수석행정관은 Head of Paid Service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 부서 구성을 결정하고 공표함. 또한 관리구조와 공무원의 배치도 공표되는 내용에 포함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d))
 - 수석행정관은 의회총회에 의회 사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업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수준 등을 의회총회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2(a))
-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의 역할
 - 감사관은 지역헌법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기준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 및 기준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조사업무를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3(a)&(c)&(d)). 또한 대중이 내각과 의회의 의사결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3(e)).
 - 감사관은 수석행정관 및 수석재무관과 협의를 통해 의회와 내각에 행정기능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감사관의 보고서는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제안과 의사결정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3(b)).
 - 감사관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정해진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 잘못된 행정행위, 재정적 부적절성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3(f)&(g)).
- 위원회(committee) 구성방식
 - 의회(Council)는 의회의 책임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구체적 내용은 Constitution의 Part 3_2에서 다루고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1).
 - 시장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시장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원회가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에 규정된 정당 구성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소속된 정당 구성원으로서 고려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3(b)).

〈표 3-10〉 수석행정관 및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관련 규정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1 <u>Management Structure</u> a) <u>General</u> The full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b) <u>Chief Officers</u> The full Council will engage persons for the following posts who will be designated Chief Officers: d) <u>Structure</u> The Head of Paid Service will determine and publicise a description of the overall departmental structure of the Council, showing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deployment of Officers. This is set out at Part 7 of this Constitution.</p>	<p>12.01. 관리구조 a) 일반 의회총회(full council)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officer)을 고용할 수 있다. b) 수석행정관 의회총회는 최고 행정관으로 지명되는 다음 직책의 사람과 계약한다. c) 구조 The Head of Paid Service는 그 경영 구조 및 공무원 배치를 보여주는 지방의회의 전반적 부서구조를 결정하고 공개한다. 이는 Part 7 에 명시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2 <u>Functions of the Head of Paid Service</u> a) <u>Discharge of Functions by the Council</u> The Head of Paid Service will report to full Council on the manner in which the discharge of the Council's functions is co-ordinated, the number and grade of the Officers required for the discharge of functions and the organisations of Officers.</p>	<p>12.02. The Head of Paid Service의 기능 a) 지방의회에 의한 기능부여 The Head of Paid Service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회총회에 기능조정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수와 등급, 조직 등을 보고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3 <u>The Mayor</u> b) <u>Mayor as Member of the Council</u> iv) if a member of a political group, will be taken into account when calculating seat allocations on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of which he/she is a member if they have to reflect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the Council as a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p>	<p>7.03. 시장 b)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시장 iv) 만약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이 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에 따라 정당비율을 고려해 배치하여야 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03 <u>Functions of the Monitoring Officer</u> a) <u>Maintaining the Constitution</u> The Monitoring Officer will maintain an up to date</p>	<p>〈기관 구성 조항들〉 12.03 감사관의 기능 a) 지역 헌법 유지 감사관은 지역헌법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p>

원문	번역
<p>version of the Constitution and will ensure that it is widely available for consultation by Members, staff and the public.</p> <p>b) Ensuring Lawfulness and Fairness of Decision Making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 of Paid Service and Chief Finance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Report to the full Council, or to the Executive in relation to an Executive function, if he or she considers that any proposal, decision or omission would give rise to unlawfulness, or if any decision or omission has given rise to maladministration. Such a Report will have the effect of stopping the proposal or decision being implemented until the Report has been considered.</p> <p>c) Supporting the Standards Committe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igh standards of conduct through provision of support to the Standards Committee.</p> <p>d)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duct investigations into matters referred by the Standards Committee and mak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in respect of them to the Standards Committee.</p> <p>e) Proper Officer for Access to Information The Monitoring Officer will ensure that the Executive decisions, together with reasons for those decisions and relevant Officer Reports and background paper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as soon as possible.</p> <p>f) Advising whether Executive Decisions are within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The Monitoring Officer will advise whether the decisions of the Executive are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p> <p>g) Providing Advic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provide advice on the scope of powers and authority to take decisions, maladministration, financial impropriety, probity and Budget and Policy Framework issues to all Councillors and the Mayor.</p>	<p>고, 구성원과 직원, 대중에 의한 협의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p> <p>b) 의사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 제안, 결정, 누락이 불법을 초래하거나, 결정 이나 부작위가 행정실책을 발생시킨다고 판 단하는 경우, 수석재무관 및 관료의 수장 (the Head of Paid Service)과 상의하여 감사관은 집행기능 관련 전체의회 또는 내각 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는 해당 보고가 고 려될 때까지 제안이나 결정이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p> <p>c) 표준 위원회 지원 감사관은 표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높 은 수준의 윤리규정 촉진 및 유지에 기여한 다.</p> <p>d) 조사의 수행 감사관은 기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조사업 무를 수행하며 기준위원회에 조사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p> <p>e) 정보 접근을 위한 적절한 공무원 감사관은 집행부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이 유 및 관련된 관료의 보고서와 배경 자료들 이 최대한 빠르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p> <p>f) 내각 결정이 예산과 정책 프레임워크 내 의 것인지를 자문 감사관은 내각의 결정이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조언한다.</p> <p>g) 조언 제공 감사관은 모든 의원에게 의사결정, 부적절한 관리, 재무 부적절성, 과실 및 예산과 정책 프레임 관련 문제제기를 할 권한을 가지며, 그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1 The Council will appoint the Committees set out in the left-hand column of the Table Responsibility for Council Functions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to discharge the functions described in column 3 of that Table.</p>	<p><기관 구성 조항들> 8.01. 지방의회는 Part 3의 의회기능의 책임성표의 좌측 열에 위원회를 임명하여 표 3열에 설명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 설치 근거)</p>

* 출처: Watford Borough Council'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선임방식 변경

- 현행 시장-내각형 범위 내에서 기관구성 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이 전반적이거나 감독 및 조사위원회(the peration of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¹⁸⁾) 운영 관련 사안일 경우, 의회총회(full council) 결의는 시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2(b))
- 시장-내각형에서 다른 형태의 기관구성 방식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경우, 지방의회(the council)는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전환은 해당 시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2(c))
- 리더-내각형에서 다른 대안적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 선거인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상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2(d))

18) 감독 및 조사위원회(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는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라 생겼으며, 지방의회 내의 감사역할을 담당한다. 내각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구성되며,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에 규정된 정당별 비율의 규정을 준수해 구성된다. 주로 의사결정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표 3-11〉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에 관한 조문

원문	번역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2 <u>Changes to the Constitution</u> a) <u>Approval</u> Changes to the Constitution will only be approved by full Council with the exception of changes to the Scheme of Delegation for Executive Functions which can be made by the Mayor at any time, or changes required by law. b) <u>Change within a Mayoral form of Executive</u> Unless the change relates only to the operation of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any resolution of the full Council to approve a change will have no effec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Mayor. c) <u>Change from a Mayoral form of Executive to another form of Executive or to alternative arrangements or from alternative arrangements to a Mayoral Form of Executive</u> The Council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consult with local electo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n the area when drawing up proposals, and must hold a binding referendum. The change will not take effect until the end of the Mayor's term of office. d) <u>Change from a Leader and Cabinet form of Executive to alternative arrangements or vice versa</u> The Council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consult with local electo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n the area when drawing up proposals.</p>	<p>15.02. 기관구성 변경 a) 승인 기관구성변경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집행기능의 위임계획변경 및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오직 의회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b) 시장직선제 방식 내에서의 변화 변경이 단지 감독 및 조사위원회(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의 운영과 관련된 것인 한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의회총회의 결의는 시장의 서면동의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c) 변경이란 시장직선제에서 다른 형태의 기관 구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대안적인 다른 방식에서 시장직선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해당 지역의 선거인 및 기타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 변경은 당시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d) 리더-내각형에서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의 작성시,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선거인 및 기타 관심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 출처: Watford Borough Council'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직선제 시장에 대한 견제 및 협력

- 핵심 사안에 대해 의회총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시장을 포함한 내각의 결정사항에 대한 판단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에서 이루어짐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은 의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됨(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2.1(a)). 시장이 의회의 구성원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관계라 기보다는 역할범위가 구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집행부에 대한 의회총회의 견제 및 협력

- (원칙) 기본적으로 왓포드의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만든 정책프레임워크와 예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집행부의 활동은 의회가 만든 규정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음(Summary and Explanation; 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3.0(a))
- (예외) 집행부가 정해진 규정을 벗어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결정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함(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4.0(a)). 긴급한 의사결정은 의회 정족수를 소집하는 것이 어렵거나,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문제라는데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함(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4.0(a)). 이 경우 의사결정 기록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이후 의회 회의에 긴급 의사결정의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4.0).
- (협력) 주어진 사무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음. 시장은 집행부 전체, 집행부 내 위원회, 집행부의 구성원, 관료, 공동 기관 혹은 다른 지방정부에 담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음(Executive Procedure Rules 1.1)

○ 집행부 및 의회(시장 및 내각 포함) 관리 견제: 기준위원회 및 감독 및 조사위원회

- 왓포드 정부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관리 및 견제수단으로 기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와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를 두고 있음

- 기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는 시장, 의원 등 지방정부 구성원에 대하여 윤리규정(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윤리수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02).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및 위원의 배정은 의회의 연례 회의에서 이루어짐(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3.1)
- 기준위원회는 시장과 의원 및 co-opted members에 대한 윤리규정 준수 교육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윤리규정 채택과 개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02)
- 기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사결정을 위한 제안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됨(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2.1 & 9.2).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는 않음(이 부분은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한 부분임)
-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결정 사항 및 성과를 감독하며, 정책이슈(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개발을 포함함)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1 & 6.02)
-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2.0), 집행부에 포함된 의원은 위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3.1). 이 외에도 위원회는 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위원(non-voting co-optees)의 선임을 제안할 수 있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3.2)
- 표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독 및 조사위원회도 제안(recommendation)의 형태로 심의 결과 등을 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며, 공식 보고서에 제안의 내용을 반영함(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9.2 & 9.5).

〈표 3-12〉 기관 간 협력 및 견제 관련 조문

원문	번역
<p>〈Summary and Explanation〉 <u>HOW DECISIONS ARE MADE</u> <u>Executive Arrangements</u> The Executive is part of the Council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day to day decisions. The Executive is made up of the Mayor, who is elected by all residents, and a Cabinet of not less than 2 and not more than 9 Councillors whom he/she appoints. When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or made, these are published in the Executive's Forward Plan insofar as they can be anticipated. If these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with Council Officers at a meeting of the Executive, these will generally be open for the public to attend except where personal or confidential matters are being discussed. The Executive has to m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Council's overall policies and Budget. If it wishes to make a decision which is outside the Budget or policy framework, this must be referred to the Council as a whole to decide.</p>	<p>〈요약 및 설명〉 결정 방법 내각 구성 내각은 대부분의 일상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의 일부이다. 내각은 주민이 선출한 시장이 구성하며, 시장은 2~9명의 의원을 내각 구성원으로 임명한다.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각의 향후 계획에 이를 공표한다. 만약 이 주요 결정이 지방의회 행정관과 논의되는 경우, 개인 또는 기밀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내각은 지방의회 전반적 정책과 예산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산 또는 정책의 프레임 범위 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의회총회에 회부되어야 한다.</p>
<p>〈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u>3.0 Decisions Outside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u>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virement) the Executive, committees of the Executive, individual members of the Executive and any Officers, Neighbourhood Forums or joint arrangements discharging Executive functions may only t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If any of these bodies or persons wish to make a decision which is contrary to the policy framework, or contrary to or not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approved by full Council, then that decision may only be taken by the Council subject to 4 below.</p>	<p>〈예산 및 정책 절차 규정〉 3.0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넘는 결정 a)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 내각의 위원회, 개별 내각 구성원 행정관, 이웃포럼, 공동집행 기관은 예산 및 정책의 프레임에 일치하는 결정만을 할 수 있다. 이 기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위배하거나 의회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전적으로 또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 결정은 아래 제4항에 따라 의회총회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p>

원문	번역
<p>〈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4.0 Urgent Decisions Outside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 The Executive, a committee of the Executive, an individual member of the Executive or Officers, Neighbourhood Forum or joint arrangements discharging Executive functions may take a decision which is contrary to the Council’s policy framework or contrary or not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approved by full Council if the decision is a matter of urgency. However, the decision may only be taken: i) if it is not practicable to convene a quorate meeting of the full Council ii) if the Chair of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agrees that the decision is a matter of urgency. The reasons why it is not practicable to convene a quorate meeting of full Council and the Chair of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consent to the decision being taken as a matter of urgency must be noted on the record of the decision. In the absence of the Chair of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the consent of the Chairman of the Council, and in the absence of both, the Vice Chairman, will be sufficient. b) Following the decision, the decision taker will provide a full report to the next available Council meeting explaining the decision, the reasons for it and why the decision was treated as a matter of urgency.</p>	<p>〈예산 및 정책 절차 규정〉 4.0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넘는 응급 결정 a) 예산 및 정책에 대한 긴박한 문제인 경우에 내각, 내각의 위원회, 내각 구성원 개인 또는 행정관, 이웃포럼, 공동집행기관은 의회의 정책 프레임에 위배되거나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채택될 수 있다: i) 의회총회의 1/4를 소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ii)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결정에 동의한 경우 의회총회의 1/4를 소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결정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장이 없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필요하나, 공식일 경우 부의장의 동의로 충분하다. b)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권자는 긴급한 결정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차기 의회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2.1 The process by which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shall be developed is: a) After consulting stakeholders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 matter under consideration, the Executive will draw up initial proposals in relation to any plan, strategy which form part of the Council’s Policy Framework. Once drawn</p>	<p>〈예산 및 정책 절차 규정〉 2.1 예산 및 정책 프레임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이해관계자와 고려중인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상의한 뒤, 내각은 지방의회의 정책 프레임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획, 전략과 관련된 초기제안서를 작성한다. 이후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장에게 내각이 이를 추가 검토할 날</p>

원문	번역
<p>up,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 will serve copies of them on the Chair of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together with dates when the Executive will consider them further, which shall be at least 6 weeks after service of the Notice on the Chair.</p>	<p>짜와 함께 그 사본을 제공하고, 이는 최소 의장에 대한 고지일 이후 6주 이후로 한다.</p>
<p>〈Executive Procedure Rules〉 1.1 Who May Make Executive Decisions? Functions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may be exercised by the Mayor. The Mayor may also delegate authority to exercise those functions to the extent he/she wishes as detailed below: i) to the Executive as a whole ii) to a committee of the Executive iii) to an individual member of the Executive iv) to an Officer v) to a Neighbourhood Forum vi) to joint arrangements vii) to another Local Authority</p>	<p>〈행정 절차 규칙〉 1.1 누가 내각을 결정하는가? 내각의 책임성 확보 기능은 시장에 의해 행사된다. 시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된 범위 내에서 기능행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i) 전체 내각 ii) 내각의 위원회 iii) 내각의 개별 구성원 iv) 공무원 v) 이웃포럼 vi) 공동 집행부 vii) 기타 지방당국</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02 The Standards Committee will have the following roles and functions: a) Promoting and maintaining high standards of conduct by the Mayor, Councillors, and any co-opted members b) Assisting the Mayor, Councillors and any co-opted members to observe the Members' Code of Conduct c) Advising the Council on the adoption or revision of the Members' Code of Conduct 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the Members' Code of Conduct e) Advising, training or arranging to train the Mayor, Councillors and co-opted members on matters relating to the Members' Code of Conduct f) Dealing with any complaints received from members of the public, other Councillors or officers that a Councillor has breached the Member's Code of Conduct</p>	<p>〈기관 구성 조항들〉 9.02 표준위원회(the standards committee)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a) 시장, 의원, 기타 선출직 위원들의 행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 장려함 b) 시장, 의원 및 기타 선출직 위원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력한다. c) 의원의 행동강령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데 대해 의회에 자문한다. d) 구성원의 행동 강령 운영을 감독한다. e) 구성원의 윤리규정관련 사안에 대한 시장, 의원 및 선출직 의원들의 교육, 자문, 훈련 준비 f) 의원이 구성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였다는 대중 및 타 의원, 행정관들로부터 받은 불만사항을 처리한다. g) 표준 위원회는 의회에게 Honorary Freeman 또는 왓포드의 Honorary Alderman 신청을 고려하기 위해 채택된 기준을 권고한다. h) 표준 위원회는 Honorary Freeman 또는 Honorary Alderman 이름에 대한 모든 신청을</p>

원문	번역
<p>g)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recommends to Council criteria to be adopted for considering applications for the status of Honorary Freeman, or Honorary Alderman of the Borough of Watford.</p> <p>h) That the Standards Committee receives all applications for either Honorary Freeman status, or Honorary Alderman title and vets such applications as it sees fit, in accordance with the adopted criteria and forwards any applications it deems meets the criteria to Council.</p>	<p>수령하고 채택된 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보는 이와 같은 신청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회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는 신청을 전달 한다.</p>
<p><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3.1 The Chair and Vice-Chair of every Committee and Sub-Committee, shall be elected at the annual Council meeting.</p>	<p><상임 위원회 절차 규정> 3.1 모든 위원회 및 하위 위원회의 장과 부의장은 연간 의회에서 선출된다.</p>
<p><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2.1 No business shall be conducted at any Committee or Sub-Committee unless at least 2 members of that Committee or Sub-Committee are present. Except where authorised by Statute or ordered by the Council, where less than ½ the number of members of a Committee or Sub-Committee are present at a meeting, then all business transacted shall be submitted as recommendation for decision by the Council or parent Committee. This Rule does not apply to the Standards Committee</p>	<p><상임 위원회 절차 규정> 2.1 최소한 2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지 않는 한 어떤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의 일은 진행될 수 없다. 규정에 의해 승인되거나 이사회가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나 하위 위원회의 1/2 미만인 참석자 상태에서 결정한 경우 거래된 모든 업무는 지방의회 또는 상위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권고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기준위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p>
<p><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9.2 Recommendations for decisions by Council of any matter considered by a Committee shall be included in a report to the next suitable meeting of the Council, together with any other matter that the Committee decide shall be included in such report.</p>	<p><상임 위원회 절차 규정> 9.2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대한 권고는 지방의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서에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사안들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p>
<p><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1 The Council will appoint suc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as is necessary to discharge the functions conferred by Section 21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or Regulations under Section 32 of the Local</p>	<p><기관 구성 조항들> 6.01 지방의회는 2000년 지방정부법 제21절 또는 2000년 지방정부법의 2절에 따른 규정에 의해 수여된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감독 및 조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그 임명은 모든 연례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위원회의 이름, 기능</p>

원문	번역
<p>Government Act 2000. Such appointments will be made at every annual Council and the names and functions of those Committees will be annexed to this Constitution in a Table in Part 3.</p> <p>The Council will appoint on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This Committee will have the responsibility of hearing any decisions taken by the Mayor, members of the Executive, Officers which are called-i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for call-in of Executive decisions set out in Part 4 of this Constitution.</p> <p>6.02 General Role</p> <p>Within their Terms of Referenc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wi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review and/or scrutinise decisions made or actions taken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any of the Council's functions ii) make reports and/recommendations to the full Council and/or the Executive and/or any Regulatory, Joint Committee or Neighbourhood Forum in connection with the discharge of any functions iii) consider any matter affecting the area or its inhabitants iv) exercise the right to call-in, for reconsideration, decisions made, but not yet implemented by the Executive 	<p>등이 Part 3 표에 본 기관 구성에 첨부된다. 의회는 하나의 개관 및 조사 위원회를 선임한다. 이 위원회는 Part 4에 기술된 모든 행정집행업무 요청을 위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시장, 내각 구성원 및 공무원이 수행한 모든 내각의 결정을 청문할 책임을 진다.</p> <p>6.02. 일반 역할</p> <p>참고 조건 내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다음을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지방의회는 기능 이행 등과 관련한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조사 ii) 전원 의회 및/혹은 내각 및/혹은 규정에 대한 보고 및 권고 작성, 모든 기능의 이행에 관한 합동 위원회 혹은 이웃포럼에 대한 보고 및 권고 작성 iii) 해당 지역 또는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iv) 아직 내각이 집행하지 않으나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소집할 권한 행사
<p><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p> <p>2.0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p> <p>The Council will establish one committee called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which will comprise 7 members.</p>	<p><감독 및 조사위원회 절차 규정></p> <p>2.0 감독 및 조사위원회</p> <p>의회는 7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감독 및 조사 위원회라고 불리는 위원회를 설립한다.</p>
<p><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p> <p>3.1 All Councillors, except members of the Executive, may be members of an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However, no Member may be involved in scrutinising a decision which he/she has been directly involved with.</p>	<p><감독 및 조사위원회 절차 규정></p> <p>3.1 내각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참여했던 결정을 검토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3.2 각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의견권이 없는 위원들을 임명해 줄 것을 지방의회</p>

원문	번역
<p>3.2 Eac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or sub-committee shall be entitled to recommend to Council the appointment of a number of people as non-voting co-optees.</p>	<p>에 권고할 자격이 있다.</p>
<p>〈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9.2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shall also respond, as soon as their work programme permits, to requests from the Council and, if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he Executive, to review particular areas of Council activity. Where they do so,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shall report their findings and any recommendations back to the Executive and/or Council. The Council and/or the Executive shall consider the report of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within 1 month of receiving it.</p>	<p>〈감독 및 조사위원회 절차 규정〉 9.2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또한 업무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한 빨리 의회로부터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내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활동의 일정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내각 및/혹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각 및/혹은 위원회는 보고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이를 검토 및 조사 보고를 검토해야 한다.</p>
<p>〈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9.5 Once it has formed recommendations on proposals for development, th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will prepare a formal repor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and/or to the Council as appropriate.</p>	<p>〈감독 및 조사위원회 절차 규정〉 9.5 일단 개발을 위한 제안에 대해 권고안을 작성하면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각 또는 지방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Head of Democracy and Governance에게 제출한다.</p>

* 출처: Watford Borough Council's Summary and Explanation, 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Executive Procedure Rules, Standing Committee Procedure Rule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2. 리더-내각형: 맨체스터(Manchester City, metropolitan district)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 역사적 배경

- 맨체스터시는 인구 약 545,500명의 대도시¹⁹⁾로, 기관구성형태는 전통적인 형태의 리더-내각형 기관구성을 유지해 왔음
 - Municipal Corporations Act 1835에 근거 1838년 최초로 맨체스터시가 설립되었으며, Local Government Act 1972에 의거 1974년 최초의 대도시 버러(metropolitan borough)가 됨(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 맨체스터 지방의회는 32개 선거구별 3명, 총 96명의 의원(councillors)으로 구성되며, 2019년 현재 노동당 소속 Richard Leese경이 시장(mayor)임(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 지방의회는 시장 포함 96명의 의원으로 구성됨(현재 노동당 93명, 자유민주당 2명, 공석 1명)(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 여당인 노동당의 리더(Richard Leese)가 시장(mayor)이 되고,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리더(Jphn Leech)가 지방의회 리더(leader of Council)가 됨(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또한 수석행정관(the chief executive)은 Joanne Roney임(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 2014년~2015년 지방의회가 노동당으로 전원 구성되었다가 2016년 지방선거에서 Jphn Leech가 자유민주당으로 당선됨(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맨체스터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외 다른 당이 53% 득표율로 선출되었으며, 2년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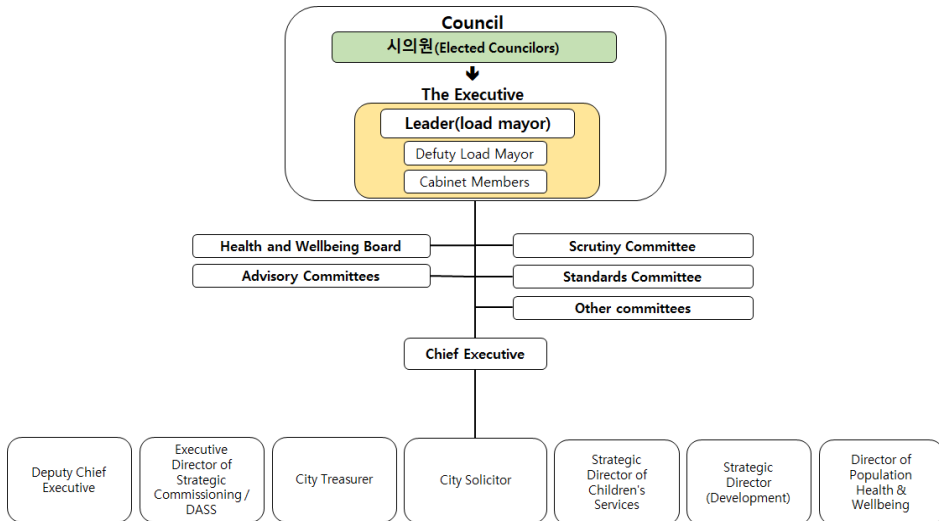
19) 326개 지방자치단체 중 5위의 인구규모를 가지며, 50만 이상 도시가 총 7개임을 고려할 때 영국 내에서 매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야당이 형성됨(위키피디아,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전통적으로 노동당 중심의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지역임

□ 기관구성 체계도

- 맨체스터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3-3>과 같으며, 리더-내각형에 해당됨

<그림 3-3> Manchester의 기관구성 체계도



- 맨체스터의 지방의회(Council) 기관구성은 선출직 시의원(councilors) 96명으로 구성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1(a)).
- 내각(Executive)은 의회의 한 부분으로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의회에 의해 선출된 리더와 리더에 의해 임명된 최대 9명의 의원들 (Deputy Leader 포함)로 구성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2)

- 지방의회는 시장 및 부시장(Lord Mayor/Leader and Deputy Lord Mayor/Deputy Leader)은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되는 간선제를 채택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5.2)
- 지방의회(council)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Chief Officers)을 선정함(7개의 하위 부서로 구성)(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1)

〈표 3-13〉 맨체스터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1 Composition and eligibility (a) Composition. The Council comprises 96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Three councillors ar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in accordance with a scheme drawn up by the Electoral Commission and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p>	<p>〈기관 구성 조항〉 2.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의회는 96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의원이라고 부른다. 3명의 의원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그 절차와 기준은 선거위가 작성하고 국무장관이 승인한 계획(scheme)에 따른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2 Form and composition The Executive will consist of the Leader together with between two and nine councillors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Leader (one of whom will be appointed by the Leader to act as Deputy Leader).</p>	<p>〈기관 구성 조항〉 7.2 형태 및 구성 내각(the executive)은 리더와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리더에 의해 지명된다(이들 중 1명은 리더에 의해 부리더로 지명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5.2 The Lord Mayor and Deputy Lord Mayor will be elected annuall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p>	<p>〈기관 구성 조항〉 5.2 시장(the Lord Mayor)과 부시장(Deputy Lord Mayor)은 매년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2.1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b) Chief Officers. The Council will engage persons, who will be designated chief officers and shall include a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and a Director of</p>	<p>〈기관 구성 조항〉 12.1 관리 구조 (a) 일반 의회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직원(공무원이라 칭함)을 둘 수 있다. (b)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 의회는 고위 공무원으로 지명되고 아동서비스 국장, 성인 사회서비스 국장을 포함한 Part 8의 고위공무원단 업무를 수행할 관료를 채용할 수 있다.</p>

원문	번역
Adult Social Services, for the posts designated as Chief Officers in Part 8 of this Constitution: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내각 리더(Cabinet Leader) 선임방식 및 역할

○ 리더 선임 및 해임방식

- 리더는 지방정부의 의원들 중 의회에서의 투표를 통해 선출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3(a))
- 리더의 임기는 의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리더의 의원으로써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의 첫 연례회의 이전에 만료되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3(b))
- 리더는 임기이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리더의 임기는 종료됨. 또한 의회 정족수의 50% 이상의 동의로 리더를 해임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3(c))
- 의회의 의결에 의해 리더가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이 의결된 회의 혹은 다음 회의에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3(d)).
- 의회 의결 이외의 이유로 리더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 공석이 발생한 이후 첫 의회 회의에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3(e)).

○ 리더의 기능 및 역할

- 리더는 지방정부의 기능들 중 집행부의 기능을 리더 자신이 수행할지 혹은 내각, 내각의 구성원, 지방정부 관료, 위원회 등에 위임할지 결정할 수 있음 (Responsibility for Executive Function; Executive Procedure Rules 1.1).

- 지방정부의 연례회의에서 리더는 내각의 구성 및 구성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분담(Portfolios)을 발표함. 리더는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을 감사관(Monitoring Officer)에게 제출해야함(Executive Procedure Rules 1.2(a)&(b)).
- 리더는 집행부의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년도 내에 어느 시점 이든 위임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Executive Procedure Rules 1.4).
- 리더는 집행부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리더가 부재 시 부리더가 회의의 의장을 맡음(Executive Procedure Rules 2.1).

〈표 3-14〉 리더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 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3 Leader (a) The Leader will be a councillor elected to the position of Leader by the Council. (b) The Council will decide the term of office of the Leader which must expire no later than the day on which the Council holds its first annual meeting after the Leader's normal day of retirement as a councillor. (c) The Leader's term of office will end on the day determined by the Council under (b) above, unless before that date - (i) he/she resigns from the office; (ii) he/she is no longer a councillor for any other reason; or (iii) he/she is removed by resolution of Council provided that no such resolution may be moved unless it is delivered to the Chief Executive 14 days before the meeting at which it is to be debated and signed by 50% of the members (for the time being) of the Council. (d) If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Leader as a result of a resolution under 7.3(c) (iii) above, the Council shall elect another councillor as Leader at the meeting at which the Leader is removed from office or at the next subsequent</p>	<p>〈기관 구성 조항〉 7.3 리더 (a) 리더는 지방의회에 의해 리더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이다 (b) 의회는 리더의 임기를 결정한다. 임기는 의원으로서 퇴임하는 날 이후 첫 번째 연례회의 날까지 만료되어야 한다. (c) 리더의 임기는 (i) 사직하거나, (ii) 다른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의원이 아니게 되거나, (iii) 의회 결정으로(단, 의회 구성원 50%가 논의하고 서명하는 회의 14일 이내에 각 수장(the chief executive)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이러한 결의는 이전되지 않는다.) 해임되지 않는 한 상기일자 (b)에 의거해서 의회가 결정한 날까지 종료된다. (d) 위 7.3(c)의 (iii)에 따라 결의한 결과로 리더에 공석이 생기면, 의회는 그 리더가 공석이 된 다음의 차기 회의에서 다른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e) 만약 다른 이유로 리더에 공석이 생기면, 의회는 공석이 된 후 첫 회의에서 다른 의원을 리더로 선출해야 한다. 단, 회의소집 및 의제 발행 후 공석이 되면 선거는 차기 회의에서 수행된다.</p>

원문	번역
<p>meeting of the Council.</p> <p>(e) If there is a vacancy in the office of Leader for any other reason, the Council shall elect another councillor as Leader at the first meeting after the vacancy occurs, provided that if the vacancy occurs after the issue of the summons and agenda for the meeting the election shall take place at the next subsequent meeting.</p>	
<p><Responsibility for Executive Function></p> <p>The Leader of the Council may determine to exercise any of the executive functions of the Council personally, or may arrange for the exercise of any of the Council's executive functions by:-</p> <p>(i) the Executive;</p> <p>(ii) another member of the Executive;</p> <p>(iii) a committee of the Executive;</p> <p>(iv) an officer of the Council;</p> <p>(v) an area committee;</p> <p>(vi) another local authority or the executive of another local authority; or</p> <p>(vii) joint arrangements with one or more other local authorities including a joint Committee with such authority or authorities.</p>	<p><내각 기능의 책임></p> <p>의회의 리더는 의회 집행기능을 개인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회의 집행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p> <p>(i) 내각</p> <p>(ii) 다른 내각 구성원</p> <p>(iii) 내각의 위원회</p> <p>(iv) 의회의 관료</p> <p>(v) 지역위원회</p> <p>(vi) 다른 지방당국 또는 그 집행부</p> <p>(vii) 이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다른 지방 당국과의 공동협약 방식</p>
<p><Executive Procedure Rules></p> <p>1.1. Who may make executive decisions</p> <p>The Leader may discharge any executive functions of the Council or he/she may provide for any executive functions of the Council to be discharged by:</p> <p>(a) the Executive as a whole;</p> <p>(b) a committee of the Executive;</p> <p>(c) an individual member of the Executive;</p> <p>(d) an officer of the authority.</p>	<p><집행 절차 규칙></p> <p>1.1. 집행부의 결정권자</p> <p>리더는 의회의 집행기능을 이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p> <p>(a) 내각 전체</p> <p>(b) 내각의 위원회</p> <p>(c) 내각의 개별 구성원</p> <p>(d) 관료</p>
<p><Executive Procedure Rules></p> <p>1.2 Appointments and delegation by Leader</p> <p>(a)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the Leader will present to the Council the names of the Members appointed to the Executive by the Leader (including the Executive Member who is appointed as the Deputy Leader) and their</p>	<p><집행 절차 규칙></p> <p>1.2 리더에 의한 지명 및 위임</p> <p>a) 지방의회의 연례회의에서 리더는 의회에 임명된 구성원(부리더로 지명된 내각의 구성원 포함)의 이름과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p> <p>(b) 의회의 연례회의나 그 후 가능한 빨리 리</p>

원문	번역
<p>Portfolios. (b) Either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r as soon as practicable thereafter, the Leader will present to the Monitoring Officer a written record of:- (i) the detailed remits of the Portfolios of the Executive Members; (ii) any delegations made by the Leader in respect of the discharge of the Council's executive functions. The document presented by the Leader to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discharge of the Council's executive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ing year:</p>	<p>더는 감사관(the monitoring officer)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기록을 제출한다. (i) 내각 구성원의 포트폴리오 세부사항 (ii) 의회 내각 기능 수행에 대해 리더가 결정한 권한위임 리더가 감사관에게 제시한 서류들은 향후 년도에 대한 의회의 행정 기능 이행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p>
<p><Executive Procedure Rules> 1.4 The Scheme of Delegation and executive functions The Leader may amend the Scheme of Delegation set out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insofar as it relates to executive functions at any time during the yea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below.</p>	<p><집행 절차 규칙> 1.4 위임 및 집행기능 계획 리더는 아래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연중 언제든지 집행기능과 관련이 있는 한 Part 3에 명시된 위임계획을 개정할 수 있다.</p>
<p><Executive Procedure Rules> 2.1 Chair of Meeting If the Leader is present, he/she will chair the meeting. In his/her absence, the Deputy Leader will chair the meeting. In the absence of both a person, the Council will appoint another member to chair the meeting.</p>	<p><집행 절차 규칙> 2.1 회의의 의장 만약 리더가 참석하면, 그가 의장이 된다. 만약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 부리더가 의장이 된다. 둘 다 없다면, 의회는 구성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p>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지방의회(council)와 시의원(councillors) 선임방식 및 역할

- 맨체스터의 지방의회는 96명의 의원(members 혹은 councillors)으로 구성되어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1).
 - 의회는 조언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며, 일상적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관료(Officers)를 두고 있음. 일부 관료는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하고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를 가짐(Summary

and Explanation;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1(a))

- 의회는 지역헌법에서 규정하는 의회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9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1)²⁰⁾. 또한 리더 및 의원, 의회 관료, 그리고 민간 조직의 대표자로 구성된 보건복지 위원회를 두고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2)
 - 의회는 의회 혹은 집행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3)
 - 의회와 리더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역위원회(Area Committees)를 둘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1).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음
 - 의회는 연례회의에서 의장(Lord Mayor)을 선출하고, 부 의장(Deputy Lord Mayor)을 임명함(Council Procedure Rules 3.1). 회기(municipal year) 내에 의장 혹은 부의장이 공석이 될 경우 다음 회의에서 새 의장 혹은 부의장을 선출/임명함(Council Procedure Rules 3.2 & 3.3)
- 의회총회(full council)만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기능(Articles of the Constitution 4.2).
- 지역헌법의 채택 및 개정 및 의회 기능(non-executive function) 집행부 기능(executive function)의 분류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승인, 채택, 개정, 및 폐지
 -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 개정 및 대체의 승인

20) 맨체스터 의회의 위원회 목록

- Planning and Highways Committee
- Licensing and Appeals Committee
- Licensing Committee
- Licensing Policy Committee
- Employee Appeals Committee
- Art Galleries Committee
- Constitutional and Nomination Committee
- Personnel Committee
- Audit Committee

- 집행부(Executive)의 리더 임명 및 임기의 설정
-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합의
- 집행부에 임명권한이 없거나 의회에 위임된 외부 기관장의 임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채택 및 지역 입법(local legislation of personal bills)의 찬성 혹은 반대
- 지방정부의 임금체계 설정
- 리더의 해임안 상정 및 표결
- 지역헌법에 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모든 선택 기능.
-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의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시의원(councilors) 선임방식

- 시의원은 공무를 담당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여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1(b)).
- 각 선거구별로 3명의 의원이 선출되며, 선거 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제도에 따라 이루어짐(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1(a))
- 의원의 선출은 전체 의원의 1/3에 대한 선거가 3년에 걸쳐 매년 1회 이루어지며, 4년째 되는 년도에는 선거가 없음. 각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당선 후 넷째 날부터 다음선거 후 넷째 날까지임(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2)

○ 의원(councilors)의 역할(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3(a))

- 총괄적으로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함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함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을 함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함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할 수 있음
- 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참여함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함

〈표 3-15〉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 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1 Composition and eligibility (a) Composition. The Council comprises 96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Three councillors ar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in accordance with a scheme drawn up by the Electoral Commission and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 Eligibility. Only individuals who are not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and are registered voters of the area or those living or working in the area, or those who occupy any land or premises in the area, are eligible to hold the office of councillor.</p>	<p>〈기관 구성 조항〉 2.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의회는 96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고, 이들을 의원이라고 부른다. 3명의 의원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그 절차와 기준은 선관위가 작성하고 국무장관이 승인한 계획(scheme)에 따른다. (b) 적격 오직 그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 해당 지역의 등록 유권자이거나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구역을 점유하는 사람만이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Summary and Explanation〉 The Council's Staff The Council has people working for it (called 'officers') to give advice, implement decisions and manage the day-to-day delivery of its services. Some officers have a specific duty to ensure that the Council acts within the law and uses its resources wisely. The Member/Officer Relations Protocol which is set out at Part 6 Section F of the Constitution governs the relationships between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ouncil.</p>	<p>〈요약 및 설명〉 의회의 관료 의회는 의회를 위해 일하고 자문하며, 결정을 집행하고 일상적 서비스 전달을 관리 하는 사람(즉, 관료)을 둔다. 몇몇 관료들은 의회로부터 법률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진다. 관료와 의회 구성원 간의 관계는 Part 6 F절에 규정된 구성원/관료 관계 프로토콜에 따른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2.1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p>	<p>〈기관 구성 조항〉 12.1 관리 구조 (a) 일반. 의회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직원(공무원이라 칭함)을 둘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8.1 Regulatory and other ordinary committees</p>	<p>〈기관 구성 조항〉 8.1 규제 또는 다른 일반 위원회</p>

원문	번역
<p>The Council will appoint the committees set out below to discharge the functions described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nning and Highways Committee • Licensing and Appeals Committee • Licensing Committee • Licensing Policy Committee • Employee Appeals Committee • Art Galleries Committee • Constitutional and Nomination Committee • Personnel Committee • Audit Committee 	<p>의회는 Part 3에 서술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고속도로 위원회 • 라이선싱 및 항소 위원회 • 라이선싱 위원회 • 라이선싱 정책 위원회 • 직원 항소 위원회 • 미술관 위원회 • 구성 및 지명 위원회 • 인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8.2 Health and Wellbeing Board (a) The Council will establish a Health and Wellbeing Board to discharge the functions described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b) The Health and Wellbeing Board will be composed o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eader of the Council; • At least one councillor appointed by the Leader; • The Director of Adult Social Services; • The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 The Director of Public Health; • One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Local Healthwatch organisation; • One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Manchester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 One representative appointed by the NHS Commissioning Board; • Such other persons, or representatives of such persons, as the Council considers appropriate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ppointments after the Board is established the Council first consults the Board); • Such additional persons as the Board considers appropriate. 	<p><기관 구성 조항> 8.2. 건강 및 웰빙 위원회 (a) 의회는 Part 3에 명시된 기능 수행을 위해 건강 및 웰빙 위원회를 설립한다. (b) 해당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리더 • 리더에 의해 지명 받은 최소 1명의 지방의회 의원 • 성인 사회서비스 국장 • 아동서비스 국장 • 공중보건 국장 • 지역 보건 감독 조직이 선임한 한 명의 대표 • 맨체스터 임상 위원회 집단이 선임한 한 명의 대표 • NHS 시운전 위원회가 선임한 한 명의 대표 • 의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한 그와 같은 다른 사람 또는 그 대표, 기타 지명된 위원 (단 이사회가 설립된 이후에 선임되는 경우, 의회는 처음으로 이사회에 자문함); •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이와 같은 추가 인력들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8.3 Advisory Committees</p>	<p><기관 구성 조항> 8.3. 자문위원회</p>

원문	번역
<p>The Council may appoint an advisory committee to advise the Council or the Executive in relation to any matter relating to the discharge of their functions.</p>	<p>의회는 자문위원회를 임명하여 그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 또는 내각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1 Area Committees The Council and the Leader may appoint Area Committees as they think fit, if they are satisfied that to do so will ensure improved service delivery in the context of best value and more efficient, transparent and accountable decision making</p>	<p><기관 구성 조항> 10.1 지역위원회 의회와 리더는 최선의 가치와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면, 지역위원회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명할 수 있다.</p>
<p><Council Procedure Rules> 3. Lord Mayor and Deputy Lord Mayor 3.1 ***The Lord Mayor will be elected, and the Deputy Lord Mayor will be appoi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Council. 3.2 ***If the Office of Lord Mayor becomes vacant during a Municipal Year it will be filled at the next Council meeting, or, if a vacancy arises within 14 days before that meeting, it will be filled at the next but one meeting. 3.3 If the Office of Deputy Lord Mayor becomes vacant during a Municipal Year it will be filled at the next Council meeting, or, if a vacancy arises within 14 days before that meeting, it will be filled at the next but one meeting. 3.4 The Lord Mayor will chair meetings of the Council. In the Lord Mayor's absence the Deputy Lord Mayor will chair the meeting. In the absence of both the Lord Mayor and Deputy Lord Mayor, the Council will appoint another member to chair the meeting.</p>	<p><의회 절차 규정> 3. 시장 및 부시장 3.1 의회 연례 회의에서 시장이 선출되며, 부시장이 지명된다. 3.2. 만약 시장직이 회기 중 공석이 되면 다음 의회 회의에서 채워지거나 그 공석이 다음 회의 전 14일 이내라면 다음 회의에서 채워진다. 3.3. 만약 부시장직이 회기 중 공석이 되면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채우거나 그 공석이 다음 회의 전 14일 이내라면 다음 회의에서 채워진다. 3.4. 시장은 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만약 시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부시장이 의장이 된다. 둘 다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는 다른 구성원을 의장으로 지명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4.2 Functions of the full Council Only the Council will exercise the following functions:-(a) adopting and changing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which of the Council's "Local Choice" functions</p>	<p><기관 구성 조항> 4.2. 의회총회의 기능 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a) 지역헌법의 채택 및 변경(의회의 지역 선택 (Local Choice) 기능(2000년 지방자치단체 규정 (기능과 책임)(영국)에 정의)이 내각 기능이</p>

원문	번역
<p>(as defined in The Local Authoritie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England) Regulations 2000) should be executive functions and which should be non-executive functions;</p> <p>(b) approving, adopting, amending, modifying, revising, varying, withdrawing or revoking (unless, by law, expressly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or otherwise authorised by any provision of this Constitution) any plan or strategy which forms part of the policy framework or budget;</p> <p>(c) the approval, for the purposes of public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 or 22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Development Plans) (England) Regulations 1999, of draft proposal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of alterations to, or the replacement of, a development plan;</p> <p>(d) the approval, for the purpose of its submiss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dependent examination under Section 20 of 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of a development plan document;</p> <p>(e) approving any applicat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in respect of any Housing Land Transfer;</p> <p>(f) determining, as licensing authority, its policy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its licensing functions under the Licensing Act 2003, and making revisions to such policy at such tim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p> <p>(g) subject to the urgency procedure contained in the Access to Information Procedure Rules or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Policy Rules in Part 4 of this Constitution, making decisions about any matter in the discharge of an executive function which is covered by the policy framework or the budget where the decision maker is minded to make it in a manner which would be contrary to the policy framework or contrary to/or not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p>	<p>어야 하는지 내각 기능이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p> <p>(b) 정책프레임워크 또는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획이나 전략의 승인, 채택, 개정, 수정, 변경, 철회 혹은 및 폐지(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집행 책임이 있거나 달리 본 기관 조항에 의해 권한이 수여되지 않는 한)</p> <p>(c) 1999년 도시 및 국가계획 규정(개발 계획)(영국) 제10조 또는 22조에 공공 자문을 위해 개발 계획에 대한 대체나 교체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초안 제안의 승인</p> <p>(d) 2004년 기획 및 구매법 제20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개발계획서의 승인</p> <p>(e) 모든 토지 양도에 대해 국무장관에 대한 신청 승인</p> <p>(f) 라이선싱 당국으로서 2003년 라이선스 법에 따른 라이선싱 기능의 행사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시점에 해당 정책의 수정</p> <p>(g) 의사결정자가 정책 프레임에 위배되거나 예산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정책입안절차규칙 또는 Part 4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정책 규칙에 포함된 긴급 절차에 따라 정책의 프레임 또는 예산에 포함되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p> <p>(h) 리더 지명</p> <p>(i) 의회에 대한 위임사항 동의, 수정, 위원 구성 결정, 임명 등</p> <p>(j) 해당 선임이 내각 기능이거나 의회에 의한 위임 아닌 경우, 기관 밖에서 대표지명</p> <p>(k) 구성원의 임금체계 채택</p> <p>(l) 지역명변경, 명예 앨더맨(우먼)의 칭호 혹은 자치구의 자유 칭호 부여</p> <p>(m) 도박법 2005 116절에 의거, 카지노시설 라이선스 발행 금지 문제 해결</p> <p>(n) 부칙을 제정, 수정, 폐지, 재제정, 채택하고 지방법령 또는 개인의 입안을 지지 혹은 반대</p> <p>(o) 단일 의회구성원 선거구 요청</p> <p>(p) 선거계획 변경을 위한 결의안 통과</p> <p>(q) 거버넌스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지 여부와 그 변경이 주민투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p>

원문	번역
<p>(h) appointing the Leader;</p> <p>(i) agreeing and/or amending the terms of reference for committees, deciding on their composition and making appointments to them;</p> <p>(j) appointing representatives to outside bodies unless the appointment is an executive function or has been delegated by the Council;</p> <p>(k) adopting a members' allowances scheme;</p> <p>(l) changing the name of the area,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alderman or alderwoman or freedom of the borough;</p> <p>(m) resolving under Section 166 of the Gambling Act 2005 not to issue casino premises licenses;</p> <p>(n) making, amending, revoking, re-enacting or adopting bye-laws and promoting or opposing the making of local legislation or personal Bills;</p> <p>(o) making requests for single-member electoral areas;</p> <p>(p) passing a resolution to change a scheme for elections;</p> <p>(q) deciding whether to make proposals for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 deciding whether the change should be subject to approval in a referendum and passing a resolution to make a change;</p> <p>(r) deciding the term of office of the Leader;</p> <p>(s) including a provision in executive arrangements to remove the Leader by resolution and passing such a resolution;</p> <p>(t) making an order giving effect to recommendations made in a community governance review;</p> <p>(u) duty to make a change in governance arrangements;</p> <p>(v) all local choice functions set out in Part 3 of this Constitution, which the Council has decided should be undertaken by itself; (w) preparing and amending the annual Pay Policy Statement under Section 38 of the Localism Act 2011;</p>	<p>에 대한 결정, 변경을 위한 결의안 통과</p> <p>(r) 리더직 임기 결정</p> <p>(s) 결의로 리더를 해임하고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행준비 조항 포함</p> <p>(t) 지역사회 거버넌스 검토에서 권고사항을 유효하게 하는 명령</p> <p>(u) 거버넌스 협약의 변경의무</p> <p>(v) 스스로 수행되는 경우에, 의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Part 3에 명시된 모든 지역 선택 기능 (w) 2011 지역주의법 제38조에 따른 연례 임금 정책문 준비 및 개정</p> <p>(x) 연봉 £100,000 이상이 되거나 그런 제안을 받거나 그러한 연봉을 받는 관료(검사관 포함) 보수 및 £100,000 이상인 퇴직금에 관한 결정</p> <p>(y) 2011 지역주의법 제27절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채택</p> <p>(z) 1992년 지방정부 재정법 제13 A(2)절에 의거 의회 세금 감면제도를 만들거나 개정</p> <p>(za) 법으로 의회에 유보해야 하는 모든 기타 문제</p>

원문	번역
<p>(x) making determinations in relation to the remuneration of posts (including coroner posts) whose remuneration is, or is proposed to be, or would become, £100,000 p.a. or above, and severance packages of £100,000 and above;</p> <p>(y) adopting a Code of Conduct for elected and co-opted members of the Council under section 27 of the Localism Act 2011;</p> <p>(z) making or revising a council tax reduction scheme under section 13 A(2) of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92; and</p> <p>(za) all other matters which, by law, must be reserved to Council</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2 Election and terms of councillors Election and terms. The whole Council was elected in May 2018 with councillors elected for terms of office of either one, two or four years. Thereafter, beginning in 2019 there will be an ordinary election of one third of all councillors held on the first Thursday in May each year, except that in 2021, and every fourth year after there will be no regular election. From 2019 the terms of office of councillors elected in that year onwards (except those elected in by-elections) will be four years starting on the fourth day after being elected and finishing on the fourth day after the date of the regular election four years later.</p>	<p>〈기관 구성 조항〉 2.2. 의원 선거 및 임기 선거 및 임기 전체 의회는 1년, 2년 또는 4년의 임기로 2018년 5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후 2019년 시작해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모든 의원 중 1/3에 대한 정기 선거가 있다. 단, 2021과 그 이후 매 4년마다 정기 선거가 없다. 2019년부터 그 해에 선출된 의원(보궐선거로 선출된 자를 제외하고)의 임기는 선출된 이후 사일째로부터 시작하여 사년이고 사년 이후의 정기 선거일 이후 사일 후에 끝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3 Roles and functions of all councillors (a) Key roles. All councillors will: (i) collectively be the ultimate policy-makers and carry out a number of strategic and corporate management functions; (ii) bring views of their communities into the Council's decision-making process; (iii) effectiv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ir ward and of individual constituents; (iv) deal with individual casework and act as an</p>	<p>〈기관 구성 조항〉 2.3 모든 의원의 역할과 기능 (a) 주요 역할들 모든 의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i) 종합적으로 모든 의원은 궁극적인 정책결정자이며 전략 및 운영관리기능을 수행한다. (ii) 위원회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투입한다. (iii) 지역구와 개인구성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한다. (iv) 개별적인 사례별 사업을 처리하고, 특정 우</p>

원문	번역
advocate for constituents in resolving particular concerns or grievances; (v) respond to constituents' enquiries and representations, fairly and impartially; (vi)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the Council; (vii) be available to represent the Council on other bodies; and (viii)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conduct and ethics.	려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지역사회를 위한 지지자로 활동한다. (v) 질의 및 의견표현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응답한다. (vi) 의회의 통치 및 경영에 참여한다. (vii) 다른 기관들에서 의회를 대표할 수 있다. (viii) 강령과 윤리에 최고 기준을 유지한다.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 내각(the executive) 구성방식 및 역할

○ 부리더 선임방법

- 내각의 리더는 내각의 구성원 중 한명을 부리더로 임명함.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임명대상자와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공지해야함. 임명은 임명대상자와 감사관이 서면공지를 수령한 순간부터 효력을 가짐. 리더는 또한 부리더의 임명을 가장 가까운 의회 회의에서 보고해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4(a))

○ 부리더 해임방법

- 부리더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부리더 자격 또한 상실함. 또한 더 이상 내각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부리더 자격을 상실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4(b))
- 리더가 부리더를 해임할 경우 그 내용이 서면으로 부리더 및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함. 해임의 효력은 해임 공지를 부리더와 감사관이 공지를 수령한 순간부터 발생함. 리더는 부리더의 해임을 가장 가까운 의회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4(b))
- 부리더가 공석이 될 경우 리더는 다른 구성원을 부리더로 임명해야 하며, 공지와 효력에 관한 규정은 최초 임명과 동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4(c))

○ 내각 구성방법

- 부리더 외에 리더는 1명에서 8명까지 내각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음. 각각의 내각구성원은 리더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5(a))
-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기 위해 리더는 해당 의원 및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공지를 해야 하며, 이들이 서면 공지를 수령한 순간부터 임명의 효력이 발생함. 리더는 또한 내각 구성원의 임명을 가장 가까운 의회 회의에서 보고해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5(a))
- 내각 구성원은 자의로 사임할 수 있으며,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시장에 의해 해임될 경우 내각 구성원의 직위를 상실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5(b))
- 시장이 내각 구성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내각 구성원 및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함. 해임의 효력은 대상자와 감사관이 서면 공지를 수령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리더는 내각 구성원의 해임을 가장 가까운 의회 회의에서 보고해야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5(b))
- 리더는 내각 구성원 외의 의원들을 내각구성원의 보조(Assistants to Executive Members)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보조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7)
- 내각구성원의 보조는 같은 역할을 4년 이상 수행할 수 없으며, 내각 구성원 및 조사위원회(Scrutiny Committees)의 구성원은 제외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7)

○ 내각의 역할

- 내각은 지방정부의 기능 중 다른 기관의 사무가 아니거나, 법률 및 지역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능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1).
-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집행부의 중요 의사결정 목록(Executive's Register of Key Decisions; 주로 Forward Plan으로 언급됨)에 게재되며, 주요 결정사항을 집행부 회의에서 의회관료(Council Officers)와 함께 논의

- 할 경우 개인적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대중에 공개 함을 원칙으로 함(Summary and Explanation)
-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의회의 전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 (Summary and Explanation)

〈표 3-16〉 내각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4 Deputy Leader (a) The Leader will appoint one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to act as Deputy Leader. The Leader must give written notice of such appointment to both the person who he/she is appointing as Deputy Lead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appointment of the Deputy Leader will take effect on receipt of the Leader's written notice by both the person who the Leader is appointing as Deputy Lead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keep a written record of the appointment of the Deputy Leader and the Leader will report the appointment to Council and the Executiv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b) The Deputy Leader wi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Leader's term of office unless before that date:- (i) he/she resigns from the office; or (ii) he/she is no longer a councillor for any other reason; or (iii) he/she is no longer a member of the Executive; or (iv) he/she is removed by the Leader who must give written notice of such removal to both the Deputy Leader and to the Monitoring Officer. The removal of the Deputy Leader will take effect on receipt of the Leader's written notice by both the Deputy Lead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keep a written record of any removal of the Deputy Leader and the Leader will report any</p>	<p>〈기관 구성 조항〉 7.4 부리더 (a) 리더는 내각 구성원 중 하나를 부리더로 지명한다. 리더는 부리더와 감사관(The Monitoring Officer)으로 선임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지명에 대해서에게 서면을 공지하여야 한다. 부리더 지명은 리더가 부리더와 감사관으로 지명한 두 사람이 리더의 서면 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감사관은 부리더 지명을 기록하고, 리더는 지방 의회와 내각에 지명 사실을 최대한 빨리 보고한다. (b) 부리더는 다음 날짜 이전이 아닌 한, 리더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i) 사임하거나 (ii) 다른 이유로 의원직을 더 유지하지 못하거나, (iii) 더 이상 내각 구성원이 아니게 되거나, (iv) 부리더 및 감사관에게 리더가 그 해임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임기를 유지한다. 부리더 해임은 부리더와 감사관이 통보한 서면 수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감사관은 부리더 해임에 대한 서면기록을 보관하며, 리더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각에 보고한다. (c) 부리더가 공석이 되면 리더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리더는 자신이 부리더로 임명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이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리더의 임명은 부리더로 임명된 자와 감사관이 서면 통보서를 수령할 때 그 효력을 발한다. 감사관은 부리더 임명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하며, 리더는 의회와 내각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p>

원문	번역
<p>such removal to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at the earliest opportunity.</p> <p>(c) Where a vacancy occurs in the office of Deputy Leader, the Leader must appoint another person in his/her place. The Leader must give written notice of such appointment to both the person he/she is appointing as Deputy Leader and to the Monitoring Officer. The appointment of the Deputy Leader will take effect on receipt of the Leader's written notice by both the person who the Leader is appointing as Deputy Lead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keep a written record of the appointment of the Deputy Leader and the Leader will report the appointment to Council and the Executive at the earliest opportunity.</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5 Other Executive members (a) In addition to the Deputy Leader, the Leader will appoint between one and eight further Executive Members to hold such Portfolios as the Leader shall determine. When appointing an Executive Member the Leader must give written notice of the appointment and of the Portfolio to both the person who he/she is appointing as an Executive Member and to the Monitoring Officer. The appointment of the Executive Member will take effect on receipt of the Leader's written notice by both the person who the Leader is appointing as an Executive Memb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keep a written record of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Member and the Leader will report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Member and their Portfolio to Council and the Executiv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b) An Executive member will hold office until the end of the Leader's term of office unless before that date - (i) he/she resigns from the office; or</p>	<p>〈기관 구성 조항〉 7.5 다른 내각 구성원. (a) 부리더에 추가로, 리더는 리더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1~8명의 내각구성원을 임명한다. 내각 구성원을 임명할 때 리더는 임명된 자와 감사관에게 그 내용 및 구성원의 포트폴리오 서면을 통보해야 한다. 내각 구성원 선임은 리더가 내각 구성원과 감사관으로 선임한 사람들 모두에게 서면통보가 수령된 즉시 효력 발생된다. 감사관은 내각 구성원 선임 기록을 보관하고, 리더는 내각 구성원 선임과 그 포트폴리오를 의회의 내각에 최대한 빨리 보고한다. (b) 내각 구성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임기 말까지 직을 유지한다: (i) 사임하거나 (ii) 다른 이유로 의원직을 더 유지하지 못하거나, (iii) 리더가 서면으로 해임시키고, 그 사실을 내각구성원 및 감사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내각 구성원의 해임은 부리더와 감사관이 통보한 서면 수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감사관은 내각 구성원 해임에 대한 서면기록을 보관하며, 리더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각에 보고한다.</p>

원문	번역
<p>(ii) he/she is no longer a councillor for any other reason; or (iii) he/she is removed by the Leader who must give written notice of such removal to both the Executive Member and to the Monitoring Officer. The removal of an Executive Member will take effect on receipt of the Leader's written notice by both the Executive Member and the Monitoring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keep a written record of any removal of an Executive Member and the Leader will report any such removal to Council and the Executive at the earliest opportunity.</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7 Assistants to Executive Members The Leader may appoint other councillors to act as Assistants to those Executive members with a specific Portfolio, provided that there shall be no more than seven such Assistants. A Councillor may not be an Assistant in respect of the same Portfolio for more than 4 years. Assistants to Executive members are not members of the Executive and may not serve on Scrutiny Committees.</p>	<p>〈기관 구성 조항〉 7.7 내각구성원의 어시스턴트 리더는 특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각 구성원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할 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의원은 4년 이상 동일한 포트폴리오에서 어시스턴트가 될 수 없다. 내각 구성원의 어시스턴트는 내각 구성원이 아니다. 또한 정밀 조사위원회에서 일할 수 없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1 Role The Executive Leader ("the Leader") and the Executive will carry out all of the local authority's functions which are not the responsibility of any other part of the local authority, whether by law or under this Constitution.</p>	<p>〈기관 구성 조항〉 7.1 역할 내각 리더("리더")와 내각은 법에 의해서든 본 구성 조항에 의해서든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부분의 책임이 아닌 지방당국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p>
<p>〈Summary and Explanation〉 How decisions are made The Executive is part of the Council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day-to-day decisions. The Executive is made up of a Leader appointed by the Council and a cabinet of up to 9 other councillors (including a Deputy Leader) whom the Leader appoints. When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or made, these are published</p>	<p>〈요약 및 설명〉 의사결정 방법 내각은 가장 일상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의 일부이다. 내각은 의회가 지명한 리더가 구성하며, 리더가 지명한 최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부리더 포함). 시장의 결정이 논의되거나 내려질 때, 이는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내각의 주요 결정 등록(이전에는 미래계획으로 칭함) 공표된다. 만약 주요 결정이 의회 관료와 논의되</p>

원문	번역
<p>in the Executive's Register of Key Decisions (formerly referred to as the Forward Plan) in so far as they can be anticipated. If these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with council officers at a meeting of the Executive, this will generally be open for the public to attend except where personal or confidential matters are being discussed. The Executive has to m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Council's overall policies and budget. If it wishes to make a decision which is outside the budget or policy framework, this must be referred to the Council as a whole to decide (except in the case of urgency).</p>	<p>어야 할 경우 개인정보 또는 기밀과 연계되지 않는 한 대중에 공개된다. 내각은 의회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산이나 정책의 프레임 밖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전원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긴급한 경우 제외).</p>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위원회(committee) 구성방식 및 역할

- 수석행정관의 유형
 - 수석행정관을 포함한 10명의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²¹⁾은 의회총회에서 고용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1(b))
-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의 역할
 - 수석행정관은 관료의 수장(Head of Paid Service)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 부서 구성을 결정하고 공표함. 또한 관리구조와 공무원의 배치도 공표되는 내용에 포함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1(e))

21) Manchester City Council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의 구성

- Chief Executive (Head of Paid Service)
- Deputy Chief Executive
- City Treasurer (Chief Finance Officer)
- City Solicitor (Monitoring Officer)
- Strategic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 Executive Director of Strategic Commissioning/Director of Adult Social Services
- Strategic Director (Development)
- Director of Population Health and Wellbeing

- 수석행정관은 의회총회에 의회 사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며, 업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수준 등을 의회총회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2(a))
- 최고 행정관은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을 겸임할 수 없으나, 자격을 갖춘 경우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을 겸임할 수 있음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2(b))
-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은 지역헌법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기준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및 내각의 인명부를 관리함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3(a)&(c)&(d)). 또한 대중이 내각과 의회의 의사결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3(e))
- 감사관은 수석행정관 및 수석재무관과 협의를 통해 의회와 내각에 행정기능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감사관의 보고서는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제안과 의사결정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함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3(b))
- 감사관은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정해진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 잘못된 행정행위, 재정적 부적절성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2.3(f)&(g))

○ 위원회(committee) 구성방식

- 의회(Council)는 의회의 지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함²²⁾. 구체적 역할배분은 Constitution의 Part 3

22) 현재 맨체스터 시 의회가 운영 중인 위원회 목록

- Planning and Highways Committee
- Licensing and Appeals Committee
- Licensing Committee
- Licensing Policy Committee
- Employee Appeals Committee
- Art Galleries Committee

에서 다루고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1)

〈표 3-17〉 수석행정관 및 위원회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2.1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b) Chief Officers. The Council will engage persons, who will be designated chief officers and shall include a 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and a Director of Adult Social Services, for the posts designated as Chief Officers in Part 8 of this Constitution: (e) Structure. The Head of Paid Service will determine and publicise a description of the overall departmental structure of the Council showing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deployment of officers. This is set out at Part 8 of this Constitution.</p>	<p>〈기관 구성 조항〉 12.1 관리 구조 (a) 일반. 의회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직원(공무원이라 칭함)을 둘 수 있다 (b)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 의회는 고위 공무원으로 지명되고 아동서비스 국장, 성인 사회서비스 국장을 포함한 Part 8의 고위공무원단 업무를 수행할 관료를 채용할 수 있다 (e) 구조. 유료 서비스 장은 그 경영 구조 및 공무원 배치를 보여주는 지방의회의 전반적 부서 구조를 결정하고 공개한다. 이는 Part 8 에 명시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2.2 Functions of the Head of Paid Service (a) Discharge of functions by the Council. The Head of Paid Service will report to full Council on the manner in which the discharge of the Council's functions is co-ordinated, the number and grade of officers required for the discharge of functions and the organisation of officers. (b) Restrictions on functions. The Head of Paid Service may not be the Monitoring Officer but may hold the post of Chief Finance Officer if a qualified accountant.</p>	<p>12.2. the Head of Paid Service의 기능 (a) 의회에 의한 기능 이행. The Head of Paid Service는 의회총회에 의회의 기능 이행 방법, 그에 따른 필요 임원의 수나 직급 등에 대해 보고한다. (b) 기능 제한. 관료의 수장(The Head of Paid Service)은 감사관은 될 수 없으나, 회계 사인 경우 수석재무관(CFO) 직을 보유할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2.3 Functions of the Monitoring Officer</p>	<p>12.3. 감사관의 기능 (a) 지역 헌법 유지 감사관은 지역헌법을 최신</p>

- Constitutional and Nomination Committee
- Personnel Committee
- Audit Committee

원문	번역
<p>(a) Maintaining the Constitution. The Monitoring Officer will maintain an up-to date version of the Constitution and will ensure that it is widely available for inspection by members, staff and the public.</p> <p>(b) Ensuring lawfulness and fairness of decision-making.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 of Paid Service and Chief Finance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report to the full Council or to the Executive in relation to an executive function</p> <p>- if he or she considers that any proposal, decision or omission would give rise to unlawfulness or if any decision or omission has given rise to maladministration. Such a report will have the effect of stopping the proposal or decision being implemented until the report has been considered.</p> <p>(c) Supporting the Standards Committe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igh standards of conduct through provision of support to the Standards Committee. The Council has delegated to the Monitoring Officer the following powers to deal with matters of conduct and ethical standards:</p> <p>(d) Maintaining the Council's Register of Members' Interests. The Monitoring Officer will establish and maintain the Council's Register of Interests of Members and Co-opted Members as required by section 29(1) of the Localism Act 2011 and ensure that it is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published on the Council's website as required by the Act.</p> <p>(e) Proper officer for access to information. The Monitoring Officer will ensure that:</p> <p>(i) executive decision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ose decisions and relevant officer reports and background paper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Authorities (Executive Arrangements)</p>	<p>버전으로 유지하고, 구성원과 직원, 대중에 의한 협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p> <p>(b) 의사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 제안, 결정, 누락이 불법을 초래하거나, 결정이나 부작위가 행정실책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CFO 및 관료의 수장(the Head of Paid Service)과 상의하여 감사관은 집행기능 관련 전체의회 또는 내각에 보고한다.</p> <p>이러한 보고는 해당 보고가 고려될 때까지 제안이나 결정이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p> <p>(c) 표준 위원회 지원. 감사관은 표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 촉진 및 유지에 기여한다. 의회는 행동 강령 및 윤리적 기준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감사관에게 위임한다.</p> <p>(d) 의회의 이해관계 등록 유지. 감사관은 지역 주의법 2011의 제29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이해관계등록을 유지하고, 검사해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다.</p> <p>(e) 정보접근에 대한 적절한 감사관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받는다.</p> <p>(i) 내각결정, 그 결정에 대한 이유 및 관련 보고서와 배경 서류는 2012년 지방자치당국 (정보에 대한 회의 및 접근) (영국) 규정의 요건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공개될 수 있다.</p> <p>(ii) 위임 받은 비 내각의 결정은 그 배경 및 이유와 함께 2014년 지방정부 공개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공개된다.</p> <p>(f) 내각의 결정은 예산과 정책 프레임워크 범위 내여야 하며, 감사관은 그 결정인지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를 조언한다.</p> <p>(g) 조언 제공. 감사관은 모든 의원에게 의사결정, 부적절한 관리, 재무 부적절성, 과실 및 예산과 정책 프레임 관련 문제제기를 할 권한을 가지며, 그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p>

원문	번역
<p>(Meetings and Access to Information) (England) Regulations 2012; and</p> <p>(ii) non-executive decisions taken under delegated power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ose decisions and background papers, are made publicly available as soon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penness of Local Government Bodies Regulations 2014.</p> <p>(f) Advising whether executive decisions are within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The Monitoring Officer will advise whether decisions of the Executive are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p> <p>(g) Providing advic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provide advice on the scope of powers and authority to take decisions, maladministration, financial impropriety, probity and budget and policy framework issues to all councillors.</p>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선임방식 변경

- 지역헌법의 개정은 오로지 감사관의 제안과 의회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단, 지역헌법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감사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2(a))
- 리더-내각형에서 시장형 모델로 기관구성을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의회는 제안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의 유권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변경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2(b))

〈표 3-18〉 기관구성방식 전환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5.2 Changes to the Constitution (a) Approval Changes to the Constitution will only be approved by the full Council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posal by the Monitoring Officer and in accordance with Rules 18.5 and 18.6 of the Council Procedure Rules in Part 4 Section A of this Constitution, PROVIDED that minor amendments which do not materially affect the constitution may be made by the Monitoring Officer. (b) Change from a Leader and Cabinet form of Executive either to Mayoral form of Executive or vice versa. The Council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consult with local electors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n the area when drawing up proposals and must hold a referendum.</p>	<p>15.2. 지역헌법 변경 (a) 승인 지역헌법 변경은 오직 감사관에 의한 제안서 검토 후 의회총회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절차는 Part 4의 의회 절차 규정 18.5.와 18.6을 따른다. (b) 리더-내각형에서 시장-내각형으로의 변경 또는 그 반대로의 변경. 의회는 선거인 및 기타 관심있는 사람들과 지역 내에서 상의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p>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내각에 대한 견제 및 협력

- 지역헌법을 통해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의회가 사전에 정한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Summary and explanation),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총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Council Procedure Rule 13.4)
- 의회는 내각의 리더 및 내각의 구성원, 그리고 위원회의 장에게 제출된 보고 및 맨체스터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음. 질의를 받은 대상기관 혹은 기관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Council Procedure Rule 23.2 & 23.3 & 23.5)
- 내각은 핵심의사결정 목록을 바탕으로 예산 및 정책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2.2), 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채택함(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1.1). 내각의 리더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의 구성원 들도 의원 중에서 임명되며, 집행부는 지방정부(Council)의 일부로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음(Summary and explanation)

- 내각, 내각의 위원회, 내각의 구성원, 그리고 내각의 기능을 집행하는 관 료의 의사결정은 정해진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야함(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5.1)
 - 정해진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를 벗어난 의사결정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함(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6.1) 긴급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고 행정관(Chief Executive) 및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이 해당 사안이 다음 의회 회기 이전에 결정되 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에 해가된다고 조언하는 경우임(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6.1(a)). 또한 관 련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긴급함이 인정됨(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6.1(b))
 - 긴급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의사결정 기록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이후 의회 회의에 긴급 의사결정의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함(Budget and Policy Procedure Rules 6.2 & 6.3)
- 집행부 및 의회(시장 및 내각 포함) 관리 견제: 기준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 맨체스터 정부는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관리 및 견제수단으로 감사관(Monitoring Officer)와 함께 기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 및 조사 위원회(Scrutiny Committee)를 두고 있음
 - 기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는 시장, 의원 등 지방정부 구성원에 대하여 윤리규정(code of conduct)을 바탕으로 윤리수준에 대한 감독업 무를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3)
 - 기준위원회는 맨체스터 의회 의원 6명, Ringway 페리쉬 의회 의원 1명, 외부임명(의회가 임명)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2(a)),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임명됨(Council Procedure Rules 13.3(f))

- 기준위원회는 시장과 의원 및 co-opted members에 대한 윤리규정 준수 교육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윤리규정 채택과 개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3)
- 기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사결정을 위한 제안의 형태로 의회에 제출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9.3(g)). 이 제안은 의원에 대한 불신임과 내각 구성원의 해임건의를 포함함.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처분이 이루어지는 않음(이 부분은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한 부분임)
- 의회는 지방정부의 특정 기능²³⁾들에 조사위원회(Scrutiny Committees)를 운영하고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1)
- 각 위원회는 최소 10인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됨(Scrutiny Procedure Rule 1.2). 내각의 구성원 혹은 내각 구성원의 보조는 조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Scrutiny Procedure Rule 1.3)
- 이 외에도 위원회는 위원회의 최대 2인을 의결권이 없는 위원(non-voting co-optees)으로 선임할 것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음(Scrutiny Procedure Rule 1.11)
- 조사위원회(Scrutiny Committees)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결정 사항 및 성과를 감독하며, 정책이슈(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개발을 포함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3)

23) 조사위원회(Scrutiny Committees)설치 분야

- Children and Young People
- Communities and Equalities
-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 Economy
- Health
- Resources and Governance

- 조사위원회는 내각이나 관료의 의사결정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안을 회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재고를 제안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2(iv))
- 표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독 및 조사위원회도 제안(recommendation)의 형태로 심의 결과 등을 의회와 집행부에 전달하며, 공식 보고서에 제안의 내용을 반영함(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8.3 & 8.4)

〈표 3-19〉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Summary and Explanation〉 How decisions are made The Executive is part of the Council which is responsible for most day-to-day decisions. The Executive is made up of a Leader appointed by the Council and a cabinet of up to 9 other councillors (including a Deputy Leader) whom the Leader appoints. When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or made, these are published in the Executive's Register of Key Decisions (formerly referred to as the Forward Plan) in so far as they can be anticipated. If these major decisions are to be discussed with council officers at a meeting of the Executive, this will generally be open for the public to attend except where personal or confidential matters are being discussed. The Executive has to m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Council's overall policies and budget. If it wishes to make a decision which is outside the budget or policy framework, this must be referred to the Council as a whole to decide (except in the case of urgency).</p>	<p>〈요약 및 설명〉 의사결정 방법 내각은 일상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의회의 일부이다. 내각은 의회가 지명한 리더가 구성하며, 리더가 지명한 최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부리더 포함). 시장의 결정이 논의되거나 내려질 때, 이는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내각의 주요 결정 등록(이전에는 미래계획으로 칭함) 공표된다. 만약 주요 결정이 의회 관료와 논의되어야 할 경우 개인정보 또는 기밀과 연계되지 않는 한 대중에 공개된다. 내각은 의회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산이나 정책의 프레임 밖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전원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긴급한 경우 제외).</p>
<p>〈Council Procedure Rules〉 13.4 The business at all ordinary Council meetings will consist of: - a) the Lord Mayor and Deputy Lord Mayor are absent, to appoint a person to chair the meeting. b) Any announcements or special business</p>	<p>〈의회 절차 규정〉 13.4. 정기 의회의 회의 a) 시장 및 부시장이 부재시 의장을 회의에서 지명한다. b) 시장이 모든 공지와 특정 사업(우급 사업 제출을 포함)을 소개한다. c) 구성원들의 금전, 비금전적 이익에 관한 공개</p>

원문	번역
<p>(including the submission of any urgent business) introduced by the Lord Mayor.</p> <p>c) Disclosure of pecuniary and non-pecuniary interests by members.</p> <p>d) Approval of the minutes of the last meeting as a correct record. (The Lord Mayor will move that the minutes be approved and, if so approved, will sign them as a correct record. There will be no discussion on the minutes except as to their accuracy).</p> <p>e) Consideration by the Council of any Petitions Requiring Debate that have bee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Council's Petition Scheme and which have been included on the Agenda for the Council meeting.</p> <p>f) Any business remaining from previous meetings.</p> <p>g) Report of the Executive and any questions under Rules 23.2 and 23.3.</p> <p>h) Reports or minutes of scrutiny committees, including matters referred to Council by scrutiny committees.</p> <p>i) Minutes of other committees and any questions under Rules 23.2 and 23.3.</p> <p>j) Questions to nominated spokespersons of joint authorities (as in Rule 24.1).</p> <p>k) Notices of Motion submitted under Rule 14.1 (to be dealt with in their order of receipt by the Chief Executive).</p> <p>l) Any other business specified in the summons to the meeting.</p>	<p>d) 지난 회의 의사록의 승인을 정확히 기록 (시장은 해당 의사록이 승인되도록 하고, 그렇게 승인되는 경우, 이를 정확한 기록으로 서명한다. 그 정확성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의사록에 대한 협의는 없다).</p> <p>e) 의회가 청원계획에 따라 제출하고 의회 회의에 의제로 포함된 청원서를 요하는 논의에 대한 검토</p> <p>(f) 기존 회의로부터 아직 남은 논의</p> <p>(g) 내각보고서 및 기타 규칙 23.2와 23.3 에 의한 질의</p> <p>(h) 조사 위원회에 의해 의회에 회부된 사안을 포함하여 정밀조사위원회의 보고사항 혹은 의사록</p> <p>(i) 규칙 23.2와 23.3에 따른 다른 위원회의 의사록 및 질의</p> <p>(j) 공동 당국의 대변인으로 지명된 자의 질의 (규칙 24.1과 같음)</p> <p>(k) 규칙 14.1에 따라 제출된 움직임의 공지 (수석 행정관에 의한 수령 명령에서 다뤄 짐)</p> <p>(l) 그밖에 회의소집서에 명시된 기타 사항</p>
<p><Council Procedure Rules></p> <p>23.2 Subject to Rule 23.4, a member of the Council may ask the Leader of the Council, a member of the Executive, or the chair of a committee, a question on any matter in relation to which the Council has powers or duties, or which affects the interests of Manchester or its residents.</p> <p>23.3 Subject to Rule 23.4, a member of the committee or sub committee may ask the chair of it a question on any matter in relation to which the Council has powers or duties, or</p>	<p><의회 절차 규정></p> <p>23.2. 규칙 23.4에 따라, 의회 구성원은 리더, 내각구성원, 위원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p>- 의회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해 맨체스터 또는 그 거주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질의</p> <p>23.3. 규칙 23.4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또는 소위원회 구성원은 의회가 권한이나 의무를 가지거나, 맨체스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의 회부 조건에 드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p>

원문	번역
<p>which affects Manchester, and which falls within the terms of reference of that committee or sub committee.</p> <p>23.5 An answer may take the form of: -</p> <p>a) a direct oral answer;</p> <p>b) where the desired information is contained in a publication of the Council or other published work, a reference to that publication; or</p> <p>c) where the reply cannot conveniently be given orally, a written answer circulated later to the questioner</p>	<p>23.5. 답변의 형태는</p> <p>a) 직접적인 구두답변,</p> <p>b) 의회의 발간물 또는 다른 출판물 등에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출판물에 대한 언급,</p> <p>c) 구두답변이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회신하는 등이 있다</p>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2.2 The Executive will publicise through the Register of Key Decisions and other methods a timetable for making proposals to the Council for the adoption of any plan, strategy or budget that forms part of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nd its arrangements for consultation after publication of those initial proposals.</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2.2 내각은 예산결정 및 기타 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계획, 전략, 예산의 채택을 위해 의회에 주요 결정 등록부 및 기타 방법의 등록을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이를 발표한 후 초기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일정을 공표한다.</p>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1.1 The Counci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option of its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s set out in Article 4 of Part 2 of this Constitution. Once a budget or a policy framework is in place,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to implement it.</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1.1 의회는 이 법 Part 3의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책임이 있다. 일단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집행은 내각의 책임이다.</p>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5.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and Financi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budget, and paragraphs 6 and 8 in relation to the policy framework, the Executive, committees of the Executive, individual members of the Executive and any officers discharging Executive functions may only take decisions which are in line with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If any of these bodies or persons wishes to make a decision which is contrary to the policy framework, or contrary to or not wholly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approved by full</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5.1 예산에 관한 제7항 및 재정규칙, 정책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6항을 조건으로, 내각, 내각 위원회, 내각의 구성원, 기타 내각 기능을 수행하는 관료는 예산과 정책 프레임워크와 부합하는 결정만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관들 중 누구라도 의회총회가 정한 정책의 프레임워크 및 예산에 위배되거나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경우 의회가 할 수 있다.</p>

원문	번역
<p>Council, then that decision may only be taken by the Council.</p>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6.1 The Executive, a committee of the Executive, an individual member of the Executive or officers, discharging Executive functions] may take a decision which is contrary to the Council’s policy framework if the decision is a matter of urgency. However, the decision may only be taken if:</p> <p>(a) either the Chief Executive, the Chief Finance Officer or the Monitoring Officer advise in writing that the legal or financial position of the Council or the interests of the Council and/or the residents of Manchester would be prejudiced if the matter were not determined before the next scheduled Council meeting, AND</p> <p>(b) the chair of a relevant scrutiny committee (or in their absence the Lord Mayor or, in the absence of both, the Deputy Lord Mayor) agrees that the decision is a matter of urgency.</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6.1. 내각, 내각의 위원회, 내각 기능을 수행하는 내각 구성원이나 관료 등은 결정이 긴급한 문제인 경우 의회의 정책 프레임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p> <p>(a) 수석행정관, 수석재무관, 감사관은 다음으로 예정된 의회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의회의 법 또는 재정적 의회 및/혹은 맨체스터 주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는 조언을 한다.</p> <p>(b) 관련 정밀조사위원회의 의장(혹은 시장의 공식 시에 또는 둘 모두의 공식시에, 부시장) 그 결정이 긴급한 문제임에 동의해야 한다.</p>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6.2 The advice of the Chief Executive, Chief Finance Officer or Monitoring Officer and the consent of the chair of the relevant scrutiny committee (or, if relevant, the Lord Mayor or Deputy Lord Mayor) to the decision being taken as a matter of urgency must be noted on the record of the decision.</p> <p>6.3 Following the decision, the decision taker will provide a full report to the next available Council meeting explaining the decision, the reasons for it and why the decision was treated as a matter of urgency.</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6.2. 수석행정관, 수석재무관, 감사관의 조언과 관련된 정밀조사위원회의(혹은, 관련된 경우 시장이나 부시장) 동의는 사안의 긴급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정을 기록해야 한다.</p> <p>6.3 결정에 따라 의사결정권자는 결정, 이유, 긴급 사안으로 판단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를 차기 의회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p> <p>9.3 Role and Functions</p> <p>The Council has delegated to the Standards Committee the following powers to deal with matters of conduct and ethical standards, and the Council’s Standards Committee has the</p>	<p>〈기관 구성 조항〉</p> <p>9.3 역할 및 기능</p> <p>의회는 윤리기준과 강령 사안에 대해 다루는 다음의 권한을 표준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의회의 표준 위원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한다:</p> <p>(a) 의원, 다른 의원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구성</p>

원문	번역
<p>following role and functions:</p> <p>(a) Promoting and maintaining high standards of conduct by Councillors, Co-opted Members and church and parent governor representatives;</p> <p>(b) Assisting Councillors, Co-opted Members and church and parent governor representatives to observe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p> <p>(c) Advising the Council on the adoption, revision or replacement of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nd the Council’s Arrangements for dealing with Complaints that Council Members and Co-opted voting members of the Health and Wellbeing Board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the Council’s Arrangements”);</p> <p>(d) Monitoring the operation of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nd the Council’s Arrangements;</p> <p>(e) Advising, training or arranging to train Councillors and Co-opted Members and church and parent governor representatives on matters relating to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nd other issues relating to Standards and Conduct;</p> <p>(f) T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the Council’s Arrangements whether a Council Member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nd, if so, to determine what action (if any) to take;</p> <p>(g) To take decisions in respect of a Council Member who is found on a hearing held in accordance with the Council’s Arrangements t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the Subject Member”),</p> <p>(i) Publication of the findings of the Standards (Hearing) Sub-Committee in respect of the Subject Member’s conduct;</p> <p>(ii) Reporting the findings of the Standards (Hearing) Sub-Committee to Council for information;</p>	<p>원, 교회 및 통치 대표에 의한 높은 행동 기준을 촉진 및 유지.</p> <p>(b) 의원, 다른 의원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구성원, 교회 및 통치 대표가 구성원을 위한 의회의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보조</p> <p>(c) 의회의 윤리규정의 채택, 개정, 교체에 대한 자문 및 의회 구성원 및 다른 의원의 동의로 선출된 보건 및 웰빙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의회 구성원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의회 불만처리를 위한 의회의 조치 (“의회의 조치”)</p> <p>(d) 의회 구성원 강령 및 약정에 대한 운영 감시</p> <p>(e) 의원 및 선출 구성원과 교회 및 통치자 대표에 대해 의회 구성원 행동강령 및 표준, 행동 관련 기타 문제에 대해 훈련, 자문, 준비</p> <p>(f) 의회 약정에 따라 의회 구성원이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p> <p>(g) 의회 약정에 따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의회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의회 구성원에(“대상 구성원”) 대하여 결정</p> <p>(i) 주요 구성원의 행동에 관해 표준(청문회) 소위원회에 조사결과 발표,</p> <p>(ii) 표준 (청문회) 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정보위원회에 보고,</p> <p>(iii) 대상 구성원에 대한 권고안을 문책,</p> <p>(iv) 대상 구성원 집단의 리더에게 대상 구성원이 의회의 모든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권고 (혹은 집단에서 벗어난 구성원의 경우에는 의회에게)</p> <p>(v) 해당 구성원이 내각으로부터 해임되거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리더에게 권고,</p> <p>(vi) 대상 구성원을 위한 훈련을 감사관이 주선하도록 지시(혹은 Ringway Parish Council에 권고),</p> <p>(7) 의회에(혹은 Ringway Parish Council) 의 해 선임 혹은 지명된 대상 구성원을 모든 외부 선임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점을 의회에(혹은 Ringway Parish Council에) 권고</p> <p>(8) 컴퓨터, 웹사이트, 전자메일, 인터넷 액세스 등과 같이 의회가 특정 회원에게 제공한 시설의 철회 (또는 철회한 Ringway Parish Council에)의 권고</p>

원문	번역
<p>(iii) Recommendation to Council that the Subject Member should be censured;</p> <p>(iv) Recommendation to the Subject Member's Group Leader (or in the case of ungrouped Members to Council) that the Subject Member should be removed from any or all Committees or Sub-Committees of the Council;</p> <p>(v) Recommendation to the Leader that the Subject Member should be removed from the Executive, or removed from their Portfolio responsibilities;</p> <p>(vi) Instructing the Monitoring Officer (or recommending to Ringway Parish Council) to arrange training for the Subject Member;</p> <p>(vii) Recommendation to Council (or to Ringway Parish Council) that the Subject Member should be removed from all outside appointments to which the Subject Member has been appointed or nominated by the Council (or by Ringway Parish Council);</p> <p>(viii) Withdrawal of (or recommendation to Ringway Parish Council that it withdraws) facilities provided to the Subject Member by the Council, such as a computer, website and/or e-mail and internet access; or</p> <p>(ix) Placing such restrictions on the Subject Member's access to Council staff,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as may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p>	<p>(9)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회 직원, 건물 또는 건물 일부 등에 대한 대상 구성원의 접근 제한</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9.2 Composition (a) Membership The Standards Committee will be composed as follow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x elected Members of Manchester City Council (none of whom may be the leader of any political group and no more than one of whom may be a member of the Executive); • One Member of Ringway Parish Council who is not a Member of Manchester City Council (the Parish Member); and • Two people appointed by the Council who are not councillors or officers of the Council (Independent Members). 	<p><기관 구성 조항> 9.2 구성 (a) 멤버십 표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체스터 시 의회의 구성원 중 6명을 선출 (이 중 누구도 정치 집단의 리더일 수 없으며, 이들 중 한 명 이상은 내각 구성원일 수 없다); • 맨체스터 시 의회 구성원이 아닌 Ringway Parish Council의 구성원(Parish 구성원); 과 • 의회 의원이나 관료가 아닌 두 명은 의회가 임명

원문	번역
<p><Council Procedure Rules> 13.3_f) Appointment of scrutiny committees, a Standards Committee, an Art Galleries Committee, a Licensing Committee and such other committees as the Council considers appropriate to deal with matters which are neither reserved to the Council nor are executive functions as set out in Part 3 of the Constitution</p>	<p><의회 절차 규정> 13.3_f) 위원회에 귀속되거나 Part 3에 명시된 집행기능이 아닌 정밀조사위원회, 표준 위원회, 아트갤러리 위원회, 라이선스 위원회 등이 다루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기타위원회의 의회 임명</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1 Terms of Reference The Council will appoint the scrutiny committees set out below to discharge the functions conferred by section 9F of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Committee 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unities and Equalities Neighbourhoods and Environment Economy Health Resources and Governance The specific remit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above Committees are set out in Part 3 Section E of this Constitution.</p>	<p><기관 구성 조항> 6.1. 위임사항 의회는 2000년 지방정부법의 9F절에 따라 수 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정밀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 아동 및 청년 커뮤니티와 평등 이웃과 환경 경제 건강 자원 및 거버넌스 상기 위원회의 구체적인 자금 및 위임조건은 Part 3 E절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p>
<p><Scrutiny Procedure Rules> 1. Establishment and Membership 1.1 The Council will establish the scrutiny committees set out in Article 6 of part 2 of this Constitution and will appoint to them as it considers appropriate from time to time. 1.2 Each scrutiny committee shall comprise at least 10 elected members. 1.3 All Councillors except members of the Executive (and Assistants to Executive Members) may be members of a scrutiny committee. However, no member may be involved in scrutinising a decision in which he/she has been directly involved. 1.11 Without prejudice to 1.5 and 1.7 above, scrutiny committees shall be entitled to recommend to Council the appointment of up to two people as non-voting co-optees,</p>	<p><조사 절차 규정> 1. 설립 및 멤버십 1.1 의회는 Part 2의 제6조에 규정된 정밀 조 사위원회를 수립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위 원을 지명한다. 1.2. 각 정밀조사위원회는 최소 10명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1.3. 내각 구성원 및 그 어시스턴트를 제외한 모든 의원은 정밀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한 결정을 면밀히 검토 하는 데에는 참여할 수 없다. 1.11. 위 1.5와 1.7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밀조사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는 공동 피선거인 으로 최대 2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단, 위원 회 위원의 과반수는 선출직 구성원이어야 한다.</p>

원문	번역
<p>provided that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any committee are elected members</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3 Specific functions (a)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Scrutiny committees may: (i) assist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the development of its budget and policy framework by in-depth analysis of policy issues; (ii) conduct research, community and other consultation in the analysis of policy issues and possible options; (iii) consider and implement mechanisms to encourage and enhance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iv) question members of the Executive and/or committees and chief officers about their views on issues and proposals affecting the area; and (v) liaise with other external organisations operating in the area, whether national, regional or local,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local people are enhanced by collaborative working. (b) Scrutiny. Scrutiny committees may: (i) review and scrutinise the decisions made by and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nd/or committees and council officers both in relation to individual decisions and over time; (ii) review and scrutinise the performance of the Council in relation to its policy objectives, performance targets and/or particular service areas; (iii) question members of the Executive and/or committees and chief officers about their decisions and performance, whether generally in comparison with service plans and targets over a period of time,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decisions, initiatives or projects; (iv) make recommendations to the Executive and/or appropriate committee and/or Council arising from the outcome of the scrutiny process;</p>	<p>〈기관 구성 조항〉 6.3 구체적 기능 (a) 정책개발 및 평가. 정밀조사위원회는 (i) 정책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의회와 내각이 예산 및 정책 프레임 개발회와 내각이 예산 및 정책 프레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 조사 및 커뮤니티와 기타 정책이슈 및 대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iii) 정책 대안 개발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장려하는 매커니즘을 실행한다. (iv) 내각 구성원 및 혹은 위원회와 고위 관리직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다. (v) 국가, 지역, 기타 외부기관과 협력 업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기타 외부 조직과의 협력을 한다. (b) 정밀조사. 정밀조사위원회는 (i) 개별 결정 및 내각 등의 결정, 성과를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한다. (ii) 정책목표, 성과목표, 특정 서비스 분야 관련 의회의 성과를 검토하고 면밀히 조사한다. (iii)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획, 목표와 비교해 특정한 결정,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관련 내각 및 의회에 결정과 성과를 질의한다. (iv) 조사과정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한다. (v) 타 공공기관의 성과를 검토, 정밀조사하고 조사위원회와 지역주민들에게 그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필요시 동의 하에 증거를 질의 하거나 수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p>

원문	번역
<p>(v) review and scrutinise the performance of other public bodies in the area and invite reports from them by requesting them to address the scrutiny committee and local people about their activities and performance, and question and gather evidence from any person (with their consent).</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2_(iv) exercise (subject to the Scrutiny Procedure Rules) the right to call in decisions made but not yet implemented by the executive or by an officer (where the officer has made an executive key decision) and to recommend that the decision be reconsidered by the Executive or officer who made it;</p>	<p>〈기관 구성 조항〉 6.2_(iv) 관료(해당 관료가 내각 주요 결정을 한 경우)나 내각에 의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결정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행을(정밀조사 절차 규정을 조건으로) 하고, 이를 결정한 내각이나 관료에 의해 결정이 재 검토되도록 권고</p>
<p>〈Scrutiny Procedure Rules〉 8.3 The scrutiny committee must by notice in writing require the Council or Executive - (a) to consider the report or recommendation; (b) to respond to the committee indicating what (if any) action the Council or Executive proposes to take; (c) if the committee has published the report or recommendation to publish the response; (d) if the committee provided a copy of the report or recommendation to a member under Rule 6.7, to provide the member with the response; (e) to do all of the above within two months of receiving the report or recommendations or (if later) the notice. 8.4 It is the duty of the Council or Executive to which a notice is given under Rule 8.3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notice</p>	<p>〈정밀조사 절차 규정〉 8.3. 정밀조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회나 내각에 요청하여야 한다. (a) 보고서 또는 권고에 대한 고려 (b) 의회나 내각이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지시하여 위원회에 회신 (c) 의회가 답할 보고서나 권고를 이미 공표한 경우, (d) 의회가 규칙 6.7에 따라 구성원에게 보고 및 권고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그 응답을 제공 (e) 보고서나 권고 또는 (추후에) 고지를 받은 지 2개월 내에 상기 통지를 해야 한다. 8.4와 8.3의 규칙에 따라 고지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의회 또는 내각의 의무이다.</p>

* 자료: Constitution of the Council, Manchester City Council 2018

3. 위원회형: 브라이튼 앤드 호브(Brighton & Hove City, non-metropolitan district)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역사적 배경

- 브라이튼 앤드 호브는 Local Government Act 1972를 근거로 단일통합 기관(Unitary authorities)이 된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인구규모 약 288,200명의 비교적 큰 도시임²⁴⁾
- 1996년 브라이튼 버로(Brighton Borough)와 호브 버로(Hove Borough)의 지방의회가 통합되었음

기관구성 체계도

- 브라이튼 앤드 호브(이하 브라이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3-4>와 같으며, 위원회형에 해당됨
- 시장-내각, 리더-내각형과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각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임
- 브라이튼의 지방자치단체(Council) 기관구성은 선출직 시의원(councilors) 54명 (2019년 현재 총 53명: 보수당 21석, 노동당 19석, 녹색당 11석, 무소속 2석, 공석 1석)으로 구성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a))
- 브라이튼 시의 대부분의 일상적 의사결정은 위원회(Committees) 및 소위원회(Sub-Committees)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브라이튼 시는 10개의 정책 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²⁵⁾(The Constitution

24) 326개 지방자치단체 중 42위로, 비교적 큰 도시에 속한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25) 브라이튼 앤드 호브의 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목록

- 정책위원회: Policy, Resources and Growth; Health and Wellbeing Board; Children, Young People & Skills; Tourism, Development and Culture; Housing & New Homes; Environment, Transport and Sustainability; Planning; Licensing; Audit and Standards; Neighbourhoods, Communities and Equalities Committee
- 소위원회: Licensing Panel, Standards Panel, Personnel Appeals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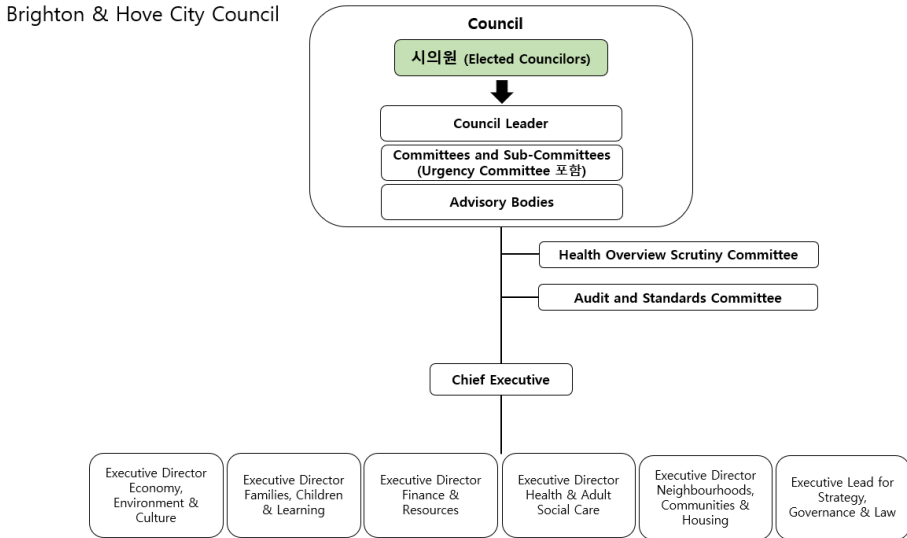
Summary and Explanation 4.1)

- 이밖에도 보건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와 고문단(advisory bodie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4 & 6.07), 필요에 따라 긴급 위원회(Urgen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6)
- 브라이튼 정부는 연례 회의에서 의회의 의장인 시장 및 부시장을 선출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4.01). 리더-내각제에서 의회가 선출하는 시장의 역할과 유사함
- 의회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료(officers)를 임명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a)).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²⁶⁾은 최고 행정관(Chief Executive) 및 6명의 부서장(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b))

26) Brighton & Hove City Council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의 구성

- Chief Executive
- Executive Director Finance & Resources
- Executive Leader for Strategy, Governance and Law(and Monitoring Officer)
- Executive Director Economy, Environment, & Culture
- Executive Director Families, Children & Learning
- Executive Director Health & Adult Social Care
- Executive Director Neighbourhoods, Communities and Housing

〈그림 3-4〉 Brighton & Hove의 기관구성 체계도



〈표 3-20〉 브라이튼 앤드 호브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01 Composition and eligibility (a) Composition. The Council comprises 54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There are 21 electoral wards and 2 or 3 Members ar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One of the Councillors is elected annually as the Mayor by the elected Members to chair the Council meetings and attend to ceremonial duties.</p>	<p>〈기관 구성 조항〉 2.0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지방의회는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1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의원 중 1명이 의원에 의한 투표로 매년 시장으로 선출되며, 그는 의회 회의의 의장이며 공식적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p>
<p>〈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4.1 Most day to day decisions are made by Committees, Sub-Committees and officers. The Council has 10 policy committees (Policy, Resources and Growth; Health and Wellbeing Board; Children, Young People & Skill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e; Housing & New Homes; Environment, Transport and</p>	<p>〈기관 구성 요약 및 설명〉 4.1. 대부분의 일상적 결정은 위원회, 하부위원회, 관료가 한다.의회는 10개의 정책위원회(정책, 자원 및 성장, 보건 및 웰빙, 아동청소년과 기술, 경제개발 및 문화, 주택, 환경, 교통 및 지속 가능성, 계획, 라이선스, 감사 및 표준, 이웃 및 공동체와 형평성)와 3개의 하부위원회(라이선스 패널-라이선싱과 등록 및 출원을 처리,</p>

원문	번역
<p>Sustainability; Planning; Licensing; Audit and Standards; Neighbourhoods, Communities and Equalities Committee) and 3 Sub-Committees (Licensing Panel - which deals with licensing, registration and other appeals; Standards Panel and the Personnel Appeals Panel). When committee decisions are to be made, these are published on the Council's Committee Work Programme in so far as they can be anticipated. These decisions will generally take place in open public meetings except where personal or confidential matters are being discussed.</p>	<p>표준패널, 인사평가패널)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위원회 워크 프로그램에 공표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4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This Committee discharges on behalf of the Council the overview and scrutiny functions of health services as set out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as amended). The Committee can scrutinise matters relating to the health and social care of the council's population, including both adults and children, and mak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NHS, the council, its Committees and other relevant bodies.</p>	<p><기관 구성 조항> 6.04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서비스의 개관과 조사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성인 및 아동을 포함하여 의회 인구의 건강 및 사회서비스 관련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NHS, 의회, 그 위원회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7 Establishment of additional advisory bodies The Council or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may from time to time establish task groups, consultative forums, commissions, working groups, ad hoc panels or other advisory bodies, the membership of which shall be drawn from Members of the Council and/or non-voting co-optees. The proceedings of any such group shall be reported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and should include any recommendations or advice from that group. No Committee or Sub-Committee may delegate its functions to any such group.</p>	<p><기관 구성 조항> 6.07 추가자문기구 설립 의회나 정책·자원·성장 위원회는 수시로 의회구성원이나 비선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업무그룹, 컨설팅 포럼, 위원회, 워킹그룹, 에드호크 패널, 기타 다른 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의 의사 진행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권고 및 조언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문기구에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없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6 Urgency Committee/Sub-Committees (a) The Council shall establish an Urgency Committee to exercise its powers. The</p>	<p><기관 구성 조항> 6.06. 긴급위원회 및 소위원회 a) 의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위원회를 설립한다. 긴급위원회의 구성은 7명이다. 긴급</p>

원문	번역
<p>membership of the Urgency Committee shall consist of 7 Members. The Urgency Committee may exercise its powers in relation to matters of urgency on whic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before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uncil. Every decision of the Urgency Committee shall be reported for information to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full Council.</p> <p>(b) Each Committee of the Council may appoint an Urgency Sub-Committee to exercise its powers. The Membership of such Urgency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 of the Committee, and two other Members nominated by the Group Leader or Leaders as appropriat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allocation of seats between political groups. Such Urgency Sub-Committees may exercise their powers in relation to matters of urgency on whic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before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mmittee. Every decision of each Urgency Sub-Committee shall be reported for information to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mmittee as appropriate.</p>	<p>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긴박한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음 의회의 보통 전원 총회에서 참고를 위해 보고되어야 한다.</p> <p>b) 의회의 각 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긴급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긴급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장과 정치리더(정당의 리더를 의미) 사이에 자리를 배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룹 리더 또는 리더가 지명한 2명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긴급 소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전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긴박한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각 긴급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음 의회의 보통 전원 총회에서 참고를 위해 보고되어야 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4.01 Role and function of the Mayor The Mayor will be elected by Council annually. The Mayor and in his/her absence, the Deputy Mayor, will have the following role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p> <p>(a) Chairing the Council Meeting (i) to uphold and promote the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and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when necessary; (ii) to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Council so that its business can be carried out efficiently and with regard to the rights of Councillo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iii) to ensure that the Council meeting is a forum for the debate of matters of concern to the local community and (subject to the arrangements for scrutiny discussed in Article 7) a place at which Members are able to ask</p>	<p><기관 구성 조항> 4.01 시장의 역할 및 기능 시장은 의회에서 매년 선출된다. 시장과 시장 부재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 책임을 가진다.</p> <p>a) 의회 회의의 의장 (i) 지역헌법의 목적을 지지하고 증진하며, 필요 시 지역헌법을 해석함 (ii) 의회의 회의를 주재해 그 사업이 의원의 권리 및 공동체의 이익에 관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iii) 의회의 회의가 지역사회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고, (7조에 언급된 정밀조사를 위한 합의를 조건으로) 구성원이 리더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장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함 (iv) 의회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함</p> <p>b) 시민 및 의례 역할 시장은 브라이튼 앤드 호브 시의 첫 번째 시민</p>

원문	번역
<p>questions of the Leader and the Chairs of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iv) to promote public involvement in the Council's activities. (b) Civic and Ceremonial Role The Mayor shall be the first citizen of the City of Brighton & Hove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civic responsibilities: (i) to attend such civic and ceremonial functions as the Council and the Mayor may determine generally or in appropriate cases. (ii) to promote the Council as a whole and act as a focal point for the community.</p>	<p>이며, 다음과 같은 시민의 책임을 져야 한다. (i) 의회로서 민간 및 의례에 참석 그리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혹은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음 (ii) 의회를 전체로서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중점 역할을 수행함</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02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This shall include a Data Protection Officer, appointed to discharge the duties specified in Part 6 of the Constitution. (b) Chief Officers. The Council will engage persons for the following posts. Their functions are more particularly set out in Part 6 of the constitution:</p>	<p><기관 구성 조항> 10.02 관리구조 (a) 일반(General). 의회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직원(공무원이라 칭함)을 둘 수 있다 여기에는 Part 6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이 포함된다. (b)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기능은 Par6에 기술되어 있다.</p>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지방의회(council)와 시의원(councillors) 선임방식 및 역할

- 브라이튼의 지방의회는 54명의 의원(members 혹은 councillors)으로 구성되어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a))
 - 시의원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그 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여야 함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1(b))
 - 정기 선거는 5월의 첫 목요일에 있으며 매 4년마다 이루어짐. 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후 4일 후부터 다음 정기 선거 후 4일까지 4년간임(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2)

-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정책들과 예산을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3.3)
 - 의회는 조언을 제공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며, 일상적 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관료(Officers)를 두고 있음. 일부 관료는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하고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특정한 의무를 가짐(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6.1;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a))
 - 의회는 매년 연례 회의에서 의회 회의의 의장인 시장(Mayor)과 부시장(Deputy Mayor)를 선출함(Council Procedure Rules 2.2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4.01).
 - 의회의 예산, 정책 및 규제기능의 집행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은 의회총회(Full Council)에서 규정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1)
 - 의회는 지방정부 내의 어떤 사람 혹은 조직이 특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신상태로 유지함. 이러한 기록은 위원회/소위원회에 대한 위임규정과 관료에 대한 위임규정에 반영되어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1.01)
- 시의원(councilors)의 역할(Articles of the Constitution 2.03(a))
- 총괄적으로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함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함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을 함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함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할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 의회총회(Full Council)의 주요기능(Articles of the Constitution 5.02)
- 핵심 전략들(이를 종합한 것이 정책프레임워크)의 승인
 - 예산의 승인
 - 지역헌법의 채택
 - 외부기관장 임명
 - 구성원 허용 규정 채택
 - 구성원 윤리규정의 채택
 - 리드 멤버의 임명
- 의회 리더(Leader of the Council)의 선임 및 역할
- 의회는 의회의 리더를 임명할 수 있으며, 리더는 대체로 의회의 연례 회의에서 연간단위로 임명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1(a))
 - 리더는 주로 부리더를 포함하여 의회에 의해 임명되지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1(b)), 의회가 리더를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다수당의 리더가 의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1(a))
 - 리더는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개발,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된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의회, 특히 위원회의 장들을 이끌고 협업함. 대외적으로는 의회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함. 또한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의 위원장을 맡으며, 관료들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지도함. 이와 함께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2).
 - 브라이언이 위원회형을 운영하기 때문에 리더는 공식적인 법적 권한 및 의무를 갖지는 않음. 그러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선출직 시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5.03)

〈표 3-21〉 지방의회 및 시의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01 Composition and eligibility (a) Composition. The Council comprises 54 Members (otherwise called Councillors). There are 21 electoral wards and 2 or 3 Members are elected by the voters of each ward. One of the Councillors is elected annually as the Mayor by the elected Members to chair the Council meetings and attend to ceremonial duties. (b) Eligibility. Only registered voters of the City or those living or working there will be eligible to hold the office of Councillor. 2.02 Election and terms of Councillors Election and terms. The regular election of Councillors will be held on the first Thursday in May every four years. The terms of office of Councillors will start on the fourth day after being elected and will finish on the fourth day after the date of the next regular election.</p>	<p>2.01 구성 및 자격 a) 구성. 의회는 5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1개 선거구에서 각각 2-3명을 선출하며, 의원 중 한명을 의회에서 매년 의회 회의의 의장이자 의례에 참석할 의무를 지는 시장으로 선출한다. (b) 자격. 오직 시의 유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시에 살거나 일하는 자만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2.02. 의원선거 및 임기 의원선거 및 임기. 의원에 대한 정기 선거는 매 4년마다 5월 첫 번째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원의 임기는 선거 후 4일 이내에 시작되며, 다음 정기선거 후 4일 이내에 종료된다.</p>
<p>〈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3.3 All Councillors meet together as the Council. Meetings of the Council are normally open to the public. Here Councillors decide the Council's overall policies and set the budget each year. The Council is responsible for setting the policy framework and budget, including approving specified plans and strategies. It also holds the decisions of the Committees to account.</p>	<p>3.3. 모든 의원은 지방의회로서 함께 모인다. 의회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여기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매년 예산을 책정한다. 의회는 특정계획 및 전략을 승인하고, 정책의 프레임과 예산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p>
<p>〈The Constitution Summary and Explanation〉 6.1 The Council employs staff (often called 'officers') to give advice, implement decisions and manage the day-to-day delivery of its services. Some officers have a specific duty to ensure that the Council acts within the law and uses its resources wisely. A Code of Conduct governs the relationships between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ouncil.</p>	<p>6.1. 의회는 자문·집행·일상서비스 제공의 관리 등의 역할을 할 직원(관료, officer)를 고용한다. 일부 관료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 관료와 의회 구성원 간의 관계는 행동강령에 따라 관리된다.</p>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02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This shall include a Data Protection Officer, appointed to discharge the duties specified in Part 6 of the Constitution.</p>	<p>10.02. 관리구조 (a) 일반(General). 의회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여기에는 Part 6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이 포함된다.</p>
<p>〈Council Procedure Rules〉 2.2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will: (a) elect a person to preside if the Mayor is not present; (b) elect the Mayor; (c) elect the Deputy Mayor; (d) approve the minutes of the last meeting; (e) receive any announcements from the Mayor and/or the Chief Executive; (f) elect the Leader of the Council if required (see Procedure Rule 18.10); (g) appoint at least one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an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and such other Committees as the Council considers appropriate; (h) receive nominations to outside bodies where the making of appointments to those bodies is a Council function; (i) consider any business set out in the notice convening the Annual Meeting.</p>	<p>2.2. 의회의 연례회의 a)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재할 사람을 선출함 b) 시장 선출 c) 부시장 선출 d) 지난 회의록을 승인 e) 시장 및 수석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음 f) 필요하다면 의회의 리더 선출 g) 적어도 하나의 정밀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감사 및 효준위원회,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설립 h) 외부기구에 임명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 경우 그 기관에 대한 지명을 받음 i) 연례회의의 소집 통지에 명시된 사업을 심의</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4.01 Role and function of the Mayor The Mayor will be elected by Council annually. The Mayor and in his/her absence, the Deputy Mayor, will have the following role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a) Chairing the Council Meeting (i) to uphold and promote the purposes of the constitution, and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when necessary; (ii) to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Council so that its business can be carried out efficiently</p>	<p>4.01. 시장의 역할 및 기능 시장은 의회에서 매년 선출된다. 시장(또는 시장이 공석일 때 부시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 기능, 책임을 지닌다. (a) 의회 회의의 주관 1) 지역헌법의 목적을 유지하고 고취시키며, 필요한 경우 지역헌법을 해석함 2) 의원의 권리 및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의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함 3) 의회의 회의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이자 의회 구성원들이</p>

원문	번역
<p>and with regard to the rights of Councillors and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p> <p>(iii) to ensure that the Council meeting is a forum for the debate of matters of concern to the local community and (subject to the arrangements for scrutiny discussed in Article 7) a place at which Members are able to ask questions of the Leader and the Chairs of Committees and Sub-Committees;</p> <p>(iv) to promote public involvement in the Council's activities.</p> <p>(b) Civic and Ceremonial Role</p> <p>The Mayor shall be the first citizen of the City of Brighton & Hove and shall have the following civic responsibilities:</p> <p>(i) to attend such civic and ceremonial functions as the Council and the Mayor may determine generally or in appropriate cases.</p> <p>(ii) to promote the Council as a whole and act as a focal point for the community.</p>	<p>의회 리더와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여야함</p> <p>4) 의회의 활동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시킴</p> <p>(b) 시장은 브라이튼 앤 호브의 첫 번째 시민이자, 다음의 시민의 의무들을 기짐</p> <p>1) 의회와 시장이 일반적으로 결정하거나 적절한 경우 시의 의례행사에 참석</p> <p>2) 의회가 지역사회와의 중심점이 되도록 독려함</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p> <p>6.01 Introduction</p> <p>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s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nd the discharge of its regulatory functions, is undertaken by a number of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with powers delegated from the full Council. The Council has also devolved powers to Partnership Boards with health bo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the Children Act 2004 and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p> <p>The Council will appoint or make appointments to the Committees, Sub-Committees, Joint Committees and Partnership Boards as set out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tables below. An indication of the functions of each Committee/Sub-Committee/Joint Committee/Partnership Board is shown in column 3 of the table. The terms of reference and powers delegated to each Committee, Sub-Committee, Joint Committee and</p>	<p>6.01. 소개</p> <p>의회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제기능의 이행은 의회총회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들이 수행한다. 의회는 또한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아동법, 2012년 보건사회복지법에 따라 보건단체와 파트너십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p> <p>의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위원회, 파트너십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기능표시는 표의 3열에 기술되어 있다. 각각의 위임된 권한도 Part4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p>

원문	번역
<p>Partnership Board are more particularly set out in Part 4 of the constitution.</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1.01 Responsibility for decision making The Council will issue and keep up to date a record of which individual or function within the council has responsibility for particular types of decisions or decisions relating to particular areas or functions. This record is set out in Parts 4 and 6 of this constitution (Scheme of Delegations to Committee and Sub-Committees and Scheme of Delegation to Officers).</p>	<p>11.01.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의회는 특정분야 또는 기능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결정에 대해 의회 내 개인이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도록 기록을 발행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이 기록은 Part 4 와 6에 나와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2.03 Roles and functions of all Councillors (a) Key roles. All Councillors will: (i)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conduct and ethics; (ii) collectively be the ultimate policy-makers and carry out a number of strategic and corporate management functions; (iii) represent their communities and bring their views into the Council's decision-making process, i.e. become the advocates of and for their communities; (iv) deal with individual casework and act as an advocate for constituents in resolving particular concerns or grievances; (v) balance different interests identified within the ward and represent the ward as a whole; (vi) be involved in decision-making and scrutinising decisions made by others under the scrutiny arrangements; (vii) be available to represent the Council on other bodies; and (viii) contribute to the good governance of the area and actively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itizen involvement in decision making.</p>	<p>2.03. 모든 의원의 역할 및 기능 a) 주요 역할. 모든 의원은 1) 높은 업무수행 및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2) 많은 전략적 협력적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그들의 공동체를 대표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옹호자가 된다. 4) 개별적 사례를 다루고, 특정한 우려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5) 지역구 내에서 확인된 상이한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전체 지역구를 대표한다. 6)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할 수 있다. 7) 지역의 훌륭한 통치에 기여하고, 의사결정에 지역사회참여 및 시민참여를 적극 장려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5.02 The responsibilities of full Council include: • Approving all key plans and strategies</p>	<p>5.02. 의회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예산승인 지역헌법 채택</p>

원문	번역
<p>collectively known as the Policy Framewor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ving the budget • Adopting the constitution • Appointments to Outside Bodies • Adopting a Members Allowances scheme • Adopting a Local Code of Conduct for Members • Appointments of Lead Members 	<p>외부기관에 대한 임명 구성원의 임금제도 채택 구성원을 위한 지역행동강령 채택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구성원(lead member) 임명</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5.01 Appointment and general Role (a) The Council's Procedure Rules (18.10) permit Council to appoint, from among its voting Members, a Leader of the Council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Leader"). The Leader is normally appointed annually, at the Council's annual general meeting in May. If the Council does not appoint a Leader, the Leader of the largest political group becomes the Leader. (b) Usually the annual appointments made by the Council include one or more Deputy Leaders who are generally able to exercise the powers vested in the Leader if he or she is unavailable.</p>	<p>15.01. 임명 및 일반역할 a) 의회의 절차 규칙은 의회가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 중 의회의 리더를 임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리더는 매년5월 열리는 의회 연례회의에서 매년 임명된다. 의회 리더를 임명하지 않으면 가장 큰 정치그룹(정당) 리더가 리더가 된다. b) 통상적으로 의회가 매년 하는 임명은 1명 이상의 부 리더를 포함하며, 부 리더는 일반적으로 리더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5.02 Fulfilling the Role of Leader The Council expects that the Leader wi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 the political (rather than ceremonial) leader of the Council, for the benefit of all the City's communities - its citizens, taxpayers, businesses, public bodies and other public authorities; • lead and work with the Council, particularly the Chairs of its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ouncil's vision for the future, policy framework, budgets and strategies; • lead and work with the Council, particularly the Chairs of its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in service delivery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pproved by the 	<p>15.02. 리더 역할의 수행 의회는 리더에게 다음을 기대한다. 시민, 납세자,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위해 모든 의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의회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야 함(단순한 의례를 목적으로 한 지도자가 아님) 미래와 정책 프레임, 예산, 전략에 관한 의회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특히 위원회와 소위원회 장을 이끌고 협력함 의회, 특히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장과 함께 서비스 제공 및 의회가 승인한 정책의 이행을 이끌고 협력함 지역사회 및 국제, 국가, 지역차원에서 의회의 이익을 대표하고 추구함 정책, 자원, 성장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전체 의회의 회의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15.04에 언급된 다른 기능을 필요에 따라 수행함</p>

원문	번역문
<p>Counci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resent and pursue the interests of the Council in the community and at inter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 act as Chair of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fulfil the role of Leader at full Council meetings and carry out as necessary the other functions mentioned at paragraph 15.04 below; • lead in providing policy direction and guidance to the Chief Executive and Chief Officers; • meet regularly to progress the Council's objectives with Committee Chairs, the Chief Executive and Chief Officers, Leaders of other political groups on the Council, partner organisations, stakeholders, community representatives, government representatives, local Members of Parliament etc; • support the performance of the Council's overview and scrutiny functions and participate in overview and scrutiny reviews as appropriate; • maintain professional working relationships and establish mutual respect with all Members and officers; • be a promoter and upholder of: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qualities throughout the City – particularly the Council's equalities policies; (2) high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by the Council's Members' and officers – particularly the Council's Code of Conduct for Members. 	<p>수석행정관, 고위공무원단에게 정책방향 및 지침을 제공하는데 앞장섬 위원회 위원장, 수석행정관, 간부직 공무원, 의회의 다른 정치단체 지도자, 파트너조직, 이해관계자, 지역사회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 모임을 함 심의회의 개요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함 전문적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 및 임원과 상호 존중을 설정함 (1) 시 전역의 평등, 특히 의회 평등정책, (2) 의회 회원 및 임원, 특히 행동강령에 따른 윤리적 행동의 높은 기준 등에 대한 발기인이자 지지자가 되어야 함</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5.03 Legal Powers and Duties As the Council operates a Committee System, the Leader has no formal legal powers and duties vested in him or her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1972 or the Local Government Act 2000. However, in practice, all local authorities need to appoint Leaders and each Leader will hold the most significant elected Member role within his or her authority. As described in paragraph 15.02 above, the Council's Leader will be the Council's</p>	<p>15.03. 법적 의무와 권한 의회가 위원회형을 운영함에 따라 리더는 1972년 지방정부법 또는 2000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정식 법적 권한 및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지방당국은 지도자를 지명해야 하고, 각 지도자는 지방정부의 권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선출직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15.0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의회 지도자는 의회의 정치적인 수장이자 선출직 의원의 의장으로 서 정책방향 및 지역사회발전전에 집중하며 해당 지방의 전체의 수석대변인이자 대사가 된다.</p>

원문	번역
political/elected head, the focus for policy direc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nd also the chief advocate and ambassador for the whole of the City.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의회의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 및 규제 기능의 이행은 수 개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권한은 의회총회를 통해 위임됨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1)
 - 의회의 연례 총회에서 수석행정관과 의회 리더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운영될 위원회/소위원회 및 위원회의 권한, 그리고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수를 결정함(Council Procedure Rule 18.1)
 - 각 위원회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위원(non-voting memvers; co-optees)이 임명될 수 있음. 이들의 수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 사항 또한 의회의 연례 회의에서 결정됨(Council Procedure Rule 18.1)
- 의회는 다음 정기회의(ordinary meeting) 전에 긴급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경우 긴급 위원회(Urgency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음. 긴급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의회총회의 다음 보통회의에 보고되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6(a))
 - 의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음 정기회의 이전에 긴급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긴급 소위원회(Urgency Sub-Committee)를 운영할 수 있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리더에 의해 추천된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긴급 소위원회의 의사결정 내용은 위원회의 다음 정기회의에서 보고되어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6(b))

- 의회 혹은 Policy, Resources and Growth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직무그룹(Task groups), 컨설팅 포럼(consultative forums), 위원회(commissions), 작업 그룹(working groups), 임시 패널(ad hoc panels) 등을 둘 수 있음²⁷⁾(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7)
 - 자문기구의 의원이나 non-voting co-optees 혹은 둘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자문기구는 적합한 해당 위원회에 자문사항을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들 자문기구의 제안 혹은 조언을 반영하여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7)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임명되며, 만약 의회가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서 선출됨. 한 의원은 의회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복수의 위원장직을 겸임할 수 없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4.01(a))

27) 브라이튼 앤드 호브의 자문기구 목록

- Corporate Parenting Board
- Member Procurement Advisory Board
- Strategic Delivery Board
- Area Housing Panels(4개)
- Joint Staff Consultation Forum
- Art and Creative Industries Commission
- Independent Remuneration Panel
- Adoption & Permanence Panel
- Brighton & Hove, and Barnardo's Link Plus, Joint Fostering Panel
- Brighton & Hove City Sport Forum
- Conservation Advisory Group
- Asset Management Board

〈표 3-22〉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1 Introduc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s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nd the discharge of its regulatory functions, is undertaken by a number of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with powers delegated from the full Council. The Council has also devolved powers to Partnership Boards with health bo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the Children Act 2004 and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The Council will appoint or make appointments to the Committees, Sub-Committees, Joint Committees and Partnership Boards as set out in the left hand column of the tables below. An indication of the functions of each Committee/Sub-Committee/Joint Committee/Partnership Board is shown in column 3 of the table. The terms of reference and powers delegated to each Committee, Sub-Committee, Joint Committee and Partnership Board are more particularly set out in Part 4 of the constitution.</p>	<p>〈기관 구성 조항〉 6.01. 소개 의회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의 실행과 규제기능의 이행은 의회총회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들이 수행한다. 의회는 또한 2006년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아동법, 2012년 보건사회복지법에 따라 보건단체와 파트너십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다. 의회는 다음 표의 좌측 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위원회, 파트너십위원회를 임명한다. 각 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위원회, 파트너십위원회의 기능표시는 표의 3열에 기술되어 있다. 각 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위원회, 파트너십위원회 위임된 권한도 Part4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p>
<p>〈Council Procedure Rule〉 18.1 At its Annual Meeting the Council: (a) may resolve, upon a recommendation from the Chief Executive or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following a review of the Committee structure, which Committees shall be appointed, what shall be the terms of reference of each of those Committees, and of how many voting Members each Committee shall consist; (b) may resolve that non-voting members (co-optees) shall also be appointed to any such Committee; (c) shall specify the number of non-voting members and the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mittee each such person so appointed may</p>	<p>〈의회 절차 규정〉 18.1 의회의 연례회의에서는 a) 위원회 구성을 검토한 뒤 수석 행정관 또는 정책, 자원, 성장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임명할 때 각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각 위원회가 구성하는 투표권자의 수 등을 정함 b) 투표권이 없는 의원(동료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도 그러한 위원회에 임명된다고 결의할 수 있음 c) 비투표권 회원의 수와 선임된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기능을 명시 d) 소위원회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소위원회에서 이행하도록 위원회의 권력이 이행되는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결의 e) 외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원의 지명을 받고 이러한 기관에 선임</p>

원문	번역
<p>exercise; (d) may resolve what limitations if any should be placed on the powers of any such Committee to arrange for the discharge by a Sub-Committee of any functions which it itself may discharge. (e) may receive nominations of Councillors to serve on outside bodies and may make appointments to such bodies except</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6 Urgency Committee/Sub-Committees (a) The Council shall establish an Urgency Committee to exercise its powers. The membership of the Urgency Committee shall consist of 7 Members. The Urgency Committee may exercise its powers in relation to matters of urgency on whic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before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uncil. Every decision of the Urgency Committee shall be reported for information to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full Council. (b) Each Committee of the Council may appoint an Urgency Sub-Committee to exercise its powers. The Membership of such Urgency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ir of the Committee, and two other Members nominated by the Group Leader or Leaders as appropriate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allocation of seats between political groups. Such Urgency Sub-Committees may exercise their powers in relation to matters of urgency on which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before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mmittee. Every decision of each Urgency Sub-Committee shall be reported for information to the next ordinary meeting of the Committee as appropriate.</p>	<p><기관 구성 조항> 6.06. 긴급위원회 및 소위원회 a) 의회는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긴급위원회를 설립한다. 긴급위원회의 구성은 7 명이며, 차기 정기총회 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긴박한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전원 의회의 다음 정기총회에 참고를 위해 보고되어야 한다. b) 의회의 각 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긴급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긴급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의장과 정치리더(정당의 리더를 의미) 사이에 자리를 배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룹 리더 또는 리더가 지명한 2명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긴급 소위원회는 차기 정기총회 전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긴박한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각 긴급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음 의회의 보통 전원 총회에서 참고를 위해 보고되어야 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7 Establishment of additional advisory bodies The Council or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may from time to time establish task groups, consultative forums, commissions, working groups, ad hoc panels or</p>	<p><기관 구성 조항> 6.07 추가자문기구 설립 의회나 정책·자원·성장 위원회는 수시로 의회 구성원이나 비선출형 위원 등으로 구성된 업무 그룹, 컨설팅 포럼, 위원회, 워킹그룹, 에드호크 패널, 기타 다른 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p>

원문	번역
<p>other advisory bodies, the membership of which shall be drawn from Members of the Council and/or non-voting co-optees. The proceedings of any such group shall be reported to the appropriate Committee and should include any recommendations or advice from that group. No Committee or Sub-Committee may delegate its functions to any such group.</p>	<p>러한 기구의 의사진행은 해당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기구의 권고 및 조언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문 기구에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없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4.01 Appointment and general Role (a) The Council's Procedure Rules (20) permit it to appoint, from amongst its voting Members, Chairs of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Chairs are normally appointed annually, at the Council's annual general meeting in May. If the Council does not appoint a Chair in any particular case, the Chair is elected by the Committee or Sub-Committee. The Procedure Rules (20.5) bar any Member of the Council from being Chair of more than one Committe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ncil.</p>	<p><기관 구성 조항> 14.01. 임명 및 일반역할 a) 의회의 절차 규칙은 의회가 투표권이 있는 구성원 중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의장은 매년5월 열리는 의회 연례회의에서 매년 임명된다. 의회가 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절차 규칙은 한 의원이 의회의 허가 없이 하나 이상의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p>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관료의 구성방식 및 역할

-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의해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간부직 공무원(Chief Officer)²⁸⁾을 포함한 관료를 채용할 수 있음. 의회가 채용하는 관료에는 자료 보호 관료(Data Protection Officer)가 포함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a)&(b))

28) 브라이튼 앤드 호브의 고위공무원단

- Chief Executive
- Executive Director Finance & Resources
- Executive Leader for Strategy, Governance and Law(and Monitoring Officers)
- Executive Director Economy, Environment, & Culture
- Executive Director Families, Children & Learning
- Executive Director Health & Adult Social Care
- Executive Director Neighbourhoods, Communities and Housing

- 최고 행정관은 부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결정하며 부서의 구조 및 관료의 배치에 대한 기술내용을 공개하여야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c))
- 최고 행정관은 Head of Paid Service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들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운영 책임을 가짐. 또한 구성원의 직위 수락 및 사임업무를 담당하며,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모든 주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b))
- 최고 행정관은 파트너십 및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며, 국가/지방 선거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짐(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2(b))
- 수석행정관은 의회총회에 의회 사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수준 등을 보고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3(a))
- 최고 행정관은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을 겸임할 수 없으나, 자격을 갖춘 경우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을 겸임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3(b))
-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은 지역헌법을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감사/기준위원회(Audit and Standard Committee)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4(a)&(c))
- 감사관은 수석행정관 및 수석재무관과 협의를 통해 의회에 행정기능의 적법성 및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감사관의 보고서는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제안과 의사결정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4(b))
- 감사관은 모든 의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 잘못된 행정행위, 재정적 부적절성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4(f))
-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표준 패널(Standards Panel)의 윤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보고서를 표준패널에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4(e))

- 감사관은 수석재무관을 겸임할 수 없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0.04(g))

〈표 3-23〉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및 관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02 Management structure (a) General. The Council may engage such staff (referred to as officer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carry out its functions. This shall include a Data Protection Officer, appointed to discharge the duties specified in Part 6 of the Constitution. (b) Chief Officers. The Council will engage persons for the following posts. Their functions are more particularly set out in Part 6 of the constitution: (c) Structure. The Chief Executive will determine and publicise a description of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Council showing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deployment of officers.</p>	<p>〈기관 구성 조항〉 10.02 관리 구조 (a) 일반. 의회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직원(공무원이라 칭함)을 둘 수 있다 여기에는 Part 6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보호관(data protection officer)이 포함된다. (b) 고위공무원단(Chief Officers).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들의 기능은 Par6 6에 기술되어 있다. (c) 구조. 수석행정관은 결정 후 전체 의회 구조에서 그 관리 구조와 관료의 배치를 보여주는 전반적인 구조의 설명을 결정 및 공표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03 Functions of the Chief Executive (a) Discharge of functions by the Council. The Chief Executive will report to full Council and/or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as he/she considers appropriate on the manner in which the discharge of the Council's functions is co-ordinated, the number and grade of officers required for the discharge of functions and the organisation of officers. (b) Proper officer for access to information. The Chief Executive will ensure that there are arrangements in place for decisions, together with the reasons for those decisions and relevant officer reports and background papers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as soon as possible.</p>	<p>〈기관 구성 조항〉 10.03 수석 행정관의 기능 a) 의회 기능 이행. 수석행정관은 이사회 의 기능 이행이 조정되는 방식, 기능 이행 및 관료 조직에 필요한 임원의 수, 등급 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전체 의회 및/혹은 정책, 자원, 성장위원회에 보고한다. b)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관료. 수석행정관은 가능한 빨리 공개 되는 의사결정을 위한 이유 및 관련 관료 보고서와 그 배경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의사 결정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p>

원문	번역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10.04 Functions of the Monitoring Officer (a) Maintaining the constitution. The Monitoring Officer will maintain an up-to-date version of the constitution and will ensure that it is widely available for consultation by Members, staff and the public. (b) Ensuring lawfulness and fairness of decision making. After consulting with the Chief Executive and Chief Finance Officer, the Monitoring Officer will report to the full Council if he or she considers that any proposal, decision or omission would give rise to unlawfulness or if any decision or omission has given rise to maladministration. Such a report will have the effect of stopping the proposal or decision being implemented until the report has been considered. (c) Supporting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igh standards of conduct through provision of support to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d) Code of Conduct for Members. The Monitoring Officer will ensure that all allegations of breaches of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re dealt with under the approved procedures. (e) Conducting investigations. When necessary, the Monitoring Officer will conduct investigations into allegations of breaches of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and issue reports to the Standards Panel to assist the Panel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Code has been breached. (f) Providing advice. The Monitoring Officer will provide advice on the scope of powers and authority to take decisions, maladministration, financial impropriety and probity to all Councillors. (g) Restrictions on posts. The Monitoring Officer cannot be the Chief Finance Officer.</p>	<p>〈기관 구성 조항〉 10.04 감사관의 기능 a) 지역헌법 유지. 감사관은 지역헌법의 최신버전을 유지하고, 구성원 및 직원, 대중의 협의를 위해 널리 이용되도록 한다. b) 의사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 보장. 제안, 결정, 누락이 불법을 초래하거나, 결정이나 부작위가 행정실책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석재무관 및 관료의 수장(the Head of Paid Service)과 상의하여 감사관은 집행기능 관련 전체의회 또는 내각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는 해당 보고가 고려될 때까지 제안이나 결정이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c) 감사 및 표준위원회 지원. 감사관은 표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윤리규정 촉진 및 유지에 기여한다 d) 구성원을 위한 윤리규정 감사관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행동강령에 위반된 모든 혐의가 처리되도록 한다. (e) 조사의 수행 필요한 경우, 감사관은 구성원의 행동 강령 위반 주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강령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돕기 위해 기준위원회에 조사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f) 조언 제공 감사관은 모든 의원에게 의사결정, 부적절한 관리, 재무 부적절성 및 과실에 대한 권한 및 권한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g) 직위에 대한 제한. 감사관은 CFO가 될 수 없다.</p>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 지역헌법 및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지역헌법의 수정은 Policy, Resources and Growth위원회와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그리고 수석행정관 및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의회총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3.03(a))
 - 감사관은 의회총회 및 지역헌법 변경권한을 가진 주체의 의사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에 대한 보조적 후속 개정을 할 수 있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3.03(c))
- 다른 유형의 기관구성방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Local Government Act 2000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4〉 지역헌법 및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Article of the Constitution〉 13.03 Changes to the constitution (a) Approval. Subject to (b) and (c) below changes to the constitution will only be approved by the full Council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posal by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the Chief Executive, or the Monitoring Officer (c) The Monitoring Officer may make consequential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to give effect to a decision of full Council or other body authorised to change the constitution under this Article. Paragraph 15 of the introduction to the Scheme of Delegation to Officers also provides authority for the Monitoring Officer to make consequential changes to the constitution.	13.03. 지역헌법 개정 a) 승인. b와 c를 조건으로 지역헌법의 변경은 정책, 자원, 성장위원회, 감사 및 표준위원회, 수석행정관, 감사관의 제안을 고려한 후 전체 의회 승인을 받는다. c) 감사관은 본조에 의거하여 지역헌법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의회 또는 기타기구의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헌법 수정이 가능하다. 관료 위임 제도 소개, 감사관이 지역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의사결정 원칙을 통한 통제

- 브라이튼의 지역헌법에서는 지방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관료로부터의 전문적 조언, 인권의 존중, 개방성에 대한 선호의 추정(presumption in favor of openness), 그리고 목적 및 추구하는 결과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11.02)
- 의회는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 이들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에 있음 (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1.1)
- 매해 Policy, Resources and Growth 위원회는 다음 년도의 예산과 정책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함.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정책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계획과 전략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는 조항을 포함함(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 2.1)

○ 질의 기능을 통한 견제

- 의회의 의원은 원하는 경우 시장, 의회의 리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외부기관에 임명된 의원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서면 질의는 늦어도 의회의 다음 회의로부터 8근무일 이전에 수석행정관에게 서면으로 공지되어야 함(Council Procedure Rule 9.1)
- 예외적으로 시장이 의회 회의에서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질의대상자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었을 경우 의회에서의 질의를 허용할 수 있음(Council Procedure Rule 9.3)
-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 회의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해당 시점에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Council Procedure Rule 9.4)
- 의원이 구두질의를 원하는 경우 의회 미팅 8근무일 이전까지 최고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공지하여야 함(Council Procedure Rule 9.7). 구두질의

는 일반 정책에 대한 내용만 가능하며, 기술적인 내용이나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불가함(Council Procedure Rule 9.8)

○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 및 감사/기준위원회를 통한 견제

- 브라이튼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감사/기준위원회(Audit & Standards Committee) 및 보건 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를 두고 있음
- 감사/기준위원회는 재정 거버넌스와 관리, 위기관리와 감사(Policy, Resources & Growth 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정보 거버넌스를 다룸. 또한 지방정부 구성원에 대한 불만사항,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대한 허가 및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 준수에 대한 사항을 다룸(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2(a))
- 감사/기준위원회는 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함(Scheme of Delegation to Committee and Sub-Committees, Audit & Standard Committee Explanatory Note)
- 감사/기준위원회는 8인의 의원과 독립 구성원(의원이나 관료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됨. 독립 구성원은 기준관련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2(c)).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만 독립 구성원은 투표권을 갖지 않음(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2(d))
- 감사/기준위원회는 의회, Policy, Resources and Growth 위원회, 관료 혹은 관련된 지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며, 위원회의 판단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안의 형태로 제공함(Scheme of Delegation to Committee and Sub-Committees, Audit & Standard Committee Explanatory Note)
- 감사/기준위원회는 소위원회로 기준 패널(Standards Panel)을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구성원의 윤리규정 위반여부 및 구성원의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한 특별허가 문제를 다룸(Articles of the Constitution 8.02(e))

- 브라이튼은 보건 분야에 대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는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의 보건 기능 집행과 기타 브라이튼의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서 및 제안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1)
-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10명의 의원과 2명의 결권이 없는 위원(non-voting co-optees)으로 구성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6.04). 보건복지위원회(Health and Wellbeing Board) 소속 의원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이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원은 조사의 사결정에서 제외됨(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s 2)
-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지역의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감독 및 조사업무를 담당함.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의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 혹은 관련된 기관 혹은 담당자에게 보고서 및 제안을 제공함(Articles of the Constitution 7.02)

〈표 3-25〉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Article of the Constitution〉 11.02 Principles of decision making All decisions of the Council wi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a) proportionality (i.e. the action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desired outcome); (b) due consultation and the taking of professional advice from officers; (c)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authority will give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any proposals at an early stag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d) a presumption in favour of openness; (e) clarity of aims and desired outcomes.	〈기관 구성 조항〉 11.02. 의사결정의 원칙 모든 의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a) 비례성. 즉, 그 행동이 원하는 결과에 비례하여야 함 b) 적절한 협의와 관료로부터의 전문적 조언을 취할 것 c) 인권존중(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 모든 제안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 d) 개방에 우호적으로 가정 e) 목적과 바람직한 결과의 명확성

원문	번역
<p>〈Budget and Policy Framework Procedure Rules〉</p> <p>1. The framework for decision-making</p> <p>1.1 The Council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option of its budget and policy framework as set out in Article 5. Once a budget or a policy framework is in place,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ittees to implement it.</p> <p>2. Process for developing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p> <p>2.1 Each year the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 will agree a programme for establishing the budget and policy framework for the following year. This programme will include provision for the Council to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relevant Committee(s) in respect of the content of the plans and strategies that make up the policy framework.</p>	<p>〈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절차 규정〉</p> <p>1. 의사결정 프레임워크</p> <p>1.1 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일단 예산 또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위원회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p> <p>2.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절차</p> <p>2.1. 정책, 자원 및 성장 위원회는 매년 다음해 예산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정책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계획과 전략의 내용에 관해 관련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다.</p>
<p>〈Council Procedure Rule〉</p> <p>Written Questions from Members</p> <p>9.1 If a Member of the Council wishes to ask a question at a meeting of the Council of: (a) the Mayor, (b) the Leader of the Council, (c) the Chair of any Committee or Sub-Committee (or in the Chair’s absence the Deputy Chair), or, (d) a Member of the Council appointed by the Authority to any external body or joint authority, he/she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Chief Executive of the question (see Procedure Rule 1.6) by not later than 10.00 am on the eighth working day before the meeting at which the question is to be asked.</p> <p>Waiver of Notice Requirements</p> <p>9.3 If the Mayor considers that, by reason of special circumstances, it is desirable that a question shall be asked at a meeting of the Council although due notice of the question has not been given, and if the Mayor is satisfied that as much notice as is possible has been given to the person of whom it is to be asked, he/she may permit the question to be asked.</p> <p>Answers</p>	<p>〈의회 절차 규정〉</p> <p>구성원에 대한 서면질의</p> <p>9.1. 만약 의회 구성원이 의회 회의에서 다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원하는 경우 (a) 시장, (b) 의회 리더, (c)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장(또는 의장의 공식 시에 부의장), (d) 당국에 의해 외부기관 또는 공동기관에 임명된 의원,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석행정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절차 규정 1.6). 이는 질문이 요구된 회의가 열리기 8일 전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p> <p>고지 요건은 포기된다.</p> <p>9.3 시장이 특수한 사정으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회의 회의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시장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통지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p> <p>답변</p> <p>9.4. 위 절차 규칙 9.2에 있는 질문목록에 포함된 질문은 의회 회의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해당 질문은 회의에서 사용 가능한 서면 답변으로 답변 될 것이지만, 질문의 대상자는 당시 결정에 대한 서면사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답을 거</p>

원문	번역
<p>9.4 The questions included on the list of questions at Procedure Rule 9.2 above shall be taken as read at the Council meeting. The question will be answered by a written answer made available at the Council meeting, but the person to whom the question has been put may decline to answer it on the condition that he/she provides a written reason for such a decision at that time. No supplementary questions shall be permitted on written questions.</p>	<p>부할 수 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p>
<p><Council Procedure Rule> Oral Questions from Members 9.7 If a Member of the Council wishes to ask an oral question at a meeting of the Council of: (a) the Mayor, (b) the Leader of the Council, (c) the Chair of any Committee or Sub-Committee (or in the Chair's absence the Deputy Chair), or, (d) a Member of the Council appointed by the Authority to any external body or joint authority, he/she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Chief Executive of the subject matter of question (see Procedure Rule 1.6) by not later than 10.00 am on the eighth working day before the meeting at which the question is to be asked. 9.8 Oral questions shall relate to matters of general policy only. Questions of a technical or purely operational nature may be disallowed by the Mayor, or the Member to whom such a question is directed may decline to answer or state that a written answer will be provided.</p>	<p><의회 절차 규정> 구성원에 대한 구두질문 9.7. 의원이 회의에서 구두질문을 원하는 경우 (a) 시장, (b) 의회 리더, (c)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장(또는 의장의 공석 시에 부의장), (d) 당국에 의해 외부 기관 또는 공동기관에 임명된 의원은 질문에 대해 수석행정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절차 규정 1.6 참조) 이는 질문이 요구된 회의가 열리기 8일 전 오전 10시 까지 제출해야 한다. 9.8. 구두질문은 일반정책의 질문만 가능하다. 기술적, 또는 순수하게 운영적 성격의 질문은 시장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서면 답변이 제공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8.02 Role and Composition (a)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deals with:- • financial governance and stewardship, risk management and audit and (concurrently with Policy, Resources & Growth Committee) information governance; • issues of conduct among Members which includes dealing with complaints against</p>	<p><기관 구성 조항> 9.02. 역할 및 구성 a) 감사 및 표준위원회는 다음을 다룬다. • 재무 관리 및 책임주의, 리스크 관리 및 감사 그리고 (정책, 자원 및 성장위원회와 동시에) 정보 거버넌스 • 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 처리, 회원국의 이익에 관한 조례 부여 및 높은 윤리 기준 권고를 포함하는 회원간의 행동 문제 b) 감사 및 표준위원회의 완전한 위임 조건은</p>

원문	번역
<p>Members, granting dispensations regarding Members' interests and promoting high ethical standards generally;</p> <p>(b) The full terms of reference of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are set out in the Scheme of Delegation to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at Part 4 of the constitution.</p> <p>(c)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consists of 8 Councillors and two independent persons to advise on standards matters, neither of whom are Councillors or officers of the Council.</p> <p>(d) All members of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are entitled to vote at meetings, but not the independent persons who advise on standards matters.</p> <p>(e) The Standards Panel, which has the status of a Sub-Committee of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deals with (a) allegations that Members or Co-opted Members have breached the Code of Conduct and (b) the granting of dispensations to Members or Co-opted Members with pecuniary interests.</p>	<p>지역헌법 제 4 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임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p> <p>c) 감사 및 표준위원회는 표준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8 명의 참 석자와 2 명의 독립적 인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누구도 의회 의원이나 이사회 의 관료가 아니다.</p> <p>d) 감사 및 표준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지지만, 표준 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독립적인 자는 투표권이 없다.</p> <p>e) 감사 및 표준위원회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의 소위원회를 맡은 표준위원회 (Standards Panel)는 (a) 구성원이나 선출 구성원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 및 (b) 금전적 이익을 구성원이나 선출 구성원에게 주었다는 혐의를 처리한다.</p>
<p><Scheme of Delegation to Committee and Sub-Committees> AUDIT & STANDARDS COMMITTEE Explanatory Note The Audit functions of this Committee relate to the Council's arrangements for the discharge of its powers and dutie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governance and stewardship, risk management and audit. It plays a key role in acting as a critical friend to the Council and in helping to build trust in the Council's arrangements. The Committee receives referrals from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Policy & Resources Committee, Officers or other relevant body within the Council. The Standards functions of this Committee seek to ensure that the Members, Co-opted Members and Officers of the Council observe</p>	<p><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계획> 감사 및 표준위원회 설명 이 위원회의 감사 기능은 재정 관리 및 책임주의, 위험 관리 및 감사와 관련하여 권한 및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의회의 약정과 관련된다. 의회의 중요한 벗으로서의 역할과 의회의 약정에 대한 신뢰 구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의회, 정책 및 자원위원회, 관료, 또는 의회 내의 기타 관련기구로부터 회부를 받고 권고를 한다. 위원회의 표준 기능은 구성원, 협조 구성원, 의회 관료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기능에는 의회에 행동 강령을 조언하고 관련 불만사항 및 조제 절차를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감사 및 표준위원회(Audit and Standards Committee)에서 근무하는 의원에 추가하여, 위원회에는 그 밖에 최소한 두 명의 의원이 아</p>

원문	번역
<p>high ethical standards in performing their duties. These functions include advising the Council on its Codes of Conduct and administering related complaints and dispensation procedures.</p> <p>In addition to the Councillors who serve on the Audit and Standards Committee, the Committee includes at least two independent persons who are not Councillors. They are appointed under Chapter 7 of the Localism Act, or otherwise co-opted, and act in an advisory capacity with no voting powers.</p> <p>In the terms of reference of this Committee a “Member” is an elected Councillor and a “Co-opted Member” is a person co-opted by the Council, for example to advise or assist a Committee or Sub-Committee of the Council.</p>	<p>닌 독립적인 사람이 포함된다. 그들은 지방주의 법 7 장에 따라 임명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출되어 투표권이 없는 자문 자격으로 활동한다. 이 위원회의 기준에서 “구성원”은 선출된 의원이며,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된 구성원”은 예를 들어 이사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조언하거나 돕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구성원의 동의로 선출한 사람이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01 Introduction (a) The Health Overview & Scrutiny Committee represents a public forum through which Councillors and co-optees can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s policies and the quality of its services in relation to health and social care; make recommendations on the discharge of the authority’s health functions and/or other matters affecting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of Brighton & Hove ; (b)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is concerned with the overall health of the City and all factors affecting this including not only Council services but those of other agencies (with a particular statutory role in respect of health services) and other matters. ;</p>	<p><기관 구성 조항> 7.01 소개 a) 보건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 Scrutiny Committee)는 의회의 정책 및 보건 및 사회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의 질의 이행을 감시 할 수 있는 대중 포럼을 대표한다. 당국의 보건 기능 퇴치 및 브라이튼 앤 호브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권고를 한다. b) 보건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 Scrutiny Committee)는 시의 전반적인 건강 및 평의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정 법적 역할을 가진)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관여한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6.04 Other Committees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10 Members of the authority plus 4 non-voting cooptees This Committee discharges on behalf of the Council the overview and scrutiny functions of health services as set out in the National Health</p>	<p><기관 구성 조항> 6.04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 10명의 당국의 구성원과 투표권 없는 4명의 선출자. 이 위원회는 2006년 국민 보건 서비스법 (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 서비스의 감독과 조사 기능을 의회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위원회</p>

원문	번역
<p>Service Act 2006 (as amended). The Committee can scrutinise matters relating to the health and social care of the council's population, including both adults and children, and mak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NHS, the council, its Committees and other relevant bodies.</p>	<p>는 성인 및 아동을 포함하여 협의회 인구의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NHS, 협의회, 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보고 및 권고를 할 수 있다.</p>
<p><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Procedure Rule> 2. Membership of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Membership of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will reflect the political composition of the Council and be subject to section 15 of the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 No member of the Council's Health and Wellbeing Board may be a member of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No Councillor may be involved in scrutinising a decision in which s/he has been directly involved</p>	<p><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 절차 규정> 2.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멤버십 보건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 Scrutiny Committee) 회원자격은 의회의 정치적 구성을 반영하며, 1989년 지방정부 및 주택법 제 15 조에 따라야 한다. 의회의 보건 및 복지위원회 구성원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어떤 의원도 그가 직접 참여한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관여할 수 없다.</p>
<p><Article of the Constitution> 7.02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function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HOSC) has delegated powers to discharge the council's overview and scrutiny function in relation to local health services as set out in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The membership arrangements and detailed terms of reference of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 are set out in th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Procedure Rules at Part 5 of this constitution. Within these terms of reference, Health Overview and Scrutiny has the following functions:</p>	<p><기관 구성 조항> 7.02. 보건 감독 및 조사 기능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2006년 국가 보건 서비스 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 보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회의 개요 및 조사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보건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의 회원자격과 자세한 위임 조건 규정은 본 지역헌법 Part5 보건 감독 및 검사 절차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위임 조건 내에서, 보건감독과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이하 생략)</p>

* 자료: The Constitution of Brighton & Hove City Council, 2016

제3절 소결론

□ 분석결과 종합 요약1 : 기관구성 및 역할

-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3개 지역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표 3-26>과 같음
- 영국은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직선제 시장의 선출여부, 내각의 구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의사결정 및 집행부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표 3-26> 영국: 3개 유형 비교

구분		왓포드 (Watford Borough)	맨체스터 (Manchester City)	브라이튼 앤드 호브 (Brighton & Hove City)
자치단체 규모		인구: 96,800명 면적: 21 km ² 유형: Non-metropolitan district(2-tier)	인구: 545,500 명 면적: 115.65 km ² 유형: Metropolitan borough	인구: 288,200 명 면적: 82.79 km ² 유형: Unitary authority
의원 정수		총 36명	총 96명	총 54명
의회	의원 선출 방법 및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 별로 3명을 선출(12개 선거구) • 4년을 한 주기로 매년 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 4년째에는 선거가 없음 • 각 의원의 임기는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 별로 3명을 선출(32개 선거구) • 4년을 한 주기로 매년 의원 정수의 1/3을 선출하며, 4년째에는 선거가 없음 • 각 의원의 임기는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선거구 별로 2-3명을 선출(21개 선거구) • 4년마다 선거 실시 (모든 의원)

구분	왓포드 (Watford Borough)	맨체스터 (Manchester City)	브라이튼 앤드 호브 (Brighton & Hove City)
의회 구성원의 역할 (시장 및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 • 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참여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지역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 • 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참여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인 정책입안자 역할 및 여러 전략 및 조직 관리 수행 • 자신들의 지역 대표하며 그들의 관점을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 개별 사례업무(casework)를 다루며 특정 이슈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거구 주민들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 • 선거구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선거구의 대표자 역할 • 지역의 원활한 거버넌스에 기여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 • 의회 혹은 다른 기관을 대표 • 의회의 거버넌스와 관리에 참여 • 높은 수준의 행동과 윤리규정을 준수
의회 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헌법의 채택과 변경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승인/채택 • 집행부의 의사결정의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 위배여부 판단 • 위원회의 권한, 구성, 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개정 • 외부 기관의 대표자 임명(임명이 집행부의 기능이거나 의회로부터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 보수체계의 채택 • 지역 명칭 변경, Honorary Alder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헌법의 채택 및 개정 및 의회 기능(non-executive function)과 집행부 기능의(executive function)의 분류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승인, 채택, 개정, 및 폐지 •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 개정 및 대체의 승인 • 집행부(Executive)의 리더 임명 및 임기의 설정 •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전략들(이를 종합한 것이 정책프레임워크)의 승인 • 예산의 승인 • 지역헌법의 채택 • 외부기관장 임명 • 구성원 허용 규정 채택 • 구성원 윤리규정의 채택 • 리더 멤버의 임명

구분		왓포드 (Watford Borough)	맨체스터 (Manchester City)	브라이튼 앤드 호브 (Brighton & Hove City)
		<p>및 Freedom of the Borough 칭호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d of Paid Service의 임명 동의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채택 및 지역 입법(local legislation of personal bills)의 찬성 혹은 반대 • 지역헌법에 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모든 선택 가능. •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의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에 임명권한이 없거나 의회에 위임된 외부 기관장의 임명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채택 및 지역 입법(local legislation of personal bills)의 찬성 혹은 반대 • 지방정부의 임금체계 설정 • 리더의 해임안 상정 및 표결 • 지역헌법에 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모든 선택 가능. •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의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내각	시장/ 리더 선출 방법 및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유권자가 직접 시장을 선출 • 4년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총회에서 내각의 리더를 선출 • 임기는 의회에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연례회의에서 의회의 리더를 임명 • 대체로 연간단위로 임명 • 의회에서 임명되지 않을 경우, 다수당의 리더가 역할을 수행
	시장/ 리더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 • 의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방향제시 • 내각 및 부시장 지명 • 집행부 기능에 대한 위임계획 결정 • 내각 회의의 의장 • 시장의 결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 • 시민행사 참석 시 첫 번째 거부권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 기능의 위임여부 및 대상의 결정 • 내각 및 부리더 지명 • 내각 회의의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리더는 직선시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 정책 프레임워크 및 예산의 개발 • 의회에서 승인된 정책의 이행 •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자 역할 • Policy, Resources and Growth Committee의 위원장 • 관료들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지도 •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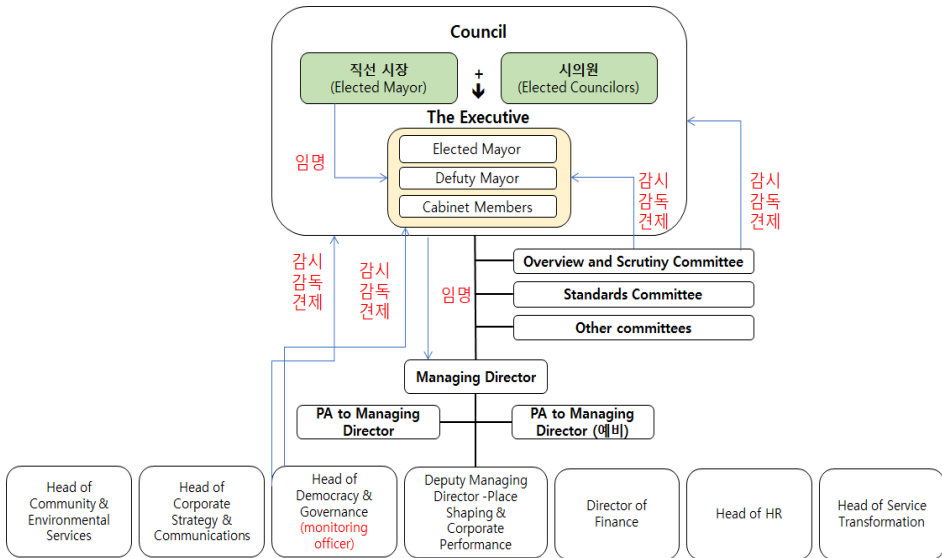
구분		왓포드 (Watford Borough)	맨체스터 (Manchester City)	브라이튼 앤드 호브 (Brighton & Hove City)
	부시장/ 부리더 임명 방법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임명 후 의회에 보고 해임 및 교체는 시장의 재량,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회에 보고 시장 부재시나 임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시장의 역할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가 임명 후 감사관 및 의회에 보고 해임 및 교체는 리더의 재량,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관 및 의회에 보고 리더 부재시나 임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리더의 역할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가 연례회의에서 한명 이상의 부리더를 임명 리더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리더의 역할을 수행
	내각 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지명하는 2-7명으로 구성 (현재 7명) 해임 및 교체는 시장의 재량,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회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더가 지명하는 1-8명으로 구성 (현재 8명) 해임 및 교체는 리더의 재량,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관 및 의회에 보고 	-
	내각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한 의사결정을 집행부의 미래계획에 반영 의회 혹은 시장으로부터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의 사무와 법률 및 지역헌법에 명시된 기능 수행 주요한 의사결정을 집행부의 미래계획에 반영 	-
행정관	수석 행정관 임명 방법	수석행정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을 의회총회에서 임명	수석행정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을 의회총회에서 임명	수석행정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을 의회총회에서 임명
	수석 행정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d of Paid Service 역할 수행 지방정부 부서 구성의 결정 및 공표 관리구조 및 공무원의 배치 공표 의회 사무의 이행 사항 보고 필요 인력의 규모와 수준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d of Paid Service 역할 수행 지방정부 부서 구성의 결정 및 공표 관리구조 및 공무원의 배치 공표 의회 사무의 이행 사항 보고 필요 인력의 규모와 수준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d of Paid Service 역할 수행 지방정부 부서 구성의 결정 및 공표 관리구조 및 공무원의 배치 공표 부서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운영 구성원의 직위 수락 및 사임업무를 담당 파트너십 및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 지방 선거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의회 사무의 이행 사항 보고 필요 인력의 규모와 수준을 보고

구분		왓포드 (Watford Borough)	맨체스터 (Manchester City)	브라이튼 앤드 호브 (Brighton & Hove City)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방법	의회 책임사무 이행을 위해 의회가 설치	의회 책임사무 이행을 위해 의회가 설치	의회 책임사무 이행을 위해 의회가 설치
감사/ 견제	감독 및 조사위 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임명 •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임명 • 현재 6개의 정책분야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됨 • 위원회 당 최소 10명의 의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연례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임명 • 보건정책 분야에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구성 • 10명의 의원 및 4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
	감독 및 조사 위원회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결정 사항 및 성과감독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개발 보조 • 심의 혹은 감독결과를 제언의 형태로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집행부의 의사결정 사항 및 성과감독 • 정책프레임워크 및 예산개발 보조 • 미집행된 결정에 대한 화수가능 • 심의 혹은 감독결과를 제언의 형태로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 지방정부의 보건기능 집행과 기타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
	감사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집행부 기능 이행의 적법성 심사 • 지역헌법 최상상태 유지 • 기준위원회 보조 및 조사업무 수행 • 의회와 내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확보 • 집행부 의사결정의 예산 및 정책프레임워크 준수여부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집행부 기능 이행의 적법성 심사 • 지역헌법 최상상태 유지 • 내각의 인명부 관리 및 기준위원회 보조와 조사업무 • 의회와 내각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확보 • 집행부 의사결정의 예산 및 정책프레임워크 준수여부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헌법 최상상태 유지 • 감사 / 기준위원회 보조 • 의회와 집행부 기능 이행의 적법성 심사 • 의사결정 권한 및 적절성에 대한 조언 • 구성원의 윤리규약 위반여부 조사 및 기준 패널 보조

□ 분석결과 종합 요약2: 기관 간 관계도

- 기관 간 관계는 <표 3-26>과 같이 요약될 수 있지만, 그 구조를 조직도 상에서 보다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이하의 그림과 같음
 - 상대적으로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했을 경우, 기관 간 견제가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왓포드의 기관 간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3-5>와 같음
- 직선시장이 내각(the executive, 부시장 포함) 및 고위행정직에 대한 임명을 하고, 감독 및 조사위원회와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전체 및 내각의 결정을 감사·감독·견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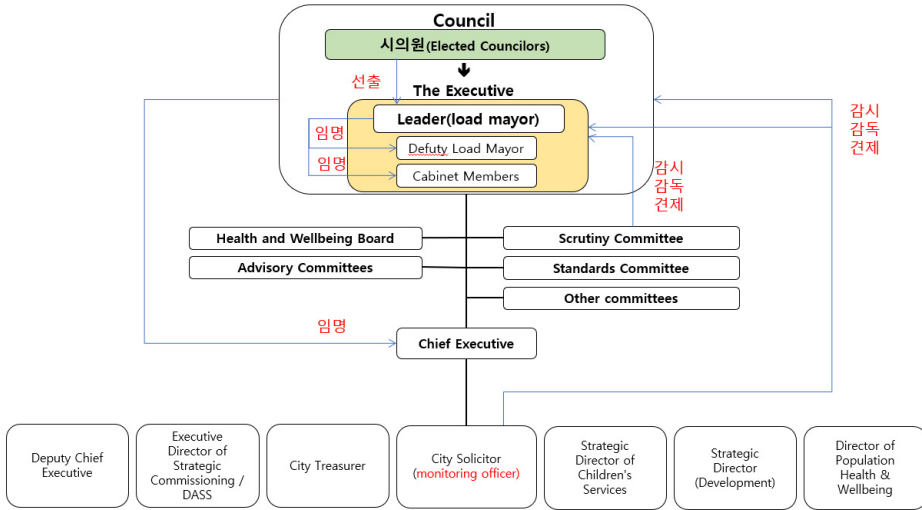
<그림 3-5> 왓포드(Watford)의 기관 간 관계도



- 맨체스터의 기관 간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3-6>과 같음
- 시의원 중 선출된 리더(시장)가 내각을 구성하고, 지방의회가 주요 고위행정직에 대한 임명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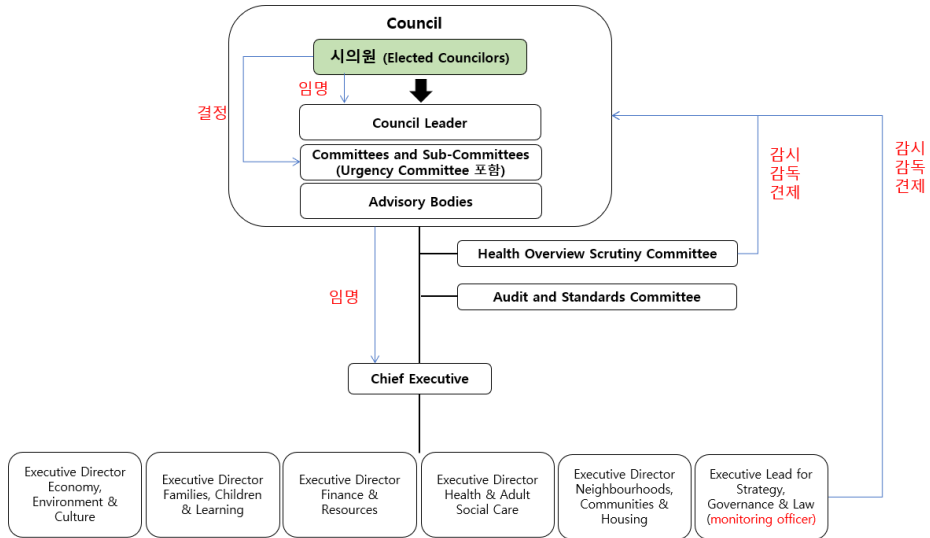
- 감독 및 조사위원회와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전체 및 내각의 결정을 감사·감독·견제함

〈그림 3-6〉 맨체스터(Manchester)의 기관 간 관계도



- 브라이튼 앤 호브의 기관 간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림 3-7>과 같음
- 지방의회가 의회리더 및 하부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고, 주요 고위행정직에 대한 임명을 함
- 감독 및 조사위원회와 감사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 전체의 결정을 감사·감독·견제함

〈그림 3-7〉 브라이튼 앤드 호브(Brighton & Hove)의 기관 간 관계도





제4장

미 국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제3절 소결론

제4장 미 국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및 모든 법적 권한은 주 정부가 가짐(주재복 2013)
- 연방수정헌법에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론적으로 연방 헌법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음(윤인숙, 2018)
 - 딜런의 원칙(Dillon's Rule)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 헌법 혹은 법률에 명시된 것 혹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암시되는 것에 한함
- 일부 주에서는 주가 주 헌법 혹은 법령을 통해 홈 룰(Home Rule)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홈 룰은 해당 자치단체가 주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임
 - 홈 룰 규정은 주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주재복, 2013)
- 미국의 지방정부는 각 주(State)마다 명칭과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윤인숙, 2018). 각 주는 일반적으로 카운티(County), 시(Municipalities), 타운/타운십(Town/Township), 교육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trict)로 구성됨
 - 2012년 Census of Governments 기준 총 90,05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

재함. 이중 일반목적 지방정부(General purpose governments; 카운티, 시, 타운/타운십)가 30,910개이며 특별목적 지방정부(Special-purpose governments; 교육구, 특별구)가 51,146개임

〈표 4-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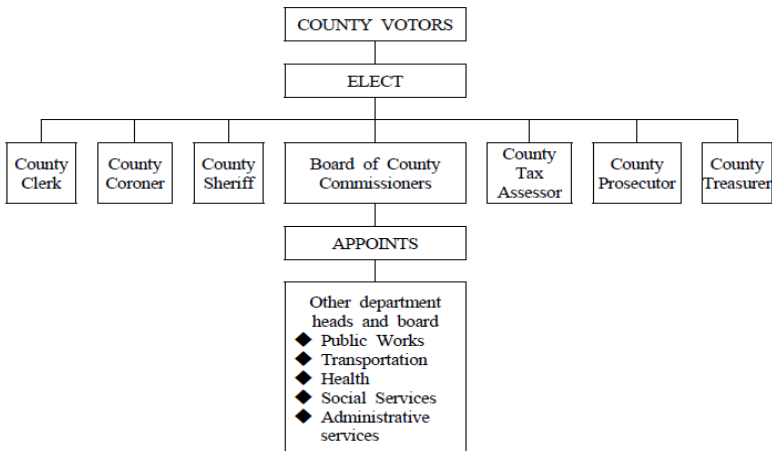
구 분	자치단체 유형		개 수
일반목적 지방정부 (General purpose governments)	카운티(county)		3,031
	하위 단체 (sub-county)	시(municipal)	19,519
		타운 및 타운십 (town & township)	16,360
		소 계	35,879
	합 계		38,910
특별목적 지방정부 (Special purpose governments)	교육구(school district)		12,880
	특별구(special district)		38,266
	합 계		51,146
총 계			90,056

*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Census of Governments

- 카운티는 일반적으로 시, 타운, 타운십 및 특별구를 포함하는 단위로 가장 큰 단위의 자치단체임
 - 코네티컷(Connecticut),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를 제외한 48개 주에 카운티 지방정부가 존재함
 - 주정부의 보조기능 및 지방정부의 광역행정 업무 지원 역할을 수행
 - 본래 카운티는 주 정부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권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주에 따라 카운티의 자치현장 제정이 가능해지면서(2010년 기준 30개 주) 자치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인 카운티 정부는 최고위원(Commissioner) 혹은 감독관(Supervisor)과 이들이 구성하는 최고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에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함. 일반적인 기관구성 방식은 〈그림 4-1〉과 같음(기본 구조)

- 카운티는 카운티 서기(county clerk), 카운티 검사관(county coroner), 카운티 보안관(county sheriff), 카운티 세금사정관(county tax assessor), 카운티 검사장(county prosecutor), 카운티 재무관(county treasurer)을 선출직으로 두고 있음
- 최고위원회는 별도의 집행기관 없이 스스로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함.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관료들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 전통적인 카운티 정부에는 전문적 행정가의 부재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로 인해 대안적 카운티 정부로서 전문 행정가(executive or administrator)를 선출 혹은 임명하는 형태가 도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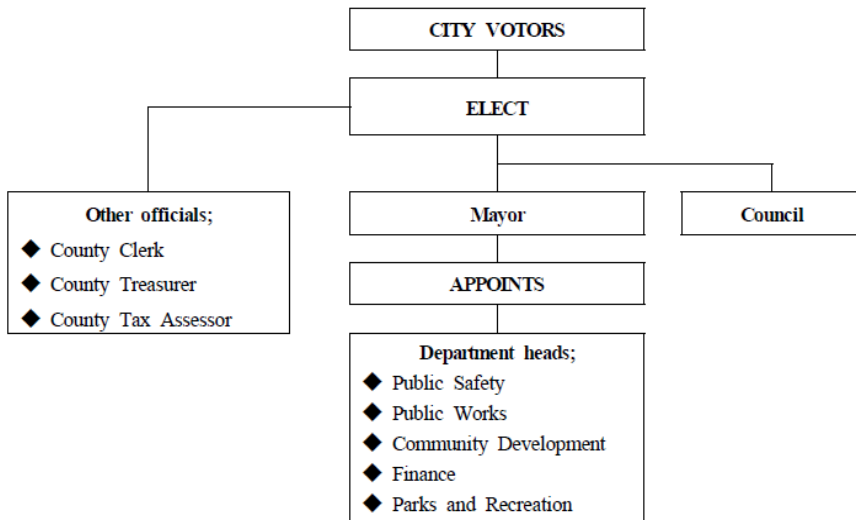
〈그림 4-1〉 전통적인 카운티 정부의 지방정부 구조



* 출처: Bowman and Kearney, 2012

- 시는 주정부의 보조기관으로써 시작된 카운티와 달리 초기부터 주민자치를 위해 설립된 기관임
- 일반적으로 시는 카운티 정부에 비해 더 많은 의사결정권한과 재량권한을 가짐
- 대부분의 시정부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의회-관리자형(council-manager form), 시위원회형(city commission form)의 세 가지 구조 중에서 하나로 운영됨(Bowman and Kearney, 2012)
- 각 유형의 기본적인 기본 구성은 <그림 4-2>부터 <그림 4-4>와 같음
- 시장-의회형은 시민들이 시장과 의회는 물론 서기, 재무관, 세금사정관까지 선출함. 시장은 그밖의 부서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더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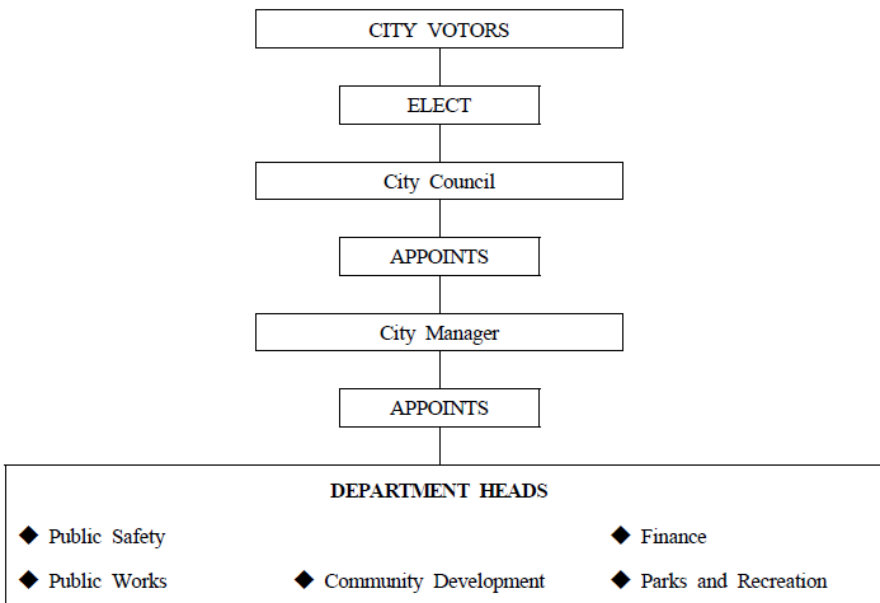
<그림 4-2>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의 정부구조



* 출처: Bowman and Kearney, 2012

- 이에 비해 의회-관리자형의 지방정부 구조는 유권자들은 시의회를 선출하고, 시의회가 시 관리자(city manager)를 지명함. 시 관리자는 각 부서장을 지명할 수 있음. 시의회는 정책을 만들고, 시 관리자는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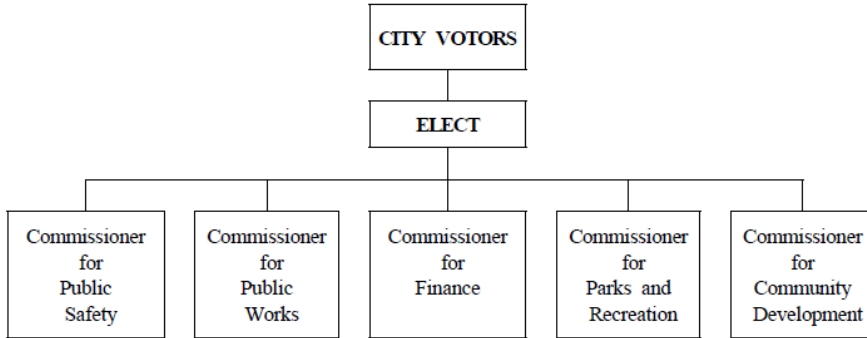
〈그림 4-3〉 의회-관리자형(Council-manager form)의 지방정부 구조



* 출처: Bowman and Kearney, 2012

- 시위원회형은 유권자가 각 위원회를 선출하는 구조임. 입법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주관하고 있어 정책결정자이자 집행자가 됨. 대체로 위원 중 한 명이 시장으로 지명되지만, 단지 위원회의 회의 주관 역할만을 수행함

〈그림 4-4〉 시위원회형(City commission form)의 지방정부 구조



* 출처: Bowman and Kearne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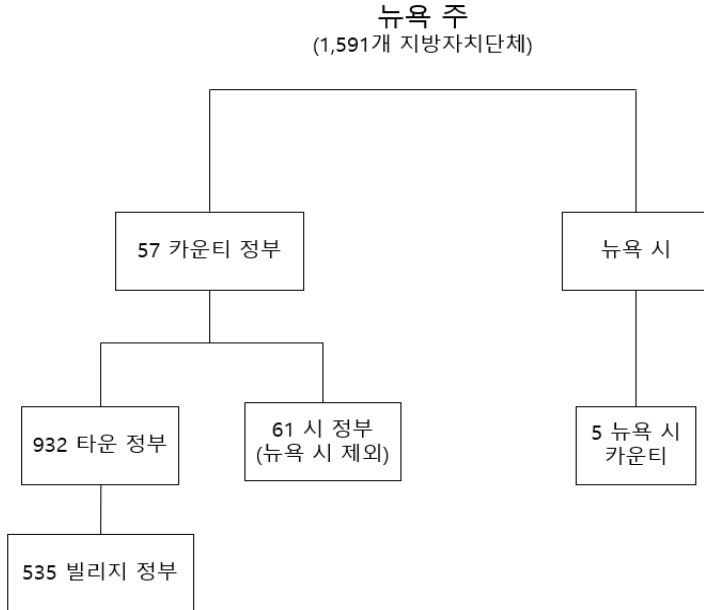
- 타운과 타운십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자치정부의 형태로, 미국 직접 민주주의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음(윤인숙, 2018)
 - 타운십 정부 형태는 시(municipality)로의 승격 혹은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밖에 특별구(Special Districts)와 교육구(School Districts)가 있음
 - 특별구는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정부임. 주로 일반 정부가 수행할 수 없거나 꺼려하는 기능을 담당함. 이러한 기능들에는 상수도, 소방, 쓰레기 수거 등이 포함됨
 - 교육구는 단일목적 지방정부의 한 유형으로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유형임. 1960년대에는 4만여 개에 육박하였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재 1만3천여 개 정도로 감소하였음(2012년 기준 12,880개)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전역을 분석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뉴욕주를 분석대상 범위로 한정하였음
 - 상대적으로 1개 주 내의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고,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임

2. 뉴욕 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뉴욕 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뉴욕은 최초에 네덜란드의 무역기점으로서 설립되었으며, 미국의 독립 이후 1777년 뉴욕 주의 첫 헌법이 채택됨
- 미국 헌법의 10차 개정(10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은 지방정부를 연방법이 아닌 주의 사무로 만듦(위키백과,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 뉴욕 주의 지방정부는 크게 카운티(Counties), 시(Cities), 타운(Towns), 그리고 빌리지(Villages)로 구성됨. 개괄적인 구조는 <그림 4-5>와 같음

<그림 4-5> 뉴욕 주 지방정부의 구조



* 출처: 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 현 뉴욕 주 헌법은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가 각각 주민들의 투표로 구성된 입법부(legislative body)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 뉴욕 주는 자치단체의 지역입법을 허용하는 홈 룰(Home Rule)을 도입하고 있는 주이며,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입법부는 지방정부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역 법(Local law)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음(New York Constitution, Article IX, 1(a))
- 뉴욕 시(City of New York)를 제외한 각각의 시와 타운은 하나의 카운티에 포함되며, 각 빌리지는 하나의 타운에 포함됨(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
- 뉴욕 주(뉴욕 시 제외)는 총 57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1개 카운티는 시정부를 포함하지 않고 타운 및 빌리지로만 이루어져 있음
 - 카운티의 크기는 인구 1,493,350명(Suffolk County)부터 4,836명(Hamilton County)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2010년 Census 기준)
 - 뉴욕 시에 포함되어있는 5개의 카운티는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일반 카운티의 조직 및 기능과는 다름(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 57개 카운티 중 49개 카운티는 전문적 행정관료(Executive, manager, administrator)를 선출 혹은 임명하는 대안적 형태(Alternative County Government)를 채택하고 있으며, 8개 카운티는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서의 수장을 겸하는 전통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많은 카운티가 뉴욕 주 카운티 법(County Law)의 일반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23개 카운티는 자체 헌장을 제정하고 있음
- 뉴욕 주에는 62개의 시 정부가 있음. 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은 의회-관리자형(13개), 위원회형(3개), 시장-의회형(46개)로 다양하게 나타남(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 시장-의회형을 채택한 자치단체들 중 3개는 시 행정관(city administrator)을 두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회형 시의 기관구성은 강시장형과

약시장형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 뉴욕 주의 시 정부에서는 강시장형 기관구성이 가장 보편적 형태임
- 뉴욕 주에는 932개 타운이 존재함. 타운은 크게 인구 1만 이상의 1등급 타운(town of the first class)과 그 이외의 2등급 타운(town of the second class)으로 구분됨.
 - 인구 1만 이하의 타운이라도 인구가 5천명 이상이고, 평가가치(assessed valuation)가 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인접한 경우 1등급 타운으로 분류됨
 - 타운 일반법(Town Law)에서는 타운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타운 위원회(town board)가 입법기관을 구성하며, 위원회의 리더인 관리자(supervisor)가 집행기관의 장 역할을 수행함
- 뉴욕 주에는 총 535개의 빌리지 정부가 존재하며, 인구분포는 53,891명 (Village of Hempstead)부터 11명(Village of Dering Harbor)까지 다양함. 대부분의 빌리지는 인구 2,500명 정도의 규모임
 - 타운 정부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입법기능을 담당하며, 이사회는 시장과 이사들로 구성됨. 이사와 시장은 지역 법과 헌장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2년 임기로 선출됨
 - 55개 빌리지 정부는 시장의 행정기능을 대신하여 관리자(Manager) 혹은 행정관(Administ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3.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법적 근거

1)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 뉴욕 주 헌법의 변화의 역사

- 미국 최상위 법인 연방헌법에서는 지방정부에 관련된 별도 조항이 없으며, 관련 조항은 주 헌법 및 주의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뉴욕 주 헌법은 177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초로 제정된 주 헌법에서는 카운티와 타운, 그리고 시만을 지방정부 단위로 다루고 있음
- 1788년 카운티들의 기본 구성이 갖춰졌으며, 모든 카운티들은 카운티에 포함되는 타운들로 분할됨.
- 1959년 주 헌법 개정은 카운티 정부들로 하여금 자체 현장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이후 현재까지 23개 카운티가 자체 현장을 채택함
- 시 정부의 자체현장 제정 권한은 1777년 주 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인정되었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시 정부가 자체 현장을 교체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848년 주 헌법 개정에서는 주 정부가 자치단체의 선출직 관료를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 결과가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 1962년 뉴욕 주 의회에서 추가한 타운분류에서는 1등급 타운들 중 인구가 2만5천명 이상인 타운과, 인구가 최소 7,500 이상인 타운 중 인구 10만 이상의 시로부터 15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1940~1960년 인구조사 기간에 상당한 인구성장을 보인 타운을 교외 타운(suburban town)으로 분류함
- 뉴욕 주 헌법 제 9조 “Local Government”에서 지방정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 9조는 홈 룰 조항(Home Rule article)로 불리기도 함

- 1892년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일반 지방자치 법률(General Municipal Law)이 제정되었으며, 1909년부터는 Consolidated Laws를 통해 각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법이 적용되었음
- 현재 뉴욕 주 지방자치법(Municipal Home Rule Law)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그리고 빌리지를 지방 정부로 정의하고 있음

□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 <표 4-2>는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New York State Constitution(2015 개정)”과 뉴욕 주의 “Consolidated Law”에 포함된 “County Law”, “General City Law”, “Town Law”, “Village Law”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를 기술함
 - 카운티 정부의 경우 관리자 위원회(Board of Supervisor)가 행정과 입법 기능을 담당하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카운티 일반법(County Law)에 규정하고 있음. 법에 규정된 직위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지방 법(Local Law)을 통해 필요 직위를 만들 수 있음
 -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카운티 정부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유형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각 일반법에서 입법기관의 구성 및 행정기관의 대략적인 구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 시와 빌리지, 그리고 타운의 경우 자체 헌장 혹은 지방 법률을 통해 입법기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경우 일반법에 기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각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표 4-2〉 뉴욕 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성의 법적 근거

원문	번역
<p>〈New York State Constitution〉</p> <p>(h) (1)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shall be empowered by general law, or by special law enacted upon county request pursuant to section two of this article, to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county government provided by the legislature or to prepare,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their own. Any such form of government or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may transfer one or more functions or duties of the county or of the cities, towns, villages, districts or other units of government wholly contained in such county to each other or when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to the state, or may abolish one or more offices, departments, agencies or units of government provided</p>	<p>(h) (1) 다른 시에 완전히 포함된 카운티는 제외하고, 카운티 정부들은 동조 2항에 따라 <u>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입법된 특별법 또는 일반법에 의해 대안적 정부형태를 채택, 수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u> 주 법 또는 지방 법에 따라, 카운티에 완전히 포함된 시, 타운, 빌리지, 구, 또는 정부의 다른 단위들의 기능들을 서로에게, 또는 주 의회에 의해 보장된 경우에는 주정부로 이전하거나 정부의 부서 또는 조직을 폐지할 수 있다.</p>
<p>〈Municipal Home Rule〉</p> <p>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p> <p>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p> <p>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p> <p>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p> <p>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 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p>	<p>2. 주 법령의 권한에 속하거나 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무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p> <p>a. 시가 새로운 헌장을 채택할 경우</p> <p>b. 시, 타운, 빌리지의 경우, <u>입법기관의 구성과</u> <u>의원의 자격을 변경할 때, 의회 의결정족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u></p> <p>c. <u>선출직 행정책임자의 법안거부권을 변경할 때.</u></p> <p>d. 카운티 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u>선출직 카운티 행정책임자 직위의승계 법을 변경할 때, 또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시와 빌리지 정부의 시장, 타운의 감독관이 없을 경우.</u></p> <p>e. <u>선출 직위의 폐지 시, 선출 직위의 추천, 선출 또는 해임 방법의 변경 시, 선출 직위의 임기 변경 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급여의 감축 시</u></p> <p>f. <u>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폐지, 이전 또는 감축 시</u></p> <p>g. <u>선출 직위를 신설할 때</u></p> <p>h. <u>시의 경우 동 경계의 변경,</u></p>

원문	번역
<p>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 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p> <p>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p> <p>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p>	
<p><Consolidated Law_General Municipal> Section 2. Definition The term “municipal corporation,” as used in this chapter, includes only a county, town, city and village. The term “governing board” includes the board of supervisors of a county, the town board of a town, the common council of a city, and the board of trustees of a village.</p>	<p>2절 정의 본 장에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카운티, 타운, 시 및 빌리지만을 포함한다. “관리 위원회”라는 용어는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 타운의 타운위원회, 시의 시의회, 빌리지의 평의회를 포함한다.</p>
<p><Consolidated Law_County> Section 204. Position of Employment In addition to those positions of employment specifically provided by law,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have power to establish positions of employment and may abolish the same.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such positions may be by local law, by resolution or by the adoption of the budget. Rules may be adopted providing for the temporary transfer of employees from one office or department to another as authorized by the civil service law.</p>	<p>204절 채용 직책 법에 명시된 채용 직책에 더불어, 관리자 위원회는 채용 직책을 설립하고 이를 폐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직책들의 설립 및 폐지는 지역 법, 결의 혹은 예산 채택에 의해 가능하다. 규칙은 하나의 사무소나 부처에서 다른 곳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권한 수여된 바에 따라 직원들의 임시 이적을 제공하여 채택될 수 있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10. Gener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1. In addition to powers granted in the constitution, the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or in any other law, (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consistent with any</p>	<p>10절 지역 법을 채택 및 수정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일반 권한 1. 헌법에서 부여된 권리에 추가로, 지방정부의 법령 혹은 기타 법, (i) 모든 지방정부는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에 불합치 하지 않는 그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지역 법을 채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ii) 모든 지방정부는 본 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p>

원문	번역
<p>general law relating to its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and,</p> <p>(ii) every local government, as provided in this chapter,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consistent with any general law, relating to the following subjects, whether or not they relate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ure shall restrict the adoption of such a local law relating to other than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p> <p>a. A county, city, town or village:</p> <p>(1) The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number, mode of selection and removal, terms of office, compensation, hours of work,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except that cities and towns shall not have such power with respect to member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county in their capacities as county officers. This provis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creation or discontinuance of departments of its government and the prescription or modification of their powers and duties.</p> <p>(2)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the membership and composition of its legislative body.</p>	<p>에 불합치 하지 않는 다음 주제에 관련한 법을 채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고, 이는 그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단, 입법기관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관련된 지역 법의 채택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a. 카운티, 시, 타운 혹은 빌리지:</p> <p>(1) 그의 공무원 및 직원의 권한, 의무, 자격요건, 수, 선택 방식 및 제거, 임기, 보수, 업무시간, 보호, 복직 및 보호. 단, 시와 타운이 카운티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에서 해당 카운티의 입법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 조항은 그의 정부 부처의 창설이나 중단 및 그의 권한과 의무의 지시 혹은 수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p>(2)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 기관의 회원 자격 및 구성.</p>
<p>〈Consolidated Law_County〉 Section 150-A The supervisors of the several cities and towns in each county, when lawfully convened, shall constitute the board of supervisors of the county.</p>	<p>150-A 절 각 카운티의 몇몇 시와 타운들의 감독관들은 합법적으로 소집된 경우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p>
<p>〈Consolidated Law_County〉 Section 150-A</p>	<p>150-A 절 1.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가 가지거나 기득한</p>

원문	번역
<p>1. All the functions, powers, obligations and duties which by law are possessed by or vested in the board of supervisors of a county may be exercised by an elected county legislative body, by whatsoever name designated, which shall, pursuant to law, or order or judgement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 established in place of the board of supervisors of such county. All acts heretofore performed by such elected county legislative body shall be valid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have been valid if performed by the board of supervisors of such county.</p>	<p>모든 기능, 권한, 의무 및 법에 의한 책무들은 어떤 이름이든 지정된 선출된 입법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있고, 이는 법, 관할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해당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 대신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출 카운티 입법 기관에 의해 종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는 이러한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가 수행한 경우에 유효한 범위에 한해서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유효하다.</p>

2)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 및 방법

뉴욕 주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

○ 기관구성의 형태 변경 절차 유형

- 카운티 정부의 경우 법안이 카운티 정부 통치기구의 구성이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10 (13_e))
- 대안적 정부형태를 채택한 카운티 정부는 처음 대안적 형태를 채택한 후 3년 이후에 다른 형태의 대안적 정부형태로 변경할 수 있음(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55). 이 경우, 변경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56)
- 지방자치단체가 선출직 직위를 신설 혹은 폐지할 경우와 시, 타운, 빌리지 정부가 입법기관의 구성과 의원의 자격을 변경하거나 의결 정족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에 의한 헌장 재/개정 및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법률이 효력을 받

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정부부서 설치나 폐지 등의 경우 지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Municipal Home Rule, Section20 (1)),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함. 거부된 법안을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2/3의 동의가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1)

□ 기관구성 형태 변경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 <표 4-3>은 기관구성 형태변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술한 것임
 - 이 표에 명시된 절차를 제외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각 자치단체의 지방 의회가 의결한 절차법에 따름

<표 4-3> 뉴욕 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변경절차 및 방법의 근거법

원문	번역
<p><New York State Constitution> (h) (1)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shall be empowered by general law, or by special law enacted upon county request pursuant to section two of this article, to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county government provided by the legislature or to prepare,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their own. Any such form of government or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may transfer one or more functions or duties of the county or of the cities, towns, villages, districts or other units of government wholly contained in such county to each other or when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to the state, or may abolish one or more offices, departments,</p>	<p><뉴욕 주 헌법> (h) (1) 한 시 내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 이외의 카운티들은 일반 법에 의해 혹은 본 조의 이절에 따라 카운티의 요청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입법기관이 제공한 카운티 정부의 대안 양식의 채택, 수정 혹은 폐기 또는 카운티 자체의 대안 양식의 작성, 채택, 수정 혹은 폐기를 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정부의 양식이나 이에 대한 수정안은 입법 혹은 지방법에 의해 그러한 자치 시에 완전히 포함된 카운티 혹은 시, 타운, 빌리지, 구역 혹은 정부의 다른 단위의 하나 이상의 기능이나 의무를 서로에게 이전할 수 있고 혹은 주에 대한 입법으로 허가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무소, 부처, 기관 혹은 정부 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하위 구분의 (2)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양식이나 수정은 시 밖에서의 카운티 지역에서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고려되는 자치지의 시들에서 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주민투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p>

원문	번역
<p>agencies or units of government provided, however, that no such form or amendmen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subdivision,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approved on a referendum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ereon in the area of the county outside of cities, and in the cities of the county, if any, considered as one unit. Where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 government or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provides for the transfer of any function or duty to or from any village or the abolition of any office, department, agency or unit of government of a village wholly contained in such county, such form or amendment shall not become effective unless it shall also be approved on the referendum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ereon in all the villages so affected considered as one unit.</p> <p>(2) After the adoption of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 government by a county,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which abolishes or creates an elective county office, changes the voting or veto power of or the method of removing an elective county officer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abolishes, curtails or transfers to another county officer or agency any power of an elective county officer or changes the form or composition of the county legislative body shall be subject to a permissive referendum as provided by the legislature. (Amend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6, 2001.)</p>	<p>된다.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이나 그 수정인이 입법기관의 행위나 법에 의해 빌리지로부터 혹은 빌리지로 기능이나 의무 이전 혹은 이러한 카운티에 완전히 포함된 빌리지의 사무소, 부처, 대리인 혹은 정부 단위의 폐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양식이나 수정은 하나의 단위로 고려되는 영향을 받는 모든 빌리지에서 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주민투표로 또한 승인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p> <p>(2) 카운티에 의한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의 채택 이후, 입법기관의 행위나 법에 의해 선출된 카운티 사무소를 폐지하거나 창설하는 수정, 그의 임기 중에 선출된 카운티 공무원의 투표권이거나 거부권 혹은 제거 방식을 변경, 선출된 카운티 공무원의 권한을 철회, 축소 혹은 다른 카운티 공무원에게 이전, 카운티 입법 기관의 양식이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긍정적인 주민투표를 얻어야 한다. (2001년 11월 6일 국민 투표로 수정됨)</p>
<p><New York State Constitution></p> <p>(c) In addition to powers granted in the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or any other law, (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p>	<p><뉴욕 주 헌법></p> <p>(c) 지방정부의 입법이나 다른 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추가로 (i) 모든 지방정부는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에 불합치 하지 않는 그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지역 법을 채</p>

원문	번역
<p>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r any general law relating to its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and, (i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r any general law relating to the following subjects, whether or not they relate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ure shall restrict the adoption of such a local law relating to other than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p> <p>: (1) The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number, mode of selection and removal, terms of office, compensation, hours of work,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except that cities and towns shall not have such power with respect to member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county in their capacities as county officers.</p> <p>(2)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the membership and composition of its legislative body.</p>	<p>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ii) 모든 지방 정부는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에 불합치 하지 않는 다음 주제에 관련한 법을 채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고, 이는 그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단, 입법기관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관련된 지역 법의 채택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 (1) 공무원과 직원의 권한, 자격요건, 선출 및 해임 방식, 임기, 보수, 업무시간, 보호, 복지 및 안전. 단, 시와 타운이 카운티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에서 해당 카운티의 입법 기관 구성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p> <p>(2)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자격 및 구성</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10 (d.) Where a public hearing on a local law proposed to be adopted under this subparagraph is required, by subdivision five of section twenty of this chapter, to be held only before an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legislative body shall not adopt such proposed local law until after a public hearing shall have been held thereon before it, on notice as provided in such subdivision five, in which event no public hearing thereon before such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be required.</p>	<p><지방 자치> 10절 (d.) 본 장의 이십절의 오 하위절에 의해 본 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된 지역 법에 대한 공청회가 선출직 행정책임자에 의해서만 개최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입법 기관은 그에 대한 공청회가 입법 기관에서 개최될 때까지 이러한 제안된 지역 법을 채택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오 하위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고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정책임자에 의한 공청회가 요청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한다.</p>

원문	번역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0 Procedure for adoption of local laws by legislative body</p> <p>1. No local law shall be passed except by at least the majority affirmative vote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On the final passage of a local law the question shall be taken by ayes and noes, and the names of the members present and their votes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journal or minutes of proceedings.</p>	<p>〈지방 자치〉 20절 입법기관에 의한 지역 법 채택 절차</p> <p>1. 어떠한 지역 법도 입법 기관의 총 의결권의 최소 과반수의 긍정표를 얻지 않고는 통과되지 않는다. 지역 법의 최종 통과시에, 찬성과 반대를 물어 야 하고, 참석 구성원의 이름과 그들의 투표가 기록, 저널 혹은 절차 의사록에 기입되어야 한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Local laws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p> <p>1. A local law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as provided in this section or in any other state statute, shall be submitted for the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general election of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such local government held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thereof unless such local law provides for its submission for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special election or unless,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such local law, a petition signed, authenticated and subject to certification by the clerk as provided for other petitions in section twenty-four of this chapter is filed with such clerk requesting its submission at a special election. If the local law so provides or if a valid petition is so filed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local law at a special election, it shall be submitted at such a special election held in such local government not less than</p>	<p>〈지방 자치〉 23절 의무적인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역법</p> <p>1. 본 절이나 다른 주 입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은 이러한 지역법이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을 준비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개최되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주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법의 채택 이후 삼십일 이내에 본 장의 이십사절의 다른 청원에 따라 서기의 서명, 인증 및 증서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이 특별 선거에 그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법이 이렇게 제공하거나 유효한 청원이 이렇게 제출되어 특별 선거에서 지역법이 제출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 법의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이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개최된 특별 선거에 제출되어야 하고 특별 선거일은 입법기관이 정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러한 지역 법은 제의에 대한 이러한 지방정부 투표를 위한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이러한 선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규정된 바에 따라 운용된다.</p>

원문	번역
<p>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the local law, the date for which special election shall be fixed by the legislative body. In either case such local law shall become operative as prescribed therein only if approved at such elec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such local government voting upon the proposition.</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p> <p>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 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 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 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 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 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 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 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 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 h.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the boundaries of wards, or other districts, from which members of the county 	<p><지방 자치></p> <p>23절</p> <p>2. 주 법령에 의해 달리 명시되거나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 법은 다음의 경우에 의무적인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시의 경우 이러한 시의 새로운 헌장을 제시하는 경우. b.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자격 혹은 구성의 변경이나 구성원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수의 증감. c. 선출된 최고 집행위원의 거절권 변경. d. 카운티에서 선출된 카운티 행정책임자직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 혹은 감사위원회에 장이 없는 경우, 시나 빌리지의 시장 혹은 타운의 감독관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 e. 선거직의 철폐 혹은 선거직의 지명, 선출 혹은 해임 방식 또는 선거직 임기 변경 또는 그의 임기 중 선거직 임금의 축소 f. 선거직 권한의 철폐, 이전 혹은 축소 g. 새로운 선거직 창설 h. 시의 경우,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표하기로 선택되어 선출된 해당 시의 구나 다른 지역의 경계 변경 i. 공공 사업 독점 사업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 변경 j. 시의 경우, 이러한 임금, 보수, 시간 혹은 조건들이 주 법안으로 고정되고 해당 시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시 공무원이나 직원 임금이나 보수의 감액, 직원 근무 시간 증대 혹은 그의 근무 조건 지역법이나 제안된 새로운 선장에 포함된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항도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대한 확고한 질의가 이러한 감액,

원문	번역
<p>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such city to represent the city, are elected.</p> <p>i.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public utility franchises.</p> <p>j. In the case of a city, reduces the salary or compensation of a city officer or employee, increases his hours of employment or changes his working conditions if such salary, compensation, hours or conditions have been fixed by a state statute and approved by the vote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city. No provision effecting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contained in any local law or proposed new charter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the definite question with respect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any provisions not relating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and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voting thereon.</p> <p>k.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the membership or terms of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f the city.</p>	<p>증대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조항과 별도로 제 출되고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이에 대한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않다.</p> <p>k. 시의 경우 회원자격이나 해당 시 공무원 위원 회실 조건에 대한 법률 조항 변경</p>

* 출처: New York State Constitution,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4.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 현황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1) 기관구성 유형별 분포현황

- 뉴욕 주의 기관구성은 지방정부 수준에 따라, 그리고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통합된 형태(전통적)와 의회와 집행기관이 분리된 형태(대안적)로 구분됨
 - 카운티 정부의 경우 8개의 카운티가 전통적인 형태의 카운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카운티 정부는 별도의 최고 행정관료를 두는 대안적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Local Government Handbook)
 - 대안적 카운티 정부형태 중 Executive Form이 18개, Manager Form이 10개, Administrator Form이 8개로 나타남(Local Government Handbook)
- 62개의 시정부의 기관구성 유형은 의회-관리자형 13개, 위원회형 3개, 시장-의회형 46개로 나타남(Local Government Handbook)
 - 시장-의회형을 채택한 자치단체들 중 3개는 시 행정관(city administrator)을 별도로 두고 있음
- 타운정부의 경우 타운 의회(Town Board)가 입법기관을 구성하며, 별도의 집행기관 없이 의회의 장인 관리자(Supervisor)가 해당역할을 수행함
- 빌리지정부는 입법기관인 이사회(Board of trustees)와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55개 빌리지의 경우 별도의 전문 행정 관료인 관리자(Manager) 혹은 행정관(Administ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 분석대상지역 선정

- 자치단체 현황을 바탕으로 뉴욕 주의 경우 전통적인 형태의 카운티정부, 시의 경우 의회-관리자형 1개 의회-시장형 1개를 선정하였으며, 위원회형의 타운정부 1개도 분석에 포함하였음

- 미국의 경우 카운티정부와 타운정부 모두에서 각각 위원회형을 분석한 이유는 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위원회형의 경우 현재 타운과 같은 소규모 자치단체 중에서도 매우 일부의 지역에서만 그 형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임
 - 카운티의 경우 위원회형 정부가 구성되나, 하부 타운, 빌리지 등을 대표하는 관리자(supervisor)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영국식 기관구성유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원회형 기관구성형태의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것을 판단하였음
- 각 유형별 분석 대상지역은 국내 시·군 평균인구(시 308천명, 군 55천명, 최진혁, 2012)를 고려하여 해당 유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며, 자료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함
- 분석대상지역
- 위원회형1: Delaware County (카운티, 인구 약 4.7만 명)
 - 의회-관리자형: City of Long Beach (시, 인구 약 1.5만 명)
 - 시장-의회형: City of Buffalo (시, 인구 약 27만 명)
 - 위원회형2: Town of Ossining (타운, 인구 약 3.6만 명)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1. 위원회형: 델라웨어 카운티(Delaware County)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 역사적 배경

- 델라웨어 카운티는 미국 뉴욕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카운티지만, 비교적 인구 밀도는 낮음(인구 약 5만, 면적 3,800km², 인구밀도 13/km²)(wikipedia, 2019.05.31.)
 - 인종 구성은 백인 96.44%이며, 2012년 Community Surbey에 따르면, 영국계 23.9%, 독일계 16.9%, 아일랜드계 14.1%로 나타났음.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임(위키피디아, 검색어: delaware county, 검색일: 2019.05.31.)
 - 전체 인구의 18.6%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는 28.1%로 평균연령은 41세임. 1인당 소득은 17,357 달러로 나타남(위키피디아, 검색어: delaware county, 검색일: 2019.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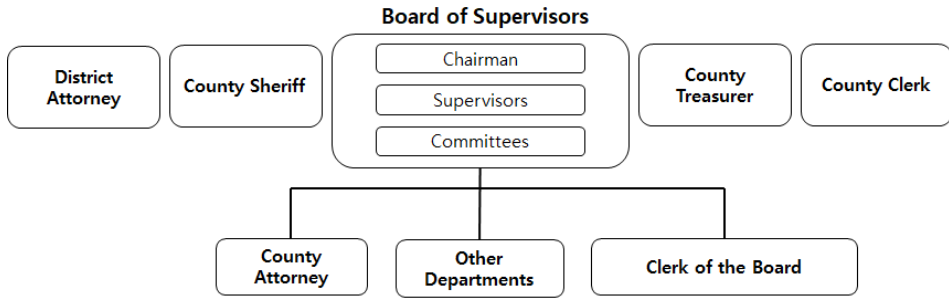
□ 기관구성 체계도

- 델라웨어 카운티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4-6>과 같으며, 전통적인 카운티정부 형태(위원회형)를 취함
- 델라웨어 카운티는 크게 타운 관리자(Supervisors) 19인으로 구성된 관리자 위원회(Board of Supervisor)와 12개 상임위원회²⁹⁾(2018년 기준) 및 개별 부서로 구성됨(델라웨어 카운티 홈페이지, 검색일: 2019.05.31.)

29) 델라웨어 카운티 위원회(Committees) 목록

- Community Health, Economic Development/Watershed Affairs, Finance, Human Resources, Legislation, Mental Health, Planning/Recreation & Culture, Public Safety, Public Works, Shared Service, Social Service, Capital Projects

〈그림 4-6〉 Delaware County(NY)의 기관구성 체계도



- 델라웨어 카운티는 자체 현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뉴욕 주 헌법과 지방 자치법(Municipal Home Rule) 및 카운티 일반법의 적용을 받음(Local Government Handbook)
- 관리자 위원회는 카운티(County)내 19개 타운(Town)의 관리자(supervisor)들로 구성되며, 각 관리자는 해당 타운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됨. 관리자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1년 단위로 관리자들 중 위원회의 장(Chairman)을 선출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1 (1))
- 관리자 위원회는 카운티의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 카운티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며(Consolidated Laws_Alternative County Government_Section 101), 관리자 위원회가 구성한 위원회(committees)들은 카운티의 각 부서를 감독하고 관리자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4)

〈표 4-4〉 Delaware County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0 Board of supervisors constituted The supervisors of the several cities and towns	150절 관리자 위원회 구성 각 카운티의 몇몇 시들과 타운의 감독관은 적법하게 소집된 경우 해당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

원문	번역
<p>in each county, when lawfully convened, shall constitute the board of supervisors of the county.</p>	<p>를 구성한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1 Organization of board 1. The members of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organize the board and select a chairman on or before the eighth day of January in each year. The board shall annually, by resolution duly adopted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fix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to organize the board. The board may provide by local law that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meet to organize and select a chairman on or before the eighth day of January in each even-numbered year. The 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serve upon each member a notice stating the date, time and place of each meeting to organize the board and that a chairman will then be selected. The notice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erved by mail addressed to each member at his last known post-office address at least forty-eight hour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p>	<p>151절 위원회 조직 1. 관리자 위원회 구성원들은 매년 1월 8일 이전에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장을 선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매년 12월 중에 적법하게 채택된 결의로 위원회를 조직하는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 법에 의해 위원회 구성원이 각 짝수 년도 1월 8일 이전에 조직 및 의장선출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자 위원회의 서기는 각 구성원에게 위원회를 조직하는 각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및 의장이 선출될 것을 고지해야 한다. 해당 고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각 구성원에게 회의 이전 최소 사십팔시간 전까지 가장 최근의 우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p>
<p><Consolidated Laws_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 101 General powers The board of supervisors of any such county shall be the legislative and policy determining body of the county and shall,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alternative form adopted by the county, continue to be vested with all the functions, powers and duties of the county and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now or hereafter provided by law.</p>	<p>101절 일반 권한 이러한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입법 및 정책 결정 기관이 되고, 카운티가 채택하는 대체 양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 혹은 추후에 법으로 제공되는 관리자 위원회와 카운티의 모든 기능, 권한 및 의무를 계속하여 부여받는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4 Committees 1. The board of supervisors may create standing committees for the purpose of aiding</p>	<p>154절 위원회 1. 관리자 위원회는 그의 사업 거래에서 위원회를 돕고 조력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창설하는 지역 법이</p>

원문	번역
<p>and assisting the board in the transaction of its business. Any local law or resolution creating any such committee shall specify the powers, duties and number of its members. A member of any standing committee shall serve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he shall have been selected, unless the board shall have fixed a different period, but in any event not longer than the term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s a supervisor.</p>	<p>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의 권한, 의무 및 수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가 선출된 역년 말 까지를 임기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원으로 선출된 기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p>

* 출처: New York State Constitution,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 관리자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구성 및 역할

○ 의장(Chairman of the Board) 선임 및 해임방식

- 의장(Chairman) 및 부의장(Vice-chairman)은 매년 2월 1일 이전에 관리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타운 관리자들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1 (3))
- 위원회가 의장의 임기를 관리자로서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지방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의장의 임기는 선출 시점부터 해당 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임(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1 (4))
- 관리자위원회에서 2월 1일 이전에 의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카운티 서기(County Clerk)가 의장을 임명하며, 이 경우 의장의 임기는 해당 년도 종료시점까지임(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1 (5))
- 의장은 관리자들을 상임 위원회에 배분하며, 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인원을 보충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4 (4)).
- 카운티 일반법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별도의 해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위 법률인 주의 공무원법에 따름
- 관리자(Supervisors)는 각 타운에서 선출되는데, 뉴욕주의 공무원법에서는 타운의 공무원은 시민 혹은 검사의 실행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Public Officers_Section 36)

○ 의장의 기능 및 역할

- 의장은 카운티의 재산, 기능 및 재정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관리자 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지방 법, 결의안 및 카운티 공무원들의 지시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관리자 위원회에 보고해야함(Consolidated Laws_ County_Section 450 (2))
- 의장은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 County_Section 450 (3))
- 그 밖에 관리자 위원회가 카운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짐(Consolidated Laws_ County_Section 450 (3))
-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의장이 의장이 수행하는 역할 및 결의안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함(Consolidated Laws_ County_Section 151(6-a))

○ 관리자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기능 및 역할

- 관리자위원회는 카운티의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 카운티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함(Consolidated Laws_Alternative County Government_Section 101)
- 관리자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를(Standing 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음. 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 법 혹은 결의안에는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구성원의 수가 구체화 되어야 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4 (1))
- 관리자 위원회는 각 관리자들을 포함한 지방정부 관료 및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고, 채용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짐.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지방 법의 입법권한, 예산 채택 권한 등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짐(Consolidated Laws_County_ Article 5)

〈표 4-5〉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1 3. At such organization meeting, or at an adjourned meeting not later than February first, the board shall select a chairman and may select a vice-chairman. 4.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ma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he is selected, unless the board shall provide by local law for the selection of the chairman in January of each even numbered year, in which event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man shall be for a term expiring with that of his term of office as supervisor. 5. In the event of a failure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o select a chairman on or before February first, the county clerk of the county shall appoint a member of the board as chairman, who shall serve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he is appointed.</p>	<p>151절 3. 2월 1일 이전의 이러한 조직 회의나 휴정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4. 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가 감독원으로서 그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이 되는 위원회가 각 짝수 년도 1월에 의장 선출에 대한 지역 법에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선출된 년도 말까지로 한다. 5. 관리자 위원회가 2월 1일 이전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그가 선임된 역년 말까지 의장으로 활동할 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해야 한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4 1. The board of supervisors may create standing committees for the purpose of aiding and assisting the board in the transaction of its business. Any local law or resolution creating any such committee shall specify the powers, duties and number of its members. A member of any standing committee shall serve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he shall have been selected, unless the board shall have fixed a different period, but in any event not longer than the term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s a supervisor. 4. Vacancies in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shall be filled by the chairman of the board from its membership.</p>	<p>154절 1. 관리자 위원회는 그의 업무 거래에서 위원회를 돕고 조력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창설하는 지역 법이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의 권한, 의무 및 수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가 선출된 역년 말까지를 임기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원으로 선출된 기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4. 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공석은 그의 회원들 중에서 위원회 의장에 의해 채워진다.</p>
<p>〈Consolidated Laws_Public Officers〉 Section 36 Removal of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p>	<p>36절 법원에 의한 타운, 빌리지, 개선 지구 혹은 화재 지구 공무원의 해임. 타운, 빌리지, 개선지구 혹은</p>

원문	번역
<p>or fire district officer by court. Any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fficer, except a justice of the peace,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supreme court for any misconduct, maladministration, malfeasance or malversation in office. An application for such removal may be made by any citizen resident of such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r by the district attorney of the county in which such town, village or district is located, and shall be made to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held within the judicial department embracing such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Such application shall be made upon notice to such officer of not less than eight days, and a copy of the charges upon which the application will be made must be served with such notice.</p>	<p>은 화재 지구 공무원은 보안 판사를 제외하고 불법 행위, 행정 실책, 부정 행위 또는 부패 정치에 대해 대법원에 의해 해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임 신청은 이와 같은 타운, 빌리지, 개선 지구 혹은 화재 지구의 시민 거주자나 이러한 타운, 빌리지 혹은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타운, 빌리지, 개선지구, 화재 지구를 포괄하는 관할 부처 내의 대법원의 상소부에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최소 8일의 고지로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본이 이러한 고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450 2. It shall be the duty of such chairman: (a) to become familiar with the property, functions and fiscal affairs of his county; (b) to see that the statutory and local laws and resolutions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directions of county officers empowered to make the same are faithfully executed and report to the board any neglect of duty; (c)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board of supervisors on legislation, rules and regulations and such other matters deemed material and advisable; (d) to advise department heads and officers and recommend matters deemed helpful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3. The board of supervisors may delegate to such chairman the power to: (a) transfer employees temporarily from one department or office to another with the approval of the appointing officer or board; (b) determine what officer shall perform a particular power or duty not clearly defined by law; (c) determine what</p>	<p>450절 2. 이와 같은 의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카운티의 재산, 기능 및 재무 업무를 익힐 것; (b) 법령, 지방법 및 관리자 위원회의 결의와 이를 만드는 권한이 있는 카운티 공무원의 지시가 성실하게 시행되는지 살피고 의무 태만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c) 입법, 규정 및 중요하고 권한만하다고 보는 이와 같은 다른 사안들에 대해 관리자 위원회에게 권고; (d) 부처 장과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들의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안들을 권고. 3. 관리자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이와 같은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a)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선임 승인으로 하나의 부처나 사무소의 다른 곳으로의 직원들의 임시 이전; (b) 어떤 공무원이 법에서 명확히 정해지지 아니한 특정 권한이나 의무를 수행하는지를 결정; (c) 어떤 임원과 직원들이 카운티 정부의 향상을 위해 수행되는 컨퍼런스나 학교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결정; (d) 이러한 위원회가 허가한 문서와 계약을 체결 및 인도; (e) 본 장의 조항에 완전한 효력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러한 다른 행정적 의무들을 수행.</p>

원문	번역
<p>officers and employees may attend conferences and schools conducted for the betterment of county government; (d) execute and deliver documents and contracts authorized by such board; (e) perform such other administrative duties as the board may determine to be necessary to give full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p>	
<p><Consolidated Laws_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 450 The board of supervisors of any such county shall be the legislative and policy determining body of the county and shall,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alternative form adopted by the county, continue to be vested with all the functions, powers and duties of the county and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s now or hereafter provided by law.</p>	<p>450절 이와 같은 카운티의 관리자 위원회는 입법기관이며 카운티의 정책 결정기관이고, 카운티가 채택한 대체 양식에 명시적으로 달리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의해 현재 혹은 향후에 제공되는 관리자 위원회와 카운티의 모든 기능, 권한 및 의무를 계속해서 기득한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151 6-a. In the absence of the chairman, the vice-chairman, if one has been selected: a. shall preside over each duly constituted meeting of the board; b. shall have and exercise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chairman at any meeting over which he is called to preside; c. shall have and exercise those additional powers and duties authoriz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provided such resolution shall specify:</p>	<p>151절 6-a. 의장의 공석 시에, 선출된 경우에 부의장이 다음을 수행한다: a. 적법하게 구성된 각 위원회의 진행; b. 그가 진행하도록 요청된 회의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이를 시행; c. 위원회 결의로 허가된 추가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하나, 단 이러한 결의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p>

* 출처: New York State Constitution,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위원회(Committee)의 구성 및 기능

- 관리자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154).
-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지방 법 혹은 결의안은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구성원의 수를 명시함. 또한 결의안을 통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에 의해 관리자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임명됨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관리자위원회가 특별히 명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 종료시점까지이며, 단, 각 관리자들의 관리자로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결의안에 규정된 시점동안이며, 이 경우에도 각 관리자들의 관리자로서의 임기를 초과할 수는 없음

〈표 4-6〉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 County〉 Section 154 Committees 1. The board of supervisors may create standing committees for the purpose of aiding and assisting the board in the transaction of its business. Any local law or resolution creating any such committee shall specify the powers, duties and number of its members. A member of any standing committee shall serve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he shall have been selected, unless the board shall have fixed a different period, but in any event not longer than the term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s a supervisor. 2. The board may from time to time create special committees. Any resolution creating a special committee shall specify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ttee and the number of its members. Each member of any special committee shall serve for the period specified in such resolution but in any event not longer than the term for which he shall have been elected as a supervisor. 3. Members of all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shall be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board from its membership. 4. Vacancies in standing and special committees shall be filled by the chairman of the board</p>	<p>154절 위원회 1. 관리자 위원회는 그의 업무 거래에서 위원회를 돕고 조력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창설하는 지역 법이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의 권한, 의무 및 수를 명시해야 한다. 상임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가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그가 선출된 역년 말까지를 임기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원으로 선출된 기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2. 위원회는 때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특별 위원회를 창설하는 결의는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그 구성원 수를 명시해야 한다. 특별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임기를 가지나,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원으로 선출된 기간을 넘지 못한다. 3. 모든 상임 및 특별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그 구성원들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4. 상임 및 특별위원회의 공석은 구성원들 중에서 위원회 의장이 채운다. 5.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시민들의 권고와 자문을 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6. 이의 어떠한 내용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위원회나 공무원의 권한, 의무 혹은 책임의 위임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p>

원문	번역
<p>from its membership.</p> <p>5. The board may authorize committees to accept advice and counsel of citizens not members of the board.</p> <p>6. Nothing herein shall be deemed to authorize the delegation of any of the powers, duties or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of supervisors or of any officer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authorized by law.</p>	

* 출처: New York State Constitution,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선임방식 변경

- 델라웨어 카운티는 자체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 헌법 및 일반법의 적용을 받음
- 카운티 정부의 기관구성의 변경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전체 유권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기관구성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헌장 혹은 법률의 채택이 효력을 가짐(Municipal Home Rule, Section10 (13_e))
- 대안적 정부형태를 채택할 경우 처음 대안적 형태를 채택한 후 3년 이후에 다른 형태의 대안적 정부형태로 변경할 수 있음(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55). 이 경우, 변경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함(Alternative County Government, Section656)
- 선출직 직위를 신설 혹은 폐지할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에 의한 헌장 재/개정 및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다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카운티 정부는 타운 정부에서 선출된 관리자위원회의 임기와 정원을 변화시킬 수 없음(Municipal Home Rule, Section11 (1_d))
-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정부 부서 설치나 폐지 등의 경우 지방법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Municipal Home Rule, Section20 (1)),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거부된 법안을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2/3의 동의가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1)

〈표 4-7〉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New York State Constitution〉 (h) (1)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shall be empowered by general law, or by special law enacted upon county request pursuant to section two of this article, to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county government provided by the legislature or to prepare,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their own. Any such form of government or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may transfer one or more functions or duties of the county or of the cities, towns, villages, districts or other units of government wholly contained in such county to each other or when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to the state, or may abolish one or more offices, departments, agencies or units of government provided, however, that no such form or amendmen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subdivision,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approved on a referendum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ereon in the area of the county outside of cities, and in the cities of the county, if any, considered as one unit. Where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p>	<p>(h) (1) 한 시 내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 이외의 카운티들은 일반 법에 의해 혹은 본 조의 이절에 따라 카운티의 요청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입법기관이 제공한 카운티 정부의 대안 양식의 채택, 수정 혹은 폐기 또는 카운티 자체의 대안 양식의 작성, 채택, 수정 혹은 폐기를 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정부의 양식이나 이에 대한 수정안은 입법 혹은 지방법에 의해 그러한 자치 시에 완전히 포함된 카운티 혹은 시, 타운, 빌리지, 구역 혹은 정부의 다른 단위의 하나 이상의 기능이나 의무를 서로에게 이전할 수 있고 혹은 주에 대한 입법으로 허가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무소, 부처, 기관 혹은 정부 단위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하위 구분의 (2)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양식이나 수정은 시 밖에서의 카운티 지역에서 그리고 하나의 단위로 고려되는 자치지의 시들에서 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주민투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이나 그 수정인이 입법기관의 행위나 법에 의해 빌리지로부터 혹은 빌리지로 기능이나 의무 이전 혹은 이러한 카운티에 완전히 포함된 빌리지의 사무소, 부처, 대리인 혹은 정부 단위의 폐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양식이나 수정은 하나의 단위로 고려되는 영향을 받는 모든 빌리지에서 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주민투표로 또한 승인되지 않는 이상 유</p>

원문	번역
<p>government or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provides for the transfer of any function or duty to or from any village or the abolition of any office, department, agency or unit of government of a village wholly contained in such county, such form or amendment shall not become effective unless it shall also be approved on the referendum by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thereon in all the villages so affected considered as one unit.</p> <p>(2) After the adoption of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 government by a county, any amendment thereof by act of the legislature or by local law which abolishes or creates an elective county office, changes the voting or veto power of or the method of removing an elective county officer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abolishes, curtails or transfers to another county officer or agency any power of an elective county officer or changes the form or composition of the county legislative body shall be subject to a permissive referendum as provided by the legislature. (Amend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6, 2001.)</p>	<p>효하지 아니하다.</p> <p>(2) 카운티에 의한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의 채택 이후, 입법기관의 행위나 법에 의해 선출된 카운티 사무소를 폐지하거나 창설하는 수정, 그의 임기 중에 선출된 카운티 공무원의 투표권이나 거부권 혹은 제거 방식을 변경, 선출된 카운티 공무원의 권한을 철회, 축소 혹은 다른 카운티 공무원에게 이전, 카운티 입법 기관의 양식이나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긍정적인 주민투표를 얻어야 한다. (2001년 11월 6일 국민 투표로 수정)</p>
<p><New York State Constitution></p> <p>(c) In addition to powers granted in the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or any other law, (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r any general law relating to its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and, (i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r any general law relating to the following subjects, whether or not they relate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ure shall restrict the adoption of such a local law relating to other than the</p>	<p>(c) 지방정부의 입법이나 다른 법에서 부여된 권한에 추가로 (i) 모든 지방정부는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에 불합치하지 않는 그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지역 법을 채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ii) 모든 지방정부는 헌법 조항에 불합치하지 않는 혹은 일반 법에 불합치 하지 않는 다음 주제에 관련한 법을 채택 및 수정할 권한이 있고, 이는 그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 단, 입법기관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혹은 정부에 관련된 지역 법의 채택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 (l) 공무원과 직원의 권한, 자격요건, 선출 및 해임 방식, 임기, 보수, 업무시간, 보호, 복지 및 안전. 단, 시와 타운이 카운티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에서 해당 카운티의 입법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이</p>

원문	번역
<p>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 (1) The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number, mode of selection and removal, terms of office, compensation, hours of work,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except that cities and towns shall not have such power with respect to member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county in their capacities as county officers. (2)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the membership and composition of its legislative body.</p>	<p>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자격 및 구성</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10 Gener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d.) Where a public hearing on a local law proposed to be adopted under this subparagraph is required, by subdivision five of section twenty of this chapter, to be held only before an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legislative body shall not adopt such proposed local law until after a public hearing shall have been held thereon before it, on notice as provided in such subdivision five, in which event no public hearing thereon before such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be required.</p>	<p>10절 지방 법을 채택 및 수정하는 지방정부의 일반 권한 (d.) 본 장의 이십절의 오 하위절에 의해 본 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된 지역 법에 대한 공청회가 선출직 행정책임자에 의해서만 개최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입법 기관은 그에 대한 공청회가 입법 기관에서 개최될 때까지 이러한 제안된 지역 법을 채택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오 하위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고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정책임자에 의한 공청회가 요청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한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0 Procedure for adoption of local laws by legislative body 1. No local law shall be passed except by at least the majority affirmative vote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On the final passage of a local law the question shall be taken by ayes and noes, and the names of the members present and their votes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journal or minutes of proceedings.</p>	<p>20절 입법기관에 의한 지역 법 채택 절차 1. 어떠한 지역 법도 입법 기관의 총 의결권의 최소 과반수의 긍정표를 얻지 않고는 통과되지 않는다. 지역 법의 최종 통과시에,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하고, 참석 구성원의 이름과 그들의 투표가 기록, 저널 혹은 절차 의사록에 기입되어야 한다.</p>

원문	번역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Local laws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1. A local law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as provided in this section or in any other state statute, shall be submitted for the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general election of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such local government held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thereof unless such local law provides for its submission for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special election or unless,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such local law, a petition signed, authenticated and subject to certification by the clerk as provided for other petitions in section twenty-four of this chapter is filed with such clerk requesting its submission at a special election. If the local law so provides or if a valid petition is so filed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local law at a special election, it shall be submitted at such a special election held in such local government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the local law, the date for which special election shall be fixed by the legislative body. In either case such local law shall become operative as prescribed therein only if approved at such elec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such local government voting upon the proposition.</p>	<p>23절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 1. 본 절이나 다른 주 입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은 이러한 지역법이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을 준비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개최되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주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법의 채택 이후 삼십일 이내에 본 장의 이십사절의 다른 청원에 따라 서기의 서명, 인증 및 증서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이 특별 선거에 그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법이 이렇게 제공하거나 유효한 청원이 이렇게 제출되어 특별 선거에서 지역법이 제출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 법의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이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개최된 특별 선거에 제출되어야 하고 특별 선거일은 입법기관이 정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러한 지역 법은 제의에 대한 이러한 지방정부 투표를 위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이러한 선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규정된 바에 따라 운용된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Local laws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 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 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p>	<p>23절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 2. 주 법령에 의해 달리 명시되거나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 법은 다음의 경우에 의무적인 국민 투표를 조건으로 한다: a. 시의 경우 이러한 시의 새로운 헌장을 제시하는 경우. b.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자격 혹은 구성의 변경이나 구성원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수의 증감. c. 선출된 최고 집행위원의 거절권 변경. d. 카운티에서 선출된 카운티 행정책임자직에 대</p>

원문	번역
<p>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p> <p>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p> <p>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 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p> <p>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 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p> <p>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p> <p>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p> <p>h.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the boundaries of wards, or other districts, from which members of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such city to represent the city, are elected.</p> <p>i.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public utility franchises.</p> <p>j. In the case of a city, reduces the salary or compensation of a city officer or employee, increases his hours of employment or changes his working conditions if such salary, compensation, hours or conditions have been fixed by a state statute and approved by the vote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city. No provision effecting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contained in any local law or proposed new charter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the definite question with respect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any provisions not relating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and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voting thereon.</p>	<p>한 승계법의 변경, 혹은 감사위원회에 장이 없는 경우, 시나 빌리지의 시장 혹은 타운의 감독관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p> <p>e. 선거직의 철폐 혹은 선거직의 지명, 선출 혹은 해임 방식 또는 선거직 임기 변경 또는 그의 임기 중 선거직 임금의 축소</p> <p>f. 선거직 권한의 철폐, 이전 혹은 축소</p> <p>g. 새로운 선거직 창설</p> <p>h. 시의 경우,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대표하기로 선택되어 선출된 해당 시의 구나 다른 지역의 경계 변경</p> <p>i. 공공 사업 독점 사업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 변경</p> <p>j. 시의 경우, 이러한 임금, 보수, 시간 혹은 조건들이 주 법안으로 고정되고 해당 시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시 공무원이나 직원 임금이나 보수의 감액, 직원 근무 시간 증대 혹은 그의 근무 조건 지역법이나 제안된 새로운 선장에 포함된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항도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대한 확고한 질의가 이러한 감액, 증대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조항과 별도로 제출되고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이에 대한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않다.</p> <p>k. 시의 경우 회원자격이나 해당 시 공무원 위원회실 조건에 대한 법률 조항 변경</p>

원문	번역
k.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the membership or terms of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f the city.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11 Restrictions on the adoption of local laws d. Except in the case of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 government, changes the number or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a city or town.</p>	<p>11절 지역법 채택의 제한 d.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나 타운에서 선택된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수와 임기를 변경</p>

* 출처: New York State Constitution,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카운티 공무원에 대한 관리

- 관리자위원회는 카운티 공무원 및 카운티 정부가 고용하는 직원들의 성과 및 행동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 세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은 각 위원회에 위임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209)
- 델라웨어 카운티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는 인사부(The Personnel Department)에서 담당하며,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고, 직위를 채우기 위한 적격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직위를 분류하고, 임명과 인사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직원 등록 기록과 직위 기록을 유지함(델라웨어 카운티 웹사이트)

○ 카운티 예산에 대한 심사

- 관리자 위원회의 상임위원들 중 예산위원회에서 잠정적 예산안을 심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자 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짐. 수정된 예산을 채택하기 전에 관리자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함(Consolidated Laws_County_Section 357-359)

〈표 4-8〉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209 Investigations The board of supervisors is empower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any subject matter within its jurisdiction, including the conduct and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of any officer or employee paid from county funds and the accounting for all money or property owned b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county. The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s may be delegated to a committee of the board.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any member of such committee may issue a subpoena requiring a person to attend before the board or such committee and be examined in reference to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and in a proper case to produce all books, records, papers and documents material or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A subpoena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gulated by the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any member of such committee may administer the oath to any witness and adjournments may be taken from time to time.</p>	<p>209절 조사 관리자 위원회는 그의 관할 내의 주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 받고, 이는 카운티 기금과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그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금원이나 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의 공무의 수행과 성과를 포함한다. 조사권은 위원회 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다. 위원회 의장과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와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조사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대한 참조로 검토되며, 적절한 경우 모든 장부, 기록, 서류 및 문서자료나 조사에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라 발행되는 소환장은 민법과 규칙으로 규율된다. 위원회 의장과 이와 같은 위원회의 구성원은 증언으로 선서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휴회가 채택될 수 있다.</p>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357 Review of tentative budget 1. A standing committee of members of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be designated or created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entative budgets filed with the clerk of such board pursuant to section three hundred fifty-four. 2. Upon the filing of the tentative budget with the 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clerk shall transmit forthwith a copy thereof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designated or created to review the tentative budget. The committee, upon receipt of such copy, shall proceed to review the tentative budget. Within fifteen days after the receipt of such copy of</p>	<p>357 절 임시 예산의 검토 1. 관리자 위원회 구성원의 상임위원회는 삼백오십사절에 따른 이러한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되는 임시 예산 검토를 위해 지정 혹은 창설되어야 한다. 2. 관리자 위원회의 서기에게 임시 예산 제출 시에, 서기는 임시 예산 검토를 위해 지정 혹은 지정 또는 창설된 위원회의 장에게 이 사면을 전송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본의 수령 시에 임시 예산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임시 예산의 이러한 사본 수령 이후 심요일 이내에 위원회는 임시 예산에서 제안된 변경, 대안 혹은 수정을 명시하는 보고를 관리자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 사본은 감사위원회 서기의 사무소에 파일로 보관되어야 하고 영업 시간 동</p>

원문	번역
<p>the tentative budget the committee may file a report with the 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 setting forth any proposed changes, alterations or revisions in the tentative budget. A copy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shall remain on file in the office of the 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shall be open to public inspection during business hours.</p> <p>3. The board of supervisors by action taken pursuant to section three hundred seventy-six may extend or reduce the time provided in subdivision two of this section for review of the tentative budget and the filing of the report thereon, provided that in no event shall such time for such review and the filing of such report be reduced to less than ten days or extended to more than twenty days.</p>	<p>안 공중 검수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p> <p>3. 삼백칠십육절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의해 관리자 위원회는 임시 예산의 검토와 이에 대한 보고 제출을 위한 본 절의 하위분할 이에서 제시된 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으나,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검토나 보고서 제출 시간은 이십 일 이상 연장 혹은 감소될 수 없다.</p>
<p><Consolidated Laws County> Section 357 Revision of tentative budget 1. After the filing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designated or created to review the tentative budget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prescribed for the filing of such report, the board of supervisors, by resolution, may change, alter and revise the tentative budget, provided that: (a) The statement of the amount estimated for any object or purpose for which an appropriation is required to be made by law shall not be reduced below the minimum so required. (b)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enter in its minutes a statement of the basis for any increase in or addition of any statement of estimated revenues. 2. If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make any change in the tentative budget, provision shall be made that the total estimated revenues together with the amount of taxes to be levied shall equal the total estimated expenditures.</p>	<p>357 절 임시 예산의 수정</p> <p>1. 잠정적인 예산 검토를 위해 지정 혹은 창설된 위원회 보고의 제출 이후에 혹은 이러한 보고 제출을 위한 시간의 연장 이후에, 관리자 위원회는 결의로 임시 예산을 변경, 대체 및 수정할 수 있다. 단: (a) 법에 의해 요청되는 책정액을 위해 추산된 금액의 내역서는 요청되는 최소 금액 이하로 감액될 수 없다. (b) 관리자 위원회는 추산 수익의 내역서의 증액이나 추가에 근거한 내역서를 그 의회록에 기입해야 한다.</p> <p>2. 관리자 위원회가 임시 예산에 변경을 하는 경우, 추가 부과되는 세금액과 함께 추산된 총 수익이 총 추산 지출과 동일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p>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County〉 Section 359 Public hearing; distribution of tentative budget</p> <p>Before the final adoption of the budget,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hold a public hearing on the tentative budget with such changes, alterations and revisions, as shall have been made therein by such board pursuant to section three hundred fifty-eight. The 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cause to be printed or otherwise reproduced at least one hundred copies of such tentative budget as so changed, altered and revised, but the board of supervisors, by resolution, may direct that a greater number of copies be so printed or reproduced. The time when and place where such hearing shall be held shall be fix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supervisors.</p>	<p>359 공청회; 잠정적 예산의 분배</p> <p>예산의 최종 채택 이전에, 관리자 위원회는 삼백 오십팔절에 따라 이와 같은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변경, 대안 및 수정과 함께 임시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관리자 위원회의 서기는 변경, 대체 혹은 수정된 임시 예산의 최소 일백 부의 사본을 인쇄 혹은 재생산하도록 해야 하나, 관리자 위원회는 결의로 더 많은 부의 사본을 인쇄 혹은 재생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청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는 관리자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p>

2. 의회-관리자형: 롱비치 시(City of Long Beach)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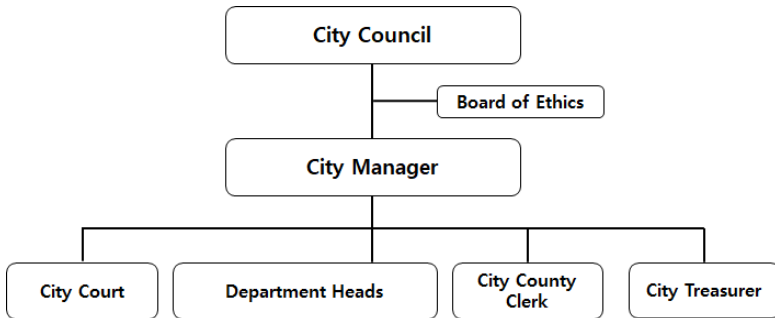
□ 역사적 배경

- 롱비치 시는 뉴욕주 Nassau County 내의 도시로, 면적 5.2km², 인구 33,275명의 작은 시임
 -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미국 내에서 35번째, 2,909.8/km²), 백인의 비율이 84.2%로 비교적 높은 편임
 - 65세 이상인 인구가 16.7%이며, 1인당 소득은 31,069달러임

□ 기관구성 체계도

- 롱비치 시의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4-7>과 같으며, 의회-관리자형에 해당됨

<그림 4-7> City of Long Beach의 기관구성 체계도



- 롱비치 시 의회(Council)의 기관구성은 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을 포함한 5인의 의원(council persons)으로 구성되며 시의 모든 입법권한을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1-2))

- 시의 최고 경영자인 관리자(city manager)는 의회에 의해 임명되며, 관리자 혹은 시장으로 불림(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
- 관리자는 시의 다른 임명직 공무원 및 행정부서의 부서장을 임명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11).

〈표 4-9〉 City of Long Beach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70. City council, how composed; powers. 1. All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city, howsoever conferred upon or possessed by it, are hereby vested in the council of the City of Long Beach, save as may be hereafter specially excepted. 2. Such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five councilmen elected by popular vote from the city at large, each of whom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on all questions before the council. The regular election of councilmen shall be held in each odd numbered year,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 Law of the State of New York. At the first election under this Charter five councilmen shall be elected; the two candidates recei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terms of four years, and the three candidates receiving the next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elected for terms of two years. Commencing at the next regular election and at all subsequent regular elections, three councilmen shall be elected; each of the two candidates recei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a four year term, and the one receiving the third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a two-year term.</p>	<p>70절 시 의회, 구성 방법; 권한 1. 시의 모든 입법 권한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혹은 소유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롱비치 시 의회에 귀속된 것이나, 이하에 특별히 예외로 한 것은 제외될 수 있다. 2. 이러한 의회는 크게 해당 시로부터 일반 투표로 선출된 다섯 명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각각은 의회에서 모든 질의사안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의원의 일반 선출은 각 홀수 년도에 뉴욕주 선거법에 따라 개최된다. 본 헌장에 따른 첫 선거에서 다섯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후보가 사 년의 임기를 가지고, 다음으로 다수 득표를 한 세 명의 후보가 이 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다음 정기 선출에서 그리고 모든 추후의 정기 선출에서 시작하여, 세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후보가 사 년의 임기를 가지고, 다음으로 다수 득표를 한 명의 후보가 이 년의 임기로 선출된다.</p>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11. Appointive city officers enumerated; by whom appointed; their term of office. The appointive officers of the City of Long</p>	<p>11절 선임직 공무원 열거; 임명권자; 임기 롱비치시의 선임직 공무원은 시 관리자, 시 회계 담당자, 법인 자문, 시 감사관, 한 명의 소방총감, 한 명의 조세 사정인, 두(2) 명의 준 조세</p>

원문	번역
<p>Beach shall be a city manager, a city treasurer, a corporation counsel, a city comptroller, one fire commissioner, a tax assessor and two (2) associate tax assessors, a city clerk, a commissioner of public works, and one or more deputy commissioners of public works who may also be superintendent of public works, a building commissioner, a police commissioner, one commissioner of public safety, one or more city marshals, a city engineer, one or more superintendents of departments, three (3) members of a civil service commission, as many commissioners of deeds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council, and such other appointive officers as may be established by law, local law or ordinance. All of such officers except the city manager shall be appointed by the city manager.</p> <p>The city manager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The council may provide for the holding of two (2) or more such offices by the same person, except that no member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r member of a city planning commission may hold any other office under the city government for which a salary may be paid. Any appointed official or employee may perform duties in one or more departments as the council may designate. Any officer or employee appointed as herein provided, except the city manager, may be removed by the city manager,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and the city manager shall appoint his/her successor. The city manager shall be removable by the council as provided in section twenty. The head of each department, and each other officer appointed by the city manager as the single head of an office, shall appoint his/her subordinates with the approval of the city manager. The city manager may appoint a chief of police and the chief of police shall appoint, with the approval of the city manager, as many</p>	<p>사정인, 시 서기, 공공 업무 위원, 공공업무를 또한 감독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공공 업무 부 위원장, 건축감독관, 경찰국장, 한 명의 공공 안전 위원, 한 명 이상의 시 경찰서장, 시 엔지니어, 한 명 이상의 부처 감독관, 세(3) 명의 민간 공무 위원회, 의회에 필요한 만큼의 집행 위원들, 법, 지역법 혹은 조례에서 요하는 다른 선임 직들이다. 시 관리자를 제외한 이러한 공무원들 모두는 시 관리자에 의해 선임된다.</p> <p>시 관리자는 의회가 선임한다. 의회는 동일한 사람이 둘(2) 이상의 이와 같은 직을 겸하도록 할 수 있으나, 민간 공무 위원회나 시 계획 위원회 구성원은 임금이 지급되는 시 정부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선임 공무원이나 직원은 의회가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부처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임된 공무원이나 직원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시 관리자에 의해 해임될 수 있고 시 관리자는 그의 후임을 선임할 수 있다. 시 관리자는 이십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각 부처의 장과 사무소의 단독 장으로 시 관리자가 선임한 다른 각 직은 시 관리자의 승인으로 그의 하급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 관리자는 경찰 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국장은 시 관리자의 승인으로 롱비치 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회가 결정하는 만큼의 일반 및 특별 순찰 경찰관을 선임할 수 있다. 모든 선임직은 주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기한 임기로 한다.</p>

원문	번역
regular and special patrolmen as the council determines to be necessary for the proper protection of the City of Long Beach. All appointive officers shall serve for an indefinite term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state law.	

* 출처: City of Long Beach Charter,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관리자(City Manager)의 선임방식 및 역할

○ 관리자(City Manager) 선임 및 해임방식

- 관리자는 의회에서 후보자의 관리/행정 능력 및 경험을 고려하여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임명되며, 임기는 특정되지 않음(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2)).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관리자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음(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3_a))
- 관리자는 의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기한의 제약 없이 어느 때라도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될 수 있음. 해임 표결을 하기 이전에 의회는 30일 전에 해임 의사를 통보해야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3))
- 관리자는 자신의 부재시에 임무를 수행할 행정 관료를 서면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에서 관리자의 부재 혹은 정직 기간동안 관리자 임무를 수행할 관료를 임명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4))

○ 관리자의 기능 및 역할

- 관리자는 시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경찰 및 소방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시의 공무원, 부서, 위원회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1))

- 관리자는 매년 1월 전년도 행정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의회는 관리자에게 정부 또는 개선과 관련하여 시의 업무에 관한 진술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와 함께 의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1))
- 관리자는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에는 이전 정기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시 공무원에 대한 인력의 변동사항(고용, 승진, 순환, 해임)이 포함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6))

〈표 4-10〉 관리자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20. City manager. 1. The city manager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y. Though his official title shall be city manager and that [sic] mayor, he shall be the mayor of the city and shall have and exercise all powers conferred upon the mayor by this act or by the general statutes of the stat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It shall be his duty to see that the laws of his state and the local laws, ordinances and bylaws passed by the council are faithfully executed within the city. He shall sign, on behalf of the city, all contracts made by it, and cause the seal of the city to be affixed thereto. He shall have power and authority to call out and command the police and firemen of the city whenever in his discretion he shall deem it necessary, and such command shall be in all respects obeyed. Whenever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public disturbances, mobs or riots, it shall be his duty to take such action as is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state. It shall be his duty to exercise a constant supervision and oversight over the conduct of all city officers, departments, boards</p>	<p>20절 시 관리자 1. 시 관리자는 해당 시의 행정책임자이다. 그의 공식 직위가 시 관리자일지라도 해당 [원문그대로] 시장은 그 시의 시장이 되고, 본 법이나 본 법에 불합치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일반법령에 의해 시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의 주와 지역 법, 조례, 의회가 통과한 세칙이 해당 시 내에서 성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는 시를 대신하여 그가 체결한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에 시의 인장을 날인한다. 그는 그의 재량으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시의 경찰과 소방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명령할 권한과 힘이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모든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 공공 방해, 군중 소란 혹은 폭동의 예방이나 제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 법의 허용을 받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모든 시 공무원, 부처, 위원회 및 위원회의 수행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보는 것이 그의 의무이고, 그는 언제든지 해당 시 직원과 공무원의 장부, 바우처 및 서류를 검토할 권한과 힘이 있으며, 민법 삼백오십칠에서 삼백육십오절 및 사백삼에서 사백삼사절에 따라 증거와 증언을 채택하고 들어야 한다. 2. 시 관리자는 무기한의 임기로 지방자치 위원회 전부의 과반수 투표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p>

원문	번역
<p>and commissions, and he shall have power and authority to examine at all times the books, vouchers and papers of any officer or employee of said city, and to take and hear testimony and proof in pursuance of sections three hundred fifty-seven to three hundred sixty-five inclusive and four hundred three to four hundred fourteen inclusive of the Civil Practice Act.</p> <p>2. The city manager shall be appointed by vote of a majority of all the councilpersons for an indefinite term. He/she shall be chosen solely on the basis of his/her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qualific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her actual experience in, or his/her knowledge of, accepted practice in respect to the duties of his/her office as herein set forth.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he/she shall reside within the City of Long Beach within ninety (90) days of his/her appointment.</p> <p>3. The city manager may be removed by majority vote of all the councilmen at any time for any reason or reasons the council may deem sufficient. Before making such action final the council shall notify the city manager of its intention to remove him and shall give him a statement of reasons and notice of thirty days during which time he shall continue to receive his salary but may be suspended from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If the city manager shall so request within ten days after such notice, he shall be given a public hearing before the council upon public notice of at least five days and in such case his removal shall not be voted on finally until a meeting of the council occurring after the day on which the public hearing is held.</p> <p>(a)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of this Charter or any ordinance, the city council may enter into a written employment agreement with the city manager for a term not to exceed three years and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ity council shall agree.</p>	<p>는 이에 명시된 그의 직무에 대해서 승인된 실습에 대한 그의 실제 경험 혹은 지식에 대한 특별한 참조로 그의 집행 및 행정 자격요건에만 근거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그의 임기 동안 그는 선임부터 구십(90)일 이내에 롱비치시에 거주해야 한다.</p> <p>3. 시 관리자는 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언제든지 모든 지방의회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해임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최종적인 것으로 하기 전, 위원회는 시 관리자에게 그를 해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고지하고, 그에게 이유를 제시하고 그가 임금을 계속 받지만 그의 의무 수행이 중단된 동안 삼십일의 고지를 주어야 한다. 시 담당자가 이러한 고지 이후 십 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그는 최소 오일의 고지로 의회에서 공청을 받고, 이러한 경우 그의 해임은 공청이 열린날 다음에 발생하는 의회의 회의시점 까지 최종적으로 투표가 되지 않는다.</p> <p>(a) 본 헌장이나 조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삼 년을 넘지 않는 임기로 시 의회가 동의하는 약관으로 시 관리자와 서면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4. 시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이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도중에 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시 관리자는 시 서기에게 제출한 서신으로 시의 자격을 갖춘 다른 행정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 관리자가 이러한 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공석 혹은 집행 불가 기간 동안 이를 대신할 시의 행정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시 관리자가 감독 하에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직이 공석인 경우 언제든지 시 관리자로 임시 행위하는 시의 행정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p> <p>6. 시 관리자는 시 의회의 각 정기 회의에서 시 의회와 대중에게 지난 마지막 정기 의회 이후 기간 동안 모든 인력 변경을 포괄하는 보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보고는 유급과 무급 여부를 떠나 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시 고용에서 인력의 고용, 승진, 강등, 이전 혹은 종결과 관련한 모든 변화를 포함한다.</p>

원문	번역
<p>4.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city manager and to exercise his powers during any time when the city manager may be temporarily absent or incapacitated for serving, the city manager may designate by a letter filed with the city clerk another qualified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city. If the city manager fails to make such a designation, the council may appoint an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city to serve in such capacity for the duration of the absence or disability. The council may likewise designate an administrative officer of the city to serve temporarily as acting city manager during any time when the city manager is under suspension or when the office is vacant.</p> <p>6. The city manager, at each regular meeting of the city council, shall make a report to the city council and to the public, covering all personnel changes made in the period since the last regular meeting of the council, and such report shall include any changes made relating to the hiring, promotion, demotion, transfer or termination of any personnel in the employ of the city, whether salaried or unsalaried, including members of boards or commissions.</p>	

지방의회(council)와 시의원 선임방식 및 역할

- 롱비치의 의회는 5명의 의원(council perso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표결권을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2))
 - 의원에 대한 정기 선거는 매 홀수 해에 시 전체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규정은 뉴욕 주의 선거법(Election Law)에 따름(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2))
 - 의원의 임기는 4년의 경우와 2년의 경우가 있음. 최초 선거 시에는 최다득표 3인이 4년 임기이고 그다음 최다득표자의 임기가 2년이며, 이후 선거

- 부터는 최다득표 2인이 4년의 임기를 가지며 3위 득표자는 2년의 임기를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2))
- 다른 지방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의안 또는 조례를 채택하거나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체 의회의 3/5의 찬성투표가 필요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3))
- 의회는 이 법에 따라 시 의회에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법이나 헌장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에 속한 모든 부동산 및 인적 자산의 관리 및 통제권을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4))
- 의회는 이 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방 법, 조례, 규칙 및 부칙을 매년 작성, 제정, 출판 및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70(4))
- 의원은 임기동안 다른 부서나 시 정부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음(General City Law, Section 3)
- 시 의회는 필요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해야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96)

〈표 4-11〉 지방의회와 시의원 선임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70. City council, how composed; powers. 1. All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city, howsoever conferred upon or possessed by it, are hereby vested in the council of the City of Long Beach, save as may be hereafter specially excepted. 2. Such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five councilmen elected by popular vote from the city at large, each of whom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on all questions before the council. The regular election of councilmen shall be held in</p>	<p>70절 시 의회, 구성 방법; 권한 1. 시의 모든 입법 권한은 어떻게 주어졌는지 혹은 소유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롱비치 시 의회에 귀속된 것이나, 이하에 특별히 예외로 한 것은 제외될 수 있다. 2. 이러한 의회는 크게 해당 시로부터 일반 투표로 선출된 다섯 명의 지방의회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각각은 의회에서 모든 질의사안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는다. 지방의회위원의 일반 선출은 각 홀수 년도에 뉴욕주 선거법에 따라 개최된다. 본 헌장에 따른 첫 선거에서 다섯 명의 지방의회위원이 선출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p>

원문	번역
<p>each odd numbered year, in accordance with the Election Law of the State of New York. At the first election under this Charter five councilmen shall be elected; the two candidates recei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terms of four years, and the three candidates receiving the next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be elected for terms of two years. Commencing at the next regular election and at all subsequent regular elections, three councilmen shall be elected; each of the two candidates receiving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a four year term, and the one receiving the third greatest number of votes shall serve for a two-year term.</p> <p>3. Thre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and the affirmative vote of three-fifths of the entire council shall be necessary to adopt any motion, resolution or ordinance or pass any measure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ct or the Local Finance Law.</p> <p>4. The council shall exercise all the corporate powers conferred on the city by this act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or this act, shall have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conveyance of all the property, real and personal, belonging to said city corporation, and shall have the power within said city to make, establish, publish and modify annually, and repeal, local laws, ordinances, rules, regulations and by-laws for any of the purposes</p>	<p>두 명의 후보가 사 년의 임기를 가지고, 다음으로 다수 득표를 한 세 명의 후보가 이 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다음 정기 선출에서 그리고 모든 추후의 정기 선출에서 시작하여, 세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후보가 사 년의 임기를 가지고, 다음으로 다수 득표를 얻은 한 명의 후보가 이 년의 임기로 선출된다.</p> <p>3. 의회의 세 명의 구성원은 정족수를 구성하고, 전체 의회 중 오분의 삼의 찬성 투표는 달리 현지 금융법이나 본 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행위, 결의 혹은 조례를 채택하거나 사안을 통과하기에 충분하다.</p> <p>4. 본 의회는 본 법에 의해 해당 시에 수여된 모든 기업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나, 법이나 본 법에 달리 제시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언급된 시 법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 부동산 및 인력의 관리 및 양도증서의 통제를 하며, 언급된 시 내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현지법, 조례, 규칙, 규정 및 준법을 매년 제정, 설립, 공표 및 수정하여야 한다.</p>
<p><Consolidated Law_General City> Section 3 Members of common council; appointments to other city offices No member of the common council of any city shall, during the period for which he was elected, be capable of holding under the appointment or election of the common council any office the emoluments of which are paid from the city treasury, or paid by fees or compensation directed to be paid by any act or</p>	<p>3절 시의회의 구성원; 다른 시 공무원으로 임명 어떤 시의 시의회의 어떠한 구성원도 그가 선출된 기간 동안 시 금고에서 지급되는 또는 시 비용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 또는 시의회의 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되도록 지시되는 보수나 시의회의 선임이나 선출에 따른 유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절은 해당 직에 속하는 비용이나 보수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나, 단, 시장과 부시장의 그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있는 정부의 시</p>

원문	번역
<p>ordinance of the common council, but this sec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 to any fees or emoluments belonging to any office, provided, however, that in any city having a city manager or council-manager form of government in which a mayor and vice-mayor may be elected or appointed from the membership of its council, such mayor and vice-mayor may, in addition to the emoluments received as councilman, receive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from the city treasury as mayor and vice-mayor. An officer of any city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on conviction thereof his office shall be vacant.</p>	<p>관리자나 의회 관리자를 가지는 시에서, 이와 같은 시장과 부시장은 의회의원으로 받은 보수에 추가로, 시장과 부시장으로서 시 금고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본 절의 조항을 위반한 시의 공무원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그러한 유죄로 사임해야 한다.</p>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96. Council may establish board. The council may establish a separate board [sic; probably should be "boards"] of fire, water, light, sewer, park, playground and boulevard, plan and zone, recreation, public welfare or other boards or a board possessing the powers of two or more such boards and prescribe the duties of such board or boards and provide for the appointment of commissioner thereof which may by ordinance authorize, empower and direct such board or boards to audit and order paid all bills and accounts incurred by such board or boards and which are payable out of the funds within the jurisdiction of such board or boards. [The] council may give names to the streets, parks and public places and numbers to the lots or villages [sic].</p>	<p>96절 의회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의회는 화력, 수도, 전력, 하수, 공원, 놀이터 및 도로, 계획 및 구역, 레크리에이션, 공공 복지 혹은 기타 위원회나 이러한 위원회의 하나 이상의 권한을 가진 별도의 위원회 [원문 그대로; 아마도 "위원회들"이어야 할 것임] 를 설립할 수 있고, 이러한 위원회나 위원회들의 업무를 설명해야 하며, 조례로 이러한 위원회나 위원회들에게 이러한 위원회(들)에 의해 발생되고, 이러한 위원회(들)의 관할 내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지급된 청구와 계좌를 감사 및 명령하도록 허가, 권한 수여 및 지시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을 허용해야 한다. 해당 의회는 구획이나 빌리지 [원문 그대로]의 길, 공원, 공공 장소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p>

□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선임방식 변경

- 시에 관한 뉴욕 주의 일반법(General City Law)에서는 시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뉴욕 주의 Local Government Handbook에 따르면 1923년 시정부들이 현장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정부 구성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의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정원의 변경, 선출직 직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변경사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에 의한 현장 재/개정 및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정부 부서 설치나 폐지 등의 경우 지방법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Municipal Home Rule, Section20 (1)),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함. 거부된 법안을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2/3의 동의가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1)

〈표 4-12〉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Local laws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1. A local law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as provided in this section or in any other state statute, shall be submitted for the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general election of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such local government held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p>	<p>23절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 1. 본 절이나 다른 주 입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무적인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법은 이러한 지역법이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을 준비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개최되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주 혹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법의 채택 이후 삼십일 이내에 본 장의 이</p>

원문	번역
<p>the adoption thereof unless such local law provides for its submission for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special election or unless,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such local law, a petition signed, authenticated and subject to certification by the clerk as provided for other petitions in section twenty-four of this chapter is filed with such clerk requesting its submission at a special election. If the local law so provides or if a valid petition is so filed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local law at a special election, it shall be submitted at such a special election held in such local government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the local law, the date for which special election shall be fixed by the legislative body. In either case such local law shall become operative as prescribed therein only if approved at such elec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such local government voting upon the proposition.</p>	<p>십사절의 다른 청원에 따라 서기의 서명, 인증 및 증서를 조건으로 하는 청원이 특별 선거에 그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와 같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법이 이렇게 제공하거나 유효한 청원이 이렇게 제출되어 특별 선거에서 지역법이 제출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 법의 채택 이후 육십일 이내에 이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개최된 특별 선거에 제출되어야 하고 특별 선거일은 입법기관이 정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이러한 지역 법은 제의에 대한 이러한 지방정부 투표를 위한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이러한 선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규정된 바에 따라 운용된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 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 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 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 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 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 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p>	<p><지방 자치> 23절 2. 주 법령에 의해 달리 명시되거나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 법은 다음의 경우에 의무적인 국민 투표를 조건으로 한다: a. 시의 경우 이러한 시의 새로운 헌장을 제시하는 경우. b. 시, 타운 혹은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자격 혹은 구성의 변경이나 구성원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수의 증감. c. 선출된 최고 집행위원의 거절권 변경. d. 카운티에서 선출된 카운티 행정책임자직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 혹은 감사위원회에 장이 없는 경우, 시나 빌리지의 시장 혹은 타운의 감독관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 e. 선거직의 철폐 혹은 선거직의 지명, 선출 혹은 해임 방식 또는 선거직 임기 변경 또는 그의 임기 중 선거직 임금의 축소 f. 선거직 권한의 철폐, 이전 혹은 축소 g. 새로운 선거직 창설 h. 시의 경우, 카운티 관리자 위원회의 구성원</p>

원문	번역
<p>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p> <p>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p> <p>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p> <p>h.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the boundaries of wards, or other districts, from which members of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such city to represent the city, are elected.</p> <p>i.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public utility franchises.</p> <p>j. In the case of a city, reduces the salary or compensation of a city officer or employee, increases his hours of employment or changes his working conditions if such salary, compensation, hours or conditions have been fixed by a state statute and approved by the vote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city. No provision effecting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contained in any local law or proposed new charter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the definite question with respect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any provisions not relating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and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voting thereon.</p> <p>k.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the membership or terms of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f the city.</p>	<p>들이 대표하기로 선택되어 선출된 해당 시의 구나 다른 지역의 경계 변경</p> <p>i. 공공 사업 독점 사업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 변경</p> <p>j. 시의 경우, 이러한 임금, 보수, 시간 혹은 조건들이 주 법안으로 고정되고 해당 시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시 공무원이나 직원 임금이나 보수의 감액, 직원 근무 시간 증대 혹은 그의 근무 조건 지역법이나 제안된 새로운 선장에 포함된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항도 이러한 감액, 증대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조항과 별도로 제출되고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이에 대한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않다.</p> <p>k. 시의 경우 회원자격이나 해당 시 공무원 위원회실 조건에 대한 법률 조항 변경</p>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협력

- 의회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1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년도 행정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관리자에게 정부 또는 개선과 관련하여 시의 업무에 관한 진술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와 함께 의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1))
- 관리자는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보고서에는 이전 정기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시 공무원에 대한 인력의 변동사항(고용, 승진, 순환, 해임)이 포함되어야 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0(6))

○ 의회 및 행정부에 대한 관리 감독

- 시 감사관은 시의회와 시의원에게 건전한 재정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가 적절하게 지원되고 기록되도록 하며, 시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시의 여러 부서의 활동이 각각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27(1) 및 시 정부 홈페이지)
- 롱비치 시는 시정부의 모든 공무원의 윤리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윤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의회가 임명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됨(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18(5))
- 명백하고 의도적인 윤리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직무의 수행이 중단되거나, 해임될 수 있음(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tion 18(7))

〈표 4-13〉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20. City manager. 1. The city manager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y. Though his official title shall be city manager and that [sic] mayor, he shall be the mayor of the city and shall have and exercise all powers conferred upon the mayor by this act or by the general statutes of the stat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It shall be his duty to see that the laws of his state and the local laws, ordinances and bylaws passed by the council are faithfully executed within the city. He shall sign, on behalf of the city, all contracts made by it, and cause the seal of the city to be affixed thereto. He shall have power and authority to call out and command the police and firemen of the city whenever in his discretion he shall deem it necessary, and such command shall be in all respects obeyed. Whenever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public disturbances, mobs or riots, it shall be his duty to take such action as is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state. It shall be his duty to exercise a constant supervision and oversight over the conduct of all city officers, departments, boards and commissions, and he shall have power and authority to examine at all times the books, vouchers and papers of any officer or employee of said city, and to take and hear testimony and proof in pursuance of sections three hundred fifty-seven to three hundred sixty-five inclusive and four hundred three to four hundred fourteen inclusive of the Civil Practice Act.</p>	<p>20절 시 관리자 1. 시 관리자는 해당 시의 행정책임자이다. 그의 공식 직위가 시 관리자일지라도 해당 [원문 그대로] 시장은 그 시의 시장이 되고, 본 법이나 본 법에 불합치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일반 법령에 의해 시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의 주와 지역 법, 조례, 의회가 통과한 세칙이 해당 시 내에서 성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는 시를 대신하여 그가 체결한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에 시의 인장을 날인한다. 그는 그의 재량으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시의 경찰과 소방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명령할 권한과 힘이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모든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 공공 방해, 군중 소란 혹은 폭동의 예방이나 제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 법의 허용을 받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모든 시 공무원, 부처, 위원회 및 위원회의 수행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보는 것이 그의 의무이고, 그는 언제든지 해당 시 직원과 공무원의 장부, 바우처 및 서류를 검토할 권한과 힘이 있으며, 민법 삼백오십칠에서 삼백육십오절 및 사백삼에서 사백삼십사절에 따라 증거와 증언을 채택하고 들어야 한다.</p>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20. City manager. 6. The city manager, at each regular meeting of the city council, shall make a report to the city council and to the public, covering all personnel</p>	<p>20절 시 관리자 6. 시 관리자는 시 의회의 각 정기 회의에서 시 의회와 대중에게 지난 마지막 정기 의회 이후 기간 동안 모든 인력 변경을 포괄하는 보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보고는 유급과 무급 여부를</p>

원문	번역
<p>changes made in the period since the last regular meeting of the council, and such report shall include any changes made relating to the hiring, promotion, demotion, transfer or termination of any personnel in the employ of the city, whether salaried or unsalaried, including members of boards or commissions.</p>	<p>떠나 위원회나 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시 고용에서 인력의 고용, 승진, 강등, 이전 혹은 종결과 관련한 모든 변화를 포함한다.</p>
<p>Sec. 27. City comptroller. The office of city comptroller is hereby created as an appointive office in the City of Long Beach. The city comptroller shall be the chief fiscal officer of the city.</p> <p>1. Dutie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city comptroller:</p> <p>a. To keep and supervise the books of general accounts of the city which books shall include a general journal, general ledger, commitment register, claim record, appropriation ledger, and bond ledger and such other books that from time to time may be found necessary to properly reflect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ity.</p> <p>b. To prescribe the form of receipts, vouchers, bills or claims to be filed by all departments, institutions, offices and agencies of the city government.</p> <p>c. To examine and approve all contracts, purchase orders and other documents by which the city incurs financial obligations, having ascertained before approval that money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and allotted to meet such obligations and will be available when such obligations shall become due and payable and to record such obligations as encumbrances of the respective appropriation from which such obligations are to be paid.</p> <p>d. To audit and approve all bills, invoices, payrolls and other evidences of claims, demands or charges against the city and to determine the regularity, legality and correctness of the same.</p> <p>e. To prepare and submit to the council</p>	<p>27절 시 감사관 시 감사관은 이에 롱비치시에서 선임된 공무원이 된다. 시 감사관은 시의 최고 채무 책임자이다.</p> <p>1. 의무: 시 감사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p> <p>a. 일반 저널, 일반 총계정원장, 공약 등록부, 청구 기록, 예산처분 원장, 채권 원장 및 때에 따라 시의 재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기타 장부들을 포함하는 시의 일반 계좌 장부를 유지 및 감독</p> <p>b. 시 정부의 모든 부처, 기관, 사무소 및 대리인이 제출하는 영수증, 바우처, 청구서 혹은 클레임의 형태를 지시</p> <p>c. 시의 재정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계약, 구매 주문 및 기타 서류를 검토 및 승인하고,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승인 이전에 해당 금액이 적절히 총당 및 배분되었음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가 만기가 되고 지급되어야 할 때 이러한 의무가 지급되어야 하는 각 책정액을 채무로 하여 이러한 의무를 기록해야 한다.</p> <p>d. 시에 대한 모든 청구, 거래명세, 임금대장, 청구의 기타 증거, 요청 혹은 부과를 감사 및 승인하고, 그 정기성, 합법성 및 정확성을 결정</p> <p>e. 시의 재무 조건의 월별 내역서를 의회에 작성해 제출, 연간 보고를 주 감사관에게 작성해 제출, 시 관리자나 의회가 요청하는 다른 보고를 작성해 제출. 이러한 보고를 즉시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시 감사관에게 적절히 그의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바에 따라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작성된 모든 내역서, 은행 잔액, 은행 계정조정 및 요약물 제출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의 의무이다.</p> <p>f. 의회, 시관리자 혹은 법이나 법에서 허가된 바에 따른 주 재무공무원이 지시할 수 있는 시의 재무 기록에 대한 이와 같은 기타 의무 수행.</p>

원문	번역
<p>monthly statements of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ity, annual reports to the state comptroller and such other reports as may be required by the city manager or the council. In order that such reports may be promptly prepared and submitted it shall be the duty of all officials and employees to keep all records current and to submit to the city comptroller all statements, bank balances, bank reconciliations and summaries kept by them daily, weekly or monthly, as required by him to properly prepare his reports.</p> <p>f. To perform such other duties pertaining to the financial records of the city as may be directed by the council, the city manager or by any law or by any fiscal officer of the state authorized so to do by law.</p>	
<p><City of Long Beach Charter> Sec. 18. Code of ethics. 5. Board of ethics. There is hereby created and established a board of ethics consisting of eight (8) members to be appointed by the city council, a majority of whom shall not be employees or officers of this city, all of whom shall reside in the City of Long Beach and who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Members of the board of ethics shall serve at the pleasure of the city council.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elect a chairman. The corporation counsel shall be a member ex officio of the board, and at least one member of said board shall be an elected or appointed municipal officer or employee. 7. Penalties. In addition to any penalty contained in any other provision of law, any person who shall knowingly and intentionally violate any other provision of law or of this code may be fined, suspended or removed from office or employment as the case may be,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p>	<p>18조 윤리 강령 5. 윤리 위원회. 이에 시 의회가 선임한 여덟(8)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윤리 위원회가 창설 및 설립된다. 과반수는 해당 시의 직원이나 공무원 이어서는 안 되고, 이들 모두는 롱비치 시에 거주해야 하며 보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 윤리 위원회 구성원들은 시 의회의 뜻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의장을 선출한다. 기업 자문은 위원회의 직권 구성원이고 해당 위원회의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은 선출 혹은 선임 직 시 공무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7. 과징금 법의 다른 조항에 포함된 다른 처벌에 추가로, 고의로 알고서 법이나 본 강령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 고용이나 직에서 해임 혹은 정직될 수 있다.</p>

3. 시장-의회형: 버팔로 시(City of Buffalo)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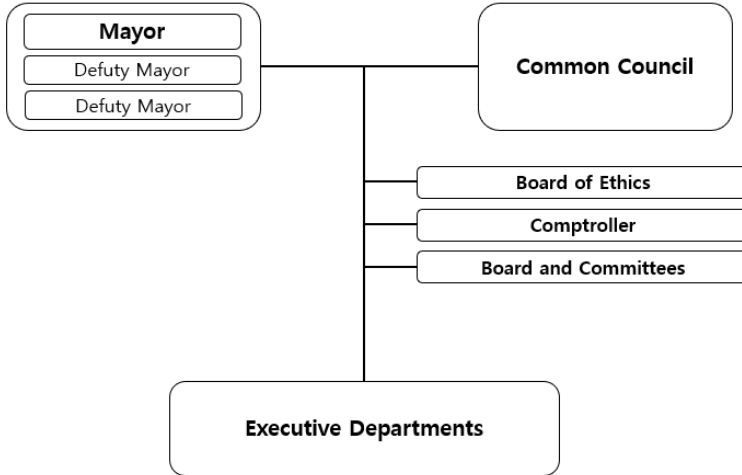
□ 역사적 배경

- 버팔로 시는 뉴욕주에서 뉴욕시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로 에리(Erie) 카운티 권역에 속함
 - 인구 약 25만, 면적 약 136km²이며, 인구밀도는 2,568/km²임
 - 중공업의 발전과 쇠퇴와 주기를 같이 하며 인구 및 도시경제가 변화되는 지역으로, 1920년에서 1960년대 인구가 50만을 넘어섰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 20세기까지 백인의 비율이 과반수 인상을 차지하는 지역이었으나, 2010년 기준 백인의 비율이 50% 정도로 다양한 인종의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4,991달러로 높지 않음(위키피디아, 검색어: city of buffalo, 검색일: 2019.07.01.)

□ 기관구성 체계도

- 버팔로 시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4-8>과 같으며, 전형적인 강시장 형태의 정부형태(시장-의회형)를 취함
- 버팔로시는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서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와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로 구성됨. 그밖에도 7개의 위원회(Board and Commissions)을 운영하고 있음(버팔로시 홈페이지, 검색일: 2019.07.01.)
- 버팔로 시는 자체 헌장을 제정하고 있으며, 뉴욕 주 일반법과 함께 시의 헌장에 따라 운영됨
- 시의 헌장은 시의 경계, 선거구, 입법부 및 행정부의 구성과 선출 방식을 비롯해 행정 부서의 구성과 각종 절차 등 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Local Government Handbook)

〈그림 4-8〉 City of Buffalo의 기관구성 체계도



- 버팔로 시의 입법권은 시 의회가 가지며, 집행 및 행정에 관한 권한은 시장과 고위공무원(executive officers), 위원회 및 각 부서 등이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2(2)&(3))(기관대립형)
- 버팔로 시는 9개 구역(council districts)으로 구성되며(City of Buffalo Charter, 3(3)), 시 의회는 각 구역에서 선출된 9명의 의원(council members)으로 구성됨. 의회의 의장은 의원들 중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됨(City of Buffalo Charter, 3(2))
- 버팔로 시 시장은 시의 유권자들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법률로 정해진 직위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4(6)&(7))

〈표 4-14〉 City of Buffalo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Buffalo Charter〉 § 2-2. Legislative Powe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city is vested in the common council, referred to throughout this act as the council, hereinafter created and constituted and its authority,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escribed by this act or general law, shall be legislative only.</p> <p>§ 2-3. Executive Power. The execu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of the city are vested in the mayor and in the executive officers, departments, boards, commissions and other agencies of the city as are herein created, or as may be created by any special act of the legislature not repealed by this act, or as may be created by general law.</p>	<p>§ 2-2. 입법 권한 시의 입법 권한은 의회로서 본 법을 통해 참조되어, 시의회가 가지며 그 이후 창설 및 구성되며, 본 법이나 일반법에서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권한은 입법에 한한다.</p> <p>§ 2-3. 집행 권한 시의 집행 및 행정 권한은 시장과 집행 임원, 부처,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대행기관에게 있다. 이는 본 헌장에 따라 창설되거나 본 법에 의해 폐기되지 아니하는 입법기관의 특별 행위로 창설되거나 일반 법으로 창설될 수 있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2. Composition of the Common Council. [Amended 8-22-2002 by L.L. No. 12-2002,2 effective 12-1-2002] The common council shall consist of nine district council members. A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shall be elected from amongst the members at the organizational meeting for a two (2) year term. The common council shall be deemed a continuous body notwithstanding any change of membership.</p> <p>§ 3-3. Council Districts. The city is divided into nine council districts, the boundaries of which are set forth in Section 1-4 of this charter.</p>	<p>§ 3-2. 시의회의 구성 [2002-8-22에 L.L.12-2002호로 수정, 2002-1-12 발효] 시의회는 아홉 명의 지방 의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시의회의 대표는 이(2) 년의 임기로 조직 회의에서 구성원들 중에 선출된다. 시의회는 구성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기관으로 간주된다.</p> <p>§ 3-3. 지방 자치구 의회 시는 아홉 개의 지방 자치구로 나뉘고, 그 경계는 본 헌장 1-4절에 명시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4-6. Election; Term; Residence Requirement. [Amended 12-26-2001 by L.L. No. 1-2002, effective 1-8-2002] At the general election in the year 2001 and each fourth year thereafter a mayo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the city for a term of four years. No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or appointment as successor to the</p>	<p>§ 4-6. 선거; 임기; 주거 요건 [2001-12-26에 L.L. 1-2002호로 수정, 2002-8-1 발효] 2001년 일반 선거 및 이후 매 사년 마다의 선거에서 시장은 사 년의 임기로 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선임이나 선출일 직전 적어도 일 년 전에 본 헌장 24-4절에 정의된 바와 같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시장직에 대한 승계인으로 선출 혹은 선임될 수 없다.</p>

원문	번역
<p>office of the mayor who has not been a resident as defined in section 24-4 of this charter of the ci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his or her election or appointment.</p> <p>§ 4-7. Appointments. The mayor may appoint and at pleasure remove an executive assistant and such other subordinates as may be authorized by law or ordinance.</p>	<p>§ 4-7. 선임 시장은 보좌관 및 법이나 조례가 허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른 종속 기관을 선임하고 그의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p>

* 출처: City of Buffalo Charter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 지방의회(common council)와 시의원(council members) 선임방식 및 역할

- 버팔로 시의 지방의회는 9명의 의원(council members)으로 구성되며, 시를 구성하는 9개 구역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됨(City of Buffalo Charter, 3(2)).
 - 시 의원의 임기는 2001년 선거의 경우 2년이며, 이후 2003년부터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는 4년임. 의원으로 선출된 후 임기는 정기 선거 후 1월의 첫날부터 시작되며, 의원직은 연임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5))
 - 임기 종료가 아닌 사유로 의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남은 의원들은 공석이 된 의원과 같은 정당의 구성원 중 자격을 갖춘 해당지역 거주자를 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보충된 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이후 1월의 첫날까지임(City of Buffalo Charter, 3(6))
-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City of Buffalo Charter, 3(7))
 - 연방법 및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법률, 조례, 결의안 및 규칙과 규제의 제정 권한
 - 현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의 예산안을 채택하고 장기적 재정 계획을 승인

- 일반법 및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및 특별세의 부과
 - 현장에 명시된 바에 따른 시 공무원의 임명 혹은 임명 동의 권한
 - 시 서기(city clerk), 부 서기, 출생기록 관리관 및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임명
 - 시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보상의 조정
 - 의회의 절차를 규정 및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판단 권한
 - 시와 그 거주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질의 권한
- 지방의회의 주요 의무(City of Buffalo Charter, 3(8))
- 주말이 아니라면 매 짝수년도 1월의 둘째 날에 의회 총회(organizational meeting)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에서는 의장을 선발하고 의회 직원의 자격과 의무 및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8월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2주마다 회의를 가져야하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1개 이상의 신문사를 의회의 소식지로 지정하여야 함
- 특별회의(special council meeting)는 시장 혹은 의원 5인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9))
- 모든 의회 구성원은 주민 혹은 방문자들에 의해 제기된 버팔로 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적시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뤄야 할 의무를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3(12))
- 시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일반 및 특별 위원회를 지명함. 또한 비서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13))
- 의회가 선출직 혹은 임명직 공무원의 공석을 채울 권한이 있는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공석에 임명할 수 있음. 모든 의원은 해당 임명이 공석을 실현하는데 최선이라고 인정된다면 공석에 임명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21))

〈표 4-15〉 지방의회와 시의원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Buffalo Charter〉 § 3-2. Composition of the Common Council. [Amended 8-22-2002 by L.L. No. 12-2002,2 effective 12-1-2002] The common council shall consist of nine district council members. A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shall be elected from amongst the members at the organizational meeting for a two (2) year term. The common council shall be deemed a continuous body notwithstanding any change of membership. § 3-3. Council Districts. The city is divided into nine council districts, the boundaries of which are set forth in Section 1-4 of this charter.</p>	<p>§ 3-2. 시의회 구성 [2002-8-22에 L.L.12-2002호로 수정, 2002-1-12 발효] 시의회는 아홉 명의 지방의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시의회의 대표는 이(2) 년의 임기로 조직 회의에서 구성원들 중에 선출된다. 시의회는 구성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기관으로 간주된다. § 3-3. 지방 자치구 의회 시는 아홉 개의 지방 자치구로 나뉘고, 그 경계는 본 헌장 1-4절에 명시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5. Election and Terms of Common Council Members. [Amended 8-22-2002 by L.L. No. 12-2002,3 effective 12-1-2002] The terms of office of the council members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charter shall continue until the installation of council members chosen in general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At the general election in the year 2001 one district council membe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each council district for a term of two years. At the general election held in the year 2003 and every fourth year thereafter, one district council membe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each council district for a term of four years.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on council shall take office on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general elections in which they were elected, and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p>	<p>§ 3-5. 시의회 구성원의 선출 및 임기 [2002-8-22에 L.L.12-2002호로 수정, 2002-1-12 발효] 본 헌장 발효일부로 의회 공무원 임기는 본 절에 따라 일반 선출에서 선택된 의회 구성원의 선임까지 지속된다. 2001년 일반 선거에서 하나의 지방 자치구 의회 구성원이 이년의 임기로 각 지방 자치구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2003년에 개최된 일반 선거에서 그리고 이후 매 사년 마다의 선거에서 하나의 지방 자치구 의회 구성원이 사 년의 임기로 각 지방 자치구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시의회에 선출된 사람들은 그들이 선출된 정기 선거 이후 일월 첫째날부터 직을 시작하고 재선출될 수 있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6. Vacancies in the Common Council. [Amended 8-22-2002 by L.L. No. 12-2002,</p>	<p>§ 3-6. 시의회의 공석 [2002-8-22에 L.L.12-2002호로 수정, 2002-1-12 발효; 2006-9-19에 L.L.17-2006</p>

원문	번역
<p>effective 12-1-20024; 9-19-2006 by L.L. No. 17-2006, effective 12-6-2006]</p> <p>In the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district council member, otherwise than by expiration of the term,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appoint a qualified resident of the same political party and district as the council member whose place is vacant to fill such vacancy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next general election at which a district council member may, pursuant to law, be chosen for the balance of the term. The person so elected shall take office on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such general election.</p> <p>Prior to an appointment, the Common Council shall direct the City Clerk to advertise the vacancy for a minimum of five (5) days on the City's Web-site and Public Access Media outlets, and obtain from any qualified resident seeking consideration for appointment, a current resume, a letter requesting appointment to the vacancy.</p> <p>In the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otherwise than by expiration of his or her term,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common council shall appoint one of their members to fill such vacancy until the next organizational meeting.</p>	<p>호로 수정, 2006-6-12 발효]</p> <p>임기 만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지방 자치구 의회 구성원직의 공석이 있는 경우, 의회의 남은 구성원들은 동일한 정당의 적격을 갖춘 거주자를 선임하고 의회 구성원직이 공석인 자구의 공석은 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지방 자치구 구성원의 다음 일반 선거 이후 일월 일일 전까지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자는 이러한 일반 선거 이후 일월 일일에 직을 시작한다.</p> <p>선임에 앞서, 시의회는 시 서기에게 시의 웹사이트와 공중이 접근 가능한 언론에 최소 오(5)일간 공석을 광고하고, 선임을 원하는 적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현재 이력서와 공석에 대한 선임 요청을 하는 서신을 내도록 해야 한다.</p> <p>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시의회의 대표직에 공석이 있는 경우, 남은 시의회 구성원들은 다음 조직 회의까지 이러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구성원 중 하나를 선임해야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7. Powers of the Common Council. The common council shall have the power: (a) to enact local laws for any public purpose as may b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power to act by ordinance, resolution or rule and regulation. (b) to enact ordinances for any purpose authorized by any general or special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ose purposes set forth in section 2-1 and section 3-18 hereof. (c) to adopt resolutions and rules and</p>	<p>§ 3-7. 시의회의 권한</p> <p>시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p>(a) 헌법과 뉴욕주 및 미합중국 법에 따른 공중 목적을 위한 그리고 시의회가 조례, 결의 혹은 규칙 및 규정예 의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범위 내에서 지역 법을 제정</p> <p>(b) 본 헌장의 2-1절 및 3-18절에 명시된 목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일반 혹은 특별법에 의해 허가된 목적을 위한 조례 제정</p> <p>(c) 그의 기능, 힘 및 의무 행사에 있어서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채택</p> <p>(d) 행사 방식이 이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본 법에 의해 창설된 부처 중 하나에 의해 행사되</p>

원문	번역
<p>regulations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powers and duties.</p> <p>(d) to regulate by ordinance the method of exercising by one of the departments created by this act any power conferred upon the city by this charter or any law when the method of exercise is not therein prescribed; if such power be legislative, the common council shall exercise the power.</p> <p>(e) to adopt by the procedures specified within this charter the annual operating budget of the city, the annual capital budget of the city and the four-year capital program of the city.</p> <p>(f) to authorize the borrowing of funds by the c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II of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state law.</p> <p>(g) to impose taxes and special assessments as authorized by any general or special law.</p> <p>(h) to acquire by purchase, gift or eminent domain any interest in real and personal property for any city purpose or as authorized by any general or special law.</p> <p>(i) to acquire by condemnation lands and property and/or easements therein situate without the city of Buffalo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water supply and/or sewage disposal and drainage for lands owned by the city and held or used for public purposes, and situate without the city of Buffalo.</p> <p>(j) to dispose of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of the city as allowed by any general or special law.</p> <p>(k) to appoint local officers and to confirm appointments of local officers as specified within this charter.</p> <p>(l) to appoint a city clerk, a deputy city clerk, a deputy city clerk of birth records, and other staff to the common council as deemed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mmon council, provided that, until January 1,</p>	<p>는 방식 및 본 헌장이나 법에 의해 시에 부여된 권한을 조례로 규제. 이러한 권한이 입법이라면, 시의회는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p> <p>(e) 시의 연간 운영 예산과 시의 연간 자본 예산 및 시의 사 년의 자본 프로그램을 본 헌장 내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채택.</p> <p>(f) 뉴욕주 헌법 VIII 조 및 주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시에 의한 기금 차용 허가.</p> <p>(g) 일반 혹은 특별법에 의해 허가된 바에 따라 세금 및 특별 평가 부과.</p> <p>(h) 일반 및 특별법에 따라 허가된 바에 따라 또는 시 목적을 위해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구매, 증여 혹은 토지사용권의 취득.</p> <p>(i) 공공 목적을 위해 개최 혹은 사용되고 시가 소유한 버팔로시 외에 위치한 수도 공급 및/혹은 하수 처리 및 배수를 위해 필요할 버팔로시 외에 위치한 토지 수용, 재산 및/혹은 지역권에 의한 취득</p> <p>(j) 일반 혹은 특별법으로 허용되는 시의 부동산 혹은 개인 재산의 처분</p> <p>(k) 지역 공무원의 선임 및 본 헌장 내에 명시된 지역 공무원의 선임의 확정</p> <p>(l) 시 서기, 시의 대리 서기, 출생 기록에 대한 시의 대리 서기 및 다른 직원을 시의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바에 따라 선임. 단, 200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시 의회에 대한 다른 직원들은 37명으로 제한된다.</p> <p>(m) 법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시의 각 공무원과 직원의 임금과 보수의 고정</p> <p>(n) 스스로의 절차를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자격 판단</p> <p>(o) 시와 그의 주민에 모든 해당 사안을 조사 및 조사, 이러한 조사에서 서류 작성 혹은 증인 참석 소환장으로 요청 및 집행</p>

원문	번역
<p>2006, such other staff to the common council shall be limited in number to 37. (m) to fix the salary and compensation of every officer and employee of the city except as may be otherwise provided by law. (n) to regulate its own proceedings and to adjudge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o)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all matters of concern to the city and its inhabitants and to require and enforce by subpoena the attendance of witnesses 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t such investigations.</p>	
<p><City of Buffalo Charter> § 3-8. Duties of the Common Council. The common council shall have the duty: (a) to convene an organizational meeting on the second day of January in each even numbered year, unless it be Saturday or Sunday, and in such event on the following Monday, for the following purposes: (i) to elect at that time one of its members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pro tempore to act during the temporary absence or disability of the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ii) to determine the qualif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common council staff including the council chief of staff, to defin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common council staff and to define the administrative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between the staff and the common council. (b) to meet at least every two weeks except during the month of August. (c) to conduct all meetings in public. (d) to designate one or more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the city for the publication of notice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local finance law), advertising matters or proceedings as required by this charter or by law or ordinance. The common council in its discretion may make any such publication in the city record now</p>	<p>§ 3-8. 시의회회의 의무 시의회는 다음 의무를 갖는다: (a) 그러한 경우에 다음 월요일로 미뤄지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 아닌 이상, 각 짝수 년도에 일월 이일에 다음 목적을 위해 조직 회의를 소집: (i) 시의회회의 장의 임시 공석 혹은 집행 불가 중에 행위 할 임시 대행 시의회 장을 당시 구성원들 중 하나를 선출; (ii) 직원 의회의 장을 포함한 시의회 장 구성원들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결정. 시의회 직원의 조직 구조 정의, 직원과 시의회 사이의 행정 및 감독 관계를 정의. (b) 팔월 중을 제외한 최소 매일 이 주 마다 회의. (c) 모든 회의를 공개로 개최 (d) 고지 공표를 위해 시에서 출간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을 지정 (지역 금융법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 본 헌장, 법 혹은 조례에 의해 요구되는 광고 사안 혹은 절차 시의회는 자신의 재량으로 시 서기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시에 의해 현재 출간되는 시 기록에서 이러한 공표를 할 수 있다.</p>

원문	번역
<p>being published by the city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city clerk.</p>	
<p>〈City of Buffalo Charter〉 § 3-9. Special Council Meetings. Special meetings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mayor or five council members. The council may provide by rule for additional stated meetings and for additional modes of calling special meetings, and for the form of notices of meetings and the method of serving same.</p>	<p>§ 3-9. 특별 시의회 특별 회의는 시장 혹은 다섯 명의 의회 구성원의 서면 요청으로 대표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의회는 규칙으로 특별 의회 소집의 추가적 방법으로 그리고 회의 고지의 형식으로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12. Members of the Common Council; Duty. Every member of the common council shall have the duty to consider and address in a timely and thorough manner any concerns regarding the affairs of the city of Buffalo that are communicated to him or her by residents of or visitors to the city of Buffalo. § 3-13.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Powers and Duties. The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shall preside at all meetings of the common council and shall appoint all committees, regular or special, and may appoint and at pleasure remove a secretary.</p>	<p>§ 3-12. 시의회 구성원들; 의무 시의회 의 각 구성원은 적시에 그리고 버팔로시의 업무에 대해 해당하는 방식으로 버팔로시에 거주자 혹은 방문자에 의해 그들에게 오는 서신을 검토 및 그에 대해 언급할 의무가 있다. § 3-13. 시의회의 장; 권한 및 의무 시의회의 장은 시 의회의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정기 혹은 특별 위원회를 선임해야 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비서를 해임할 수 있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3-21. Appointive Powers of the Common Council. Whenever the common council is authorized to fill a vacancy in an elected or appointed office, the council shall appoint a duly qualified person to fill the vacancy. Any member of the common council may be appointed to fill the vacancy upon a determination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 be best served by such appointment.</p>	<p>§ 3-21. 시의회의 선임 권한 시의회가 선출 혹은 선임직의 공석을 채우는 때는 언제나, 해당 의회는 이러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적법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시의회 의 구성원은 이러한 선임에 따라 공석을 위해 최선이 되는 결정으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임될 수 있다.</p>

* 출처: City of Buffalo Charter

□ 시장 및 내각(Administration Cabinet)의 선임방식 및 역할

○ 시장(Mayor) 선임 및 해임방식

- 버팔로 시의 시장은 지역의 유권자들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선출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하는 지역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City of Buffalo Charter, 4(6))
- 시장과 감사관(comptroller) 및 의회의장은 뉴욕 주 헌법 하에서 보안관(sheriffs)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지사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24(11))
- 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 공무원들 중 소방 및 경찰서장을 제외한 한 명을 시장의 일시적 부재 시 시장임무를 수행할 대리인(acting mayor)으로 임명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4(4))
- 일시적 부재가 아닌 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시의회 의장이 다음 정기선거로 후임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시장직의 잔여임기를 수행함(City of Buffalo Charter, 4(5))

○ 시장의 권한 및 역할

- 시장은 시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로서 적절한 법 집행을 유지하고 부서장들을 지시 및 감독하고 시의 모든 공무원과 부서, 위원회 등의 직무가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보고서 기록 등을 열람할 권한을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4(1))
- 시장은 모든 의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4(1))
- 시장은 뉴욕주 일반법, 시 헌장, 시 법률 등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4(1))
- 시장은 법률 및 조례에서 인정하는 경우 경영비서관(executive assistant)을 비롯한 부하직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4(7))
- 시장은 공청회를 거친 후에 지방법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청회 일시를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함(City of Buffalo Charter, 4(8))
- 시장은 헌장 3-7조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조사권한을 모두 가지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모든 항목이 시장의 조사에도 적용됨(City of Buffalo Charter, 4(9))

- 시장은 의회가 임명권을 가진 시 서기 및 위원회 직위 등을 제외한 부서장 및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부서장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시의 부서들 내에 속한 집행 부서(executive department)들의 경우, 현장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한 전략기획부서(office of strategic planning)의 장(director) 혹은 각 부서장이 임명권을 가짐
- 의회의 승인 대상이 되는 시장임명 직위의 경우 다른 일반법 혹은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직위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함(City of Buffalo Charter, 5(4))
- 시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공식적 기능을 수행할 부시장 2인을 임명할 수 있음. 부시장의 행위는 시장대리인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음(City of Buffalo Charter, 6(1))

○ 내각 구성원의 선임 및 해임방식

- 버팔로시의 내각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하여 시 정부 부서(Municipal departments)의 부서장들로 구성됨
- 부시장 및 감사관(comptroller)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장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함
- 감사관(comptroller)은 감사부서(Department of audit and control)의 장으로서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됨(City of Buffalo Charter, 7(2))
-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시장임명직 공무원의 경우 경영정보시스템 부서장(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과 같이 시장, 감사관, 의회 의장이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9(2))

-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은 부부서장 및 하위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있음. 또한 현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내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5(2))

〈표 4-16〉 시장 및 내각의 선임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Buffalo Charter〉 § 24-11. Removal of Mayor, Comptroller and President of the Council. The mayor, comptroller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may each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governor in the same manner as sheriffs are removable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p>	<p>§ 24-11. 시장의 해임, 의회의 감사관 및 대표 시장, 의회의 감사관 및 대표는 주의 헌법에 따라 보안관이 해임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지사에게 의해 그 직에서 각각 해임될 수 있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4-1. Duties and Powers. The mayor shall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y and shall maintain peace and good order and enforce the laws therein and shall supervise and direct all department heads and see to it that the duties of all other city officers, departments, boards, commissions and other city agencies are faithfully performed and shall have authority at all times to examine their books, papers, records and accounts and the moneys, securities and property of the city in their possession and may in his or her discretion exercise such authority through the director of the budget or otherwise. The mayor shall have the right to appear before and address the council at any meeting. He or she shall have the custody of the seal of the city and shall, except as herein otherwise provided, authenticate all accounts of the council and all instruments and papers authorized to be so authenticated. The mayor shall also exercise such powers and perform such duties as are imposed by this act and by any local law or ordinance and by any provision of general law.</p>	<p>§ 4-1. 의무와 권한 시장은 시의 최고 집행 임원이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며 모든 부처의 장의 감독 및 지시하며, 모든 다른 시의 공무원, 부처,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시의 대리기관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지 보며, 언제든지 그의 장부, 서면, 기록 및 계좌와 금전, 증권 및 소유에 있는 시의 재산을 검토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그의 재량으로 예산 이사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 출석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를 언급한다. 시장은 시의 인장에 대한 보관을 하고, 달리 본 현장에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의회의 모든 계좌의 모든 문서와 인증 허가를 받은 서류들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은 또한 본 법에 부과된 바에 따라 그리고 지역법이나 조례, 그리고 일반법 조항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다.</p>

원문	번역
<p>〈City of Buffalo Charter〉 § 4-4. Designation In the Event of Temporary Disability or Absence from the State. The mayor shall designate an officer whose appointment has been confirmed by the common council, other than the police or fire commissioner, as the acting mayor to perform the mayor's duties in the event the mayor is temporarily disabled or absent from the state. The designation shall be made in a writing filed with the city clerk at the commencement of the mayor's term of office and at such other time as the mayor desires to change the designation. If no such designation is made, the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shall perform the mayor's duties</p>	<p>§ 4-4. 주로부터의 임시 불가능 혹은 공석의 경우 지정 시장은 경찰 혹은 소방 위원회 외에 시장이 임시 그 주에서 집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 시장의 의무를 수행할 대리 시장으로 그의 선임을 시의회가 확정된 공무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선임은 서면으로 하여 시장의 임기가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장이 이러한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다른 시점에 시 서기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의회의 대표가 시장의 의무를 수행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4-5. Vacancy. In the case of a vacancy in the office of mayor caused by the mayor's resignation, removal, death or permanent inability to discharge the powers the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who shall fill the vacancy in the office of the mayor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following the next general election at which a mayor may, pursuant to law, be elected for the balance of the term. Upon commencement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mayor so elected, the president of the common council then acting as mayor, shall complete the term of his or her office, if any remains.</p> <p>§ 4-6. Election; Term; Residence Requirement. [Amended 12-26-2001 by L.L. No. 1-2002, effective 1-8-2002] At the general election in the year 2001 and each fourth year thereafter a mayo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the city for a term of four years. No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or appointment as successor to the office of the mayor who has not been a resident as defined in section 24-4 of this charter of the ci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p>	<p>§ 4-5. 공석 시장의 퇴임, 해임, 사망 혹은 영구적인 불가능으로 야기된 시장직의 공석의 경우에 법에 따라 시장이 다음 일반 선거 이후 일월 일일까지 그 직의 공석을 채우는 시의회 대표가 그 기간 나머지 임기를 위해 선출된다. 그렇게 선출된 시장의 임기 시작 시에, 시장으로 행위 하는 시의회의 대표는 남은 그의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p> <p>§ 4-6. 선거; 임기; 주거 요건 [2001-12-26에 L.L. 1-2002호로 수정, 2002-8-1 발효] 2001년 일반 선거 및 이후 매 사 년 마다의 선거에서 시장은 사 년의 임기로 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선임이나 선출일 직전 적어도 일 년 전에 본 헌장 24-4절에 정의된 바와 같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시장직에 대한 승계인으로 선출 혹은 선임될 수 없다.</p> <p>§ 4-7. 선임 시장은 보좌관 및 법이나 조례가 허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른 종속 기관을 선임하고 그의 뜻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p> <p>§ 4-8. 지방법에 대한 공청 시장에 의해 지정된 해당 시에서 출간되는 하나</p>

원문	번역
<p>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his or her election or appointment.</p> <p>§ 4-7. Appointments. The mayor may appoint and at pleasure remove an executive assistant and such other subordinates as may be authorized by law or ordinance.</p> <p>§ 4-8. Public Hearing on Local Laws. No local law shall be approved by the mayor until a public hearing has been had thereon before the mayor after the publishing of a notice of such hearing once in one or more daily newspapers published in the city designated by the mayor. The mayor shall fix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and the notice shall specify such time and place and shall contain a copy of such local law and shall be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city clerk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hearing.</p> <p>§ 4-9. Investigation by Mayor. The mayor is hereby granted all the powers of investigation conferred on the council by section 3-7 of this act, and all the provisions of said section shall apply to such investigations by the mayor.</p>	<p>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청 고지가 공표된 뒤에 시장 앞에서 이러한 공청이 열릴 때까지 어떠한 법도 공청까지 시장에 의해 승인될 수 없다. 시장은 공청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해당 고지는 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며 이러한 지방법의 사본을 포함하며 공청 이전 최소 오 일까지 시 서기에 의해 작성 및 공표된다.</p> <p>§ 4-9. 시장에 의한 조사 시장은 이에 본 법 3-7절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모든 조사권을 부여 받고, 언급된 절의 모든 조항들은 시장에 의한 이와 같은 조사에 적용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5-2. Appointments by Head of Departme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the head of each department shall appoint and may at pleasure remove each deputy and head of a division of the department, if any. He or she shall also appoint and may at pleasure remove, except as restricted by this act, all subordinates and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r any division thereof. The head of each division of any department and the principal executive officer of any board constituting the head of a department shall be deemed deputies and are authorized to act generally for and in place of their principals. The head of each department</p>	<p>§ 5-2. 부처장에 의한 선임 법에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처의 장은 각 부처장, 부처내 분할의 장을 선임하고 자신의 뜻으로 해임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본 법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하급자 및 부처나 그 부처내 분할의 장을 선임하고 자신의 뜻으로 해임할 수 있다. 부처 내 각 분할의 장과 부처장을 구성하는 위원회의 주요 집행임원은 장으로 간주되고 본인을 대신하여 일반적으로 행위 할 권한을 갖는다. 하나 이상의 장을 가진 각 부처의 장은 서면으로 부처장의 임시 공석이나 집행 불가 중에 부처장으로 행위 하여 근무하도록 명령을 한다.</p>

원문	번역
<p>with more than one deputy shall designate in writing the order in which the deputies shall serve as acting department head during the temporary absence or disability of the department head.</p>	
<p>〈City of Buffalo Charter〉 § 5-4. Reconfirmation of Mayoral Appointments. All mayoral appointments of department heads and members of boards, agencies and commissions under this charter and ordinances of the city of Buffalo, or under any general, special or local law, which appointments are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shall terminat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general, special or local law herein, at the termination of the elected term of the mayor; and shall require re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Reconfirmation shall be by majority or two-thirds vote of the council consistent with the number of votes needed for original confirmation under the law or ordinance providing for appointment.</p>	<p>§ 5-4. 시장 임명의 재확인 그 임명은 시의회의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부처의 모든 시장 임명 및 위원회의 장과 구성원, 본 헌장과 버팔로시 조례 혹은 일반, 특별 혹은 지방법에 따른 대리인 및 위원회는 일반, 특별 혹은 지방법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시장 선출 임기 종결 시에 종결된다. 그리고 시의회 의 재확인을 요한다. 재확인은 선임을 위한 법 이나 조례에 따른 원래 확인을 위해 필요한 투표 표수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과반수 혹은 이분의 삼으로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6-1. Mayor. [Amended 12-30-2005 by L.L. No. 1-2006, effective 1-9-2006] The mayor shall be the head of the executive department. The mayor shall have the power to appoint two (2) deputy mayors who shall serve at the pleasure of the mayor and who shall, as directed by the mayor, act for and in the place of the mayor as his or her representative in the discharge of official functions. The acts of the deputy mayors shall not curtail or affect the powers of the designated officer who performs the duties of the office of the mayor by reason of the mayor's absence from the state or temporary disability.</p>	<p>§ 6-1. 시장 [2005-12-30 에 L.L. 1-2006호로 수정, 2006-1-9 발효] 시장은 집행 부처의 장이다. 시장은 시장이 지 시하는 바에 따라 공식 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 서 그의 대표로 시장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그 리고 시장의 뜻으로 근무하는 두 (2) 명의 대행 시장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대행 시장의 행위는 해당 주에서 시장이 공식이거나 임시적인 집행 불가로 인해 시장직의 의무를 지정된 공무원 들이 수행하는 권한을 축소하지도 영향을 미치지 도 아니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7-1. Comptroller. The comptroller shall be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audit and control.</p>	<p>§ 7-1. 감사관 감사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다. § 7-2. 선거; 임기; 주거 요건 [2001-12-26에 L.L. 1-2002호로 수정,</p>

원문	번역
<p>§ 7-2. Election; Term; Residence Requirement. [Amended 12-26-2001 by L.L. No. 1-2002, effective 1-8-2002] At the general election held in the year 2003 and every fourth year thereafter a comptrolle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the entire city for a term of four years. No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or appointment as successor to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who has not been a resident as defined in section 24-4 of this charter of the ci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his or her election or appointment.</p>	<p>2002-8-1 발효] 2003년에 개최되는 일반 선거 및 이후 매 사 년 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사 년의 임기로 전체 시 유권자들에 의해 감사관이 선출된다. 누구도 그의 선출 혹은 선임일 직전 최소 일년 간 본 헌장 24-4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시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경우 감사관의 직을 승계하는 자로 선출 혹은 임명될 자격이 없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9-2. Appointment and Removal.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hall be appointed by the mayor, the comptroller,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acting conjointly and by a majority thereof. Such appointment shall be made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may be removed at the pleasure of the mayor, the comptroller, and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acting conjointly and by a majority thereof.</p>	<p><버팔로시 헌장> § 9-2. 선임 및 해임 관리 정보 시스템의 최고 정보 담당자는 시장, 감사관 및 공동으로 행위 하는 의회의 장에 의해 선임되고 그들의 과반수로 선임된다. 이러한 선임은 시의회에 의한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최고 정보 담당자는 시장, 감사관 및 공동으로 행위 하는 의회의 대표의 뜻으로 그리고 그들의 과반수로 해임될 수 있다.</p>

* 출처: City of Buffalo Charter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선임방식 변경

- 시에 관한 뉴욕 주의 일반법(General City Law)에서는 시의 정부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버팔로시도 정부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기본적으로 의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정원의 변경, 선출직 직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변경사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에 의한 헌장 재/개정 및 기관구성을 변경하는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

- 기 위해서는 지역 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3 (2))
-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정부 부서 설치나 폐지 등의 경우 지방법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Municipal Home Rule, Section20 (1)), 이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거부된 법안을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2/3의 동의가 필요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21)
 - 버팔로 시는 의회의 승인이 있지 않은 이상 헌장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부서나 직위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24(10))

〈표 4-17〉 기관구성 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Local laws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1. A local law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as provided in this section or in any other state statute, shall be submitted for the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general election of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ers in such local government held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thereof unless such local law provides for its submission for approval of the electors at a special election or unless,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such local law, a petition signed, authenticated and subject to certification by the clerk as provided for other petitions in section twenty-four of this chapter is filed with such clerk requesting its submission at a special election. If the local law so provides or if a valid petition is so filed requesting the submission of the local law at a special election, it shall be submitted at such a special election held in such local government not less than six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the local law, the date for which special</p>	<p>§ 23. 의무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 법 1.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지방 법안의 경우, 법안에서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특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채택된 이후 60일 이후에 열리는 주 정부 선거 또는 지방정부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주민청원이 있고, 이 청원이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입법기관이 확인할 경우, 채택된 후 60일 이후에 특별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주민투표 일자는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해당 법안은 효력을 발생한다.</p>

원문	번역
<p>election shall be fixed by the legislative body. In either case such local law shall become operative as prescribed therein only if approved at such election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such local government voting upon the proposition.</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 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 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 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 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 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 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 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 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 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 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 h.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the boundaries of wards, or other districts, from which members of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such city to represent the city, are elected. i.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public utility franchises. j. In the case of a city, reduces the salary or compensation of a city officer or employee, increases his hours of employment or changes</p>	<p>2. 주 법령의 권한에 속하거나 또는 다른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법은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의무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a. 시가 새로운 헌장을 채택할 경우 b. 시, 타운,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구성과 의원의 자격을 변경할 때, 의회 의결정족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때. c. 선출직 행정책임자의 법안거부권을 변경할 때. d. 카운티 전체를 선거구로 하는 선출직 카운티 행정책임자 직위의 승계 법을 변경할 때, 또는 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시와 빌리지 정부의 시장, 타운의 감독관이 없을 경우. e. 선출 직위의 폐지 시, 선출 직위의 추천, 선 출 또는 해임 방법의 변경 시, 선출 직위의 임 기 변경 시,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급여의 감축시 f.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을 폐지, 이전 또는 감 축 시 g. 선출 직위를 신설할 때 h. 시의 경우 동 경계의 변경, i. 공공서비스 독점 공급권에 관한 법 규정의 변 경 시 j. 시의 경우, 주민투표 또는 주 법령에 의해 공 무원의 급여, 보상, 근무조건 또는 시간 등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또는 고용된 인력의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근 로시간을 증가할 경우, 또는 급여 또는 보상을 감축할 때. 그러한 감축, 인상, 또는 변경에 영 향을 미치는 조항이 포함된 지방 법 또는 새로 운 헌장은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다른 안건들 과 분리되어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k. 시의 경우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또는 임기와 관련된법 규정을 변경할 때</p>

원문	번역
<p>his working conditions if such salary, compensation, hours or conditions have been fixed by a state statute and approved by the vote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city. No provision effecting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contained in any local law or proposed new charter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the definite question with respect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any provisions not relating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and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voting thereon.</p> <p>k.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the membership or terms of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f the city.</p>	
<p>〈City of Buffalo Charter〉 § 24-10. New Offices and Positions. No new offices except such as are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no new positions shall be created, except with the approval of the council and upon the certification by the appointing power and by the director of the budget to the council that the creation of such new office or posi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and administration of the department, board, commission or other city agency in which said new office or position is sought to be created, and stating specifically the reasons therefor, except that such cer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the budget shall not be necessary for the creation by the common council of new offices and positions pursuant to section 3-21 hereof.</p>	<p>§ 24-10. 새 직위 및 직책 본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직위나 해로운 직책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리고 지명 권한과 예산 부처장의 이러한 새로운 직위의 창설이 이러한 새 직위나 직책 창설이 필요한 곳의 부처, 위원회, 위원회 혹은 다른 시의 적절한 수행과 행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증 없이 창설되지 않는다. 단, 예산 부처장의 인증은 본 헌장 3-21절에 따른 새로운 직위와 직책을 시 의회에 의해 반드시 창설하도록 하지는 않는다.</p>

* 출처: City of Buffalo Charter,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시장에 대한 견제 및 협력

-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들 중 부서장, 위원회의 위원 및 기관장 등에 대하여 의회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3(7_k&l))
-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종료되며,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함(City of Buffalo Charter, 5(4))
- 시장은 늦어도 매년 5월 1일까지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 교서(Annual budget message)와 함께 시의 경영계획 및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City of Buffalo Charter, 19(5))
- 시장 혹은 각 부서장은 집행기관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의회에 대한 견제 및 협력

- 시장은 의회가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 지방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회송된 법안을 2/3 이상의 동의로 재의결 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3(17_e))

○ 감사부(Department of Audit and Control)에 의한 통제

- 감사관(comptroller)은 시의 모든 관료 및 부서와 위원회 등의 회계를 감사하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감독함(City of Buffalo Charter, 7(4_1))
- 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과반 이상이 시에 의해 임명되었거나 재정의 50%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7(4_2))
- 감사관은 시의 모든 관료, 부서, 위원회 등의 활동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7(4_4))

- 감사관은 매 2년마다 의회 직원의 성과 감사를 위하여 독립된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7(4_5))
 - 최종보고서 제출 전 감사관은 감사보고서 초안을 의회 의장, 각 부서 및 기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장 등은 보고서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문제 해결방안의 실행계획 등을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함. 이러한 답변 내용 전체는 최종 보고서에 포함됨(City of Buffalo Charter, 7(7))
 - 최종 보고서는 대중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회와 시 서기에 의해 보관됨(City of Buffalo Charter, 7(8))
- 윤리위원회(Board of Ethics)에 의한 통제
- 윤리위원회는 시 서기(city clerk)와 법무부 부서장(Corporation Counsel) 및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 5인의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됨(City of Buffalo Charter, 12(19))
 - 시의 관료 및 직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시장과 의회에 윤리규정의 수정에 대한 제안을 할 의무를 가짐(City of Buffalo Charter, 12(19)).
 - 윤리위원회는 모든 시 공무원이 제출하는 재정공개 성명을 보관하고 검토함(City of Buffalo Charter, 12(19))
 - 윤리위원회의 서류검토 결과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통보 후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12(24_A))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 후 윤리위원회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정직 혹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행위를 제안할 수 있음(City of Buffalo Charter, 12(25))

〈표 4-18〉 기관 간 관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ity of Buffalo Charter〉 § 3-7. Powers of the Common Council. The common council shall have the power: (k) to appoint local officers and to confirm appointments of local officers as specified within this charter. (l) to appoint a city clerk, a deputy city clerk, a deputy city clerk of birth records, and other staff to the common council as deemed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common council, provided that, until January 1, 2006, such other staff to the common council shall be limited in number to 37.</p>	<p>§ 3-7.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k) 지방 공무원을 선임하고 본 헌장에 명시된 지방 공무원의 선임을 확인 (l) 시 서기, 시의 대리 서기, 출생 기록에 대한 시의 대리 서기 및 다른 직원을 시의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바에 따라 선임. 단, 200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시 이외에 대한 다른 직원들은 37명으로 제한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5-4. Reconfirmation of Mayoral Appointments. All mayoral appointments of department heads and members of boards, agencies and commissions under this charter and ordinances of the city of Buffalo, or under any general, special or local law, which appointments are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shall terminate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general, special or local law herein, at the termination of the elected term of the mayor; and shall require re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Reconfirmation shall be by majority or two-thirds vote of the council consistent with the number of votes needed for original confirmation under the law or ordinance providing for appointment.</p>	<p>§ 5-4. 시장 임명의 재확인 그 임명은 시의회의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부처의 모든 시장 임명 및 위원회의 장과 구성원, 본 헌장과 버팔로시 조례 혹은 일반, 특별 혹은 지방법에 따른 대리인 및 위원회는 일반, 특별 혹은 지방법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시장 선출 임기 종결 시에 종결된다. 그리고 시의회의 재확인을 요한다. 재확인은 선임을 위한 법이나 조례에 따른 원래 확인을 위해 필요한 투표수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과반수 혹은 이분의 삼으로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19-5. The Annual Management Plan and Report. The Mayor shall submit to the common council with the annual budget message, not later than the first day of May each year an annual management plan and report. The annual management plan and report shall address the objectives and accomplishments of each department of city government and shall consist of: (a) A statement of the department's objectives</p>	<p>§ 19-5. 연간 운영방안 및 보고 시장은 매년 오월 일일 이전까지 연간 운영방안 및 보고를 연간 예산 메시지와 함께 시의회에게 제출한다. 연간 운영방안 및 보고는 시 정부의 각 부처의 목적과 달성을 진술하고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이전 회계 년도의 부처 목적을 위한 진술, 이러한 목적의 각 부처의 달성에 대한 평가 (b)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조치와 함께 회계년도에 해당 부처의 전략적 그리고 행</p>

원문	번역
<p>for the last previous fiscal year, and an evaluation of each department's achievement of those objectives.</p> <p>(b) A statement of strategic and administrative objectives for the department in the ensuing fiscal year with specific action steps to achieve the stated objectives.</p> <p>(c) A list of the names, title and qualifications of all persons appointed to exempt positions in the department during the previous and current fiscal years, with a summary of assignment of powers and duties among them.</p> <p>(d) A forecast of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department for the next fiscal year and the succeeding three years. The forecast shall be updated to reflect changes made in the annual operating budget.</p>	<p>정적 목적의 진술</p> <p>(c) 이전 그리고 현재 회계 년도에 그들 사이의 권한 및 의무의 양도에 대한 요약과 함께 해당 부처내의 직책을 면제하기 위해 선임된 모든 인력의 이름, 직위 및 자격요건의 목록</p> <p>(d) 다음 회계년도 및 향후 삼 년 간 해당 부처의 지출 및 수입의 예측은 연간 운영예산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어야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3-17. Procedure for Adoption and Amending of Local Laws.</p> <p>(e) If the mayor disapproves the local law, the mayor shall return it to the clerk with the objections to it in writing. The clerk shall return the local law and disapproval to the common council at its next regular meeting, when the mayor's objections shall be recorded in the common council journal.</p> <p>(f) The common council may reconsider the local law within thirty days thereafter. If, after reconsideration the local law is repassed by a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voting power of the common council, the local law shall be deemed adopted. The votes shall be taken by ayes and noes, and the names of the council members present and their votes shall be entered in the journal of the common council. Only one vote shall be had upon such reconsideration.</p>	<p>3-17. 지방법의 채택 및 수정 절차</p> <p>(e) 시장이 지방 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이의를 서기에게 반송해야 한다. 서기는 시장의 이의가 시의회 저널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정기 회의에 시의회에게 지방법과 그 불승인을 반송해야 한다.</p> <p>(f) 시의회는 이후 삼십일 이내에 지방법을 재고려해야 한다. 재고려 이후에 지방법이 시의회 총 투표권의 최소 삼분의 이의 투표로 다시 통과되는 경우, 지방법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참석한 의회 구성원들의 이름과 그들의 투표가 시의회 저널에 기입되어야 한다. 하나의 투표만이 이러한 재고려에 허용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7-1. Comptroller. The comptroller shall be the head of the</p>	<p>§ 7-1. 감사관 감사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다. § 7-2. 선거; 임기; 주거 요건</p>

원문	번역
<p>department of audit and control.</p> <p>§ 7-2. Election; Term; Residence Requirement. [Amended 12-26-2001 by L.L. No. 1-2002, effective 1-8-2002]</p> <p>At the general election held in the year 2003 and every fourth year thereafter a comptroller shall be elected by the electors of the entire city for a term of four years. No person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or appointment as successor to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who has not been a resident as defined in section 24-4 of this charter of the city fo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his or her election or appointment.</p>	<p>[2001-12-26에 L.L. 1-2002호로 수정, 2002-8-1 발효]</p> <p>2003년에 개최되는 일반 선거 및 이후 매 사년 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사년의 임기로 전체 시 유권자들에 의해 감사관이 선출된다. 누구도 그의 선출 혹은 선임일 직전 최소 일년 전 본 헌장 24-4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시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경우 감사관의 직을 승계하는 자로 선출 혹은 임명될 자격이 없다.</p>
<p><City of Buffalo Charter></p> <p>§ 7-4. Duties and Powers of Comptroller. [Amended 8-24-2016 by L.L. No. 3-2016]</p> <p>1. The Comptroller shall superintend the fiscal affairs of the city; keep, audit and state all accounts in which the city is interested and keep accurate and proper books showing their condition at all times; examine, audit and settle accounts of all officers, departments, boards commissions and other agencies of the city and certify the amount or balance due thereon; examine and audit the accrual and collection of against the city and all vouchers, and audit the same, if an appropriation is available for the full payment thereof; prescribe such methods of accounting as are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foregoing duties; prepare, draw and sign checks drawn on the accounts of the city or its agencies; designate the depositories of all city moneys; approve as to sufficiency all bonds and undertakings of every kind given to the city; receive, preserve and keep on file in the comptroller's office all contracts, undertakings and vouchers; keep an account between the city and the director of the treasury and therein charge the director with the balance in the treasury when the director came into office and with all moneys</p>	<p>§ 7-4. 감사관의 의무와 권한 [2016-8-24에 L.L. 3-2016호에 의해 수정 됨]</p> <p>1. 감사관은 시의 재무를 관리한다. 이에해 해당 시의 모든 계좌를 유지, 감사 및 진술하고, 언제든지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확하고 적절한 장부를 유지하고, 시의 모든 공무원, 부처,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대리인의 계좌를 검토, 감사 및 조정하고, 이에 대한 금액이나 잔고를 입증하며, 모든 바우처와 시에 대한 발생 및 징수를 검토 및 감사, 책정액이 이에 대한 완전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사, 앞선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회계에 대한 방식의 지시, 시나 대리인의 계좌에 대한 수표의 준비, 작성 및 서명, 시에 주어진 모든 종류의 모든 채권과 약속에 대해 충분하다는 승인, 감사관직에서 모든 계약, 서약 및 바우처의 수령, 보관 및 파일로 보관, 시와 국고장 사이의 회계 기록 및 이사가 직위에 오를 때에 국고에 잔고를 이사에 게 부과한 내용 및 이사가 수령한 모든 금액과 각 회계 연도 말에 남은 그리고 조정된 계좌에 이사가 지급하고 그에게 발행된 이사에 대한 신용거래의 기록이 해당된다.</p> <p>2. 감사관은 그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시 공무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그들의 수입의 최소 오십 퍼센트를 취하는 모든 대리인 및 기타 기관들의 재무 및 성과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 이는 시로부터 혹은 시의 권한에 따른 할</p>

원문	번역
<p>received by the director and credit the director with checks drawn on and paid by the director which accounts shall be balanced and settled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p> <p>2. The comptroller shall have the power to conduct financial and performance audits of all agencies and other entities a majority of whose members are appointed by city officials or that derive at least fifty percent of their revenue, including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or utilities, from the city or from allocations under the authority of the city. As a condition of the payment of any fund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city, such agency or entity shall be required to agree to accept such audits. As a condition of any agreement for the payment of fund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city to any agency or entity on a grant or for goods or services, such agency or entity shall agree to accept audit by the comptroller of the performance of the terms of such agreement.</p> <p>4. The comptroller shall have the power to conduct performance audits of all bureaus, offices, departments, boards, commissions, activities, functions, programs, agencies and other entities or services of the city (including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Section) to determine whether their activities and programs are: (i)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 and regulation; and (ii) conducted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accomplish their intended objectives. In addition to such audits as the comptroller may conduct with his or her own staff, the comptroller shall engage an independent consultant to conduct at least two such performance audits each year. The comptroller shall request, the mayor shall recommend, and the council shall appropriate sufficient funds for such audits.</p> <p>5. The comptroller may engage an independent consultant to conduct an audit of the</p>	<p>당분으로부터의 물품, 서비스, 시설 혹은 공공 설비의 제공을 포함한다. 시 당국에 의한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지급의 조건으로 이러한 대리인이나 기관은 이와 같은 감사를 승인하도록 동의하도록 요청 받는다. 시의 권한에 의하거나 시의 권한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리인이나 기관에 대한 지급을 위한 동의의 조건으로 이러한 대리인이나 기관은 감사관이 이와 같은 동의의 조건 수행에 대한 감사를 승인하도록 동의한다.</p> <p>4. 감사관은 모든 지국, 사무소, 부서, 위원회, 위원회, 활동, 기능, 프로그램, 대리인 및 기타 시의 서비스 (본 절의 2항에 명시된 내용 포함) 활동과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행 권한을 갖는다: (i)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해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ii) 의도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지. 감사관이 자신의 직원과 수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감사에 더해서, 감사관은 매 년 최소 두 번의 이와 같은 감사 수행을 하는 독립적인 자문을 고용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러한 감사를 위한 기금을 요청하고, 시장은 이를 권고하고 의회는 이를 충분하고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p> <p>5. 감사관은 매 이 년 마다 의회 직원의 수행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 자문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 보고의 발행 이전에, 감사관은 본 헌장 7-7절에 따라 응답하기 위해 의회의 장으로 간주되는 의회의 대표에게 최종 초안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러한 감사를 위한 기금을 요청하고, 시장은 이를 권고하고 의회는 이를 충분하고 적절하도록 해야 한다.</p>

원문	번역
<p>performance of the council staff every two years. Before issuing such audit report, the comptroller shall furnish a final draft to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who shall be deemed the head of the council for purpose of responding pursuant to Section 7-7 of this charter. The comptroller shall request, the mayor shall recommend, and the council shall appropriate sufficient funds for such audit.</p>	
<p><City of Buffalo Charter> § 7-7. Response to Audits. Before issuing a final audit report, the comptroller shall furnish a final draft of each audit report to the head of the department, agency or other entity audited for review and comment. Such person must respond in writing specifying agreement with or reasons for disagreement with the report, or any part thereof, and plans for implementing solutions to identified problems and a time table for doing so. The response must be forwarded to the comptroller within the time specified by the comptroller, provided that such time shall not be less than thirty days. The comptroller shall include the full response in the comptroller's final report.</p> <p>§ 7-8. Audit Reports. Each audit shall result in a final written report and shall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filed with the council and the city clerk. The comptroller shall maintain a copy for the comptroller's permanent record. The report shall comport with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for such reports and shall include the comptroller's opinion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p>	<p>§ 7-7. 감사에 대한 답변 최종 감사 보고를 발행하기 전, 감사관은 각 감사 보고의 최종 초안을 부처 장이나 대리인 혹은 기타 감사를 받는 기관에게 검토 및 의견제시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서면으로 해당 보고서나 그 일부에 대한 동의 혹은 비동의의 이유를 명시하여 그리고 식별된 문제에 대한 해결 실행 및 이렇게 하기 위한 시간표와 함께 응답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응답은 감사관이 명시한 시간 내에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나, 단, 이러한 시간은 삼십일을 넘을 수 없다. 감사관은 감사관의 최종 보고서에 완전한 답변을 포함해야 한다.</p> <p>§ 7-8. 감사보고서 각 감사는 최종 서면 보고를 내고 이를 공중에 공개하며 의회와 시 서기에게 제출한다. 감사관은 감사관의 영구적인 기록을 위해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보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감사관의 의견,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12-19. Establishment. [Amended 12-26-1990, effective 12-27-1990] The Board of Ethics shall have seven members, one of whom shall be the City Clerk and one of</p>	<p>§ 12-19. 설립 [1990-12-26 수정, 1990-12-27 발효] 윤리 위원회에는 일곱 명의 구성원이 있고 그 중 한 명은 시 서기이며, 한 명은 법인 자문이고 두 명은 직권으로 하며 완전한 투표권을 갖</p>

원문	번역
<p>whom shall be the Corporation Counsel, both of whom shall serve ex officio and possess full voting rights. The remaining fiv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Mayor upon nomination by the nominating committee for the Board of Ethics and subject to confirmation by the Common Council. The Mayor shall forward his selections to the Council within 45 days of the receipt of nominations. In the event that the Mayor fails to act within the forty-five-day period, the Council shall act on the nominations as if they had been submitted to the Council by the Mayor. If the Council has not disapproved an appointment within 45 days after receipt of notice of appointment by the Mayor, the appointment shall be deemed confirmed. In the event that the Mayor or Council shall disapprove a nominee,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nominate another person. No elected City officer shall be eligible to serve on the Board. For the first Board appointed under this provision, 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nominate one member each for terms expiring respectively at the end of that and each of the following years. Thereafter, a member shall be appointed for a five-year term. In the event of any other vacancy, a member shall be appointed for the balance of such term. At its first meeting each year, the Board shall elect its own Chair for that year.</p>	<p>는다. 남은 다섯 명의 구성원들은 윤리위원회를 위한 지명 위원회의 지명으로 그리고 시의회에 의한 확인을 조건으로 시장에 의해 선임된다. 시장은 지명 수령 이후 45일 내에 의회에 그의 선택을 전달한다. 시장이 사십오일의 기간 내에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의회는 시장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것과 같이 지명된 것으로 행위한다. 의회가 시장에 의한 지명 고지의 수령 이후 45일 이내에 선임을 불승인하지 않는 경우, 선임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시장이나 의회가 지명인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지명 위원회는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선출된 시 공무원은 위원회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선임된 첫 위원회에 있어서 지정 위원회는 해당년도 및 향후의 각 년도 말에 각각 기한이 만료되는 하나의 구성원 각각을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은 오 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다른 공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한 구성원이 선임된다. 매년 첫번째 회의에서 위원회는 해당 년도에 대한 의장을 선임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12-24. Review of complaints. [Amended 12-26-1990, effective 12-27-1990] A. If a reporting person has filed a statement which reveals a possible violation of this Code of Ethics or the Board of Ethics receives a written complaint alleging such a violation or if the Board of Ethics determines on its own initiative to investigate a possible violation, the Board shall notify the reporting person in writing, describe the possible or alleged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s and provide the</p>	<p>§ 12-24. 민원 검토 [1990012-26 수정. 1990-12-27 발효] A. 보고자가 윤리 강령의 위반 가능성을 폭로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윤리 위원회가 이러한 위반을 주장하는 서면 민원을 수령하는 경우 혹은 윤리 위원회가 스스로 개시하여 가능한 위반의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보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고 주장된 법 위반이나 가능성으로 언급된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명시하는 서면 응답을 제출하는 십오일의 기간을 해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윤리 위원회가 이후 추가적인 질의가 정당화되도록 결정하는 경우 그</p>

원문	번역
<p>person with a fifteen-day period in which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setting forth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ctivity cited as a possible or alleged violation of law. If the Board of Ethics thereafter makes a determination that further inquiry is justified, it shall give the reporting person an opportunity to be heard. The Board of Ethics shall also inform the reporting individual of its rules regarding the conduct of adjudicatory proceedings and appeals and the due process procedural mechanisms available to such individual. If the Board of Ethics determines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 that there is no violation or that any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violation has been rectified, it shall so advise the reporting person and the complainant, if any. All of the foregoing proceedings shall be confidential.</p>	<p>는 보고자에게 공청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또한 심판 절차의 수행과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개인에게 가능한 적법 절차 메커니즘에 대한 규칙을 보고자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윤리위원회가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든 이익충돌의 잠정적인 가능성이나 위반이 없다고 보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보고자와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앞선 절차는 전부 기밀로 한다.</p>
<p><City of Buffalo Charter> § 12-25. Recommend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fter a hear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New York 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subject to § 75 of the New York Civil Service Law and any applicabl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e Board may recommend appropriate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to the officer or body authorized to impose such sanctions upon an officer or employee found guilty of violation of this code. The Board shall conduct and complete the hearing with reasonable promptness.</p>	<p>§ 12-25. 징계 권고 뉴욕주 행정절차법 3조, 뉴욕주 공무원법 § 75 및 단체교섭 협정에 따른 공판 이후에 위원회는 고용의 중단이나 종결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를 본 법의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이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기간내에 공판을 수행 및 완료해야 한다.</p>

4. 위원회형: 오시닝 타운(Town of Ossining)

1) 역사적 배경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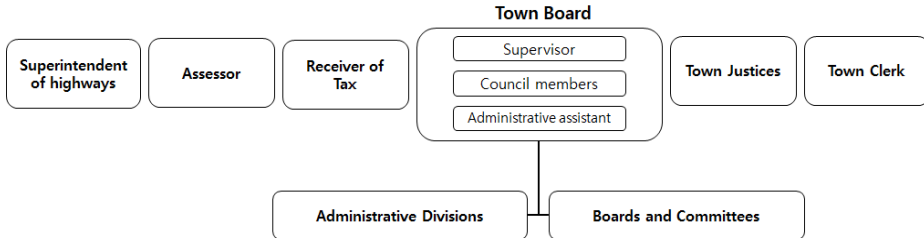
□ 역사적 배경

- 오시닝 타운은 뉴욕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에 위치한 타운으로, 2010년 인구조사 기준 37,674명 규모의 소도시임
 - 총 면적 40.4km²이며, 인구밀도는 1,205.6/km²로 높지 않으나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임
 - 오시닝 타운의 인구분포는 백인 70.26%로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분포는 13.0%, 중간연령은 37세로 비교적 젊은 지역임
 - 가구 평균 소득은 \$65,485이며, 최고등급 보안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임

□ 기관구성 체계도

- 오시닝 타운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4-9>와 같으며, 위원회형 정부형태를 취함
- 오시닝 타운은 뉴욕 주의 타운 분류 중 첫 번째 유형(First class Town)에 속하며, 지역의 유권자들은 타운 관리자(supervisor)와 4명의 의원(council persons), 타운 서기(town clerk), 타운 판사(town justices) 2명, 도로 관리국장(highway superintendent) 및 세금 징수관(receiver of tax)을 선출함(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0)
- 오시닝 타운은 타운 관리자와 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타운 위원회(town board)와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7개 위원회(boards and committees), 11개 부서로 구성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검색일: 2019.07.31.; 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0(1))

〈그림 4-9〉 Town of Ossining(NY)의 기관구성 체계도



- 오시닝 타운은 타운 법령(Town code)를 비롯하여, 뉴욕 주 헌법과 지방 자치법(Municipal Home Rule) 및 타운 일반법의 적용을 받음(Local Government Handbook)
- 타운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가장 제한된 자치권한을 가짐 (Local Government Handbook)
- 타운 위원회는 사실상 타운에 부여된 자치 권한 모두를 갖고 있으며 (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0(1)),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함. 시장-의회형 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강력한 집행 기관(executive branch)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Local Government Handbook)

〈표 4-19〉 Town of Ossining의 기관구성 체계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0 Town officers 1. (a) Every town of the first class shall have a supervisor, four town council members, unless the number of council members shall have been increased to six or decreased to two as provided by this chapter, a town clerk, two town justices, a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one assessor, a receiver of taxes and</p>	<p>20절 타운 공무원 1. (a) 모든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은 의원의 수가 본 장에 의해 여섯 명으로 증가되거나 두 명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관리자, 네 명의 타운 의원을 가지고, 타운 서기, 두 명의 타운 판사, 한 명의 도로 관리 국장, 한 명의 사정관, 한 명의 세금 징수 및 평가관, 타운 위원회가 타운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만큼의 타운 경찰관 및 다른 직원들을 둔다. 이와</p>

원문	번역
<p>assessments, as many town police officers and such other employees as the town board may determine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town. The supervisor, town counsel members, town clerk, town justices,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and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in every such town shall be elective. All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in such a town shall be appointed by the town boar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In any town in which a town police department has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law, or which town is a part of a county police district, the town board may appoint not more than four civil officers who shall possess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constables in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only, and shall be paid no salary by the town board but shall be entitled to collect the statutory fees allowed by law in such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The clerk of the court of a town shall be employed and discharged from employment only upon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town justice or justices.</p>	<p>같은 모든 타운에 관리자, 타운 자문 구성원, 타운 서기, 타운 판사, 타운 도로 관리 국장 및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타운의 모든 다른 공무원과 직원들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타운위원회에 의해 선임된다. 타운 경찰 부처가 법에 따라 설립된 타운 혹은 카운티 경찰국의 일부인 타운의 경우, 타운위원회는 민사소송 및 절차에 한하여 순경의 모든 권력과 의무를 가지는 네 명 이하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타운 위원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민사소송 및 절차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정 비용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타운 법원 서기는 타운 판사(들)의 자문과 동의에 따라서만 고용되고 해임된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60 Town board constituted 1. In every town the supervisor and the town councilmen shall constitute the town board and shall be vested with all the powers of such a town and shall possess and exercise all the powers and be subject to all the duties now or hereafter imposed by law upon town boards and town boards of health within such towns; but it is not intended to extend the power of said boards or officers within the limits of any incorporated village or city, or in any manner to abridge or interfere with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officers of any such village or city within its corporate limi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p>	<p>60절 타운 위원회 구성 1. 모든 타운에서 관리자와 타운 지방의회의원은 타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타운에서 모든 권력을 기득하며,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현재와 미래에 타운위원회와 해당 타운 내의 보건 타운위원회에 법으로 부과되는 모든 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언급한 이사회나 공무원의 권력을 설립된 마을이나 시의 한도 내에서 더 확장하거나 이러한 마을이나 시에서 그의 설립 한도 내에서의 공무원의 권력과 권한을 축약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의도가 없다. 단, 법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 출처: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2)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 타운 위원회(Town Board)의 구성 및 역할

○ 관리자(supervisor)의 선임 및 해임방식

- 타운 관리자는 타운의 유권자들에 의해 2년 임기로 선출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 타운 관리자를 포함한 타운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4년 혹은 2년으로 조정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4 & 24-A)
- 타운 관리자를 포함한 타운의 공무원은 직무상 직권남용, 잘못된 행정행위, 불법행위 및 배임 등의 이유로 뉴욕 주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Public Officers_section 36)

○ 관리자의 주요 권한 및 역할(Local Government Handbook)

- 회계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며, 타운의 자금 관리
- 자금의 지출
- 모든 자금을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장부 유지
- 요구되는 보고서들의 작성
- 고정 급여 및 기타 청구 금액의 지불
- 타운 위원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타운 자산의 임대, 판매 및 이전
- 타운 위원회 회의의 주재(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3)

○ 의원(council person)의 선임 및 해임방식

- 오시닝 타운의 의원들은 타운의 유권자들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 타운의 공무원은 직무상 직권남용, 잘못된 행정행위, 불법행위 및 배임 등의 이유로 뉴욕 주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의해 해임될 수 있음 (Consolidated Laws_Public Officers_section 36)

- 타운 위원회(town board)의 주요 권한 및 역할
 - 오시닝 타운의 타운 위원회는 타운 경계 내의 비법인지역(unincorporated area: Villages of Ossining과 Briarcliff를 제외한 지역)을 관할하며, 관할지역에 대하여 경찰,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가로등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 타운 위원회는 타운 내 두 빌리지를 포함한 지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자, 타운 서기, 세금징수관 및 사정관의 행정행위를 감독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 주 정부 일반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타운 위원회는 타운의 자산과 타운 정부 및 타운의 사무 등에 관한 자치 법률을 입법, 개정, 대체할 권한을 가짐(Municipal Home Rule, section 10(d))
 - 타운 위원회는 타운의 예산을 관리하고 타운의 자산의 획득 및 이전에 관한 권한을 가짐(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4(1&2&3))
 -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관료 및 직원의 임명권한은 타운 위원회가 가짐 ((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0(1_a))
 - 타운 위원회는 타운 정부 내 보직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로 적절한 후보자를 공석에 임명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64(5))
 - 이밖에 타운 위원회는 계약의 관리, 도로 및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공적 기금의 운용 등 일반법에서 타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표 4-20〉 기관 구성방식 및 역할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4 Terms of office All elective officers other than town councilmen, town justices, receivers of taxes and assessors shall hold their respective offices for two years. The terms of office of the town councilmen first elected after this chapter shall</p>	<p>24절 임기 타운 지방의회의원, 타운 판사, 세금 징수 및 평가관 이외의 모든 선직직 공무원은 이 년 동안 그들 각각의 직을 수행한다. 본 장 이후에 처음 선출된 타운 의원과 첫 번째 유형의 마을에서 두 번째 유형의 마을로 유형이 변경된 타운에서 선출된 첫 타운 의원의 임기는 두 명의 타운 지</p>

원문	번역
<p>take effect and of the town councilmen first elected in a town which shall have changed its classification from that of a town of the second class to that of a town of the first class, shall be two years each for two town councilmen and four years each for two town councilmen, and thereafter at each biennial town election there shall be elected two town councilmen for terms of four years each.</p> <p>The terms of office of the town justices and elective receivers of taxes and assessments shall be four years. The term of office of the assessor shall be six years, unless the town retains a board of assessors, in which case the term for each shall be four years with no more than two assessors to be elected at any biennial election after December thirty-first, nineteen hundred eighty-one except when the unexpired balance of term is being filled in which case three assessors may be elected; when appointed, the term of office shall be as provided by section three hundred ten of the real property tax law. The term of each elective officer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election at which he was elected. The town clerk, the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the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the town engineer and the town attorney, whenever appointed, shall hold their respective offices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fter the time of their appointment. All other appointed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hold their respective offices and positions at the pleasure of the town boar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p>	<p>방의회의원 각각에 대해 이 년이고, 두 타운 의원 각각에 대해서 사 년이며, 이후에 그 타운에서 각 이 년마다의 선거에서 각 사 년의 임기로 두 명의 타운 의원을 선출한다.</p> <p>타운 판사와 선거직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의 임기는 사 년으로 한다. 타운이 사정관 위원회에 유보되어 만기 되지 않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세 명의 사정관이 선출될 수 있는 경우에 채워질 수 있는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2년마다의 선거에서 두 명 이상의 사정관이 각 사 년의 임기를 가지게 되는 지 않는 한, 사정관의 임기는 6 년으로 한다. 선임되는 경우 임기는 부동산세법 310절에 따른다. 각 선거직의 임기는 그가 선출된 다음 일월 첫째 날부터 시작한다. 타운 서기, 타운 도로 관리 국장, 세금 징수 및 평가관, 타운 엔지니어 및 타운 변호인은 선임된 때에는 언제든지 그 선임 이후 첫 이 년 뒤의 선거 다음의 일월 첫째 날까지 각 임기를 갖는다. 모든 다른 선임직 공무원 및 직원들은 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각각의 임기와 직위를 타운위원회의 뜻에 따라 갖는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0 Town officers 1. (a) Every town of the first class shall have a supervisor, four town council members, unless the number of council members shall have been increased to six or decreased to two as</p>	<p>20절 타운 공무원 1. (a) 모든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은 의원의 수가 본 장에 의해 여섯 명으로 증가되거나 두 명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관리자, 네 명의 타운 의원을 가지고, 타운 서기, 두 명의 타운 판사, 한 명의 도로 관리 국장, 한 명의 사정관, 한 명의</p>

원문	번역
<p>provided by this chapter, a town clerk, two town justices, a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one assessor, a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as many town police officers and such other employees as the town board may determine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town. The supervisor, town counsel members, town clerk, town justices,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and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in every such town shall be elective. All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in such a town shall be appointed by the town boar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In any town in which a town police department has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law, or which town is a part of a county police district, the town board may appoint not more than four civil officers who shall possess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constables in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only, and shall be paid no salary by the town board but shall be entitled to collect the statutory fees allowed by law in such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The clerk of the court of a town shall be employed and discharged from employment only upon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town justice or justices.</p>	<p>세금 징수 및 평가관, 타운 위원회가 타운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만큼의 타운 경찰관 및 다른 직원들을 둔다. 이와 같은 모든 타운에 관리자, 타운 자문 구성원, 타운 서기, 타운 판사, 타운 도로 관리 국장 및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타운의 모든 다른 공무원과 직원들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타운위원회에 의해 선임된다. 타운 경찰 부처가 법에 따라 설립된 타운 혹은 카운티 경찰국의 일부인 타운의 경우, 타운위원회는 민사소송 및 절차에 한하여 순경의 모든 권력과 의무를 가지는 네 명 이하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타운 위원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민사 소송 및 절차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정 비용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타운 법원 서기는 타운 판사(들)의 자문과 동의에 따라서만 고용되고 해임된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4 Terms of office of elective officer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twenty-four of this chapter or any other general law, and at least one hundred fifty days prior to any biennial town election, the town board of any town may adopt a resolution to provide that the term of office of each and any elective town official thereafter elected shall be four years, and such resolu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town for their approval or disapproval at the next biennial town election. No such resolution shall become effective until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the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p>	<p>24절 선거직 공무원의 임기 1. 본 장의 24절 혹은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어도 2년 마다 타운 선거 이전 150일 전에, 타운의 타운위원회는 각 임기와 이후 선출되는 선거직 타운 공무원이 4년이 되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하고, 이러한 결의를 다음 이년마다의 선거에 그 승인 여부에 대해서 타운의 자격을 갖춘 투표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결의는 이러한 제의에 투표하는 타운의 자격을 갖춘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승인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 이러한 제안의 제출은 이에 대한 청원이 본 장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 과 같이 주민투표를 위해 본 장 7조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제안이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 년 마다의 타운 선거에만 제출되는 경</p>

원문	번역문
<p>town voting on such proposition. The submission of such proposition shall be as provided in article seven of this chapter for a referendum thereunder in like manner as if a petition therefor had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except that such proposition shall be submitted only at a biennial town election as hereinbefore provided. If the town board shall have adopted such a resolution and if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on any such proposition when submitted as herein provided shall be in the affirmative, the terms of office of those town officers included in such proposition and thereafter elected shall be for a period of four years.</p> <p>2. In those towns where the term of office of elected officials has been set at four years pursuant to subdivision one of this section, and at least one hundred fifty days prior to any biennial town election, the town board may adopt a resolution to provide that the term of office of each and any elective town official, whose term of office was changed to four years as provided in subdivision one of this section, thereafter elected shall be two years, and such resolu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town for their approval or disapproval at the next biennial town election. No such resolution shall become effective until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the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town voting on such proposition. The submission of such proposition shall be as provided in article seven of this chapter for a referendum thereunder in like manner as if a petition therefor had been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except that such proposition shall be submitted only at a biennial town election as hereinbefore provided. If the town board shall have adopted such a resolution and if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on</p>	<p>우는 예외로 한다. 타운 위원회가 이러한 결의를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본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출된 때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과반수 득표를 얻는 경우, 이와 같은 제안에 포함된 이러한 타운 공무원과 그 이후에 선출된 공무원의 임기는 사 년으로 한다.</p> <p>2. 선거직 공무원의 임기가 본 절의 하위 분할 중 하나에 따라 사 년인 타운에서 이 년 마다의 타운 선거 이전 적어도 150일 이전에 타운위원회는 그 임기가 본 절의 하위 분할 중 하나에 규정된 사 년으로 변경되는 각 선거직 타운 공무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그 이후 선출되는 공무원의 임기는 이년으로 하고, 이러한 결의는 다음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그 승인 여부를 위해 타운의 적격을 갖춘 투표자들에게 제출된다. 이러한 결의는 이러한 제의에 투표하는 타운의 적격을 갖춘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승인될 때까지 효력이 없다. 이러한 제안의 제출은 이에 대한 청원이 본 장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 과 같이 주민투표를 위해 본 장 7조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제안이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만 제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타운 위원회가 이러한 결의를 채택한 경우, 그리고 본 규정에 의해 제출된 때에 이러한 제안에 대해 과반수 득표를 얻는 경우, 이러한 제안에 포함된 타운 공무원과 이후 선출된 공무원들의 임기는 이년으로 한다.</p>

원문	번역
<p>any such proposition when submitted as herein provided shall be in the affirmative, the terms of office of those town officers included in such proposition and thereafter elected shall be for a period of two years.</p>	
<p><Consolidated Laws_Public Officers> Section 36 Removal of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fficer by court Removal of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fficer by court. Any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fficer, except a justice of the peace, may be removed from office by the supreme court for any misconduct, maladministration, malfeasance or malversation in office. An application for such removal may be made by any citizen resident of such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or by the district attorney of the county in which such town, village or district is located, and shall be made to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held within the judicial department embracing such town, village, improvement district or fire district. Such application shall be made upon notice to such officer of not less than eight days, and a copy of the charges upon which the application will be made must be served with such notice.</p>	<p>36절 법원에 의한 타운, 빌리지, 개선 지구 혹은 화재 지구 공무원의 해임 법원에 의한 타운, 빌리지, 개선 지구 혹은 화재 지구 공무원의 해임. 타운, 빌리지, 개선지구 혹은 화재 지구 공무원은 보안 편사를 제외하고 불법 행위, 행정 실책, 부정행위 또는 부패 정치에 대해 대법원에 의해 해임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신청은 이왕 같은 타운, 빌리지, 개선 지구 혹은 화재 지구의 시민 거주자나 이러한 타운, 빌리지 혹은 지구가 위치한 자치주의 지방 검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타운, 빌리지, 개선지구, 화재 지구를 포괄하는 관할 부처 내의 대법원의 상소부에 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최소 8일의 고지로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본이 이러한 고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63 Presiding officer and rules of procedure The supervisor, when present, shall preside at the meetings of the town board. In the absence of the supervisor, the other members shall designate one of their members to act as temporary chairman. A majority of the board shall constitute a quorum for the transaction of business, but a lesser number may adjourn. The vote upon every question shall be taken by ayes and noes, and the names of the members present and their votes shall be entered in the minutes. Every act, motion or resolution shall</p>	<p>63절 의장 및 절차 규정 현재 관리자는 타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관리자의 부재 시에 다른 구성원들이 임시 의장으로 행위 할 구성원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 과반수는 사업 거래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 하나 이보다 적은 수인 경우 연기할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투표는 가부를 가려야 하고, 참석 구성원의 이름과 그들의 투표가 회의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모든 행위, 동의 혹은 결의는 타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로 채택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절차 규정을 결정할 수 있고, 관리자는 때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 된 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를 돕는</p>

원문	번역
<p>require for its adoption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all the members of the town board. The board may determine the rules of its procedure, and the supervisor may, from time to time, appoint one or more committees, consisting of members of the board, to aid and assist the board 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p>	<p>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10 Gener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d. A town: (1) The preparation, making, confirmation and correction of assessments of real property and the review of such assessments subject to further review by the courts as provided by law,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2) The authorization, making, confirmation and correction of benefit assessments for local improvements,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3) The amendment or supersession in its application to it, of any provision of the town law relating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the town or to other matters in relation to which and to the extent to which it is authorized to adopt local laws by this section, notwithstanding that such provision is a general law, unless the legislature expressly shall have prohibited the adoption of such a local law. Unless authorized by other state statute this subparagraph shall not be deemed to authorize supersession of a state statute relating to (1) a special or improvement district or an improvement area, (2) creation or alteration of areas of taxation, (3) authorization or abolition of mandatory and permissive referendum or (4) town finances as provided in article eight of the town law; provided, however that nothing set forth herein shall preclude the transfer or assignment of functions, powers and duties from one town officer or employee to another</p>	<p>10절 지역법을 채택 및 수정하는 지역 정부의 일반 권력 d. 타운은: (1) 법에 규정된 바와 입법으로 제정된 법에 부합하여 부동산 평가와 법에 따라 법원의 향후 검토대상이 되는 이와 같은 검토의 준비, 작성, 확인 및 시정을 한다. (2) 법에 규정된 바와 입법으로 제정된 법에 부합하여 지역 개선 혜택 평가의 권한, 작성, 확인 및 시정을 한다. (3) 그러한 규정이 일반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으로 이러한 지역 법의 채택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운의 부동산, 업무 혹은 정부에 관련된 타운 법의 규정의 수정 혹은 그 적용 폐지 또는 본 절에 따른 지역 법을 채택할 권한을 받은 범위와 이에 대한 다른 시안들에 대한 수정 혹은 적용 폐지를 한다. 다른 주 법령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본 호는 (1) 특별 혹은 개선지구 또는 개선 지역 (2) 세금 지역의 창설이나 변경 (3) 의무적 그리고 허가적 국민투표의 허가나 폐지 또는 (4) 타운법 8조에 따른 타운 재정과 관련된 주 입법의 폐지를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본 문서에 명시된 내용 중 어떤 것도 한 타운 공무원 혹은 직원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기능, 권력 및 의무의 이전이나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나, 나아가 지역 입법 권력 및 처분은 지역 입법 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p>

원문	번역
<p>town officer or employee, and provided, however, further that the powers of local legislation and appropriation shall be exercised by the local legislative body.</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64 General powers of town boards Subject to law and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town board of every town: 1. Control of town finances. Shall have the general management and control of the finances of the town and shall designate in the manner provided by section ten of the general municipal law the depositaries in which the supervisor, town clerk, tax collector, tax receiver, and trustees of the freeholders and commonalty of a town shall deposit and secure all moneys coming into their hands by virtue of their offices. 2. Acquisition and conveyance of real property. May acquire by lease, purchase,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or by acquisition in the manner provided by the eminent domain procedure law, any lands or rights therein, either within or outside the town boundaries, required for any public purpose, and may, upon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convey or lease real property in the name of the town, which resolution shall be subject to a permissive referendum. If the property or rights be acquired by acquisition, the town board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eminent domain procedure law at once enter into possession of the real property or rights described when the judgment shall have been made and entered, and the town shall thereupon stand charged and responsible for the prompt payment of the amount which may ultimately be awarded. Lands or rights required for a district purpose shall be acquired by the town board in the name of the district, and the cost thereof shall be a charge upon and assessed against such district. Such district lands and rights may be</p>	<p>64절 타운위원회의 일반 권력 법과 본 장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타운의 타운위원회는: 1. 타운 재정 통제. 타운 재정 통제는 타운의 재정의 일반적인 운영과 통제를 가지고, 관리자, 타운 서기, 세금 징수원, 세금 수급자 및 주주의 수탁자 및 타운의 시민이 그의 직 덕분에 수중에 가지게 된 모든 금원을 예치 및 확보하는 보관소에 일반 국내법 10절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정한다. 2.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는 법에 규정된 임대, 구매로 취득되거나 혹은 토지사용권 절차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취득될 수 있고, 공공 목적으로 필요한 타운 내의 토지나 권리는 타운 경계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결의의 채택으로 타운의 명의로 부동산 양도 혹은 임대가 가능하고 이러한 결의는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재산이나 권리를 취득으로 얻은 경우, 타운 위원회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체결된 때에 언급된 부동산이나 권리의 소유가 되는 순간 토지사용권 절차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운은 그 직접적인 결과로 궁극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금액의 즉각적인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부담해야 한다. 지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권리는 해당 지구의 명의로 타운위원회에 의해 취득되어야 하고, 이 비용은 해당 지구에게 부과되고 그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역 토지와 권리는 본 장 198절의 하위분할 12에 규정된 방식으로 판매 혹은 임대될 수 있다. 3. 타운 재산의 경영, 관리 및 통제. 모든 타운 토지, 건물 타운 재산의 관리,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지고 이를 잘 보수하며 화재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5. 공석 타운 사무소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있는 경우, 타운위원회나 그 구성원의 과반수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적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직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임이 이</p>

원문	번역
<p>sold or leased in the manner provided in subdivision twelve of section one hundred ninety-eight of this chapter</p> <p>3. Management, custody and control of town property. Shall have the management, custody and control of all town lands, buildings and property of the town and keep them in good repair and may cause the same to be insured against loss or damage by fire or other hazard.</p> <p>5. Vacancies. Whenever a vacancy shall occur or exist in any town office, the town board or a majority of the members thereof, may appoint a qualified person to fill the vacancy. If the appointment be made to fill a vacancy in an appointive office, the person so appoint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the unexpired term. If the appointment be made to fill a vacancy in an elective office, the person so appointed shall hold office until the commencement of the calendar year next succeeding the first annual election at which the vacancy may be filled. A person, otherwise qualified, who is a member of the town board at the time the vacancy occurs may be appointed to fill the vacancy provided that he shall have resigned prior to such appointment.</p>	<p>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선임된 자는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임기를 갖는다. 선출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선임된 사람은 공석을 채우는 첫 연간 선거 다음 역년의 시작일 까지 임기를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공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타운위원회의 구성원인 사람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임될 수 있으며, 단, 그는 이러한 선임 전에 사직해야 한다.</p>

* 출처: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기관구성 방식 전환 방법

- 뉴욕 주 타운 일반법에서는 타운 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0(1-a))
- 타운 정부는 뉴욕 주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구성원의 수를 변경할 수 있음(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85 & 87)
- 타운의 경우 정부 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규정은 없으며,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뉴욕 주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0(2 &3))

- 입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선출직 직위를 신설 혹은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함(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2))

〈표 4-21〉 기관 구성방식 전환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0 Town officers 1. (a) Every town of the first class shall have a supervisor, four town council members, unless the number of council members shall have been increased to six or decreased to two as provided by this chapter, a town clerk, two town justices, a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one assessor, a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as many town police officers and such other employees as the town board may determine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town. The supervisor, town counsel members, town clerk, town justices,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and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in every such town shall be elective. All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in such a town shall be appointed by the town boar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In any town in which a town police department has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law, or which town is a part of a county police district, the town board may appoint not more than four civil officers who shall possess all the powers and duties of constables in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only, and shall be paid no salary by the town board but shall be entitled to collect the statutory fees allowed by law in such civil actions and proceedings. The clerk of the court of a town shall be employed and discharged from employment only upon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town justice or justices.</p>	<p>20절 타운 공무원 1. (a) 모든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은 의원의 수가 본 장에 의해 여섯 명으로 증가되거나 두 명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관리자, 네 명의 타운 의원을 가지고, 타운 서기, 두 명의 타운 판사, 한 명의 도로 관리 국장, 한 명의 사정관, 한 명의 세금 징수 및 평가관, 타운 위원회가 타운의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만큼의 타운 경찰관 및 다른 직원들을 둔다. 이와 같은 모든 타운에 관리자, 타운 자문 구성원, 타운 서기, 타운 판사, 타운 도로 관리 국장 및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타운의 모든 다른 공무원과 직원들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타운위원회에 의해 선임된다. 타운 경찰 부처가 법에 따라 설립된 타운 혹은 카운티 경찰국의 일부인 타운의 경우, 타운위원회는 민사소송 및 절차에 한하여 순경의 모든 권력과 의무를 가지는 네 명 이하의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고, 타운 위원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민사 소송 및 절차에서 법이 허용하는 법정 비용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타운 법원 서기는 타운 판사(들)의 자문과 동의에 따라서만 고용되고 해임된다.</p>

원문	번역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0 Town officers 2. (a) The town board of every town may establish the office of town attorney or town engineer, or both. If the town board shall so establish the office of town attorney or town engineer, or both, it shall fix the salary of such officer or officers. In addition, the town board of any such town may employ counsel to the town attorney in respect to any particular subject matter, proceeding or litigation, or it may employ such expert engineering service in respect to any particular subject matter, improvement or proceeding, as it may necessarily require. A town of the first class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ppoint such deputies in the offices of the town attorney and town engineer as may be provided by resolution of such board and fix the salaries therefor. A town of the second class having a population of over seventy-five thousand according to the latest federal census or state enumeration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ppoint such deputies in the office of the town attorney as may be provided by resolution of such board and fix the salaries therefor. The terms of such offices shall be indefinite and the appointees thereto shall be removable at the pleasure of the town board. (b) The town board of any town which shall not have established the office of town attorney may employ an attorney to give it such professional service and advice as it may require, and the town board of any town which shall not have established the office of town engineer may employ an engineer to give it such professional service and advice as it may require. 3. (b) The town board of any town of the first class, or any town of the second class having a population of over forty thousand according to</p>	<p>20절 타운 공무원 2. (a) 모든 타운의 타운 위원회는 타운 변호사 혹은 타운 엔지니어 사무소 또는 그 둘 다를 설립할 수 있다. 타운위원회가 이렇게 타운 변호사 혹은 타운 엔지니어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혹은 둘 다를 설립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공무원의 임금을 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타운의 타운위원회는 특정 사안, 절차 혹은 소송에 대해서 타운 변호사를 자문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특정 사안, 개선 혹은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은 타운 변호사와 타운 엔지니어 사무소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이와 같은 의원을 선임하고 그 임금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최신 연방 통계와 주 측정에 따라 75,000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두 번째 유형의 타운은 이러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타운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의원을 선임하고 그 임금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의 임기는 무기한으로 하고, 선임된 자는 타운 위원회의 뜻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b) 타운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타운의 위원회는 필요한 이러한 전문 서비스와 자문 제공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타운 엔지니어 사무소를 설립하지 아니한 타운의 위원회는 필요한 이러한 전문 서비스와 자문 제공을 위해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있다. 3. (b) 최신 연방 통계와 주 측정에 따라 40,000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의 타운 위원회 혹은 두 번째 유형의 타운 위원회는 타운 감독관직을 설립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그의 선임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 이후 1월 1일까지 그 임기를 갖는 타운 감독관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직의 설립 시점 이후 개최되는 첫 2년마다의 선거 뒤 1월 1일에 타운 위원회는 이 년의 임기를 가지는 감독관을 선임한다. 타운 감독관 직이 설립된 타운의 위원회는 이러한 직위를 폐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고, 재임자의 임기 만료 시에 이러한 직이 폐지되고, 그 후임은 선임되지 않는다.</p>

원문	번역
<p>the latest federal census or state enumeration, may adopt a resolution establishing the office of town comptroller and appoint a town comptroller who shall hold office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fter the time of his appointment.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fter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uch office, and biennially thereafter, the town board shall appoint a comptroller who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two years. The town board of any town in which the office of town comptroller shall have been established may adopt a resolution abolishing such office and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incumbent such office shall be abolished and no successor shall be appointed.</p> <p>(c) The town board of any town of the first class may establish the office of deputy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and fix the salary therefor; and the town board of any such town in which such offic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may abolish such offic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deputy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to assist the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The town board of any such town wherein the office of deputy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has been created may also establish one additional office of deputy receiver of taxes and assessments and may fix the salary therefor and prescribe his duties and where such additional office has been established may abolish same.</p> <p>(d) The town board of any town which has established the office of town comptroller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subdivision, may establish the office of deputy comptroller and fix the salary therefor; and the town board of any such town in which such office shall have been established may</p>	<p>(c) 첫 번째 유형의 마을의 타운 위원회는 부 세금 징수 및 평가관직을 만들고 그 임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직이 설립된 타운의 타운 위원회는 이와 같은 직을 폐지할 수 있다.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이 그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력하는 것이 부 세금 징수 및 평가관의 의무이다. 부 세금 징수 및 평가관직이 만들어진 타운의 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추가적인 부 세금 징수 및 평가관직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임금과 의무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직이 설립되는 경우 이를 폐지할 수도 있다.</p> <p>(d) 본 하위분할 (b)항의 규정에 따라 타운 감독관직을 설정하는 타운 위원회는 준 감독관직을 설정하고 그 임금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직이 설정된 타운 위원회는 그 직을 폐지할 수 있다. 감독관이 그의 의무 이행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부 감독관의 의무이고, 감독관이 공석이거나 다른 이유로 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부 감독관은 그 감독관이 공석이거나 그의 의무 이행을 달리 할 수 없는 한 그 감독관의 모든 의무 이행을 위한 완전한 권한과 힘을 갖는다.</p> <p>(e) 타운 위원회는 구매 이사직을 설립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그의 선임 이후 열리는 첫 이 년마다의 타운 선거 이후 1월 1일까지 그 임기를 가지는 구매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직의 설립 이후 개최되는 첫 이 년마다의 타운 선거 이후 1월 1일과 그 이후 매 이년마다 타운 위원회는 이년의 임기를 가지는 구매 이사를 선임한다. 타운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구매 이사의 의무는 타운 위원회나 감독관의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타운 공무원, 임원 혹은 직원의 의무와 통합될 수 있다. 구매 이사직이 설립된 타운 위원회는 이러한 직을 폐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고, 재임자의 임기 만료 시에, 이와 같은 직은 폐지되고, 그 후임은 선임되지 않는다.</p>

원문	번역
<p>abolish such offic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deputy comptroller to assist the comptroller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nd if and when the comptroller is absent or is unable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for any other reason, such deputy shall hav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perform all the duties of the comptroller so long as such officer is either absent or otherwise incapable of performing his duties.</p> <p>(e) The town board of any town may adopt a resolution establishing the office of director of purchasing and appoint a director of purchasing who shall hold office until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fter the time of his appointment.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fter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such office, and biennially thereafter, the town board shall appoint a director of purchasing who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two years. If a town board so determines, the duties of director of purchasing may be combined with the duties of any other town officer, official or employee except members of the town board or comptroller. The town board of any town in which the office of director of purchasing shall have been established may adopt a resolution abolishing such office and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incumbent such office shall be abolished and no successor shall be appointed.</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85 Ward system for election of councilmen 1. Whenever a proposition shall have been adopted in a town of the first cla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ard system and the election thereafter of one councilman from each ward, the board of elections of the county in which such town is situate shall divide the town into four wards and fix the boundaries</p>	<p>85절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구의 시스템 1. 구 시스템 설립을 위해 첫 번째 유형의 마을에 제의와 그 이후 각 구에서 한 명의 의회의원 선거가 채택된 때에는, 선거 위원회가 타운을 여섯 개 구로 나누고 그 경계를 정하며 의회의원 수를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증가하라는 제의가 채택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타운이 위치한 카운티의 선거 위원회는 타운을 네 구로 분할하고, 그 경계를 정한다. 타운을 구로 나눔</p>

원문	번역
<p>thereof, unless a proposition shall have been adop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ncilmen from four to six, in which instance, the board of elections shall divide the town into six wards and fix the boundaries thereof. In so dividing the town into wards, no town election district shall be divided and no election district thereafter created under the election law shall contain parts of two or more wards. So far as possible the division shall be so made that the number of voters in each ward shall be approximately equal. When the board of elections shall have finally determined the boundaries of the wards, they shall cause a map of the town to be prepared showing in detail the location of each ward and the boundaries thereof. The original map so made shall be filed in the office of the town clerk and copies thereof shall be filed in the offices of the county clerk and the board of elections of the county. The ward system shall be deemed established after such filing is complete. After a ward system shall have been so established, the term of office of every town councilman shall terminate on the thirty-first day of December next succeeding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not less than one hundred twenty days after the establishment of such ward system, and at such biennial town election, and every biennial town election thereafter, one resident elector of each ward shall be elected as councilman therefrom for a term of two years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such election.</p> <p>2. The ward system may be abolished upon the adoption of a proposition therefor at any special or biennial town election. At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t least one hundred twen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a proposition to abolish the ward system for election of councilmen, the electors of the town shall elect</p>	<p>에 있어서, 타운 선거 구역이 나누어서는 안 되고, 선거법에 따라 이후에 창설된 선거구는 두 개 이상의 구의 부분을 포함한다. 가능한 한, 이렇게 분할을 할 때 각 구의 투표자 수는 대략 같아야 한다. 선거위원회가 구의 경계를 최종 결정하는 경우, 각 구의 위치와 그 경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작성된 타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본 지도는 타운 서기의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 사본은 타운 서기의 사무소와 카운티 선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구 제도는 이러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설립되는 것으로 본다. 구 제도가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모든 타운 의회위원의 임기는 이러한 구제도 설립 이후 120일 미만에 개최되는 이 년 마다의 첫 타운 선거 이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이 후 매 이 년마다의 타운 선거와 각 구에서 한 명의 유권자는 이러한 선거 이후 1월 1일에 시작해서 2년의 임기로 의회위원으로 선출된다.</p> <p>2. 구 제도는 특별 또는 이 년 마다의 타운 선거 이후에 제의 채택으로 폐지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위원 선거를 위한 구 제도 폐지를 위한 제의 채택 이후 최소 120 일 후에 개최되는 첫 이 년 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타운 유권자들은 각 이 년의 임기로 타운 총 지방의회위원 수의 절반을 선출하고, 사 년의 임기로 타운 총 지방의회위원 수의 절반을 선출한다. 이후 개최되는 각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각 사 년의 임기로 타운 지방의회위원 총 수의 절반을 선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지방의회위원의 임기는 그 선출일 이후 1월 1일에 시작한다.</p>

원문	번역
<p>one-half of the total number of town councilmen for the term of two years each and one-half of the total number of town councilmen for the term of four years each. At each biennial town election held thereafter there shall be elected one-half of the total number of town councilmen for the term of four years each. The terms of all such councilmen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date of their election.</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87 Increase or decrease of number of councilmen 1. Whenever a proposition shall have been adopted in a town of the first class which shall not have established the ward system,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ncilmen from four to six, party nominations for town councilmen may be made and designating petitions filed and four town councilmen shall be elected at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t least one hundred fifty days thereafter, three for a term of four years each and one for a term of two years and thereafter at each biennial town election in such town there shall be elected three town councilmen for the term of four years each, in the same manner as other elective town officers in such town. The term of office of each such councilman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election at which he was elected.</p> <p>2. Whenever a proposition shall have been adopted in a town of the first class which shall not have established the ward system,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ncilmen from two to four, party nominations for town councilmen may be made and designating petitions filed and three town councilmen shall be elected at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t least one hundred fifty days thereafter, two for terms of four years each and one for a term of two years, and thereafter at each biennial town</p>	<p>87절 지방의회의원 수의 증감</p> <p>1.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증가하는 구 시스템을 설립하지 않은 첫 번째 유형의 마을에 제의가 채택되지 않은 때에는 타운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당사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천 청원이 제출되며 그 이후 최소 150일에 첫 번째 이년마다의 선거에서 네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고, 사 년의 임기로 세 명, 이 년의 임기로 한 명이 선출된다. 그 이후 이러한 타운에서 각 이년마다의 선거에서 사 년의 임기로 세 명의 타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타운에서 다른 선출직 타운 공무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 각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가 선출된 다음 선거 1월 1일에 시작된다.</p> <p>2. 구 제도를 설립하지 않은 첫 번째 유형의 마을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두 명에서 네 명으로 증가하는 제의가 채택된 경우, 타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당사자 지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천 청원이 제출되며 그 이후 최소 150일에 첫 번째 이년마다의 선거에서 세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고, 사 년의 임기로 두 명, 이 년의 임기로 한 명이 선출된다. 그 이후 이러한 타운에서 각 이년마다의 선거에서 사 년의 임기로 두 명의 타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타운에서 다른 선출직 타운 공무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 이와 같은 타운 의회의원 각각의 임기는 선출된 선거 다음 1월 1일에 시작된다.</p> <p>3.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려는 제의가 첫 번째 유형의 마을에서 채택되는 경우에, 이러한 제의 채택 이후 최소 150일에 개최되는 첫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타운</p>

원문	번역
<p>election in such town, there shall be elected two town councilmen for terms of four years each, in the same manner as other elective town officers in such town. The term of office of each such town councilman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election at which he was elected.</p> <p>3. Whenever a proposition shall have been adopted in a town of the first class to reduce the number of councilmen from four to two, no town councilmen shall be elected at the first biennial town election held at least one hundred fifty days after the adoption of such proposition. Party nominations for town councilmen may be made and designating petitions filed and two town councilmen shall be elected at the biennial town election next succeeding the biennial town election at which no town councilmen are elected, one for a term of two years and one for a term of four years and thereafter at each biennial town election in such town there shall be elected one town councilman for a term of four years, in the same manner as other elective town officers in such town. The term of office of each such councilman shall begin on the first day of January next succeeding the election at which he was elected.</p>	<p>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다. 타운 지방의회의원 당사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총천 청원이 제출될 수 있으며, 두 타운 지방의회의원이 타운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 다음의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선출되고, 이년의 임기로 한 명, 사년의 임기로 한 명 선출되며 그 이후 매 이년마다의 타운 선거에서 사년의 임기로 타운 의회의원 한 명이 선출되며 이는 해당 타운에서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각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가 선출된 다음 선거 1월 1일에 시작된다.</p>
<p><(Municipal Home Rule) Section 23</p> <p>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or under authority of a state statute, a local law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ferendum if it:</p> <p>a. In the case of a city, provides a new charter for such city.</p> <p>b.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changes the membership or composition of the legislative body or increases or decreases the number of votes which any member is entitled to cast.</p> <p>c. Changes the veto power of the elective chief executive officer.</p> <p>d. Changes the law of succession to the offic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a county</p>	<p>23절</p> <p>2. 주 법령에 의해 달리 명시되거나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 법은 다음의 경우에 의무적인 국민 투표를 조건으로 한다:</p> <p>a. 도시의 경우 이러한 도시의 새로운 헌장을 제시하는 경우.</p> <p>b. 도시, 마을 혹은 촌의 경우, 입법기관의 회원 자격 혹은 구성의 변경이나 구성원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수의 증감.</p> <p>c. 선출된 최고 집행위원의 거절권 변경.</p> <p>d. 자치주에서 선출된 자치주 최고 집행임원직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 혹은 감사위원회에 장이 없는 경우, 도시나 촌의 시장 혹은 마을의 관리자에 대한 승계법의 변경.</p> <p>e. 선거직의 철폐 혹은 선거직의 지명, 선출 혹은 해임 방식 또는 선거직 임기 변경 또는 그의</p>

원문	번역문
<p>elected on a county-wide basis or if there be non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the mayor of a city or village or the supervisor of a town.</p> <p>e. Abolishes an elective office, or changes the method of nominating, electing or removing an elective officer, or changes the term of an elective office, or reduces the salary of an elective officer during his term of office.</p> <p>f. Abolishes, transfers or curtails any power of an elective officer.</p> <p>g. Creates a new elective office.</p> <p>h.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the boundaries of wards, or other districts, from which members of th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chosen as such in such city to represent the city, are elected.</p> <p>i.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public utility franchises.</p> <p>j. In the case of a city, reduces the salary or compensation of a city officer or employee, increases his hours of employment or changes his working conditions if such salary, compensation, hours or conditions have been fixed by a state statute and approved by the vote of the qualified electors of the city. No provision effecting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contained in any local law or proposed new charter shall become effective unless the definite question with respect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shall be submitted separately from any provisions not relating to such reductions, increases or changes and approv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qualified electors voting thereon.</p> <p>k. In the case of a city, changes a provision of law relating to the membership or terms of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of the city.</p>	<p>임기 중 선거직 임금의 축소</p> <p>f. 선거직 권한의 철폐, 이전 혹은 축소</p> <p>g. 새로운 선거직 창설</p> <p>h. 도시의 경우, 자치주 감독이사회들의 구성원들이 대표하기로 선택되어 선출된 해당 도시의 구나 다른 지역의 경계 변경</p> <p>i. 공공사업 독점 사업권과 관련된 법률 조항 변경</p> <p>j. 도시의 경우, 이러한 임금, 보수, 시간 혹은 조건들이 주 법안으로 고정되고 해당 도시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는 경우, 시 공무원이나 직원 임금이나 보수의 감액, 직원 근무 시간 증대 혹은 그의 근무 조건 지역법이나 제안된 새로운 선장에 포함된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항도 이러한 감액, 증대 혹은 변경에 대한 확고한 질의가 이러한 감액, 증대나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조항과 별도로 제출되고 적격을 갖춘 유권자의 이에 대한 과반수의 긍정 투표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지 않다.</p> <p>k. 도시의 경우 회원자격이나 해당 도시 공무원 위원회실 조건에 대한 법률 조항 변경</p>

* 출처: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3)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타운 카운티 공무원에 대한 관리
 - 타운 위원회는 타운 내 두 빌리지를 포함한 지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자, 타운 서기, 세금징수관 및 사정관의 행정행위를 감독함(오시닝 타운 홈페이지)
- 윤리위원회를 통한 통제
 - 오시닝 타운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타운위원회가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됨(Town of Ossining Code 20(7))
 -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면요청에 대하여 권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하며, 타운 공무원의 윤리강령 위반 제보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Town of Ossining Code 20(8_A&B))
 -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타운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Town of Ossining Code 20(8_C))
 - 윤리강령을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타운의 관료 및 직원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권고, 정직, 해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Town of Ossining Code 20(8_D))
- 타운 예산에 대한 심사
 - 타운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수정하고 채택하기 이전에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최초의 추정예산으로부터의 수정사항 및 예산안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함(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108)
 - 타운에 별도의 감사관이 없는 경우 타운 관리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함(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124)
 - 타운 위원회와 타운 서기에게 제출된 회계 보고서는 관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뉴욕 주 감사관(comptroller)에게 제출되어야 함(Consolidated Laws_Town_section 29(10))

〈표 4-22〉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관련규정

원문	번역
<p>〈Town of Ossining Code〉 20-7 Establishment; membership. [Amended 2-24-2015 by L.L. No. 1-2015]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Board of Ethic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BoE") consisting of five members to be appointed by the Town Board. All members of the BoE shall be residents of the Town of Ossining. At least one member of the BoE shall be not be a lawyer. Each member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for a term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The term of five years is intended to be equal to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BoE so that the term of only one member of the BoE shall terminate at the end of each calendar year. Immediately following passage of this section, some of the initial appointments or reappointments of members of the shall be for terms of less than five years so that at the end of each calendar year, the term of one member of the BoE will expire. Upon the expiration of each member's initial appointment, the reappointment of that member or the appointment of a new member to take his/her place shall be for a term of five years. If a vacancy on the BoE shall occur other than by the expiration of a member's term, the Town Board shall appoint a new member for the unexpired portion of that term. The Town Attorney or Deputy Town Attorney shall serve as an advisor to the Board of Ethics, and shall not be a voting member.</p>	<p>20-7 설립; 구성원 자격 [L.L. No. 1-2015에 의해 수정 2015-2-24] 이에 타운 위원회가 선임하는 다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 (때에 따라 "BoE"로 칭함)를 설립한다. BoE의 모든 구성원들은 오시닝 타운의 거주자들이어야 한다. 적어도 BoE 중 한 명은 변호사가 아니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선임일로부터 오 년 동안 보수 없이 직무에 임한다. 오 년의 임기는 BoE의 구성원 수와 같도록 의도한 것으로 BoE의 한 구성원의 임기만이 각 역년 말에 종료한다. 본 절의 다음 단락 바로 뒤에, 구성원의 최초 선임 혹은 재선임의 일부는 오 년 이하의 임기로 하고, 각 역년 말에 BoE 의 한 명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각 구성원의 최초 선임의 만료 시점에, 해당 구성원의 재선임 혹은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구성원의 선임은 오 년의 임기로 한다. 구성원 임기 만료 이외의 이유로 BoE 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타운 위원회는 해당 임기의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새로운 구성원을 선임한다. 타운 변호사 혹은 부 타운변호사는 윤리위원회에 자문으로 직무를 하고, 투표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p>
<p>〈Town of Ossining Code〉 20-8 Powers and duties; complaints, miscellaneous provisions, penalties for offenses. A. The Board of Ethics shall have all of the powers and duties prescribed by Article 18 of the General Municipal Law and as provided in this chapter. (1) The BoE shall provide written advisory</p>	<p>20-8 권한 및 의무; 민원, 기타 규정, 위반 과징금 A. 윤리위원회는 일반 내국법과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18조에 규정된 모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윤리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응답으로 서면 자문 의견서를 제공한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 혹은 계획된 행위에 대해서 현재 혹은 장래의</p>

원문	번역
<p>opinions in response to: a written request of the Town Board; or the written request of a present or prospective Town employee with respect to his/her own past, present, contemplated or planned actions; or the written request of a contractor presently doing business with the Town, or who has bid for or is in the process of bidding to do business with the Town.</p> <p>B. The Board of Ethics shall have the power and duty to receive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thereafter, investigate any written complaint ("the complaint") regarding a Town employee's alleged violation of the Town of Ossining Code of Ethics, Article 18 of the New York General Municipal Law and any other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relating to the ethical conduct of any Town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p> <p>C.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owers and duties, the Board of Ethics may make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drafting and adoption of a code of ethics or amendments thereto, on their own initiative or upon request of the Town Board.</p> <p>D.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law, any Town employee who shall knowingly and intentionally act in a manner that violates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be privately admonished, publicly censured, fined, suspended or removed from office or employment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p>	<p>타운 직원에 대한 서면 요청, 혹은 타운과 현재 거래를 하는 계약자의 서면 요청 혹은 타운과 거래를 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있거나 입찰을 한 계약자의 서면 요청.</p> <p>B. 윤리위원회는 이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오시닝 타운법령, 다음에 대한 타운 직원의 윤리적 수행에 관한 뉴욕주 일반국내법 18조 그리고 기타 적용법이냐 규정에 대한 타운 직원의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 민원 ("민원")을 받고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p> <p>C. 앞선 권한과 의무에 추가로, 윤리위원회는 윤리 강령이나 그에 대한 수정의 초안 작성 및 채택에 대한 권고를 자발적으로 혹은 타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다.</p> <p>D. 법에 제시한 다른 과징금에 추가로, 본 장의 규정 위반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알고 하는 타운 직원은 사적으로 권고, 공적으로 견책, 과징금 처벌,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직이나 공무에서 정직 혹은 해임할 수 있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108 Public hearing The town board shall hold a public hearing on the preliminary budget showing such changes, alterations and revisions as shall have been made therein by such board pursuant to subdivision three of section one hundred six of this chapter. Such hearing shall be held on or before the Thurs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general election, except that in towns in</p>	<p>108절 공청회 타운 위원회는 본 장의 106절의 하위 분할 3에 따라 이러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대안 및 수정을 보여주는 1차 예산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공청회는 웨스트체스터와 몬로 카운티의 타운에서 이러한 공청회가 12월 10일 전에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선거 직후의 목요일 이전에 개최된다. 이러한 공청회 고지는 공식 신문에 적어도 한 번 공표되어야 하고, 공식 신문이 지정되지 않은</p>

원문	번역
<p>Westchester and Monroe counties such hearing shall be held on or before the tenth day of December. Notice of such public hearing shall be published at least once in the official newspaper, or if no official newspaper has been designated, in any newspaper having general circulation in the town. The notice may be published in such other newspapers and for such other additional times as the town board, by resolution, shall direct. At least five days shall elapse between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the notice and the date specified for the hearing. The notice of hearing shall state the time when and the place where the public hearing will be held, the purpose thereof and that a copy of the preliminary budget is available at the office of the town clerk where it may be inspected by any interested person during office hours. Such notice shall also specify the proposed salaries of each member of the town board, an elected town clerk and an elected town superintendent of highways. The town clerk shall cause a copy of the notice to be posted on the signboard of the town, maintained pursuant to subdivision six of section thirty of this chapter, not later than five days before the day designated for such hearing. The hearing may be adjourned from day to day but not beyond the fifteenth day of November, except that in towns in Westchester and Monroe counties the hearing may be so adjourned up to and including the fifteenth day of December. At such hearing, any person may be heard in favor of or against the preliminary budget as compiled or for or against any item or items therein contained.</p>	<p>경우 타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문에 한다. 해당 고지는 이와 같은 다른 신문과 결의로 타운 이사회가 지시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회수로 공표될 수 있다. 고지의 첫 공표일과 공청회를 위해 정해진 날짜는 적어도 오 일 간격을 둔다. 공청회 고지는 이러한 고지는 또한 타운 위원회의 각 구성원, 선출직 타운 서기 및 선출된 타운 도로 관리 국장에 대해 제안된 임금을 명시한다. 타운 서기는 이러한 공청회 지정일 이전 오 일 내에 타운의 안내판에 고지 사본을 게시하고 본 장의 30절 하위분할 6에 따라 이를 유지한다. 웨스트체스터와 몬로 카운티 타운에서 해당 공청회가 12월 15일까지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청회는 11월 15일을 넘기지 않고 연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공청회에서, 누구든지 이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작성된 1차 예산에 대해 공청회 대상이 될 수 있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124 Designation of the comptroller as accounting offic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hapter, the town board of a town in which the office of comptroller has been established may,</p>	<p>124절 회계 담당관으로서의 감독관 지정 본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사무소가 설립되는 타운의 타운위원회는 결의로 해당 공무원이 그 타운의 회계 담당관이 되도록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타운 관리자의 모든 회계 의무는 해당 감독관에게 이전되고 그에 의해</p>

원문	번역
<p>by resolution, determine that such officer shall be the accounting officer of the town. In such event, all of the accounting duties of the town supervisor shall be transferred to and be performed by the comptroller.</p>	<p>수행된다.</p>
<p><Consolidated Laws_Town> Section 29 Powers and duties of supervisor 10. Shall prepare and file with the town clerk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expiration of each fiscal year, an annual financial report accounting for all moneys received and disbursed by him, together with the certificate, or certificates, of the bank or trust company where town moneys are deposited, showing the amount of such moneys on deposit with said bank or trust company, and cause a certified copy of such report to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newspaper, and in such other newspapers, if any, as the town board may require. In addition thereto, if and whenever required, such supervisor shall submit to the other members of the town board at the time of filing such report all vouchers, cancelled checks or check images as authorized by section ninety-nine-b of the general municipal law, check stubs, ledgers, cash books, journals, and financial and accounting records of every sort required to substantiate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such report. 10-a. In lieu of preparing the report required by subdivision ten of this section, the town board may determine, by resolution, that the supervisor shall submit to the town clerk,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section thirty of the general municipal law, a copy of the report to the state comptroller required by section thirty of the general municipal law, providing, however, that if the time for the filing of the annual report has been extended by the state comptroller as provided in the said statute, then the time for submitting a copy of the report to the town clerk similarly shall be extended. The</p>	<p>29절 관리자의 권력 및 의무 10. 각 회계 년도 말 이후 삼십일 이내로 타운 서기에게 그가 받은 모든 금원과 그가 지출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연간 재정 보고를 예치된 금원의 가격을 보여주는 타운의 금원이 예치된 은행이나 신탁회사의 증서와 함께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공개 신문과 타운위원회가 요하는 다른 신문에 에 공표된 이와 같은 보고의 증서 사본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관리자는 이러한 보고를 제출하는 시점에 타운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일반 국내법의 99-b절에 허용된 바에 따라 이러한 보고의 정확도 및 완성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모든 바우처, 취소된 수표, 수표 이미지, 보관용 수표, 거래내역 원장, 현금출입장, 저널, 재무 및 회계 기록을 제출한다. 10-a. 본 절 하위분할 10에 의해 요청되는 보고서 작성 대신에, 타운위원회는 결의로 관리자가 일반 국내법 30절에 규정된 시간 내에 일반 국내법 30절에 요하는 주 감독관에 대한 보고의 사본을 타운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연간 보고의 제출을 위한 시간이 언급된 법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 감독관에 의해 연장된 경우, 타운 서기에 대한 보고서 사본 제출 시간은 연장된다. 타운 서기는 주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으로 이를 수령한 뒤 십 일 내에 이와 같은 보고의 요약이 공표되도록 하거나 보고서의 사본 고지가 타운 서기의 사무소에 파일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식 신문이나 타운위원회가 지시하는 다른 신문에 대중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p>

원문	번역
town clerk shall cause either a summary of such report to be published within ten days after receipt thereof in a form approved by the state comptroller or a notice that a copy of such report is on file in the town clerk's office and is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in the official newspaper and in such other newspapers as the town board may direct.	

* 출처: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Town of Ossining Code

제3절 소결론

□ 분석결과 종합 요약1 : 기관구성 및 역할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4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표 4-23>과 같음
 - 먼저 델라웨어 카운티는 각 기초정부별로 선출된 관리자(supervisor)들로 구성된 관리자위원회가 카운티의 입법과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위원회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비교적 관리자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약 20여명으로 많음. 오시닝 타운 역시 주민투표로 선출된 5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중 카운티의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비해 버팔로시는 시장과 의회가 서로 독립해있는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강시장형이라고 볼 수 있음
 - 롱비치시는 의회가 집행부의 역할을 겸하는 기관통합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집행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전문가를 관리자로 채용해 집행부를 관할하게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관구성의 다양한 구조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지역의 유형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음. 그 이유는 각 지역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선택했던 다양한 기관구성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 다만, 카운티를 제외하고 시, 타운 등에서는 기관 간 견제기능 약화 및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위원회형으로 남은 지역은 매우 드뭄

〈표 4-23〉 미국: 4개 유형 비교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자치단체 규모	인구: 47,980명 면적: 3,800km ² 유형: County	인구: 33,275명 면적: 10.09km ² 유형: City	인구: 261,452명 면적: 136km ² 유형: City	인구: 37,674명 면적: 40.4km ² 유형: Town
의원 정수	총 19명	총 5명	총 9명	총 5명 (관리자 포함)
의회	의원 선출 방법 및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혹은 4년 • 최초 선거 시에는 최다득표 3인이 4년 임기이고 그다음 최다득표자 2인의 임기가 2년임 • 이후 선거부터는 최다득표 2인이 4년의 임기를 가지며 3위 득표자는 2년의 임기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 지역 내 9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
	의장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지방 법, 결의안 및 카운티 공무원들의 지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의무의 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관리자 위원회에 보고 •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의회에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법이나 헌장에 의해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에 속한 모든 부동산 및 인적 자산의 관리 및 통제 권을 가짐 • 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방 법, 조례, 규칙, 규칙 및 부칙을 매년 작성, 제정, 출판 및 수정하고 폐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의원은 임기동안 다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함 • 모든 일반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함 • 비서를 임명/해임할 수 있음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의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티의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 카운티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함 •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임 위원회를 (Standing Committee) 를 설치할 수 있음 • 각 관리자들을 포함한 지방정부 관료 및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고, 채용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권한을 가짐.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지방법의 입법권한, 예산 채택 권한 등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짐 	<p>서나 시 정부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의회는 필요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법률, 조례, 결의안 및 규칙과 규제 제정 • 헌장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따라 시의 예산안을 채택하고 재정 계획을 승인 • 일반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세금 및 특별세 부과 • 시 공무원의 임명 혹은 임명 동의 권한 • 의회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임명 • 시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보상의 조정 • 의회의 절차를 규정 및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판단 권한 • 시와 그 거주민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질의 	<p>리자, 타운 서기, 세금징수관 및 사정관의 행정행위를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정부 일반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타운의 자산과 타운의 사무 등에 관한 자치 법률을 입법, 개정, 대체 • 타운 위원회는 타운의 예산을 관리하고 타운의 자산의 획득 및 이전에 권한을 가짐 • 타운 정부 내 보직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이상의 동의로 적절한 후보자를 공석에 임명할 수 있음 • 계약의 관리, 도로 및 공공시설의 사용허가, 공적기금의 운용 등 일반법에서 타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
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나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 지역주민의 투표로 선출 	-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시장/ 관리자의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는 시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경찰 및 소방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시의 공무원, 부서, 위원회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짐 • 관리자는 매년 1월 전년도 행정 활동 및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의회는 관리자에게 정부 또는 개선과 관련하여 시의 업무에 관한 진술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와 함께 의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관리자는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에는 이전 정기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시 공무원에 대한 인력의 변동사항(고용, 승진, 순환, 해임)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장들 및 시의 공무원과 위원회에 대한 지시/감독 • 모든 의회에 출석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정하는 직위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 • 공청회를 거친 후 지방법을 승인 혹은 거부할 수 있음. • 지역사무에 대한 조사권한 • 부서장의 임명 및 해임 	-
위원회 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의회는 필요에 따라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팔로시의 내각은 시장과 부서장을 비롯하여 시 정부 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됨 	-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p>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지방법 혹은 결의안은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구성원의 수를 명시함. 또한 결의안을 통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에 의해 관리자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임명됨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관리자위원회가 특별히 명하지 않는다면 해당년도 종료시점까지이며, 단, 각 관리자들의 관리자로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음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결의안에 규정된 시점 동안이며, 이 경우에도 각 관리자들의 관리자로서의 임기를 초과할 수는 없음 	<p>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 감사관(comptroller)은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됨.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시장임명직 공무원의 경우 시장, 감사관, 의회 의장이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해임 가능 각 부서의 부서장은 부부서장 및 하위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있음 각 부서장은 또한 현장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내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음 	
감시/견제	공무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롱비치 시는 시정부의 모든 공무원의 윤리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의회가 임명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관은 시의 모든 관료, 부서, 위원회 등의 활동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감사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운 위원회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 타운 서기, 세금징수관 및 사정관의 행정행위를 감독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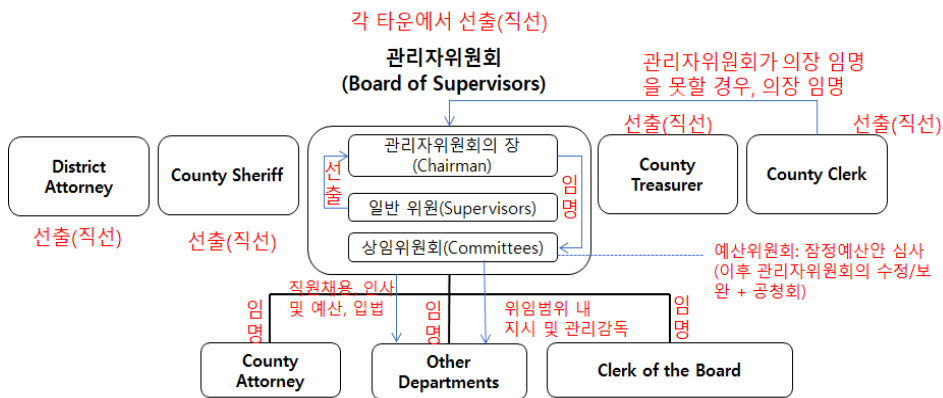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p>회에 위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는 인사부(The Personnel Department)에서 담당하며, 공무원 시험 실시, 직위를 채우기 위한 적격 목록을 수립 및 유지, 직위 분류, 임명과 인사 변경을 검토 및 승인하며, 직원 등록 기록과 직위 기록을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백하고 의도적인 윤리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직무의 수행이 중단되거나, 해임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관은 감사 조건에 해당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산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 윤리위원회는 모든 시 공무원이 제출하는 재정공개 성명을 보관하고 검토 윤리위원회는 시의 관료 및 직원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시장과 의회에 윤리 규정의 수정에 대한 제안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통보 후 해당 사안을 검토 사안에 대한 의견청취 후 윤리위원회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정직 혹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행위를 제안 	<p>면요청에 대하여 권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하며, 타운 공무원의 윤리강령 위반 제보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수정에 대한 내용을 타운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 윤리강령을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타운의 관료 및 직원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권고, 징직, 해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예산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위원회의 상임위원들 중 예산위원회에서 잠정적 예산안을 심사함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자 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짐 수정된 예산을 채택하기 전에 관리자 위원회는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감사관은 시의회와 시 의원에게 건전한 재정 자문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가 적절하게 지원되고 기록되도록 하며, 시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는 한편 시의 여러 부서의 활동이 각각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 교서와 함께 시의 경영계획 및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감사관(comptroller)은 시의 모든 관료 및 부서와 위원회 등의 회계를 감사하며, 예산집행과 관련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안을 최종 수정하고 채택하기 이전에 타운 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예산안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함 타운에 별도의 감사관이 없는 경우 타운 관리자가

구분	Delaware County	City of Long Beach	City of Buffalo	Town of Ossining
	청회를 개최해야함	루어지도록 보장	모든 기록을 보관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운 위원회와 타운 서기에게 제출된 회계 보고서는 관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뉴욕 주 감사관(comptroller)에게 제출되어야 함
행정부에 대한 견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는 관리자에게 매년 1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년도 행정 활동 및 재정 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자는 의회의 정기 회의에서 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들 중 부서장, 위원회의 위원 및 기관장 등에 대하여 의회가 최종 승인 권한 을 가짐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종료되며, 의회의 재승인 필요 시장 혹은 각 부서장은 집행기관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의회에 대한 견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의회가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 지방법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

□ 분석결과 종합 요약2: 기관 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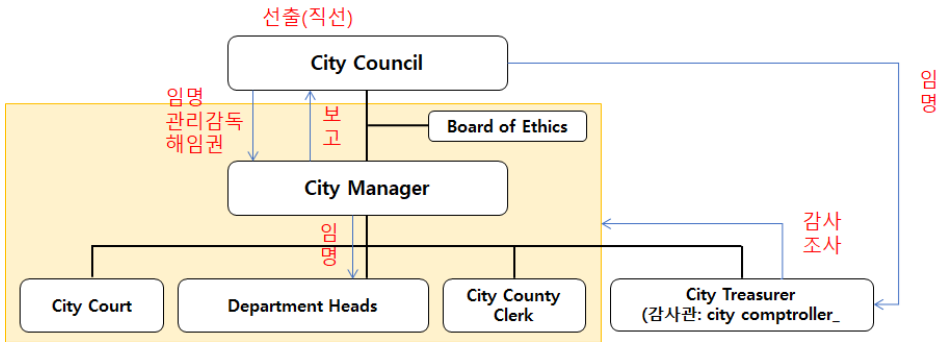
- 기관 간 관계는 <표 4-23>과 같이 요약될 수 있지만, 그 구조를 조직도 상에서 보다 명쾌하게 작성한다면 이하의 그림과 같음
- 텔라웨어 카운티의 경우, 간단한 기관 간 관계를 구조화하면 <그림 4-10>과 같음
 - 영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권자인 주민이 입법과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자위원회의 구성원(supervisors) 외에 검사장, 보안관, 재무관, 서기 등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함
 - 그 이유는 관리자위원회가 사실상의 집행부 부서장들에 대한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임(별도의 총괄관리자를 두지 않고 직접 행정관료를 임명하여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위원회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최근 이와 같은 전통적인 위원회형 카운티 기관구성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조직구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0> 텔라웨어 카운티 기관 간 관계도



- 롱비치시의 경우, 주민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전문 행정관인 시 관리자(city manager)를 두는 형태로, 의회-관리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관리자 없이 의회만 있을 경우, 사실상 입법과 집행을 모두 선출직 의원(council)이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위원회형 조직이 됨(텔라웨어 카운티와 비교할 때, 의회의 구성원이 5명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임)
 - 의회는 전문행정가인 시 관리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일임함. 그러나 의회가 관리자에 대한 임명, 해임은 물론 각종 관리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에 관리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함. 관리자는 의회 비회기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시 감사관의 경우, 시의 최고 재정관료가 그 역할을 수행함. 의회가 감사관을 임명하지만, 감사관은 시의 모든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가짐
 - 기관대립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1〉 롱비치시 기관 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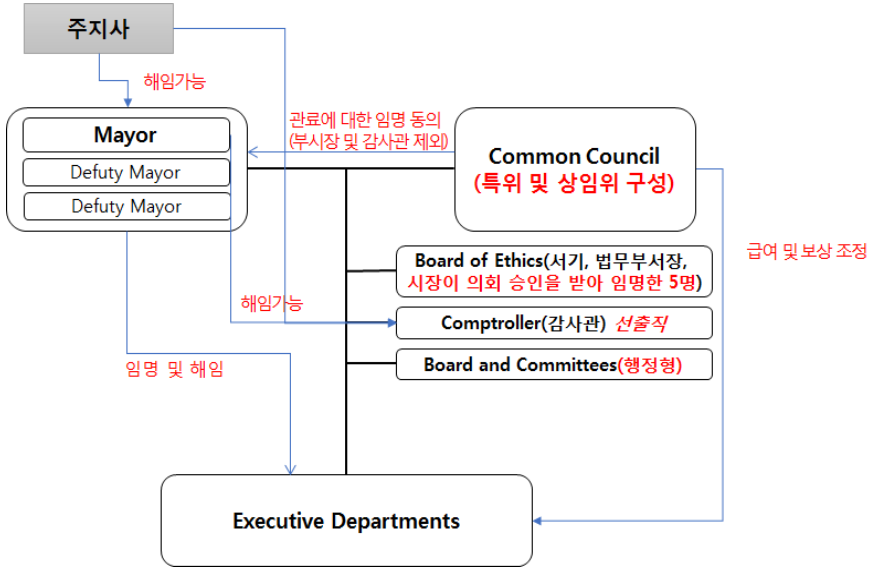


- 버팔로시는 시장과 의회가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을 가지고 있어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시장 외에도 감사관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어 시장 및 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비교적 높음

- 주헌법 하에서 보안관, 시장, 감사에 대해서는 주지사에 의한 해임이 가능함³⁰⁾
 - 시장은 본인의 일시적 부재시 임무대행을 할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시의 최고경영자로서 집행부 전반에 대한 임명, 해임권한을 가짐. 단, 이 경우 부시장과 감사관을 제외하고는 부서장 임명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역시 시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함). 또한 의회에 대해서도 특별회의 소집권한을 가짐
 - 의회의 의장은 일반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비서의 임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짐. 시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임명동의권한을 가지며 시 서기 등 의회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음. 또한 시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보상을 조정함
 - 따라서 버팔로시는 강시장형으로 분류되지만, 의회가 의회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각 부서장 임명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는 의회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타운정부는 시정부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자치단체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오시닝타운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원화된 위원회형 기관구성을 가지고 있어 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함
- 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나, 위원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직무상 직권남용, 잘못된 행정행위, 불법행위 및 배임 등의 이유로 뉴욕 주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의해 해임될 수 있도록 함
 - 관리자(supervisor)의 경우 카운티의 위원이 되며, 동시에 위원회 회의시 의장의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형 자치단체의 경우 조직도 상에서 별도로 표기될만한 견제기능이 없어 그림을 추가하지 않음

30) 주지사에 의한 해임은 대법원확정판결 등으로 직위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지사가 행정적 처분을 하게되는 것이며, 임의로 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림 4-12〉 버팔로시 기관 간 관계도





제5장

일 본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제2절 기관구성 및 관계분석

제3절 소결론

제5장 일본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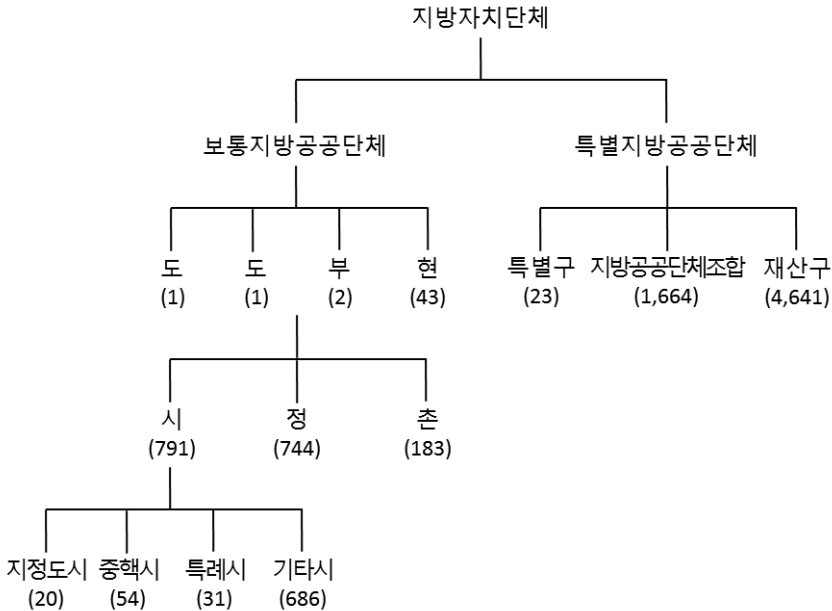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의 2종류로 구분되어 있음
 -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정촌(市町村)’의 2계층제를 취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 1조의3 ②)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수는 총 47개로, 에도시대의 각 번(藩)의 구역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1888년 이후 근대적 자치제도와 함께 이어져오고 있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 도(都)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의미하며 나머지 도(道), 부(府), 현(縣)과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음. 도(道)는 홋카이도, 부는 교토, 오사카 2개가 있음. 그 외 지역은 모두 현이며 도(道), 부, 현 간의 제도적 차이는 없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8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메이지 대합병(1888)으로 인해 약 7만 개에서 1만 5천 개로 재편, 쇼와 대합병(1953)으로 인해 약 1만 개에서 약 3,000개로 감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헤이세이 대합병(1999)으로 인해 현재 1,718개의 형태를 갖추게 됨(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 시는 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 기타 시로 구성되어 있음. 지정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중 정령(한국의 대통령령)으로, 중핵시와 특례시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 중 정령으로 지정됨. 이 중 특례시 제도는 폐지되어 지정도시

- 또는 중핵시로 변경되거나 경과조치가 진행중임(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 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는 수도 동경(東京)도의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의 3종류로 구성됨(「지방자치법」 제 1조의3 ③)
 - 특별구는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 중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은 복합적 공동체로서 복수의 지방공공단체가 협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재산구는 시정촌 내의 일부 공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함(오시영, 2008)

〈그림 5-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오시영(2008)의 내용을 수정 인용

〈표 5-1〉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법적 근거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一条の三 1. 地方公共団体は、普通地方公共団体及び特別地方公共団体とする。 2. 普通地方公共団体は、都道府県及び市町村とする。 3. 特別地方公共団体は、特別区、地方公共団体の組合、財産区及び地方開発事業団とする</p> <p>第十七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挙人が投票によりこれを選挙する。</p> <p>第八十九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に議會を置く。</p> <p>第二百二十九条 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会議中この法律又は会議規則に違反しその他議場の秩序を乱す議員があるときは、議長は、これを制止し、又は発言を取り消させ、そ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日の会議が終るまで発言を禁止し、又は議場の外に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議長は、議場が騒然として整理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日の会議を閉じ、又は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조의3 ①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한다. ②보통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으로 한다. ③특별지방공공단체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및 재산구로 한다.</p> <p>제17조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및 장은,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이를 선거한다.</p> <p>제89조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의회를 둔다.</p> <p>제139조 ①도도부현에 지사(知事)를 둔다. ②시정촌에 시정촌장(市町村長)을 둔다.</p>

2. 기관구성 관련 법적 근거

□ 일본의 기관구성 법적 근거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 각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단체장(수장), 행정위원회(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를 갖고 있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됨. 따라서 일본의 지방자치는 수장주의(首長主義)의 기관 대립형 원리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박정훈, 2014)
-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에게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등 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지방의 단체장-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강시장형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경기도의회, 2016; 한양대학교, 2018)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중앙 정부의 것과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직 구성과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법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표 5-2〉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조의 법적 근거

일본헌법(日本國 憲法)	
원문	번역
<p>第八章 地方自治</p> <p>第九十二條 地方公共團體の組織及び運営に關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p> <p>第九十三條 1. 地方公共團體に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議事機關として議會を設置する。 2. 地方公共團體の長、その議會の議員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吏員は、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が、直接これを選擧する。</p> <p>第九十四條 地方公共團體は、その財産を管理し、事務を處理し、及び行政を執行する權能を有し、法律の範圍内で條例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8장 지방자치</p> <p>제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p> <p>제93조 ①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공무원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p> <p>제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보유하고,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p> <p>제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p>

일본헌법(日本國 憲法)	
원문	번역
第九十五條 一の地方公共團體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團體の住民の投票において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なければ、國會は、これ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	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 행정위원회

- 지자체의 사무 중 정치적 독립성,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사무(교육, 선거, 인사, 공안, 노동, 수용 등)의 경우에 독립된 위원회 설치를 통해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집중을 방지함(「지방자치법」 제 180조의5 ①; 이상윤, 2018)
- 각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들은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무를 보조집행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설치하거나, 각각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두어야 할 위원회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역할을 수행함(「지방자치법」 제 180조의5 ⑤)
- 각 위원회별 위원은 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에 의해 임명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선거를 통한 선임되며, 노동위원회 위원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함(이상윤, 2018)
- 각 위원회별 위원 선임 방식을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음

〈표 5-3〉 도도부현 및 시정촌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

위원회	선임방식
교육위원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이 선임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감사위원회	
공안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의회에서 선거를 통한 선임
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노동자의원의 동의를 얻어 장이 임명

* 이상윤(2018)의 내용을 수정 인용

〈표 5-4〉 일본 위원회 기관구성의 법적근거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一百八十条の五 執行機關として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委員会及び委員は、左の通りである。 一. 教育委員会 二. 選挙管理委員会 三. 人事委員会又は人事委員会を置かない普通地方公共団体にあつては公平委員会 四. 監査委員 2. 前項に掲げるもののほか、執行機關として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委員会は、次のとおりである。 一. 公安委員会 二. 労働委員会 三. 収用委員会 四. 海区漁業調整委員会 五. 内水面漁場管理委員会 3. 第一項に掲げるものの外、執行機關として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委員会は、左の通りである。 一. 農業委員会 二. 固定資産評価審査委員会 5. 普通地方公共団体の委員会の委員又は委員は、法律に特別の定があるものを除く外、非常勤とする。</p>	<p>제180조의5 ①집행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두어야 할 위원회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공평위원회 4. 감사위원 ② 전항에 기재된 것 외에,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에 두어야 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공안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수용위원회 4. 해구어업조정위원회 5. 내수면어장관리위원회 ③ 제1항에 기재된 것 이외에,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두어야 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위원회 2.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⑤보통지방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은,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p>

○ 지방의회사무국

- 일본의 각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행정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원은 단체장에 의한 파견 근무형태로 구성할 수 있음.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함
- 의회 사무국장 및 서기장은 의장의 명을, 그 외 직원들은 사무국장 및 서기장의 명을 받아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
-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은 의장에게 주어지나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통한 공무원들의 出向(슛코우)³¹⁾를 통해 이루어지며 근무 환경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 의회 사무국의 실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한 장의 임명(가나와), 본청 근무자 중 장에 의한 임시 파견(요코하마) 등 단체장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함(고승희, 2011)

31) 한국의 파견근무와 비슷한 인사형태

〈표 5-5〉 지방의회사무국 구성의 법적근거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十一節 議会の事務局及び事務局長、書記長、書記その他の職員 第三百八条 1. 都道府県の議事に事務局を置く。 2. 市町村の議事に条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務局を置くことができる。 3. 事務局に事務局長、書記その他の職員を置く。 4. 事務局を置かない市町村の議事に書記長、書記その他の職員を置く。ただし、町村においては、書記長を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5. 事務局長、書記長、書記その他の職員は、議長がこれを任免する。 6. 事務局長、書記長、書記その他の常勤の職員の定数は、条例でこれを定める。ただし、臨時の職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7. 事務局長及び書記長は議長の命を受け、書記その他の職員は上司の指揮を受けて、議会に関する事務に従事する。 8. 事務局長、書記長、書記その他の職員に関する任用、人事評価、給与、勤務時間その他の勤務条件、分限及び懲戒、服務、退職管理、研修、福祉及び利益の保護その他身分取扱いに関しては、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を除くほか、地方公務員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p>	<p>제11절 의회사무국 및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와 그 외 직원 제138조(사무국 설치 및 의회직원) ① 도도부현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시정촌 의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서기, 그 외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을 두지 않는 시정촌 의회에 서기장, 서기, 그 외 직원을 둔다. 다만, 정촌에서는 서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그 외 직원은 의장이 임명한다. ⑥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그 외 상근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다만, 임시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무국장 및 서기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서기와 그 외 직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의회 관련 서무에 종사한다. ⑧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그 외 직원의 임용, 인사평가, 급여, 근무시간, 기타 근무조건, 신분이동(分限) 및 징계, 복무, 퇴직관리, 연수, 복지 및 이익보호, 그 외 신분취급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제2절 기관구성 및 관계분석

1. 기관구성 방식 및 역할

1) 단체장(또는 시장 등) 선임방식 및 역할

□ 단체장 선임방식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식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은 지사(도도부현)와 장(시정촌)임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임(「지방자치법」 4장 제 17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회 의원, 상근 직원, 지방정부와 이해 또는 청부관계가 있는 보직 등의 겸직이 금지되어있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단체장 해임방식

- 주민의 해직 청구와 의회 불신임
 -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는 주민 발의와 의회 불신임의 2가지가 존재함
 - 각 지방의 유권자는 1/3 이상의 서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을 요청할 수 있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해직 청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주민 선거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획득할 시 단체장의 해임이 확정됨(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 이후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시 단체장의 해임이 진행됨(박정훈, 2014)
 - 의회 불신임의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 중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 중 3/4 혹은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지방자치법」 제 178조 3항; 박정훈, 2014)

〈표 5-6〉 단체장의 선임 및 해임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四章 · 選挙</p> <p>第十七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挙人が投票によりこれを選挙する。</p> <p>第十八条 日本国民たる年齢満二十年以上の者で引き続き三箇月以上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を有する。</p> <p>第十九条 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選挙権を有する者で年齢満二十五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 2. 日本国民で年齢満三十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被選挙権を有する。 3. 日本国民で年齢満二十五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長の被選挙権を有する。</p>	<p>제4장 선거</p> <p>제17조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거한다.</p> <p>제18조 일본국민인 만20세이상의 자로서 계속하여 3개월이상 시정촌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p> <p>제19조 ① 보통지방공공단체 의원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일본국민으로서 만30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일본국민으로서 만25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촌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p>

단체장의 기능 및 역할

○ 단체장의 기능 및 역할

-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규칙제정권, 예산편성권, 의안제안권 및 직원 임면권 등을 통해 집행기관 전체를 통괄함(이상윤, 2018)
- 도도부현의 장인 지사는 하부기관인 시정촌장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시정촌장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짐(오시영, 2008)

〈표 5-7〉 단체장의 권한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百四十七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を統轄し、これを代表する。</p> <p>第百四十八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事務を管理し及びこれを執行する。</p> <p>第百四十九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概ね左に掲げる事務を担当する。 一.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決を経べき事件につきその議案を提出すること。 二. 予算を調製し、及びこれを執行すること。 三. 地方税を賦課徴収し、分担金、使用料、加入金又は手数料を徴収し、及び過料を科すること。 四. 決算を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認定に付すること。 五. 会計を監督すること。 六. 財産を取得し、管理し、及び処分すること。 七. 公の施設を設置し、管理し、及び廃止すること。 八. 証書及び公文書類を保管すること。 九. 前各号に定めるものを除く外、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事務を執行すること。</p>	<p>제147조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를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p> <p>제148조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관리·집행한다.</p> <p>제149조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대체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에 대한 의안제출 2. 예산 편성 및 집행 3. 지방세 부과징수, 분담금·사용료·가입금 또는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4. 결산을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인정을 받는 것 5. 회계감독 6.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폐지 8. 증서 및 공문서의 보관 9. 전 각호에서 정하는 사무 이외에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p>

- 강시장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기관 다원주의로 인해 단체장의 권한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의 위원 임명, 자치경찰의 인사권 등은 실질적으로 해당 조직이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이 거의 관여하지 않음
- 단체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당의 중앙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당정치가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음

2) 지방의회 의원 선임방식 및 역할

□ 지방의회 의원 선임방식

○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 선임방식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지방자치법」 제4장 17조)
- 임기는 4년이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상근 직원, 지방의회와 이해 또는 청부관계에 있는 직종 등의 겸직이 금지되어있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도도부현·시정촌 모두 의원의 정수는 각각의 조례로 정하며, 이는 의회 구성 시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회 구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박정훈, 2014)

〈표 5-8〉 지방의회 의원의 선임방식

일본헌법(日本國 憲法)	
원문	번역
<p>第九十條 1. 國の收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毎年會計検査院がこれを検査し、内閣は、次の年度に、その検査報告とともに、これを國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九十一条 市町村の議会の議員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p>	<p>제90조 ①도도부현 의회의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제91조 ①시정촌 의회의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第四章 · 選挙</p> <p>第十七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選挙人が投票によりこれを選挙する。</p> <p>第十八条 日本国民たる年齢満二十年以上の者で引き続き三箇月以上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を有する。</p>	<p>제4장 선거</p> <p>제17조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거한다.</p> <p>제18조 일본국민인 만20세이상의 자로서 계속하여 3개월이상 시정촌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p> <p>제19조 ①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 선거권을 가지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지방공공단</p>

일본헌법(日本國 憲法)	
원문	번역
<p>第十九条</p> <p>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選挙権を有する者で年齢満二十五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被選挙権を有する。</p> <p>2. 日本国民で年齢満三十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被選挙権を有する。</p> <p>3. 日本国民で年齢満二十五年以上のものは、別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市町村長の被選挙権を有する。</p>	<p>체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② 일본국민으로서 만30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③ 일본국민으로서 만25세이상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촌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p>

□ 지방의회 및 의원 해임방식

○ 의원의 해직청구, 의회해산

- 일본 지방의회의 의원 해임 제도는 주민들의 의한 해직청구와 단체장에 의한 의회해산이 있음
- 의원 소속 선거구의 유권자의 1/3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의회의 해산 또는 특정 의원의 해직을 요청할 수 있음(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의원의 해직 요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의회의 해산 또는 특정 의원의 직위 상실시 성립됨(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의회에 의한 불신임 결의 이후, 단체장은 10일 이내에 의회 해산을 통해 전체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 178조 1항; 박정훈, 2014)
-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에서 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를 의회해산의 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 저하,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증대 등의 이유로 비합리적인 제도로 보는 견해도 존재함(예, 박정훈, 2014)

〈표 5-9〉 지방의회 및 의원의 해임방식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七十六条 1. 選挙権を有する者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総数の三分の一（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その代表者から、普通地方公共団体の選挙管理委員会に対し、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解散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七十八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は、第七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解散の投票において過半数の同意があつたときは、解散するものとする。</p> <p>第八十条 1. 選挙権を有する者は、政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所属の選挙区におけるその総数の三分の一（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その代表者から、普通地方公共団体の選挙管理委員会に対し、当該選挙区に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の解職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選挙区がないときは、選挙権を有する者の総数の三分の一（その総数が四十万を超え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超える数に六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四十万に三分の一を乗じて得た数とを合算して得た数）以上の者の連署をもつて、議員の解職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八十三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は、第八十条第三項又は第八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解職の投票において、過半数の同意があつたときは、その職を失う。</p>	<p>제76조 ①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총수의 3분의 1(그 총수가 40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에 6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자의 연서로써 그 대표자가 보통지방공공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78조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투표에서 과반수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p> <p>제80조 ①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선거구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그 총수가 40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에 6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연서로써 그 대표자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선거구의 의회위원에 대한 해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권을 가지는 자 총수의 3분의 1(그 총수가 40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에 6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3분의 1을 곱하여 얻은 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자의 연서로써 해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83조 보통지방공공단체 의회위원 또는 장은 제8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직투표에서 과반수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p>

□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 일본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의결 등에 대한 의결권 및 선거권, 감사권,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이상운, 2018)

3) 부단체장 선임방식 및 역할

□ 부단체장 선임방식

○ 일본의 부단체장 선임방식

- 일본의 부단체장은 도도부현은 부지사, 시정촌은 부시정촌장의 명칭을 갖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지방자치법」 제 162조)
- 부단체장의 수(數)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수로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각 지자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선택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 확보가 가능함(「지방자치법」 제 161조 ①; 박정훈, 2014)

□ 부단체장 해임방식

○ 단체장에 의한 해임 혹은 주민의 해직 청구

- 일본의 부단체장 해임은 단체장에 의한 해임 또는 주민의 해직 청구에 의해 가능함
- 자치단체장은 부단체장의 임기 중 부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지방자치법」 제 163조 ③; 박정훈, 2014)
- 주민의 해직 청구는 주요 공무원의 해직청구에 근거함(「지방자치법」 제 86조;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유권자는 1/3 이상의 서명을 통해 자치단체장에게 부단체장의 해직을 건의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의회 선거를 통해 총 의원의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 중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주요 공무원(부단체장)은 해임됨(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표 5-10〉 부단체장의 선임 및 해임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百六十一条 1. 都道府県に副知事を、市町村に副市町村長を置く。ただし、条例で置かないことができる。 2.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定数は、条例で定める。</p> <p>第百六十二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が議会の同意を得てこれを選任する。</p> <p>第百六十三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の任期は、四年とする。ただし、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任期中においてもこれを解職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61조 ①도도부현에 부지사를, 시정촌에 부시정촌장을 둔다. 다만, 조례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②부지사 및 부시정촌장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제162조 부지사 및 부시정촌장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선임한다.</p> <p>제163조 부지사 및 부시정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임기중이라도 이를 해임할 수 있다.</p>

□ 부단체장의 기능 및 역할

○ 부단체장의 역할

- 기본적으로 단체장을 보좌하고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를 감독함(「지방자치법」제 167조)
- 특수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직무를 대리함(「지방자치법」 제 167조)

〈표 5-11〉 부단체장의 역할

원문	번역
<p>第百五十三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そ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を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に委任し、又はこれに臨時に代理させることができる。</p> <p>第百六十七条 副知事及び副市町村長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を補佐し、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命を受け政策及び企画をつかさどり、その補助機関である職員の担任する事務を監督し、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職務を代理する。</p>	<p>제153조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리에 속하는 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167조 부지사 및 조역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장의 보조기관인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를 감독하며,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p>

2. 기관 간 관계: 협력과 견제의 방법

○ 직선제 시장에 대한 견제

-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 178조 ①)
- 단체장 불신임을 위해서는 의원 수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4 이상이 동의해야 함(「지방자치법」 제 178조 ③)
- 불신임 의결 후 단체장을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시켜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됨(「지방자치법」 제 178조 ①)

〈표 5-12〉 단체장에 대한 견제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七十八條</p> <p>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において、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不信任の議決をしたときは、直ちに議長からその旨を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そ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十日以内に議会を解散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議会において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の不信任の議決をした場合において、前項の期間内に議会を解散しないとき、又はその解散後初めて招集された議会において再び不信任の議決があり、議長から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その旨の通知があつたとき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同項の期間が経過した日又は議長から通知があつた日においてその職を失う。</p> <p>3. 前二項の規定による不信任の議決については、議員数の三分の二以上の者が出席し、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四分の三以上の者の、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過半数の者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78조</p> <p>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가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한 때에는 바로 의장이 그 사실을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p> <p>② 의회에서 당해보통지방공공단체장의 불신임의결을 한 경우 전항의 기간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때 또는 해산후 처음으로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의결하고, 의장으로 부터 당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가 있었던 때는 보통지방공공단체장은 동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장으로 부터 통지가 있던 날로 그 직을 잃는다.</p> <p>③ 제1항의 불신임의결을 위하여는 의원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4분의 3이상의 동의, 제2항의 불신임의결을 위하여는 의원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p>

○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

- 단체장의 의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1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 176조 ①)
- 재의된 의결에 대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의결은 확정되는 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예산에 관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기가 있어야 확정됨(「지방자치법」 제 176조 ②)
- 재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도도부현은 총무대신에게, 시정촌은 도도부현지사에게 의결 또는 선거 21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 176조 ⑤)
- 재의제도를 통해 결정되는 안건은 단체장 혹은 의회 한 쪽의 우위로 결정될 수 밖에 없음(박정훈, 2014)

〈표 5-13〉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一百七十六条</p> <p>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における条例の制定若しくは改廃又は予算に関する議決について異議があるとき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く外、その送付を受けた日から十日以内に理由を示してこれを再議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規定による議会の議決が再議に付された議決と同じ議決であるときは、その議決は、確定する。</p> <p>3. 前項の規定による議決については、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者の同意がなければならない。</p> <p>4.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決又は選挙がその権限を超え又は法令若しくは会議規則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理由を示してこれを再議に付し又は再選挙を行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p> <p>5. 前項の規定による議会の議決又は選挙がなおその権限を超え又は法令若しくは会議規則に違反す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知事にあつては総務大臣、市町村長にあつて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当該議決又は選挙があつた日から二十一日以内に、審査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p>	<p>176조</p> <p>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의 조례 제정개폐 또는 예산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에 부칠수 있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재의에 부쳐진 의결과 동일한 때에는 그 의결은 확정한다.</p> <p>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p> <p>④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 의결 또는 선거가 권한을 넘거나 법령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이유를 붙여 재의에 부치거나 또는 재선거를 하게 하지않으면 아니된다.</p> <p>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 또는 선거가 그 권한을 넘거나 법령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도부현지사는 총무대신, 시정촌장은 도도부현지사에게 당해 의결 또는 선거가 있었던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 수단(전결처분)

- 전결 제도는 의회가 의결·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일정한 경우 단체장이 의회를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임(「지방자치법」 제 179조 ①)
- 지자체의 능률적 행정 집행을 위해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임(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 의회가 성립되지 않아, 의회가 안건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을 때의 조정 수단의 성격을 가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9)

〈표 5-14〉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수단

일본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원문	번역
<p>第一百七十九条 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が成立しないとき、第十三条但書の場合においてなお会議を開くことができないとき、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おいて議会を招集する暇がないと認めるとき、又は議会において議決すべき事件を議決しないときは、当該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その議決すべき事件を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2. 議会の決定すべき事件に関しては、前項の例によ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処置について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次の会議においてこれを議会に報告し、その承認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一百八十条 1.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権限に属する軽易な事項で、その議決により特に指定したもの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において、これを専決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専決処分をしたとき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長は、これを議会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79조 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제113조 단서에 해당되어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의회가 의결해야 할 의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는 전항의 예에 의한다. ③ 전 2개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차기 회의에서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p> <p>제180조 ①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의결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사항은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이를 전결처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처분을 한 때에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p>

제3절 소결론

□ 분석결과 종합 요약 : 지방자치단체 구조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의 2종류로 구분되어 있음
- 일본의 보통지방공공단체는 2계층제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분류됨
-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는 구역·권한이 특별한 단체로서 그 유형에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가 있음

□ 분석결과 종합 요약 : 기관구성 및 역할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일본국 헌법과 지방자치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5-15>의 내용과 같음
- 일본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각 주체들의 권한 및 상호 견제 수단을 살펴볼 때 강시장 형태의 권력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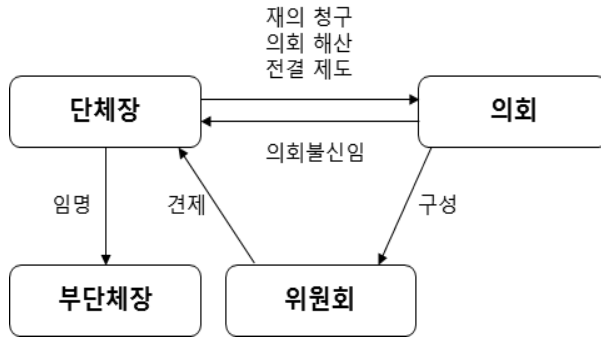
<표 5-15> 일본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분		단체장(首長)	지방의회(地方議會)
임명 및 해임	시장/리더 선출 방법 및 임기	• 지역 유권자가 직접 시장을 선출	• 지역 유권자가 직접 의원을 선출
	정수 및 임기	• 지역 당 1인 • 4년 임기	• 각 지역 별 조례에 따라 정함 • 4년 임기
	해임 방법	• 지역 유권자들에 의한 해직 청구 • 지방의회에 의한 단체장 불신임	• 지역 유권자들에 의한 해직 청구 • 단체장에 의한 의회해산

구분	단체장(首長)	지방의회(地方議會)
역할 및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사무 집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 규칙제정권, 예산편성권, 의안제안권 및 직원 임면권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권한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와 같은 입법권 단체장의 예산 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검사권, 조사권 등
보조기관	부시장/부리더	-
	위원회	-
협력 및 견제	협력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가 의결·결정해야 할 사항 중 일부에 한해 단체장이 의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결처분 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의회가 의결하지 못할 때의 조정 수단
	견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가 의결에 대한 거부권 및 재의 요구권 의회 불신임에 따른 의회 해산권 지방의원들에 의한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일본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그림 5-2>에 제시함
- 일본은 단체장은 의회에 대해 재의청구, 의회해산, 전결제도 등을 가지고 있어 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의회 역시 단체장에 대한 의회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내에 비해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단체장은 부단체장 임명 권한이 있으며, 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를 하기도 함

〈그림 5-2〉 일본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제6장

독 일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제3절 소결론

제6장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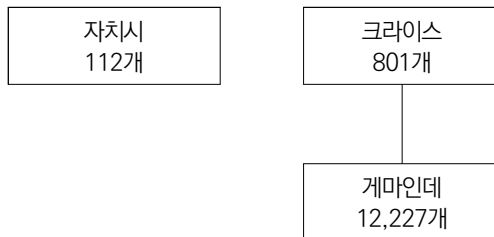
제1절 기관구성 다양성에 관한 법제도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구조 및 특징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 독일의 행정구역은 연방(Bund), 주(Land), 지방자치단체인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 그리고 크라이스의 관할을 받지 않는 게마인데인 자치시(Kreisfreie Stadt)로 크게 구분됨
 - 현재(2014년 기준) 독일에는 801개의 크라이스, 11,112개의 게마인데, 112개의 자치시가 있음
 - 자치시는 1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크라이스 수준의 행정권을 가지며 게마인데에 부여된 모든 고유사무와 국가 최하위 관청으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함
 - 크라이스는 주에 속한 하위행정기관으로 중앙과 게마인데를 잇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게마인데는 독일 헌법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임

〈그림 6-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구기찬(2011)의 내용을 수정 인용

2. 기관구성의 형태 및 분석대상지역 선정

1) 독일의 기관구성

- 독일의 지방자치는 개별 주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독일의 기관구성의 유형 또한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현재 독일의 기관구성 유형은 남독일 시장형, 이원제 시장형, 의회형, 비전형 참사회형의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함(Rudzio, 2015)
- 남독일 시장형(Süddeut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단체장이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의회의장의 역할을 겸임함(Rudzio, 2015)
 - 집행부와 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지만, 단체장이 의회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의회-시장의원제(Duale Rat-Bürgermeister-Verfassung untereiner Spitze)로 불림(박해육, 2015)
 - 해당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작센, 튀링겐 등이 있음
- 이원제 시장형(Dualisti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 단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됨
 - 남독일 시장형 대비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Rudzio, 2015), 단체장-의회의장 병립형 의회-시장의원제(Duale Rat-Bürgermeister-Verfassung unterzwei Spitzen)로 불림(박해육, 2015)
 - 이원제 시장형은 남독일 시장형에 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권력분립에 근거하고 있어 권한도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분할됨(박해육, 2015)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스타인 등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음(박해육, 2015)

○ 의회형(Ratsverfassung)

- 단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지만, 의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유형임
-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게마인데의 최고기관(oberstes Gemeindeorgan)이며, 모든 사무처리의 권한을 가짐(박해육, 2015)
- 해당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니더작센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있음

○ 비전형 참사회형(Unechte Magistratsverfassung)

-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은 행정권과 관련한 권한만을 가지며, 이외의 다른 권한들은 합의제기관인 참사회(Magistrat)가 수행함(Rudzio, 2015)
- 단체장과 참사회를 중심으로 이원적 권한 배분 구조를 가지지만, 갈등 발생 시 단체장의 재량은 매우 제한적임(박해육, 2015)
- 현재 독일 내에서는 헤센주만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유형임

2) 분석대상지역 선정

- 남독일 시장형, 이원제 시장형, 의회형에서 각각 1개 주를 선정하고 해당 주의 게마인데 관련 지방자치법을 분석하였음
- 전술한 4개의 유형 모두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지만, 비전형 참사회형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박해육, 2015)
- 이로 인해 해당 유형은 현재 독일 내에서 헤센주만이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인구 등을 고려하여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를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주에 속해 있는 게마인데 간의 기관구성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게마인데를 선정하기 보다는 주 단위의 게마인데 관련 법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음

- 독일의 총 12개 주 중에서, 본 연구는 채택한 3개 기관구성 유형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1개씩 각각 선정하여, 총 3개의 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음

○ 분석대상지역

- 남독일 시장형: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 이원제 시장형: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 의회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

제2절 유형별 기관구성 및 관계 분석

1. 남독일 시장형: 바덴-뷔르템베르크주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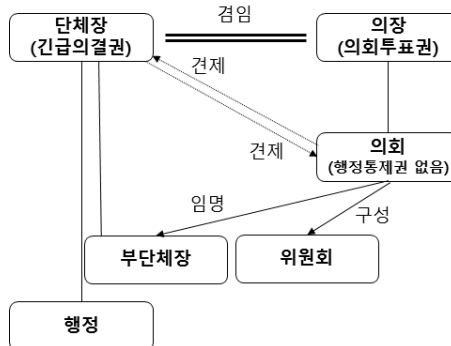
□ 지역 개요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주이며,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20%로 매우 높은 편임
 - 면적은 35,751.46km², 인구는 11,069,533명, 인구밀도는 310명/km²으로 나타남
 -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학 관련 교육의 수요 및 공급이 많은 편임

□ 기관구성 체계도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Baden-Württemberg)에 나타난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6-2>와 같으며, 남독일 시장형에 해당됨

<그림 6-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 **의회**의 구성 및 권한
 - 의회는 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며, 의원들이 구성원이 됨
- **게마인데**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게마인데의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음
 - 의회는 게마인데의 법률상 단체장이 담당하거나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된 특정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의결함
 - 의원은 명예직으로, 단체장이 첫 의회 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직무 수행의무를 부과하게 됨
 - 의원에 대한 직무관계 해지 또는 해고, 전보, 직무상의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음

〈표 6-1〉 의회의 구성 및 권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24 Rechtsstellung und Aufgaben (1) Der Gemeinderat ist die Vertretung der Bürger und das Hauptorgan der Gemeinde. Er legt die Grundsätze für die Verwaltung der Gemeinde fest und entscheidet über alle Angelegenheiten der Gemeinde, soweit nicht der Bürgermeister kraft Gesetzes zuständig ist oder ihm der Gemeinderat bestimmte Angelegenheiten überträgt. Der Gemeinderat überwacht die Ausführung seiner Beschlüsse und sorgt beim Auftreten von Missständen in der Gemeindeverwaltung für deren Beseitigung durch den Bürgermeister.</p> <p>§ 32 Rechtsstellung der Gemeinderäte (1) Die Gemeinderäte sind ehrenamtlich tätig. Der Bürgermeister verpflichtet die Gemeinderäte in der ersten Sitzung öffentlich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Amtspflichten.</p>	<p>제24조 법률상 지위와 수행과제 (1) 게마인데 의회는 주민을 대리하는 게마인데의 주요 기관이다. 의회는 게마인데의 행정원칙을 확정하고, 법률상 단체장이 담당하지 않거나 게마인데에서 단체장에게 특정 사안을 위임하지 않는 한, 게마인데의 모든 사안을 의결한다. 게마인데 의회는 결정사항의 시행을 감시하고 게마인데 행정상 부정이 발생할 경우 단체장이 해결하도록 한다.</p> <p>제32조 게마인데 의회의 법적 지위 (1) 게마인데 의원은 명예직이다. 단체장은 첫 회의에서 게마인데 의원에 대하여 공적으로 성실한 직무 수행의무를 부과한다. (2) 누구도 게마인데 의원이 직무를 부여받고 수행하는 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근로 또는 직무관계 해지 또는 해고, 다른 근무 장소로 발령, 기타 직무상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는다. 게마인데 의원이 근무 또는 직무관계에 있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2) Niemand darf gehindert werden, das Amt eines Gemeinderats zu übernehmen und auszuüben. Eine Kündigung oder Entlassung aus einem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 eine Versetzung an einen anderen Beschäftigungsort und jede sonstige berufliche Benachteiligung aus diesem Grund sind unzulässig. Steht der Gemeinderat in einem Dienst- oder Arbeitsverhältnis, ist ihm die für seine Tätigkeit erforderliche freie Zeit zu gewähren.	

○ 의원선거

-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 의회의 소집

- 단체장은 서면 또는 전자로 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의결사항을 통지해야 함
- 의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소집이 가능하며, 최소 월 1회 소집되어야 함
- 의원 4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함
- 의결사안은 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

○ 의회 의결

- 정규 소집되어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만 의결이 가능함
- 최소 의결권자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결 능력이 발생함
- 위원 중 절반 이상이 편향될 경우, 위원 중 4분의 1이상이 참석하고 의결 권을 가지면 의결 능력이 발생함
- 의원의 불참 또는 편향으로 의결능력이 없을 경우, 적어도 의원 3명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어야 함
- 의결은 공개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됨

- 단체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득표가 동수일 경우 신청은 기각됨

〈표 6-2〉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26 Wahlgrundsätze (1) Die Gemeinderäte werde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von den Bürgern gewählt.</p> <p>§ 30 Amtszeit (1) Die Amtszeit der Gemeinderäte beträgt fünf Jahre.</p>	<p>제26조 선거원칙 (1) 게마인데 의회는 주민들의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p> <p>제30조 임기 (1) 게마인데 의회의 임기는 5년이다.</p>
<p>§ 34 Einberufung der Sitzungen, Teilnahmepflicht (1) Der Bürgermeister beruft den Gemeinderat schriftlich oder elektronisch mit angemessener Frist ein und teilt rechtzeitig, in der Regel mindestens sieben Tage vor dem Sitzungstag, die Verhandlungsgegenstände mit; dabei sind die für die Verhandlung erforderlichen Unterlagen beizufügen, soweit nicht das öffentliche Wohl oder berechtigte Interessen Einzelner entgegenstehen. Der Gemeinderat ist einzuberufen, wenn es die Geschäftslage erfordert; er soll jedoch mindestens einmal im Monat einberufen werden. Der Gemeinderat ist unverzüglich einzuberufen, wenn es ein Viertel der Gemeinderäte unter Angabe des Verhandlungsgegenstands beantragt.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eines Sechstels der Gemeinderäte ist ein Verhandlungsgegenstand auf die Tagesordnung spätestens der übernächsten Sitzung des Gemeinderats zu setzen. Die Verhandlungsgegenstände müssen zum Aufgabengebiet des Gemeinderats gehören. Sätze 3 und 4 gelten nicht, wenn der Gemeinderat den gleichen Verhandlungsgegenstand innerhalb der</p>	<p>제34조 회의 소집, 참석의무 (1) 단체장은 적정 기한을 두고 게마인데 의회를 서면 또는 전자로 소집하고,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의결사항을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 한,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게마인데 의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그러나 최소 월 1회 소집되어야 한다. 게마인데 의회는 게마인데 의원 4분의 1 이상이 의결대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자체 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게마인데 의회의 6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의결사항을 늦어도 다음 다음 게마인데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결대상은 게마인데 의회의 업무영역에 속해야 한다. 게마인데 의회에서 동일한 의결대상을 최근 6개월 내 이미 논의한 경우에는 제3문과 제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 회의의 시간, 장소, 의사일정은 적기에 관습대로 공고하여야 한다.</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letzten sechs Monate bereits behandelt hat. Zeit, Ort und Tagesordnung der öffentlichen Sitzungen sind rechtzeitig ortsüblich bekannt zu geben.</p>	
<p>§ 37 Beschlussfassung (1) Der Gemeinderat kann nur in einer ordnungsmäßig einberufenen und geleiteten Sitzung beraten und beschließen. Über Gegenstände einfacher Art kann im Wege der Offenlegung oder im schriftlichen oder elektronischen Verfahren beschlossen werden; ein hierbei gestellter Antrag ist angenommen, wenn kein Mitglied widerspricht. (2) Der Gemeinderat ist beschlussfähig, wenn mindestens die Hälfte aller Mitglieder anwesend und stimmberechtigt ist. Bei Befangenheit von mehr als der Hälfte aller Mitglieder ist der Gemeinderat beschlussfähig, wenn mindestens ein Viertel aller Mitglieder anwesend und stimmberechtigt ist. (3) Ist der Gemeinderat wegen Abwesenheit oder Befangenheit von Mitgliedern nicht beschlussfähig, muss eine zweite Sitzung stattfinden, in der er beschlussfähig ist, wenn mindestens drei Mitglieder anwesend und stimmberechtigt sind; bei der Einberufung der zweiten Sitzung ist hierauf hinzuweisen. Die zweite Sitzung entfällt, wenn weniger als drei Mitglieder stimmberechtigt sind. (6) Der Gemeinderat stimmt in der Regel offen ab. Die Beschlüsse werden mit Stimmenmehrheit gefasst. Der Bürgermeister hat Stimmrecht; bei Stimmgleichheit ist der Antrag abgelehnt.</p>	<p>제37조 의결 (1) 게마인데 의회는 정규 소집되어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만 자문하고 의결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사안은 공개 또는 서면, 전자 방식으로 의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어떠한 위원도 반대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진다. (2) 게마인데 의회는 최소한 의결권자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결 능력이 발생한다. 의원 중 절반 이상이 편파적일 경우 최소한 의원 중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의결권을 지니면, 게마인데 의회에 의결 능력이 발생한다. (3) 게마인데 의회가 의원의 불참 또는 편견으로 의결능력이 없을 경우, 의결능력이 있는 최소 3명의 의원 참석으로 의결능력이 발생하는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두 번째 회의 소집 시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두 번째 회의는 3명 미만의 의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취소된다. (6) 게마인데 의회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투표한다. 의결은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단체장도 투표권이 있다; 득표 동수일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p>

○ 위원회 구성

- 의결 소위원회는 의회 의장과 최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의회 의장인 단체장이 의결 소위원회의 의장이 됨
- 의회는 의결 준비 또는 개별 의결사안 준비를 위해 게마인데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단체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으로 의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의장으로서 투표권을 가짐

〈표 6-3〉 위원회 구성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40 Zusammensetzung der beschließenden Ausschüsse</p> <p>(1) Die beschließenden Ausschüsse bestehen aus dem Vorsitzenden und mindestens vier Mitgliedern. Der Gemeinderat bestellt die Mitglieder und Stellvertreter widerruflich aus seiner Mitte. Nach jeder Wahl der Gemeinderäte sind die beschließenden Ausschüsse neu zu bilden. In die beschließenden Ausschüsse können durch den Gemeinderat sachkundige Einwohner widerruflich als beratende Mitglieder berufen werden; ihre Zahl darf die der Gemeinderäte in den einzelnen Ausschüssen nicht erreichen.</p> <p>(3) Vorsitzender der beschließenden Ausschüsse ist der Bürgermeister; er kann einen seiner Stellvertreter, einen Beigeordneten oder, wenn alle Stellvertreter oder Beigeordneten verhindert sind, ein Mitglied des Ausschusses, das Gemeinderat ist, mit seiner Vertretung beauftragen.</p> <p>§ 41 Beratende Ausschüsse</p> <p>(1) Zur Vorberatung seiner Verhandlungen oder einzelner Verhandlungsgegenstände kann der Gemeinderat beratende</p>	<p>제40조 의결 소위원회의 구성</p> <p>(1) 의결 소위원회는 의장과 최소한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게마인데 위원회는 철회 가능한 상태로 위원 중에서 위원과 대리인을 임명한다. 게마인데 위원회의 모든 선거 후 의결 소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게마인데 위원회는 철회 가능한 상태로 의결 소위원회에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을 자문역에 임명할 수 있다; 인원수는 개별 소위원회의 게마인데 위원 수를 넘어설 수 없다.</p> <p>(3) 의결 소위원회의 의장은 시장이다; 시장은 대리인으로 시의원을 지명하거나 모든 대리인 또는 시의원의 대리가 불가능할 경우 게마인데 위원인 위원회 구성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41조 자문 소위원회</p> <p>(1) 의결의 준비 또는 개별 의결사안의 준비를 위해 게마인데 위원회는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 소위원회는 게마인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게마인데 위원회는 자문 소위원회에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을 철회 가능한 형태로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원수는 개별 소위원회의 게마인데 위원 수를 넘어설 수 없다; 해당 구성원은 명예직이다; 제32조제2절이 준용된다.</p> <p>(2) 자문 소위원회의 의장은 시장이다. 시장은 대리인으로 시의원 또는 게마인데 위원인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시의원은 의장으로서 투표권을 지닌다.</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Ausschüsse bestellen. Sie werden aus der Mitte des Gemeinderats gebildet. In die beratenden Ausschüsse können durch den Gemeinderat sachkundige Einwohner widerruflich als Mitglieder berufen werden; ihre Zahl darf die der Gemeinderäte in den einzelnen Ausschüssen nicht erreichen; sie sind ehrenamtlich tätig; § 32 Abs. 2 gilt entsprechend.</p> <p>(2) Den Vorsitz in den beratenden Ausschüssen führt der Bürgermeister. Er kann einen seiner Stellvertreter, einen Beigeordneten oder ein Mitglied des Ausschusses, das Gemeinderat ist, mit seiner Vertretung beauftragen; ein Beigeordneter hat als Vorsitzender Stimmrecht.</p>	

○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 단체장은 게마인데 의회의 의장이자 행정의 장이며, 게마인데를 대표함
- 게마인데 공무원의 상관, 직무상관 및 최상위 상급 관청으로의 지위를 가짐
- 단체장의 임기는 8년이며, 단체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함
- 단체장은 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집행함
- 긴급한 사안은 의회의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긴급의결 사유 및 해당 사안은 의원들에게 즉각 통지되어야 함
- 단체장은 의회에 행정상 모든 중요 사안을 보고해야 함
- 단체장은 행정을 관할하며, 행정업무의 적절하고 적법한 수행 및 내부조직의 운영 등을 총괄함

〈표 6-4〉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42 Rechtsstellung des Bürgermeisters (1) Der Bürgermeister ist Vorsitzender des Gemeinderats und Leiter der Gemeindeverwaltung. Er vertritt die Gemeinde. (3) Die Amtszeit des Bürgermeisters beträgt acht Jahre. Die Amtszeit beginnt mit dem Amtsantritt, im Fall der Wiederwahl schließt sich die neue Amtszeit an das Ende der vorangegangenen Amtszeit an.</p> <p>§ 43 Stellung im Gemeinderat (1) Der Bürgermeister bereitet die Sitzungen des Gemeinderats und der Ausschüsse vor und vollzieht die Beschlüsse. (4) In dringenden Angelegenheiten des Gemeinderats, deren Erledigung auch nicht bis zu einer ohne Frist und formlos einberufenen Gemeinderatssitzung (§ 34 Abs. 2) aufgeschoben werden kann, entscheidet der Bürgermeister an Stelle des Gemeinderats. Die Gründe für die Eilentscheidung und die Art der Erledigung sind den Gemeinderäten unverzüglich mitzuteilen. Das Gleiche gilt für Angelegenheiten, für deren Entscheidung ein beschließender Ausschuss zuständig ist. (5) Der Bürgermeister hat den Gemeinderat über alle wichtigen die Gemeinde und ihre Verwaltung betreffenden Angelegenheiten zu unterrichten; bei wichtigen Planungen ist der Gemeinderat möglichst frühzeitig über die Absichten und Vorstellungen der Gemeindeverwaltung und laufend über den Stand und den Inhalt der Planungsarbeiten zu unterrichten. Über wichtige Angelegenheiten, die nach § 44 Abs. 3 Satz 3 geheim zu halten sind, ist der nach § 55 gebildete Beirat zu unterrichten. Die Unterrichtung des Gemeinderats über die in</p>	<p>제42조 단체장의 법적 지위 (1) 단체장은 게마인데 의회의 의장이자 게마인데 행정의 장이다. 또한 게마인데를 대표한다. (3) 단체장의 임기는 8년이다. 임기는 취임으로 개시되고 재선의 경우 새로이 시작되는 직무기간이 이전 직무기간에 연속된다.</p> <p>제43조 게마인데 위원회 내 지위 (1) 단체장은 게마인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4) 기한을 두지 않은, 형식 없이 소집된 게마인데 회의(제34조제2절)까지 미룰 수 없는 게마인데 의회의 긴급한 사안은 단체장이 게마인데 의회 대신 결정한다. 긴급의결 사유와 처리유형은 게마인데 의원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 위원회가 결의를 담당하는 사안도 동일하다. (5) 단체장은 게마인데 의회에 게마인데와 행정상 모든 중요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중요 계획 시 게마인데 의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게마인데 행정의 의의, 계획의 상황과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44조제3절제3문에 따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 사안은 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고문단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2문의 사안에 관한 게마인데 의회 보고는 배제된다.</p> <p>제44조 게마인데 행정의 운영 (1) 단체장은 게마인데 행정을 관할한다. 단체장은 업무의 적절한 처리와 행정의 적법한 운영을 담당하고 게마인데 행정의 내부 조직을 규율하며 게마인데 의회의 동의로 시의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한다. (4) 단체장은 게마인데 공무원의 상관, 직무상관 및 최상위 상급 관청이다.</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Satz 2 genannten Angelegenheiten ist ausgeschlossen.</p> <p>§ 44 Leitung der Gemeindeverwaltung (1) Der Bürgermeister leitet die Gemeindeverwaltung. Er ist für die sachgemäße Erledigung der Aufgaben und den ordnungsmäßigen Gang der Verwaltung verantwortlich, regelt die innere Organisation der Gemeindeverwaltung und grenzt im Einvernehmen mit dem Gemeinderat die Geschäftskreise der Beigeordneten ab. (4) Der Bürgermeister ist Vorgesetzter, Dienstvorgesetzter und oberste Dienstbehörde der Gemeindebediensteten.</p>	

○ 단체장 선거

- 단체장은 시민 직선으로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됨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단체장으로 선출됨

〈표 6-5〉 단체장 선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45 Wahlgrundsätze (1) Der Bürgermeister wird von den Bürger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gewählt. Die Wahl ist nach den Grundsätzen der Mehrheitswahl durchzuführen. Gewählt ist, wer mehr als die Hälfte der gültigen Stimmen erhalten hat. (2) Entfällt auf keinen Bewerber mehr als die Hälfte der gültigen Stimmen, findet</p>	<p>제45조 선거원칙 (1) 단체장은 주민들이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다수결 선거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유효 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2) 어떠한 후보도 유효 표 중 절반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 선거 후 빠르면 두 번째 일요일, 늦어도 네 번째 일요일에 새로이 선거가 진행된다. 새로운 선거에는 첫 번째 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 최대 투표수로 결정되고 득표 동수일 경우 추첨된다. 새로운</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frühestens am zweiten und spätestens am vierten Sonntag nach der Wahl Neuwahl statt. Für die Neuwahl gelten die Grundsätze der ersten Wahl; es entscheidet die höchste Stimmenzahl und bei Stimmgleichheit das Los. Eine nochmalige Stellenausschreibung ist nicht erforderlich.	입후보자 모집은 불필요하다.

○ 부단체장 임명

- 게마인데 의회 의원 중 한명 또는 다수의 단체장 대리인으로서의 부단체장을 임명함
- 부단체장의 업무수행은 단체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며, 의원선거마다 새로운 부단체장을 임명함

〈표 6-6〉 부단체장 임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48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1) In Gemeinden ohne Beigeordnete (§ 49) bestellt der Gemeinderat aus seiner Mitte einen oder mehrere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 46 Abs. 3 findet keine Anwendung. Die Stellvertretung beschränkt sich auf die Fälle der Verhinderung. Die Stellvertreter werden nach jeder Wahl der Gemeinderäte neu bestellt. Sie werden in der Reihenfolge der Stellvertretung je in einem besonderen Wahlgang gewählt. Sind alle bestellten Stellvertreter vorzeitig ausgeschieden oder sind im Fall der Verhinderung des Bürgermeisters auch alle Stellvertreter verhindert, hat der Gemeinderat unverzüglich einen oder mehrere Stellvertreter neu oder für die Dauer der Verhinderung zusätzlich zu bestellen.</p>	<p>제48조 부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1) 시의원(보조자, 부관)이 없는 게마인데(제49조)는 게마인데 의회 의원 중 한 명 또는 다수의 단체장 대리인을 임명한다. 제46조제3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는 시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부단체장은 게마인데 위원 선거마다 새로이 임명된다. 부단체장은 대리 순서대로 특수한 표결로 선정된다. 임명된 모든 부단체장이 임기 종료 전 퇴임하거나 단체장의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부단체장도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게마인데 의회는 지체 없이 한 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새로이 임명하거나 업무 불능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p>

2) 기관 간 관계

○ 공무원 관련 의결

- 의회는 단체장과 함께 게마인데 공무원의 임명, 고용,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의회와 단체장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회는 회의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단독 의결함
- 의회에서 단체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해당 결정이 지속적인 행정에 포함될 경우에는 단체장이 결정함

○ 보고 및 정보의 제공

- 의회는 단체장에게 의회 분과 또는 의회 구성원 6분의 1의 동의로 게마인 데의 모든 사안과 행정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의회는 단체장에게 특정 사안에 관하여 서면, 전자 또는 의회를 통해 구두 질의를 할 수 있고, 단체장은 적정 기한 내 답변해야 함

○ 단체장의 반대 또는 이의 제기

-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행위는 의결 후 1주일 내 이루어져야 함
- 반대는 해당 사안의 지연 효과가 있으며, 의회는 회의를 첫 회의 후 3주 내 재차 소집하고 해당 사안을 다시 의결해야 함
- 단체장이 새로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차 반대할 경우, 법적 감독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표 6-7〉 기관 간 관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24 Rechtsstellung und Aufgaben (2) Der Gemeinderat entscheidet im Einvernehmen mit dem Bürgermeister über die Ernennung, Einstellung und Entlassung</p>	<p>제24조 법률상 지위와 수행과제 (2) 게마인데 의회는 단장과 함께 게마인데 공무원 의 임명, 고용, 해임을 의결한다. 본 사항은 피고용 인의 일시적이지 않은 직무 이관 및 임금 협약상</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der Gemeindebediensteten; das Gleiche gilt für die nicht nur vorübergehende Übertragung einer anders bewerteten Tätigkeit bei einem Arbeitnehmer sowie für die Festsetzung des Entgelts, sofern kein Anspruch auf Grund eines Tarifvertrags besteht. Kommt es zu keinem Einvernehmen, entscheidet der Gemeinderat mit ein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Stimmen der Anwesenden allein. Der Bürgermeister ist zuständig, soweit der Gemeinderat ihm die Entscheidung überträgt oder diese zur laufenden Verwaltung gehört. Rechte des Staates bei der Ernennung und Entlassung von Gemeindebediensteten, die sich aus anderen Gesetzen ergeben, bleiben unberührt.</p> <p>(3) Eine Fraktion oder ein Sechstel der Gemeinderäte kann in allen Angelegenheiten der Gemeinde und ihrer Verwaltung verlangen, dass der Bürgermeister den Gemeinderat unterrichtet. Ein Viertel der Gemeinderäte kann in Angelegenheiten im Sinne von Satz 1 verlangen, dass dem Gemeinderat oder einem von ihm bestellten Ausschuss Akteneinsicht gewährt wird. In dem Ausschuss müssen die Antragsteller vertreten sein.</p> <p>(4) Jeder Gemeinderat kann an den Bürgermeister schriftliche, elektronische oder in einer Sitzung des Gemeinderats mündliche Anfragen über einzelne Angelegenheiten im Sinne von Absatz 3 Satz 1 richten, die binnen angemessener Frist zu beantworten sind. Das Nähere ist in der Geschäftsordnung des Gemeinderats zu regeln.</p>	<p>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보상 확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게마인데 의회에서는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단독 의결한다. 게마인데 의회에서 시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거나 결정이 지속적인 행정에 포함될 경우에는 단체장이 담당한다. 타 법률에 따른 게마인데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시 국가의 권리는 유지된다.</p> <p>(3) 게마인데 의회의 분과 또는 구성원 6분의 1의 동의로 게마인데의 모든 사안과 행정에 관하여 단체장이 게마인데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게마인데 의회의 4분의 1은 제1문에 따른 사안에서 게마인데 의회 또는 의회에서 임명한 위원회에 서류 열람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회 내 신청자들이 대리되어야 한다.</p> <p>(4) 게마인데 의회는 단체장에게 제3조제1문에 따라 개별 사안에 관하여 서면, 전자 또는 게마인데 의회 회의를 통해 구두 질의를 할 수 있고, 해당 질의는 적정 기한 내 응답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게마인데 의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p> <p>제43조 게마인데 의회 내 지위</p> <p>(2) 단체장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마인데 의회의 결의에 반대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게마인데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반대는 즉시, 늦어도 의결 후 1주일 내로 게마인데 의원들을 상대로 표명하여야 한다. 반대는 지연 효과가 있다. 동시에 반대사유를 제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사안을 새로이 의결한다; 본 회의를 늦어도 첫 회의 후 3주 내로 개최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결의도 위법할 경우 재반박한 후 법적 감독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p>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원문	번역
<p>§ 43 Stellung im Gemeinderat (2) Der Bürgermeister muss Beschlüssen des Gemeinderats widersprechen, wenn er der Auffassung ist, dass sie gesetzwidrig sind; er kann widersprechen, wenn er der Auffassung ist, dass sie für die Gemeinde nachteilig sind. Der Widerspruch muss unverzüglich, spätestens jedoch binnen einer Woche nach Beschlussfassung gegenüber den Gemeinderäten ausgesprochen werden. Der Widerspruch hat aufschiebende Wirkung. Gleichzeitig ist unter Angabe der Widerspruchsründe eine Sitzung einzuberufen, in der erneut über die Angelegenheit zu beschließen ist; diese Sitzung hat spätestens drei Wochen nach der ersten Sitzung stattzufinden. Ist nach Ansicht des Bürgermeisters auch der neue Beschluss gesetzwidrig, muss er ihm erneut widersprechen und unverzüglich die Entscheidung der Rechtsaufsichtsbehörde herbeiführen.</p>	

2. 이원제 시장형: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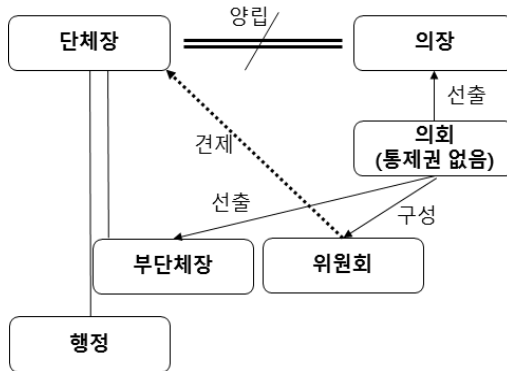
□ 지역 개요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독일 북동부인 구 동독 지역에 위치하며, 독일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면적은 23,211.25km², 인구는 1,609,675명, 인구밀도는 69명/km²으로 나타남
 -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관광으로 나타남

□ 기관구성 체계도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6-3>과 같으며, 이원제 시장형에 해당됨

<그림 6-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 의회의 구성 및 권한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며, 게마인데의 최상위 의사결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의회는 법률, 회칙 또는 의회 결정으로 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모든 중요 사항의 담당 및 결정사항의 시행을 감시함
- 의회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최상위 관청이자 단체장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특정 권한을 상임위원회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의회 의장은 게마인데 의원들 중에서 선출됨

〈표 6-8〉 의회의 구성 및 권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22 Gemeindevertretung (1) Die Gemeindevertretung ist die Vertretung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und das oberste Willensbildungs- und Beschlussorgan der Gemeinde. (2) Die Gemeindevertretung ist für alle wichtigen Angelegenheiten der Gemeinde zuständig und überwacht die Durchführung ihrer Entscheidungen, soweit nicht durch Gesetz, Hauptsatzung oder Beschluss der Gemeindevertretung eine Übertragung auf den Hauptausschuss oder den Bürgermeister stattgefunden hat. Wichtig sind, neben den der Gemeindevertretung gesetzlich zugewiesenen Aufgaben, Angelegenheiten, die aufgrund ihrer politischen Bedeutung, ihrer wirtschaftlichen Auswirkungen oder als Grundlage für Einzelentscheidung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für die Gemeinde sind. Die Gemeindevertretung kann Angelegenheiten, die sie übertragen hat, auch im Einzelfall jederzeit an sich ziehen. Wurde eine Angelegenheit durch die Hauptsatzung übertragen, kann die Gemeindevertretung sie nur durch Beschluss mit der Mehrheit aller Mitglieder an sich ziehen.</p>	<p>제22조 게마인데 의회 (1) 게마인데 의회는 주민과 게마인데의 최상위 의사결정 및 의결기관을 대표한다. (2) 법률, 회칙 또는 게마인데 의회의 결정으로 상임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게마인데 의회는 게마인데의 모든 중요 사안을 담당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감시한다. 게마인데 의회에 법적으로 위임된 과제 외에도 정치적인 의의, 경제적 영향 또는 개별 결정의 기초로 게마인데에 원칙적인 의의가 있는 사안이 중요하다. 게마인데 의회는 위임한 사안을 개별 사례로도 언제나 다시 귀속시킬 수 있다. 사안이 회칙으로 위임된 경우 게마인데 의회는 모든 의원의 다수결로 다시 귀속시킬 수 있다. (5) 게마인데 의회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최상위 관할 관청이다. 게마인데 의회는 법률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권한을 상임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체장과 시의원의 최상위 관할 관청으로서의 과제는 위임이 불가능하다. 게마인데 의회는 단체장과 협의로 제1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이는 게마인데 의회의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게마인데 의회는 단체장의 직무상관이다. 징계권은 없다. 단체장이 위임된 업무범위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게마인데 의회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절제1문에 따른 진술하기를 전문감독기관의 동의로 부여할 수 있다.</p>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5) Die Gemeindevertretung ist,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oberste Dienstbehörde. Sie kann ihre Befugnisse insoweit auf den Hauptausschuss oder auf den Bürgermeister übertragen, soweit durch Gesetz oder aufgrund eines Gesetzes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ie Aufgaben als oberste Dienstbehörde des Bürgermeisters und der Beigeordneten sind nicht übertragbar. Die Gemeindevertretung übt ihre Befugnisse nach Satz 1 im Einvernehmen mit dem Bürgermeister aus, das durch Beschluss mit der Mehrheit aller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ersetzt werden kann. Die Gemeindevertretung ist Dienstvorgesetzter des Bürgermeisters; sie hat keine Disziplinarbefugnis. Führt der Bürgermeister Aufgaben des übertragenen Wirkungskreises durch, darf die Gemeindevertretung</p> <p>Aussagegenehmigungen nach § 47 Absatz 1 Satz 1 des Landesbeamtengesetzes nur mit Zustimmung der Fachaufsichtsbehörde erteilen.</p> <p>§ 28 Konstituierung der Gemeindevertretung, Vorsitz</p> <p>(2) In haupt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wird unter der Leitung des ältesten Mitglieds aus der Mitte der Gemeindevertretung die oder der Vorsitzende gewählt.</p>	<p>제28조 게마인데 의회의 조직, 의장</p> <p>(2) 상임 게마인데는 최고령 구성원의 주도 하에 게마인데 의회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p>

○ 의원선거

- 의회 구성원은 주민을 통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 후에도 새로 선출된 의회 소집 시까지 역할을 계속 수행함

○ 의회의 소집

- 의회는 지방 선거 후 6주 이내에 의회 또는 의회의 전 의장에 의해 소집됨
- 최고령 의원의 주도로 의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의장은 의회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짐

○ 의결

- 의회 구성원이 적법하게 소집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의결능력이 있음
-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의결은 참석한 구성원의 단순 다수결을 통한 공개 투표로 이루어지며, 찬성 득표가 반대 득표보다 많은 경우 단순 과반수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함

〈표 6-9〉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23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1) Die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werden von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auf die Dauer von fünf Jahren gewählt. Das Nähere regelt das Landes- und Kommunalwahlgesetz.</p>	<p>제23조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 (1)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은 주민을 통해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세부사항은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규정한다.</p>
<p>§ 28 Konstituierung der Gemeindevertretung, Vorsitz (1) Die Gemeindevertretung tritt innerhalb von sechs Wochen nach einer Kommunalwahl zu ihrer konstituierenden Sitzung zusammen. Die Einberufung erfolgt durch die oder den bisherigen Vorsitzenden der Gemeindevertretung. Das an Lebensjahren älteste Mitglied der Gemeindevertretung eröffnet die Sitzung. (2) In haupt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wird unter der Leitung des ältesten Mitglieds aus der Mitte der</p>	<p>제28조 게마인데 의회의 조직, 의장 (1) 게마인데 의회는 지방 선거 후 6주 내 구성 회의로 소집된다. 소집은 게마인데 의회 또는 게마인데 의회의 전임 의장을 통해 진행된다. 게마인데 의회의 최고령자가 회의를 개회한다. (2) 상임 게마인데는 최고령 구성원의 주도 하에 게마인데 의회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최고령 구성원은 선출된 자에게 약속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회의를 주도하도록 한다. 의장은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에게 약속로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당부한다.</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Gemeindevertretung die oder der Vorsitzende gewählt. Das älteste Mitglied verpflichtet die gewählte Person durch Handschlag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Pflichten und übergibt ihr die Leitung der Sitzung. Die oder der Vorsitzende verpflichtet die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durch Handschlag auf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Pflichten.</p>	
<p>§ 30 Beschlussfähigkeit (1) Die Gemeindevertretung ist beschlussfähig, wenn alle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ordnungsgemäß geladen wurden und mehr als die Hälfte davon zur Sitzung anwesend ist. Ein Mangel der Ladung ist unbeachtlich, wenn das betroffene Mitglied zur Sitzung erscheint. Die Beschlussfähigkeit ist zu Beginn der Sitzung durch die Vorsitzende oder den Vorsitzenden festzustellen. Danach bleibt die Gemeindevertretung so lange beschlussfähig, bis die oder der Vorsitzende von sich aus oder auf Antrag eines Mitglieds die Beschlussunfähigkeit feststellt. Dieses Mitglied zählt zu den Anwesenden. Die oder der Vorsitzende hat die Beschlussunfähigkeit festzustellen, wenn weniger als ein Drittel aller Mitglieder anwesend ist.</p> <p>§ 31 Beschlussfassung (1) Beschlüsse der Gemeindevertretung werden, soweit nicht das Gesetz etwas anderes vorsieht, mit einfacher 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in offener Abstimmung gefasst. Die einfache Mehrheit ist erreicht, wenn die Zahl der Ja-Stimmen die der Nein-Stimmen übersteigt.</p>	<p>제30조 의결능력 (1) 게마인데 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적법하게 소집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의결능력이 있다. 해당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소집상 결함은 중요하지 않다.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의결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 후 게마인데 의회는 의장이 스스로 또는 구성원의 신청으로 의결 능력을 확인할 때까지 의결능력이 유지된다. 해당 구성원은 참석자에 속한다. 의장은 모든 구성원 중 3분의 1 미만이 참석한 경우 의결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p> <p>제31조 의결 (1) 법률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게마인데 의회의 의결은 게마인데 의회의 참석 구성원의 단순 다수결을 통한 공개 투표로 정한다. 찬성 득표수가 반대 득표수를 넘어설 경우 단순 과반수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 기권 표와 무효표는 중요하지 않다. 법률상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 비율을 정할 경우, 비율은 임기 중 보궐선거를 통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는 의석수를 제외한 구성원의 법정 수에 따라 산정된다. 선거가 아닌 인력 결정에는 제32조제1절제2문 및 제3문이 준용된다.</p>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Stimmhaltungen und ungültige Stimmen sind unbeachtlich. Sieht das Gesetz einen Anteil aller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vor, so berechnet sich dieser nach der gesetzlichen Zahl der Mitglieder, vermindert um die in der laufenden Wahlperiode außer durch eine Ergänzungswahl nicht wieder besetzbaren Mandate. Für Personalentscheidungen, die keine Wahlen sind, gilt § 32 Absatz 1 Satz 2 und 3 entsprechend.</p>	

○ 위원회 구성

-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됨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모든 소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며, 의회의 결정이나 회칙으로 위임된 사안을 결정함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인가를 받아 의회의 긴급회의까지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긴급 사안을 결정할 수 있음
- 의회는 의결 준비를 위해 고정 또는 일시적인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재정위원회는 필수 설치 조직으로, 게마인데의 예산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계획의 이행 및 재무계획상 요구되는 결정사항을 준비함
- 단체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신청으로 참석할 의무가 발생함
- 의회 구성원은 자문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음

〈표 6-10〉 위원회 구성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게마인데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35 Hauptausschuss (1) In haupt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bildet die Gemeindevertretung einen Hauptausschuss. In anderen Gemeinden kann ein Hauptausschuss gebildet werden. Die Hauptsatzung bestimmt, wie viele Mitglieder der Hauptausschuss hat und ob stellvertretende Mitglieder zu wählen sind. Die Besetzung erfolgt nach den Grundsätzen der Verhältniswahl. Vorsitzendes Mitglied des Hauptausschusses ist der Bürgermeister. In ehren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hat der Bürgermeister bei der Besetzung des Hauptausschusses seine Stimme offen abzugeben. Sein Mandat ist auf den Wahlvorschlag anzurechnen, für den er gestimmt hat. (2) Der Hauptausschuss koordiniert die Arbeit aller Ausschüsse der Gemeindevertretung. Er entscheidet nach den von der Gemeindevertretung festgelegten Richtlinien über die Planung der Verwaltungsaufgaben von besonderer Bedeutung. Er entscheidet in Angelegenheiten, die ihm durch Beschluss der Gemeindevertretung oder durch die Hauptsatzung übertragen sind. Der Hauptausschuss entscheidet auch in dringenden Angelegenheiten, deren Erledigung nicht bis zu einer Dringlichkeitssitzung der Gemeindevertretung aufgeschoben werden kann. Diese Entscheid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urch die Gemeindevertretung.</p>	<p>§ 35 상임위원회 (1) 상임으로 관리되는 게마인데는 게마인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른 게마인데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회칙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인원 및 대리권자 선정 여부를 정한다. 보직은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른다. 상임위원회 의장은 단체장이다. 명예직으로 관리되는 게마인데는 단체장이 상임위원회 보직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단체장의 의석은 본인이 표결한 이후보자 추천에 산입된다. (2) 상임위원회는 게마인데 의회의 모든 소위원회 업무를 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게마인데 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특별한 의의가 있는 행정 계획을 결정한다. 또한 게마인데 의회의 결정이나 회칙으로 위임된 사안을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게마인데 의회의 긴급회의까지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긴급 사안을 결정한다. 본 결정은 게마인데 의회의 인가를 요한다.</p> <p>제36조 자문 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 (1) 게마인데 의회는 의결의 준비를 위해 고정 또는 일시적인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보직은 비례대표제 원칙에 따른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회칙으로 소위원회의 설치, 구성, 과제를 정한다. 또한 회칙으로 대리권 있는 구성원의 선정 여부도 정하게 된다. (2) 모든 게마인데에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회칙으로 재정위원회의 과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는 게마인데의 예산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계획의 이행과 재무계확상 요구되는 결정사항을 준비한다. 재정위원회는 게마인데의 예산 운영을 관리할 수 있다. 모든 게마인데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청에 속하는 게마인데는 관청의 회계감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3) 단체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권리가 있다. 단체장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신청으로 참석할 의무가 발생한다. 시의원의 업무범</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게마인데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36 Beratende und weitere Ausschüsse (1) Die Gemeindevertretung kann zur Vorbereitung ihrer Beschlüsse ständige oder zeitweilige Ausschüsse bilden, die beratend tätig werden. Die Besetzung der Ausschüsse erfolgt nach den Grundsätzen der Verhältniswahl. Soweit nicht gesetzlich vorgeschrieben, regelt die Hauptsatzung Bildung, Zusammensetzung und Aufgaben der Ausschüsse. Sie bestimmt auch, ob stellvertretende Mitglieder zu wählen sind. (2) In jeder Gemeinde ist ein Finanzausschuss zu bilden. Die Hauptsatzung kann vorsehen, dass die Aufgaben des Finanzausschusses vom Hauptausschuss wahrgenommen werden. Der Finanzausschuss bereitet die Haushaltssatzung der Gemeinde und die für die Durchführung des Haushaltsplanes und des Finanzplanes erforderlichen Entscheidungen vor. Er kann die Haushaltsführung der Gemeinde begleiten. In jeder Gemeinde ist ein Rechnungsprüfungsausschuss nach dem Kommunalprüfungsgesetz zu bilden. Amtsangehörige Gemeinden können den Rechnungsprüfungsausschuss des Amtes in Anspruch nehmen. (3) Der Bürgermeister hat das Recht, beratend an allen Ausschusssitzungen teilzunehmen. Er ist auf Antrag der Mehrheit aller Mitglieder eines Ausschusses zur Teilnahme verpflichtet. Gleiches gilt für die Beigeordneten in Angelegenheiten ihres Geschäftsbereichs. (6) Die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haben das Recht, den Sitzungen der beratenden Ausschüsse beizuwohnen. Die Hauptsatzung kann bestimmen, dass die Ausschusssitzungen öffentlich stattfinden.</p>	<p>위 내 사안도 동일하다. (6)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은 자문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회칙으로 위원회 회의가 공개적으로 개최되도록 정할 수 있다.</p>

○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 단체장은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로, 행정을 관장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상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 단체장은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준비 및 집행하며, 경제적인 의의가 크지 않은 결정이나 임금 관련 결정과 같은 지속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함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며, 긴급한 사안은 단체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의 인가를 받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를 대신하여 결정함
- 단체장은 행정부 내부의 조직 규정과 업무분배를 담당함

〈표 6-11〉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38 Hauptamtlicher Bürgermeister (2) Der Bürgermeister ist gesetzlicher Vertreter der Gemeinde. Er leitet die Verwaltung und ist für die sachgerechte Erledigung der Aufgaben und den ordnungsgemäßen Gang der Verwaltung verantwortlich. Der Bürgermeister führt mit den ihm unmittelbar nachgeordneten leitenden Bediensteten regelmäßige Beratungen durch, um eine einheitliche Verwaltungsführung zu gewährleisten. Er ist Dienstvorgesetzter der Gemeindebediensteten ohne Disziplinarbefugnis gegenüber den Beigeordneten. Er kann einzelne Befugnisse nach Satz 4 übertragen. (3) Im eigenen Wirkungskreis der Gemeinde bereitet der Bürgermeister die Beschlüsse der Gemeindevertretung und des Hauptausschusses vor und führt sie aus. Der Bürgermeister ist für die Geschäfte der laufenden Verwaltung zuständig. Zu den Geschäften der laufenden Verwaltung zählen</p>	<p>제38조 단체장 (2) 단체장은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이다. 단체장은 행정을 관장하고 공정한 과제의 처리와 적법한 행정 에 책임이 있다. 단체장은 통일적인 행정운명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하위 직급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단체장은 게마인데 공무원들의 업무 상관으로서 시의원에 대하여는 징계권한이 없다. 단체장은 제4문에 따른 개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단체장은 게마인데 내 본인의 권한 내에서 게마인데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준비하고 집행한다. 단체장은 지속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지속적인 행정 업무로는 특히 경제적인 의의가 적은 결정, 행정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결정 및 법, 임금 관련 결정이 있다. (4) 단체장은 본인의 권한으로 게마인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안을 결정한다.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은 단체장이 상임위원회를 대신하여 결정한다. 본 결정은 상임위원회의 담당업무 일 경우 상임위원회의 인가를 요하고, 그 외의 경우 게마인데 의회의 인가를 요한다. (7) 행정 내부 조직 규정과 업무분배는 단체장이 담당한다. 제22조제3절제4번 및 제5번의 효력은 유</p>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insbesondere Entscheidungen von geringer wirtschaftlicher Bedeutung, Entscheidungen, die den laufenden Betrieb der Verwaltung aufrechterhalten, sowie gesetzlich oder tariflich gebundene Entscheidungen.</p> <p>(4) Der Bürgermeister entscheidet in eigener Zuständigkeit alle Angelegenheiten, die nicht von der Gemeindevertretung oder dem Hauptausschuss wahrgenommen werden. In Fällen äußerster Dringlichkeit entscheidet er anstelle des Hauptausschusses. Diese Entscheid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urch den Hauptausschuss, soweit dieser zuständig ist, im Übrigen durch die Gemeindevertretung.</p> <p>(7) Die Regelung der inneren Organisation der Verwaltung und der Geschäftsverteilung obliegt dem Bürgermeister. § 22 Absatz 3 Nummer 4 und 5 bleibt unberührt.</p>	<p>지된다.</p>

○ 단체장 선거

- 단체장은 시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최소 7년에서 최대 9년이며 이는 조례로 정함
- 임기 만료 후, 단체장은 후임자의 집무 개시 시점까지 최대 6개월간 직을 유지함
- 선거결과는 법적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단체장으로 선출된 자는 임기 동안 공무원 또는 명예공무원으로의 지위를 가짐

〈표 6-12〉 단체장 선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37 Wahl und Amtszeit der Bürgermeisterin oder des Bürgermeisters</p> <p>(1)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wählen die Bürgermeisterin oder den Bürgermeister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Das Nähere regelt das Landes- und Kommunalwahlgesetz.</p> <p>(2) Die Amtszeit beträgt in haupt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mindestens sieben und höchstens neun Jahre. Sie wird durch die Hauptsatzung bestimmt.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eines Viertels aller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ist die Stelle spätestens drei Monate vor dem Wahltag mit einer Bewerbungsfrist von mindestens einem Monat überregional öffentlich auszuschreiben. Nach Ablauf der in der Hauptsatzung bestimmten Amtszeit bleibt die hauptamtliche Bürgermeisterin oder der hauptamtliche Bürgermeister bis zum Amtsantritt der Nachfolgerin oder des Nachfolgers, längstens aber sechs Monate, im Amt. Für die Dauer der Weiterführung der Amtsgeschäfte besteht das Beamtenverhältnis auf Zeit fort, ohne dass es einer erneuten Ernennung bedarf; die bisherigen Bezüge sind weiterzugewähren. Eine hauptamtliche Bürgermeisterin oder ein hauptamtlicher Bürgermeister ist verpflichtet, sich einmal zur Wiederwahl zu stellen. Wird diese Obliegenheit nicht erfüllt, ist die Bürgermeisterin oder der Bürgermeister mit Ablauf der Amtszeit aus dem Beamtenverhältnis entlassen.</p> <p>(4) Das Wahlergebnis ist der Rechtsaufsichtsbehörde unverzüglich anzuzeigen; bei der Wahl in haupt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sind die Sitzungsniederschriften des</p>	<p>제37조 단체장의 선거와 임기</p> <p>(1) 주민들은 단체장을 일반,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세부사항은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으로 정한다.</p> <p>(2) 임기는 상임으로 관리하는 게마인데에서 최소 7년, 최대 9년이다. 회칙으로 정한다. 분과 또는 게마인데 의회 구성원 중 4분의 1의 신청으로 단체장직은 늦어도 선거일 3개월 전, 최소 1개월의 입후보 기간을 두고 전역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칙에서 정한 임기의 도과 후 상임 단체장은 후임자의 집무 개시 시점까지 최대 6개월간 직을 유지한다. 직무의 지속성을 위해 새로운 임명 없이 공무원 관계는 유지된다; 기존의 관계는 지속된다. 단체장은 재선에 임할 의무가 있다. 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단체장은 임기 종료로 공무원 관계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p> <p>(4) 선거결과는 법적 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상임으로 관리되는 게마인데의 경우 선거 입후보자 허가 및 선거결과 확인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출된 자는 임기 동안 공무원 또는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다.</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Wahlausschusses über die Zulassung der zur Wahl stehenden Personen und über die Feststellung des Wahlergebnisses vorzulegen. Die gewählte Person wird unter Berufung in das Beamtenverhältnis auf Zeit beziehungsweise als Ehrenbeamtin oder Ehrenbeamter für die Dauer der Amtszeit zur Bürgermeisterin oder zum Bürgermeister ernannt.</p>	

○ 부단체장단 선출

-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의무를 가지며, 의회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정됨
-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부단체장으로 선정되며, 임기 동안 명예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표 6-13〉 부단체장 선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40 Stellvertretung des Bürgermeisters, Beigeordnete (1) Die Gemeindevertretung bestimmt die Stellvertretung des Bürgermeisters durch Wahl zweier Personen, die den Bürgermeister im Fall seiner Verhinderung vertreten. Gewählt ist, wer mehr als die Hälfte der Stimmen aller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erhält. Wird diese Mehrheit nicht erreicht, so wird über dieselben Personen erneut abgestimmt. Erhält auch dann niemand die erforderliche Mehrheit, so ist die Wahl in einer späteren Sitzung zu wiederholen, wenn nur eine</p>	<p>제40조 부단체장 (1) 게마인데 의회는 단체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두 부단체장을 정한다.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의 표를 얻은 자가 선정된다. 과반수 미달일 경우 동일한 후보에 대해 새로이 투표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도 과반수가 달성되지 않고 한 명만이 후보자가 된 경우 차후 회의에서 선거를 반복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의 결선 투표로 그 중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정된다. 대리 순서는 투표로 정한다. (2) 명예직으로 관리되는 게마인데는 임기동안 게마인데 의회 구성원 중에서 선정된다. 부단체장은 임기동안 명예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제37조제3</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Person zur Wahl stand. Bei zwei oder mehr Personen findet eine Stichwahl zwischen den beiden Personen mit der höchsten Stimmenzahl statt, bei der gewählt ist, wer die meisten Stimmen erhält. Die Reihenfolge der Stellvertretung ist mit der Wahl festzulegen.</p> <p>(2) In ehrenamtlich verwalteten Gemeinden erfolgt die Wahl durch die Gemeindevertretung für die Dauer ihrer Wahlperiode aus ihrer Mitte. Die Stellvertreterinnen und Stellvertreter sind für die Dauer ihrer Amtszeit in das Beamtenverhältnis als Ehrenbeamtin oder Ehrenbeamter zu berufen. § 37 Absatz 3 Satz 2 und § 39 Absatz 4 gelten entsprechend.</p>	<p>절제2문 및 제39조제4절이 준용된다.</p>

2) 기관 간 관계

○ 단체장의 이익제기

- 의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게마인테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단체장은 해당 결정 후 2주 내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음
- 단체장의 이익 제기에 따라 의회의 결정은 효력발생이 연기되며, 의회는 해당 사안을 차기 회의에서 판단하여야 함
- 새로운 의결 또한 위법할 경우,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 후 2주 내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에 대해 행정재판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행정 관리

- 단체장은 행정상 모든 주요 사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
- 단체장은 의회 구성원 4분의 1 또는 분과의 신청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의회는 단체장에게 서면 또는 의회 회의 중 구두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함

〈표 6-14〉 기관 간 관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 33 Widerspruch gegen Beschlüsse der Gemeindevertretung und beschließender Ausschüsse</p> <p>(1) Verletzt ein Beschluss der Gemeindevertretung das Recht, so hat der Bürgermeister dem Beschluss zu widersprechen. Der Bürgermeister kann einem Beschluss widersprechen, wenn dieser das Wohl der Gemeinde gefährdet. Der Widerspruch muss binnen zwei Wochen nach der Beschlussfassung schriftlich eingelegt und begründet werden. Er hat aufschiebende Wirkung. Die Gemeindevertretung muss über die Angelegenheit in der nächsten Sitzung beschließen.</p> <p>(2) Verletzt auch der neue Beschluss das Recht, so hat ihn der Bürgermeister schriftlich unter Darlegung der Gründe binnen zwei Wochen nach der Beschlussfassung zu beanstanden und die Beanstandung der Rechtsaufsichtsbehörde anzuzeigen. Die Beanstandung hat aufschiebende Wirkung. Gegen die Beanstandung steht der Gemeindevertretung die Klage vor dem Verwaltungsgericht zu.</p> <p>§ 34 Kontrolle der Verwaltung</p> <p>(1) Die Gemeindevertretung ist vom Bürgermeister über alle wesentlichen Angelegenheiten der Gemeindeverwaltung zu unterrichten. Er unterrichtet die</p>	<p>제33조 게마인데 의회 및 의결 소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p> <p>(1) 게마인데 의회의 결정이 법을 침해할 경우 단체장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체장은 게마인데의 이의를 위협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의결 후 2주 내 사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써 효력발생이 연기된다. 게마인데 의회는 사안을 차회 회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p> <p>(2) 새로운 의결도 법을 침해할 경우 단체장은 사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후 2주 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를 법적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의 제기로 효력발생이 연기된다. 이의제기에 대하여 게마인데 의회는 행정재판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34조 행정 관리</p> <p>(1) 단체장은 게마인데 의회에 게마인데 행정상 모든 주요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단체장은 최소한 반기별로 제22조제4절, 제5절에 따른 결정을 보고한다.</p> <p>(2) 단체장과 시의원은 게마인데 의회 구성원 중 4분의 1 또는 분과의 신청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p> <p>(3) 모든 게마인데 의회의 구성원은 단체장에 대하여 서면 또는 게마인데 의회 회의에서 구두 질의를 할 수 있고, 이는 적절한 기한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p>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원문	번역
<p>Gemeindevertretung mindestens halbjährlich über die Entscheidungen, die er nach § 22 Absatz 4 und 5 getroffen hat.</p> <p>(2) Der Bürgermeister und die Beigeordneten sind verpflichtet, der Gemeindevertretung auf Antrag eines Viertels aller Mitglieder der Gemeindevertretung oder einer Fraktion Auskunft zu erteilen.</p> <p>(3) Jedes Mitglied der Gemeindevertretung kann an den Bürgermeister schriftliche oder in einer Sitzung der Gemeindevertretung mündliche Anfragen stellen, die in angemessener Frist zu beantworten sind. Das Nähere regelt die Hauptsatzung.</p>	

3. 의회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1) 지역 개요 및 기관구성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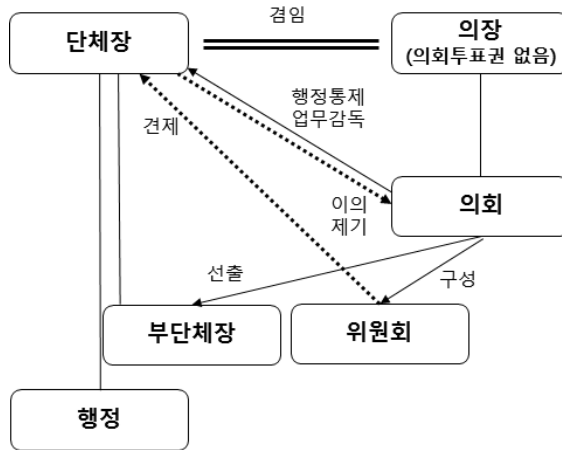
□ 지역 개요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북서쪽에 위치하며,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면적은 34,110.26km², 인구는 17,912,134명, 인구밀도는 525명/km² 으로 나타남
 -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음

□ 기관구성 체계도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에 나타난 기관구성 체계도는 <그림 6-4>와 같으며, 의회형에 해당됨

<그림 6-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게마인데 기관구성 체계도



- 의회의 구성 및 권한
 - 의회는 선출된 의회구성원과 단체장으로 구성됨
 - 의회의 대표와 대리는 단체장이 담당하며, 단체장은 의회 의장의 직을 맡음
- 의회는 게마인데 행정의 모든 사무에 대해 권한을 가짐
 - 의회는 법에 명시한 특정 사무(〈표 6-15〉 내용 참고)를 제외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원회는 자신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단체장에게 재차 위임할 수 있음

〈표 6-15〉 의회의 구성 및 권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40 Träger der Gemeindeverwaltung (2) Die Bürgerschaft wird durch den Rat und den Bürgermeister vertreten. Der Rat besteht aus den gewählten Ratsmitgliedern und dem Bürgermeister (Mitglied kraft Gesetzes). Die Vertretung und Repräsentation des Rates obliegt dem Bürgermeister (in kreisfreien Städten: Oberbürgermeister). Den Vorsitz im Rat führt der Bürgermeister.</p>	<p>제40조 게마인데 행정의 집행부 (2) 의회와 단체장은 시민을 대표한다. 의회는 선출된 의회구성원과 단체장(법률상 유효한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의 대표와 대리는 단체장이 담당한다(크라이스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에서는 대도시단 체장이 담당). 단체장은 의회 의장의 직을 맡는다. 단체장은 의회에서 투표권한을 갖는다.</p>
<p>§ 41 Zuständigkeiten des Rates (1) Der Rat der Gemeinde ist für alle Angelegenheiten der Gemeindeverwaltung zuständig, soweit diese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Die Entscheidung über folgende Angelegenheiten kann der Rat nicht übertragen: a) die allgemeinen Grundsätze, nach denen die Verwaltung geführt werden soll, b) die Wahl der Mitglieder der Ausschüsse und ihrer Vertreter, c) die Wahl der Beigeordneten, d) die Verleihung und die Entziehung des Ehrenbürgerrechts und einer</p>	<p>제41조 의회의 권한 (1) 게마인데 의회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게마인데 행정의 모든 사무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다음의 사무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할 수 없다. a) 행정의 집행을 위한 일반 원칙 b) 위원회의 위원 및 대표 선거 c) 부단체장단의 선거 d) 명예시민권과 명예칭호의 수여와 박탈 e)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게마인데 구역의 변경 f) 조례와 기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의 공포, 변경 및 폐지 g) 연방건설법전 및 연방건설법전 조치법에 따른 토</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Ehrenbezeichnung, e) die Änderung des Gemeindegebiets, soweit nicht in diesem Gesetz etwas anderes bestimmt ist, f) den Erlaß, die Änderung und die Aufhebung von Satzungen und sonstigen ortsrechtlichen Bestimmungen, g) abschließende Beschlüsse im Flächennutzungsplanverfahren und abschließende Satzungsbeschlüsse auf der Grundlage des Baugesetzbuchs und des Maßnahmengesetzes zum Baugesetzbuch, h) den Erlass der Haushaltssatzung und des Stellenplans, die Aufstellung eines Haushaltssicherungskonzeptes, die Zustimmung zu überplanmäßigen und außerplanmäßigen Aufwendungen und Auszahlungen sowie zu überplanmäßigen und außerplanmäßigen Verpflichtungsermächtigungen, die Festlegung von Wertgrenzen für die Veranschlagung und Abrechnung einzelner Investitionsmaßnahmen, i) die Festsetzung allgemein geltender öffentlicher Abgaben und privatrechtlicher Entgelte, j) die Feststellung des Jahresabschlusses und die Entlastung sowie die Bestätigung des Gesamtabchlusses; sofern ein Gesamtabchluss nicht erstellt wird, die Beschlussfassung über den Beteiligungsbericht, k) den Beschluss über die gegenüber der Gemeindeprüfungsanstalt und der Aufsichtsbehörde abzugebende Stellungnahme gemäß § 105 Absatz 7, l) die teilweise oder vollständige Veräußerung oder Verpachtung von Eigenbetrieben, die teilweise oder vollständige Veräußerung einer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Beteiligung</p>	<p>지이용계획절차상 최종결정, 조례의 최종결정 h) 예산조례 및 인력계획의 공포, 예산보장컨셉의 수립, 과도하고 추가적인 비용과 지출에 대한 승인, 과도하고 추가적인 예산지출에 대한 의결, 개별 투자조치의 평가 및 정산을 위한 가치한도 설정 i) 일반적으로 유효한 공공조세 및 사법상의 보상금의 확정 j) 연도결산의 검증, 총괄결산의 부담감각 및 확인 k) 공기업의 부분 및 전부매각, 공기업의 임대, 사법상의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직간접적 참여지분의 부분 또는 전부매각, 등록된 신용조합 참여지분의 매각, 제111조 제1,2항에 따른 기타 법률행위의 체결 l) 제114a조에 따른 공법상 기관 및 공공시설·공기업의 설립, 인수, 확장, 축소와 해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제3항, 제6항에 따른 공동의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업의 설립과 해산, 「공동의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업에 관한 조례」의 변경 및 공동의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업에서의 탈퇴, 사법상 회사나 기타 단체에 대한 최초의 직간접적 참여, 등록된 신용조합에서 사업지분의 취득 m) 게마인데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제114a조에 따라 게마인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법상 시설, 공공시설 및 공기업의 법적 형식의 변경 n) 재단의 자산잔고를 포함한 재단의 목적변경, 재단의 통합 및 폐지 o) 게마인데가 소유한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의 변경 및 게마인데가 소유한 행정재산 이용권의 변경 p) 보증의 인수, 보증계약의 체결과 기타 담보제공 및 앞서 언급한 사항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법률 행위를 위한 담보제공 q) 지역의 회계 조사원 및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의무적 사무이외에 지역 회계조사 사무의 확대 r)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세부규정에 따라 의회, 행정관구 대표부와 위원회 구성원과 게마인데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인가, 단체장 및 게마인데 행정기구 부서장과 게마인데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인가 s) 법적 의무가 없는 신규 사무의 인수</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an einer Gesellschaft oder anderen Vereinigungen des privaten Rechts, die Veräußerung eines Geschäftsanteils an einer eingetragenen Kreditgenossenschaft sowie den Abschluss von anderen Rechtsgeschäften im Sinne des § 111 Abs. 1 und 2,</p> <p>m) die Errichtung, Übernahme, Erweiterung, Einschränkung und Auflösung von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gemäß § 114 a,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nd Eigenbetrieben, die Bildung oder Auflösung eines gemeinsamen Kommunalunternehmens gemäß § 27 Abs. 1 bis 3 und 6 des Gesetzes über kommunale Gemeinschaftsarbeit, die Änderung der Unternehmenssatzung eines gemeinsamen Kommunalunternehmens sowie der Austritt aus einem gemeinsamen Kommunalunternehmen, die erstmalige unmittelbare oder mittelbare Beteiligung sowie die Erhöhung einer unmittelbaren oder mittelbaren Beteiligung an einer Gesellschaft oder anderen Vereinigungen in privater Rechtsform, den Erwerb eines Geschäftsanteils an einer eingetragenen Kreditgenossenschaft,</p> <p>n) die Umwandlung der Rechtsform von Anstalten des öffentlichen Rechts gemäß § 114a,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nd Eigenbetrieben sowie die Umwandlung der Rechtsform von Gesellschaften, an denen die Gemeinde beteiligt ist, soweit der Einfluß der Gemeinde (§ 63 Abs. 2 und § 113 Abs. 1) geltend gemacht werden kann,</p> <p>o) die Umwandlung des Zwecks, die Zusammenlegung und die Aufhebung von Stiftungen einschließlich des Verbleibs des Stiftungsvermögens,</p> <p>p) die Umwandlung von Gemeindegliedervermögen in freies</p>	<p>t) 재원을 고려한 전략목적의 확정 (2) 그 밖에 의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회는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자신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단체장에게 재차 위임토록 할 수 있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Gemeindevermögen sowie die Veränderung der Nutzungsrechte am Gemeindegliedervermögen,</p> <p>q) die Übernahme von Bürgschaften, den Abschluß von Gewährverträgen und die Bestellung sonstiger Sicherheiten für andere sowie solche Rechtsgeschäfte, die den vorgenannten wirtschaftlich gleichkommen,</p> <p>r) die Bestellung und Abberufung der Leitung und der Prüfer der örtlichen Rechnungsprüfung sowie die Übertragung von Aufgaben auf die örtliche Rechnungsprüfung,</p> <p>s) die Genehmigung von Verträgen der Gemeinde mit Mitgliedern des Rates, der Bezirksvertretungen und der Ausschüsse sowie mit dem Bürgermeister und den leitenden Dienstkräften der Gemeinde nach näherer Bestimmung der Hauptsatzung,</p> <p>t) die Übernahme neuer Aufgaben, für die keine gesetzliche Verpflichtung besteht,</p> <p>u) die Festlegung strategischer Ziel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Ressourcen.</p> <p>(2) Im übrigen kann der Rat die Entscheidung über bestimmte Angelegenheiten auf Ausschüsse oder den Bürgermeister übertragen. Er kann ferner Ausschüsse ermächtigen, in Angelegenheiten ihres Aufgabenbereichs die Entscheidung dem Bürgermeister zu übertragen.</p>	

○ 의원선거

- 의원은 시민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새로 선출된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그들의 활동을 계속 수행함

○ 의회의 소집

- 의회는 단체장이 소집하며, 소집기한 및 형태,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회의규칙을 통해 정함

- 회의는 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6주 이내에 반드시 소집되어야 하고, 이후 필요시 회의의 개최가 가능하며, 적어도 2개월에 한번은 소집되어야 함
- 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교섭단체가 협의할 대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소집되어야 함
- 단체장이 회의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청에 의한 소집도 가능함

○ 의회 의결

-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에만 의결능력이 있음
- 의결불능 상태가 되어 의안이 보류되고, 의회가 동일 의안의 심사를 위해 재소집되는 경우, 의회는 출석의원수와 상관없이 의결이 가능함

〈표 6-16〉 의원 선거, 의회 소집 및 의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42 Wahl der Ratsmitglieder (1) Die Ratsmitglieder werden von den Bürger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für die Dauer von fünf Jahren gewählt. Die näheren Vorschriften trifft das Kommunalwahlgesetz. (2) Nach Ablauf der Wahlperiode üben die bisherigen Ratsmitglieder ihre Tätigkeit bis zum Zusammentritt des neugewählten Rates weiter aus.</p>	<p>제42조 의원 선거 (1) 의원은 시민에 의한 일반·직접·자유·평등·비밀 선거에 따라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자세한 규정은 지방선거법을 적용한다. (2) 임기 만료 이후, 기존 의원들은 새로 선출된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계속 수행한다.</p>
<p>§ 47 Einberufung des Rates (1) Der Rat wird vom Bürgermeister einberufen. Nach Beginn der Wahlperiode muss die erste Sitzung innerhalb von sechs Wochen stattfinden. Im Übrigen tritt der Rat zusammen, so oft es die Geschäftslage erfordert, jedoch soll er wenigstens alle zwei Monate einberufen werden. Er ist unverzüglich einzuberufen, wenn ein Fünftel der Ratsmitglieder oder eine Fraktion unter Angabe der zur Beratung zu stellenden</p>	<p>제47조 의회의 소집 (1) 의회는 단체장이 소집한다. 임기 개시 후 첫 번째 회의는 개원 후 6주 이내에 개최한다. 그밖에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의회는 회의를 개최하며, 적어도 2개월에 한번은 소집되어야 한다. 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교섭단체가 협의할 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되어야 한다. (3) 단체장이 의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청이 의회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Gegenstände es verlangen. (3) Kommt der Bürgermeister seiner Verpflichtung zur Einberufung des Rates nicht nach, so veranlasst die Aufsichtsbehörde die Einberufung.	
<p>§ 49 Beschlussfähigkeit des Rates</p> <p>(1) Der Rat ist beschluss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der gesetzlichen Mitgliederzahl anwesend ist. Er gilt als beschlussfähig, solange seine Beschlussunfähigkeit nicht festgestellt ist.</p> <p>(2) Ist eine Angelegenheit wegen Beschlussunfähigkeit zurückgestellt worden und wird der Rat zur Verhandlung über denselben Gegenstand einberufen, so ist er ohne Rücksicht auf die Zahl der Erschienenen beschlussfähig. Bei der zweiten Ladung muss auf diese Bestimmung ausdrücklich hingewiesen werden.</p>	<p>제49조 의회 의결정족수</p> <p>(1) 의회는 법정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였을 때에만 의결능력이 있다. 의회는 의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결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p> <p>(2) 의결불능 상태가 되어 의안이 보류되고, 의회가 동일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재차 소집되는 경우, 의회는 출석의원수와 무관하게 의결할 수 있다. 의회를 재소집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p>

○ 위원회 구성

- 모든 게마인데는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함
- 운영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역할 병행이 가능하며, 이는 의회가 결정할 수 있음
- 단체장은 운영위원회의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보유함
- 운영위원회 소속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함
-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음
- 단체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의견을 낼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발언할 수 있음

- 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며,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음
-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의 경우, 의원 뿐 아니라 의회에 소속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도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임명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의 수는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수보다는 적어야 함

〈표 6-17〉 위원회 구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57 Bildung von Ausschüssen (1) Der Rat kann Ausschüsse bilden. (2) In jeder Gemeinde müssen ein Hauptausschuss, ein Finanzausschuss und ein Rechnungsprüfungsausschuss gebildet werden. Der Rat kann beschließen, dass die Aufgaben des Finanzausschusses vom Hauptausschuss wahrgenommen werden. (3) Den Vorsitz im Hauptausschuss führt der Bürgermeister. Er hat Stimmrecht im Hauptausschuss. Der Hauptausschuss wählt aus seiner Mitte einen oder mehrere Vertreter des Vorsitzenden.</p> <p>§ 58 Zusammensetzung der Ausschüsse und ihr Verfahren (1) Der Rat regelt mit der Mehrheit der Stimmen der Ratsmitglieder die Zusammensetzung der Ausschüsse und ihre Befugnisse. Soweit er stellvertretende Ausschussmitglieder bestellt, ist die Reihenfolge der Vertretung zu regeln. Der Bürgermeister hat das Recht, mit beratender Stimme an den Sitzungen der Ausschüsse teilzunehmen; ihm ist auf Verlangen jederzeit das Wort zu erteilen. An nicht</p>	<p>제57조 위원회 구성 (1) 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모든 게마인데는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회계 감사위원회 등 총 3개의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재정위원회의 역할까지 겸직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의장은 단체장이 맡는다. 단체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한명 이상의 부위원장을 선출한다.</p> <p>제58조 위원회 구성과 절차 (1)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다. 의회가 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부위원장 대행순서를 정할 수 있다. 단체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장은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는 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타 일반의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할 수 있다;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구 대표부 구성원들도 방청객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타 위원회 소속의원의 경우에도 자문대상이 그들의 업무영역과 관계될 경우 방청객으로 참석할 수 있다. 방청객으로 참석하는 것을 이유로 소독손실분에 대한 보상이나 회의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제45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저촉받지</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öffentlichen Sitzungen eines Ausschusses können die stellvertretenden Ausschussmitglieder sowie alle Ratsmitglieder als Zuhörer teilnehmen; nach Maßgabe der Geschäftsordnung können auch die Mitglieder der Bezirksvertretungen als Zuhörer teilnehmen, ebenso die Mitglieder anderer Ausschüsse, soweit deren Aufgabenbereich durch den Beratungsgegenstand berührt wird. Die Teilnahme als Zuhörer begründet keinen Anspruch auf Ersatz des Verdienstausfalls und auf Zahlung von Sitzungsgeld; § 45 Absatz 5 Nummer 3 bleibt unberührt. Wird in einer Ausschusssitzung ein Antrag beraten, den ein Ratsmitglied gestellt hat, das dem Ausschuss nicht angehört, so kann es sich an der Beratung beteiligen. Fraktionen, die in einem Ausschuss nicht vertreten sind, sind berechtigt, für diesen Ausschuss ein Ratsmitglied oder einen sachkundigen Bürger, der dem Rat angehören kann, zu benennen. Das benannte Ratsmitglied oder der benannte sachkundige Bürger wird vom Rat zum Mitglied des Ausschusses bestellt. Sie wirken in dem Ausschuss mit beratender Stimme mit. Bei der Zusammensetzung und der Berechnung der Beschlussfähigkeit des Ausschusses werden sie nicht mitgezählt. Ein Ratsmitglied hat das Recht, mindestens einem der Ausschüsse als Mitglied mit beratender Stimme anzugehören. Die Sätze 8 bis 10 gelten entsprechend.</p> <p>(2) Auf die Ausschussmitglieder und das Verfahren in den Ausschüssen finden die für den Rat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e Anwendung. Der Ausschussvorsitzende setzt die Tagesordnung im Benehmen mit dem Bürgermeister fest. Auf Verlangen des</p>	<p>않는다. 해당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이 신청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자문간건이 처리되는 경우, 신청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특정 위원회에 소속의원을 두고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1인 또는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 1인을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의회는 지명받은 의원 또는 민간인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한다. 그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낼 수 있다. 해당 위원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명된 자들은 전체 투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울러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의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될 권리가 있으며, 자문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8문 내지 제10문의 규정은 저촉받지 않는다.</p> <p>(2) 의회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위원회 소속의원과의 위원회 업무절차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위원회 회의시간과 회의장소 및 의사일정은 제48조 제1항 제4문의 규정과 달리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단체장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대해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p> <p>(3)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의 경우, 의원뿐 아니라 의회에 소속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도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에 임명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민간인 전문가로 활동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민간인 전문가의 수는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수보다는 작아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수가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전문가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다. 의결 불가능 조건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의결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그룹의 대표자와 자문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Bürgermeisters ist der Ausschussvorsitzende verpflichtet, einen Gegenstand in die Tagesordnung aufzunehmen. Der Ausschussvorsitzende ist in gleicher Weise verpflichtet, wenn eine Fraktion dies beantragt. Abweichend von § 48 Abs. 1 Satz 4 brauchen Zeit und Ort der Ausschusssitzungen sowie die Tagesordnung nicht öffentlich bekanntgemacht zu werden; der Bürgermeister soll die Öffentlichkeit hierüber vorher in geeigneter Weise unterrichten.</p> <p>(3) Zu Mitgliedern der Ausschüsse, mit Ausnahme des Hauptausschusses, können neben Ratsmitgliedern auch sachkundige Bürger, die dem Rat angehören können, bestellt werden. Zur Übernahme der Tätigkeit als sachkundiger Bürger ist niemand verpflichtet. Die Zahl der sachkundigen Bürger darf die Zahl der Ratsmitglieder in den einzelnen Ausschüssen nicht erreichen. Die Ausschüsse sind nur beschlussfähig, wenn die Zahl der anwesenden Ratsmitglieder die Zahl der anwesenden sachkundigen Bürger übersteigt. Sie gelten auch insoweit als beschlussfähig, solange ihre Beschlussunfähigkeit nicht festgestellt ist. Die Ausschüsse können Vertreter derjenigen Bevölkerungsgruppen, die von ihrer Entscheidung vorwiegend betroffen werden und Sachverständige zu den Beratungen zuziehen.</p>	

○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행정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이 있음
- 법률 및 행정행위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부로서의 지위를 가짐

〈표 6-18〉 단체장의 임무 및 지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62 Aufgaben und Stellung des Bürgermeisters (1) Der Bürgermeister ist kommunaler Wahlbeamter. Der Bürgermeister ist verantwortlich für die Leitung und Beaufsichtigung des Geschäftsgangs der gesamten Verwaltung. Er leitet und verteilt die Geschäfte. Dabei kann er sich bestimmte Aufgaben vorbehalten und die Bearbeitung einzelner Angelegenheiten selbst übernehmen.</p>	<p>제62조 단체장의 임무와 지위 (1) 단체장은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단체장은 전체 행정부 업무 진행의 관리와 감독에 책임이 있다. 단체장은 업무를 관리하고 분배한다. 또한 단체장은 특정한 사무를 유보하거나 각각의 사무의 검토를 스스로 맡을 수 있다.</p>
<p>§ 63 Vertretung der Gemeinde (1) Unbeschadet der dem Rat und seinen Ausschüssen zustehenden Entscheidungsbefugnisse ist der Bürgermeister der gesetzliche Vertreter der Gemeinde in Rechts- und Verwaltungsgeschäften. § 74 Abs. 3 und § 64 bleiben unberührt.</p>	<p>제63조 게마인데 대표부 (1) 의회와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관계없이 단체장은 법률 및 행정행위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부이다. 제74조 3항과 제64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p>

○ 단체장 선거

- 단체장은 시민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사망,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임하거나, 의회 임기 중 다른 이유로 단체장 선출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후임자가 선출되어야 함
- 단체장은 의회 의장에 의해 선임 및 임명됨

〈표 6-19〉 단체장 선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65 Wahl des Bürgermeisters (1) Der Bürgermeister wird von den Bürger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auf die Dauer von fünf</p>	<p>제65조 단체장 선거 (1) 단체장은 의회와 함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이고 즉각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비밀선거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5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단</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Jahren nach den Grundsätzen der Mehrheitswahl zugleich mit dem Rat gewählt. Scheidet der Bürgermeister durch Tod, Eintritt in den Ruhestand oder aus sonstigen Gründen vor Ablauf seiner Amtszeit aus dem Amt aus oder ist die Wahl eines Bürgermeisters aus anderen Gründen während der Wahlperiode des Rates erforderlich, so findet die Wahl des Nachfolgers spätestens sechs Monate nach Ausscheiden des Bürgermeisters aus dem Amt statt. Die näheren Vorschriften trifft das Kommunalwahlgesetz.</p> <p>(3) Der Bürgermeister wird vom Vorsitzenden (ehrenamtlicher Stellvertreter oder Altersvorsitzender) in einer Sitzung des Rates vereidigt und in sein Amt eingeführt.</p>	<p>체장이 사망,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임하거나, 의회 임기 중 다른 이유로 단체장 선출이 필요할 경우, 후임자는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선출되어야 한다. 상세한 규정은 지방선거법에서 다룬다.</p> <p>(3) 단체장은 의회 회의의 의장(명예직대리자 또는 최고연장자의장)에 의해 선임되고 공직에 임명된다.</p>

○ 부단체장단 선출

- 단체장의 명예대행자 즉 부단체장은 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는 것에서 단체장을 대행함
- 부단체장의 수는 조례에서 정하며, 임기는 8년임
- 부단체장 중 최소 1명은 판사 자격이나 높은 행정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부단체장 선거는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이루어짐
- 선거입후보자의 득표 수에 따라, 단체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행자를 선출하며, 동일 득표일 경우 결선투표가 실시됨
- 선출된 후보자가 대행직위를 고사할 경우, 후보자 중 차상위에 있는 자가 선출됨
- 부단체장단은 단체장에 의해 임명되며, 사무를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가짐

〈표 6-20〉 부단체장 선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67 Wahl der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p> <p>(1) Der Rat wählt für die Dauer seiner Wahlperiode aus seiner Mitte ohne Aussprache ehrenamtliche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Sie vertreten den Bürgermeister bei der Leitung der Ratssitzungen und bei der Repräsentation.</p> <p>(2) Bei der Wahl der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wird nach den Grundsätzen der Verhältniswahl in einem Wahlgang geheim abgestimmt. Dabei sind die Wahlstellen auf die Wahlvorschläge der Fraktionen und Gruppen des Rates nach der Reihenfolge der Höchstzahlen zu verteilen, die sich durch Teilung der auf die Wahlvorschläge entfallenden Stimmzahlen durch 1, 2, 3 usw. ergeben. Erster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ist, wer an erster Stelle des Wahlvorschlags steht, auf den die erste Höchstzahl entfällt, zweiter Stellvertreter, wer an vorderster noch nicht in Anspruch genommener Stelle des Wahlvorschlags steht, auf den die zweite Höchstzahl entfällt, dritter Stellvertreter, wer an vorderster noch nicht in Anspruch genommener Stelle des Wahlvorschlags steht, auf den die dritte Höchstzahl entfällt usw. Zwischen Wahlvorschlägen mit gleichen Höchstzahlen findet eine Stichwahl statt; bei Stimmgleichheit entscheidet das vom Bürgermeister zu ziehende Los. Nimmt ein gewählter Bewerber die Wahl nicht an, so ist gewählt, wer an nächster Stelle desselben Wahlvorschlags steht. Ist ein Wahlvorschlag erschöpft, tritt an seine Stelle der Wahlvorschlag mit der nächsten Höchstzahl. Scheidet ein stellvertretender Bürgermeister während der Wahlperiode</p>	<p>제67조 단체장 대행의 선출</p> <p>(1) 의회는 임기동안에 그들의 방법으로 토론 없이 단체장의 명예대행자를 선출한다. 단체장의 명예대행자는 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의회를 대표하는 것에서 단체장을 대행한다.</p> <p>(2) 단체장대행자의 선거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비례 선거의 원칙에 따라 비밀리에 투표된다. 또한 선거 입후보는 입후보자 추천에서 할당된 득표수의 분배를 통해 1,2,3 등으로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득표 순서에 따라 교섭단체와 의회 그룹의 입후보자 추천에 분배하여야 한다. 단체장의 첫 번째 대행자는 선거입후보자 추천의 최다득표한 자, 두 번째 대행자는 선거입후보자 추천의 두 번째 최다득표한 자, 세 번째 대행자는 선거입후보자 추천의 세 번째 최다득표한 자이다. 입후보자들 간에 동일한 최다득표일 때는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동일득표의 경우 단체장이 시행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출된 후보자가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보자 중 차상위에 있는 자가 선출된다. 후보자가 소진된다면 후보자 직위의 다음 최다득표자로 그 직위를 대행한다. 회기 임기 동안 단체장 대행자가 사임할 경우 제50조 2항에 따라 토론없이 회기 임기 나머지에 대한 후임자가 선출된다.</p> <p>(3) 단체장 대행자와 그 외의 의원은 단체장에 의해 임명되고 엄숙한 형태로 그들의 사무를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p> <p>제71조 부단체장단 선출</p> <p>(1) 부단체장의 수는 기본조례에서 정한다. 부단체장은 지방 선출직으로, 의회에 의해 8년 임기로 선출된다.</p> <p>(3) 부단체장은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직책에 충분한 경험을 증명하여야 한다.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시들과 크라이스에 속한 대도시에서는 부단체장 중 최소한 1명이 판사 자격이나 높은 행정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의 게마인데에서는 최소한 1명의 부단체장이 고위 일반 행정서비스 직무의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aus, ist der Nachfolger für den Rest der Wahlperiode ohne Aussprache in geheimer Abstimmung nach § 50 Abs. 2 zu wählen. (3) Die Stellvertreter des Bürgermeisters und die übrigen Ratsmitglieder werden von dem Bürgermeister eingeführt und in feierlicher Form zur gesetzmäßigen und gewissenhaften Wahrnehmung ihrer Aufgaben verpflichtet.</p> <p>§ 71 Wahl der Beigeordneten (1) Die Zahl der Beigeordneten wird durch die Hauptsatzung festgelegt. Die Beigeordneten sind kommunale Wahlbeamte. Sie werden vom Rat für die Dauer von acht Jahren gewählt. (3) Die Beigeordneten müssen die für ihr Amt erforderlichen fachlichen Voraussetzungen erfüllen und eine ausreichende Erfahrung für dieses Amt nachweisen. In kreisfreien Städten und Großen kreisangehörigen Städten muss mindestens einer der Beigeordneten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oder zur Laufbahn des allgemeinen Verwaltungsdienstes im Land Nordrhein-Westfalen in der Laufbahngruppe 2, zweites Einstiegsamt, besitzen. In den übrigen Gemeinden muss mindestens einer der Beigeordneten mindestens die Befähigung für die Laufbahn des allgemeinen Verwaltungsdienstes im Land Nordrhein-Westfalen in der Laufbahngruppe 2, erstes Einstiegsamt, besitzen.</p>	

2) 기관 간 관계

○ 단체장의 이의제기와 불복

- 단체장은 의회의 결정이 게마인데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

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단체장의 이의제기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의회는 빠르면 이의제기 이후 3일 이후부터 늦어도 2주의 기간 동안 새로운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음
- 또한 단체장은 의회(또는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결정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음
- 단체장의 불복 또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이는 의회(또는 위임을 받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함
- 의회가 단체장의 불복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감독청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지속됨
-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단체장의 불복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가 해당사안을 결정해야 함

○ 의회의 행정통제

- 의회는 행정상 중요한 사무에 대한 설명을 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단체장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안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의회는 자신, 행정관구 대표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의 집행과 관련한 행정사무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그들이 지정한 위원회나 의회의 위임을 받은 구성원이 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단체장은 의원 또는 행정관구 대표부의 구성원이 의회·위원회·행정관구 대표부의 결정에 대한 준비 또는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서류열람을 보장해야 함
-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의 보호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류열람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설명되어야 함

○ 업무구분 및 업무감독

- 의회는 단체장과 합의하여 대의원의 업무영역을 정할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는 법적 구성원의 과반으로 업무영역을 정할 수 있음
-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을 경우, 단체장은 공무원의 복무 및 고용의 권리에 관한 결정을 내림
-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을 경우, 기본조례는 공무원의 지위, 게마인데에 대한 기본 관계 또는 고용 관계와 관련한 결정을 단체장과 합의하에서 의회 또는 본위원회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는 법정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음

〈표 6-21〉 기관 간 관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 54 Widerspruch und Beanstandung</p> <p>(1) Der Bürgermeister kann einem Beschluss des Rates spätestens am dritten Tag nach der Beschlussfassung unter schriftlicher Begründung widersprechen, wenn er der Auffassung ist, dass der Beschluss das Wohl der Gemeinde gefährdet. Der Widerspruch hat aufschiebende Wirkung. Über die Angelegenheit ist in einer neuen Sitzung des Rates, die frühestens am dritten Tage und spätestens zwei Wochen nach dem Widerspruch stattzufinden hat, erneut zu beschließen. Ein weiterer Widerspruch ist unzulässig.</p> <p>(2) Verletzt ein Beschluss des Rates das geltende Recht, so hat der Bürgermeister den Beschluss zu beanstanden. Die Beanstandung hat aufschiebende Wirkung. Sie ist schriftlich in Form einer begründeten Darlegung dem Rat mitzuteilen. Verbleibt</p>	<p>제54조 이의제기와 불복</p> <p>(1) 단체장은 의회의 결정이 게마인데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의회는 이의제기 3일째 되는 날부터 2주가 되는 날 사이에 새로운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재차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p> <p>(2) 의회의 결정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단체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이는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논리적 설명의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의회가 불복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장은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지속된다.</p> <p>(3) 위원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2항 제1문 내지 제3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약 위원회가 불복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사안을</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der Rat bei seinem Beschluss, so hat der Bürgermeister unverzüglich die Entscheidung der Aufsichtsbehörde einzuholen. Die aufschiebende Wirkung bleibt bestehen.</p> <p>(3) Verletzt der Beschluss eines Ausschusses, dem eine Angelegenheit zur Entscheidung übertragen ist, das geltende Recht, so findet Absatz 2 Satz 1 bis 3 entsprechende Anwendung. Verbleibt der Ausschuss bei seinem Beschluss, so hat der Rat über die Angelegenheit zu beschließen.</p> <p>(4) Die Verletzung eines Mitwirkungsverbots nach § 43 Abs. 2 Satz 1 in Verbindung mit § 31 kann gegen den Beschluss des Rates oder eines Ausschusses, dem eine Angelegenheit zur Entscheidung übertragen ist, nach Ablauf eines Jahres seit der Beschlussfassung oder, wenn eine öffentliche Bekanntmachung erforderlich ist, ein Jahr nach dieser nicht mehr geltend gemacht werden, es sei denn, dass der Bürgermeister den Beschluss vorher beanstandet hat oder die Verletzung des Mitwirkungsverbots vorher gegenüber der Gemeinde gerügt und dabei die Tatsache bezeichnet worden ist, die die Verletzung ergibt.</p> <p>§ 55 Kontrolle der Verwaltung</p> <p>(1) Der Rat ist durch den Bürgermeister über alle wichtigen Angelegenheiten der Gemeindeverwaltung zu unterrichten. Der Bürgermeister ist verpflichtet, einem Ratsmitglied auf Verlangen Auskunft zu erteilen oder zu einem Tagesordnungspunkt Stellung zu nehmen. In Angelegenheiten einer Bezirksvertretung ist dessen Mitglied in gleicher Weise berechtigt und der Bürgermeister verpflichtet.</p> <p>(3) Der Rat überwacht die Durchführung seiner Beschlüsse und der Beschlüsse der</p>	<p>결정하여야 한다.</p> <p>(4) 의회 또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이 제31조 및 제43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참여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초과되었거나 공고가 필요한 때에는 추가로 1년이 지난 경우, 단체장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사전에 하였거나 참여금지 의무 위반을 고발한 사실이 있었다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p> <p>제55조 행정 통제</p> <p>(1) 의회는 단체장을 통해 게마인데 행정의 중요한 모든 사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요청이 있을 시 단체장은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일정 일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의무를 진다. 행정관구 대표부의 구성원은 행정관구 대표부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단체장은 동일한 의무를 진다.</p> <p>(3) 의회는 자신이 결정한 사안이나 행정관구 대표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의 집행과 관련 행정 사무절차를 감독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재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그들이 지정한 위원회나 의회의 위임을 받은 구성원이 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5) 단체장은 의원 또는 행정관구 대표부의 구성원이 의회·위원회·행정관구 대표부의 결정에 대한 준비 또는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서류열람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자는 서류열람에 참여할 수 없다. 자신 또는 제3자의 보호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열람은 거부될 수 있다. 서류열람에 대한 거부결정시 서면진술을 통해 그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해충돌금지조 인해 해당 사무의 심의나 결정에서 배제되었던 의원이나 행정관구 대표부 구성원에게는 서류열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p> <p>제73조 업무구분 및 업무감독</p> <p>(1) 의회는 단체장과 합의하여 대의원의 업무영역을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는 법적 구성원의 과반으로 업무영역을 정할 수 있다. 제1문 및 2문에 따른 의회의 결정에 있어 단체장은 표결하지 않는다. 제1문 또는 2문에 따른 결정이 내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Bezirksvertretungen und Ausschüsse sowie den Ablauf der Verwaltungsangelegenheiten. Zu diesem Zweck kann der Rat mit der Mehrheit der Ratsmitglieder vom Bürgermeister Einsicht in die Akten durch einen von ihm bestimmten Ausschuss oder einzelne von ihm beauftragte Mitglieder verlangen.</p> <p>(5) Jedem Ratsmitglied oder jedem Mitglied einer Bezirksvertretung ist vom Bürgermeister auf Verlangen Akteneinsicht zu gewähren, soweit die Akten der Vorbereitung oder der Kontrolle von Beschlüssen des Rates, des Ausschusses oder der Bezirksvertretung dienen, der es angehört. Dritte sind von der Teilnahme an der Akteneinsicht ausgeschlossen. Die Akteneinsicht darf nur verweigert werden, soweit ihr schutzwürdige Belange Betroffener oder Dritter entgegenstehen. Die ablehnende Entscheidung ist schriftlich zu begründen. Akteneinsicht darf einem Ratsmitglied oder einem Mitglied der Bezirksvertretung nicht gewährt werden, das wegen Interessenwiderstreits von der Beratung und Entscheidung der Angelegenheit ausgeschlossen ist.</p> <p>§ 73 Geschäftsverteilung und Dienstaufsicht</p> <p>(1) Der Rat kann die Geschäftskreise der Beigeordneten im Einvernehmen mit dem Bürgermeister festlegen. Kommt ein Einvernehmen nicht zu Stande, kann der Rat den Geschäftskreis der Beigeordneten mit der Mehrheit der gesetzlichen Zahl der Ratsmitglieder festlegen. Bei Entscheidungen des Rates nach Satz 1 und 2 stimmt der Bürgermeister nicht mit. Erfolgt keine Entscheidung nach Satz 1 oder 2 gilt § 62 Abs. 1 Satz 3 und 4.</p> <p>(3) Der Bürgermeister trifft die</p>	<p>지지 않으면 제62조 1항 3문 및 4문이 적용된다.</p> <p>(3) 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단체장은 복무 및 고용의 권리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기본조례는 공무원의 지위 또는 공무원의 게마인데에 대한 기본 관계 또는 고용 관계를 변경하는 고위 공무원(Bedienste in Fuerungsfunktion)에 대한 결정을 단체장과 합의 하에서 의회 또는 본위원회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는 법정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문과 3문에 따른 의회의 결정에 있어 단체장은 표결하지 않는다. 제2문 및 3문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제1문을 적용한다. 고위 공무원은 개인 담당자 또는 언론 담당자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최고관리자 또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에 종속된 조직분야의 관리자이다.</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마인데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원문	번역
<p>dienstrechtlichen und arbeitsrechtlichen Entscheidungen,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Die Hauptsatzung kann bestimmen, dass für Bedienstete in Führungsfunktionen Entscheidungen, die das beamtenrechtliche Grundverhältnis oder das Arbeitsverhältnis eines Bediensteten zur Gemeinde verändern, durch den Rat oder den Hauptausschuss im Einvernehmen mit dem Bürgermeister zu treffen sind,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Kommt ein Einvernehmen nicht zu Stande, kann der Rat die Entscheidung mit ein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gesetzlichen Zahl der Ratsmitglieder treffen. Bei Entscheidungen des Rates nach Satz 2 und 3 stimmt der Bürgermeister nicht mit. Erfolgt keine Entscheidung nach Satz 2 oder 3, gilt Satz 1. Bedienstete in Führungsfunktionen sind Leiter von Organisationseinheiten, die dem Hauptverwaltungsbeamten oder einem anderen Wahlbeamten oder diesem in der Führungsfunktion vergleichbaren Bediensteten unmittelbar unterstehen, mit Ausnahme von Bediensteten mit Aufgaben eines persönlichen Referenten oder Pressereferenten.</p>	

제3절 소결론

□ 분석결과 종합 요약 : 지방자치단체 구조

- 독일의 행정구역은 연방(Bund), 주(Land), 지방자치단체인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 자치시(Kreisfreie Stadt)로 크게 구분됨
- 게마인데는 독일 헌법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분석결과 종합 요약 : 기관구성 및 역할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유형별 1개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6-22>의 내용과 같이 제시함
- 독일은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게마인데의 경우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게마인데는 의원들 중에서 의원이 선출됨
- 독일은 직선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기관대립형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단체장의 의회의장 겸직 여부 및 게마인데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최상위 기관의 권한에 따라 단체장 및 의회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6-22〉 독일: 3개 유형 비교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지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1,069,533명 면적: 35,751 km² 유형: 남독일 시장형(Süddeut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609,675명 면적: 23,211 km² 유형: 이원제 시장형(Dualistische Bürgermeisterverfassu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7,912,134명 면적: 34,110 km² 유형: 의회형(Ratsverfassung) 	
단체장-의장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임 	
의회	구성 및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대표 기관. 게마인데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 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는 모든 중요 사항의 담당 및 결정사항의 시행 감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최상위 관청이자 단체장의 상급기관. 특정 권한을 상임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의회 의장은 게마인데 의원들 중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출된 의회구성원과 단체장으로 구성 단체장은 의회 의장, 의회의 대표 이자 대리 게마인데 행정의 모든 사무에 대한 권한 보유 법에 명시한 특정 사무를 제외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 가능 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는 자신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단체장에게 재차 위임 가능 	
	의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직선, 임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직선, 임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직선, 임기 5년
	의회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 의결사항을 통지 최소 월 1회 반드시 소집 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청 시, 즉각 소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는 지방 선거 후 6주 이내 의회 또는 의회의 전 의장에 의해 소집 최고령 의원의 주도로 의회 구성원 중 의장 선출. 의장은 의회 대표로서의 지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는 단체장이 소집하며, 회의규칙으로 소집기한 및 형태, 회의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 회의는 의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6주 이내에 반드시 소집. 이후 필요 시 회의 개최 가능. 최소 2개월에 한번은 반드시 소집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소집되어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만 의결 가능 최소 의결권자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경우 의결 능력 발생 의원의 과반수 이상 편향 시, 의원 중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면 의결 능력 발생 의원의 불참 또는 편향으로 의결능력 상실 시, 최소 의원 3명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의 개최 필요 의결은 공개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로 확정 단체장은 투표권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구성원이 적법하게 소집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의결능력 발생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의결은 참석한 구성원의 단순 다수결을 통한 공개 투표로 이루어지며, 찬성 득표가 반대 득표보다 많은 경우 단순 과반수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교섭단체가 협의할 대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요청 시, 즉시 소집 필요 단체장의 의회 소집 의무 불이행 시, 감독청에 의한 소집 가능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 소위원회는 의회 의장과 최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의회 의장인 단체장이 의결 소위원회의 의장이 됨 의회는 의결 준비 또는 개별 의결 사안 준비를 위해 게마인데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단체장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모든 소위원회 업무 조정 및 의회의 결정이나 화적으로 위임된 사안 결정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인가를 받아 긴급 사안 결정 가능 의회는 의결 준비를 위한 자문 소위원회 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는 필수 구성 조직 운영위원회는 의회 의결로 재정위원회와 역할 병행 가능 단체장은 운영위원회의장이 되며 투표권 보유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을 정함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으로 의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의장으로서 투표권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회는 게마인데의 예산규정 제정, 예산계획 이행 및 재무계획 상 요구되는 결정사항 준비 단체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 및 자문할 권리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신청으로 위원회 참석 의무 가짐 의회 구성원은 자문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권리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자문의견 발언 가능. 위원회의 요청 시에도 발언 가능 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확정. 단체장의 요청 시, 위원장은 특정 대상을 위원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킬 의무 가짐
단체장	임무 및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게마인데 의회의 의장이자 행정의 장, 게마인데 대표 게마인데 공무원의 상관, 직무상관 및 최상위 상급 관청 의회 회의의 준비 및 결의사항 집행 긴급한 사안은 의회의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단체장이 결정 가능. 의원들에게 긴급의결 사유 및 해당 사안 즉각 통지 필요 의회에 행정상 모든 중요 사안 보고 의무 행정 관할, 행정업무의 적절, 적법한 수행 및 내부조직의 운영 등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 행정 관장 및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 공무원들의 업무상급자 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 준비 및 집행. 경제적인 의의가 크지 않은 결정이나 임금 관련 결정과 같은 지속적인 행정업무 담당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사안을 결정. 긴급한 사안은 단체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의 인가를 받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를 대신하여 결정 행정부 내부의 조직 규정과 업무분배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 행정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책임 법률 및 행정행위에 있어서 게마인데의 법적 대표부
	부단체장 임명/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 중 한명 또는 다수의 단체장 대리인으로서의 부단체장 임명 부단체장의 업무수행은 단체장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대리 수행의 의무. 의회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의 명예대행자. 의회가 선출. 단체장을 대행하여 의회 회의 주재 및 대표함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부단체장으로 선정. 임기동안 명예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단체장의 수는 조례에서 정함. 임기 8년 부단체장 중 최소 1명은 판사 자격이나 높은 행정서비스 능력 필요 부단체장 선거는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진행 입후보자의 득표수에 따라, 단체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항자 선출. 동일 득표일 경우 결선투표 실시 선출된 후보자가 대항직위를 고사할 경우, 후보자 중 차상위에 있는 자로 선출
기관 간 관계	단체장의 이의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반대 또는 이의 제기 ● 단체장은 의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의결 후 1주일 내 표명 가능 ● 반대로 해당 사안은 지연되며, 의회는 회의를 3주 내 재소집하고 해당 사안을 다시 의결해야 함 ● 단체장이 새로운 의결에 재차 반대할 경우, 법적 감독기관의 결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이의제기 ● 의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게마인데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단체장은 해당 결정 후 2주 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 단체장의 이의 제기로 의회의 결정은 효력발생이 연기되며, 의회는 해당 사안을 차기 회의에서 판단하여야 함 ● 새로운 의결이 위법할 경우, 단체장은 의회 의결 후 2주 내 이의 제기 가능. 의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판상의 소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이의제기와 불복 ● 단체장은 의회의 결정이 게마인데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 의결 후 3일 내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 단체장의 이의제기로 해당 사안은 집행정지되며, 의회는 이의제기 후 3일 이후부터 2주 내 새로운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을 다시 의결해야 함 ● 단체장은 의회(또는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이는 의회(또는 위원회)에 서면 통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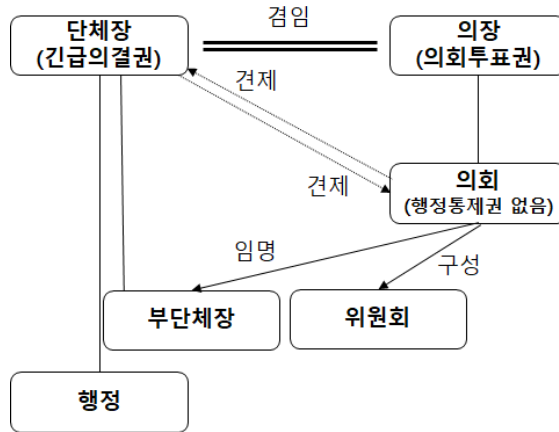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불복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 • 의회가 단체장의 불복 미수용시, 단체장은 감독청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지속 •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단체장의 불복 미수용시, 의회가 해당사안 결정
행정관리/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정보의 제공 • 의회는 단체장에게 의회 분과 또는 의회 구성원 6분의 1 동의로 게마인데의 모든 사안과 행정 관련 사항 보고 요구 가능 • 의회는 단체장에게 특정 사안 관련 서면, 전자 또는 의회를 통한 구두 질의 가능. 단체장은 적정 기한 내 답변 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관리 • 단체장은 행정상 모든 주요 사안을 의회에 보고 할 의무 있음 • 단체장은 의회 구성원 4분의 1 또는 분과의 신청으로 정보 제공 의무 있음 • 의회는 단체장에게 서면 또는 의회 회의 중 구두 질의 가능. 단체장은 이에 대한 응답 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행정통제 • 의회는 행정상 중요 사무에 대한 설명을 단체장에게 요청 가능. 이에 대해 단체장은 관련 정보 제공 또는 현안에 대해 설명할 의무 있음 • 의회는 자신, 행정관구 대표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의 집행과 관련 행정사무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그들이 지정한 위원회나 의회의 위임을 받은 구성원이 관련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 가능 • 단체장은 의원 또는 행정관구 대표부의 구성원이 의회·위원회·행정관구 대표부의 결정에 대한 준비 또는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서류열람 보장 의무 있음

구분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r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공무원 업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관련 의결 • 의회는 단체장과 함께 계마인데 공무원의 임명, 고용, 해임 관련 사항 의결 • 의회-단체장 간 의견 불일치 시, 의회는 회의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다수결로 단독 의결 • 의회에서 단체장에게 결정권을 위임 또는 해당 결정이 지속적인 행정에 포함될 경우 단체장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구분 및 업무감독 • 의회는 단체장과 합의하여 대의원의 업무영역 조정 • 양자 간 의견 미합의 시, 의회는 법적 구성원의 과반으로 해당 사안 의결 가능 • 별도의 법적 규정 부재 시, 단체장은 공무원의 복무 및 고용 권리 관련 결정 가능 • 별도의 법적 규정이 부재 시, 기본 조례는 공무원의 지위, 계마인데에 대한 기본 관계 또는 고용 관계와 관련한 결정을 단체장과 합의하에서 의회 또는 본위원회를 통해 규정 가능 • 양자 간 미합의 시, 의회는 법정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사안 의결 가능

□ 분석결과 종합 요약2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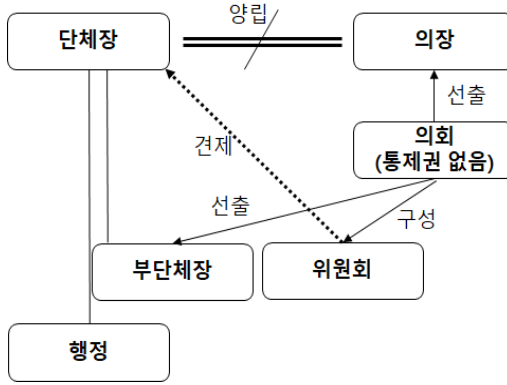
- 독일은 전반적으로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을 의회가 하는 등 부단체장을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국의 사례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음
- 남독일 시장형은 단체장이 긴급의결권을 가지며 의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함. 그러나 <그림 6-5>와 같이 의회와 단체장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가지며, 의회가 부단체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 단체장을 견제하고 있음

<그림 6-5> 남독일 시장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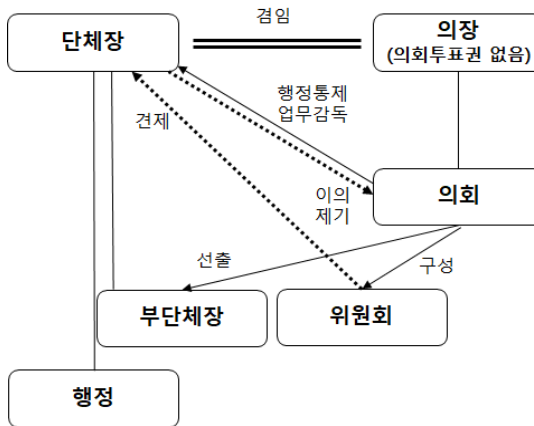
- 이에 비해 이원제 시장형은 단체장과 의장이 양립하며, 각기 선출됨. 의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부단체장을 선출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체장을 견제하게 됨. 이들 간의 구조는 <그림 6-6>과 같음

〈그림 6-6〉 이원제 시장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 마지막으로 의회형은 단체장이 의회의 의장을 겸임하나, 의장으로서 의회 내에서의 투표권은 없음. 〈그림 6-7〉과 같이 의회는 단체장에 대해 행정 통제 및 업무감독을 하고, 단체장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이 있음. 의회는 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을 견제하며, 부단체장을 선출함

〈그림 6-7〉 의회형: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국가별 분석결과 종합

제2절 정책제언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국가별 분석결과 종합

□ 분석결과 종합

-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각 장(제3장 ~제6장)의 제3절에서 표와 도표를 통해 종합·제시하였음
- 제7장에서 국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 영국
 - 기관구성 다양성이 법으로 규정되고, 법에 규정된 유형 중 하나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결정하는 구조임
 - 기본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이 분리되지 않은 기관통합형 구조이며, 시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의회의 구성원이 됨
 - 직선시장과 시의원이 의회를 구성하고, 직선시장의 내각을 구성해 내각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시장-내각형의 경우, 시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함. 의회의 상임위 중 하나인 감독 및 조사위원회(overview and security committee)와 집행기간 내 감사관(monitoring officer)이 단체장을 견제함
 - 그에 비해 시의원 중 리더가 시장의 직위를 수행하는 리더-내각형의 경우는 위원회중심형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다만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책임행정관(chief executive)으로 임명하고, 그가 집행기관의 운영을 하도록 함. 이 경우 시의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감사관(monitoring officer)과 감독 및 조사위원회(security committee)가 견제 역할을 하게 됨

- 영국의 위원회형은 의회 구성원이 다양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주요 고위행정직에 대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상기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감사관 (monitoring officer)과 감독 및 조사위원회(health overview security committee)가 견제 역할을 하게 됨
- 영국의 경우 기관통합형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및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하부 위원회인 감독 및 조사위원회(security committee)와 행정전문가인 감사관(monitoring officer)으로 하여금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내각 및 주요 하부위원회 구성원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관대립형과 비교할 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장-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장-내각형의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권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의 국민정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봉건제도로의 회귀 우려가 있어, 오히려 시장 직선을 시도하였다가 회귀한 사례도 나타남
- 영국의 기관구성 다양화는 사실상 기관통합형의 세부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제2장에서 기관구성 유형으로서 심층 분석되지 못했음. 따라서 본장에서 3개 기관구성 유형을 비교해보면 <표 7-1>과 같음

〈표 7-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구분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시장(시민 전체가 직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내각: 시장이 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 내각이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을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시장(또는 리더,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내각: 리더가 의원을 지명해 내각을 구성 • 내각이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의장(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의원(선거구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 • 집행부 = 각 위원회 • 각 위원회가 수석행정관 및 기타 고위공무원을 임명

구분	시장-내각형	리더-내각형	위원회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대한 책임 명확 • 각 선거구가 아닌 시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를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중심의 정책결정을 통해 위원회형에 비해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정책결정이 빠름 • 평의원(내각이 아닌 위원)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의회 중심의 전통적인 영국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유사해 국민 수용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의원이 각자가 속한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회 내 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선제 시장 선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 • 시장에 대한 권한 집중으로 봉건제도로의 회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없어, 의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나,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타 위원회의 정책결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그 결과 의회 전반의 주요 정책결정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미국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자체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스스로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구성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분석의 대상이 된 뉴욕주를 중심으로 살펴 볼 때, 62개 시 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의회-관리자형(13개), 위원회형(3개), 시장-의회형(46개)으로 다양하게 나타남(Local Government Handbook, 2018). 이 중 의회-관리자형이 본 연구의 기관통합형이라 할 수 있는 책임행정관형, 시장-의회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 다만, 시장-의회형에서 시장과 의회의 권한배분은 기관마다 달라 강시장형 또는 약시장형으로 임의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위원회형 시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사실상 의회-관리자형에 가까운 구조를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 구조를 가지는 카운티 1개와 전형적인 위원회형 이라 할 수 있는 타운 1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

- 분석결과 카운티의 경우 위원회형으로 볼 수 있으며, 각 기초정부에서 선출된 관리자(supervisor)로 구성된 관리자위원회가 입법과 행정을 총괄함. 다만 카운티는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기 때문에 제2장에서 언급한 위원회형과는 차이가 있음. 상대적으로 오시닝 타운의 경우가 제2장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위원회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비교 결과 시장과 의회가 각기 독립해 있는 기관대립형의 경우 영국과 같이 시의회 안에 시장과 의원이 구성되어 있는 기관통합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강함. 그러나 대한민국과 비교해본다면, 의회가 의회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각 부서장 임명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의회의 견제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비해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 구조일 때에는 대체로 집행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가 전문관리자를 채용하는 책임행정관형을 이루고 있음
- 최근에는 위원회형을 선택하더라도 전문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따라서 순수 위원회형을 유지하는 지역은 타운 단위를 제외하고 그 수가 감소된 상태임
- 따라서 위원회형 기관구성 형태를 지니는 카운티의 경우 관리자위원회가 사실상의 집행부 부서장들에 대한 모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인 주민이 유권자인 주민이 입법과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자위원회의 구성원(supervisors) 외에 검사장, 보안관, 재무관, 서기 등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함

○ 일본

- 일본은 단체장과 의회가 분리된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으며, 기관구성의 다양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단체장에게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등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대로 의회 역시 단체장불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이 강하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본다면 단체장의 권한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독일

- 독일의 경우, 연방제 국가로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별로 기관구성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주 차원에서 게마인데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주 안에서 다양한 기관구성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독일의 기관구성 유형은 남독일 시장형, 이원제 시장형, 의회형, 비전형 참사회형의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나(Rudzio, 2015), 이 중 3개의 대표 유형만을 선정해 분석하였음
 - 독일은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지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게마인데의 경우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게마인데는 의원들 중에서 의원이 선출됨
 - 따라서 단체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하는 남독일 시장형이나 의회형의 경우에는 기관대립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원제 시장형만이 남독일 시장형과 의회형기관대립형이라고 볼 수 있음.
 - 기관통합형인 남독일 시장형과 의회형에서는 남독일 시장형의 시장의 경우 의회 의장으로서 투표권까지 가지므로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큼. 이와 달리 의회형은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임하지만, 의회 의장으로서 투표권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전반적으로 의회가 부단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며, 의회 내 위원회에서 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관통합형의 경우,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고, 기관대립형의 경우는 시장선거를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높아짐. 다만 기관통합형이라도 시장을 별도로 직선하는 경우

선거비용이 높음

- 기관통합형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을 조사, 감사,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시민이 선출하도록 하거나(미국), 나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및 공무원을 지정하여 내부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게 됨(영국)
- 또한 전반적으로 전문성 보강을 위해 시장선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행정관을 채용하고 의회가 그를 감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표 7-2〉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비교

유형	국가	유형	견제기능	선거비용
기관대립형	미국	시장-의회형		고
	독일	이원제 시장형		고
	일본	시장-의회형		고
기관통합형	영국	시장-내각형		고
		리더-내각형	약	
		위원회형	약	
	미국	카운티 의회형	약	
		타운 의회형	약	
		의회-관리자형	약	
	독일	남독일 시장형	약	고
의회형		약	고	

제2절 정책제언

□ 정책제언

-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국내와 같이 1개 형태의 기관구성만을 법적으로 규정하다가 기관구성의 다양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단, 이 때 구체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을 법문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단지 ‘지역의 상황에 맞는 기관구성의 형태를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주민투표의 방법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세부적인 기관구성의 유형은 령에 예시적인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둘째, 영국의 사례를 볼 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는 국민정서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음. 경제적 위기,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 전문성 확보 필요 등과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이 각 지역이 저마다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형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어떤 유형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더라도 입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함. 기관통합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의회에 대한 견제기능 및 정책결정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미국의 예처럼 추가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기관대립형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할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어려움. 따라서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넷째,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국가(예를 들어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기관통합형에서 기관대립형 전환을 통해 시민이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임에 반해, 국내의 경우 이미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오히려 시민의 직접적 참여의 폭을 좁히는 선택으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함
- 다섯째, 인구규모 등과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 간에는 유효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이 더 영향을 미침. 다만 영국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기관구성 다양화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바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위원회형의 기관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한국형 자치단체 기관구성 모델 설계 시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기관별 역할, 선출의 방법, 견제 및 협력의 방법 등 세밀한 설계를 통해 어떤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견제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별 편차는 물론, 한 국가 내의 한 유형 안에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임



참고문헌

- 김병국·금창호·권오철. (201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구기찬. (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다양화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기·홍주미. (2017).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249-274.
- 박병식이시경이창가최준호. (2010). 현대도시와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 박정훈. (2014).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사례연구. 행정안전부 용역과제.
- 박해육. (2015). 독일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제도 비교연구. 유럽헌법연구, 19, 37-68.
- 박종화윤대삭이종열. (2013). 도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신환철. (2015). 지방정부 기관구성형태의 전환에 대한 논의.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23-48.
- 안영훈. (20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관행. (2010).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30: 237-269.
- 이승중. (2014). 지방자치론(제3판). 박영사.
- 이중수. (2010).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책임성 제고.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집.
- 이행준. (2016).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정책연구. 27(2): 119-140.
-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임승빈. (2017). 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임재현. (2017).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전훈. (2005).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공법학연구. 6(3): 27-49.
- 정세욱. (1995). 지방행정학. 법문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2014.12.02.
- 최진혁. (201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시론적 접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최진혁. (2016).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시론적 접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 87-111.
- 최창호 (1995). 지방자치학. 삼영사.
- 경기도의회. (2016). 지방자치단체 기관형태에 대한 연구, 2016 경기도 의회 연구용역
- 금창호, 하동현. (2018). 일본 지방자치법 번역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시과제
- 박정훈. (2014).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사례 연구, 2014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 안영훈. (2007).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과제
- 오시영 외(편저). (2008),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한국행정연구원 비교 및 지역연구총서
- 이상윤. (201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일본, 헌정제도연구 18-20-1
-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2018). 일본의 지방자치 2016(2018 개정판),
<http://korea.clair.or.kr/>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8). 외국의 지방자치, <http://cla.hanyang.ac.kr>
- 일본국 헌법. ‘日本國憲法’(1946)
- 일본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1955)
- 위키피디아. 검색어: England and Wales mayoral referendums (검색일: 2019.03.17.)
검색어: Watford borough, mayor of Watford (검색일: 2019.03.25.)
검색어: manchester city council (검색일: 2019.04.11.)
검색어: delaware county (검색일: 2019.05.31.)
검색어: city of buffalo (검색일: 2019.07.01.)
- BBC, 2004.05.21. http://news.bbc.co.uk/2/hi/uk_news/wales/3732381.stm
- Bingham et al. (1991). Managing Local Government. London: Sage Publication.
- House of Common Libratry. (2002). “Local Elections in England: 2 May 2002.”. Research Paper 02/33 9 May 2002.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7). Population data by local authorities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
opulationestimates](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
- Rudzio, W. (2015). Politische Kultur der gelockerten Bindungen. In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p. 501-531). Springer VS, Wiesbaden.
- UK Parliament. (2019). Directly-elected mayor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 2017 Census of Government.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7/econ/gus/2017-governments.html>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3). 2013 Census of Government.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3/econ/gus/2013-governments.html>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2). 2012 Census of Government.
<https://www.census.gov/data/tables/2012/econ/gus/2012-governments.html>
- Watford Borough Council'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 Watfordobserver. (2001). "Watford leads the way to elected mayor". Watfordobserver 2001.07.13.
- Watfordobserver. (2018). "How is Watford's elected mayor differencet to others?", Watfordobserver 2018.04.05.

부록 Local Government Act(2000)

지역정부법(2000)

2000 제22장

지역정부의 기능 및 절차, 지역정부 선거에 관해 규정하며, 특정 복지서비스 관련 보조금 및 주택 혜택에 대해 명시하고,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제29조를 개정하며, 관련 목적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2000년 7월 28일]

여왕 폐하에 의해, 상하원의 조언과 동의에 따라 본 소집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편 경제·사회·환경 복지 증진 등

조항 해석

1. 제1편 “지역정부”의 의미

[F1(1)] 본 장에서 “지역정부”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영국 내—
 - (i) 카운티의회
 - (ii) 지역 의회
 - (iii) 런던 자치구의의회
 - (iv) 런던 시정부가 지역정부로서의 권한을 지닌 공동 의회

(v) 실리 제도(Isles of Scilly) 의회

[F2(vi) 요건에 부합하는 교구(敎區) 의회.]

(b) 웨일즈는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 [F3 또는 지역사회의회].

[F4(2) 국무장관이 본 편의 목적상 부령에 의해 규정한 요건을 교구 의회가 충족하는 경우, 교구 의회는 본 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복지 증진

2. 복지 증진

(1) [F5 웨일즈 내] 모든 지역정부는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할 권한을 지닌다.

- (a) 지역 내 경제 복지 증진·개선
- (b) 지역 내 사회 복지 증진·개선 및
- (c) 지역 내 환경 복지 증진·개선

(2) 제1항에 의거하여 부여하는 권한은 다음 관련하여, 또는 다음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의 관할지역 내 전 지역 또는 일부 지역, 또는
- (b)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모든 거주인 또는 관할지역에 위치한 모든 사람.

F6(3).

F6(3A).

[F7(3B) 제1항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또는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웨일즈 지역 정부는 2009년 (웨일즈) 지역정부 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39(4)조에 공표한 관할지역사회 전략을 참작하며, 동 조치 제41조에 의한 검토 결과 지역사회 전략이 개정된 경우, 제41(6)조에 따라 가장 최근 공표된 전략을 참작한다.]

[F8(3C) 지역 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제3(B)항에 명시된 전략으로서, 지역사회의회가 설립된 지역(들)에 위치한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가 발간하는 전략이다.

(4) 제(1)항에 의한 권한은 지역정부가 —

- (a) 예산을 지출하고,
 - (b) 특정인에게 재정 지원을 하며,
 - (c) 특정인과 협의, 또는 합의하고,
 - (d) 특정인과 협력하거나 활동을 촉진하거나 활동을 조율하며
 - (e) 특정인을 대리하여 특정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 (f) 특정인에게 인력·물품·서비스·숙소를 지원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5) 제1항 권한은 관할지역 외부에 있는 사람, 또는 관할지역 외부 지역에 관련하여, 또는 이를 위해 제1항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목적을 하나 이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지역정부가 이를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6) 제(4)항, 제(5)항 규정 사항은 제(1)조에 의한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복지 증진 권한 제한

- (1) 다른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내 금지, 제한, 제약 규정에 의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권한에 의해 동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 (2) 제2(1)조 권한에 의해 지역정부가 (과세, 대출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다.
- (3) [F9 웨일즈 장관들]은 부령을 공표하여, 부령에 명시한 조치, 또는 명시한 유형의 조치를 제2(1)조에 의해 지역정부가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F10(3A) 제3항 권한은 다음 기관에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다.

- (a) 모든 지역정부,
 - (b) 특정 지역정부, 또는
 - (c)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
- (4) [F11 제4(A)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에 의해 부령을 공표하기 전 [F9 웨일즈 장관들] 지역정부 대표들과 협의하며, 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와도 협의한다.

[F12(4A) 제4항은—

- (a) 기존 부령의 조항 또는 기존 부령을 특정 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정부에 적용하거나
 - (b) 기존 부령의 특정 조항, 또는 기존 부령이 특정 정부, 특정 유형의 정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령으로서, 기존 부령을 개정하는 목적만을 지닌 본 조의 부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제2(1)조 권한을 행사하기 전, 지역정부는 해당 관한 행사에 관련하여 [F9 웨일즈 장관들]이 공표하는 지침을 참작해야 한다.
- (6) 제5항에 의거하여 지침을 공표하기 전, [F9 웨일즈 장관들]은 지역정부 대표들과 협의하며, 웨일즈 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와도 협의한다.

F13(7).

- (8) 본 조에서 “법률”은 (M1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의 의미 내에서의) 하위 법률을 포함한다.

4. 복지 증진 전략

- (1) [F14 잉글랜드] 내 모든 지역정부는 지역 내 경제·사회·환경 복지를 증진·개선하고, 영국 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본 조에서 [F15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략]이라고 지칭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 (2) 지역정부는 때때로 [F16 지속 가능한 지역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 (3) [F17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략]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경우 지역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F18— 다음 당사자, 기관과 협의하고, 이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 (i) 관할 지역정부의 경우, 각 정부 협력기관, 그리고 관할 지역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당사자들
 - (ii) 그 밖의 경우, 관할 지역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들 F19...]

[F20(aa) 잉글랜드 내 지역정부의 경우 해당 지역정부의 관할지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음을 참작한다.

- (i) 2010년 아동빈곤법 제21조(지역 내 아동빈곤 감소 협력 조치)에 의거하여 수립한 체계
- (ii) 동법 제22조(지역 내 아동빈곤 수요 분석)에 의한 지역아동 빈곤 수요 분석 자료
- (iii) 동법 제23조(지역 아동빈곤 공동 전략)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아동 빈곤 공동 전략

(b) 국무장관 공표 지침을 참작한다.

(4) 본 조에 의거하여 지침을 공표하기 전,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대표들과 협의하며, 그리고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와도 협의한다.

F21(5).

[F22(6) 제3(a)조에서 “관할 지역정부” 및 “정부 협력기관”은 관할 지역정부와 관련하여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지역정부 합의)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동 법 제 103조, 제104조 참조).]

[F23 4A 전략: 교구

(1) 제4조의 지역사회 전략 수립 의무는 요건에 부합하는 교구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24(2).

F24(3)].

5. 법률 개정·폐지 권한

(1) 특정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에 의해 지역정부가 제2(1)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동 법이 권한 행사를 방해한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해당 법률을 개정·폐지·철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제1항 권한은 다음에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다.
- (a) 모든 지역정부
 - (b) 특정 지역정부, 또는
 - (c)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
- (3)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1항 권한은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권한을 포함한다.
- [F25(4) 제1항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은 웨일즈 장관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한, 웨일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항을 제정할 수 없다.
- (4A) 제1항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은—
- (a) 웨일즈의회 승인 없이 웨일즈의회의 조치 또는 법률을 개정·폐지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며,
 - (b) 웨일즈 장관들의 승인 없이 웨일즈 장관들(또는 1998년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에 의하여 수립한 웨일즈의회)이 제정한 하위 법규를 개정·폐지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다.
- (4B) 국무장관이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4(A)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국무장관이 웨일즈를 대상으로, 제안 사항에 따라 제1항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F26 웨일즈 장관들]은 국무장관에게 동 제안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6) 본 장에서 “법률”은 (M2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 의미 내에서의) 하위 법률을 포함한다.
- [F27(7) 제1항 지역정부는 지역사회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법률 개정

6. 계획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 권한

- (1)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무장관은 [F28 특정 법률이 잉글랜드 지역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특정 사안 관련계획 또는 전략을 수립·창출

하며,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동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개정·폐지·철회하거나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 권한은 다음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a) [F29 잉글랜드 내] 모든 지역정부
- (b) [F30 잉글랜드 내] 특정 지역정부, 또는
- (c) [F31 잉글랜드 내]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

(3) 국무장관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1항 권한을 지역정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 (a) 제1항에 명시한 바대로 법률을 지역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 (b)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1항 권한은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권한을 포함한다.

F32(5).

F33(6).

(7) 양원의 기본절차명령 목적상 본 항 이외의 조항에서 혼합 법률 문서로 간주될 수 있는 본 조 부령은 상하원에서는 혼합 법률 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조의 “법률”은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의 의미 내에서의) 하위 법률을 포함한다.

7. 계획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 권한: 웨일즈

(1) 제4항, 제6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특정 사안과 관련이 있는 계획, 전략을 수립·창출하거나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F35(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은 동 법률이 웨일즈 지역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개정·폐지·철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F34 웨일즈 장관들]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36(2).

(3) 제1항 권한은 다음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다.

- (a) 웨일즈 내 모든 지역정부
- (b) 웨일즈 내 특정 지역정부, 또는
- (c) 웨일즈 내 특정 유형 지역정부

(4) 제1항 권한은 [F37 웨일즈 장관들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a) 동 조항에 명시한 바대로 법률을 지역정부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b)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5)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1항 권한은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권한을 포함한다.

F38(6).

(7) 본 조에서 “법률”은 (M3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의 의미 내에서의) 하위 법률을 포함한다.

[F39(8) 해당 부령이 웨일즈의회 [F40 법률] 조항이라면 의회의 입법 권한에 속하지 않을 사항을 본 조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는 없다.

(9) 제8항 목적상 [F41 2006년 웨일즈정부법 제108(4)조(의회의 권한)은 제(a)호가 생략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0) 제11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안을 웨일즈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 받지 않는 한, 본 조의 부령을 수록한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11) 기존 부령을 개정하는 목적만을 지닌, 본 조에 의한 부령을 수록한 법률은 웨일즈의 회 결의안에 의해 폐지한다.]

- (a) 기존 부령의 조항, 기존 부령을 특정 정부, 특정 유형의 정부에 적용하는 부령
- (b) 기존 부령의 조항, 기존 부령이 특정 정부, 특정 유형의 정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부령

8. 1972년 지역정부법 제137조 개정

M4 1972년 지역정부법 제137조(별도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지역정부 권한)에서 제9항은 아래와 같이 조항을 교체한다.

“(9) 제10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 “지역정부”는 교구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회를 의미한다.

(10) 상기 제3항에서 “지역정부”는—

- (a) 잉글랜드 카운티의회, 지역 의회, 런던 자치구의회, 공동의회 또는 교구 의회,
- (b) 웨일즈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회, 지역사회의회를 의미한다.”

제5조, 제6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9. 제5조, 제6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1)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거하여 부령을 공표하기 전, 국무장관은 제안하는 부령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당사자, 기관과 협의한다.

- (a) 해당 지역정부,
- (b) 지역정부 대표자들 및
- (c) 협의해야 하는 다른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

(2) 제안하는 부령이 웨일즈 지역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무장관은 [F42 웨일즈 장관들]과도 협의해야 한다.

(3) 국무장관이 본 조의 선행 조항들에 의거하여 협의를 한 후,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해 부령 공표를 제안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 (a) 제안 사항을 설명하고,
- (b) 이를 부령 초안 형식으로 명시하며,
- (c) 제1항에 의한 협의 내역을 수록하고,
- (d) 제2항에 의하여 협의를 이행한 경우, [F43 웨일즈 장관들]의 견해를 명시한 문서

를 의회 양원에 제출한다.

- (4) 제3항에 의하여 제안 사항 관련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문서 제출 일자로부터 60일 기간이 만료하기 전, 제안 사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발효하도록 하는 제5조, 제6조 부령 초안을 제105(6)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 (5) 제4항의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다음 기간은 제외한다.
- (a) 의회가 해산되었거나 정회한 기간, 또는
 - (b) 하원 또는 상원이 4일 이상 휴정한 기간.
- (6)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거하여 부령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은 제4조 기간 중 개선된 의견을 감안하여 이를 작성한다.
- (7) 제105(6)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한 부령 초안에는 다음 내역을 상세히 명시하는 국무장관 성명서를 첨부한다.
- (a) 제6항에 의거하여 검토하는 의견 개선 내역 및
 - (b) 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 제출 문서에 수록하는 제안 사항 중 변경 내역.

[F44(8) 본 조 조항은—

- (a) 기존 부령, 또는 기존 부령의 조항을 특정 지역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에 적용하거나,
- (b) 기존 부령 또는 기존 부령의 조항이 특정 지역정부,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부령으로서, 기존 부령을 개정하는 목적만을 지닌, 제5조, 제6조에 의한 부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45 9A. 제7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 (1) 웨일즈 장관은 제7조에 의하여 부령을 공표하기 전, 제안한 부령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다음 당사자들, 기관과 협의한다.
- (a) 웨일즈 지역정부,
 - (b) 웨일즈 지역정부 대표들 및
 - (c) 부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자들.

- (2) 제1항에 의한 협의 후 웨일즈 장관들이 제7조에 의거하여 부령을 공표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 (a) 제안 사항을 설명하고,
 - (b) 이를 부령 초안 행태로 기재하며,
 - (c) 제1항 협의 내역을 수록한 문서를 웨일즈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3) 제2항에 의거하여 제안 사항 관련 문서를 웨일즈의회에 제출한 경우 문서 제출 후 60일 기간이 만료하기 전, 제안 사항이 발효하도록 하는, 제7조에 따른 부령 초안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웨일즈의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 (4)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의회가 해산되었거나, 4일 이상 휴정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5) 제7조에 의거하여 부령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웨일즈 장관들은 제3조에 명시한 기간 중 개진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6) 웨일즈의회에 제출한 제7조 부령 초안에는 다음 내역을 상세히 명시하는 웨일즈 장관들의 성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a) 제5항에 따라 검토한 의견 개진 사항 및
 - (b) 제2항에 의해 웨일즈의회 제출 문서에 수록된 제안 사항 중 변경 내역.
- (7) 본 조항은 아래와 같이 기존 부령을 개정하는 목적만을 지닌, 제7조에 의거하여 공표하는 부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특정 지역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정부에 대한 기존 부령의 조항 또는 기존 부령을 연장하거나,
 - (b) 기존 부령의 조항, 또는 기존 부령이 특정 지역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정부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F1 [제1A편. 잉글랜드 지역정부 통치체계

제1장. 허용되는 통치 형태

9B. 잉글랜드 지역정부의 허용되는 통치 형태

(1) 지역정부는 다음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a) 집행부 체계
- (b) 위원회 체계, 또는
- (c) 국무장관 규정 체계.

(2) 집행부 체계는 동 체계와 관련이 있는 본 편의 조항, 또는 본 편에 의해 제정한 조항을 따라야 한다(특히 제2장 참조).

(3) 위원회 제도는 동 제도와 관련이 있는 본 장에 의해 제정한 조항, 또는 본 장 조항을 따른다(특히 제3장 참조).

(4) 본 편에서—

“위원회 제도”는 지역정부가 수립한 체계로서—

- (a) 1972년 지역정부법 제 6편 및
- (b) 본 편에 의해

정부의 역할 이행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체계, 또는 국무장관이 규정한 별도 체계를 운영하지는 않는 체계다.

지역정부에 의한 “집행부 체계”는 ---

- (a) 지역정부 집행부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 (b) 지역정부의 특정 역할이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체계다.

“국무장관 규정 체계”는 제9BA조에 의거하여 국무장관 부령에 의해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9BA. 허용되는 통치 형태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1) 국무장관은 지역정부의 역할 이행을 위해, 이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국무장관 부령은 특히 ---

- (a) 지역정부의 역할 이행 방법, 이행하는 관계자들에 관한 조항을 수록해야 하고,
- (b) 역할을 위임하는 조항을 수록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부령에는 특히 본 편 제2~4장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조항을 수록할 수 있다.

(4) 본 조의 권한 행사 여부 및 행사 방법을 검토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은 제5항에 의한 제안 사항을 참작한다.

(5) 제6항 요건이 충족된다고 지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제안 내역에 명시한 체계를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지역정부가 국무장관에 제안할 수 있다.

(6) 본 항 요건은—

- (a) 국무장관에 제안 사항을 제시하는 시점에, 제안 체계를 지역정부가 운영할 경우 지역정부가 역할 이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
- (b) 정부의 제안 체계 운영에 의해 정부 의사 결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및
- (c) 본 조에 의해 규정하는 체계가 모든 지역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가 검토해 보기에 적합한 경우다.

(7) 제5항에 의한 제안 사항에서 —

- (a) 제안 체계에 관련하여, 제2항에 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지역정부가 판단하는 조항에 관해 설명하며,
- (b) 제안 체계에 관련하여 제6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장. 집행부 체계

지역정부 집행부

9C. 지역정부 집행부

- (1) 지역정부 집행부는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 (2)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직선시장 및
 - (b) 직선 시장이 집행부에 임명한 지역정부 의원 2인 이상.
 그러한 행정관은 본 편에서 시장 또는 내각 행정관이라고 칭한다.
- (3)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a) 지역정부에 의해 집행부 대표로 선출된 의원(본 편에서 집행부 대표라 칭함)
 - (b) 집행부 대표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의원 2인 이상.
 그러한 행정관은 본 편에서 대표 및 내각 행정관(잉글랜드)이라 칭한다.
- (4) 지역정부 집행부에는 지역정부 의장, 부의장을 두지 않는다.
- (5) 지역정부 집행부는 10인, 또는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규정하는 구성원 인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6)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지역정부 역할 이행 조정)은 제3(a)항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역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역할

9D.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 (1) 본 조항의 목적은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의 역할 중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설정하는데 있다.
- (2) 본 법규의 조항, 그리고 본 법규가 제정된 후 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부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정부 역할은 집행부 체계 내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임이 된다.

- (3) 국무장관은 국무장관 부령에 명시한 지역정부의 역할이—
 - (a)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이 되거나,
 - (b)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같거나, 또는
 - (c) 다음과 같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i) 부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및
 - (ii) 부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 (4) 집행부 체계하에서는 제3(b)항에 속하는 지역정부 역할이—
 - (a)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과 같거나,
 - (b)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이 되거나, 또는
 - (c) 다음 역할과 같도록 규정한다.
 - (i) 집행부 체계 내에서,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및
 - (ii) 집행부 체계 내에서,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 (5) 제3(c)항, 제4(d)항 권한은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는 지역정부의 역할에 관련하여, 다음을 이행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a)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과 관련이 있는 조치에 관해 규정한다.
 - (b)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수행과 관련된 조치에 관해 규정한다.
- (6) 국무장관은 지역정부의 역할(본 조항 선행 조항들에 의해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할 역할)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상황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7)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 또는 동 조항의 일부 조항이 지역정부의 역할에 적용되지 않음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의 역할은 본 조에 의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될 수 있다.
- (8) 국무장관 부령에서 규정한 지역정부의 역할에 관해 본 조에서 언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부령에서 규정한 특정 유형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다.

(9) 본 조에서 —

특정 역할 관련 “조치”는 (해당 조치의 특성에 관계 없이, 그리고 특정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조치를 포함한다.

- (a) 역할 이행 과정 중, 역할 이행을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
- (b) 역할 이행에 부수적인 조치, 또는 역할 이행을 촉진하는 조치
- (c) 제(a)호, 제(b)호에서 규정한 역할 또는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

“역할”은 본 법 제정 후, 또는 제정 이전에 부여한 역할, 그 밖의 방식으로 발생한 모든 성격의 역할을 의미한다.]

9DA. 집행부의 역할: 추가 조항

(1) 본 장 하기 조항 중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또는 책무가 아닌 역할은 동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역할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 제9D조에 의해 집행부의 역할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정부의 역할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는 —

- (a) 지역정부를 대리하여 집행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간주하며,
- (b) 본 편의 조항, 이에 의거한 규정 사항, 또는 해당 유형 집행부의 역할 이행에 적용되는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잉글랜드 지역 의원에 의한 역할 이행) 제236조 조항, 또는 이에 의거한 규정 사항에 의해서만 이행할 수 있다.

(3) 따라서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

- (a) 지역정부가 이행할 수 없으며,
- (b)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1)조가 적용되는 역할이 아니며,
- (c) 제9EB조에 의거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5)조에 따른 집행부 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제5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는 지역정부의 역할 중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은 본 장 조항, 또는 이에 의거한 규정 사항에서 허용하거나 규정하는 방식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이행한다.
- (5) 국무장관은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는 지역정부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정부의 역할을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의 특정 조항, 또는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 포함).
- (6) 본 조에서 “역할”은 제9D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역할 이행

9E. 역할 이행: 일반적인 사항

- (1) 제9EA조, 제9EB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하의 —
 - (a)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 (b) 대표 및 집행부(잉글랜드)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본 조에 따라 이행한다.
- (2) 집행부 고위 공무원단은 —
 - (a) 그러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 (b) 다음 당사자, 기관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i) 집행부
 - (ii) 집행부의 다른 구성원
 - (iii) 집행부 위원회
 - (iv) 지역 위원회, 또는
 - (v) 지역정부 공무원.
- (3)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집행부는 —
 - (a) 집행부 위원회
 - (b) 지역 위원회, 또는
 - (c)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4)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구성원은 —
- (a) 지역 위원회, 또는
 - (b) 지역정부 공무원이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5)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동 위원회는—
- (a) 지역 위원회, 또는
 - (b) 지역정부 공무원이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6) 본 조에 의해 지역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동 위원회는 지역정부 공무원이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7) 본 조에 의해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 또는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집행부 고위 구성원,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가 조정하더라도 이를 조정한 집행부 고위 구성원,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8) 본 조에서 —
- 지역정부의 “지역 위원회”는 제9항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 “집행부 고위 구성원”은 ---
- (a) 시장, 내각 집행부의 경우, 직선 시장
 - (b) 대표, 내각 집행부(잉글랜드)의 경우 집행부 대표를 의미한다.
- (9)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본 항 요건을 충족한다.
- (a) 지역정부 관할지역 일부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부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 (b) 지역정부 구성원이 위원회, 부위원회 구성원이며, 동 구성원이 해당 지역에 온전히, 또는 일부 속하는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된 경우.

9EA. 기타 지역정부의, 지역정부에 의한 역할 이행

- (1)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 (a) 관계당국(지역정부 제외), 또는
 - (b) 관할 집행부(지역정부 집행부 제외),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집행부,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 특정 구성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조정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잉글랜드 내 관할 집행부(관계당국의 집행부 제외),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관계당국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계당국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는 이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 잉글랜드 관계당국의 역할은 당국이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동 체계하에서 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이다.
- (4) 제1항, 제2항 국무장관 부령은 특히—
 - (a) 관할 집행부, 또는 집행부 위원회, 집행부 구성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하는 경우, 집행부가 속한 체계 당국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 (b) 관계당국의 역할 이행을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 있으며,
 - (c) 관할 집행부, 집행부 위원회, 집행부 구성원의 역할 이행을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5) 제4(b)항에 의해 제정한 조항은 특히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2)~(4)조 조항 중 특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6) 제4(c)항에 의해 제정한 조항은 특히 제9E조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7) 본 조에서—

“관계당국”은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 의미 내에서의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관할 집행부”는 본 편 또는 제 2편의 지역정부 집행부를 의미한다.

“명시된”은 본 조 부령에 명시되었음을 의미한다.

9EB. 역할의 공동 이행

- (1) 국무장관은 집행부 체계의 대상이 되는 역할이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5)조 체계를 승인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는 특히 —
 - (a)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지역정부를 대신하여 체계의 구성원이 되는 상황
 - (b) (i) 지역정부 및 (ii)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체계의 구성원이 되는 상황
 - (c)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2)조 또는 제102(1)(b)조, 제101(2)조, 제101(3)조에 의한 지역정부 역할을 (동 법 제101(5)(a)조 공동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대신 이행하는 상황,
 - (d) 동 법 제101(2)조 또는 제102(b)조, 제102(2)조, 제101(3)조에 의한 지역정부 역할을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이행하는 상황,
 - (e) 집행부 공동위원회,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을 임명하는데 있어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
 - (f) 집행부, 집행부 위원회,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공동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는 자 (지역정부 공무원 포함)에 관련된 조항을 수록한다.
- (3) 본 조에서 “명시된”은 본 조에 의한 부령에 명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9F. 감독 및 조사위원회: 역할

- (1)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지역정부 위원회(본 장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라고 칭함)를 1개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2)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는 집행부 체계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다음 권한을 지니도록 한다(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1개 이상이거나, 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있는 경

우 권한을 공유하도록 한다).

- (a)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의사 결정 사항 또는 그 밖의 이행한 조치를 감독·조사하는 권한.
 - (b)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집행부에 보고·권고하는 권한.
 - (c) 행정관의 책무가 아닌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의사 결정 사항 또는 그 밖의 이행한 조치를 감독·조사하는 권한.
 - (d) 행정관의 책무가 아닌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행정관에 보고·권고하는 권한.
 - (e) 지역정부 관할지역, 또는 구역 내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지역정부, 행정관에 보고·권고하는 권한.
 - (f) [F2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조가 적용되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경우—
 - (i) 동 조항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부 관할지역에서 보건서비스(동 법의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미 내에서) 관련 사안을 감독·조사하는 권한 및
 - (ii) 해당 규정에 의해 관련 사안에 관련하여 보고·권고하는 권한.]
- (3) 제2항 “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지역정부(“관계당국”)에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 (a) [F3 관계당국 및 기타 지역정부 기관 1곳 이상이 구성한,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5조 제2(a)항의 의미 내에서의 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
 - (b) [F4 동 조항 제(2)(b)항에 의해 수립한 체계에 의해 관계당국의 (동 조항 제1항의 의미 내에서의)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지역정부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 (c) 관계당국을 포함하여 지역정부 기관 2곳 이상이 구성한,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123조(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미 내에서의 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

- (4)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사 결정 사항을 감독, 조사하는 제2(a)항 감독 및 조사위원회 권한은 다음 권한을 포함한다.
- (a) 의사 결정을 한 당사자가 의사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권한, 또는
 - (b) 의사 결정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제2(a)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권한.
- (5)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다음 역할 이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
- (a) 본 조 및 제9FA~9FI조에 의한 역할[F5 또는].
 - (b)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에 의한 역할 [F6 또는
 - (c)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2ZE)조(보건사안 관련 지역정부의 조사 권한) 규정에 의해 부여 받을 수 있는 이행 권한.]

9FA. 감독 및 조사위원회: 추가 조항

- (1)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 (a) 부위원회를 1개 이상 구성할 수 있고,
 - (b) 구성된 부위원회 역할 수행을 조정할 수 있다.
- (2)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부위원회는 제1(b)항에서 부여한 역할 이외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 (3) 지역정부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에는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소속될 수 없다.
- (4) 지역정부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에는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자가 소속될 수 있다.
- (5)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별표 A1, 제6~8호 및 제20(6)조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자는 별표 A1, 제11호, 제12호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 또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회의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 (6)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 (a) 1972년 지역정부법 제5A편(특정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 회의 참관 및 문서 열람) 목적상 주요 의회의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및
 - (b)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조 (정치단체에 의석을 할당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간주한다.
- (7)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2조 제(2)항 및 제(5)항은 동 조항에 의해 구성하는 위원회에 이를 적용하는 바와 같이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8)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 (a) 집행부 구성원 및 지역정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 사항에 답변하며,
 - (b) 지역정부의 다른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236조(잉글랜드 지역 의원의 역할 수행)에 의하여 동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 (c) 그 밖의 당사자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 (9) 제8항 제(a)호, 제(b)호에서 언급한 구성원, 공무원은 본 호 요건을 일체 준수할 의무가 있다.
- (10) 잉글랜드·웨일즈 법원 절차 목적에 의해, 또는 법원 절차상 특정 질의에 답변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제9항에 의해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 (11)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또는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지침을 참작한다.
- (12)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의 각종 사례 또는 다른 유형의 사례에 관해, 제11항에 의한 지침에 의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9FB. 조사관

- (1) 다음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는 제2항의 역할을 이행하는 공무원을

지역정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2) 상기 역할은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역할에 관련하여 —
- (a)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 위원회(들)의 역할을 증진하고,
 - (b)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 및 동 위원회(들)의 구성원을 지원하며,
 - (c)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역할에 관련하여 다음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 (i) 지역정부 구성원들
 - (ii)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들 및
 - (iii) 지역정부 공무원들
- (3) 본 항에 의하여 지역정부가 임명하는 공무원 지역정부 "조사관"이라 칭한다.
- (4) 지역정부는 본 조에 의해 다음을 임명할 수 없다.
- (a)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4조에 의해 임명하는 지역정부 공무원 대표
 - (b) 동 법 제5조에 의해 임명하는 지역정부 감사관
 - (c) 동 조항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정부 수석 재무관
- (5) 제1항 의무는 카운티의회가 있는 지역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본 조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9FC. 감독 및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사안 회부

- (1)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는—
- (a)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위원회 역할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 (b)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 구성원이 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을 부위원회에 회부하며,
 - (c) 지역정부의 구성원이 해당 구성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할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위원회 역할과 관계 있는 제외되지 않은 사안을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2) 제1항 목적상, 특정 규정에 의해 사안이 위원회, 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이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사안을 위원회, 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3) 지역정부 구성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제1(c)항 권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동 구성원은 국무장관 공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 (4) 제3항 지침에서는 다양한 사례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5) 제1(c)항의 “제외된 사안”은 —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 의미 내에서의 지역 치안·범죄 관련 사안, 또는
 - (b) 본 조 목적상 국무장관 공표 부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형의 사안을 의미한다.

9FD. 제9FC(1)(c)조에 의한 회부 사안 처리

- (1) 본 조는 제9FC(1)(c)조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부 구성원이 특정 사안을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제9F(2)조 권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감안할 수 있다.
 - (a)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236조(잉글랜드 지역 의원의 권한 행사)에 의하여 구성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및
 - (b)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제9F(2)조 권한을 행사함이 타당한 사유에 대한 구성원의 진술 내역.
- (3)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관해 일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의사 결정 내역 및
 - (b) 의사 결정 사유.
- (4)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제9F(2)조에 의해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제출하는 보고·권고 사항 사본을 구성원에게 전달한다.

(5) 제4항은 제9FG조(기밀 및 비공개 정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9FE.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답변하는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의 의무

(1) 본 조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다음 이외의 경우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권고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 제(1)(b)항에 의한 보고·권고, 또는
- (b) 동 조항 제3(a)항에 의한 보고·권고.

(2)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보고·권고 사항을 발간할 수 있다.

(3)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서면 통보에 의해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 (a) 보고·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 (b)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제안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답변하며,
- (c)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제2항에 의해 보고·권고 사항을 발간한 경우, 답변 사항을 발간하고,
- (d)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제9FD(4)조에 의해 지역정부 구성원에게 보고·권고 사항 사본을 전달한 경우, 동 구성원에게 답변 사항 사본을 전달한다.

(4) 제3항에 의해 전달하는 통보 사항에는,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보고·권고 사항, 통보 사항(통보 사항을 추후 전달하는 경우)을 전달 받은 시기로부터 2개월 내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5) 제3항에 의해 통보 사항을 전달 받는 지역정부, 집행부는 통보 사항 명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 제2항 및 제5항은 제9GA(8)조(기밀 및 비공개 정보)에 의해 제정하는 조항 및 제9FG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7) 본 조에서—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 (b)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집행부”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집행부를 의미한다.

9FF.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보고·권고 사항: 특정 정부 협력기관의 의무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위원회가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 (i)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 제1(b)항에 의한 보고·권고, 또는

- (ii) 동 조항 제3(a)항에 의한 보고·권고.

- (b) 보고·권고 사항이, 다음을 대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부 협력기관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경우.

- (i) 지역정부의 관할지역, 또는

- (ii) 그 지역 거주민

(2) 관할위원회는 정부 협력기관에 서면 통보하여,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련 보고·권고 사항을 참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통보 사항에는 보고·권고 사항 사본을 첨부한다.

(4) 제2항에 의해 통보 사항을 전달 받은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통보 사항 명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제2항은 다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보건서비스 기관인 경우 및

- (b) (i) 관할위원회가 일원화되지 않은 지역 의회 위원회인 경우, 또는 (ii)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조에 의해 보건서비스 기관(및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했거나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경우.

(6) 제5항 “보건서비스 기관”은—

- (a) 국가보건서비스 신탁

- (b) NHS 재단 신탁, 또는

(c) 1차 진료 신탁을 의미한다.

(7) 제2항, 제3항은 제9FG조(기밀 및 비공개 정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8) 본 조에서—

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지역정부”는—

(a)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경우 이를 구성한 지역정부,

(b) 감독 및 조사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의 경우,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지역정부 집행부다.

“일원화되지 않은 지역 의회 위원회”는—

(a) 카운티의회가 있는 카운티 내 지역의 경우, 지역의회 소속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b)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관할위원회”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일원화되지 않은 지역 의회 위원회가 아닌 관할위원회의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 목적상 경찰서장을 제외한 지역정부의 모든 정부 협력기관을 의미한다.

일원화되지 않은 지역 의회 위원회인 관할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의회, 또는

(b)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 목적상 경찰서장을 제외한 해당 카운티의회의 모든 정부 협력기관(해당 지역의회 제외).

9FG. 보고·권고·답변 사항 발간 등: 기밀 및 비공개 정보

(1) 본 조는—

- (a) 다음 문서로 구성된 제9FE조 발간물—
 - (i)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 또는
 - (ii) 그러한 보고서, 발간 사항에 대한 지역정부의 답변 및
- (b) 동 문서 사본을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
 - (i) 제9FD(4), 제9FE조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 (ii) 제9FF조의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적용된다.
- (2) 문서를 발간하거나 문서 사본을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전달하는데 있어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는 —
 - (a) 기밀 정보를 일체 삭제해야 하며,
 - (b)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 (3) 지역정부 구성원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는 기밀 정보 또는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 (4) 제2항, 제3항에 의해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는 문서를 발간하거나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
 - (a)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요약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 (b)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발간 서류, 전달 사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그러한 요약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 (5)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보고서, 권고 사항을 발간하거나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
 - (a) 정보를 삭제하거나,
 - (b) 보고서, 권고 사항 일부를 요약 내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6항이 적용된다.
- (6) 상기 조항에 관계 없이 제9FE(3)(c)조, 9FE(3)(d)조 목적상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제안 사항을 발간하거나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7) 본 조에서 관련 비공개 정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 또는 제안 사항에 관련하여, 해당 보고·제안 사항을 검토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 절차 일부, 또는 회의 절차를 규율한 1972년 지

역정부법 제100A(4)조에 의해 감독 및 조사위원회 결의안에서 규정한 유형의 비공개 정보 및

(b) 지역정부 답변 사항에 관련하여, 보고, 답변 또는 제안 사항을 검토한 회의 절차 일부, 또는 회의 절차를 규율한 지역정부 결의안에서 규정한 유형의 비공개 정보.

(8) 본 조에서—

“기밀 정보”는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0A(3)조(주요 의회 회의출석 허용)에서 규정한 의미를 지닌다.

“비공개 정보”는 동 법규 제100I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지니며—

(a) 제9F(2)(f)조(국가보건서비스 기능)을 지닌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 또는

(b) 그러한 보고·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6조에 의한 비공개 정보도 포함한다.

제9FF조 의미 내에서의 관할위원회인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동 조항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9) 본 조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9FH. 감독 및 조사위원회: 홍수 위험 관리

(1) 본 조는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며, 홍수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지역정부 당국에 적용된다.

(2) 제9F(2)조 규정 체계에서는 지역정부의 관할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또는 해안 침식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당국의 기능을 감독·조사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 위험관리당국은 제2항을 이행하는 과정 중, 하기 사항에 관련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 요청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정보 및

(b) 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

- (4) 국무장관은 제3항 의무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으며, 부령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 요청 사항 준수 절차.
 - (b) 동 요청 사항에 관련하여 전달하는 통보 사항.
 - (c) 의무 면제.
 - (d)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
 - (e)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답변 사항의 특성.
 - (f) 요청 사항, 정보, 답변 사항 발간.
- (5) 위험관리당국은 제2항을 이행하는 과정 중 작성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을 참작한다.
- (6) 공동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123조 적용에 관해 동 조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7) 동 조에서 사용된 용어 표현은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9FI. 감독 및 조사위원회: 특정 정부 협력기관에 의한 정보 등 제공

- (1) 국무장관은 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 (a)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관할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 및
 - (b)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관할위원회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 정보는 다음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규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20(5)(c)조, 제20(5)(d)조(치안·범죄 사안 지도 및 규제), 또는
 - (b) 국가보건서비스법 제244(2)(d)조, 제244(2)(e)조(감독 및 조사위원회 역할).

- (3) 제1항의 목적상 “관할위원회” 및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제9FF조의 의미를 지닌다.
- (4) 각 개인, 위원회, 각 유형의 개인, 위원회에 관련하여, 본 조에 의한 부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5) 제4항 권한은 제105(2)(b)항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부 관련 추가 조항

9G. 회의 진행, 정보 열람 등

- (1) 지역정부 집행부 회의, 또는 집행부 위원회 회의는 일반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2) 제9GA(4)조 부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는 일반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에 관해 결정한다.
- (3) 비공개로 진행한 지역정부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에서의 의사 결정 사항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 (4) 지역정부 집행부 개인 구성원의 의사 결정 사항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 (5) 제3항, 제4항 서면 기록에는 해당 의사결정 사유를 명시한다.
- (6) 본 조에서 “규정한”은 국무장관 부령에 의해 규정한 사항을 의미한다.

9GA. 회의 진행, 정보 열람 등: 추가 조항 및 규정

- (1) 제9G(3)조, 제9G(4)조 서면 기록은 보고서, 배경 자료 및 공개하는 그 밖의 자료와 함께 국무장관 부령에 의해 일반에 공개한다.
- (2) 소정의 정보를 수록한 기록, 문서가 전부 또는 일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1항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3) 국무장관은—
 - (a)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부위원회 회의의 일반인 참관 여부(회의 비공개 진행을 승인하는 조항 포함)에 관해,
 - (b) 제(a)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에서의 의사 결정 사항을 서면 기록하도

록 하는 요건을 서면 기록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c) 제(b)항 서면 기록에 의사 결정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d) 그러한 서면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e) 서면 기록된 의사 결정 문서의 일반 공개 요건에 관련하여, 또는 이를 규정하기 위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4) 국무장관은—

- (a) 제9G(2)조 회의, 또는 동 회의의 특정 절차를 일반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
- (b) 제9G(2)조 회의, 또는 동 회의의 특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
- (c) 본 조, 또는 제9G조에 의해 보관하는 서면 기록에 수록해야 하는 정보에 관해,
- (d) 서면 기록에 기재하는 의사 결정 사유에 관해,
- (e) 서면 기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담당자에 관해,
- (f) 서면 기록을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g) 서면 기록된 의사결정 사항 관련 문서를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h)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i) 기록, 문서에 관련하여 일반인, 지역정부 구성원,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대한 권한 부여를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j) 본 조 또는 제9G조에 의해 부여하거나 부과하는 권한, 요건 관련 벌칙에 관해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5)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에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의 일반 공개, 또는 지역정부 구성원에 대한 공개를 위해,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령

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서는—

- (a) 동 조항에 명시한 의사결정 이전에 소정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요건,
- (b) 소정의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 또는 형태에 관해 명시한다.

(7)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지역정부 집행부, 동 집행부의 위원회 회의, 또는
- (b) 제3(a)항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 부위원회 회의에 관련하여, 1972년 지역정부법 제5A편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8)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의 보고·견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역정부 집행부가 제9FE조에 의해 발간하거나,
- (b) 제9FG조(기밀 및 비공개 정보)를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적용하거나 재규정하는 답변 사항 사본을 제9FG조에 의해 집행부가 전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9) 본 조에서—

“공동위원회”는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5)(a)조에서 규정한 공동위원회를 의미한다.
 “규정한”은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9GB. 추가 조항

별표 A1(본 편에 의거하여 집행부 체계 관련하여 추가로 규정함)이 발효한다.

9GC. 정치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이 없음

- (a) 지역정부 집행부 및
- (b)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는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조(정치단체에 의석을 할당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기

관으로 간주한다.

직선시장 등

9H. 직선시장 등

- (1) 본 편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은 본 편에 의해 제정된 조항에 의해, 또는 본 편 조항에 의거하여 지역정부 관할지역에서 지역정부 유권자들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 (2) 직선시장은 “시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한다.
- (3)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에서—
 - (a)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 (b) 지역정부 의원은 지역정부 직선시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4) 하지만 제3항은—
 - (a) 법률 목적상(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직선시장을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의원으로 간주하는, 본 호에 의한 국무장관 부령 및
 - (b) 제3항 조항과는 상반되는 여타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5) 1972년 지역정부법 제2(2A)조 및 별표 2, 제5C(1)호는 제4(b)항 목적상, 제3항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직선시장 선거는 각 선거연도 내 통상적인 선거일자에 실시한다.
- (7) 직선시장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8) 본 조는 제9HB조, 제9HE조 규정 사항을 따른다.

9HA. 직선시장 및 의원 당선

- (1)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선출된 자가 동일한 선거에서 지역정부 의원으로도 선출되는 경우, 의원실에 공석이 발생한다.
- (2) 선거(“시장 선거”)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선출된 자가—

- (a) 지역정부 의원이며,
 - (b) 시장 선거 이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의원실에 공석이 발생한다.
- (3) 제4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 재임자는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4)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를 직선시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지역정부 직선시장 재임자는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양 선거에 모두 입후보하여 직선시장 및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제1항이 적용된다.

9HB. 선거 시기 등

국무장관은—

- (a) 직선시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거나 실시해야 하는 일자 및 연도
- (b) 각 직선시장 선거 간의 기간 간격
- (c) 직선시장 임기
- (d) 직선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공석을 채우는 방법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9HC. 직선시장 선거에서의 투표

- (1) 직선시장 선거 투표권을 지닌 각 사람은 다음 투표권(들)을 지닌다.
- (a) 직선시장 후보 중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1표(본 편에서 1차 우선 투표권이라 칭함)
 - (b) 직선시장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후보 중 투표자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1표(본 편에서 2차 우선 투표권이라 칭함)
- (2) 직선시장은 후보가 3인 이상 출마하지 않은 한, 단순다수제도에 의해 선출한다.
- (3) 직선시장 후보가 3인 이상 있는 경우, 직선시장은 별표 2 추가 투표제도에 의해 선출한다.

9HD. 투표권

- (1) 직선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지닌 자는 투표일 현재—
 - (a) 해당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선거구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으며,
 - (b) 지역정부유권자등록부에관할지역내주소로등록된자들이다.
- (2) 유권자는 직선시장 선거에서 1차 우선 투표권, 또는 2차 우선 투표권을 각각 1표 이상 행사할 수 없다.

9HE. 선거에 관련하여 규정하는 권한

- (1) 국무장관은—
 - (a) 직선시장 선거 실시 및
 - (b)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a)항에 의해 제정한 부령에서는—
 - (a) 유권자 등록
 - (b) 유권자 등록부 변경 사항 무시
 - (c) 선거 비용 제한(지출 상한선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 제정) 및
 - (d) 직선시장 선거 및 그 밖의 선거 통합실시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3) 본 조 부령에 의해—
 - (a) 의회 선거 또는 지역정부 선거에 관련하여,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또는 여타 법(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조항을 (개정 사항, 예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없이) 적용·도입하거나,
 - (b)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규정 양식, 동 법에 의한 규제·규칙에서 규정한 양식을 본래의 목적 및 직선시장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정하며,
 - (c) 본 편 조항, 본 편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 또는 본 조 규정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회 유권자 또는 지역정부 유권자 등록에 관련된 법률(승인 또는 제정

된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 (4)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선거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 (5) 또한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은 제2(c)항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선거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그에 의거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화폐 가치 변동에 의해 국무장관이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직선시장 결과에 대해서는,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제3편 선거 탄원서를 본 조 부령에 의해 적용·도입한 양식에 의해서만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9I. 대표 당선 및 임기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규정하는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는—

- (a) 집행부 대표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등 집행부 대표 선출에 관해 규정해야 하며,
- (b) 집행부 대표 임기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9IA. 대표 해임

- (1)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를 운영하는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의회 결의안에 의해 집행부 대표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2) 의회가 집행부 대표 해임 결의안을 승인한 경우—
 - (a) 대표가 해임된 회의, 또는
 - (b) 이후 열리는 회의에서 집행부 신규 대표를 선출한다.

9IB.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대표

- (1)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체계(잉글랜드)의 집행부 대표는 집행부 대표 재임기간 중 의회

구성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 (2) 따라서 의원직 조기 사임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본 조는 집행부 대표가 퇴임(자격 박탈, 사임 포함) 이외의 방식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1C. 대표를 해임하는 다른 방법은 없음

- (1) 본 조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체계(잉글랜드)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2) 집행부 대표는 제91D조에 의한 부령, 또는 제91A조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될 수 없다.

91D. 부령

- (1) 부령에 의해 —
 -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체계(잉글랜드) 집행부 대표 선출·해임
 - (b)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체계(잉글랜드) 집행부 대표 임기 및
 - (c)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체계(잉글랜드) 집행부 대표 공석 채우기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91~91C조는 본 조의 부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제3장. 위원회제도

9J. 역할 위임 등을 금지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1)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의 위임할 수 없는 역할에 관해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 (b)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의 규정되거나 설명된 역할을 위임할 수 없는 사례·상황에 관해 규정하거나 설명하며,
- (c)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의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위임할 수 없는 조치에 관해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 (d)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의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규정되거나 설명된 조치를 위임할 수 없는 사례·상황에 관해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2) 역할, 또는 조치를 위임할 수 없는 경우—

- (a) 지역 정부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 (b) 본 조에 의한 부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편에서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는 위원회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4) 본 조 목적상, 규정되었다거나 설명되었다는 표현은 본 조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이 부령으로 특정 사안에 관해 규정하거나 설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5) 본 조에서—

역할 관련 “조치”는 다음 조치(모든 유형의 조치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에 의해 각각 별도로 규정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를 의미한다.

- (a) 역할 이행을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역할 이행 중, 또는 다른 과정 중 취하는 조치
- (b) 역할 이행에 부수적이거나 이를 촉진하는 조치, 또는
- (c) 역할 이행에 도움이 되는 조치, 또는 제(a)호, 제(b)호에 해당하는 조치

“역할”은 본 조가 발효하기 전, 발효 시점에, 또는 발효 후 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발생한 모든 특성의 역할을 의미한다.

9JA. 감독 및 조사위원회

- (1) 위원회 체계 지역정부는 위원회 1개 이상을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로서 결의안에 의해 지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2)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 (a) 본 조에 의거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로 지정된 의원회 역할, 구성, 절차 및
 - (b) 위원회 제도 지역정부가 공동위원회, 부위원회를 감독 및 조사위원회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규정은 특히 제9F~9F1조, 또는 별표 A1 제6~13호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9JB. 감독 및 조사: 홍수 위험 관리

- (1) 지역 홍수 위험 관리를 관할하는 위원회제도 지역정부 기관은 지역정부의 관할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위험관리기관 활동을 감독·조사한다.
 - (a) 홍수 위험 관리, 또는
 - (b) 해안 침식 위험 관리
- (2) 지역정부는 제1항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역을 보고·권고할 수 있다.
- (3) 위험관리기관은 제1항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 중—
 - (a) 정보
 - (b) 보고 사항 답변에 관련한 지역정부의 요청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4) 국무장관은 제3항 의무에 관해 부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부령에서 특하—
 - (a) 지역정부 요청 및 준수에 관해 따라야 하는 절차

- (b) 요청에 따라 통보하는 사항
 - (c) 의무 면제
 - (d) 특정 당사자가 출석하여 구두 보고하도록 하는 요청
 - (e)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답변 사항의 특성
 - (f) 요청 사항, 정보, 답변 사항 발간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5) 위험관리기관은 제2항에서 언급한 관련 보고·권고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 (6)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은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4장. 통치 체계 변경

지역정부에 의한 통치 체계 변경: 일반 조항

9K. 통치 유형 변경

(1) 지역정부는—

- (a) 기존 유형의 통치체계 운영을 중단하고,
- (b) 다른 유형의 통치체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2) 본 조는 제9NA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명령의 효력)을 따른다.

9KA. 집행부 체계: 집행부의 여러 유형

(1)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는—

- (a) 다른 유형의 집행부 체계로 변형하고,
- (b) 그러한 변형을 이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변형해야 하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변형할 수 있다.

(2) 본 조는 제9NA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명령의 효력)을 따른다.

9KB. 집행부 체계: 다른 유형의 체계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는 체계를 변형하여—

- (a) 특정 부분에 있어 기존 체계와 다르지만,
- (b) 동일한 유형의 집행부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9KC. 지역정부 결의안

(1) 지역정부가 통치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결의안이 필요하다.

- (2) 지역정부는 결의안을 승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 (a) 결의안 승인 후 발효하는 체계에 관해 명시하는 문서 사본을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 (b) (i) 지역정부가 통치 체계를 변경하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하고,
(ii) 체계 변경 발효 일자를 명시하며,
(iii) 체계 변형의 주요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iv) 결의안 승인 후 발효하는 체계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 사본을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고 명시하며,
(v) 지역정부 주요 청사 주소를 기재하여 지역 발간 신문 1종 이상에 게재한다.
- (3) 지역정부가 본 조(“결의안 A”)에 의해 하기 조항에 규정된 유형의 통치체계를 변경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제4항이 적용된다.
- (a) 제9K조(통치 유형 변경), 또는
 - (b) 제9KA(집행부의 여러 유형).
- (4) 지역정부는 본 장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에서 결의안 B가 승인되지 않는 한, 결의안 A 승인 후 5년간, 제3항(결의안 B)에 명시한 유형의 통치체계를 변형하는 별도의 결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
- (5) 본 조는 제9N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형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이를 실시하는 명령에 의한 권한)에 의한 명령에 따른 통치체계 변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치체계 변경 조치 시행

9L. 통치체계 또는 집행부 유형 변경 실시

- (1) 지역정부가 다음에 규정된 유형의 통치체계를 변경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제9K조(통치 유형 변경), 또는
 - (b) 제9KA조(집행부의 여러 유형)
- (2) 통치체계 변경의 적절한 시점에 지역정부는—

- (a) 기존 유형의 통치체계, 또는 (상황에 따라) 기존 유형의 집행부 운영을 중단하고
 - (b) 신규 유형의 통치체계, 또는 (상황에 따라) 통치체계 변경에 따른 유형의 집행부를 운영 개시한다.
- (3) 제2항 및 제9MB(2)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는 통치체계 변경을 준비하기 위해, 또는 시행하기 위해 조치(과도기 체계 관련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 (4) 지역정부가 현재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지 않으며, 통치체계 변경에 의해 지역정부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제2항 목적상 통치체계 변경의 적합한 시점은 하기 시점이다.
- (a) 통치체계 변형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최초의 지역정부 연례회의, 또는
 - (b) 결의안에서 규정한, 최초의 연례회의 이후의 지역정부 연례회의.
- (5) 지역정부가 현재 시장 및 내각 집행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지역정부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를 운영하도록 통치체계가 변형된 경우, 제2항 목적상 통치체계 “변경의 적합한 시점”은—
- (a) 통치체계 변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장 선거 개표 후 3일 후, 또는
 - (b) 통치체계 변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에서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경우, 투표를 실시했다면 개표가 완료되었을 일자 후 3일 후.
- (6) 지역정부가 현재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정부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운영을 중단하도록 체계가 변형된 경우, 제2항 목적상 통치체계 “변경의 적합한 시점”은 통치체계를 변형하는 결의안이 승인된 후 차기 시장 일반선거일 후 3일 후이다.

주민투표

9M. 제9MA조, 제9MB조에 의해 집행부 변경 조치에 관한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1) 지역정부가 결의안에 의해 통치체계를 변형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에서 이를 주민투표에서 의해 승인해야 한다.

- (2) 첫 번째 경우는—
- (a) 제안하는 통치체계 변형이 아래 규정한 유형인 경우
 - (i) 제9K조(통치유형 변경), 또는
 - (ii) 제9KA조(집행부의 여러 유형) 및
 - (b) 지역정부의 기존 통치체계 또는 기존 집행부 유형 변경을 본 장에 따른 주민투표에서 승인한 경우다.
- (3) 두 번째 경우는 통치체계 변경 제안 사항이 주민투표 승인을 받도록 지역정부가 의결하는 경우다.

9MA. 주민투표: 지역정부 제안

- (1) 본 조는 제9M조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통치체계 변형을 실시하려는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2) 지역정부는 통치체계 변경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3) 제안 사항에는—
- (a) 제안 사항 시행 일정
 - (b) 제안 사항 이행에 필요한 과도기 체계 내역
 - (c) 통치체계 변경이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진술서를 수록한다.
- (4) 통치체계 변경 제안이 아래 명시된 유형인 경우 제5항, 제6항이 적용된다.
- (a) 제9K조(통치체계 변경), 또는
 - (b) 제9KA조(집행부의 여러 유형)
- (5) 제안된 통치체계 변경을 이행할 경우 지역정부가 집행부 체계를 지니게 되는 경우, 제9D(3)(b)조 부령에서 규정한 역할이 운영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범위에 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6) 통치체계 변경 제안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9L(2)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안서(특히 제3항에 의해 기재하는 시행 일정 및 과도기 관련 조항)를 작성해야 한다.
- (7) 지역정부는 제안서를 작성한 후—

- (a) 일반인들이 적절한 시간에 항시 제안서 문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지역 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하며,
- (b) (i) 지역정부가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기재하며,
 - (ii) 제안 내역의 주요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 (iii) 공고에서 규정할 수 있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제안서 문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하며,
 - (iv) 지역정부 주요 청사 주소를 기재하여 지역 발간 신문 1종 이상에 게재한다.

9MB. 주민투표 실시 및 투표결과 집행 요건

- (1) 본 조는 제9M조에 의한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집행부 체계 변경을 실시하려는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2) 지역정부는 제9MA(7)조 요건을 준수한 후, 통치체계 제안 사항을 이행하기 전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 (3) 주민투표 결과, 제안 사항이 승인되지 않은 한, 지역정부는 제안 사항을 이행하는 결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
- (4) 그러한 결의안은 주민투표 실시 후 28일 기간 내 승인해야 한다.
- (5) 그러한 결의안은 결의안 표결의 목적으로, 안건을 통보하여 특별히 소집하는 회의에서 승인해야 한다.

9MC. 탄원에 따른 주민투표

- (1)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부령 요건을 준수하는 탄원서를 지역정부가 전달 받은 경우, 해당 유형의 통치체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부령에 명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규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부령에서는 특하—
 - (a) 탄원서 양식 및 내용(전자 양식 탄원서 포함)에 관해,

- (b) 부령에서 규정한 기간 중 지역정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이를 지지해야 하는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유권자 최소 수에 관해,
 - (c) 지역정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지지해야 하는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유권자 수에 관해 지역정부 공무원이 공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d)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유권자들이 탄원서를 지지하는 방법(지역정부 유권자들이 전화, 또는 전자 방식으로 탄원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포함)에 관해,
 - (e) 특정 탄원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f) 탄원서를 지역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에 관해,
 - (g) 탄원서 확인 방식에 관해,
 - (h)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일자·시간에 관해,
 - (i)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j)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k) 부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취하지 못한 경우 국무장관이 동 조치를 직접 취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에서는 특히 본 장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 또는 본 장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4) 제2(b)항에 명시한 지역정부 유권자 수는 본 장에 의한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시기에 산출하며 (부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각 시기에 지역정부 유권자 수의 5%다.
- (5) 본 조는 제9NA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형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집행하는 명령의 효력)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9MD. 지시에 따른 주민투표

- (1)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시 사항에 명시한 유형의 통치체계를 채택

할지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무장관이 지역정부에게 지시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본 조의 부령에 의해 특하—

- (a)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일자·시간에 관해,
- (b)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없거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c)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없거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d) 부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취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이 그러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은 특히 본 장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 또는 본 장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적용하거나 재규정할 수 있다.

(4) 본 조는 제9NA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형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주민투표 결과를 집행하는 명령의 효력)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9ME. 명령에 따른 주민투표

(1) 국무장관은 모든 지역정부가, 또는 명령에서 규정한 유형에 속하는 지역정부가 모두, 동 명령에서 규정한 통치체계를 수립할지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본 조의 명령은 특히

- (a)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일자·시간에 관해,
- (b)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c)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없거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d) 명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취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이 그러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은 특히 본 장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 또는 본 장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적용하거나 재규정할 수 있다.
- (4) 본 조는 제9NA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주민 투표 결과를 집행하는 명령의 효력)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9MF. 주민투표 관련 추가 조항

- (1) 지역정부가 본 장에 의해 주민투표(주민투표 A)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주민투표 A 실시일로부터 10년내 본 장에 의한 또 다른 주민투표(“주민투표 B”)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2) 본 항은—
 - (a) 제9조(시장 및 내각 집행부 관련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명령의 효력) 명령에 의해 지역정부가 주민투표 A를 실시하는 경우 및
 - (b) 시장 및 내각 집행부를 운영하려는 지역정부의 제안이 주민투표 A에서 거부된 경우 적용된다.
- (3) 본 항은 제9N조에 의해 공표하는 명령에 의해 주민투표 B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적용된다.
- (4) 본 장의 조항에 의한 부령,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투표의 제안 사항이 승인된 경우, 해당 지역정부는 제안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5) 본 장의 조항에 의한 부령,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투표의 제안 사항이 거부된 경우, 해당 지역정부는 제안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
- (6) 제4항, 제5항은 제9N조에 의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9N(2)(c) 조 참조).

9MG. 주민투표 실시 및 투표

- (1)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지닌 자는 투표일 현재—

- (a) 해당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선거구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지니며,
 - (b)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주소로, 지역정부 유권자 등록부에 등록된 자들이다.
- (2) 국무장관은 본 장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3) 국무장관은 본 장에 의한 주민투표 및 다른 선거 통합실시에 관해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4) 제2항, 제3항 부령은 선거 또는 주민투표 관련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을 개정·예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없이 적용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 (5) 제2항 부령은 특하—
- (a) 주민투표에서의 투표 사안,
 - (b) 주민투표 홍보(주민투표 결과를 홍보할 방법 포함)
 - (c) 주민투표 경비 지출 제한(지출 상한선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 제정)
 - (d)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구성원, 공무원, 지역정부가 취해야 하는 행동
 - (e) 주민투표 시기·장소·방법
 - (f) 주민투표 개표 방식
 - (g) 유권자 등록부 변경 사항을 무시하는 법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6) 주민투표 투표 사안에 관해 규정하는 본 조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선거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시장 및 내각 집행부 관련 추가 조항

9N.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지시

- (1) 국무장관은 특정 지역정부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운영 여부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본 조 명령에 의해—
- (a)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일자·시간에 관해,
 - (b)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c)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하거나 취할 수 없는 조치 및 주민투표의 영향에 관해,
그리고
- (d) 명령에 의해 허용하거나 지시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
관이 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은 특히 본 장 조항, 또는 본 장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4) 본 조에서 “명시한”은 본 조에 의해 국무장관이 제정한 명령에 명시함을 의미한다.

9NA. 제9N조 명령의 효력

- (1) 하기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명시한 본 장 조항은 시장 및 내각 집행
부를 운영하는 지역정부 제안 사항이 제9N조 명령에 의해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거
부되지 않은 한, 제9N조 명령의 대상인 지역정부(제9N조 명령이 아직 철회되지 않
았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그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a) 제9K조(통치 유형 변경)
 - (b) 제9KA조(집행부 체계: 집행부의 여러 유형)
 - (c) 제9MC조(탄원에 따른 주민투표)
 - (d) 제9MD조(지시에 따른 주민투표)
 - (e) 제9ME조(명령에 따른 주민투표).

9NB. 시장 집행부의 다른 유형.

- (1) 지역정부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본 조항이 제9KB조(다른 유
형의 체계)에 명시된 유형의 통치체계 변화에 적용된다.
- (2) 지역정부는 직선시장이 변경 제안사항을 서면 승인하지 않는 한, 통치체계 변형을 의
결할 수 없다.

그 밖의 조항

90. 일반 조항

- (1) 지역정부는 본 장에 의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한, —
 - (a) 특정 유형의 통치체계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 (b) 집행부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
- (2) 통치체계를 변경하는데 있어 지역정부는 통치체계 변경 관련 국무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90A. 조항 해석

- (1) 본 조는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 (2) 통치체계 변화는 제9K~9KB조에 명시한 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 (3) 관련 유형의 통치체계는— 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
 -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 (b) 시장 및 내각 집행부
 - (c) 위원회 제도
 - (d) 그 밖의 규정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 (4) 통치 유형은—
 - (a) 집행부 체계
 - (b) 위원회 제도
 - (c) 그 밖의 규정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5장. 추가 조항

지역헌법

9P. 지역헌법

- (1) 지역정부는 다음을 수록한 문서(본 조에서 지역헌법이라 칭함)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추가해야 한다.
 - (a) 해당 시점의 지역정부 기본절차명령 사본
 - (b) 2011년 지역주의법(Localism Act) 제28조에 의한 지역정부 윤리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윤리규정 사본
 - (c) 국무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정보
 - (d) 지역정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기타 정보
- (2) 위원회제도 지역정부의 경우 지역정부가 제9JA조에 의해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는지 여부에 관해 지역헌법에 기재해야 한다.
- (3) 일반인들이 적절한 시간에 항시 지역헌법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정부는 주요 청사에 지역헌법 사본을 비치한다.
- (4) 지역정부는 지역헌법 사본을 요청하며, 지역정부가 책정한 적합한 구매 비용을 지역정부에 지급한 자에게 지역헌법 사본을 전달한다.

지침

9Q. 지침

- (1) 지역정부는 본 편의 목적상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지침을 참작해야 한다.
- (2) 여러 사례 또는 유형의 지역정부에 대해 본 조의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조항 해석

9R. 제1A편 조항 해석

- (1) 본 편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한—

“위원회 제도”는 제9B조의 의미를 지닌다.

“위원회제도 지역정부”는 제9J(3)조의 의미를 지닌다.

“직선시장”은 제9H조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구”는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제203(1)조의 의미를 지닌다.

“법률”은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 의미 내에서) 지역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법률에 구성되어 있는 법률을 포함한다.

지역정부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제9C조에 의해 해석한다.

“집행부 체계”는 제9B조의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 대표”는 제9C(3)(a)조의 의미를 지닌다.

“1차 우선 투표권”은 제9HC조의 의미를 지닌다.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는 제9C(3)조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정부”는 잉글랜드 카운티의회, 지역의회 또는 런던 자치구의회를 의미한다.

“지역 정부 유권자”는 1972년 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제270(1)조의 의미를 지닌다.

“시장 및 내각 집행부”는 제9C(2)조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정부의 “통상적인 선거일”은 지역정부 의회의 통상적인 선거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균형 요건”은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17조, 별표 1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규정을 의미한다.

“규정 체계”는 제9B조의 의미를 지닌다.

“2차 우선 투표권”은 제9HC조의 의미를 지닌다.

- (2) 본 편에서 지역정부의 “해당 선거연도”는 관련 유형의 정부에 대하여 하기 표 두 번째 열의 연도를 의미한다.

지역정부 유형	해당 선거연도
도시지역	2014년 및 이후 4년마다
카운티	2013년 및 이후 4년마다
런던 자치구	2014년 및 이후 4년마다
비도시 지역	2011년 및 이후 4년마다

(3) 본 편에서 지역정부 의장은—

- (a) 직함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 의장직을 역임하는 자를 지칭하며,
- (b) 런던 자치구의 경우, 1972년 지역정부법 별표 제1편에서 자치구 시장이라고 규정한 자를 지칭한다(동 법 별표 2, 제5B~5I호는 적용되지 않음).

(4) 본 편에서 지역정부 부의장은—

- (a) 직함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 부의장직을 역임하는 자를 지칭한다.
- (b) 런던 자치구의 경우, 1972년 지역정부법 별표 제1편에서 자치구 시장이라고 규정한 자를 지칭한다(동법 별표 2, 제5B~5I호는 적용되지 않음).

(5) 본 편에서 역할 이행은 역할 이행을 활성화거나 촉진하도록 고안된 조치, 역할 이행에 부수적인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6)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는 본 편 조항, 또는 본 편에 의해 제정한 규정에 의한 결의안 승인에 관련된 역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본 편에 의해 지역정부에 부여하는 역할은 집행부 체계하에서의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 본 편 특정 조항에 의거한 국무장관 지시 사항은—

- (a) 동 조항에 의해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추후 지시 사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 (b) 여러 사례, 여러 지역정부, 여러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2편. 집행부 체계 등

집행부 체계

10. 집행부 체계

- (1) 본 편에서 “집행부 체계”는 —
- (a) 지역정부 집행부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하여,
 - (b) 지역정부의 특정 역할이 집행부의 책무인 [F1 웨일즈] 지역정부 체계를 의미한다.
- (2) [F1 웨일즈] 지역정부의 집행부 체계는 동 체계에 관련된 본 편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정부 집행부

11. 지역정부 집행부

- [F2(1) 지역정부 집행부는 지역정부에 적용되는 제(2)~(5)항에서 규정한 형태를 지녀야 한다.]
- (2) [F3[F4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지역정부의 경우] [F4]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직선시장 및
 - (b) 직선시장이 집행부에 임명하는 지역정부 의원 2인 이상
- 집행부는 본 편에서 시장 및 내각 집행부라 칭한다.
- [F5(2A)[F6 잉글랜드 지역정부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집행부 대표로 선출된 지역정부 의원(본 편에서 집행부 대표라고 칭함) 및
 - (b) 집행부 대표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지역정부 의원 2인 이상
- 그러한 집행부는 본 편에서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라고 지칭한다.]]
- (3) [F7[F8 웨일즈 지역정부의 경우] [F8]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집행부 대표로 선출된 지역정부 의원(본 편에서 집행부 대표라고 칭함)

- (b)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지역정부 의원 2인 이상
 - (i) 집행부 대표, 또는
 - (ii) 지역정부.

그러한 집행부는 본 편에서 [F9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라고 칭한다.
 - (4) [F10 [F11 웨일즈 지역정부의 경우, 집행부는 다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직선시장 및
 - (b) 지역정부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된 지역정부 공무원(본 편에서 의회 관리자라 칭함.)

그러한 집행부는 본 편에서 시장 및 의회 관리자 집행부라 칭한다.
 - (5) [F12 [F13 잉글랜드 또는 웨일즈 지역정부의 경우] [F13 집행부]는 [F14국무장관] [F14 웨일즈 장관들]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6) 제(5)항 부령은 특히 다음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a) 특정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관할지역에서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 인원이 지역정부 유권자에 의해 집행부 내 지정 직책에 선출된 집행부 유형
 - (b) 구성원 일부 또는 전원이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그러한 직책에 임명되지 않은 집행부 유형
 - (c) 제a항 또는 제b항에 의거하여 선거에서 실시하는 투표 제도.
 - (7) 지역정부 집행부 직책에는 지역정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할 수 없다.
 - (8)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F15(웨일즈)] 구성원 수는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F16(8A) 제8항 목적상, 2011년 지역정부조치(웨일즈)(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2편에 의해 가족 문제로 휴직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구성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시적으로 집행부에 임명된 구성원은 감안하는 대상이 아니다.
- (9) [F17 국무장관] [F17 웨일즈 장관들]은 [F19 제8항]이 적용되는 집행부 구성원의 각종 최대 인원수를 부령에 의해 [F18규정할 수 있지만, [F20 [F21 웨일즈와 관련하여]] 최대 인원수가 10인을 초과하도록 하기 위해 본 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F22(9A) [F23 본 편에서 대표 및 내각 집행부는 문맥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 가리킨다.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b)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

- (10) M1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지역정부의 역할 이행 조정)은 [F24 [F25 제 2(A)(a)항 또는] 제3(a)항]에 의한 대표 선출, 또는 제3(b)(ii)항 [F27 또는 제4(b)항]에 의한 집행부예의 의원 [F25 또는 공무원] 임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집행부의 추가 유형

- (1) 집행부 특정 유형에 관해 규정하는 제11(5)조 부령 제정 여부, 또는 해당 유형의 집행부에 관련하여 제17조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국무장관을 다음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a) 제2항에 의해 국무장관에 제안된 사항.

(b) 해당 유형의 집행부 체계를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경우 국무장관이 판단하기에 지역정부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범위.

(c) 해당 유형의 집행부가 제11조에 의해 허용되는 집행부 유형과 차이가 나는 정도.

(d) 해당 집행부 유형을 제11(5)조에 의해 규정한 경우, 동 집행부 유형이 적합할 것이라고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지역정부 수 및 유형.

- (2) 제1항 목적상 지역정부는 제3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유형의 집행부를 국무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 (3) 그러한 요건은 —

(a) 지역정부가 해당 유형의 집행부 체계를 운영할 경우, 국무장관이 해당 제안을 하는 시점에 지역정부가 역할 이행을 위해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b) 지역정부가 해당 유형의 집행부 체계를 운영할 경우, 지역정부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음.

(c) 해당 유형의 집행부를 제11(5)조에 의해 제정하는 부령에 의해 규정하는 경우 모든 지역정부, 또는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가 채택을 검토해 보기에 적합한 유형의

집행부가 될 수 있음.

(4) 제2항 제안 사항에서는—

- (a) 해당 집행부 유형에 관해 설명하며,
- (b) 해당 집행부 유형에 관련하여 제17조에 의해 제정해야 한다고 지역정부가 판단하는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 (c) 그러한 집행부 유형에 관련하여 제3항 요건이 충족된다고 지역정부가 판단하는 사유를 설명한다.

집행부 역할

13.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 (1) 본 조항은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지역정부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발효한다.
- (2) 본 법에 의해 공표되는 규정 또는 본 법 제정일 이후 통과되었거나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부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정부의 역할은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된다.
- (3) 국무장관은 지역정부의 역할이 다음과 같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의 역할이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음.
 - (b) 지역정부의 역할이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할 수 있음.
 - (c) 지역정부의 역할이 (i) 부령에 의해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범위, (ii) 부령에 의해 집행부 체계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 (4) 집행부 체계에서는 제3(b)항에 속하는 지역정부의 역할이—
 - (a)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거나,
 - (b)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 (c) (i) 해당 체계 내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또는 (ii) 해당 체계 내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이 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 (5) 제3(c), 제4(c)항 권한은 지역정부 역할에 관련하여—
 - (a)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역할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규정하며,
 - (b) 지역정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지정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6) 국무장관은 본 조의 선행 조항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될 지역정부의 역할이 동일한 범위, 또는 다른 특정 범위 내에서 집행부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또는 상황을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7) 1972년 M2 지역정부법 제101조, 또는 동 조의 조항이 지역정부의 역할에 적용되지 않음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의 역할은 본 조에 의해 특정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역할이 될 수 있다.
- (8) 본 편의 아래 조항들에서 집행부 체계 내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정부의 역할은 집행부 체계하에서 본 조에 의해 집행부의 책무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 책무가 되지 않는 지역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 (9)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역할은—
 - (a) 지역정부를 대리하여 집행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 (b) 본 편에 의해 제정한 조항, 또는 본 편 조항, [F28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236조(잉글랜드 지역 의회의 역할 이행)], 또는 해당 유형 집행부의 역할 이행에 적용되는 [F29 (웨일즈)지역정부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56조에 의해서만 이행할 수 있다.
- (10) 따라서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 (a) 지역정부가 이행할 수 없으며,
 - (b) M3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1)조가 적용되는 역할이 아니고,
 - (c) 제20조에 의해 제정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동 법 제101(5)조에 의한 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1) 제12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하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아닌 역할은 본 편 조항, 또는 본 편에 의해 제정한 조항과는

별도로, 기타 허용 또는 요구 방식에 위해 이행한다.

- (12) 국무장관은 M4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의 특정 조항, 또는 제101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 집행부 체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아닌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13) 본 조에서, 부령에서 규정한 역할은 부령에서 규정한 유형의 역할을 포함한다.
- (14) 본 조에서—

지역 정부의 특정 역할 관련 “조치”(해당 조치의 특성에 관계 없이, 그리고 특정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역할 이행을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역할 이행 중, 또는 그 밖의 과정 중 취하는 조치
- (b) 역할 이행에 부수적인 조치, 또는 이를 촉진하는 조치, 또는
- (c)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이에 도움이 되는 조치, 또는 제(a)호, 제(b)호에 해당하는 조치

“역할”은 본 법 제정 이전, 제정 당시, 또는 제정 후 부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발생한 모든 성격의 역할을 의미한다.

집행부 체계에 관한 조항

14. [F30 역할 이행: 일반적인 사항]

[F31 (1)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

- (a)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 (b)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본 조에 의해 이행한다.]

(2) [F32 집행부 고위 구성원]은 —

- (a) 상기 역할을 수행하거나,
- (b) (i) 집행부
- (ii) 집행부의 다른 구성원
- (iii) 집행부 위원회, 또는

(iv) 지역정부 공무원이 상기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F33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집행부는—

(a) 집행부 위원회, 또는

(b) 집행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4)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F34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F35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구성원]은 지역정부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5)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36 집행부 고위 구성원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6)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 또는 공무원의 역할 이행을 위해 본 조에 의해 [F37 집행부 고위 구성원],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가 통치체계를 수립하더라도, 이를 수립한 [F38 집행부 고위 구성원], 집행부, 구성원, 또는 위원회가 동 역할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F39(7) 본 조에서 “집행부 고위 구성원”은—

(a) 시장 및 내각 집행부의 경우, 직선 시장

(b)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의 경우 집행부 대표를 의미한다.]

15. [F40 역할 이행: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

(1)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 [F41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본 조에 의해 수행한다.

(2) 집행부 체계에서는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을 다음 개인, 기관에 분할 할당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a) 집행부

- (b) 집행부 구성원
 - (c) 집행부 위원회
 - (d) 지역정부 공무원
- (3) 제2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집행부 체계에서 역할 조정을 하는 경우, 동 조항에 의해 역할을 배정 받은 자는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4)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제2항에 명시한 바에 따라 할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 대표는—
- (a) 역할을 직접 이행하거나,
 - (b) (i) 집행부,
 - (ii) 집행부의 다른 구성원,
 - (iii) 집행부 위원회, 또는
 - (iv)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5)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는 (a) 집행부 위원회, 또는 (b)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6)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7)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8) 집행부 대표가 제4(b)(i)조, 제4(b)(ii)조, 제4(b)(iii)조에 의해 통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또는 수립한 경우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이 (상황에 따라) 해당 체계의 대상이 되는 역할 이행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시에 따라 해당 사례 또는 상황에서 역할 수행에 적용되지 않도록 집행부 대표가 지시할 수 있다.
- (9) 집행부, 구성원, 위원회 또는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에 의해 집행부 대표, 집행부, 구성원 또는 위원회가 체계를 수립하더라도, 동 체계를 수립한 집행부 대표, 집행부, 구성원 또는 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10) 제2(b)항에서 집행부 구성원은 집행부 대표를 포함하며, 제6항을 제2(b)항 목적상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한다.

16. 역할 이행: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

[F42 (1)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하에서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은 동 조항에 의해 이행한다.

(2) 의회 관리자는—

(a) 상기 역할을 직접 이행하거나

(b) (i) 집행부, 또는

(ii) 지역정부 공무원이 상기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a) 역할 이행 여부, 또는 이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또는

(b) 집행부 또는 지역정부 공무원이 이행하는 역할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회 관리자는 직선시장이 조연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참작해야 한다.

(4)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집행부는 지역정부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5) 집행부 또는 공무원이 역할을 이행하도록 본 조에 의해 의회 관리자 또는 집행부가 조정하더라도, 이를 조정한 의회 관리자 또는 집행부가 그러한 역할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7. 역할 이행: s. 11(5) 집행부

(1) 국무장관은 집행부 체계하에서 제11(5)조에 의한 부령에서 규정한 형태를 취하는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본 조에 의한 부령으로 제정하는 규정은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적용하거나 재규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 (3) 제2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본 조 부령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18. 지역 위원회에 의한 역할 이행

- (1)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이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그 지역정부의 지역 위원회가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부령에 의해 수립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통치체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등) 본 조의 부령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
- (3) 본 장에서—
 [F43 “지역 위원회”는—
 (a)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잉글랜드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b) 제6항 요건을 충족하는 웨일즈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규정된”은 본 조 부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4) [F44 잉글랜드]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본 항 요건을 충족한다.
 (a) 지역정부 관할지역 일부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b)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의 구성원이 동 지역에 온전히, 또는 일부 속하는 선거지역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경우.
 (c) 동 지역에 대하여 제5항 조건 중 하나, 또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5) 그러한 조건은—
 (a) 해당 지역 면적이 지역정부 총 면적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며,
 (b) 지역정부가 추산한 동 지역 인구가 지역 내 총 추산 인구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다.
- [F45(6) 웨일즈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본 항 요건을 충족한다.

- (a) 지역정부 해당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 (b) 해당 지역이 지역정부 선거구 1개 이상의 모든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c) 해당 선거구(들)에서 선출된 지역정부 구성원들이 모두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구성원들이 될 권한이 있는 경우.
 - (d) 제(c)호에서 규정한 구성원 이외의 지역정부 구성원이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경우.
 - (e)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제7항의 요건 중 하나, 또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 (7) 그러한 요건은—
- (a) 해당 지역 면적이 지역정부 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 지역정부가 추산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역 내 추산 총 인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19. 다른 지역정부의, 다른 지역정부에 의한 역할 이행

- (1) 집행부 체계하에서 집행부 책무가 되는 역할을 다음 기관이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편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 정부 집행부,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 특정 구성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조정에 관해 국무장관은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a) (M5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른 지역정부, 또는
 - (b) (본 편의 의미 내에서의) 다른 지역정부 집행부, 동 집행부의 위원회, 또는 특정 구성원.
- (2) (본 편 의미 내에서의) 다른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특정 구성원의 역할 수행을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 의미 내에서의) 지역정부가 조정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서 지역정부의 역할은 지역정부가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동 체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제1항, 제2항의 부령에는—
- (a)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 또는 집행부 구성원의 역할 이행을 위한 체계의 경우 동 체계에서 지역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 (b) 지역정부 역할 이행을 위한 체계의 경우, 그러한 역할 위임을 허용하며,
 - (c) 지역정부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의 경우, 그러한 역할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5) M6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2)~(4)조를 적용하거나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규정을 제4(b)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포함한다.
- (6) 제14(3)~14(6), 15(5)~15(9), 16(3)~16(5)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규정을 제4(c)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포함한다.
- (7) 제(4), (5), (6)항에 의해, 제(1), (2)항 권한의 일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8) “본 조에서 “규정한”은 본 조에 의한 부령에 규정함을 의미한다.

20. 역할 공동 이행

- (1) 국무장관은 해당 체계의 대상이 되는 역할이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M7 지역정부법에 의거한 체계를 허용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
- (a)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 특정 구성원이 지역정부를 대신하여 통치체계 당사자가 되는 상황
 - (b) (i) 지역정부 및 (ii)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 특정 구성원이 모두 통치체계 당사자가 되는 상황
 - (c) M8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2), 102(1)(b), 102(2), 또는 102(3)조에 의한 지역정부 역할을, 동 역할이 동 법 제101(5)(a)조에서 규정한 공동위원회와 관련

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 또는 특정 구성원이 대신 이행하는 상황

- (d) 동 법 제101(2), 102(1)(b), 102(2), 102(3)조에 의한 지역정부의 역할을, 동 역할이 공동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가 이행하는 상황
- (e)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의 위원회, 또는 특정 구성원이 공동위원회에 특정인을 임명하는 경우 정치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
- (f)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 특정 구성원이 그러한 공동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는 자(지역정부 공무원 포함)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내역에 의해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본 조에서 “명시한”은 본 조 부령에 명시했음을 의미한다.

21. 감독 및 조사위원회

(1)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지역정부에 의한 1개 이상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본 편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라고 지칭함) 설립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2)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다음 권한을 지니도록 한다(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 [F46 및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이 다음 권한을 공유하도록 한다).

- (a)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감독 또는 조사하는 권한.
- (b)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하는 권한.
- (c)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 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감독 또는 조사하는 권한.
- (d)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하는 권한.
- (e) 지역정부 관할지역 거주민 또는 관할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하는 권한.

[F47(f) [F48 [F49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 244조 또는] 2006년 (웨일즈)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184조가 적용되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경우, [F50 동 조항 중 1개 조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F51 해당 법규 의미 내에서의, 그리고 [F52 해당 조]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 바에 따라)] 관할당국 지역 내에서 보건 서비스 관련 사안을 감독·조사하는 권한 및 부령에 의해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 보고·권고하는 권한 및 부령에 의해 보고, 권고하는 권한.]

[F53(2A) 제2항에서 지역정부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해당 지역정부”)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해당 지역정부 및 1개 이상의 기타 지역정부가 구성한, F54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5조 제2(a)항 의미 내에서의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
- (b)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5조 제2(b)항 부령에 의해 구축한 체계하에서 (동 조항 제1항 의미 내에서의) 해당 지역정부의 역할을 이행하는 다른 지역정부 F54 감독 및 조사위원회]
- (c) 해당 지역정부 및 다른 지역정부 1개 이상이 구성한, 2006년 (웨일즈)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제185조 제2(a)항 의미 내에서의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
- (d) 2006년 (웨일즈)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제 185조 제2(b)항 부령에 의해 수립한 체계하에서 (동 조항 제1항 의미 내에서의) 해당 지역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지역정부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 (e) (i) [F55- 해당 지역정부 등 지역정부 2곳 이상이 구성한,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123조 [F56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미 내에서의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 [F57 또는
(ii) 해당 지역정부 등 2곳 이상의 지역정부가 구성한, 2011년 (웨일즈) 지역정부 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58조 의미 내에서의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

(3)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사 결정 사항을 감독하거나 조사하는 제2(a)항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권한을 포함한다.

- (a) 의사 결정을 한 자가 의사 결정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권하는 권한, 또는
- (b)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2(a)항의 역할을 지역정부가 이행하도록 조정하는 권한

(4) F58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본 조 [F59, 제21A~21C조]의 역할, [F60 제 21E조 부령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 또는 [F61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2ZE)조]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이행할 수 없다.

F62(5).

(6)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 (a) 1개 이상의 부위원회를 구성하고,
- (b) 그러한 부위원회가 역할을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7)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부위원회는 제6(b)항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 이외의 역할을 이행할 수 없다.

F63(8).

(9)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지역정부 집행부의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별표 1, 제7~9호 조항 또는 이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자는 [F64 별표 1, 제12조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해당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다.

[F65 (10A) 웨일즈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하는 자를 임명하는 규정은 2011년 (웨일즈) 지역정부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

66~75조 참조.]

- (11)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 (a) M9 1972년 지역정부법 제VA편 (특정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 회의 참관 및 자료 참조) 목적상 주요 의회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및
 - (b) M10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 15조(정치단체에 의석을 할당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간주한다.
- (12) M11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2조 제2항 및 제5항은 동 조에 의해 구성하는 위원회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적용된다.
- (13)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 (a) 집행부 구성원, 또는 지역 정부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하고, [F66(aa) 지역정부의 기타 구성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236조(잉글랜드 지역의회의 역할 이행) 또는 [F67 또는 2011년 (웨일즈) 지역정부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56조에 의해] 구성원이 이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도록 요청하며, F68
 - (b) 그 밖의 사람들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초빙할 수 있다.
- (14) [F69 제13항 제(a) 또는 (aa)호] 구성원 또는 공무원은 동 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15)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 소송에서, 또는 소송 목적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4항에 의한 답변의 의무가 없다.
- [F70(16) 지역정부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또는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 (a) 잉글랜드 지역정부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는 국무장관 공표 지침을 참조해야 하며,
 - (b) 웨일즈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는 웨일즈 장관들이 공표하는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 (17) 제16항 지침에서는 여러 사례, 또는 여러 유형의 위원회, 부위원회에 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F71 21ZA. 조사관

- (1) 하기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잉글랜드 지역정부는 제2항 역할을 이행하도록 지역정부 공무원 중 1인을 지정한다.
- (2) 그러한 역할은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역할에 관련하여 —
 - (a)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의 역할을 증진하고,
 - (b)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 및 동 위원회(들)의 구성원을 지원하며,
 - (c) (i) 지역정부 구성원,
(ii)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 및
(iii) 지역정부 공무원을 지원·지도하는 것이다.
- (3)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가 지정하는 공무원은 지역정부 “조사관”이라고 칭한다.
- (4) 지역정부는 본 조에 의해 다음을 임명할 수 없다.
 - (a)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4조에 의해 임명하는 지역정부 공무원 대표
 - (b) 동 법 제5조에 의해 임명하는 지역정부 감사관
 - (c) 동 조 의미 내에서의 지역정부 수석 재무관
- (5) 제1항 의무는 카운티의회가 있는 지역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본 조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F72 21A.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사안 회부 등

- (1)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 (a)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위원회 역할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 (b) 부위원회 구성원이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부위원회에 회부하며,

- (c) F73위원회 역할과 관련이 있는 지역정부 사안을, 지역정부 구성원이 본인이 구성원이 아닌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2) 제1항 목적상, 규정에 의해 사안이 위원회, 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포함되거나,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특정인이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동 규정에 의해 사안을 위원회, 부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것이다.
- (3) 지역정부 구성원이 제1(c)항에 의한 권한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지역정부 구성원은 [F74 (잉글랜드 지역정부의 경우) 국무장관, [F75 또는 (웨일즈 지역정부의 경우) 웨일즈 장관들이 공표하는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 (4) 제3항 지침에 여러 사례에 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5) 제6~8항은 제1(c)항에 의해 제정한 규정에 의해 지역정부 구성원이 지역정부 사안을 조사 및 감독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적용된다.
- (6)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제21(2)조에 의한 권한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
- (a) 동 사안에 관련하여,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236조, 또는 [F76 또는 2011년 (웨일즈) 지역정부조치(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지역의회에 의한 역할 이행 F77) 제56조] (지역의원의 권한 행사 F77)에 의해 구성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및
- (b)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제21(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 사유에 관한 구성원의 진술
- (7)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들에게—
- (a) 의사 결정 사항 및
- (b) 그러한 결정을 한 사유에 관해 통보한다.
- (8) 위원회는 사안에 관련하여 제21(2)조에 의해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 사본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9) 제8항은 제21D조를 준수한다.

(10) 본 조에서 [F78 잉글랜드] 지역정부 구성원에 대한 “지역정부 사안”은 —

- (a) 지역정부 역할 이행과 관련이 있고,
- (b) 동 구성원이 선출된 선거구 전역, 또는 일부 지역, 또는 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동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 (c) 배제된 사안이 아닌 사안을 의미한다.

(11) 제10(c)항에서 “배제된 사안”은—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 범죄·치안 관련 사안, 또는
- (b) 본 조의 목적상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규정하는 유형의 사안을 의미한다.]

[F79 (12) 본 조에서 웨일즈 지역정부 구성원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사안”은 배제된 사안이 아니며—

- (a) 지역정부 역할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 (b) 동 구성원이 선출된 지역구 전역, 또는 일부 지역, 또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13) 제12항에서 “배제된 사안”은—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정부의 범죄·치안 감시)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 범죄·치안 관련 사안, 또는
- (b) 본 조의 목적상 웨일즈 장관들이 부령에 명시하는 유형의 사안을 의미한다.]

[F80 21B.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답변하는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의 의무

(1) 본 조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 정부의 치안·범죄 감시) 제1(b)항, 또는
- (b) 동 조 제3(a)항.

(2)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보고 또는 권고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3)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서면 통보에 의해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 (a) 보고,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 (b)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취하려고 하는 조치(그러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통보하며,
 - (c)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제2항에 의해 보고, 권고 사항을 공표한 경우, 그에 대한 답변 사항을 공표하고,
 - (d)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제21A(8)조에 의해 보고 또는 권고 사항 사본을 지역정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 경우, 답변 사항 사본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가 보고, 권고 사항을 접수한 후, 또는 (추후)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내 상기 내역을 이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4) 제3항에 의해 통보를 전달 받은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는 통보 내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5) 제2항, 제4항은 제22(12A)조에 의해 제정한 규정 및 제21D조를 준수하여 이행한다.
- (6) 본 조에서—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이다.
 - (b) 감독 및 조사위원회,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집행부”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지역정부, 또는 동 지역정부의 집행부를 의미한다.

21C.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 특정 정부 협력기관의 의무

- (1) 본 조는 다음에 적용된다.
- (a) 관할위원회가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보고하거나 권고한 경우이며,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보고, 권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i)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19조(지역 정부의 치안·범죄 감시) 제1(b)항, 또는
 - (ii) 동 조 제3(a)항.
 - (b) 보고, 권고 사항이 지역개선목표와 관련이 있으며—
 - (i) 지역개선목표가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관계되고,

(ii) 또한 지역정부 지역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 (2) 관할위원회는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서면 통보하여,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련 보고, 권고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통보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4) 제2항 통보 사항을 수령한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통보 내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5) 제2항은 다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보건서비스기관인 경우 및
 - (b)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조에 의해 보고 또는 권고 사항을 보건서비스기관(및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에 제출한 경우.
- (6) 제5항 “보건서비스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국가보건서비스 신탁
 - (b) NHS 재단 신탁, 또는
 - (c) 1차 진료 신탁을 의미한다.
- (7) 제2항, 제3항은 제21D조를 준수하여 이행한다.
- (8) 본 조에서—
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지역정부는—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지역정부
 - (b)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부위원회의 경우, 해당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지역정부를 의미한다.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지역정부 집행부를 의미한다.
“지역개선목표”, “지역협약”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Act) 제5편 제1장(지역협약)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관할위원회”는—
 - (a) 다음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 (i) 잉글랜드 카운티의회
- (ii) 카운티의회가 있는 카운티 내 지역의회 이외의 잉글랜드 지역의회, 또는
- (iii) 런던 자치구의회 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b) 제(a)호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관할위원회의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 목적상 다음을 제외한 모든 정부 협력기관을 의미한다.

- (a) [F82 지역경찰, 또는]
- (b) 경찰서장

관련 정부 협력기관의 목표는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105(3)조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21D. 보고·권고·답변 사항 발간 등: 기밀 및 비공개 정보

(1) 본 조는 다음에 적용된다.

- (a) 다음으로 구성된 제21B조 발간물
 - (i)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 권고 사항, 또는
 - (ii) 그러한 보고, 권고 사항에 대한 지역정부의 답변
- (b)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가 상기 문서 사본을—
 - (i) 제21A(8)조, 또는 제21B조에 의해 지역정부 구성원에게 전달하거나,
 - (ii) 제21C조에 의해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전달하는 경우.

(2) 문서를 발간하거나 관련 정부 협력기관에 문서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정부는—

- (a) 기밀 정보를 일체 삭제해야 하며,
- (b)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3) 지역정부 구성원에게 문서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조사 및 감독위원회 또는 지역 정부는 기밀 정보 또는 관련 비공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4)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지역 정부는 문서를 발간하거나 문서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제2항, 제3항에 의해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a)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요약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b)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발간 서류, 전달 사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그러한 요약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5) 감독 및 조사위원회가 보고서, 권고 사항을 발간하거나 사본을 전달하는데 있어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해—

(a) 정보를 삭제하거나

(b) 보고서, 권고 사항 일부를 요약 내용으로 대체하더라도,

제21B(3)(c)조 또는 제21B(3)(d)조 목적상 보고서 또는 권고 사항을 발간하거나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조에서—

“기밀 정보”는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0A(3)조(주요 의회 회의출석 허용)에서 규정한 의미를 지닌다.

“비공개 정보”는 동 법규 제100I조에서 규정한 의미를 지니며—

(a) 제21(2)(f)조의 역할을 부여 받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 또는

(b) 그러한 보고·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6조 [F83 또는 (웨일즈)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제186조]에 의한 비공개 정보도 포함한다.

“관련 비공개 정보”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감독 및 조사 위원회 보고서 또는 제안 사항에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 제안 사항을 검토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 절차, 또는 동 절차 일부를 규율한 1972년 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제100A(4)조 감독 및 조사위원회 결의안에서 규정한 유형의 비공개 정보 및

(b) 지역정부 답변에 관련하여, 보고, 답변 또는 제안 사항을 검토한 지역정부 회의

절차, 또는 동 절차 일부를 규율한 지역정부 결의안에서 규정한 유형의 비공개 정보.

제21C조 의미 내에서의 관할위원회에 해당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동 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7) 본 조에서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동 위원회 소속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F84 21E. 특정 지역의회 감독 및 조사위원회: 정부 협력기관에 대한 역할

(1) 본 조는 카운티의회의 정부 협력기관에 해당하는 지역의회(“관할 카운티의회”)에 적용된다.

(2) 하기 지역개선목표와 관련이 있는 보고, 권고 사항을 관할 카운티의회, 또는 동 의회의 집행부에 제출하는 권한을 본 조가 적용되는 지역의회가 지역의회 감독 및 조사위원회(들)에 부여하도록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a) 관할 정부 협력기관과 관련이 있으며,

(b) 카운티의회의 지역협약에서 규정한 지역개선목표

(3) 제21B조, 제21C조, 제21D조 특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조항을 제2항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다.

(4) 본 조 목적상—

(a) 지역의회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i) 관련 카운티의회, 또는

(ii) 카운티의회의 정부 협력기관에 해당하는 그 밖의 기관이며, 다음 기관은 제외한다.

[F85(a) 지역경찰기관, 또는]

(b) 경찰서장

(b) “지역협약”, “지역개선목표”, “정부 협력기관”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c) 동 법 제105(2)조, 제105(3)조는 지역개선목표가 관련 정부 협력기관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F86 21F. 감독 및 조사위원회: 홍수 위험 관리

- (1) 본 조는 잉글랜드 내 지역 홍수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지역 정부기관에 적용된다.
- (2) 제21(2)조 규정 체계에서는 지역 정부의 관할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또는 해안 침식 위험에 관한 위험관리기관의 관리기능을 감독·조사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3) 위험관리당국은 제2항을 이행하는 과정 중, 하기 사항에 관련하여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따라야 한다.
 - (a) 정보 및
 - (b) 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
- (4) 국무장관은 제3항 의무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부령에서 특히 (i) 절차, (ii) 통보 사항, (iii) 의무 면제, (iv)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 (v)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답변 사항의 특성, (vi) 정보 공표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5) 제2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 위험관리당국은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 권고 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 (6)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공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123조 부령에서는 공동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본 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7) 본 조의 용어 표현은 2010년 홍수 및 물관리법(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제1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F87 21G. 웨일즈: 구성원 임명

- (1) 웨일즈 장관들은 제21조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부령에 의해—

- (a) 1인 이상,
 - (b) 1가지 유형 이상의 개인,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2) 하지만—
- (a) 해당 개인, 기관이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임명이 효력을 지니며,
 - (b) 특정 유형의 당사자 임명은 해당 유형의 당사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 범위 내에서 효력을 지닌다.
- (3) 요건 A는 당사자가 어떤 유형이든 서비스, 물품 또는 시설을 일반인 일부 계층 또는 일반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 (4) 요건 B는—
- (a) 공공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당사자가 서비스, 물품,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 (b) 해당 개인, 기관에게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다.
- (5) 요건 C는 해당 기관이 지역정부가 아닌 경우다.]

22. 정보 접근 등

- (1) 지역정부 집행부 또는 동 집행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 (2) 제9항 부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집행부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를 결정한다.
- (3) 비공개로 진행되는 지역정부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사항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 (4) 지역정부 집행부 개인 구성원의 의사 결정 사항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 (5) 제3항, 제4항 서면 기록에는 해당 의사결정 사유를 명시한다.
- (6) 제3항, 제4항 서면 기록은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부령에 의거하여, 관련 보고서, 배경 자료 등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문서와 함께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7) 특정 정보를 수록한 기록 또는 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6항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8)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과 관련이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공동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의 일반인 참관에 관하여(그러한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도록 하는 조항 포함),
 - (b) 제(a)호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서면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c) 제(b)호 서면 기록에 의사 결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d) 서면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e) 서면 기록한 의사 결정 사항과 관련이 있는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9)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제2항 회의, 또는 동 회의의 특정 절차를 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관하여,
 - (b) 제2항 회의, 또는 동 회의의 특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관하여,
 - (c) 동 조에 의거하여 서면 기록에 수록해야 하는 정보에 관하여,
 - (d) 특정 정보를 그러한 서면 기록에 수록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 (e) 서면 기록을 작성·보관·배포하는 담당자에 관하여,
 - (f) 그러한 서면 기록을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g) 서면 기록된 의사결정 관련 문서를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h)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i) 일반인,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게 기록, 문서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j) 본 조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 부과하는 요건에 관하여 벌칙을 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0)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이행과 관련된 특정 의사결정 사항에 관한 특정 정보를 일반 또는 지역정부 구성원에게 공개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서는—

- (a) 동 항에 명시한 의사 결정 이전에 특정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 (b) 특정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유형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12)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지역정부 집행부 위원회, 집행부 또는
- (b) 제8(a)항 공동위원회의 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관련하여 M12 1972년 지역정부법 제VA편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F88 (12A) 국무장관(F89(잉글랜드 지역정부와 관련하여), 또는 웨일즈 장관들(웨일즈 지역정부와 관련하여)은 부령에 의해 다음에 관해 제21D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다시 명시하여 규정할 수 있다.

- (a) 제21B조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제21E조 부령 또는F90 제21B조에 의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 보고·권고 사항에 대한 지역정부 집행부의 답변서 발간.
- (b) 동 조에 의한 집행부 답변서 사본 전달.]

(13) 본 조에서—

“공동위원회”는 M13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5)(a)조 공동위원회를 의미하며, “규정한”은 국무장관 부령에 규정함을 의미한다.

[F91 22A. 잉글랜드 내 특정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특정 정부 협력 기관의 정보 제공 등

(1) 관할위원회에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관할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 및
- (b)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관할위원회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보는 다음 조항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해당 정보에 관해 규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a) 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20(5)(c)조 또는 제20(5)(d)조
(범죄·치안 지도 및 규율)또는
- (b)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4(2)(d)조, 제
244(2)(e)조(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역할)
- (3) 제1항 목적상 “관할위원회”, “관련 정부 협력기관”은 제21C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4) 관할 지역의회 위원회에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또한 부령에 의해—
 - (a) 관련 정부 협력기관이 관할 지역의회 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 정보 및
 - (b) 관련 정부기관이 관할 지역의회 위원회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관해 규정
할 수 있다.
- (5) 제4항에서, 정보는2006년 경찰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제20(5)(c)조 또는
제20(5)(d)조(범죄·치안 지도 및 규율)에 의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해당
정보에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6) 제4항 목적상—
 - “관할 지역의회 위원회”는—
 - (a) 관할 지역정부 기관이 아닌 지역议회의 감독 및 감독위원회(“지역의회”), 또는
 - (b)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 관할 지역의회 위원회에 관련하여, “관련 정부기관”은—
 - (a) 지역의회에 관련하여, 관할 지역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카운티 의회
 - (b) 카운티의회에 관련하여 (지역의회가 아닌) 정부 협력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다음을 제외한다.
 - (i) [F92 지역경찰 또는]
 - (ii) 경찰서장.
- 본 목적상, “관할 지역정부 기관” 및 “정부 협력기관”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공
공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Act) 제5편
제1장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7) 여러 당사자, 위원회, 또는 여러 유형의 당사자, 위원회에 관련하여 본 조의 부령에

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8) 제7항에 의해 부여한 권한은 제105(2)(b)조에 의거하여 부여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 추가 조항

별표 1(집행부 체계 관련 추가 조항 제정)이 발효한다.

24. 정치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이 없음

- (a) 지역정부 집행부 및 (b) 지역정부 집행부 소속 위원회는 M14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조 (정치단체에 의석을 할당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집행부 체계 운영 절차

25. 운영 제안

- (1) 제31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정부는—
- (a) 집행부 체계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 (b) 운영방안 사본을 [F93 웨일즈 장관들]에게 전달한다.
- (2) 본 조에 의해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전, 지역정부는 관할지역 내 지역정부 유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3) 본 조에 의해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정부는—
- (a) 집행부가 취하는 형태 및
 - (b) 제13(3)(b)조 부령에 명시한 역할이 집행부의 책무가 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 (4) 본 조에 의해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동 운영방안을 시행할 경우 지역정부 역할 이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지역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5) 지역정부는 본 조 목적상 [F94 웨일즈 장관들]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6) 본 조에 의한 운영 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 (a) [F95 웨일즈 장관들]이 지시할 수 있는 집행부 체계 운영 관련 상세내역
 - (b) 운영방안 이행 일정 및
 - (c) 운영 방안 이행에 필요한 과도기 체계 상세내역
- (7) [F96 웨일즈 장관들]에 제출하는 본 조의 운영방안 사본에는 하기 사항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한다.
 - (a) 관할지역 내 지역정부 유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하기 위해 지역정부가 취한 조치 및
 - (b) 그러한 협의 결과 및 동 결과가 운영방안에 반영된 범위
- (8) [F97 웨일즈 장관들]은 부령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정부, 또는 부령에서 규정한 유형의 지역정부가 본 조를 준수해야 하는 최종 일자를 규정할 수 있다.

26.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영방안

- (1) 제25조 지역정부 운영방안이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집행부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지역정부는 운영방안에 수록된 일정에 따라 운영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 (2) 본 편에서,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집행부 유형은—
 - (a) 시장 및 내각 집행부 [F98 또는]
 - (b) [F99 시장 및 의회 관리자 집행부, 또는]
 - (c) 제11(5)조 부령에서 규정한 유형의 집행부이며, 주민투표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부령에서 규정한 집행부다.

27. 직선시장에 관련된 제안에 관한 주민투표

- (1) 제25조의 지역정부 운영제안이 주민투표가 필요한 유형의 집행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역정부는—
 - (a) 운영 방안 이행조치를 취하기 전, 운영방안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 (b) 제25조 운영방안이 주민투표에서 거부된 경우, 지역정부가 이행하려는 제안 개요(본 조에서 개략적인 제안서라 칭함)를 작성하여 [F100 웨일즈 장관들]에 제출한다.
- (2) 개략적인 제안서는—
- (a)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집행부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체계 운영, 또는
- (b) 제32조 부령에 의해 허용하는 유형의 대안 체계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다.
- (3) 개략적인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역정부는 관할지역 내 지역정부 유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제25조 운영방안이 주민투표에서 거부된 경우, 개략적인 제안서를 토대로 한 상세 제안 이행 일정을 개략적인 제안서에 수록해야 한다.
- (5) 지역정부는 제25조 운영제한 사본을 [F102 웨일즈 장관들]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개략적인 제안서 사본을 [F101 동 장관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지역정부는 제25조의 운영방안 사본을 [F103 웨일즈 장관들]에게 제출한 후 2개월 내 본 조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 (7) 제1항 주민투표 결과, 제25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역정부 운영방안을 승인 받는 경우, 지역정부는 운영방안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 (8) 제1항 주민투표 결과, 제25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역정부 운영방안이 거부된 경우, 지역정부는—
- (a) 운영방안을 이행할 수 없고,
- (b) 개략적인 제안서를 토대로 한 운영방안 대안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 (c) 2차 상세 운영방안 상세내역 사본을 [F104 웨일즈 장관들]에게 전달한다.
- (9) 본 조에 의해 개략적인 제안서, 또는 운영방안 대안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있어 지역 정부는 [F105 웨일즈 장관들]의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 (10) 개략적인 제안서 및 운영방안의 자세한 대안에는 [F106 웨일즈 장관들]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집행부 체계 또는 대안 체계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한다.
- (11) 집행부 체계 하에서 제25조에 의해 체계 운영방안을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 체계하에서 제25 조 제2항, 제3(b)항, 제6(c)항에 의해 체계 운영방안의 상세한 대

안을 이행한다.

- (12) 집행부 체계 하에서 제25조에 의해 체계 운영방안을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 체계하에서 제25조 제2항, 제4항, 제6(c)항에 의해 운영방안의 상세한 대안을 이행한다.
- (13) 지역정부는 제4항 일정에 따라 운영방안의 상세한 대안을 이행한다.

28. 개략적인 제안서 승인

- (1) 2차 운영방안이 본 편에 의해 허용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제11(5)조, 제32조 부령에 의해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역정부는 [F107 웨일즈 장관들]에게 운영방안 대안을 명시한 개략적인 제안서 승인을 [F107 웨일즈 장관들]에게 요청한다.
- (2) 제1항에 의해 웨일즈 장관들에게 승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 및 내용은 [F108 웨일즈 장관들]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3) [F109 웨일즈 장관들이 제1항 지역정부 체계 운영방안을 [승인하는 경우]—
 - (a) 지역정부는 제27조 목적상 동 운영방안을 개략적인 제안서로서 채택할 수 있고,
 - (b) 제11(5)조, 제32조에 의해 필요한 부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27(13)조 일정을 연기한다.

29. 집행부 체계 운영 및 공표

- (1) 지역정부가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결의안을 승인해야 한다.
- (2) 지역정부 결의안을 승인한 후, 지역정부는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 (a) 일반인이 적절한 시간에 항시 체계 운영방안을 명시한 문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
 - (b) (i) 지역정부가 해당 체계를 운영하기로 결의했음을 밝히고,
 - (ii) 체계 운영 개시일을 명시하며,
 - (iii) 동 체계의 주요 특징에 관해 서술하고,
 - (iv) 동 체계에 관해 명시한 문서 사본이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통보 내역에 규정할 수 있는 시간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v) 주요 청사 주소를 명시하여 지역 발간 신문 1종 이상에 통보 사항을 게재한다.

- (3) [동 조에 의해 결의안을 승인하는 [F111 웨일즈] F110 지역정부는 지역정부가 제 33(5)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 해당 집행부 체계를 대체하는 다른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 한, 해당 집행부 체계 운영을 추후 중단할 수 없다.]

30. 여러 집행부 체계 운영

[F112 (1) 국무장관은 [F113 웨일즈] 지역정부가 기존 집행부 체계(“기존 체계”)와 특정 측면에서 다른 집행부 체계(“다른 체계”)를 운영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 (a)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적용하거나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며,
- (b) 다른 체계를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체계의 직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 (c) 집행부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변경에 의한 기존 체계 변화에 관해 명시한다.

(3) 제2항 조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안적인 체계

31. 특정 지역정부의 대안 체계

[F114 (A1) 본 조에서 지역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정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1) 본 조는—

- (a)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정부 및
- (b) 본 조의 국무장관 부령에서 규정한 유형의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2) 지역정부가 다음 유형인 경우 본 항의 지역정부에 해당된다.

- (a) 카운티의회 소재 지역에 설립된 지역의회의 경우 및

- (b) 1999년 6월 30일 현재 지역정부 관할지역 거주 인구가 85,000인 미만인 경우.
- (3) 제2(b)항 목적상, 1999년 6월 30일 현재 일반등기국(Register General) 추산 인구를 동 일자 현재 거주인구로 간주한다.
- (4) 본 조가 적용되는 지역정부는—
- (a) 제32조 부령에 의해 허용되는 특정 유형의 대안 체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 (b) 제25조에 의한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 (5) 본 조, 또는 제25조에 의한 체계 운영방안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본 조가 적용되는 지역정부는 관할지역 내 지역정부 유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협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본 조에 의해 체계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동 운영방안을 시행할 경우 지역정부 역할 이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지역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7) 본 조에 의해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지역정부는 본 조에 의한 국무장관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8) 제7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 (9) 제8항 조항은 제7항 권한의 일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2. 대안 체계

[F115 (A1) 본 조에서 지역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 (1) 국무장관은 지역정부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다음 유형의 지역정부 체계(본 편에서 대안 체계라 지칭함)를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 집행부를 수립, 운영하지 않으며,
 - (b) 지역정부 역할 이행에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 또는 기타 조치를 감독하거나 조사하는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를 구성하고,
 - (c)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지역정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국무장관

이 판단하는 체계.

(2) 본 조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 (a) 지역정부 개별 구성원 또는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 개별 구성원에 의한 지역 정부 역할 이행을 위한 체계.
- (b)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구성원을 정하는 지역정부 위원회, 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체계.

[F116 (3) 본 조의 부령은 제1(b)항 위원회, 부위원회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a) 국무장관 부령의 경우, 다음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규정.
 - (i) 제21~21D조, 또는 별표 1, 제7~9호 조항.
 - (ii) 제21E조 또는 제22A조에 의한 규정.
 - (iii)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제246조, 또는 별표 17 조항.
 - (iv) 동 법규 제244조에 의한 규정.
- (b) 웨일즈 장관들이 제정하는 부령의 경우 다음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하는 규정.
 - (i) 제21조, 제21A(1)(a)조, 제21A(1)(b)조, 제21(2)조, 또는 별표 1, 제8~11호 조항.
 - (ii)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별표 17 조항.
 - (iii) 2006년 (웨일즈)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Wales) Act) 제186조, 또는 별표 11 조항.
 - (iv) 동 법규 제184조에 의한 규정.]

(4) 지역정부 역할 중 특정 유형의 대안 체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역할, 될 수 없는 역할, 체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본 조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5)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대안 체계 운영

[F117 [F118 (A1) 본 조에서 지역정부는 웨일즈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 (1) 지역정부는 본 편에 의거하여 제정한 규정에 의해, 또는 본 편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지 않는 한, 대안 체계를 운영할 수 없다.
- (2) 지역정부가 대안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가 결의안에 의해 이를 승인해야 한다.
- (3) 제29조 제2항이 제29조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동 항을 본 조 목적상 적용한다.
- (4) 제9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 지역정부가 기존 체계를 대신하여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 한, 대안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본 조의 결의안을 승인한 지역정부는 대안 체계 운영을 추후 중단할 수 없다.
- (5) 국무장관은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제31조가 적용되는 지역정부가 집행부 체계 대신, 대안 체계를 운영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6) 제5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7) 국무장관은 기존 대안 체계와 특정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대안 체계를 지역정부가 운영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8) 제7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9) 국무장관은 대안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가 대안 체계를 대신하여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10) 제9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서는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할 수 있다.
- (11) 제6항, 제8항, 제10항은 (상황에 따라) 제5조, 제7조, 제9조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119 통치체계 변경: 일반 조항

[F120 33ZA. 통치체계 [F121 변경]

지역정부 통치체계 변경 관련 규정에 관해서는 F122 2011년 웨일즈 지역정부조치 (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s) 제4편 참조.]

F123 33A. 집행부 체계: 여러 유형의 집행부

.....

F124 33B. 집행부 체계: 집행부 체계의 여러 유형

.....

F125 33C. 대안 체계: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

33D. 대안 체계: 체계 변형

대안 체계를 운영하는 잉글랜드 지역정부는 특정 측면에서 기존 체계와 다르도록 체계를 변형할 수 있다.]

F126 33E. 지역정부의 체계 운영 제안

.....

F127 33F. 지역정부 결의안

.....

F128 33G. 집행부 신규 수립 또는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실시

.....

F129 33H. 통치 체계 변형 실시

.....

F130 33I. 일반 조항

.....

F131

F131 33J. 집행부 신규 유형 또는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일반적인 요건

F132 33K.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 변경: 추가 요건

F133 33L. 주민투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체계 변경: 추가 요건

F134 33M.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 변경 사례

F135 33N. 시장 집행부 변형

F136...

F136 33O. 조항 해석

주민투표

34. 탄원에 의한 주민투표

(1) [F137 웨일즈 장관은] 부령 요건을 준수하는 탄원서를 수령한 지역정부가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F138 해당 유형의 집행부 운영]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139 (1A) 본 조에서 “관련 집행부 유형”은 이를 수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유형의 집행부 체계를 [F140 의미한다].

(2) 제1항의 부령에 의해—

- (a) 탄원서 양식 및 내역(전자 탄원서 관련 규정 포함)에 관하여,
- (b) 지역정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부령에서 명시한 기간 중 지지해야 하는 지역정부 관할구역 내 유권자 최소 수에 관하여,

- (c) 지역정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지지해야 하는 지역정부 관할구역 내 유권자 수에 관해 지역정부 공무원이 공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d) 지역정부 관할구역 유권자들이 탄원서를 지지하는 방식에 관해(지역정부 유권자들이 전화 또는 전자 방식으로 탄원서를 지지하도록 하는 조항 포함),
 - (e) 탄원 사항에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거나, 취할 수 없거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f) 탄원서를 지역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 (g) 탄원서 진위 여부 확인에 관해,
 - (h) 주민투표 실시 일자 또는 마감시간에 관해,
 - (i)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j)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k) 부령에 의해 허용된 조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F141 웨일즈 장관들이] 이를 직접 이행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제27조, 제28조, [F142 제29조, 또는 제33조], [F142 또는 제29조] F143 조항을 적용하거나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 (4) 제2(b)항의 지역정부 유권자 수는 동 조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시기에 추산하며,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시점에 지역정부 유권자 수의 5%로 정한다.
- (5)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 지시에 의한 주민투표

- (1) 지시 사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11조에서 허용하는, 또는 제11조에 의한 형태를 취하는 집행부 체계 운영 여부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F144 웨일즈 장관들이 부령에서 명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부에게 지시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

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동 조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 (a) 주민투표 실시 일자, 또는 마감시간에 관하여,
- (b)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c)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d) 부령에 의해 허용된 조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F146 웨일즈 장관들이] 이를 직접 이행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제27조, 제28조, [F147 제29조, 또는 제33조], [F147 또는 제29조] F148 조항을 적용하거나 (이를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4) 제2항, 제3항 조항은 제1항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6. 부령에 의한 주민투표

(1) 부령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제11조에 의해 허용되는, 또는 제11조에 의한 집행부 체계 운영 여부에 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F149 웨일즈 장관들]은 모든 지역 정부, 또는 부령에 명시한 유형의 지역정부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본 조의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 (a) 주민투표 실시 일시, 또는 마감시간에 관하여,
- (b) 주민투표 이전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c) 주민투표 후 지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없는 조치,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 (d) 부령에 의해 허용된 조치, 요구되는 조치를 지역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 [F146 웨일즈 장관들이] 이를 직접 이행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제25조, 제27조, 제28조, [F151 제29조, 또는 제33조], [F151 또는 제29조]를 F152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 (4) 제2항, 제3항 조항은 제1항의 일반적인 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헌법

37. 지역헌법

- (1) 집행부 체계, 또는 대안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 문서(본 조에서 지역헌법이라 칭함)를 작성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한다.
- (a) 국무장관 지시에 따라 수록할 수 있는 정보.
 - (b) 지역정부의 현행 기본절차명령 사본.
 - (c) 제15조에 의한 지역정부 현행 윤리규정 사본.
 - (d) 그 밖에 지역정부 판단에 따라 수록하는 자료(그러한 자료가 있는 경우).
- (2) 지역정부는 적절한 시간에 항시 일반인들이 지역헌법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사본을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
- (3) 지역정부는 지역헌법 사본을 요청한 후 지역정부가 책정한 적합한 구매 비용을 지역정부에 지급한 자에게 지역헌법 사본을 전달한다.
- [F153 (4)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제51(5)(b)조에 의해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지역정부에 관련하여, 제51조에 의한 제1(c)항 지역정부 현행 윤리규정은 지역정부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에 적용되는 현행 의무 조항을 의미한다.

지침

38. 지침

- (1) 본 편 목적상 지역정부는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현행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 (2) 본 조의 지침은 여러 사례, 여러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직선시장 등

39. 직선시장 등

(1) 본 편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은 본 편에 의해 제정한 조항, 또는 본 편 조항에 의거하여 지역정부 관할지역에서 지역정부 유권자들에 의해 지역정부 시장으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F154(2).

(3) 지역정부 직선시장은 F155 “시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한다.

(4) 본 편에서 “집행부 선출 구성원”은 본 편에 의해 제정한 조항에 의해, 또는 본 편 조항에 의거하여 지역정부 관할지역 유권자들에 의해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으로 선출된 자를 의미하지만, 직선시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F156 (5A) 특정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에서—

- (a)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 (b) 지역정부 의원은 지역정부 직선시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5B) 반면 제5A항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a) 해당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목적상 직선시장을 지역정부 구성원 또는 의원으로 간주하는, 본 호에 의한 [F157 웨일즈 장관들] 제정 부령.
- (b) 동 항과 상반되는 특정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내역.

(5C) 제5B(b)항 목적상 [F158 1972년 지역정부법 제21(1A)조]가 본 항과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F159 (5D) 제5B(a)항에 의해 제정하는 부령을 수록한 법률은 웨일즈 의회 결의안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F160 [F161(6).

- (7) 지역정부 직선시장 임기는 4년이다.
- (8) 본 조는 제41조를 준수하여 이행한다.]

40. 직선시장 및 의원 선출

- (1)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선출된 자가 동시에 실시한 선거에서 지역정부 의원으로 또한 선출되는 경우, 의원실에 공석이 발생한다.
- (2) 선거(“시장 선거”)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당선된 자가—
 - (a) 지역정부 의원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 (b) 시장선거 이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지역정부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의원실에 공석이 발생한다.
- (3) 제4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재임하는 자는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4)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를 지역정부 직선시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지역정부 직선시장으로 재임하는 자는 지역정부 의원(들)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해당 후보가 양 선거에 모두 출마하여 직선시장 및 의원으로 모두 당선된 경우, 제1항이 적용된다.

41. 선거 시기 등

[F162 웨일즈 장관들]은 부령에 의해 —

- (a)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거나 실시해야 하는 일자 및 연도에 관해,
- (b)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 선거일 간의 기간 간격에 관해,
- (c)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 임기에 관해,
- (d)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직이 공석이 된 경우, 이를 채우는 방법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42. 직선시장 선거에서의 표결

- (1) 직선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투표권을 지닌다.
 - (a) 직선시장 후보 중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1표(본 편에

서 1차 우선 투표권이라 칭함).

- (b) 직선시장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후보 중 유권자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1표(본 편에서 2차 우선 투표권이라 칭함).
- (2) 직선시장은 후보가 3인 이상 출마하지 않은 한, 단순다수제도에 의해 선출한다.
- (3) 직선시장 후보가 3인 이상 있는 경우, 직선시장은 별표 2 추가투표제도에 의해 선출한다.

43. 투표권

- (1)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지닌 자는 투표일 현재—
 - (a) 해당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선거구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으며,
 - (b) 지역정부유권자등록부에관할지역내주소로등록된자들이다.
- (2) 유권자는 직선시장 선거에서 1차 우선 투표권, 2차 우선 투표권을 1표 이상 행사할 수 없다.

44. 선거 실시에 관해 규정하는 권한

- (1)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실시 및
 - (b)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선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a)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특히—
 - (a) 유권자 등록에 관하여,
 - (b) 유권자 등록부 변경 사항 무시에 관하여,
 - (c) 선거 비용 제한(및 지출 상한선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 제정)에 관하여,
 - (d) 직선시장 선거 및 그 밖의 선거(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 포함)를 통합 실시하기 위해,

- (e) 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 및 그 밖의 선거(직선시장 선거 포함)를 통합 실시하기 위해,
- (3) 본 조에 의해 공표하는 부령에서는—
- (a) 의회 선거 또는 지역정부 선거에 관련하여,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조항, 이에 의해 제정한 규정, 또는 여타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을 (개정 사항, 예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없이) 적용·도입하며,
 - (b)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의 양식, 동 법규에 의해 제정하는 규제, 규칙에 수록된 양식을 본래의 목적 및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에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정하고,
 - (c) 본 편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 또는 본 편 조항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회 유권자 또는 지역정부 유권자 등록 관련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 F163 [(3A)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다. (3B) 제2(c)항의 사안과 관련이 범위 내에서,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에 의해서만 행사해야 하며, 다만 화폐 가치 변동에 의해 국무장관이 편의상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구성원 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본 조에 의거하여 공표하는 부령에 적용·도입된 M15 1983년 M16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에 의한 제3편의 선거 탄원서에 의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F164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44A. 대표 선출: 전체 의회 선거

-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a) 지역정부가 전체 의회 선거를 실시하며,
 - (b) 선거 후 열리는 연례회의일 현재,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운영하

고 있는 경우.

- (2) 집행부 대표는 선거 후 개최하는 연례회의에서 선출한다.
- (3) 선거 후 열리는 의회 연례회의에서 집행부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열리는 의회 회의에서 집행부 대표를 선출한다.
- (4) 본 조 및 제44D조 목적상—
 - (a) 선거를 실시하는 각 연도에 통상적으로 의원을 전원 선출하는 제도를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경우, 지역정부는 전체 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b) “선거 후 열리는 연례회의”는 일반선거 실시 후 처음 개최하는 지역정부 연례회의를 의미한다.

44B. 대표 선출: 일부 의회 선거

-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a) 지역정부가 일부의회 선거를 실시하며,
 - (b) 해당 연례회의일 현재,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 (2) 집행부 대표는 해당 연례회의에서 선출한다.
- (3) 해당 연례회의에서 집행부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부 대표는 이후 열리는 의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 (4) 본 조 및 제44E조 목적상—
 - (a) 선거실시 각 연도에 통상적으로 의원 전체 인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또는 각 경우, 이와 유사한 비율)을 선출하는 제도를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경우, 지역정부는 일부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b) “해당 연례회의”는 —
 - (i) 지역정부가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 운영을 개시한 후 최초로 열리는 연례회의, 또는
 - (ii) 이후 열리는 연례회의로서, 집행부 대표 임기가 제44E(3)조에 의해 종료하는 일자에 개최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44C. 대표 해임

- (1)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의 집행부 체계에서는 의회가 결의안에 의해 집행부 대표를 해임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2) 의회가 집행부 대표를 해임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집행부 대표를—
 - (a) 대표를 해임하는 회의에서, 또는
 - (b) 이후 개최하는 회의에서 신규 선출한다.

44D. 대표 임기: 전체 의회 선거

- (1) 본 조는 다음 지역정부 집행부 대표에 적용된다.
 -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운영하며,
 - (b) 전체의회 선거 실시를 실시하는 지역정부.
- (2) 집행부 대표의 임기는 대표로서 선출된 일자에 개시한다.
- (3) 집행부 대표의 임기는 대표 선출 후 열리는 연례회의 일자에 종료한다.
- (4) 집행부 대표가 제44C조에 의해 해임된 경우, 해임 일자에 임기가 종료한다.

44E. 대표 임기: 일부 의회 선거

- (1) 본 조는 다음 지역정부의 집행부 대표에게 적용된다.
 -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운영하며,
 - (b) 부분의회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정부.
- (2) 집행부 대표의 임기는 선출 일자에 시작한다.
- (3) 집행부 대표의 임기는 집행부 대표가 의원으로서 통상적으로 퇴임할 일자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 연례회의 일자에 종료한다.
- (4) 상기 조항에는 제5항, 제6항이 적용된다.
- (5) 집행부 대표가 제44C조에 의해 해임된 경우, 임기는 해임 일자에 종료한다.
- (6) 지역정부가 전체의회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집행부 대표의 임기는 선거 실시 결정 후 열리는 최초의 전체의회 선거 후의 연례회의 일자에 종료한다.

- (7) 본 조의 목적상, 집행부 대표가 의원직에서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일자(제44F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동 대표가 의회 의원으로서 퇴임해야 하는 다음 일자다.

44F.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집행부 대표

- (1)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에서 집행부 대표는 대표 임기 중 의회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 (2) 따라서 의원직 조기 퇴임에 관해 규정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본 조는 집행부 대표가 퇴임 이외의 방식으로(자격 박탈, 사임 등)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4G.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그 밖의 방법은 없음

- (1) 본 조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에 적용된다.
- (2) 집행부 대표는 제44H조 부령, 또는 제44A조, 제44B조, 또는 제44C조에 의해서만 선출될 수 있다.
- (3) 집행부 대표는 제44H조 부령, 또는 제44C조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44H. 부령

- (1) 국무장관은 다음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a)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하에서 집행부 대표가 지역정부에 의해 선출되는 일자 및 연도.
 - (b)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하에서 집행부 대표 선거일간의 기간 간격.
 - (c)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에서 집행부 대표 임기.
 - (d)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체계에서 공석이 발생한 경우 공석을 채우는 방법.
- (2) 제44A~44E조에는 본 조에 의한 부령이 적용된다.]

주민투표 관련 조항

[F165 45. 주민투표 관련 조항

- (1) 지역[F166 정부]는 5년간 주민투표를 1회 이상 실시하지 못한다.
- (2) 본 편 조항에 의한 부령 또는 명령에 따라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 제안 사항이 승인된 경우, 해당 지역정부는 부령 또는 명령에 의해 제안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3) 본 편 부령, 또는 명령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 관련 제안 사항이 거부된 경우, 지역정부는 해당 제안사항을 이행할 수 없고, 부령 또는 명령에 의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4) 지역정부 실시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지니는 자는 주민투표일 현재—
 - (a) 해당 지역정부 관할지역 내 선거구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보유하며,
 - (b) 지역유권자등록부에지역정부관할지역내주소로등록된자들이다.
- (5) [F167 웨일즈 장관들]은 주민투표 실시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6) [F168 웨일즈 장관들]은 주민투표와 다른 선거의 통합실시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7) 제5항, 제6항의 부령은 선거 또는 주민투표 관련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 조항을 개정·예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없이 적용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 (8) 제5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특히 다음에 관해 규정한다.
 - (a) 주민투표에서 표결할 사안.
 - (b) 주민투표 홍보(주민투표 결과 홍보 포함)
 - (c) 주민투표 경비 지출 제한(지출 상한선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 제정).
 - (d) 지역정부 구성원 및 공무원의 주민투표 실시.
 - (e) 주민투표 실시 시기, 장소, 방식.
 - (f) 주민투표 개표 방식.
 - (g) 유권자 등록부 변경 사항 무시.

F169 [(8A)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F170 웨일즈 장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본 항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주민투표 표결 사안 질문 내 단어 선정에 관해 규정하는 조항, 또는
 - (b) 제8(c)항에 명시한 사안 관련 조항.
- (8B) 주민투표 표결 사안 질문의 단어 선정에 관해 규정하는 부령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의해 제정할 수 없다.
- (a) [F172 웨일즈 장관들]이 부령 초안을 [F171 웨일즈의회]에 제출하기 전, 주민투표 질의 사항을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했다.
 - (b) [F173 웨일즈 장관들]이 부령 초안을 웨일즈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해당 질문을 유권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상기 협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 견해를 수록한 보고서를 [F174 웨일즈의회]에 또한 제출했다.
- (8C) 주민투표 표결 질문 외에, 주민투표 투표지에서 표결 질문에 선행하는 기재 내용에 관해 부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질의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제8B항 조항은 질의 사항 및 선행 기재 내용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 (8D) 제8(c)항 사안에 관해 규정한 부령은 다음 경우 이외에는 제5항에 의해 제정할 수 없다.
- (a) [F176 웨일즈 장관들]이 [F175 웨일즈의회]에 부령 초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사안 관련 부령에 의한 규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참작한 경우.
 - (b) [F177 웨일즈의회]에 제출한 부령 초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 이외의 방식으로 해당 사안에 관해 규정한 경우, [F178 웨일즈 장관들]은 초안 제출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를 채택하지 않은 [F180 동 장관들]의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F179 웨일즈의회]에 또한 제출한 경우.]
- (9) 제1항, 제4~6항, 제8~[F181 8C]항에서 “주민투표”는 제27 조 F182, 본 편, 또는 [F183 2011년 (웨일즈)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Wales) Measure)] 제40편 조항에 의해 제정한 부령,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의미한다.]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

46.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법

M17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법을 수록한 별표 3이 발효한다.

추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47. 부수적인 규정, 결과적인 규정 등 제정 권한 등

- (1) [F184 웨일즈 장관들은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F185판단하는] 바에 따라 본 편의 조항, 또는 본 편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위해, 그러한 규정의 결과로써, 또는 규정이 발효하도록 하기 위해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규정, 과도적인 규정, 추가 규정을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 특정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도록 명시한다.
- (3) 법률을 개정하는 제2항 권한은—
 - (a)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적용하거나,
 - (b) 해당 법률을 확장하거나,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를 개정하거나,
 - (c) 존속하는 조항 없이, 또는 일부 조항은 존속하는 상태에서 폐지하거나 철회하는 권한이다.

[F186(4)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 지역정부 통치체계 변경에 F187관해 규정한다.

- (5) 그러한 규정은—
 - (a) 기존 통치체계, 신규 통치체계, 또는 기존·신규 통치체계에 관한 규정,
 - (b) 관련 선거를 실시할 수 있거나, 실시해야 하는 일자 및 연도에 관한 규정,
 - (c) 해당 선거 간의 기간 간격에 관한 규정,
 - (d) 특정 유형의 집행부 구성원 임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6) 제5항에서 “해당 선거”는—
 - (a) 직선시장 선거를 의미한다.

F188(b).

(7)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조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8. 제2편 조항 해석

(1) 본 편에서, 문맥상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한—

“대안 체계”는 제32(1)조의 의미를 지닌다.

[F189 “의회 관리자”는 제11(4)(b)조의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 선출 구성원”은 제39(4)조의 의미를 지닌다.

“직선시장”은 제39(1)조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구”는 M18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제 203(1)조의 의미를 지닌다.

“법률”은 지역 법률 또는 (M19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의미 내에 서의) 하위 법률에 구성된 법률을 포함한다.

지역정부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제11조에 의해 해석한다.

“집행부 체계”는 제10조의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 대표”는 [F190 제11(2A)(a)조 또는 제11(3)(a)조]의 의미를 지닌다.

“2차 운영방안” 및 “개략적인 제안서”는 제27(1)조, 제27(2)조에 의해 해석한다.

“1차 우선 투표권”은 제42(1)(a)조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정부”는 다음 기관들을 [F191 의미한다.

(a) 잉글랜드 카운티의회, 지역의회, 또는 런던 자치구의회.

(b) 웨일즈 카운티의회는] [F191 웨일즈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를 의미 한다.

“지역정부 유권자”는 M20 1972년 지역정부법 제270(1)조의 의미를 지닌다.

F192...

“감독 및 조사위원회”는 제21(1)조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은 M21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17조 및 별표 1 조항, 또는 이에 의해 제정한 조항의 요건을 의미한다.

“2차 우선 투표권”은 제42(1)(b)조의 의미를 지닌다.

(1A) F193...

(2) 본 편에서 지역정부 의장은—

(a) 공식 직함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 의장직을 맡는 자를 의미한다.

(b) 런던 자치구의 경우M22 1972년 지역정부법 별표 2, 제1편(별표 2, 제5B~5H호는 적용되지 않음)에서 자치구 시장으로 규정한 자다.

(3) 본 편에서 지역정부 부의장은—

(a) 공식 직함에 관계 없이 지역정부 부의장직을 역임하는 자이며,

(b) 런던 자치구의 경우M23 1972년 지역정부법 별표 2, 제1편(별표 2의 제5B~5H호는 적용되지 않음)에서 부시장으로 규정한 자다.

(4) 본 편에서 역할 이행은 그러한 역할 이행을 촉진하거나 이에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5) M24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는 본 편 조항 또는 본 편에 의해 제정하는 조항에 따른 결의안 승인 역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본 편에 의해 지역정부에 부여하는 역할은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가 아니다.

(7) 본 편 조항에 의한 국무장관 지시 사항은—

(a) 동 조항에 의해 국무장관이 추후 공표하는 명령에 의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b) 여러 사례, 지역정부, 또는 여러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F194 48A. 의회 의장의 역할

제44조, 제45조에 의해 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국무장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2010년 의회 의장 명령 참조.]

제3편. 지역정부 구성원 및 공무원 윤리규정

제1장. 구성원 윤리규정

윤리규정

49. 관할당국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

(1)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련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웨일즈의회는 (경찰 당국을 제외한) 웨일즈 관련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을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1 (2A) 각 규정 원칙에 관하여 제1항의 부령에서—

(a) 해당인이 공무원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특정 원칙이 적용되거나,

(b) 공무원의 자격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해야 하지만,

제(b)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제2B항의 원칙에 관련하여서만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B) 특정 원칙에 의해 특정 행동(또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금지되며, 그러한 행동이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본 항에 속하는 원칙이다.

(2C) 동 명령 목적상 제1항 명령에서는—

“공무원 신분” 및

“형사 범죄”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2D) 제2항 부령에서는—

(a) 특정인에게 항상 적용되는 원칙 및

(b) 특정인에게 항상 적용되지 않는 원칙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다음 기관과 협의한다.

(a)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관련 당국 대표들.

(b)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c) 잉글랜드 지역행정위원회(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

(d)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해당 부령이 웨일즈 경찰당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국무장관은 본 조에 의해

동 부령을 제정하기 하기 전, 다음 기관과 협의한다.

(a)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웨일즈 경찰당국 대표들.

[F22 (aa) 웨일즈 감사원장(Auditor General)].

(b) [F3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Public Services Ombudsman)] 및

(c) 웨일즈의회.

(5)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웨일즈의회는 다음 기관과 협의한다.

(a) 웨일즈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웨일즈 관련 당국의 대표들.

(b) [F4 웨일즈 감사원장(Auditor General)].

(c) [F5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Public Services Ombudsman)].

(d) 그 밖에 협의해야 한다고 웨일즈의회가 판단하는 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본 편에서 “관련 당국”은—

(a) 카운티의회

(b) 카운티 자치구의의회

(c) 지역의의회

(d) 런던 자치구의의회

(e) 교구 의회

(f) 지역사회의의회

(g) 런던 광역시당국

F6(h).

(i) 런던화재재난청(the 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

(j) 지역당국 또는 경찰당국으로서의 런던시 공동의회(Common Council)

(k) 실리제도(Isles of Scilly)의회

[F7 (l) 2004년 화재구조서비스법(Fire and Rescue Services Act) 제2조 계획에 의해 설립한 화재구조당국, 또는 동 법규 제4조가 적용되는 기관]

F8(m).

(n) M1 1985년 지역정부법 제4편에 의해 설립한 공동당국

[F9 (na) 2009년 지역민주주의 및 경제개발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제88조에 의해 설립된 경제개발기구,
(nb) 동 법규 제103조에 의해 설립한 통합당국.]
(o) 자연보호국(Broads Authority) 또는
(p) M2 1995년 환경법(Environment Act) 제63조에 의해 설립한 국립공원 당국.
- (7) 본 편에서 정부 “위원회 구성원”은 정부 구성원은 아니지만,
(a) 정부 위원회, 부위원회 구성원이거나,
(b) 공동위원회, 정부 공동위원회 위원이며, 동 위원회에서 해당 당국을 대표하는 자
이며,
해당 위원회, 부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지닌 자를 의
미한다.

50. 표준 윤리규정

- (1)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련 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준수
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 부령에 의해 윤리규정(본 편에서 표준윤리규정이라고 칭함)을
공표할 수 있다.
- (2) 웨일즈의회는 경찰당국 이외의 관련 웨일즈 관련 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준
수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 부령에 의해 윤리규정(본 편에서 또한 표준 윤리규정이라고
칭함)을 공표할 수 있다.
- (3) 표준 윤리규정을 공표하는 제1항, 제2항 권한은 공표된 표준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
을 포함한다.
- (4) 표준 윤리규정은 —
(a) (상황에 따라) 제49(1)조, 제49(2)조 부령에 명시된 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b) 의무 조항 및 (c) 선택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 [F10 (4A) 제1항에 의해 공표하는 표준윤리규정에서는, 동 항에서 명시한 개인들이 취
해야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규정 내 각 조항에 관해—
(a) 공무원 신분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에게 조항이 적용되거나,

- (b) 공무원 신분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해야 하지만, 제4B항 조항에 관련해서만 제(b)호에 명시한 대로 규정할 수 있다.
- (4B) 특정 조항에 의해 특정 행위(또는 특정 유형의 행위)가 금지되고, 동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항에 속하는 조항이다.
- (4C) 제1항에 의해 공표하는 표준윤리규정에서는 동 규정 목적상—
“공무원 신분” 및
“형사 범죄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4D) 표준윤리규정에서 제4A항, 제4C항에 의해 표준윤리규정에 도입하는 조항은—
(a) 제49(2A)조, 또는 제49(2C)조에 의해 제49(1)조 부령에 도입되는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b) 선택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규정이며,
(c) 선택 조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51조에 의해 동 선택 조항이 윤리규정에 도입되는 경우 의무 규정이 된다.
- (4E) 제2항에 의해 공표하는 표준윤리규정에는—
(a) 해당 개인에게 항시 적용되는 규정 및
(b) 항시 적용되지는 않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 (5) 본 조에 의해 부령을 공표하기 전, 국무장관 또는 웨일즈의회는 제49조에 의해 부령을 공표하기 전 동 조에 의해 협의해야 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 (6) 동 조의 부령 제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표준윤리규정 작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표준윤리규정 작성을 요청하며, 동 기관에 표준윤리규정 제안 또는 개정 제안 내역을 전달할 수 있다.
- (7) 제6항에 의한 작성 요청은—
(a) 서면으로 이행해야 하며,
(b) 1곳 이상의 기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c) 특정 유형의 당국으로 제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d) 작성한 표준윤리규정 제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간을 규정해야 하고,

- (e) 여러 당국, 여러 유형의 당국을 대상으로 제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 (f) 요청을 받는 기관이, 요청 제안서에 명시될 수 있는 당사자들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51. 관할당국의 윤리규정 채택 의무

- (1) 관련 당국은 해당 당국에 적용되는 제50조 부령이 최초로 공표된 일자 후 6개월 내, 지역정부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취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규정(본 편에서 윤리 규정이라고 지칭함) 채택 결의안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 (2) 관련 당국은 해당 당국에 적용되는 제50조 부령이 추가 공표된 일자 이후 6개월 내—
 - (a) 본 조에 의해 기존 윤리규정을 대체하는 신규 윤리규정을 채택하거나
 - (b) 본 조에 의해 기존 윤리규정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 (3) 관할당국은 결의안에 의해—
 - (a) 본 조에 의거하여 기존 윤리규정을 대체하는 신규 윤리규정을 채택하거나,
 - (b) 본 조에 의해 기존 윤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4) 신규 윤리규정 또는 개정 윤리규정에는—
 - (a) 해당 당국에 적용되는 표준윤리규정의 현행 의무 규정을 도입해야 하고,
 - (b) 동 윤리규정의 선택 조항을 도입하거나,
 - (c) 표준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F11 (4A) 제4(c)항에 의해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 규범에 행동기준 관련조항이 포함된 경우, 동 규범에서는—
- (a) (규범의 의미 내에서)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행동할 때에만 동 조항이 적용되거나,
 - (b) (동일한 의미 내에서)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동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해야 하지만, 제4B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b)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명시할 수 있다.
- (4B) 윤리규정 조항에 의해 특정 행위(또는 특정 유형의 행위)가 금지되고, 동 행위가 형

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항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4C) 제4(c)항에 의해 경찰당국 이외의 웨일즈 관할당국이 윤리규정에 도입할 수 있는 규정은—

(a) 해당 개인에게 항상 적용되는 규정 및 (b) 해당 개인에게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 규정이다.]

(5) 본 항 규정 기간 만료 전, 관할당국이 제1항, 제2항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a) 동 기간 만료 후 최대한 빨리 적절한 시기에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 (b) 관할당국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관할당국에 적용되는 표준윤리규정의 현행 의무 규정이 지역정부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6) 윤리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한 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적절한 시점에 관할당국은 —

- (a) 신규 윤리규정 또는 개정 윤리규정 사본을 관할당국 청사에 비치하여 적절한 시간에 항상 일반인이 이를 열람하도록 하며,
- (b) (i) 윤리규정을 채택했거나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ii) 신규 윤리규정, 또는 개정 윤리규정 사본이 정부 청사에 비치되어 있어, 통보 사항에 명시할 수 있는 시간에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iii) 해당 정부 청사 주소를 명시하여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1종 이상에 공표하고,
- (c) 신규 윤리규정, 개정 윤리규정 사본을—

F12(i).

(ii) 웨일즈 관할당국의 경우 [F13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Public Services Ombudsman)에게 전달한다.

(7) 관할당국이 자체적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경우, 제6(b)항에 의해 윤리규정 채택을 공표하는 의무는 동 신문 및 지역에서 발간되는 기타 신문 1종에 해당 통보 사항을 공표하는 의무라고 해석한다.

(8) 관할당국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본 조에 의한 윤리규정 채택 또는 개정에 관해 공표할 수 있다.

(9) 본 조에 의한 결의안 승인 관련 관할당국의 역할은 해당 관할당국만이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M3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관할당국의 경우, 결의안

승안 관련 역할은 동 법규 제101조가 적용되는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윤리규정 준수 의무

(1) 제51조에 의해 관할당국이 윤리규정을 최초로 채택한 시점에 관할당국의 구성원이거나 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지닌 개인은—

- (a) [F14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51조에 의한 관할당국의 현행 윤리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정서를 윤리규정 채택 후 2개월 기간 내 관할당국에 제출하며,
- (b)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한 후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M4 1972년 지역정부법 제83조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취임 수락 양식에는, 진술인이 [F14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51조의 관할당국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1972년 지역정부법 제83조가 적용되지 않는) 관할당국이 제51조 윤리규정을 최초로 채택한 후 관할당국 구성원이 된 자는 [F14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51조의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약정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한, 동 직책을 역임할 수 없다.

(4) 관할당국이 제51조 윤리규정을 최초로 채택한 후 관할당국 위원회 구성원이 된 자는 [F14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할당국의 제51조 현행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약정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한, 동 직책을 역임할 수 없다.

[F15 (5)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제51(5)(b)조에 의해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관할당국의 경우—

- (a) 제2~4항에 명시한, 제51조에 의한 관할당국 현행 윤리규정은 지역정부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의무 규정을 포함한다.
- (b) 제3항, 제4항에서, 관할당국이 제51조 윤리규정을 최초로 채택한 후의 기간은 2007년 지역정부 및 보건정부참여법(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volvement) 제184조 발효 이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윤리기준위원회

53. 윤리기준위원회

- (1) 제2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관할당국은 본 편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을 지니는 위원회(본 편에서 윤리기준위원회라고 칭함)를 설립해야 한다.
- (2) 제1항은 교구 위원회 및 지역사회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F16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 구성원 수 및 임기는 해당 당국이 (제6(a)항에 의해 제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정한다.
- (4) [F16A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는—
 - (a) 관할당국 구성원 2인 이상 및
 - (b) 해당 관할당국 또는 기타 관할당국의 구성원, 임원이 아닌 자 1인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F17 제b호에 해당하는 자가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 [F17(5) [F16A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는—
 - (a)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대표가 소속될 수 없으며,
 - (b) 집행부 구성원이 의장직을 역임할 수 없다.]
- (6) [F16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다음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a) 잉글랜드 관할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 (b) 제4(b)항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위원회 위촉.
 - (c) 일반인의 위원회 회의 참관.
 - (d) 위원회 회의 홍보.
 - (e) 위원회 회의 안건 선정 및 회의록 작성.
 - (f) 위원회 회의 안건, 기록, 관련 정보를 일반인, 또는 관할당국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g) 위원회 절차의 타당성 및 위원회 절차.]
- (7) [F16 잉글랜드 윤리기준위원회는—
 - (a) 잉글랜드 관할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 (b) 지침서 사본을 국무장관에 전달해야 한다.]
- (8) [F16 해당 당국의 구성원이 아닌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 윤리기준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9) [F16A 잉글랜드 관할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은 윤리기준위원회의 기준 요건, 개정 기준 요건을 명시한 내역서를 잉글랜드 윤리기준위원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에 전달해야 한다.]
- (10) [F16A 잉글랜드 관할당국, 웨일즈 경찰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는 M5 1989년 지역 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조(정치단체에 의석을 할당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1) 웨일즈의회는 부령에 의해—
- (a) 경찰당국 이외의 웨일즈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 규모 및 구성에 관하여(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동 위원회 위촉 관련 조항 포함),
 - (b) 위원회 구성원 임기에 관하여,
 - (c) 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할 수 있는 자, 역임할 수 없는 자, 역임해야 하는 자에 관해,
 - (d) 해당 관할기관 구성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구성원의 투표권을 지니는지 여부에 관하여,
 - (e) 동 위원회를 M6 1989년 지방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취급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 (f) 일반인의 위원회 회의 참관에 관하여,
 - (g) 위원회 회의 홍보에 관하여,
 - (h) 동 위원회 안건 선정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 (i) 일반인, 관할당국 구성원이 위원회 회의 안건, 기록,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 (j) 위원회 절차의 타당성 및 위원회 절차에 관하여,
 - (k) (경찰당국 이외의) 웨일즈 관할당국이 윤리기준위원회 기본 요건을 명시한 내역서를 [F18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Public Service Ombudsman)]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12) 제(6)(c)~(f)항 또는 제(11)(f)~(i)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는, 1972년 지역 정부법 제VA편 조항을 적용하거나 (이를 개정하여, 또는 개정하지 않고) 다시 명시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F19 54A.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

- (1)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부위원회를 1개 이상 구성할 수 있으며, 부위원회는 윤리기준위원회의 개입을 통해, 또는 윤리기준위원회의 개입 없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은 F20 제56조의 역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제1항 부위원회 구성원은 부위원회를 설립한 윤리기준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하지만, [F21 제55(7)(b)조가 적용된다.]
- (4) 제1항에 의해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가 구성된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 (a) 제53(6)(a)조 및 제53(6)(c)~(g)조 부령에 의해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고,
- (b) 제53(7)조, 제53(8)조, 제53(10)조, 제54(4)조, 제54(6)조는 윤리기준위원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부위원회에 적용된다.
- (5) 제1항에 의해 경찰당국 이외의 웨일즈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가 구성하는 부위원회는—
- (a) 동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제53(11)조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 (b) 제54(5)조, 제54(7)조가 윤리기준위원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동 조항이 부위원회에 적용된다.
- (6) [F22 제55(5)조 및 제53(6)(a)호 또는 제53(11)(a)호 부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 조항들이 본 조에 적용되는 바에 따라) —
- (a) 제1항 부위원회의 구성원 수 및

(b) 구성원 임기는 부위원회를 구성한 윤리기준위원회가 정한다.]

54.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1)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일반적인 역할은—

- (a) 지역정부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의 행동 윤리를 제고하고, 유지하며,
- (b) 지역정부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들이 지역정부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일반적인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는—

- (a) 윤리규정 채택 또는 개정에 관해 관할당국에 조언하고,
- (b) 관할당국 윤리규정 운영을 감독하며,
- (c) 관할당국 윤리규정 관련 사안에 관해 관할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에게 조언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조정하거나 직접 교육시키는 구체적인 역할을 지닌다.

(3) 관할당국은 윤리기준위원회에게 적합하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역할을 윤리기준위원회가 이행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F23 (3A) 제51(5)(b)조에 의해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관할당국에 관하여, 제51(1)(b)항, 제51(2)(b)항, 제51(2)(c)항의 지역정부 윤리규정은 동 의무 규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4)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할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이행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5) 웨일즈의회는 (경찰당국을 제외한) 웨일즈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24(6).

(7) 웨일즈의회는 (경찰당국을 제외한) 웨일즈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55. F25 교구의회 윤리기준위원회

(1) 지역의회 윤리기준위원회는—

- (a) 지역의회가 관할당국인 교구 의회 및
- (b) 교구 의회 구성원에 대해, 제54(1)조, 제54(2)조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가 지역 의회 구성원 및 지역의회에 대해 지니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지닌다.

(2) 일원화된 카운티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는—

- (a) 카운티의회가 관할당국인 교구 의회 및
- (b) 교구 의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제54(1)조, 제52(2)조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가 카운티의회 구성원 및 카운티의회에 대해 지니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지닌다.

F26(3).

(4) 본 조에 의해 부여하는 [F27a 역할]을 이행하는 기관이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 또는 윤리기준위원회 중 어디인지 정하는데 있어,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는 동 의회가 관할기관인 교구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5) [F28 본 조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을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 부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 부위원회 구성원 수] 및 구성원 임기는 윤리기준위원회가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지역의회가 관할당국인 교구의회와 협의한 후 정한다.

[F29 (5A) 제5항은 (제54A조가 적용되는 바에 따라) 제53(6)(a)조 부령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6)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가 본 조에 의해 부여한 [F30 역할]을 이행하는 경우, 윤리기준위원회에는—

- (a)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가 관할당국인 교구의회 구성원이 1인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 (b) 윤리기준위원회 회의에서 교구의회 구성원, 또는 교구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안을 검토하는 경우 제a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1인 이상 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F31 (7)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가 본 조에 의

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부위원회에는—

- (a) 제53(4)(b)조에 해당하는 윤리기준위원회 구성원이 1인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 (b)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가 관할당국인 교구의회 구성원이 1인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 (c) 부위원회 회의에서 교구의회 구성원, 또는 교구의회에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는 경우, 제b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1인 이상 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 (8) F82 … 본 조 제6(a)항, 제7(a)항, 제 7(b)항에 해당하는 당사자 임명에 관해 제 53(6)(b)조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33(9).

F34(10).

(11) 본 편에 의해 관할당국(교구 의회) F35 윤리기준위원회가 이행할 수 있는 역할은 F35—

- (a) 교구 의회의 관할당국에 해당하는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 또는
- (b) 윤리기준위원회가 [F36 해당 역할을 지닌] 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부위원회가 이행한다.

F37...

[F38(11A) 관할당국(교구 의회) 윤리기준위원회에 관련하여 본 편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교구 의회의 관할당국에 해당하는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에 관련하여 이행할 수 있다.

(11B) 본 편 하기 조항들에서, 관할당국(교구 의회) 윤리기준위원회는 제11항, 제11(A)항에 의해 해석한다.]

(12)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는—

- (a) 교구가 지역의회 또는 카운티의회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경우, 공동교구의회가 아닌 교구의회에 대하여 관할당국에 해당하며,
- (b) (i) 공동교구의회의 해당 교구들이 관할지역 내 모두 소재하거나,

- (ii)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구의 지역정부 유권자들이 대부분 관할지역 내 있는 경우, 교구의회(공동교구의회)에 대하여 관할당국이 된다.
- (13) 본 조에서 “일원화된 카운티의회”는 지역의회가 없는 잉글랜드 카운티의회를 의미한다.

56. 지역사회 위원회 윤리기준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 (1) 웨일즈 카운티의회 윤리기준위원회는—
- (a) 카운티의회 관할지역에 소재한 지역사회의회 및
 - (b) 지역사회의회 구성원에 관련하여, 제 54(1)조, 제54(2)조에 의해 동 윤리기준위원회가 카운티의회 구성원 및 카운티의회에 대하여 지니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지닌다.
- (2) 카운티 자치구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는—
- (a) 카운티 자치구의회 관할구역 내 소재한 지역사회의회 및
 - (b) 지역사회의회 구성원에 관련하여, 제54(1)조, 제54(2)조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가 카운티 자치구의회 구성원 및 카운티 자치구의회에 대해 지니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지닌다.
- (3)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에 부여하는 모든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4) 본 조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을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 또는 윤리기준위원회가 이행하는지 정하는데 있어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는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의회와 협의한다.
- (5) 본 조에 의해 구성하는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제53(11)조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6) 제54조 제5항 및 제7항은 본 조에 의해 구성하는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에 관련하여, 동 조항들이 윤리기준위원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7) 본 편의 하기 조항들에 의해 관할당국(지역사회의회) 윤리기준위원회가 이행할 수 있는 역할, 또는 윤리기준위원회에 관련하여 이행할 수 있는 역할은—

- (a) 지역사회의회 소재 지역 내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의 윤리기준위원회, 또는
- (b) 본 조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가 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부위원회가 이행하거나, 부위원회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본 편 하기 조항에서 관할당국(지역사회의회) 윤리기준위원회에 관해 명시한 내역은 그에 따라 해석한다.

[F39 56A.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공동위원회

- (1)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할당국 2곳 이상—
 - (a) 관할당국의 공동위원회를 수립하며,
 - (b) 동 위원회의 관련 역할 수행을 조정하는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본 조에서 “관련 역할”은 본 편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 본 편의 역할, 또는 각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 관련 법률에 의해 부여하는 역할, 동 법률의 역할을 의미한다.
- (3) 부령에 의해 특하—
 - (a) 조정할 수 있는 역할, 조정할 수 없는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 (b) 하기 조항에 해당하는 조항, 하기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적용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i) 제53(6)조, 제54(4)조 부령 조항, 또는 동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
 - (ii) 제53(3)~(5)조, 제53(7)~(9)조, 제54(6)조, 제54A(1)조, 제54A(3)조, 제54A(6)조 조항.
 - (iii) 제55(4)~55(7)조 조항.
- (4)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을 공동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 편 조항, 윤리기준위원회 관련, 또는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관련 기타 법률을 본 조 부령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5) 본 조에서 “법률”은 승인되거나 제정된 법률 또는 하위 법률을 포함한다.
- (6) 본 조에서 잉글랜드 관할당국은 교구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2장. 조사 등: 잉글랜드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

F40 57.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

.....

[F41 서면 고발]

57A. 서면 고발: 주장할 권리 및 초기 조사

[F42(1) 당사자는 잉글랜드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이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준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서면 고발할 수 있다.

(2) 윤리기준위원회가 제1항에 의거하여 고발 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 (a) 고발 사항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하거나(제66조 참조),
- (b) 잉글랜드 윤리기준위원회에 회부하거나(제58조 참조),
- (c) 고발 사항에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3) 제1항 고발 사항이—

- (a) 해당 관할당국의 이전 구성원, 또는 이전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이 있거나,
- (b) 다른 잉글랜드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윤리기준위원회는 고발 사항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 회부하는 것보다 다른 관할당국에 감사관에 회부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른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한다.

(4) 윤리기준위원회가 고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윤리기준위원회는 결정 사항 및 결정 사유를 고발인에게 서면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제2~4항은 제57D조 지침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6)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 Board for England)는—

- (a) 제54(6)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조 및 제57B조 및 57C에서 규정한 역할을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가 이행하는데 있어 지침을 공표할 수 있고,
- (b) 본 조에 의한 동 위원회의 역할 이행과 관련하여 잉글랜드 관할당국 윤리기준의원에 지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57B.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 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하는 권리
[F43(1) 본 조는 고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제57A(2)조에 의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적용된다.

- (2) 고발인은 결정 내역을 검토하도록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 (a) 서면으로 요청 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 (b) 제57A(4)조에 의해 결정 사항을 통보를 한 후 30일 이후에는 요청 사항을 제출할 수 없다.
- (4) 윤리기준위원회가 제2항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
 - (a) 윤리기준위원회는 제57A(2)~(4)조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 (b)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내 제57A(2)(a)조, 제57A(2)(b)조, 또는 제57A(3)조에 의해 사안을 회부하거나, 제57A(2)(c)조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
- (5) 제4항에 의해 고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제57A(2)조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본 조는 해당 판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 (6) 제4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57D조 지시 사항을 준수한다.]

57C. 고발 대상에게 전달하는 정보

- [F44 (1) 제57A조에 의거하여 고발인이 윤리기준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 제(2)~(4)항이 적용된다.
- (2) 윤리기준위원회는 제7항 부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발된 당사자(“P”)에게 고발

내역의 서면 요약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윤리기준위원회가 고발 사항에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제57A(2)조에 의해 결정한 경우, 결정 사항 및 결정 사유에 관해 고발된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윤리기준위원회가 고발 사항에 관하여 제57조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러한 요청에 관해 고발된 당사자(P)에게 서면 통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5) 제3항에서, 제57A(2)조에 의한 판결은 제57B(4)조, 제58(3)조에 따른 제57A(2)조 판결을 포함한다.
- (6) 제2~4항은 제57D조에 의한 지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한다.
- (7)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부령에서 규정한 상황에서, 윤리기준위원회가 고발 사항을 접수하는 시점에 제2항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 (b) 부령에 의해 상기 의무가 당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다른 시점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F45 57D.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이행 유예 권한

F46 58. 윤리기준이사회에 회부하는 고발 내역

윤리기준공무원의 역할

F47 59. 윤리기준공무원의 역할

[F48 윤리기준공무원의] 조사 실시

F49 60. 조사 실시

.....

F50 61. 조사 절차

.....

F51 62. 조사: 추가 조항

.....

F52 63. 정보공개 제한

.....

[F53 윤리기준공무원의] 보고 등

F54 64. 보고 등

.....

F55 65. 중간 보고

.....

F56 65A. 감사관에 의한 윤리기준공무원 보고서 공개

.....

감사관에 회부하는 사안

66. 감사관에 회부하는 사안

(1) 국무장관은 [F57 제57A조, 제60(2)조, 제60(3)조, 제64(2)조, 또는 제 64(4)조]에 의해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되는 사안 처리 방식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서는—

(a) 관할당국 감사관이 본인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조사를 하며,

- (b) 관할당국 감사관이 본인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권고하고,
- (c) 관할당국 감사관이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게 전달한 보고, 권고 사항(윤리기준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관련 조항 포함)을 동 위원회가 검토하며,
- (d)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가 보고 또는 권고 사항 검토 이후 부령에 규정된 조치 (보고, 권고 사항의 대상인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조치 포함)를 취하도록, 또는 이에 관련하여 규정하며,
- (e) 그러한 보고, 권고 사항, 조치 홍보에 관해 규정하고,

[F58(f)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할당국 감사관이 제57A조에 의해 본인에게 회부된 사안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3) 제2(a)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 (a)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 (b) 조사 대상인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 등)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F59 (3A) 제2(a)항, 제3항에 의해 제정하는 규정에 의해 제62조 및 제63조(제62(10)조 및 제63(4)조 포함), 또는 제67(1)조, 제67(1A)조, 제67(3)~(5)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동 조항들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적용할 수 있다.

(3B) 제2(b)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 (a) 중간 보고서,
- (b) 보고서 공개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4) 제2(d)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에 의해 —

- (a)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가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을 문책하고,
- (b) 특정 기간 동안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c)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이 본인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항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규정한다.

[F60(4A) 감사관이 사안을 당사자에게 돌려보내는 경우에 관하여, 제2(f)항에 의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제57A조, 또는 제57C조를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5) [F61 제2~4A항 또는 제66A조] 조항에 의해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F62A 제57A조, 제60(2)조, 제60(3)조, 제64(2)조, 또는 제62(4)조]에 의해 관할 당국 감사관에게 사안을 회부한 당사자는 해당 사안 처리 방식에 관해 감사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F63 66A. [F64 제1차 조사위원회]에의 부당 행위 회부

(1) 제66조의 부령에 의해, 제(2)(d)항에 의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또한—

(a) 당사자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윤리기준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판결하도록 윤리기준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F65 1차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F66(b)

(c) 부령에 의해 허용하는 유형의 조치 중 당사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F67 제1차 조사위원회]에서 판결하고, [F68 조사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규정해야 한다.

F69(d).

F69(e).

(2) 제1(c)항에 의해 허용할 수 있는 유형의 조치는 [F70 제1차 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제78A(4)~(6)조의 부령에 의해 허용할 수 있는 유형의 조치를 포함한다.]

[F71 관할당국이 윤리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정보]

F72 66B. 정기적인 보고

.....

F73 66C. 정보 요청

.....

[F74 민원처리 공무원과의 협의]

67. [F75 민원처리 공무원]과의 협의

[F76(1) 제59조에 의해 조사를 하는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조사 사안이 M7 1974년 지역정부법 제III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윤리기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관할지역 위원과 조사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III편에 의한 고충 해결 개시 절차에 관하여, 해당 조사의 근거가 된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윤리기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를 통보할 수 있다.

[F77 (1A) 제59조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는 중 언제라도, 조사 대상 사안이 2005년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담당 공무원법((Wales) Public Services Ombudsman Act) 제2편에 의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윤리기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과 조사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III편에 의한 고충 해결 개시 절차에 관하여, 해당 조사의 근거가 된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윤리기준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를 통보할 수 있다.]

(2) [F78 1974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는 중 언제라도 [F79 조사 대상 사안]이 본 법 제59조 또는 [F80 본 법 제66조 부령]에 의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지역위원(Local Commissioner)이 판단하는 경우 지역위원은 조사에 관련하여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 또는 [F81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F82 해당 사안에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F83 제57A조]에 의한 고발 절차에 관해 민원 제기자에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위원이 판단하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F84 (2A) 2005년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Act) 제2편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는 중 언제라도, 민원 사항이 본 법 제59조 [F85 또는 본 법 제66조 부령에 의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조사에 관련하여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 또는 [F86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F87 57A]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해 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F88 제1~2A항]에 의해 협의를 하는 경우,

(a) 조사 실시 및

(b) 조사 관련 보고서 양식, 내역, 발간 등 조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4) M8 1974년 지역정부법 제32(2)조, [F89 2005년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법(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Act)] 제26조, 또는 본 법 제63(1)조 조항은 본 조에 의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 공개하는 정보에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동 조에서 “지역위원”(Local Commissioner)은 M9 1974년 지역정부법 제3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3장. 조사 등: 웨일즈

[F90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

68. [F91 웨일즈 민원처리 공무원]

(1) [F92 웨일즈 민원처리 공무원]은 본 편에 의해 동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역할 및 본 항에 의해 웨일즈의회가 제정하는 부령에 의해 동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역할을 지니게 된다.

(2) [F93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은 —

- (a) 관할당국 구성원 및 위원회 구성원의 품행에 관계된 사안 대하여 웨일즈 관할당국들(경찰당국 제외)에 지침을 전달하고,
- (b) 감사관이 지녀야 하는 자격 또는 경력에 관하여, 웨일즈 관할당국(경찰당국 제외)에 지침을 내릴 수 있으며,
- (c) 그러한 지침 사항이 공표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F94 (3) 부령에 명시한 2005년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공무원법(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Act) 조항 목적상, 웨일즈의회는 그러한 부령에 의해—

- (a) 동 법규에 의한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의 역할이 본 편에 의한 민원처리 공무원의 역할을 포함하며,
- (b) 동 법규에 따른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의 비용이 본 편의 민원처리 공무원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2005년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공무원법 F96 조항을 개정 또는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F96(5).

조사

69. [F97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에 의한 조사]

(1) [F98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은—

- (a) 웨일즈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이 관할당국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인이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서면 고발한 사건들 및
 - (b) 제a호 조사 결과,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관할당국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준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판단하는 다른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다.
- (2) 제1(a)항의 서면 고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F99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동 담당자는 결정 사항 및 결정 사유에 관해 고발인에게 서면 통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본 조에 의한 조사는 제4항 처분 중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4)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 (a) 관할당국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고 확인하거나,
 - (b) 조사 대상 사안에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거나,
 - (c) 조사 대상 사안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하거나,
 - (d) 제76(1)조에서 규정한 조사위원회 심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 대상 사안을 웨일즈 심판위원회 (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에게 회부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 (5)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웨일즈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제4(c)항에서,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은 해당 관할당국, 또는 다른 관할당국의 감사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따라서 [F100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Public Services Ombudsman)]가 제4(c)항에 의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느 감사관에 사안을 회부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70. 조사: 추가 조항

- (1) 웨일즈의회는 제69조 조사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서류·정보 입수 또는 공개 등에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서는—
- (a) 제60~63조 조항, 또는
- [F101 (b) 2005년 (웨일즈)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법(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Act) 제13~15조, 제25~27조, 제32조 조항을 적용하거나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다시 명시한다.
- (3) [F102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은 제 69조에 의한 조사를 완료하기 전, 언제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4) [F103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이 제 69조에 의한 조사 완료 이전에 이를 중단하는 경우, 조사 대상 사안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 (5) [F103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은 조사 대상 사안을 다른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하는 것이 제4항에 명시한 바대로 해당 관할당국에 회부하는 것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다른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할 수 있다.

보고 등

71. 보고 등

- (1) 특정 사건에 관련하여 제69(4)(a)조, 제69(4)(b)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F104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이 판단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 (a) 조사 결과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 (b) 해당 관할당국 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보고서 요약 내역을 전달할 수 있으며,
- (c) 보고서 사본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 (d)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 특정 사건에 관련하여 제69(4)(c)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F104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Public Services Ombudsman)]이 판단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 (a)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 (b) 제4(b)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 사안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해야 하며,
 - (c) 보고서 사본을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 및 윤리기준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 (3) 특정 사건에 관련하여 제69(4)(d)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F104 웨일즈 민원처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 (a)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 (b) 제76(1)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안에 관해 심리하도록 웨일즈 심판위원회 (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에게 사안을 회부하며,
 - (c) 해당 관할당국 감사관 및 웨일즈 심판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4) 특정인이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웨일즈 내 다른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 (a) 제1(b)항, 제1(c)항, 제1(d)항, 제2(c)항, 제3(c)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은 다른 관할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 (b) [F105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제69(4)(c)조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 공무원은 사안을 해당 관할당국 또는 다른 관할당국 감사관에 회부해야 한다.
- (5) 본 조의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관할당국에 소속된 구성원들, 위원회 구성원들(또는 이전 구성원들, 이전 위원회 구성원들)에 관련하여 제69조에 의한 조사 내역을1건 이상 다룰 수 있다.
- (6) [F106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은 —
 - (a) 제69조 조사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 (b) 조사의 근거가 된 고발을 한 고발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72. 중간 보고

- (1) 제69조 조사를 완료하기 전, 조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공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F107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본 조의 중간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관할당국의 구성원들, 위원회 구성원들(또는 이전 구성원들, 이전 위원회 구성원들)에 관련하여 제69조 조사 내역을 1건 이상 다룰 수 있다.
- (3)
 - (a) 중간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 (b)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제79(4)(b)조에 의한 자격 박탈을 초래할 수준이거나,
 - (c) 당사자에게 즉시 자격 정지, 또는 자격 부분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연한 증거가 있다고 [F107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당사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임기 잔여기간 동안 당사자의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일부 정지하도록 중간보고서에서 권고할 수 있다.
- (4) [F107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제3항 권고 내역을 수록한 중간보고서를 본 조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 제76(2)조에 명시된 조사위원회가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웨일즈 심판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에게 사안을 회부해야 한다.
- (5) 본 조의 보고서 사본은—
 - (a)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 (b) 해당 관할당국의 감사관 및
 - (c) 웨일즈 심판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 (6)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웨일즈 내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 (a) 제3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에 대한 2차 회부는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며,
 - (b) 제5(b)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에 대한 회부는 다른 관할당국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감사관에 대한 사안 회부

73. 감사관에게 회부된 사안

- (1) 웨일즈의회는 [F108 제70(4)조, 제70(5)조, 제71(2)조, 제71(4)조]에 의해 해당 관할당국의 감사관에게 회부된 사안 처리 방식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제1항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 (a) 관할당국 감사관이 감사관에게 직접 회부된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b) 관할당국 감사관이 감사관에게 직접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관할당국 윤리기준 위원회에 보고,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 (c) 관할당국 감사관이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게 제출한 보고·권고 사항(윤리기준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 관련 조항 포함)을 동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 (d)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가 보고·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 보고·권고의 대상이 되는 관할당국이 부령에 의한 조치(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규정하며,
 - (e) 그러한 보고, 권고 사항 또는 조치의 공표에 관해 규정한다.
- (3) 제2(a)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 (a) 관할당국 감사관이 감사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 (b) 조사 대상인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권한 등)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규정한다.
- (4) 제2(d)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 (a)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가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을 문책하고,
 - (b) 특정 기간 동안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 (c)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항소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규정한다.
- (5) 제2항, 제3항, 제4항 조항은 제1항 권한의 일반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제1항을 웨일즈 경찰당국에 관하여 적용하는 경우, 국무장관을 웨일즈의회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효력을 지닌다.
- (7) [F109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제[F110 제70(4)조, 제70(5)조, 제71(2)조, 제71(4)조]에 의해 사안을 관할당국 감사관에게 회부하는 경우, 동 공무원은 사안 처리 방식에 관하여 감사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74. 명예훼손법

명예훼손법 목적상, 본 편에 의한 [F111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의 역할 이행과 관련이 있는 동 공무원의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은 일체 기밀로 처리한다.

제4장. 심리

[F112 웨일즈 심판위원회]

75. [F113 웨일즈 심판위원회]

F114 (1).

(2) 웨일즈 조사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 Panel Dyfarnu Cymru)라고 칭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F115 (3).

F115 (4).

(5) 웨일즈 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은 웨일즈의회가 선정할 수 있는 요건에 의해, 웨일즈의 회가 임명한다.

(6) 웨일즈의회는—

(a) 웨일즈 심판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을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b) 구성원 중 1인을 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F116(7).

(8) 웨일즈 심판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웨일즈의회가 판단하는 구성원은 웨일즈의회가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F117(9).

(10) 웨일즈 심판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부의장을 임명한 경우)은—

(a) 위원회 구성원을 교육하며,

(b) 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조사위원회의 사건 심리 방식에 관련하여 지침을 하달할 책임이 있다.

F118(11).

사건조사위원회 및 임시사건조사위원회

76. 사건조사위원회 및 임시사건조사위원회

- (1) F120 제71(3)조에 의해 [F119 웨일즈 심판위원회] 의장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한 심리는 3인 이상의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본 편에서 사건조사위원회라고 칭함)에 의해 실시한다.
- (2) F122 제72(4)조에 의해 [F121 웨일즈 심판위원회] 의장에게 회부된 사안에 관한 심리는 3인 이상의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본 편에서 임시사건조사위원회라고 칭함)에 의해 실시한다.
- (3) [F123 웨일즈 심판위원회 의장](의장이 없는 경우 부의장)은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한다.
- (4) [F124 웨일즈 중재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사건조사위원회는 F125 제71(3)조에 의해 위원회 의장에게 회부된 사건 2건 이상에 대해 단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5) [F126 웨일즈 중재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임시사건조사위원회는 F127 제72(4)조에 의해 위원회 의장에게 회부된 사건 2건 이상에 대해 단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6) [F128 웨일즈 심판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7) [F129 웨일즈 심판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공무원이었거나, 관할당국 위원회, 부위원회, 공동위원회, 공동부위원회 구성원이었던 적이 있는 경우, 절대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또는 이전 구성원, 이전 위원회 구성원)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 심리하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차출된 사건조사위원회, 임시사건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8)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하는 사안,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F130 웨일즈 심판위원회] 구성원은—
 - (a)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원회 의장 또는 부위원장에게 공개해야 하고,
 - (b) 해당 사안에 관해 심리를 실시하는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9) [F131 웨일즈 심판위원회] 부의장이 없는 경우, 제3항, 제8항에서 부의장은 F132

웨일즈의회가 지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133(9A).

(10) F134 제69조 조사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 대해 조심을 실시하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구성원은 조사 완료 후 동일인에 대해 추후 심리를 실시하는 사건조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F135(11).

F136(12).

(13) 웨일즈의회는 웨일즈 심판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지침을 내릴 수 있다.

(14) 웨일즈의회는 웨일즈 심판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에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F137(15).

심리

77. 심리

(1)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 (a) 변호사의 변호를 받거나,
- (b) 그 밖에 본인이 원하는 자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F138(2).

F138(3).

(4) 웨일즈의회는 웨일즈 중재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의 심리에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부령에 의해 제정할 수 있다.

(5) 웨일즈 심판위원회(Adjudication Panel for Wales) 의장은 웨일즈의회와 협의한 후, 심판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조사위원회가 따라야 하는 관행 및 절차에 관해 지시할

수 있다.

(6) 본 조에 의한 부령에 의해 특하—

- (a) 증거 제시 및 문서 제출을 위해 특정인이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선서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 (b) 추가 상세 내역을 추라고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 (c) 증인들을 대리하여 심리에 출석하여 증언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에 관한 규정 등 심리 절차를 규정하고,
- (d) 비용, 경비 지급 판결(이자 지급 및 지급 판결 집행에 관한 조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 (e) 기타 비용, 경비를 부과 또는 정산하도록 하고(카운티법원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f) 조사위원회 판결 및 지급 판결 등록, 증명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7) 제6(a)항, 제6(b)항에 의해 규정하는 요건을 적절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거나, F139 [본 법에 의한조사위원회 절차규칙(Tribunal Procedure Rules) 해당 요건을] 1차 조사위원회에서 준수하지 못하는 자는 유죄이며, 약식 유죄 판결에 의해 범죄 표준 3단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8) 본 조에서 문서는 컴퓨터 저장 정보 또는 기타 전자 유형으로 저장된 정보를 포함한다.

78. [F140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심리 결과

(1) [F141 중간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사안을 심리하는데 있어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 (a) 제65(3)조, 제72(3)조 권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 (b)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당사자의 임기 잔여 기간(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동안 [F142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F143(2) [F144 해당 조사위원회]가 제1(a)항에 명시한 바대로 심리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심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제1(b)항에 명시한 바대로 [F145 해당 조사위원회]가 심리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당사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음을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하며, 판결 내역에 관해 통보한다.

(3A) 제3항에 의해 통보할 경우 제3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당사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리는 효력을 지닌다.]

F146(4).

(5) 본 조에 의한 임시사건 조사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의해, [F147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이 중간조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제69조 조사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련하여 제71조 보고서, 또는 제72조 추가 중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6) 동 조에 의한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조치는 [F148 제78A조, 제79조에 의해 당사자에 관련하여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 사항을 전달한 후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7) 본 조에 의한 통보 내역 사본은—

- (a) 통보 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 및
- (b) 해당 관할당국의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F149 (8)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지만,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 (a) 제1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은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의 의미하며,
- (b) 제2항, 제7(b)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은 다른 관할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c)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하는 제3항 의무는—
 - (i)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하고,
 - (ii) 통보 내역 사본을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의무로 간주한다.

(8A) 제8항은—

- (a) 해당 관할당국이 잉글랜드에 소재하며, 다른 관할당국도 잉글랜드 내 소재하거나,
- (b) 해당 관할당국이 웨일즈에 소재하고, 다른 관할당국도 웨일즈에 위치하지 않은 한, 적용되지 않는다.]

(9) [F150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상황에 따라)] 임시사건조사위원회는 제59조, 제69조에 의한 조사 실시의 근거가 된 고발을 한 고발인에게 본 조에 따른 심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151 (9A) 1차 조사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본 조에 의해 특정인이 자격 정지, 일부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집행법 제9조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에 의해 심리 결과가 유보되지 않은 한)–

- (a)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에 관해, 또는
- (b)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기간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9B) 법리(법리에 관해서는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제11조 참조) 심리에 관하여 제9A항에 의해 항소할 수는 없다.

(9C)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상급법원이 항소를 허용한 경우에만 제 9A조에 의해 항소할 수 있다.

(9D) 상급법원이 제9A조에 의해 항소 심리를 하는 경우,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제12(2)~12(4)조(상급법원의 항소 절차)가 적용된다.]

(10) [F152 임시사건조사위원회 심리 결과, 특정인이 본 조에 의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 (a)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처분에 관하여, 또는
- (b)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기간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F153 (11) 고등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제10항에 의해 항소할 수 없다.]

[F154 78A. F155 1차 조사위원회]의 심리 결과

F156(1).

- (2) [F157 1차 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해 특정 사안에 관해 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3)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F158조사위원회]가 판결한 경우, 1차 조사위원회는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심리 결과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 (4)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F159 조사위원회]가 심리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 (a) 당사자에 대해 본 항의 목적상 국무장관 부령에 의해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 (b)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5) 제4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특하—
 - (a) 조사위원회가 당사자를 문책하고,
 - (b) 특정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 (c)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 또는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선출되는 경우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6)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지만, 잉글랜드 내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인 자에 관련하여, 제5(b)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은 다른 관할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7) 당사자가 관할당국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F160 1차 조사위원회]가 심리하고—
 - (a) 당사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 (b) 당사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 (c) 당사자를 대상으로 정직, 일부 정직, 자격 박탈 이외의 조치를 취하거나
 - (d)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동 위원회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국무장관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8) 제7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 (a) 통보 내역을 규정하고,
- (b) 통보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명시하며,
- (c)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아니지만, 잉글랜드 내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부령 조항을 규정한 바에 따라 개정하여 효력을 지니도록 할 수 있다.

78B. [F161 제78A조:] 추가 조항

[F162(1) 제78A(3)조에 의해, 또는 제78A(7)조 부령에 의해 전달하는 통지서 사본은—

- (a)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에 전달하고,
 - (b) 통보 사항과 관련이 있는 심리 결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 (c) 관할당국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신문 1종 이상에 공표해야 한다.
- (2)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잉글랜드 내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관할당국에 회부하는 것은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제78A(3)조에 의한 2차 회부.
 - (b) 상기 제1(c)항에 의한 신문 게재.
- (3) [F163 1차 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하여 특정 사안에 관해 심리한 경우] 심리의 근거가 되는 고발을 한 고발인에게 심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F164 1차 조사위원회가 제78A조에 의해 심리/판결한 경우, 당사자는 [F165 상급 조사위원회]의 심리 결과, 또는 당사자와 관련된 제78A조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기타 심리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F166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제9조에 의해 심리 결과를 무효화한 경우는 예외로 함).
- [F167 (5) 제4항에 의해 항소하는 경우, 법리(법리에 관해서는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집행법 제11조(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참조) 심리를 위해

서는 항소할 수 없다.

- (6) 당사자가 청원하여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상급법원이 항소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4항에 의해 항소할 수 있다.
- (7) 상급법원이 제4항에 의해 항소 사항을 심리하는 경우, 2007년 조사위원회 및 법원 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제12(2)~(4)항(상급법원에 대한 항소 절차)가 적용된다.]]

79. [F168 사건조사위원회 심리 결과: 웨일즈]

[F169 (A1) 본 조에서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는 웨일즈 심판위원회로부터 차출한 사건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

- (1) 특정 사안에 관해 심리하는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 (2)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한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심리 결과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 (3) 특정인이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하는 경우,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해당자가 제4항에 의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한다.
- (4) 해당자는—
 - (a) 해당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거나,
 - (b) 해당 관할당국, 또는 다른 관할당국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선출 등 방식에 의해)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 (5)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제4(a)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가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임기 잔여 기간)을 정한다.

- (6)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제4(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경우, 당사자의 자격 박탈 기간(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정한다.
- (7)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가 자격 정지, 자격 박탈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한 경우 동 위원회는—
- (a) 해당자가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 (b) 준수하지 않은 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8)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4(a)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한 경우, 동 위원회는—
- (a) 해당자가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 (b) 준수하지 않은 내역을 명시하며,
 - (c) 당사자가 해당 기간 [F171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하며, 심판위원회의 심리 내역에 관해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한다.
- [F172(9) 제8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제8(c)항에 의하여 해당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리는 효력을 지닌다.]
- (10)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4(b)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심리한 경우,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는—
- (a) 해당자가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 (b) 준수하지 않은 내역을 명시하고,
 - (c) 조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해당 관할당국, 또는 다른 관할당국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선출 등 방식에 의해) 구성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설명하여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11) [F172(9) 제10항에 의해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를 한 경우, 제10(c)항에 규정된 바대로 당사자에게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이 발효한다.]

(12) 본 조의 통지서 사본은—

[F173(a)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 및

- (b) 통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심리 결과의 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 (c) 해당 관할당국의 지역 내에서 발간되는 신문 1종 이상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

(13) 당사자가 더 이상 해당 관할당국의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F174 웨일즈] 내 다른 관할당국의 구성원인 경우,

- (a) 제2항, 제7항, 제10항에 의한 통지서 사본은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게도 전달해야 하며,

[F175 (b) 제4(a)항의 관할당국은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 (c) 제8항에 의해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 (i) 다른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에 통보하며,
- (ii) 통지서 사본을 해당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사본을 전달하는 의무로 간주하다.

- (d) 제12(c)항에서 해당 관할당국은 그러한 다른 관할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는 심리의 근거가 된 고발을 한 고발인에게 본 조에 의한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해당자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F170 웨일즈 사건조사위원회]가 본 조에 의해 심리한 경우 해당자는 해당 심리 결과, 또는 해당자와 관련이 있는, 본 조에 의한 다른 심리 결과를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F176 (16) 상급법원의 승인 없이 제15조에 의해 항소할 수 없다.]

80. [F177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사건조사위원회의 권고

(1) [F178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사건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해 특정 사안에 관해 심리한 경우] —

- (a) 해당 관할당국의 권한 이행

- (b) 관할당국의 윤리규정, 또는
 - (c)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 (2) [F179 해당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동 위원회의 권고 사항 사본을 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3) 제1항에 의한 권고 사항을 전달 받은 관할당국은 권고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권고사항 수령 후 3개월 내, [F180 해당자] [F180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권고사항에 따라 취한 조치, 제안한 조치의 세부 내역을 전달한다.
- (4) 제3항 보고서를 검토하는 관할당국의 역할은 해당 관할당국의 윤리기준위원회 또는 해당 관할당국에 의해서만 이행할 수 있다(따라서 M10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관할당국의 경우, 본 역할은 동 조항이 적용되는 역할이 아니다.)
- (5) 권고 사항에 대해 관할당국이 취한 조치, 제안한 조치에 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F181 해당자] [F181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역 및 관할당국이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해 상세 내역을 발간하도록 [F181 해당자] [F181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가 규정할 수 있다.
- (6) [F182 본 조에서 “해당자”는—
- (a) 해당 관할당국이 잉글랜드 소재인 경우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
 - (b) [F183해당 관할당국이 웨일즈 소재인 경우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을 의미한다.]

제5장. 추가 조항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 공개 및 등록

81.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 공개 및 등록

- (1) 각 관할당국의 감사관은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등기한 등기부를 작성·관리한다.
- (2) 각 관할당국에게 적용되는 표본 윤리규정의 의무 규정("의무 규정")에 의해, 각 관할당국 당사자 및 위원회 구성원이 의무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신의 재무관계 등 이해관계를 제1항에 의해 관리하는 지역정부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규정한다.
- (3) 의무규정에서는 또한—
 - (a) 제2항 의무규정에 명시된 이해관계를 지닌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관할당국 사업에 참여하기 전, 그러한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 (b) 제a호에 의해 공개된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관할구역 사업에 대한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 (4)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의무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제5항에 의해 제정하는 부령에 의해 관할당국 윤리기준위원회가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이 그에 따라 행동한 경우 동 행위는 관할당국 윤리규정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국무장관은 제4항에 의해 윤리기준위원회가 의무 면제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6) 관할당국은 본 조에 의해 감사관이 관리하는 현행 등기부 사본을 관할당국 청사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적절한 시간에 향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7) 감사관이 본 조에 의해 이해관계 등기부를 개설한 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관할당국은—
 - (a) (i) 이해관계 등기부 사본이 관할당국 청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적절한 시간에 향시 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 (ii) 관할당국 청사 주소를 명시한 공고를 지역 내 발간신문 1종 이상에 게재한다.
F184(b).
- [F185(c) 웨일즈 관할당국의 경우 등기부 사본이 비치되어 있다고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8) 웨일즈 관할당국(경찰당국 제외) 윤리기준위원회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5항은 국무장관을 웨일즈의회로 대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지역정부 직원 윤리규정

82. 지역정부 직원 윤리규정

- (1) 국무장관은 잉글랜드 관할당국 및 웨일즈 경찰당국의 관련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 (2) 웨일즈의회는 웨일즈 관할당국(경찰당국 제외)의 관련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 (3) 윤리규정을 공표하는 제1항, 제2항 권한은—
 - (a) (본 법 제11편의 의미 내에서의) 의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규정을 공표하고,
 - (b) 공표된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4)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
 - (a)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잉글랜드 관할당국 대표들 및 직원 대표들,
 - (b)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및
 - (c) 잉글랜드 지역행정 위원회(Commission for Local Administration)와 협의해야 한다.
- (5) 웨일즈 경찰당국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은—
 - (a) 국무장관이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웨일즈 경찰당국 대표 및 직원 대표들,
[F186(aa) 웨일즈 감사원장(Auditor General for Wales)],
 - (b) [F187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 및
 - (c) 웨일즈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6)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웨일즈의회는—
 - (a) 웨일즈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웨일즈 관할당국 대표 및 직원 대표들,
 - (b) [F188 웨일즈 감사원장(Auditor General)],
 - (c) [F189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 (7) 관할당국의 모든 자격을 갖춘 직원(본 조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임명되었거나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의 임명요건 또는 고용조건은 본 조에 의한 관련 현행 규정을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 (8) 본 조에서 관할당국에 관련하여, “자격을 갖춘 직원”은 본 항에 의한 규정에 명시된 유형의 직원이 아닌 관할당국 직원을 의미한다.
- (9) 제8항 부령을 제정하는 권한은—
 - (a) 잉글랜드에 관련해서는 국무장관,
 - (b) 웨일즈에 관련해서는 웨일즈의회가 이행한다.

[F190 감사관의 역할 위임]

82A. 감사관: 제3편에 의한 역할 위임

- (1) 본 조는 [F191 제57A조, 제60(2)조 또는 제60(3)조, 제64(2) 또는 제64(4)조, 제70(4)조, 제70(5)조, 제71(2) 또는 제 71(4)조에 의해] 감사관에게 회부된 사안들에 관련된, 관할당국 감사관의 역할에 적용된다.
- (2) 특정 사건에서 본 조가 적용되는 역할을 직접 이행하면 안 된다고 감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동 사건에서 그러한 역할은 동 목적을 위해 감사관이 임명하는 자가 직접 이행해야 한다.
- (3)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5(7)조(감사관이 부재 중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역할을 대행하는 감사관 직원 임명)에 의거하여, 특정 사건에 대하여—
 - (a) 본 조가 적용되는 역할이며,
 - (b) 감사관이 부재 중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어 본 항 이외의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이행할 역할을 감사관이 직접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이 부재 중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어 직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동 목적으로 임명된 권한 대행이 이를 이행한다.

- (4) 본 조가 적용되는 역할을 제2항, 제3항에 의해 지정하는 자가 이행하고, 해당자가 관할당국 공무원인 경우, 역할 수행을 위해 충분할 것이라고 감사관이 판단하는 직원, 숙박 등을 관할당국은 지원해야 한다.
- (5) 본 조가 적용되는 역할을 제2항, 제3항에 의해 지정하는 해당자가 이행하며, 해당자가 관할당국의 공무원이 아닌 경우, 관할당국은—
- (a) 역할 이행에 관련하여 해당자에게 적합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 (b) 해당자가 역할을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한 적절한 비용을 변제하며(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변제함),
 - (c) 해당자가 역할을 이행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원, 시설 등을 지원한다.]

조항 해석

83. 제3편 조항 해석

(1) 본 편에서—

“감사위원회”는 잉글랜드 지역정부 감사위원회 및 국가보건서비스를 의미한다. F192.

“사건조사위원회”는 제76(1)조의 의미를 지닌다.

“윤리규정”은 제51조의 윤리규정을 의미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제49(7)조의 의미를 지닌다.

“직선시장” 및 “집행부 선출 구성원”은 제39(1)조, 제39(4)조의 의미를 지닌다.

“윤리기준 공무원”은 제57(5)(a)상의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는 제11조에 의해 해석한다.

“집행부 체계”는 제10조에서 부여한 의미를 지닌다.

“집행부 대표”는 [F193 제11(2A)(a)조 또는 제11(3)(a)조]의 의미를 지닌다.

“임시사건조사위원회”는 제76(2)조의 의미를 지닌다.

F194...

“표준 윤리규정”은 제50(1)조, 제50(2)조에 의해 해석한다.

“경찰당국은 M11 1996년 경찰법(Police Act) 제3조에 의해 설립된 경찰당을 의미한다.

F195...

“관할당국”은 제49(6)조에서의 의미를 지닌다.

- (2) 본 편에서, 본 법 제III편이 적용되는 관할당국에 관련하여 관할당국 위원회는 해당 당국 집행부 위원회를 의미한다.
- (3) 본 편에서, 본 법 제III편이 적용되는 관할당국에 관련하여 관할당국 구성원은 해당 당국의 직선시장 또는 집행부 선출 구성원을 의미한다.
- (4) 본 편에서, 런던광역시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에 관련하여 관할당국 구성원은 런던 시장 또는 런던의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 (5) 본 편에서, 관할당국의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부위원회는 관할당국의 이해관계가 대변되는 공동위원회, 또는 동 공동위원회의 부위원회를 의미한다.
- (6) 본 편에서, 관할당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제51(5)(b)항에 의해 관할당국 구성원, 위원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7) 본 편에서, 관할당국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구성원 또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특정 역할을 이행하거나, 특정 책무를 지니는 것에 관해서도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8) 제7항에서, 본 법 제III편이 적용되는 관할당국 구성원으로서의 특정 역할, 특정 책무는 관할당국 집행부 구성원으로서의 특정 역할, 특정 책무를 포함한다.
- (9) 본 편에 의해 관할당국 구성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관할당국 위원회, 부위원회, 공동위원회, 공동부위원회 구성원 자격 정지 처분도 받는다. 다만, 본 편에 의해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10) 본 법 제III편이 적용되는 관할당국 구성원이 본 편에 의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

- 우, 해당자가 관할당국 집행부 구성원이면 집행부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지만,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본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11) 본 편에 의해 관할당국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는 자격,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 (a) 관할당국 위원회, 부위원회, 공동위원회, 공동부위원회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구성원이 되는 자격도 박탈당하며,
 - (b) 본 법 제2편이 관할당국에 적용되는 경우, 관할당국 집행부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거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 (12) 교구의회가 관할당국인 경우, 관할당국 감사관이 이행하거나, 관할당국 감사관에 대하여 이행하는 역할은 의회교구에 대하여 책임 당국인 지역의회 또는 일원화된 카운티의회 감사관이 이행하거나, 동 감사관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본 편 조항에서 관할당국(교구의회) 감사관은 그에 따라 의미를 해석한다.
- (13) 지역사회의회가 관할당국인 경우, 관할당국 감사관이 이행하거나, 관할당국 감사관에 관하여 이행하는 역할은 지역사회의회 소재 지역의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회 감사관이 이행하거나 동 감사관에 대하여 이행할 수 있고, 본 편 조항에서 관할당국(지역사회의회) 감사관은 그에 따라 의미를 해석한다.
- (14) 본 법 제2편이 적용되는, 본 편에 의해 관할당국에 부여하는 역할은 집행부 체계하에서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5) 본 편에 의해 런던광역시장에게 부여하는 역할은 런던광역시장 및 런던의회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 (16) 제55조 제12항, 제13항은 제55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12항 목적상 적용된다.

제4편. 선거

84. 제4편 “지역정부”, “주요 의회”의 의미

(1) 잉글랜드에 관련하여—

“지역정부”는 주요 의회 또는 교구의회를 의미한다.

“주요 의회”는 카운티의회, 지역의회, 또는 런던 자치구의회를 의미한다.

(2) 웨일즈에 관련하여—

“지역정부”는 주요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회를 의미한다.

“주요 의회”는 카운티의회 또는 지역 자치구의회를 의미한다.

(3) 본 조는 본 편 목적상 적용된다.

85. 선거 실시 방안

(1) 본 편의 목적상, 주요의회 일반의원선거 체계의 3가지 방안은 본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첫 번째 방안은—

(a) 의원 임기가 4년이고,

(b) 선거를 특정 연도에 실시하며, 그 이후 매년 실시하지만, 매4년마다에는 실시하지 않고,

(c) 각 선거 실시연도에 의원을 전원 선출하며,

(d) 의원들이 동시에 퇴임하는 체계다.

(3) 두 번째 방안은—

(a) 의원 임기가 4년이고,

(b) 선거를 특정 연도에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실시하며,

(c) 각 선거 실시연도에 의원 2분의 1(또는 유사한 비율)을 선출하고,

(d) 선거 실시연도에 의원의 2분의 1(또는 유사한 비율)이 퇴임하는 체계다.

(4) 세 번째 방안은—

(a) 의원 임기가 4년이고,

- (b) 선거를 특정 연도에 실시하고, 그 이후 매년 실시하지만, 이후 매3년마다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 (c) 각 선거 연도에 의원의 3분의 1(또는 이와 유사한 비율)을 선출하고,
- (d) 각 선거연도에 의원의 3분의 1(또는 이와 유사한 비율)이 퇴임하는 체계다.

86. 선거체계 규정 권한

[F1(A1) 국무장관은 잉글랜드의 특정 의회 일반의원선거 체계가 제85조의 첫 번째 방안
에 의한 체계에 해당하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1) 국무장관은 [F2 웨일즈] 내 특정의회 일반의원선거 체계가 부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85조 방안의 체계가 되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의회가—
 - (a) 부령에 명칭을 명시한 주요 의회(또는 주요 의회 중 1곳)거나,
 - (b) 부령에 명시한 유형의 주요 의회에 속하는 주요 의회인 경우 의회를 명시한 것이다.
- (3) 부령에 명시된 일반의원선거 체계가 현행 체계(본 조에 의한 기존 부령에 의해 수립된 체계 등)와 다른 경우의회에 관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4) 부령에 의해 일반선거 실시 연도를 규정할 수 있다.
- (5) 명시된 선거체계가 두 번째, 세 번째 방안인 경우, 특정 연도에 퇴임하는 의원 지정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 (a)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선거구역, 선거구를 지정하며,
 - (b) 특정 선거구역, 선거구 내 영향을 받는 의원들을 지정할 수 있다.
- (6) 제5항에 의해—
 - (a) 선거구역, 선거구, 의원을 지정하는 방법(국무장관이 공표할 수 있는 지침 준수)을 의회가 제안하도록 국무장관이 지시하며,
 - (b) 의회가 채택할 방법(의회가 제안한 방법 등)에 관해 국무장관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7) 부령에 의해, 현행 체계에서 부령에 명시된 체계로 전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 (a) 현행 체계와는 다른 시점에 기존 의원들이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 (b) 명시한 체계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안인 경우, 초기 의원선거 실시에 관해 규정하며, 의원 중 일부는 통상적인 4년 임기 종료 전 퇴임하고, 위원들 중 누가 조기 퇴임하는지 규정할 수 있다.

87. 선거 실시연도 변경 권한

- (1) 국무장관은 특정 지역정부 일반의원선거 실시연도를 변경하지만, 일반의원선거 현행 체계를 (제86조 부령 등에 의해) 변경하지는 않도록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지역정부가 —
 - (a) 부령에서 직접 명칭으로 언급한 지역정부(또는 지역정부 중 1곳)거나,
 - (b) 부령에 명시된 지역정부 종류, 유형에 해당 지역정부가 속하는 경우 그 지역정부를 명시한 것이다.
- (3) 부령에 의해, 의원 퇴임시기 변경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88. 부수적인 조항 등을 제정하는 별도 권한

- (1) 국무장관이 제86조, 제87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는 경우, 동 조에 의해 제정하는 부령에 명시할 수 있는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규정, 과도적 규정, 추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 (2) 제86조, 제87조에 의한 부령에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규정, 과도적 규정, 추가 규정을 포함하지는 여부에 관계 없이 상기 사항이 적용된다.

89. 다른 조항 개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 (1) M1 1992년 지역정부법은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개정한다.
F3(2).
- F3(3).
- (4) 1972년 M2 지역정부법 제6(2)(a)조(도시가 아닌 카운티 선거구에서의 의원 1인 선

출)에서 ”법규” 이후 “그리고 1992년 지역정부법 제14(8)조, 제17(7)조에 의거하여”를 삽입한다.

제5편. 그 밖의 조항

수수료 등

90. 수수료 등

- (1) M1 1998년 감사위원회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7조(계정 항목이 불법이라는 진술)에서—
 - (a) 제1(b)항,
 - (b) 제2항에서 "subject to subsection (3)"(제3항에 의거하여), 제a호, 제b호,
 - (c) 제3항, 제5(b)항, 제7항, 제8항은 삭제한다.
- (3) 제18조(정산하지 않은 비용 회수 등)은 삭제한다.

91. 경고 통지

- (1) M2 1998년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 제19조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9A 기타 기관: 경고 통지.

 - (1) 의료서비스기관이 아닌 피감기관 계정을 현재 감사하는 감사관이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기관이—
 - (a) 비용을 불법적으로 책정하는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의사 결정을 했고,
 - (b) 조치를 취하려고 하거나, 취하기 시작했으며,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불법 행위가 되고,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 (c) 계정 항목을 집행하려고 하며, 동 항목이 불법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에 의해 통보(“경고 통지”)할 수 있다.
 - (2) 본 조 및 제19B조 목적상—
 - (a) 기관의 위원회, 부위원회 또는
 - (b) 기관을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그 밖의 사람(공무원 제외)의 행동은 해당 기관의 직접적인 조치로 간주한다.
 - (3) 경고통지는—
 - (a) 해당 기관, 공무원에게 발송하며,

- (b) 제1항 조항 중 관련이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경고 통지와 관련된 의사 결정, 조치 또는 계정 항목을 명시하며,
 - (c) 수신인이 통지서 사본을 수령한 일자에 통지 내역이 발효한다고 설명하며,
 - (d) 해당 기관 또는 공무원이—
 - (i)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집행하거나,
 - (ii)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지속하거나
 - (iii) 계정 항목을 집행하기 전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계정을 감사하는 현직 감사관에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된 기한 내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d)항에서 특정 일자는 통지 내역에 기재한 바에 따라 21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4) 기관의 계정에 관련하여 감사관이 2인 이상 임명된 경우—
- (a) 경고통지 발부 권한은 감사관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감사관 중 1인이 행사할 수 있고,
 - (b) 경고통지와 관련하여, 제5항, 제6항 감사관은 경고통지를 발부하는 감사관(들)을 의미한다.
- (5) 경고 통지 사본은 —
- (a) 이를 수신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송달하고,
 - (b) 공무원에게 발부하는 경우, 해당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며,
 - (c) 감사관이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해당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다.
- (6) 감사관은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사관이 경고를 발부한 사유를 기재한 내역서를, 통지서 사본을 수신인에게 송달한 일자 후 7일 내, 해당 기관 및 제5(b)항에 의해 통지서 사본을 발부 받은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 (7) 본 조에 의해 특정 서류를 기관 공무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당사자의 직장 사무소에 남겨 두거나 사무소로 우편 발송한다.
- (8) 경고 통지는 통지서를 수신하는 기관 공무원, 또는 기관의 계정에 대하여 감사관 직을 맡고 있는 자가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제5항에 의해 경고 통지서 사본을 발부 받는 기관, 당사자에게 철회 조치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19B 경고 통지의 효력.

- (1) 경고 통지가 효력을 지니는 기간 동안, 제2항 명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까지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해당 기관이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 (a) 통지 내역이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행위.
 - (b) 통지 내역이 특정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속하는 행위, 또는
 - (c) 통보 사항이 계정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계정을 집행하는 행위.
- (2) 그러한 요건은 —
 - (a) 경고통지 및 제19A(6)조 진술서에 비추어 제1항 조항 조치 중 관련이 있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를 해당 기관이 검토했고,
 - (b) 기관 또는 공무원이 제19A(3)(d)조의 경고통지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의 통지를 기관 계정 감사관직을 맡은 자에게 서면 제출했으며,
 - (c) 기간이 만료한 경우다.
- (3) 경보 통지는 통지서 사본을 수신인이 송달 받은 일자에 발효하고,
 - (a) 제19A조 제6 항에 의해 결정 사유 내역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동 항에서 규정한 기간 종료 시점, 또는
 - (b) 제19A(8)조에 의해 이를 철회할 때 효력이 중단된다.
- (4) 경고 통지를 발송하는데 있어 감사관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감사관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5) 본 조에서 “관련 기관”은 경고 통지에 관련하여, 통지서 수신 기관의 공무원 또는 수신 기관을 의미한다.

19C. (1)

- (a) 기관이 경고통지를 송달 받기 전, 토지 관련 이해관계를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b) 처분 또는 취득 완료 전, 경고통지가 발효하여 기관의 이해관계 처분 또는

취득이 불법이 된 경우, 경고통지 존재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특정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자가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침해 받지 않는다.

(2) 신의에 의해 발부한 경고 통지에 의해 손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그에 대해 감사관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2) M3 1998년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 제20~23조(금지 명령)은 효력이 중단된다.

행정 실책 등

92. 행정 실책에 대한 보상 등

(1)

(a) 역할 이행에 있어 관할당국이 취한 조치, 관할당국을 대리하여 취한 조치가 행정 실책에 해당하거나, 행정 실책에 해당할 수 있으며,

(b) 해당자가 동 조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관할당국이 보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상을 할 수 있다.

(2) 본 조에 의해 런던광역시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에 부여한 역할은 당국을 공동 대표하는 런던시장, 런던의회가 이행할 수 있다.

(3) 본 조에서—

“행위”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관련 당국”은 본 법 제 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복지 서비스

93. 복지 서비스 보조금

(1) 국무장관은

[F1(a) 국무장관이 정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데 있어 발

생하거나,

- (b) 그러한 복지서비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잉글랜드 지역정부의 비용에 대해 재무부 승인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웨일즈의회는

[F2 (a) 의회가 정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이를 제공하는데 있어 발생한 비용, 또는

- (b) 그러한 복지서비스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웨일즈 지역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본 조에 의해 지원하는 보조금 금액 및 지급 방식은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의회가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4) 본 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 (a) 모든 지역정부,
- (b) 특정 지역정부,
- (c) 특정 유형의 지역정부(특정 지역의 관할당국 유형 포함)에 지급할 수 있다.

- (5) 본 조의 보조금은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의회가 정할 수 있는 요건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제6항 조항은 본 항의 일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본 조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국무장관 또는 의회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관해 상기 요건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F3 (6A) 제3항, 제5항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하기 전, 국무장관은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지역정부는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의회가 본 조 목적상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국무장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8) 지역정부는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및 적용에 관해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의회의 현행 지침을 참작해야 한다.

- (9) 지역정부는 본 조에 의해 지역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 및 적용에 관해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의회의 현행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0) 여러 지역정부, 여러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해, 본 조에 의한 결정, 지침, 지시 사항에 의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특정 지역의 관할당국 유형 포함).

(11) 잉글랜드, 웨일즈 내 모든 지역정부, 모든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련하여 본 조에 의해 확인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하기 전,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웨일즈 의회는—

- (a) 국무장관 또는 웨일즈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지역정부 대표 또는 지역 정부,
- (b) 복지서비스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국무장관 또는 웨일즈의회가 판단하는 수혜자 대표 또는 수혜자,
- (c)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국무장관 또는 웨일즈의회가 판단하는 제공자 대표 또는 제공자와 협의해야 한다.

(12) 본 조에서 —

“지역정부”는—

- (a) 잉글랜드에 관련하여, 카운티의회, 지역의회, 런던 자치구의의회, 런던시 공동의회 (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실리제도의의회,
- (b) 웨일즈에 관련하여, 카운티의회 또는 카운티 자치구의의회를 의미한다.

“복지서비스”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지원, 자문,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F4 94. 정보 공개

.....

F5 95. 허용되지 않는 정보 공개

.....

전망

96. 주거 혜택

- (1) M4 1992년 사회보장납부 및 혜택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제130조(주택 혜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2항 말미에 “하지만 본 항은 제2A항에 의거하여”를 삽입한다.
- (2A) 부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는 범위 외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지원, 자문,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지급은 제1항 목적상 “주택 관련 지급”이 아니다.”
- (3) 제4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A) 상기 제2A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특정 지역, 특정 당국, 또는 특정 유형의 당국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정보 접근

97. 배경 보고서

- (1) M5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0D조(배경 보고서 열람)에서 1항을—
 “(1) 제100C(1)조의 경우 하기 제2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제100B(1)조, 제100C(1)조에 의거하여 주요 의회 회의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내역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공개하는 경우—
 (a) 사본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배경보고서 목록 사본, 또는 보고서 일부분을 포함하며,
 (b) 목록의 각 서류 사본은 1부 이상 의회 사무소에서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 (2) 제2항에서 “목록의, 또는”을 삭제한다.

98. 회의 및 문서: 통보 등

- (1) M6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0K조(제VA편 조항 해석 및 적용)에서, 제2항 이후, 다

음을 삽입한다.

“(3) 국무장관은 3일을, 부령에 의거하여 규정할 수 있는 3일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 하기 위해 상기 제100A(6)(a)조, 제100B(3)조, 제100(4)(a)조를 부령에 의해 개정 할 수 있다.

(4) 상기 제3항의 명령/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는 의회 상원 또는 하원 결의안에 의 하여 폐기할 수 있다.”

(2) 동 법 별표 12(지역정부 회의 및 절차) 제4호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A(1) 국무장관은 3일을, 부령에 의거하여 규정할 수 있는 3일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하기 위해 상기 제4(2)호를 부령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는 의회 상원 또는 하원 결의안에 의거하 여 폐기할 수 있다.”

수당 및 연금

99. 특정 지역정부 구성원의 수당 및 연금

(1) M2 1972년 연금법(Superannuation Act) 제7조(지역정부 서비스 등에 고용된 자 의 연금)에 의한 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부령에서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지역정부 구성원들에게, 또는 구성원들에 관련하여 연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 하도록, 또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하며, [F6; 본 항을 웨일즈에 적용하기 하는 경우, 연금 및 수당은 무시한다.]

(2) 제1항에서 “지역정부”는 본 법 제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3) M8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8조 (지역정부 구성원을 위한 기본 수당, 출근 수당, 특별 직무수당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제1항 앞 부분에 “제1A항에 의거하여”를 추가하고 동 조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회, 런던 자치구의회에 관련하여, 상기 제1항은 제b호를 삭제하는 효력을 지닌다.”

(5) 제2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2A)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의회, 런던 자치구의의회가 구축하는 체계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자녀 또는 가족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본 조의 부령에 의해 허용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

(6) 제3항에서 “그리고 (2)”를 “그리고 (2A)”로 교체한다.

(7) 제3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3A) 본 조의 부령에 의해—

- (a) 의회 구성원 중 연금,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성원을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의회, 런던 자치구의의회가 정하도록 하기 위해,
- (b) 기본 수당 또는 특별직무수당을 상기 연금, 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으로 처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3B) 수당에 관련하여, 부령에 명시할 수 있는 역할을 지니는 위원회를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의회, 런던 자치구의의회가 설립·운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본 조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으며, 의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당, 퇴직금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3C) 수당에 관해 부령에서 명시할 수 있는 역할을 이행하는, 부령에 명시된 기관을 위원회가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부령에 명시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런던 자치구의의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당, 퇴직금에 관하여 본 조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3D) 수당에 관련하여 부령에 명시할 수 있는 역할을 지니는 위원회를 웨일즈의회가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또는 웨일즈 카운티의회 및 카운티 자치구의의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연금, 수당, 퇴직금에 관해 본 조의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3E) 상기 제3B항 부령에서—

- (a) 의회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거나 임명해야 하는 인원 수 및

- (b) 의회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거나 임명해야 하는 자에 관하여,
- (c) 공동위원회 의회에 의한 임명을 위해, 또는 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F) 제3C항 부령에서—

- (a) 동 항의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거나 임명해야 하는 인원 수 및
- (b)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거나, 임명해야 하는 자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3G) 제3B항, 제3C항, 제3D항의 부령에서는—

- (a) 의회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금액 수준에 관하여 의회에 권고하도록, 동 항에 명시한 위원회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관해 규정할 수 있고,
- (b) 의회 구성원 중 연금, 수당,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성원에 관해 의회에 권고하도록 동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관해 규정할 수 있으며,
- (c) 여러 의회, 여러 유형의 의회에 관련하여 각각 별도로 권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8) 제4항에서 제b호 말미의 “그리고”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ba) 부령에 의한 관할당국 체계 개정·철폐·교체에 관해 규정한다. 그리고”.

(9) 제5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5A) 본 조의 부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체계를 수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의회, 카운티의회, 카운티 자치구의회 또는 런던 자치구의회는 국무장관이 공표하는 현행 지침을 참작해야 한다.”

F7 100. 수당에 관해 규정하는 권한

.....

관할당국 구성원 및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101. 관할당국 구성원 및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 (1) 국무장관은 구성원, 공무원 일부 인원 또는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권한을 잉글랜드 관할당국 또는 웨일즈 경찰당국에 부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웨일즈의회는 구성원, 공무원 일부 인원 또는 전원에게 손해 배상을 하는 권한을 웨일즈 관할당국(경찰당국 제외)에 부여하기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명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3) 본 조의 부령은—
 - (a) 모든 관할당국 또는
 - (b) 특정 유형의 관할당국에 적용할 수 있다.
 - (4) 본 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기 전, 국무장관 또는 (상황에 따라) 웨일즈의회는—
 - (a) 관할당국 대표들,
 - (b) 관할당국 직원 대표들 및
 - (c) 국무장관 또는 웨일즈의회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 (5) 본 조에서 —
 - 관할당국에 관련하여 “구성원”은—
 - (i) 관할당국 위원회, 부위원회 구성원, 또는
 - (ii) 공동위원회, 공동부위원회 구성원이며, 동 위원회에서 관할당국을 대표하는 당사자다.
- “경찰당국” 및 “관할당국”은 본 법 제33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서비스 역할

102. 사회서비스 역할

- F8 (1).
- (2) [F9 [1970년 지역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제 6(5)조(사회서비스 임원이 국무장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에 관련되지 않은 역할을 이행하지 않음)은 효력이 중단된다.
- (3) 동 법 제1조 이후, 다음 조항을 추가한다.

“1A “사회서비스 역할”의 의미.

본 법의 목적상 지역정부의 사회서비스 역할은—

- (a) 본 법 별표 1, 제1열에 명시된 법률에 의한 역할(별표 1, 제2열에 동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 및
- (b) 국무장관이 본 조에 의해 제정하는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역할이다.”

지역정부의 주간 보육서비스 비용 회수

103. 지역정부의 주간 보육서비스 비용 회수

- (1) M9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제29조 제3항(서비스 제공비용 등 회수)에서 ”제1항” 이후 “제17조, 제18(1)조, 또는 제18(5)조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를 추가한다.
- (2) 상기 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 “(3A) 1992년 사회복지납부 및 혜택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제VII편에 의한 소득 지원 또는 수입에 기초한 구직자 수당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을 수령하는 자는 제18(2)조, 제18(6)조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언제라도 제1항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의무가 없다.”

동성애 촉진 금지: 학대

F10 104. 동성애 촉진 금지: 학대

.....

제6편. 추가 조항

105. 명령 및 부령

- (1) 본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부령 제정권한은 법률 문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 (2) 본 조에 의한 명령 또는 부령에 —
 - (a) 국무장관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인 조항, 과도적 조항, 추가 조항, 보존하는 조항을 수록할 수 있고,
 - (b) 여러 사례, 여러 지역정부, 여러 유형의 지역정부에 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조항은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 (4) 법률을 개정하는 제3항 권한은—
 - (a) 조항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법률을 적용하거나,
 - (b) 법률을 확장하거나,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법률을 개정하거나,
 - (c) 조항을 보존하여, 또는 보존하는 조항 없이 법률을 폐기·철폐하는 권한이다.
- (5) 제6항, 제7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법의 명령 또는 부령을 수록한 법률 문서는 상원 또는 하원 결의안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 (6) [F1 제6A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3(3)조, 제5조, 제6조, [F2 제9N조,] 제49조 [F3, 제63(1)(j)조] 또는 제101조에 의한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 [F4 제9BA조, 제9HE조, 제9MG조, 또는 제 44조]에 의한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는 법률문서 초안을 하원 또는 상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정할 수 없다.
[F5 (6A)
 - (a) 기존 명령의 조항, 기존 명령을 특정 당국 또는 특정 유형의 당국에 확대 적용하거나,
 - (b) 기존 명령의 조항, 기존 명령이 특정 당국 또는 특정 유형의 당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기존 부령을 개정하는 목적만으로 명령을 제정한 경우, 제3(3)조, 제5조, 제6조 부령을 수록한 동 법률문서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7) 제5항은 제108조 명령을 수록한 법률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6(7A) 제9N조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 초안을 본 항 이외에서, 상원 또는 하원의 기본절차명령 목적상 혼합법률문서로 취급하는 경우, 상원 또는 하원에서 혼합법률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8) 본 조에서 “법률”은 지역 법규에 수록된 법률, 또는 (M1 1978년 법률해석법(Interpretation Act)의 의미 내에서의) 하위 법률을 구성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106. 웨일즈

(1)

(a) 제2편(제44조 및 별표 1, 제7호 제외),

(b) 제IV편 및

(c) 제105(2)조를 웨일즈에 적용하는데 있어, 동 조항들은 국무장관을 웨일즈의회로 대체하는 효력을 지닌다.

(2) 제105(5)~(7)조는 웨일즈의회가 제정하는, 본 법에 의한 명령, 부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3) 1999년 웨일즈의회 부령 별표 1(역할 이관)에서, 본 법에 의해 개정되는 다른 법률은 본 법에 의해 개정되는 해당 법률로 간주한다.

(4) 제3항은 동 항의 내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추가 부령을 제정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7 (5) 제21A(13)(b)조, 제21G조에 의해 부령을 제정하는 웨일즈 장관들의 권한은 법률 문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6) 제21A(13)(b)조에 의한 웨일즈장관 제정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는 웨일즈의회 결의안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7) 제21G조에 의한 부령을 수록한 법률문서는 법률문서 초안을 웨일즈의회에 제출하여 결의안에 의해 승인 받지 않는 한, 제정할 수 없다.]

107. 중요하지 않은, 결과적인 법률 개정·폐지

- (1) 별표 5(중요하지 않은, 결과적인 법률 개정)이 효력을 지닌다.
- (2) 별표 6의 법률폐지 조항이 효력을 지닌다.

108. 발효

- (1) 본 조 및 제105조, 제106조, 제109조는 본 법 승인 일자에 발효한다.
- (2) 본 법의—
 - (a) 제IV편,
 - (b) 제104조,
 - (c) 그리고 별표 6에서, M2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별표 37 제63호 폐지는 본 법 승인 후 2개월 후 발효한다.
- (3) 본 법의 —
 - (a) 제90조, 제91조, 제93~96조,
 - (b) 별표 5 제8호, 제12호, 제 13호, 제15호, 제25호, 제26호, 제34호, 그리고
 - (c) 별표 6에 의한 하기 법률 폐지는—
 - (i) M3 1972년 지역정부법 제80(1)(e)조,
 - (ii) 동 법 제94~98조, 제105조,
 - (iii) 동 법 제265A(1)(b)조,
 - (iv) M4 1974년 지역정부법, M5 1985년 지역정부법, M6 1985년 교통법(Transport Act), M7 별표 6에 명시된 M7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 (v) M8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9조, 제31조, 제32(1)조,
 - (vi) 동 법 별표 11,
 - (vii) M9 1992년 지역정부금융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 M10 1994년 (웨일즈) 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Wales) Act), M11

1994년 경찰 및 법원법(Police and Magistrates' Courts Act), 1995년 환경법(Environment Act), 1996년 M12 경찰 M13법(Police Act), 1997년 경찰법(Police Act), 1998년 M14감사 M15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 및 별표6에 명시한 M16 1999년 런던광역시당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국무장관이 부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일자에 발효한다.

- (4) 제5항, 제6항에 의거하여 본 법의 잔여 조항은 본 법 승인 후 12개월 후 발효한다.
- (5)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 (a) 별표 4 제17호, 제18호가 제4항에서 지정한 시기 이전에 발효하고,
 - (b) 별표 5 제28호가 동 항에서 지정한 시기 이전에 발효하며,
 - (c) 웨일즈 경찰당국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법 제III편 조항이 동 항 지정시기 이전에 발효하고,
 - (d) 잉글랜드에 관련하여, 동 항에서 언급한 다른 조항이 동 항 지정시기 이전에 발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6) 웨일즈의회는 부령에 의해—
- (a) 제4항에서 지정한 시기 이전에 별표 5 제28호가 발효하고,
 - (b) 웨일즈에 관련하여 동 항 지정시점 이전에, 동 항에 명시한 다른 조항이 발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7) 제3항, 제5항, 제6항에 의한 부령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각각 다른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09. 법률 약칭 및 적용범위

- (1) 본 법은 2000년 지역정부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 (2) 제3항, 제4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법은 잉글랜드, 웨일즈에만 적용된다.
- (3) 제94~96조, 제105조, 제108조는 스코틀랜드에도 적용된다.
- (4) 본 조, 별표 4의 제17호, 제18호 및 별표 5의 제28호는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된다.

별표 A1. 잉글랜드 집행부 체계: 추가 조항

시장 및 내각 집행부

1

- (1) 본 조는 시장 및 내각 집행부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의 집행부 체계에 적용된다.
- (2) 제9C(5)조에 의거하여, 집행부 체계에서는 제9C(2)(b)조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될 수 있는 의원 수를 직선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3) 집행부 체계에서는 직선시장이 집행부 구성원 중 1인을 직선시장의 대리인(본 호에서 부시장이라고 칭함)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제5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시장으로 임명된 자는 부시장직에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관할당국 구성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시장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부시장직을 유지한다.
- (5) 직선시장은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 (6) 부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직선시장은 부시장직에 다른 자를 임명해야 한다.
- (7) 직선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부시장이 직선시장직을 대행한다.
- (8) 어떠한 사유로든—
 - (a) 직선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이 공석이며,
 - (b) 부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부시장직이 공석인 경우,집행부가 직선시장직을 직접 대행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이 직선시장직을 대행하도록 조정한다.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2

- (1) 본 조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를 운영하는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 적용된다.
- (2) 제9C(5)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는 제9C(3)(b)조에 의해 집행부

- 에 임명될 수 있는 의원 수를 집행부 대표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집행부 체계에서는 집행부 대표가 집행부 구성원 중 1인을 집행부 대표의 대리인(본호에서 집행부 부대표라고 칭함)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제5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부대표로 임명된 자는 부대표직에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관할당국 구성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부 대표 임기 종료시점까지 부대표직을 유지한다(집행부 체계에서 그러한 임기를 규정한 경우).
- (5) 집행부 대표는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부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 (6) 집행부 부대표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 대표는 부대표직에 다른 자를 임명해야 한다.
- (7) 집행부 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대표직이 공석인 경우, 집행부 부대표가 집행부 대표직을 대행한다.
- (8) 어떠한 사유로든—
- (a) 집행부 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대표직이 공석이며,
 - (b) 집행부 부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부대표직이 공석인 경우, 집행부는 집행부 대표직을 직접 대행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이 집행부 대표직을 대행하도록 조정한다.

절차

3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 지역정부는—

- (a) 집행부 회의의 정족수·절차·위치,
- (b) 집행부 위원회 설립 및
- (c) 집행부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절차·위치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집행부 및 집행부 위원회 회의

4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아닌 지역정부 구성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에 초빙된 경우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의 보좌관

5

- (1) 국무장관은 직선시장을 업무 지원하는 보좌관(“보좌관”) 임명에 관해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본 호에 의한 부령에서는 특히 보좌관 임명요건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6

- (1) 제7호, 제8호에서 “관할당국”은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 (2) 제9F조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과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제7호, 제8호가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적용된다.
- (3) 제9FA조에 의한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과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제7호, 제8호는 동 부위원회에도 적용된다.

7

- (1) 영국국교회 학교를 1곳 이상 운영하는 관할당국의 경우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 적격자가 1인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 (2) 관할당국 지역에 일부 또는 전부 소재한 영국국교회 교구에 교구 교육위원회(Diocesan Board of Education)가 특정인을 임명한 경우, 특정인은 제1 목 목적상 적격자다.
- (3) 로마카톨릭교회 학교를 1곳 이상 운영하는 관할당국의 경우 본 조가 적용되는 조사 및 감독위원회에는 적격자가 1인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 (4) 관할당국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소재한 로마카톨릭 교구 주교가 특정인을 임명한 경우, 특정인은 제3목 목적상 적격자다.
- (5) 제1목 또는 제3목에 의해 임명된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 구성원은—
 - (a)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 (b) 해당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안에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다.
- (6) 관할당국이 운영하는 재단 또는 자선학교(영국국교회 학교 또는 로마카톨릭 교회학교는 아니지만, 지시 사항에 명시된 학교) 이사장을 임명하는 자들의 대표들로서 국무장관 지시에 의해 임명된 자들이, 본 조가 적용되는 관할당국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 소속되도록 국무장관은 관할당국에 지시할 수 있다.
- (7) 제6목 지시 사항에 의해 임명한 자의 투표권에 관련하여, 동 지시 사항에서 규정할 수 있다.

8

- (1) 선출직을 역임하는 자가 1인 이상 해당 관할당국 운영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로서,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에 부령에 의거하여 소속되도록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본 호의 부령에 의해—
 - (a) 관할당국의 경우 선출되는 자 인원 수,
 - (b) 선출 절차 및 선거에서 표결할 수 있는 자
 - (c) 특정인이 선출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선출된 후 직위를 유지하는 자격을 갖추는

상황, 선출될 수 없거나, 선출된 후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

- (d) 선출된 공무원 임기 및 투표권,
- (e)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상황에 따라) 부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사항 없이 해당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에 적용하는 것,
- (f) 국무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선거 또는 선출된 자에 관련된 사안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3) 본 호의 부령에 의해—

- (a) 관할당국이 운영하는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부모 운영위원(parent governors) 대표가 아닌) 학교 등록학생 학부모(parents of registered pupils) 대표가 위원회, 부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부위원회에 부과하는 제1목 요건을 충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국무장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 (b) 국무장관이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본 호의 부령을 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개정하여 발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9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의 하기 조항, 즉—

- (a) 제496조(동 법상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및
- (b) 제497조(지역정부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국무장관 권한)이 지역정부의 동 법 의무 이행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제6~8호에 의해 지역정부에 부과하는 의무 이행에 상기 조항이 적용된다.

10

- (1) “지역정부”를 제외하고, 제6~9호에서 사용된 표현 및 1998년 학교기준체계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의 표현은 동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2) 제6~7호에서 “교육 제공 역할”은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제579(1)조의 의미를 지닌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회 선임 구성원의 투표권

11

- (1) 지역정부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선임 구성원이 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2) 지역정부가 수립한 체계에 의해서만 제1목의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3) 본 호의 체계에서는—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위원회 선임 구성원 최대 또는 최소 인원 수를 정하고,
 - (b) 최대 또는 최소 인원 수 관련 제(a)호 요건 집행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4) 본 호의 체계 수립권한은 그러한 체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5) 본 항에서,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관련하여 위원회 선임 구성원은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12

- (1) 국무장관은 제11호에 의한 권한 행사에 관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특히 제1목의 부령에 의해, 제11호 투표권 체계(“투표권 체계”)에서—
- (a) 관할위원회의 제안 승인에 의해서만 투표권을 허용하고,
 - (b) 동 체계의 목적상 제안(“투표권 체계 관련 제안”)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 (i) 제안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
 - (ii) 제안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가 표결해야 하는 제안 사안
 - (iii) 투표권 지속 기간 제안
-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제안서의 양식 및 내용에 관해 규정할 수

있으며,

- (c) 제안 내역 작성에 관한 관할위원회 정책 발간서에 의해서만 체계를 제안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 (d)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체계 제안 승인에 관련하여 밟아야 할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3) 지역정부가 투표권 체계 수립·변경·철폐에 관해 국무장관에 통보하도록 제1목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4) 지역정부가 투표권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은 지시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13

- (1) 제11호 체계를 수립한 지역정부는 체계 운영 기간 동안, 이에 관해 명시한 내역서를 일반인들이 적절한 시간에 항시 열람하도록 사본을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
- (2) 지역정부가 제11호의 체계를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폐지하는 경우, 시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본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통보 내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1종 이상에 게재해야 한다.
- (3) 상기 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제2목의 통보 내역에—
 - (a) 체계 수립 과정을 기록하고,
 - (b) 체계의 책무에 관해 설명하며,
 - (c)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체계 내역서 사본을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고 기재하고,
 - (d) (i) 주요 청사 주소 및
(ii) 체계 관련 내역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한다.
- (4) 체계 변경의 경우, 제2목의 통보 내역에—
 - (a)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 (b) 변경된 체계에 관해 설명하며,
 - (c)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체계 내역서 사본을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고 기

재하고,

(d) (i) 주요 청사의 주소 및

(ii) 체계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한다.

(5) 체계를 폐지한 경우, 제2목에 의한 통보 내역에 체계 폐지에 관해 기록한다.]

별표 1. 집행부 체계: 추가 조항

시장 및 내각 집행부

1

- (1) 본 호는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운영에 관해 규정한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 (2) 제11(8)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는 제11(2)(b)조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할 수 있는 의원 수를 직선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집행부 체계에서는 직선시장이 집행부 구성원 중 1인을 직선시장 본인의 대표(본 호에서 부시장이라 칭함)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제5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시장은 부시장직에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관할당국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시장 임기 종료 시점까지 부시장직을 역임한다.
- (5) 직선시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부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 (6) 부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직선시장은 다른 자를 부시장직에 임명한다.
- (7) 어떠한 사유로든 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시장이 직선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 (8) 어떠한 사유로든
 - (a) 직선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이 공석이고,
 - (b) 부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부시장직이 공석인 경우, 집행부가 직선시장직을 대행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이 권한 대행하도록 조정한다.
- (9) 웨일즈 지역정부 부시장은 웨일즈어로 “덜프리 웨어”(dirprwy faer)라고 지칭한다.]

[F1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1A

- (1) 본 호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에 관해 규정한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 관련

하여 적용된다.

- (2) 제11(8)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는 제11(2A)(b)조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될 수 있는 의원 수를 집행부 대표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집행부 체계에서는 집행부 대표가 집행부 구성원 중 1인을 자신의 대리인(본 호에서 집행부 부대표라 칭함)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제5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부대표는 부대표직에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관할당국 구성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부 부대표는 집행부 대표직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부대표직을 역임한다.
- (5) 집행부 대표는 본인 판단에 따라 집행부 부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 (6) 집행부 부대표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 대표는 다른 자를 집행부 부대표로 임명한다.
- (7) 어떠한 사유로든 집행부 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대표직이 공석인 경우, 집행부 부대표는 집행부 대표 권한을 대행한다.
- (8) 어떤 사유로든
 - (a) 집행부 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대표직이 공석이며,
 - (b) 집행부 부대표가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집행부 부대표직이 공석인 경우, 집행부는 집행부 대표 권한을 직접 대행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조정한다.]

[F2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

2

- (1) 본 호는 [F3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에 관해 규정한 집행부 체계에 적용된다.
- (2) 집행부 체계에서는—
 - (a) 집행부 대표 선출 및 임기,
 - (b) 제11(3)(b)(ii)조에 의해 임명하는 집행부 구성원 임명 및 임기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3) 제11(8)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체계에서는—
 - (a) 제11(3)(b)조에 의해 집행부에 임명할 수 있는 의원 인원 수를 관할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 (b) 집행부 대표가 그렇게 임명될 수 있는 의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M1 1972년 지역정부법 제101조는 [F4 제3(a)목]에 의해 임명하는 의원 수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

3

- [F5(1) 본 호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에 관해 규정한 지역정부의 집행부 체계에 적용된다.
- (2) 집행부 체계에서는 의회관리자 임명 및 임기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3) 집행부 체계에서는 직선시장이 관할당국 구성원을 자신의 대리인(본 호에서 부시장이라 칭함)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 (4) 부시장은
 - (a) 관할당국 의장 또는 부의장이어서는 안되고,
 - (b)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구성원이어서는 안된다.
 - (5) 제6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부시장은 부시장직에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관할당국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직선시장 임기 종료 시점까지 부시장직을 역임한다.
 - (6) 직선시장은 본인 판단에 따라 부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 (7) 부시장직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직선시장은 다른 자를 부시장직에 임명한다.
 - (8) 어떠한 사유로든 직선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시장이 직선시장을 대행한다.
 - (9) 어떠한 사유로든
 - (a) 직선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선시장직이 공석이고,

- (b) 부시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부시장직이 공석인 경우, 의회관리자가 직선 시장을 대행한다.
- (10) [F6 제11목, 제12A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관리자는—
 - (a) 관할당국 회의, 관할당국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지만,
 - (b) 표결할 권한은 없다.
- (11) 의회관리자는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 초빙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2) 제10목에서 관할당국의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는 관할당국의 이해관계가 대변되는 공동위원회, 또는 그러한 공동위원회의 부위원회를 포함한다.
- [F7 (12A) 지역정부 의회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표결할 수 있다.
 - (a) 지역정부에 관련하여 지역정부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 (b) 의회관리자가 공동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구성원인 경우.]
- (13) 의회 관리자는—
 - (a) M2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1편의 목적상, 관할당국에서 정치적으로 제한된 직위를 역임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 (b) M3 1972년 지역정부법 제151조에 의한 관할당국 재무 집행의 책무를 지니는 자이어서는 안되고,
 - (c) M4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5조에 의해 관할당국 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를 지니는 자이어서도 안된다.
- (14) 집행부 체계에서는 집행부에게 조언하는 위원회 1곳 이상을 직선시장이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15) 제14목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은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정할 필요가 없다.
- (16) 웨일즈 지역정부 부시장은 "dirprwy faer"라고 지칭한다.]

절차

4

지역정부 집행부 체계에서는—

- (a) 집행부 회의의 정족수·절차·위치,
- (b) 집행부 위원회 설립 및
- (c) 집행부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절차·위치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집행부 및 집행부 위원회 회의

5

지역정부 집행부 구성원이 아닌 지역정부 구성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집행부 회의, 집행부 위원회 회의에 초빙된 경우에만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장의 보좌관

6

- (1) 국무장관은 직선시장을 지원하는 자(“보좌관”) 임명을 위해,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본 호의 부령에 의해 보좌관 임명요건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3) 제2목 조항은 제1목 권한의 일반적인 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7

- (1) 본 호에서 “잉글랜드 관할당국”은 [F8 교육 제공 역할을 지닌] 잉글랜드 지역정부다.
- (2) 제21조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 역할과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는 잉글랜드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적용된다.

- (3) 제21조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 역할과 전반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는 잉글랜드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4) 영국국교회 학교 1곳 이상을 운영하는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경우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적격자가 1인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 (5) 관할당국 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 소재하는 영국국교회 교구의 교구교육위원회(Diocesan Board of Education)가 특정인을 임명하는 경우, 해당자는 제4목의 목적상 적격자다.
- (6) 로마카톨릭 교회학교를 1곳 이상 운영하는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경우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에 적격자가 1인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7) 관할당국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소재한 로마카톨릭 교구 주교가 특정인을 임명하는 경우, 해당자는 제6목 목적상 적격자다.
- (8) 제4목, 제6목에 의해 임명하는 조사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 (a)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관련 사안,
 - (b) 해당 회의에서 결의하기로 한 사안에 관해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 (9) 관할당국 운영 재단 또는 자선학교(영국국교회 또는 로마카톨릭 교회학교는 아니지만, 지시 사항에 명시된 학교) 이사장을 임명하는 자들의 대표들로서 국무장관 지시에 의해 임명된 자들이, 본 조가 적용되는 관할당국의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 소속되도록 국무장관은 관할당국에 지시할 수 있다.
- (10) 제9목에 의한 지시 사항에서, 동 지시 사항에 의해 임명한 자의 투표권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8

- (1) 본 호에서 “웨일즈 관할당국”은 [F9 교육 제공 역할]을 지니는 웨일즈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 (2) 제21조의 웨일즈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웨일즈 관할당국 집행부의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과 전반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는 동 위원회에 적용된다.
- (3) 제21조에 의한 웨일즈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의 역할이 웨일즈 관할당국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과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가 동 부위원회에 적용된다.
- (4) 관할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파와 관련된 학교라고 웨일즈의회 지시 사항에 명시된 학교)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임명된 자 1인 이상이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 (5) 해당 관할당국 운영 학교로서, 제4목에 의한 지시 사항에 명시된 학교가 없는 경우 제4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6) 제4목에 의해 구성된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부위원회 구성원은—
 - (a)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 (b) 해당 회의에서 의사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동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 (7) 해당 관할당국이 운영하는 학교(본 목에 의해 지시사항에 명시할 수는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학교)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지시사항에 의해 임명된 자들이 본 호가 적용되는 웨일즈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 소속되도록 웨일즈의회는 웨일즈 관할당국에 지시할 수 있다.
- (8) 제7목의 지시사항에 의해 동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임명한 자들의 투표권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9

- (1) 본 호에서 “관할당국”은 [F10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지닌] 지역정부를 의미한다.
- (2) 제21조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과 전반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는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적용된다.

- (3) 제21조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의 역할이 관할당국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교육 제공과 전반적으로 또는 일부 관련이 있는 경우 본 호는 관할당국 감독 및 조사위원회 부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4) 해당 관할당국 운영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대표로 부령에 의거하여 선출된 자가 1인 이상, 본 호가 적용되는 감독 및 조사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에 소속되도록 국무장관은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5) 본 호의 부령에 의해 —
- (a) 관할당국의 경우 선출되는 자의 인원 수
 - (b) 그러한 자를 선출하는 선거 절차, 그리고 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니는 자
 - (c) 선출되는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 또는 선출된 후 직위를 유지하는 상황, 직위를 유지하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황
 - (d) 선출된 자의 임기 및 표결권
 - (e) 지역정부 위원회 또는 (상황에 따라) 부위원회에 관계된 법률(승인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개정하여, 또는 개정 내역 없이 동 위원회 또는 부위원회에 적용하는 것
 - (f) 국무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 선거 및 선출된 자에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다.
- (6) 본 호의 부령에 의해 또한—
- (a) 관할당국 운영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부모 운영위원(parent governors) 대표가 아닌) 학교 등록학생 학부모(parents of registered pupils) 대표가 조사 및 감독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부위원회에 부과하는 제4목 요건을 충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국무장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 (b) 국무장관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 본 조의 부령을 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개정하여 발효하도록 할 수 있다.

M5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의 하기 조항, 즉—

- (a) 제496조(교육법(Education Act)상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및
- (b) 제497조([F11 지역정부]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국무장관 권한)이 [F12 지역정부]의 동 법 의무 이행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제7~9호에 의해 지역 정부에 부과하는 의무 이행에 상기 조항이 적용된다.

11

“지역정부”를 제외하고, 제7~10호에서 사용된 표현 및 M6 1998년 학교기준체계법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의 표현은 동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F13 11A. 7~9호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은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제 579(1)조의 의미를 지닌다.]

[F14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회 선임 구성원의 투표권

12

- (1) 잉글랜드 지역정부는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회 선임 구성원이 동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2) 제1목의 투표권은 지역정부가 구축한 체계에 의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
- (3) 본 호의 체계에서는—
 - (a) 감독 및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위원회 선임 구성원 최대 또는 최소 인원 수를 정하고,
 - (b) 최대 또는 최소 인원 수 관련 제a호 요건 집행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 (4) 본 호의 목적상 체계를 수립하는 권한은 그러한 체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 (5) 본 호에서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회 선임 구성원은 지역정부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 구성원을 일컫는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회 선임 구성원의 투표권

13

- (1) 국무장관은 제12호 권한 행사에 관하여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2) 특히 제1목의 부령에 의해 제12호 투표권 체계(“투표권 체계”)에서—
 - (a) 관할위원회의 제안 승인에 의해서만 투표권을 허용하고,
 - (b) 동 체계의 목적상 제안(“투표권 체계 관련 제안”)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 (i) 제안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
 - (ii) 제안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가 표결해야 하는 제안 사안
 - (iii) 투표권 지속 기간 제안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제안서의 양식 및 내용에 관해 규정할 수 있으며,
 - (c) 제안 내역 작성에 관한 관할위원회 정책 발간서에 의해서만 체계를 제안하도록 규정할 수 있고,
 - (d) 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체계 제안 승인에 관련하여 밟아야 할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3) 지역정부가 투표권 체계 수립·변경·철폐에 관해 국무장관에 통보하도록 제1목 부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 (4) 지역정부가 투표권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은 지시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 위원회 선임 구성원의 투표권

14

- (1) 제12호 체계를 수립한 지역정부는 체계 운영 기간 동안, 이에 관해 명시한 내역서를 일반인들이 적절한 시간에 향시 열람하도록 사본을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
- (2) 지역정부가 제12호의 체계를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폐지하는 경우, 시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본 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통보 내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 1종 이상에 게재해야 한다.

- (3) 상기 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제2목의 통보 내역에—
 - (a) 체계 수립 과정을 기록하고,
 - (b) 체계의 책무에 관해 설명하며,
 - (c)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체계 내역서 사본을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고 기재하고,
 - (d) (i) 주요 청사 주소 및
(ii) 체계 관련 내역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한다.
- (4) 체계 변경의 경우, 제2목의 통보 내역에—
 - (a) 변경 내역을 기록하고,
 - (b) 변경된 체계에 관해 설명하며,
 - (c) 일반인들이 열람하도록 체계 내역서 사본을 지역정부 주요 청사에 비치한다고 기재하고,
 - (d) (i) 주요 청사의 주소 및
(ii) 체계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명시한다.
- (5) 체계를 폐지한 경우, 제2목에 의한 통보 내역에 체계 폐지에 관해 기록한다.]

별표 2. 직선시장 선출

적용 범위

1

본 별표는 지역정부 직선시장 선거에서 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1차 우선 투표권의 절대 다수를 득표한 후보

2

직선시장 후보 중 1인이 선거에서 주어진 1차 우선 투표권 중 절반 이상을 득표하는 경우, 그 후보가 직선시장으로 선출된다.

1차 우선 투표권의 절대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3

- (1) 직선시장 후보자들 중 선거에서 주어진 1차 우선 투표권을 절반 이상 득표한 자가 없는 경우, 본 호의 다음 조항이 발효한다.
- (2) 선거에서 주어진 1차 우선 투표권을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2인이 선거에 잔류한다.
- (3) 1차 우선 투표권 득표 수가 동일하여 제2목에 의거하여 후보 3인 이상이 선거에 잔류하는 자격을 지니게 되는 경우, 3인 모두 선거에 잔류한다.
- (4) 다른 후보들은 선거에서 탈락한다.
- (5) 어느 후보에게도 1차 우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선거에 잔류한 각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에서 주어진 2차 우선 투표권 수를 확인한다.
- (6) 상기 2차 우선 투표 수와 동일 후보에 대한 1차 우선 투표 수를 합하여, 총 우선 득표 수를 구한다.
- (7) 직선시장으로 선출되는 자는 선거에 잔류한 후보로서, 총 우선 투표권을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다.
- (8) 총 우선 투표권 득표 수가 동일하여 선거에 잔류한 후보 중 2인 이상이 가장 많은 우선 투표권을 득표한 경우, 선거위원이 직선시장은 제비뽑기에 의해 직선시장을 선출한다.

별표 3.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

1

(1) M1 1972년 지역정부법 제2조(잉글랜드 주요의회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2A) 상기 제1조, 제2조에서 언급한 의회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의회는 직선시장, 의장 및 의원들로 구성한다.”

2

(1) 동 법 제3조(잉글랜드 주요의회 의장)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주요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제4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A)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의회에 관련하여, 상기 제4항은 해당 지역에서 의회 직선시장이 우선권을 지니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집행부 체계에서 동 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동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1) 동 법 제5호(잉글랜드 주요의회 부의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주요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부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4

(1) 동 법 제21호(웨일즈 주요의회 헌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제1항에 해당하는 의회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의회는 직선시장, 의장 및 의원들로 구성된다.”

5

(1) 동 법 제22조(웨일즈 주요의회 의장)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주요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제4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A)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주요 의회에 관련하여, 상기 제4항은 해당 지역에서 의회 직선시장이 우선권을 지니도록 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집행부 체계에서 동 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동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6

(1) 동 법 제24조(웨일즈 주요의회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 이후, 다음을 추가한다.

“(1A) 주요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부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7

(1) 동 법 제25A조(카운티 자치구의회의 의장, 부의장의 직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2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3) 본 조는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카운티 자치구의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 (1) 동 법 제80조(지역정부 구성원으로서 선출되는 자격, 직위를 역임하는 자격 박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a)항 “또는 부의장” 이후, “또는 대표 및 내각 집행부, 집행부 대표실, 또는 집행부 구성원이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지역정부의 경우”를 삽입한다.

9

- (1) 동 법 제83조(직위 수락 선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항에서 “의원” 이후 “또는 직선시장”을 삽입한다.
- (3) 제3항 제a호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aa) 선언한 자가 선출된 의회의 직선시장 또는”.

10

- (1) 동 법 제84조(사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항에서 “법” 이후 “또는 직선시장으로 선출된”을 추가한다.

11

- (1) 동 법 제245호(특정 지역, 교구 및 지역사회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상기 제1(b)항은 의회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2

- (1) 동 법 제270조(조항 해석에 관한 일반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1항 “부활절 휴가”의 정의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직선시장”은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3) 제1항 “선거지역”의 정의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집행부”, “집행부 체계” 및 “집행부 대표”는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4) 제1항 “토지”의 정의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대표 및 내각 집행부”는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5) 제1항 “지역 법률 조항” 정의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시장 및 내각 집행부”,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는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6) 제4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A) 런던 자치구의회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를 지닌 행정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제4항에서 제a호 및 제b호가 생략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3

- (1) 동 법 별표 2(런던 자치구의회 헌법 및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5호 이후 다음을 추가한다.

“선행 조항 개정

5A 런던 자치구의회가 대표 및 내각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를 운영하는 경우—

(a) 상기 제2호는 제1목 이후 다음 목이 삽입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A) 런던 자치구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자치구 시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b) 상기 제5호는 제1목 이후 다음 목을 삽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A) 런던 자치구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부시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5B 런던 자치구의회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본 별표의 선행 조항은 하기 5C~5I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발효한다.

5C 의회는 직선시장, 의장 및 의원들로 구성된다.

5D 제2(1)호, 제2(5)호는 “런던 자치구시장”을 “런던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5E 상기 제2호는 제1목 이후, 다음 목을 삽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A) 런던 자치구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5F 제2(2)~2(4)호, 제3호는 “시장”을 “의장”으로 교체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5G 상기 제2(5)호는 직선시장이 자치구에서 우선권을 지니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집행부 체계에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본 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5H 상기 제5호는 제1~3목을 다음으로 교체한 효력을 지닌다.

(1) 런던 자치구의회는 의회 구성원 중 1인을 의회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1A) 런던 자치구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의회 부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 부의장은 사임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연례 의회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 직후의 시기까지 직위를 역임하며, 그 기간 동안 의원 퇴임에 관련된 본 별표 조항에 관계 없이 의회 구성원 지위를 유지한다.

(3) 의회 기본절차명령에 의거하여 의장이 이행하거나, 의장을 대상으로 이행하거나, 의장 참석하에 이행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조치는 부의장이 이행하거나, 부의장을 대상으로 이행하거나, 부의장 참석하에 이행할 수 있다.

5I 상기 제5(4)호 “부시장”은 “부의장”으로 교체하는 효력을 지닌다.

14

(1) 동 법 별표 12(지역정부 회의 및 회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5호 제3목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4) 주요의회 집행부 구성원은 상기 제3목에 의해 회의를 주재하도록 선정될 수 없다.

(5) 상기 제2(c)목 및 제3(c)목은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또는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가 있는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런던 자치구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1 별표 4.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

.....

별표 5. 중요하지 않은, 결과적인 법률 개정

1933년 아동 및 청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c. 12)

1

1933년 아동 및 청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제34A조(부모 또는 보호자의 법정 출석) 제2(b)항에서 “에 의한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지칭한다”를 “의 의미 내에서 의 사회서비스 역할이다”로 교체한다.

2

동 법 제55조(부모, 보호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 제5(b)항에서 “에 의한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지칭한다”를 “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역할이다”로 교체한다.

지역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c. 42)

3

1970년 지역정부 사회서비스법 제2조(지역정부의 사회서비스위원회 설립)에서—

(a) 제1항 제a호, 제b호를 “사회서비스 역할”로 교체한다.

(b) 제2항은 삭제한다.

4

동 법 제3조(사회서비스위원회의 사업) 제1항에서 “(본 법에서 이후 “사회서비스 역할”이라고 칭함)을 삭제한다.

5

동 법 제13조(명령 및 부령) 제3항에서 “2(2)”를 “1A”로 교체한다.

6

동 법 제15조(인용, 조항 해석 등) 제2항에서 “3”을 “1A”로 교체한다.

7

동 법 별표 1(사회서비스위원회에 배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법률)에서 M1 1985 주택법 (Housing Act) 관련 항목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986년 장애인(서비스, 협의 및 대표)법 (c. 33)

지역 교육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지닌 지역정부에 역할을 부여하는 장애인 이해관계 대변 및 분석”
경우를 제외하고, 제1~5조, 제7조, 제8조.

1972년 지역정부법 (c. 70)

전망	
8	1972년 지역정부법 제80조(지역정부 구성원으로 선출되거나 직위를 역임하는 자격 박탈) 제1(e)항에서 “또는 1998년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에 의해”를 삭제한다.

9

동 법 제85조(회의 불출석에 의한 사임) 제3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3A) 2000년 지역정부법 제66조, 제73조, 제78조, 또는 제79조에 의해 지역정부 구성원이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은 상기 제1항에 의해 6개월 연속 기간을 산출하는데 있어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 정지, 자격 일부 정지 기간 직전, 직후 관할당국 회의에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연속 기간으로 간주한다).”

10

동 법 제86조(특정 사례에서 직위 공석에 관한 지역정부의 선언) 제1(b)항에서 “1998년” 이후, “또는 2000년 지역정부 제79조”를 삽입한다.

11

동 법 제87(1)(선출직 공석 일자)에서—

(a) 제e호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ee) 2000년 지역정부법 제79조에 의한 자격 박탈의 경우, 동 조에 의한 처분에 관련된 항소, 청구의 통상적인 허용 기간 만료 시점에, 또는 항소, 청구를 한 경우, 해당 항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거나, 포기하거나, 심리 중단에 의해 항소, 청구가 중단되는 일자에”.

(b) 제f호에서 “e”를 “ee”로 교체한다.

전망
12 동 법 제94~98조(투표 제한)은 효력이 중단된다.

전망
13 동 법 제105조(계약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는 효력이 중단된다).

1974년 지역정부법 (c. 7)

F1 14.

전망
15 동 법 제30조(지역위원(Local Commissioner) 조사 보고)에서— (a) 제3항 “하기 제3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한다. (b) 제3A항을 삭제한다.

1976년 입양법(Adoption Act) (c. 36)

F2 16.

1977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c. 49)

F3 17.

1984년 요양시설법(Registered Homes Act) (c. 23)

18

1984년 요양시설법(Registered Homes Act) 제13조(변론 권한)을 (본 법 제III편의 의미 내에서의) 집행부를 운영하는 복지당국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5항을 다음으로 대체한 효과를 지닌다.

“(5) 해당자가 구두 변론을 하기를 원한다고 복지당국에 통보한 경우, 복지당국은 해당자가 그러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c. 41)

19

1989년 아동법 제22조(지역정부가 보호하는 아동들에 관련한 지역정부의 일반적인 의무) 제1(b)항에서 “에 의한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지칭한다”를 “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역할이다”로 대체한다.

20

동 법 제42조(법정 후견인의 지역정부 기록 접근 권한) 제1(b)항에서 “에 의한 사회서비스 위원회를 지칭한다”를 “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역할이다”로 대체한다.

F4 21.

22

동 법 제105조(조항 해석) 제5항에서 “에 의한 해당 지역정부 또는 다른 지역정부 사회 서비스위원회를 지칭한다”를 “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역할을 맡는 해당 지역정부 또는 다른 지역정부의”로 대체한다.

23

동 법 별표 제6호(변론 권한)을 (본 법 제31편의 의미 내에서의) 집행부 체계를 운영하는 (동 법 별표 6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정부에 적용하는데 있어, 제5항을 다음으로 대체한 효력을 지닌다.

“(5) 해당자가 구두 변론을 하기를 원한다고 지역정부에 통보한 경우, 지역정부는 해당자가 구두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c. 42)

24

(1) 1989년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제5조(감사관 지정 및 보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항에서 “공무원” 앞에 “하기 제1A항에 의거하여”를 삽입한다.

(3) 동 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1A) 본 항이 적용되는 관할당국이 상기 제1항에 의해 지정한 공무원은 관할당국 공무원 대표가 될 수 없다.

(1B) 상기 제1A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다음 관할당국에 적용된다.

- (a) 카운티의회
- (b) 카운티 자치구의회
- (c) 지역의회
- (d) 런던 자치구의회
- (e) 런던광역시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
- (f) 지역정부, 경찰당국, 항만보건당국으로서의 런던시 공동의회(Common Council of the City of London).”

- (4) 제2항에서 “또는 법률에 의해 제정 또는 승인된 관행규정의”를 삭제한다.
- (5) 제2항에서 M2 런던광역시당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제73(6)조의 런던광역시당국에 관련하여 제a호에서 “또는 법률에 의해 제정 또는 승인된 관행규정의”를 삭제한다.
- (6) 동 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2A) (M3 1974년 지역정부법의 의미 내에서의) 지역위원(Local Commissioner) 이 해당 제안, 의사 결정, 또는 불이행에 관해 동 법 제III편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한, 상기 제2(b)항에 의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7) 제8항 “관할당국” 정의의 제a호에서 “(j)”를 “(k)”로 교체한다.
- (8) 동 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8A) 본 조에서, 본 조에 의하여 감사관에 부과한 의무, 또는 본 조에 의한 감사관의 의무는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 의해 감사관에 부여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전망
25 동 법 제19조(구성원의 이해관계)는 효력이 중단된다.

전망
26 동 법 제31조, 제32(1)조(지역정부 운영 국가규칙규정)은 삭제한다.

27

동 법 제33~35조(지역정부 경제개발 및 재량예산 지출)은 효력이 중단된다.

1992년 조사위원회 및 조사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 (c. 53)

28

1992년 조사위원회 및 조사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 별표 1, 제I편(조사위원회 의회(Council on Tribunals) 감독하의 조사위원회) 제27호 말미에 다음을 삽입한다.

“지역정부, 구성원의 행동	27A. 2000년 지역정부법 제76조의 사건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	---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 1998 (c. 18)

F5 29.

30

동 법 제49조(정보 공개 제한) 제1(d)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dd) 2000년 지역정부법 제III편에 의한 윤리기준 공무원 또는 웨일즈 지역위원 (Local Commissioner) 역할 이행을 위해”.

1999년 런던광역시당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c. 29)

31

1999년 런던광역시당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의회 회의 불참) 제6조 제 4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5) 제66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에 의해 의회 구성원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의해 6개월 연속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합산하지 않는다.”

32

동 법 제13조(시장의 회의 불참)은 동 조의 제1항이 되며, 동 항 이후, 다음을 삽입한다.

“(2) 2000년 지역정부법 제66조, 제73조, 제78조, 또는 제79조에 의해 시장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아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의는 상기 제1항 목적상 인정하지 않는다.”

33

동 법 제31조(일반 권한 제한) 제5항의 제a호, 제b호를 “1970년 지역정부 사회서비스법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의 의미 내에서의 사회서비스 역할”로 교체한다.

	전망
34	
동 법 제66조 (윤리기준에 관한 국무장관 지침)은 효력이 중단된다.	

별표 6. 법률 폐지

장(章)	약칭	폐지 범위
1970 c. 42.	1970년 지역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제2(2)조. 제3(1)조에서 “(이하 동 법에서 “사회서비스 역할”이라고 칭함”). 제6(5)조.
1972 c. 70.	1972년 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제80(1)(e)조에서 “또는 1998년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에 의해”. 제94~98조. 제100D(2)조 “목록 중, 또는”. 제105조. 제265A(1)(b)조 “94~98”.
1974 c. 7.	1974년 지역정부법.	제30조 제3항 “하기 제3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및 제3A항.
1976 c. 57.	1976년 지역정부(기타 조항) 법.	제25(8)조에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부터 “해당 지역 거주민”까지.
1978 c. 50.	1978년 도심지역법(Inner Urban Areas Act).	제13조 “1972년 지역정부법 제137(1)조 또는”.
1985 c. 51.	1985년 지역정부법.	별표14, 제13호.
1985 c. 67.	1985년 교통법(Transport Act).	제74(12)호 “1972년 지역정부법 제94조 또는”.
1985 c. 68.	1985년 주택법(Housing Act).	제11A(4)조.
1986 c. 60.	1986년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별표 16, 제8(a)호.
1989 c. 42.	지역정부 및 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1989.	1999년 런던광역시장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제 73(6)조에 의해 대체된 제5(2)(a)조 및 제5(2)(a)조, “또는 특정 법률에 의해 제정 또는 승인된 관행규정의”. 제19호, 제31호, 32(1) and 33 to 35.

장(章)	약칭	폐지 범위
		별표11, 제22호, 제23호.
1992 c. 14.	1992년 지역정부금융법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별표13, 제32호.
1994 c. 19.	1994년 (웨일즈)지역정부법.	별표 15, 제25호.
1994 c. 29.	1994년 경찰 및 법원법 (Police and Magistrates' Courts Act).	별표 4, 제7호.
1995 c. 25.	1995년 환경법(Environment Act).	별표7, 제9 호, 제10호.
1996 c. 16.	1996년 경찰법(Police Act).	별표 7, 제 1(2)(h)호, “98(1A)” 및 제21호.
1996 c. 56.	1996년 교육법(Education Act).	별표 37, 제63호.
1997 c. 50.	1997년 경찰법(Police Act).	별표 6, 제1 호, 제2호.
1998 c. 18.	1998년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	제16(1)(a)호 “또는 18”.
		제17조 제1(b)항 및 동 조항 앞의 “그리고”.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제a호, 제 b호. 제(b)호 이후 “그리고”. 제3항, 제5(b)항, 제7항, 제8항.
		제18조. 제20~23조.
		별표3, 제3(1)호.
1999 c. 29.	1999년 런던광역시당국법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제66조.
		별표8, 제6호, 제 7호.